#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OREA REHABILITATION AGENCY

# 연 구 참 여 자

| | |
|---|---|
| ■ **책임연구자** | 이 동 훈 _성균관대학교 |
| ■ **공동연구자** | 신 연 희 _성결대학교 |
| | 최 관 _한세대학교 |
| ■ **객원연구자** | 방 기 연 _고려사이버대학교 |
| ■ **연 구 원** | 신 지 영 _성균관대학교 |
| | 강 수 운 _성균관대학교 |
| | 최 현 주 _한세대학교 |
| ■ **연구보조원** | 이 아 름 _성균관대학교 |
| | 윤 기 원 _성균관대학교 |

# 목 차


**세부연구 1. 출소자와 가족의 가정생활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 국문요약** ..... 4

**세부연구 2.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 8

**세부연구 3. 대상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국문요약** ..... 12

**세부연구 4.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관련 빅데이터(Big Data) 구축 및 중장기 지원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국문요약** ..... 15

**세부연구 1. 출소자와 가족의 가정생활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 ..... 18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20

Ⅱ. 문헌고찰 ..... 22

Ⅲ. 연구방법 ..... 24

Ⅳ. 조사결과 ..... 30

Ⅴ. 제언 ..... 77

**세부연구 2.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 105

Ⅰ. 서론 ..... 107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09

Ⅲ.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의식 조사 ..... 124

Ⅳ. 대국민의식 조사 선행연구 개관 및 정책제언 분석 ..... 169

Ⅴ. 가족희망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및 추후사업방향 제시 ..... 179

**세부연구 3. 대상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 193

Ⅰ. 연구의 필요성 ..... 195

Ⅱ. 이론적 배경 ..... 197

Ⅲ.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 ..... 228

Ⅳ.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 ..... 295

Ⅴ.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 본 가족복원사업의 의의와 과제 ..... 358

**세부연구 4.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관련 빅데이터(Big Data) 구축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 364

Ⅰ.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 366

Ⅱ. 숙식제공 대상자 다면적 인성검사(MMPI-2) 특성 분석결과 ..... 431

Ⅲ. 세부연구3과 세부연구4를 통한 가족복원사업의 개선과제 및 추후사업방향제시 ..... 451

세부과제 1.

# 출소자와 가족의 가정생활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

국문요약

성결대학교 신연희

출소자와 가족의 가정생활 실태와 욕구를 다룬 1주제의 연구는 출소자들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과 출소 후 가정복원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가정복원과 관련된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가족희망센터」의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운용방안을 제안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연구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인 출소자 및 출소를 준비하고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출소자 표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전국 13개 지역에서 200명을 추출하였는데 주거지원자 176명, 창업지원자 12명, 그리고 두 개 모두를 지원받고 있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소준비자는 출소 전 1개월 수용자를 연구모집단으로 하여 네 개로 구성된 지방교정청에서 각 교정청별로 2-3개씩의 교도소를 할당하여 총 10개의 교도소에서 254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출소자와 가족들의 가정생활의 실태, 성공적인 가정 복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및 복지욕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입각하여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센터」의 출소자 가정복원 사업의 모델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소자와 가정의 기본특성을 보면, 출소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다. 다수가 법적인 혼인상태로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볼 때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의 비율이 18.7%로 매우 높고, 낮은 월소득, 상당한 수준의 부채액, 불안정적인 직업상태 등이 상호관련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녀관련 실태를 보면, 출소자의 다수가 자녀를 두고 있으며 양육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며, 과거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 출소자의 배우자(자녀의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출소준비자들의 특성을 볼 때, 출소자와 유사하게 40-50대의 고졸학력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출소자 집단에 비하여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이 상대적

으로 많았다. 기혼수용자의 이혼율은 법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더 높아서 기혼수용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와 이혼하여 가정이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준비자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높은 수급자율, 낮은 월소득, 불안정한 직업상태에서 출소자들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준비자들의 10명 중 약 4명 정도(37.2%)는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등 가족과의 연계가 부정적인 상태였고, 가족 대상자별로 관계에 대한 평가도 상당한 수준에서 부정적이었다. 출소 후 가족과의 동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가 10명 중 4명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가족과의 재결합과 가정복원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준비자의 절반정도가 자녀를 두고 있고, 자녀들의 20% 정도는 가족 외의 사람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다. 부모의 범죄경력에 대해 자녀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절반 수준이어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범죄경력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소준비자들이 평가한 출소 후 생활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밝지 않았는데 다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즉시 취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10명 중 3-4명 정도가 출소 후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서 취업알선 정책, 그리고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 특성에 대해 출소자와 출소준비자를 비교하였을 때, 자녀들의 문제행동의 모든 유형에서 출소준비자의 자녀들이 출소자 자녀들에 비하여 심각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 조직유형, 가족 간 친밀성, 가족과 재결합에 관한 태도에서도 출소자 가정이 출소준비자 가정에 비하여 긍정적이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가정은 출소준비자 가정에 비하여 가정의 건강성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족의 건강성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을 비교하였을 때,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들은 일반수용자에 해당하는 출소준비자에 비하여 형량, 재범횟수, 교정시설에의 처음 수용된 나이 등에서 죄질 및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접견율에서 특히 배우자와의 접견율은 두 집단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출소 후 재결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소 후 사회복귀과정에서 경험한(경험하게 될) 어려움으로 두 집단 모두에게서 상위순위로 지적된 항목으로는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 변화된 사회에 대한

적응, 안정된 거처확보,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편견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마련, 그리고 비교적 상위의 순서에 위치해 있는 변화된 사회에 적응을 위한 지원, 안정된 거처확보를 위한 지원,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편견을 교정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출소 후 재범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정착과정에서의 지지자원에 대해 여러 지지자원의 유형 중 정서적 지원 가능성을 가장 높게 것으로 응답한 것과, 경제적 지원과 생활지원에 관해서는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점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하였다. 그런데 사회정착과정에서의 지지자원에 대해 출소자들은 배우자를, 출소준비자들은 친구를 주된 지지자로 응답하고 있어서 가족이 아닌 비슷한 처지의 친구에 대한 의존이 재범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소자 가족복원 및 가족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가족희망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아 사업의 확장 및 서비스 대상자의 적극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희망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를 볼 때 출소자들은 자녀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출소준비자들은 가족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여욕구가 낮고 사회적응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비교적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단위의 집단활동 프로그램과 가족상담 프로그램이었고, 두 집단 모두 욕구가 낮은 프로그램으로는 출소자와 가족의 자조집단과 알코올치료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와 가족의 가정생활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출소자 가정복원에 관한 「가족희망센터」의 사업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에 관해 제언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은 출소자 사회복귀 시책들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출소자 가족복원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우리사회의 가치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둘째,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의 운용체계와 「가족희망센터」의 역할에 대해 출소자 가족자원 보호체계의 구조화, 출소자들의 생애경험 단계의 연계화에 관한 중심적인 역할을 가족희망센터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가족희망센터」의 서비스제공 모델로 “가족중심”, “지역사회중심”, “가족희망센터중심”으로 구분하여 각 각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한 후 출

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사업은 “네트워크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조사결과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에 대해 함의하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들이 출소자 가정복원에 미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자들은 위험성이 덜한 출소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족희망센터」가 사업을 다양화 및 확장하고자 한다면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분류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출소자 가정복원의 범위는 가족과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사회복귀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교정시설 단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이 출소 후 가족복원의 효과성 제고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희망센터」의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출소자 가정복원 및 재범예방을 위한 역점사업의 구성,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우선적 제공, 가족의 복원과 가족자원의 활용을 통한 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가족희망센터」의 프로그램 대상자선정 전략은 일차적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법무부 및 공단과 연결고리가 있는 집단을 프로그램 운용의 일차적인 대상자로 설정할 것, 그리고 「가족희망센터」 및 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세부과제 2.

#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국문요약

한세 대학교 최관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대국민 인식조사의 필요성으로서 이윤호외(2006)는 출소자들과의 상징적 상호작용과정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의식과 편견을 만들어가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궁극적으로 출소자들이 대한민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출소자 및 가족복원정책, 및 대국민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범죄행위와 관련된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출소자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과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셋째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해당 가족지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키고 일반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족희망센터에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인식조사연구는 정양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연구로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그 대상을 대한민국 전국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자는 20세 이상 70세 이하 남녀 총500명이 선정되었고, 조사전문기관인 ㈜인바이트에 의해 2014년 11월 24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수행을 위한 설문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3파트(인구사회학적 요소, 출소자들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정도, 출소자 및 가족복원 사업 정책지지 정도)로 이루어졌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7가지 인구사회학적 요소(거주지, 성별, 연령대, 범죄피해경험,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들로 구성하였다. 둘째, 출소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출소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수용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7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셋째, 출소자 및 가족복원 사업 정책지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 5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 가설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① 여성이면서,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출소자와 그 가족복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②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며, 범죄피해 경험이 있으며 법집행과 처벌을 선호할수록 출소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일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연구변인과 관련하여 독립변인은 출소자와 그 가족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검증된 7가지 항목(거주지역, 성별, 나이, 범죄피해경험,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과 종속변인은 '출소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 정책지지 정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전체 조사참여자는 총 500명으로서 남자 250명과 여자 250명 각각 50%씩이었다. 먼저 거주 지역별 특성은 대도시가 303명(60.6%), 중소도시가 179(35.8%), 농어촌출신이 18명(3.6%)이었다. 나이와 관련하여, 참가자들 중 가장 적은 나이가 20세였고, 가장 많은 나이가 69세였으며, 전체 나이평균은 39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대(18.6%), 30대(35.0%), 40대(29.6%), 50대(13.2%), 60대(3.6%)였다.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72.65%가 범죄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27.4%만이 범죄피해경험이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0.4%), 고졸(15.8%), 대졸 이상(71.6%), 대학원졸 이상(12.2%)이었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100만원이하(1.8%),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9.2%),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16.4%),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23.0%),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20.6%), 500만원이상-600만원미만(13.2%), 600만원이상-700만원미만(7.4%), 700만원이상(6.2%)이었다. 종교의 경우 총 500명 중 47.6%가 무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가 22.2%, 불교가 15.4%, 천주교가 12.0%, 기타가 2.8%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7개로 구성된 출소자 및 그 가족지원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의 최소값이 0, 최대값이 7, 평균이 4.57, 표준편차가 2.141이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소개하면, 설명된 7개의 변인들 중에서 '성별'과 '연령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첫째,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출소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40-50대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사회로 돌아오는 출소자와 그 가

족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위험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에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출소자나 그 가족들에게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출소자를 고용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경우가 더 많았고 자녀들이 출소자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둘째, 연령대의 경우에는 20대와 같이 나이가 어릴수록, 50대나 60대에 비해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출소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자녀들이 출소자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부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종교의 경우에는 종교가 없거나 어떠한 종교이냐를 불문하고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에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 타 종교나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죄피해 경험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경험유무를 떠나서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장동료로서의 수용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섯째,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고학력일수록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거주지의 경우 도시에 거주할수록 본인들의 자녀와 출소자의 자녀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득수준은 본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희망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은 크게 2가지가 제시되었다. 먼저 제언을 위한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출소자와 그 해당 가족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출소자=그 가족”을 하나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출소자와 출소자 가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중적 잣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사업방향 제시로서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편견 억제를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 공생의 사회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낙인 그리고 편견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편견과 낙인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가족희망센터의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출소자 및 가족에 대한 편견을 억제 및 지원을 위해 가족희망센터 혹은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여부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래 취지인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통한 재범방지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센터와 그 해당 업무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시민들의 이중적 잣대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중적 잣대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은 가족희망센터내의 지역사회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는 지역적, 시간적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부와의 연계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에 주기별로 차별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세부과제 3

# 대상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국문요약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본 연구는 출소자 2차 연구의 세부 연구과제 중 '대상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심층면접 대상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남성출소자 13명과 여성출소가 10명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남성출소자의 경우 여성배우자 13명과 자녀 한 명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출소자 가정 내에서 출소경험(범죄사실)이 다루어지는 핵심내용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가 출소 후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 출소경험(범죄사실)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먼저 '남성출소자와 여성 배우자, 자녀에 대한 심층 면접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에게 있어 가족은 삶의 희망으로, 사회복귀 및 가족 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수감기간동안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문제로 큰 어려움을 받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소자는 실질적인 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길 원하였다. 둘째, 수감 기간 및 출소 후 아내(가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도움으로는 '주거지원'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출소자들은 수감 전 가족의 생계를 혼자 담당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편 수감 후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공단을 포함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아버지의 수감기간 및 출소 후 자녀가 필요했던 도움으로는 교육비 지원이 최우선이었으며, 여기에 교육비 지원 시기 및 지원 시 설명 등이 추가적으로 요청되었다. 더불어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 치유 뿐 아니라 진로상담 등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넷째,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도록 만든 요인은 수감 이전에 남편에 대한 신뢰였다. 더불어 배우자는 수감을 통해 남편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였고, 남편의 수감 경험을 최악의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는 긍정적 성향을 갖고 있어 가정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아버지 수감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자녀가 어리거나 자녀가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아버지에게 수감을 알린 경우에는, 자녀들은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도 하였고 반대로 이를 수용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다.

위의 남성 출소자 심층면접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희망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법무부에 대한 제언을 수립하였다. 먼저 가족희망센터에 대한 제언은 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주된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남성 출소자 심리상담프로그램에서 알코올 및 도박, 분노조절, 수감생활로 인한 후유증, 자녀에게 미안함 등을 다룰 수 있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심리상담프로그램은 수감으로 겪는 어려움 호소, 아내의 심정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녀에게 수감사실 및 아버지의 부재를 밝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자녀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선 다친 마음과 분노조절, 아버지에 대한 원망 등을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더불어 학업 및 진로지도 지원도 병행이 필요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부에 대한 제언은 주거지원 확대, 배우자와 출소자의 취업요건에 맞는 지부별 취업교육,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 보조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확대, 사회 복지 혜택의 적극적 홍보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다음으로 ‘여성출소자의 출소경험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의 수감 및 출소경험으로 예상치 못한 수감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삶의 교훈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이 컸는데, 자녀들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배우자 역시 생계 책임과 육아로 인한 괴로움과 외로움으로 외도를 하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또한 출소자 본인 및 가족들에게 새겨진 낙인과 그로 인한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두 번째는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 자녀에 대한 수감사실 공개 및 비공개 경험에 대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가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아는데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어 가능한 한 수감 사실을 자녀들에게 밝히길 꺼려했다. 가정마다 비공개 이유의 방식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출소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에 후회하며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깊이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출소자들은 효과적인 수감사실 공개를 위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따라서 수감사실 공개방식에 대해 공개수준과 방법, 자녀의 연령 및 성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성 출소자 심층면접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희망센터에 대한 제언은 크게 가족 심리 상담프로그램 구성의 보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자녀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고마움과 범죄 대물림에 대한 우려, 수감사실 공개에 대한 불안한 여성출소자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의 우울증, 배우자 수감에 따른 비참한 마음, 사회적 낙인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을 보살필 수 있는 배우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부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보충되어야 하는데, 자녀가 느끼는 불행감, 학교생활 부적응 및 수감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상담과 더불어 학업 및 진로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제언으로는, 보증금 분할납부 및 거주지 변동에 상관없는 주거지원 유지 등 기존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적 확대와 취업기회확대 및 생활비,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출소자 지원센터와 더불어 공단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 역시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다. 법무부는 수감 중 가족 및 사회복귀지원에 힘써야 하는데, 가족 접견 시간 및 횟수 증가와 자녀 양육시설 보급 확대, 취업 전문 교육 확대 등이 있겠다.

종합적으로, 앞서 언급한 심층면접 결과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출소자 및 여성출소자의 수감사실 자녀 공개여부 경험과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 자녀에게 본인의 수감사실에 대해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공개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체포 장면 목격 등)에서 자녀가 수감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수감 전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자녀들은 수감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출소 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반면, 자녀가 어릴 경우 수감사실을 비공개하였으며, 1년 미만의 짧은 복역기간일 경우에도 부모의 부재를 다른 이유를 대며 알리지 않았다.

수감사실 공개유무를 벗어나 부모의 부재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어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족희망센터에서는 프로그램운영 시 각 가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버지/어머니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공개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세부과제 4

#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관련 빅데이터(Big Data) 구축 및 중장기 지원 방향 제시를 위한 조사 연구

국문요약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본 연구에 앞서 출소자 1차 연구과제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모델 정립과 모델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뒤이어 출소자 2차 연구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 연구'를 2014년 7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1차 연구과제에서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모델을 정립하였는데 2차 연구에서 모델 유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하였다.

주거지원 대상자 408명 대상의 가족복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과 숙식제공대상자 510명 대상의 가족복원에 대한 실태조사, 심리척도분석 및 숙식제공대상자 102명의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이 가족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나아가 위의 내용을 다면적 · 포괄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성까지 도출하였다.

주거지원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심리척도 및 제언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의 실태조사결과 주거지원 대상자는 배우자와 자녀 동거 여부에 따라,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 모델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가지 모델 유형은 다시 배우자 동거와 자녀동거 여부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즉 배우자동거 모델(배우자동거/자녀동거,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과 자녀동거 모델(배우자동거/자녀동거,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동거 모델에서는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모델에 비해 배우자지지, 아버지역할수행, 긍정적 의사소통 유형이 높았으며, 자녀동거 모델에서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모델에 비해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와 같은 주거지원 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우선 전체 주거지원 대상자의 공통된 특징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각 모델별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양육과 교

육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극적인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대상자들은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음으로,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요구된다. 다음으로 각 모델 유형별 정책적 제언으로는, 배우자 동거와 자녀 동거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출소자에게 있어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하며 긍정적 의사소통 및 아버지 역할수행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보았을 때, 배우자 동거 모델이 재범 및 사회복귀와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배우자 동거 모델에겐 가족 유지가 지속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 지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상호작용 훈련을 통해 가족 관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동거하는 모델은 가족응집력이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모델은 가족 해체의 위험이 더 큰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가정일 경우 가족 간 결속이 높아지도록 부모 및 자녀 가족복귀 프로그램을 제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숙식제공대상자를 대상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이다. 숙식제공 대상자 전체 실태 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숙식제공 대상자는 외로움, 후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숙식제공 대상자가 가정을 꾸리는 데 가장 바라는 것은 '주거지원'이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범죄동기와 더불어 출소 후 사회 적응과정에서 출소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부분인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 유형별 실태조사 및 심리적 특성 분석 결과, 숙식제공 대상자의 어린 시절 양친양육과 현 가족 연락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 유형- '원가족 양육/현가족 연결모델', '원가족 양육/현가족 단절모델', '원가족 분리/현가족 단절모델', '원가족 분리/현가족 단절모델'을 제시하였다.

위의 4가지 모델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원가족 양육/현가족 연결'모델에서 '원가족 분리/ 현가족 단절'모델로 갈수록 사회적지지,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능력(적극적 대처)은 낮아지고 아동기 학대외상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소자의 사회 적응에 있어 가족 연결이 중요함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각각 '원가족 양육/현가족 연결모델'에서는 유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원가족 양육/현가족 단절모델'에선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신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

가족 양육/현가족 단절모델'은 현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원가족 분리/현가족 단절모델'은 스트레스 대처(적극적 대처)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되었으며, 두 가지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아동기 학대라는 외상경험을 상담 장면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줄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숙식제공 대상자 MMPI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이다. 우선 한국규준과 비교해보았을 때 Pd(반사회성), Pa(편집증), DEP(우울), MDS(결혼생활 부적응), O-H(적대감 과잉통제), MAC-R(알코올 중독)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내적으로 우울하면서 타인에 대해 의심· 경계하는 성향이 높지만, 반면 외적으로 적대감을 과잉통제하고 있어 자신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결과, 알코올에 의존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양상이 숙식제공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남을 시사한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형사사법적 특성에 따른 MMPI척도별 차이는, 우선 20· 30대 집단에 비해 40대 집단이 분노와 중독 인정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증가할수록 자아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초 수감나이가 낮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성향은 높고 사회적 책임감은 낮았으며, 재범집단이 초범에 비해 경조증적 상태, 공격성, 알코올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은 구체적으로 알코올, 대인관계, 결혼생활, 우울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분노와 적대감을 잘 통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습득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고등학교 학력을 이수하는 것을 도와 자아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어린 나이의 최초 수감 예방 및 재범집단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공격성, 알코올, 경조증적 상태의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자아탄력성과 부모애착에 대한 회복이 요구되며, 아동기 학대 외상이 범죄에 있어 원가족 경험이 주요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료 역시 중요하다.

세부연구 1

# 출소자와 가족의 가정생활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

**신연희**

**성결대학교**

# 세부연구 1. 출소자와 가정생활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

## 목 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20

**Ⅱ. 문헌고찰** ····· 22

**Ⅲ. 연구방법** ····· 24

1. 조사대상자 선정 ····· 24
2. 설문지 구성과 주요변인 ····· 26

**Ⅳ. 조사결과** ····· 30

1. 출소자 및 가정실태 ····· 30
2. 출소준비자 및 가정실태 ····· 43
3.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 특성(출소자와 출소준비자 비교) ····· 60
4.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출소자와 출소준비자 비교) ····· 63
5. 사회적응 과정의 특성(출소자와 출소준비자 비교) ····· 67

**Ⅴ. 제언** ····· 77

1. 프로그램 운영모델 및「가족희망센터」역할에 관한 제언 ····· 77
2. 조사결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의 함의 ····· 81

**<참고문헌>** ····· 86

**<별첨 1>** 출소자용 질문지 ····· 88

**<별첨 2>** 출소자준비용 질문지 ····· 96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출소자 가정복원에 관한 대책은 출소자 가정의 실태와 정책대상자인 출소자 및 가족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출소자 및 출소가 임박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가정생활의 실태와 출소 후 가정복원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지원방안 및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본 세부과제(세부과제 1)의 목표이다.

가족은 출소자가 사회에 재통합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며, 사회정착에 필요한 중요한 동력이고 자원이라는 점에서 재범예방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출소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하는 것과 재범을 극복하는데 있어 가족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1] 사회자본으로서 출소자의 가족 및 건강한 가정은 출소 후 사회통합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Adalist-Estrin, 2003; Hairston, 1991; Kaplan, Cassell & Gore, 1977; Mills & Codd, 2008; Mustin, 1987; Wolff & Drain, 2004).

서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범죄통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인도적인 관점에서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수용자 및 출소자의 가족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몇 편의 정책보고서(박선영·신연희, 2012; 전영실·신연희·김영식, 2007)와 연구논문들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관련정책으로는 법무부 교정 본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의 융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수용자위기가정지원사업」,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LH와의 협약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출소자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현존하는 정책사례로 들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다.

재범예방에서 차지하는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국내에서도 비교적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소자와 가족들의 생활에 대한 기초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출소자 가정복원 사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형자의 절반 이상(2011년 기준 51.2%)이 교정시설 재입소자

1)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사회구성원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통해 형성하여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동원되므로 사회적관계망 속에 있는 집단의 성원이 얻게 되는 이익을 이른다(신연희, 2008). 가족자원이 가지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의미는 수형자 및 출소자의 관리와 재범예방을 위해 가족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는데,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생활에의 적응력 향상 및 출소 후 재범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수형자 및 출소자의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는 의미를 가진다(신연희, 2008).

인 현실을 주시할 때(법무연수원, 2012), 출소자 재범문제에 관한 범죄통제정책의 대안으로 출소자 가정 복원사업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는 출소자들의 가정복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계획 및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출소자 및 출소를 준비하고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출소자와 가족들의 가정생활의 실태, 가족과의 재결합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들, 성공적인 가정 복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및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센터」의 사업모델 및 프로그램 운용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 II. 문헌고찰

## 1. 국외의 연구동향

범죄학 및 형사정책 연구에서 가족을 주목한 국외의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수형자 및 출소자 가족관련 연구들은 가족관계 및 가정건강성 실태, 가족과의 재결합이 재범예방에 미치는 효과,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 및 평가에 연구 등 여러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보면, 수용자와 가족과의 관계는 수용생활, 그리고 출소 후 사회복귀 및 가족과의 재결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인식이 주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확산되어 있다(박선영·신연희, 2013). 출소자 재범예방이라는 범죄통제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가족관계는 수용자의 심적 안정과 수용생활에의 적응을 유도하여 수용자 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출소 후 재범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Allard & Lu, 2006; 신연희 2013 재인용).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우선 가족 및 가족관계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법무부와 지역사회기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연방정부는 전국 수준의 자료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도 실태에 관한 자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Oregon Department of Corrections, 2002). 한편, 재범예방에 있어 가족요인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 또한 발전하였는데,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수용자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은 수용자 교화와 재범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논의하고 있다(Hairston, 1991; Kaplan, Cassell, & Gore, 1977; Mills & Codd, 2008; Mustin, 1987; Wolff & Drain, 2004).

출소 후 가정복원을 위한 사업은 출소자에 한정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정시설에서부터 출소 후 적응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필라델피아주의 피츠버그에서는 교도소 수용 초기단계에서 시작하여 재결합을 준비하는 출소가 임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와 가족 간의 관계상의 문제별로 해결 지침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교정기관에서부터 가족관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귀 후 가족과의 재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며 이의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다(Oregon Department of Corrections, 2002).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들은 부모-자녀 간 관계의 문제, 출소 후 적응과정에서 가족들의 대처방법에 관한 문제, 출소자의 약물문제 해결 등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들로 고려되고 있다(Bilchik, 2007: 7).

## 2. 국내의 연구동향

국내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출소자 재범예방을 포함하여 범죄통제정책에서 가족요인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실정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초기에 진행된 수용자 가족관련 정책보고서들은 수용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는 가족요인을 조사항목에 일부 포함시켜서 다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장기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장기수형자의 수용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한 요소로 가족관계를 다루고 있다. 조사대상 수형자의 절반이상이 출소 후의 가족관계 회복에 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승만·신연희, 2005: 100), 한편 장기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욕구 중 가족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욕구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보고하면서 수용자들의 주된 관심이 가족과의 관계유지 및 재결합에 있는 것으로 논의하였다(정영진·신연희, 2006: 120).

수용자 가족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교도소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실태를 분석하고 가족건강성 향상방안을 제언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전영실 외, 2007), 여기서는 조사대상 수용자의 83.8%가 출소 후 가족과 재결합하여 함께 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과 재결합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었기 때문과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은 것을 볼 때, 출소자들의 대부분은 가족과의 재결합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가족과 재결합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전영실 외, 2007: 81),

연구논문은 교정정책의 대상자로 가족을 고려할 것과 수용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한 연구(남상철·신연희, 2002)는 수용자가족에 관한 국내에서의 선구적인 연구로 들 수 있다. 가족 및 외부의 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출소 후 지역사회에의 결합가능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출소 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자기효능감도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고(신연희, 2008), 가족과의 방문접견을 많이 하고 있는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 적응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전영실·신연희, 2009)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평가연구로는 수용자위기가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정시설 가족사랑캠프 평가보고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주관하여 가족사랑캠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와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보고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법무부, 2013 & 2014),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선정과 자료 분석

‘세부과제 1’의 조사대상자는 출소자와 출소 준비자이다. 출소자 표본은 사회복귀 후 출소자의 가정실태를 조사하고, 출소준비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가정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집락표집을 통해 설문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출소자와 출소준비자가 소속된 지역을 몇 개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일정 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출소자 표본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한국법무보호보지공단 소속의 직원들이 법무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조사의 협조를 구하였고 설문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200명으로 구성된 출소자 표본은 주거지원자 176명, 창업지원자 12명, 그리고 두 개 모두를 지원받고 있는 12명이다. 지역사회에 정착한 출소자 표본의 구성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한편, 출소준비자의 모집단은 출소를 준비하고 있는 출소 전 1개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전국의 교정시설을 4개의 교정청으로 구분하고, 각 교정청별로 각 3개씩 총 12개 교도소를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 선정하였으며,[2] 선정된 교도소별로 20명 정도씩 총 250명의 표본이 추출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선별과정을 거쳐 유효한 자료로 채택한 자료는 10개 교도소에서 수집된 254부이다.[3] 출소준비자 대상 설문조사는 출소 전 1개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집단교육 시간을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질문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출소준비자 표본의 구성은 <표 1.2>와 같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중심으로 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출소자 가정의 실태와 프로그램에 관한 욕구를 분석하였으며, 출소자와 출소를 준비하고 있는 수용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특별히 비교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

2) 현재 교정청별로 소속된 교도소의 수는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9개, 대구지방교정청 관할 12개,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8개, 대전지방교정청 관할 7개, 그리고 민영교도소가 1개 있다(법무연수원, 2012: 288).

3)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한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에 응하였고 총 300부가 수거되었다. 수거된 자료에 대한 선별과정에서 질문지를 잘못 사용한 1개 교도소로부터 수거된 질문지와 답변이 부실한 질문지 46개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10개 교도소로부터 수집된 254부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다.

<표 1.1>조사대상 출소자의 구성

| 출소자유형, 거주지역, | 표본 수(n) | 구성비(%) |
|---|---|---|
| **출소자 유형** | | |
| 주거지원자 | 176 | 88.0 |
| 창업지원자 | 12 | 6.0 |
| 모두 해당 | 12 | 6.0 |
| 합 계 | 200 | 100.0 |
| **거주지역** | | |
| 서울시 | 20 | 10.0 |
| 경기도 | 58 | 29.0 |
| 인천 | 15 | 7.5 |
| 대구시 | 17 | 8.5 |
| 창원시 | 5 | 2.5 |
| 부산 | 23 | 11.5 |
| 대전 | 29 | 14.5 |
| 평택 | 1 | 0.5 |
| 천안 | 1 | 0.5 |
| 원주 | 7 | 3.5 |
| 춘천 | 5 | 2.5 |
| 전주 | 12 | 6.0 |
| 제주 | 7 | 3.5 |
| 합 계 | 200 | 100.0 |

<표 1.2>조사대상 출소준비자의 구성

| 관할 교정청 | 기관명 | 표본 수 (n) | 구성비(%) |
|---|---|---|---|
| 서울지방 교정청 | 안양교도소 | 48 | 18.9 |
| | 서울남부교도소 | 36 | 14.2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22 | 8.7 |
| 광주지방 교정청 | 순천교도소 | 20 | 7.9 |
| | 광주교도소 | 17 | 6.7 |
| 대전지방 교정청 | 대전교도소 | 30 | 11.8 |
| | 청주교도소 | 31 | 12.2 |
| 대구지방 교정청 | 포항교도소 | 11 | 4.3 |
| | 안동교도소 | 15 | 5.9 |
| | 대구교도소 | 24 | 9.4 |
| 합 계 | 10개 교도소 | 254 | 100.0 |

## 2. 설문지 구성과 주요 변인

### 가. 설문지의 구성

출소자 가족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출소자 가족복원에 관한 대책마련의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이에 정책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소자 및 출소를 준비하고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질문지를 구성하는 주요내용 및 세부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정생활 실태(배우자, 자녀, 가정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실태(가정건강성, 가족관계의 질, 자녀들의 성장 및 양육환경), 범죄관련 특성(교도소 생활, 가족관계의 유지정도, 범죄관련 경험, 교도소 교화프로그램 참여), 사회적응과정의 특성(사회적응과정에서 예측 또는 경험한 어려움, 지지자원의 보유정도), 지원프로그램 욕구(프로그램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자 유형별 질문의 내용과 세부항목별 질문 문항은 아래의 <표 1.3>과 같으며, 질문지는 출소자용과 수용자용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는데 <별첨 1> 출소자용(지역사회용)과 <별첨 2> 출소준비자용(사회복귀준비자용)로 첨부하였다.

### 나. 주요변인

1) 가정생활 변인들

출소자 및 출소준비자들의 가정생활 실태를 측정하는 주요변인들은 혼인상태, 월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2) 가정건강성

가정생활의 질적인 측면은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가족친밀성, 재결합과정에서의 가족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가족탄력성은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박주연(2011: 45-49)의 한국판 척도 중 신념체계, 조직유형 영역만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4] Walsh에 의하면, 가족탄력성을 구성

4)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잘 적응하도록 하고, 혼란에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을 이른다. 원래 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시련이 되는 생애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으로 생활이 파괴되기 보다는 자기보정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 곤경을 견디며, 회복하고, 자신을 치료하는 능력을 이르는데, 인간은 누구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탄력성이론이다(Wolin & Wolin, 1993; 신연희, 2012 재인용).

하는 “가족탄력성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강점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 고통을 덜어주며 위안이 되는 가치와 목적을 가진 초월과 영성을 의미하고,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은 가족이 직면한 위기와 역경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스트레스를 중재하며 변화하는 조건에 적절하도록 가족유형을 재조직할 수 있는 가족안정성과 변화에 균형을 이루는 유연성이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회와 경제적 자원과의 연결 정도를 의미한다(Walsh, 1998).[5] 신념체계를 구성하는 항목은 12개이고 조직유형은 8개 항목인데 각 항목들은 4점의 리커트 척도이다. 따라서 신념체계는 12점에서 48점, 조직유형은 8점에서 32점으로 척도화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별로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족친밀성”은 비셔와 그의 동료들(Visher, Vigne, & Travis, 2004; 104-105)이 수용자들을 위해 개발한 가족관계질 척도(the Family Relationship Quality Scale)를 전영실 등(전영실·신연희·김영식, 2007)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하였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척도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은 4점의 리커트 척도이다. 따라서 가족관계 친밀성 척도는 10점에서 40점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간 친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재결합과정에서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출소준비자들에게는 출소 후에 자신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에 대한 전망이고, 출소자들에게는 재결합과정에서 경험한 가족들의 태도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가족자원의 활용가능성을 의미한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4점의 리커트 척도이다. 7개 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변수로 사용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최저 7점에서 최고 2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출소 후에 가족자원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가족관계 실태 변인들

주요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의 관계, 자녀수와 나이, 자녀들의 문제행동들이 주요 변인이다. 먼저 주요가족과의 관계는 매우좋다(1점)부터 매우나쁘다(4점)까지 4점의 서열척도이다. 자녀수와 자녀의 나이는 비율변수로 측정한 것을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4) 자녀문제 행동

한편 자녀들의 문제행동은 Stanton(1980)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 및 재구성하여 전

5) Walsh(1998)의 가족탄력성의 구성 요인은 신념체계(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 조직유형(융통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 의사소통과정(명확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등 3개 영역 총 3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신념체계와 조직유형만을 사용하였다.

영실 등(전영실·신연희·김영식, 2007)에서 사용하였던 척도를 본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은 내현적(심리, 정서적 문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5개 항목과 외현적(표출적) 문제행동 8개 항목(지위비행 3개 항목, 학교부적응 3개 항목, 심한 비행 2개 항목)으로 총 4개 범주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6)]

5) 범죄관련 특성 변인들

범죄관련 특성은 죄명, 전과횟수(교도소 입소기준), 교정시설 첫 입소나이, 형량, 교정시설에서의 대표적인 교화프로그램 12개에 대한 참여경험 유무를 주요변인으로 들 수 있다.

6) 사회적응과정 변인들

주요변인은 사회적응과정에서 예측 또는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로서, 8가지변인들(가족과 재결합,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 사회의 냉대와 편견, 지인들과의 관계회복, 취업 및 경제적 문제, 주거의 확보, 건강의 문제, 재범의 유혹)을 들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어려움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적응을 위한 지지자원의 유형별 자원의 보유정도도 사회적응 과정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지지자원은 5가지(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생활지원, 취업 및 학업지원,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유형화하였고, 각 유형별로 가능한 자원제공자(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구, 이웃, 종교인, 사회복지사 등)의 유무를 측정하였다.

7) 지원프로그램 욕구 변인들

지원프로그램 욕구는 가족희망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방안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프로그램별로 이용욕구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유형은 출소자는 10개 변인들(가족상담 및 치료, 자녀양육상담, 자녀상담 및 치료, 자녀학습지원, 가족단위 활동, 가족집단상담, 부모교육, 알콜치료, 출소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훈련프로그램), 출소준비자는 12개 변인들(가족상담 및 치료, 자녀양육상담, 자녀상담 및 치료, 자녀학습지원, 가족단위 활동, 가족집단상담, 부모교육, 알콜치료, 취업지원, 주거지원, 출소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훈련프로그램)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출소자는 이미 주거지원 또는 창업지원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출소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외시켰다.

---

6) 자녀들의 문제행동은 내현적(심리적, 정서적 문제), 학교부적응(학업태만, 결석 및 무단이탈, 학교중퇴), 지위비행(반항, 불량친구교제, 가출), 심한 비행(학교징계처분, 경찰입건)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출소자 가정생활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 질문지의 구성

| 질문지 유형 | 조사 내용 | 세부 항목들 |
|---|---|---|
| 출소자용 | I. 일반적 사항 (인적사항) | 유형구분(주거, 창업), 거주지역,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종교, 건강상태, 직업, 월소득, 수급자 유형, 사회보험가입여부, 총부채액 |
| | II. 가정생활 (가정실태) | 1) 동거가족, 배우자 나이, 학력. 부부관계 |
| | | 2) 자녀: 자녀유무, 자녀수, 양육비, 자녀나이, 수용사실인지여부, 수용중 양육자, 자녀문제행동 |
| | | 3) 가족건강성 : 가족탄력성(신념체계, 조직유형), 가족친밀성 |
| | III 지난 생활 (교도소 생활) | 1) 사회복귀기간, 죄명, 형량, 전과(수용횟수), 최초수용나이, 출소하던 해 가족접견정도, 교도소에서의 접견자 |
| | | 2) 교화프로그램 참여여부(12개) |
| | IV. 현재의 생활 (사회정착과정) | 1) 출소 후 어려운 점(8개 항목) |
| | | 2) 출소 후 가족관계 |
| | | 3) 사회적 지지자원 정도 |
| | V.사회적 지원 (가족희망복원센터 지원 욕구) | 1) 가족희망센터 인지여부 |
| | | 2) 가족희망센터 프로그램 욕구(10개) |
| 출소준비자용 | I. 일반적 사항 (인적사항) | 교도소 위치, 성별, 나이, 학력, 종교, 결혼상태, 종교, 건강상태, 수용 전 직업 |
| | II. 가정생활 (가족실태) | 1)가족관계: 가족과 관계유지정도, |
| | | 2) 경제적 상태: 월소득, 수급여부, |
| | | 3)자녀양육: 자녀유무, 자녀수, 자녀나이, 수용사실인지여부, 양육자, 자녀문제행동 |
| | | 4)가정건강성: 가족탄력성(신념체계, 조직유형), 가족친밀성 |
| | | 5)가족관계: 부모, 배우자, 자녀관계 |
| | III. 현재의 생활 (수용생활) | 1)죄명, 형량, 전과, 최초수용나이, 가족과 접견정도(6개월), 접견자 |
| | | 2)교화프로그램 참여여부(12개) |
| | IV. 장래의 생활 (사회복귀과정) | 1) 생활전망: 출소 후 가정복귀여부, 동거인, 부양책임, 생계수단, 주거대책, 예상되는 직업 |
| | | 2)출소 후 예상되는 어려움, 출소 후 가족태도 |
| | V. 사회적 지원 (가족희망센터 지원 욕구) | 1) 사회적 지지자원 정도 |
| | | 2) 가족희망센터 인지여부 |
| | | 3) 가족희망센터 프로그램 욕구 (12개) |

# IV. 조사결과

## 1. 출소자 및 출소자 가정의 실태

가. 출소자의 일반적 특성

<표 1.4>과 <그림 1.1>~<그림 1.7>은 조사대상 출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성은 남자가 다수(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이는 평균 47.14세 이고 이를 연령대로 변환하였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40대, 50대, 30대인데 반해 20대와 60대 이상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고졸학력이 절반에 가까운 42.4%로 가장 많으며, 대학학력 이상도 24%에 달한다. 학력에서 고교중퇴가 12.6%로 출소자의 적지 않은 수가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소자의 혼인상태는 미혼이라고 응답한 5.1%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상태는 65.7%로 가정의 구조적 상태는 다수가 안정적이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이혼하여 가정이 해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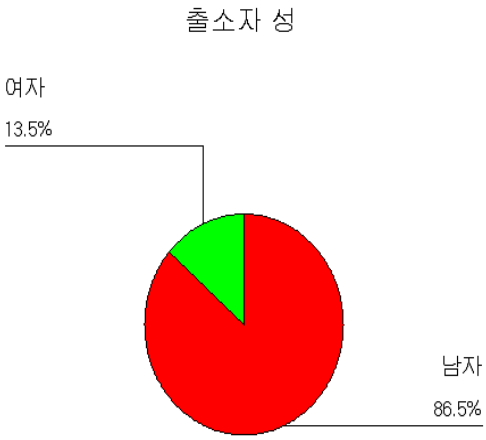
본 연구의 조사대상 출소자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주거지원자임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종교는 유무가 절반정도이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다수(80.5%)가 매우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조사대상 출소자의 건강문제는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데 비해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19.5%로 나타나 이들의 10명 중 2명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복귀한 후 경과한 기간을 보면, 5년에서 10년 미만이 가장 많고(27.9%), 3년에서 5년미만(19.7%)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나머지 10년 이상, 2년에서 3년미만, 1년미만, 1년에서 2년 미만이 10% 수준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복귀한 기간의 평균은 4.91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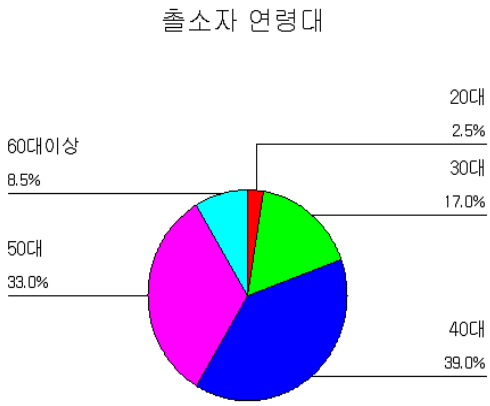
조사대상 출소자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출소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다. 다수가 법적인 혼인상태로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에 의해 출소 후 가족과의 재결합에 성공한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출소자 전체인구에 대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 1.4> 출소자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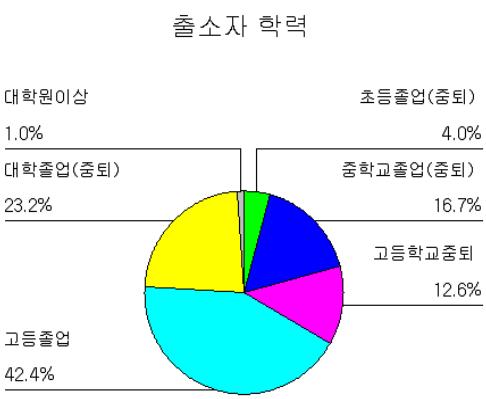
|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성 별 | 남 자 | 173 | 86.5 |
| | 여 자 | 27 | 13.5 |
| | 합 계 | 200 | 100.0 |
| 출소자 나이 (나이평균: 47.14세 ) | 20 대 | 5 | 2.5 |
| | 30 대 | 34 | 17.0 |
| | 40 대 | 78 | 39.0 |
| | 50 대 | 66 | 33.0 |
| | 60대 이상 | 17 | 8.5 |
| | 합 계 | 200 | 100.0 |
| 출소자 학력 |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 8 | 4.0 |
| |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 33 | 16.7 |
| | 고등학교 중퇴 | 25 | 12.6 |
| | 고등학교 졸업 | 84 | 42.4 |
| | 대학졸업(중퇴포함) | 46 | 23.2 |
| | 대학원이상 | 2 | 1.0 |
| | 합 계 | 198 | 100.0 |
| 결혼상태 | 미혼 | 10 | 5.1 |
| | 법률혼 | 130 | 65.7 |
| | 이혼 | 19 | 9.6 |
| | 사실상 부부(법적 이혼상태) | 9 | 4.5 |
| | 사별 | 5 | 2.5 |
| | 사실혼 | 25 | 12.6 |
| | 합 계 | 198 | 100.0 |
| 종교유무 | 종교 있음 | 109 | 54.5 |
| | 종교 없음 | 91 | 45.5 |
| | 합 계 | 200 | 100.0 |
|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함 | 44 | 22.0 |
| | 건강한편 | 117 | 58.5 |
| | 건강이 나쁜 편 | 34 | 17.0 |
| | 매우 나쁨 | 5 | 2.5 |
| | 합 계 | 200 | 100.0 |
| 사회복귀 기간 (평균 4.91년) | 출소 후 1년 미만 | 24 | 13.1 |
| | 1년-2년 미만 | 22 | 12.0 |
| | 2년-3년 미만 | 23 | 12.6 |
| | 3년-5년 미만 | 36 | 19.7 |
| | 5년-10년 미만 | 51 | 27.9 |
| | 10년 이상 | 27 | 14.8 |
| | 합계 | 183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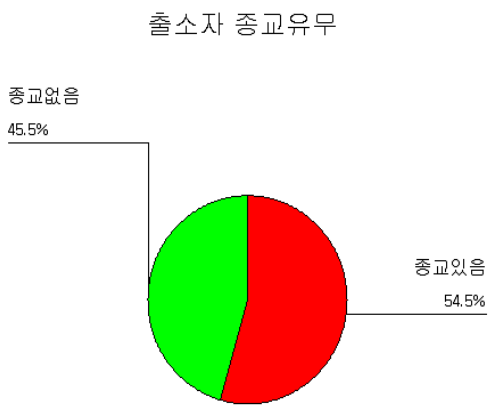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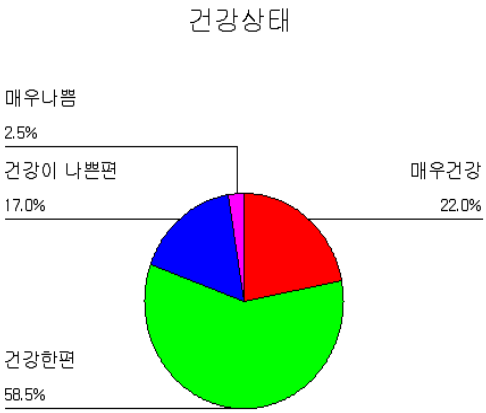

<그림 1.2>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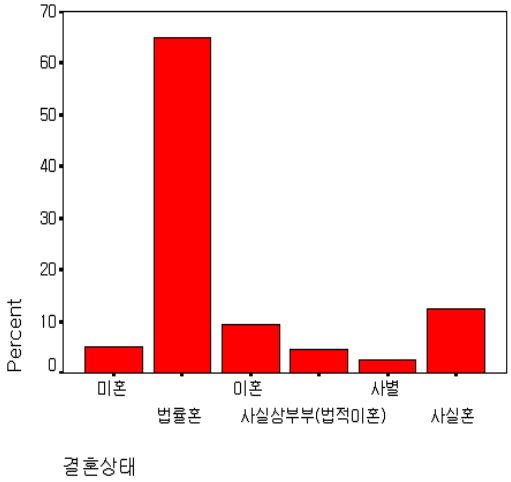

<그림 1.3>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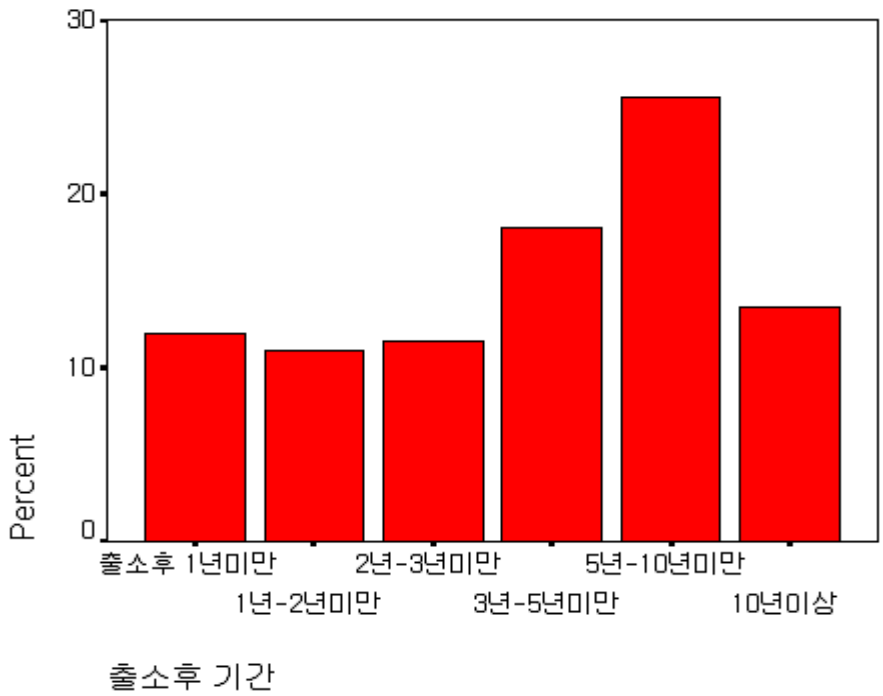

<그림 1.4> 종교유무




<그림 1.5> 건강상태




<그림 1.6> 결혼상태




<그림 1.7> 출소 후 경과기간

나. 출소자 가정의 경제적 상황

<표 1.5>과 <그림 1.8>~<그림 1.12>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출소자 가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극빈가정인 수급자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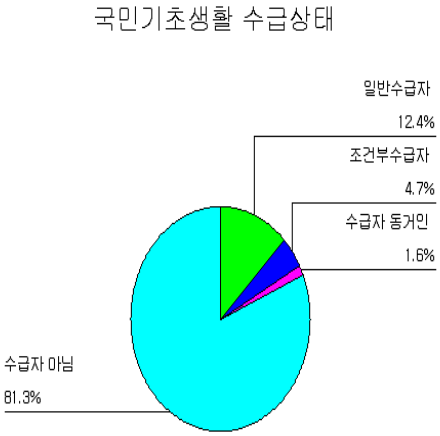
부를 볼 때 18.7%가 본인 내지는 동거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수급가구 비율 2.7%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출소자 가정의 빈곤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게 한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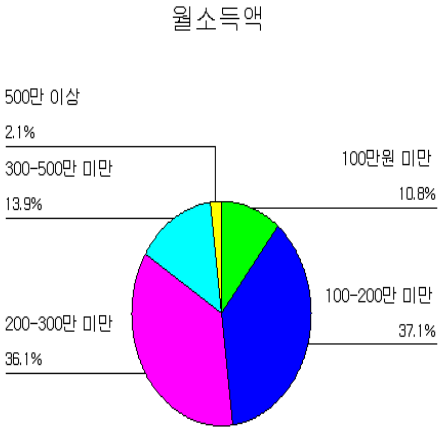
소득액 역시 빈곤가정의 비율이 높은 상황임을 보여주는데 100만원미만이 10.8%이고, 100만에서 200만원미만이 37.1%로 합하여 절반에 가까운 47.9%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도 적지 않아 5,000만원 이상이 19.6%로서 출소자 가정의 10명 중 2명에 해당한다. 부채액의 평균은 3,150만원으로 집계되어 이 역시 경제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은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이 합하여 37.2%이고, 여기에 직업이 없는 5.6%까지 더하면 출소자의 직업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95.3%)이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하였고 국민연금에는 절반을 웃도는 수준(61.8%)이 가입한 상태이다. 다만 직장단위로 가입되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은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정적이지 못한 출소자의 취업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출소자 가정의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높은 수급자율, 낮은 월소득, 상당한 수준의 부채액, 불안정적인 직업상태 등이 상호 관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조사대상자들은 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체 출소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빈곤율은 이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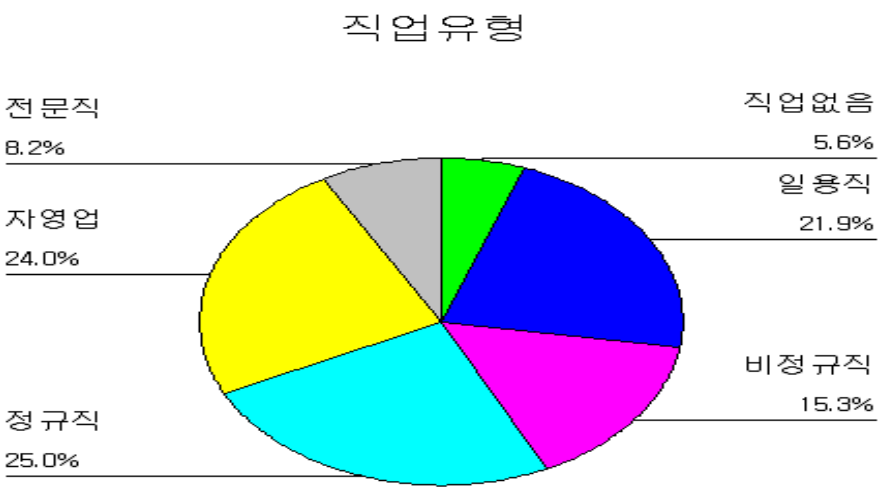
7)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수급율은 201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39만명(82만 1천가구)로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7%이다.
※자료출처: 보건복지통계,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stat.mw.go.kr/front/statData/publicationView.jsp?bbsSeq=10&nttSeq=20809&menuId=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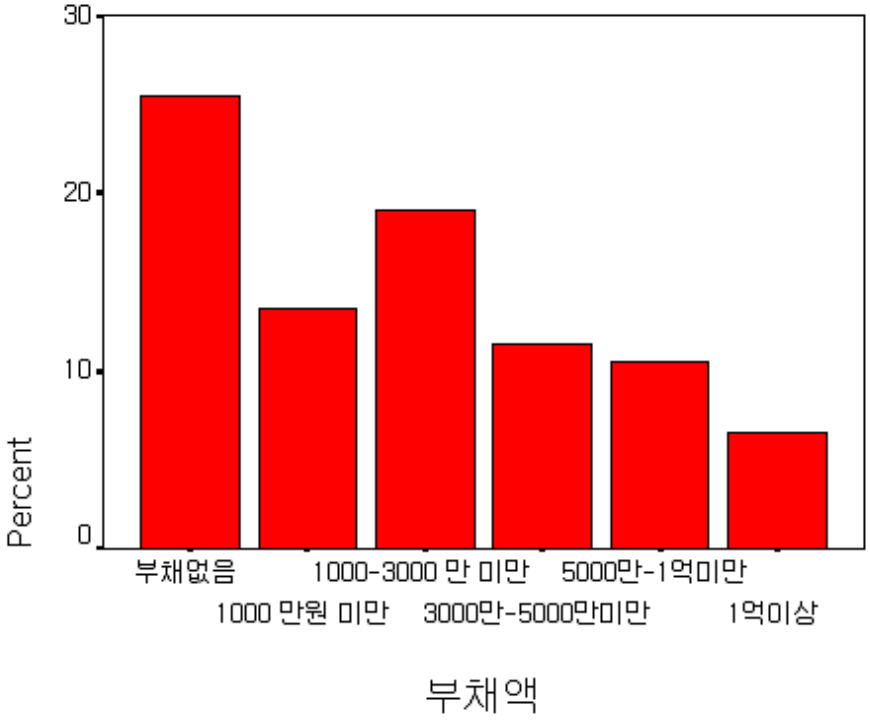




<그림 1.8> 기초생활 수급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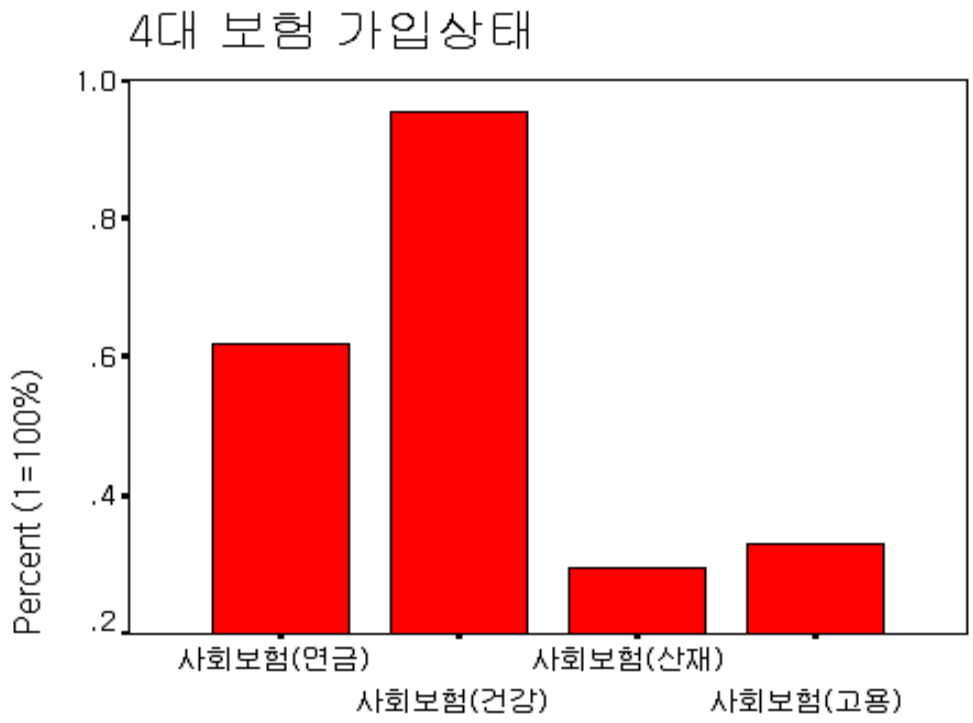
<그림 1.9> 월 소득액




<그림 1.10> 출소자 직업유형




<그림 1.11> 출소자 가계 부채 정도




<그림 1.12> 4대 보험 가입 정도

<표 1.5> 출소자의 경제적 상황

|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수급자 여부 | 일반수급자 | 24 | 12.4 |
| | 조건부 수급자 | 9 | 4.7 |
| | 동거인 중 수급자 있음 | 3 | 1.6 |
| | 수급자 아님 | 157 | 81.3 |
| | 합 계 | 193 | 100.0 |
| 월 소득액 | 100만원 미만 | 2 | 10.8 |
| | 100만원-200만원 미만 | 72 | 37.1 |
| | 200만-300만원 미만 | 70 | 36.1 |
| | 300만원-500만원 미만 | 27 | 13.9 |
| | 500만원 이상 | 4 | 2.1 |
| | 합 계 | 194 | 100.0 |
| 부채액 (평균: 3,150만원) | 없음 | 51 | 29.5 |
| | 1,000만원 미만 | 27 | 15.6 |
| | 1,000만-3,000만 미만 | 38 | 22.0 |
| | 3,000만-5,000만 미만 | 23 | 13.3 |
| | 5,000만-1억 미만 | 21 | 12.1 |
| | 1억 이상 | 13 | 7.5 |
| | 합 계 | 171 | 100.0 |
| 직업 | 직업 없음 | 11 | 5.6 |
| | 일용직 | 43 | 21.9 |
| | 비정규직 | 30 | 15.3 |
| | 정규직 | 49 | 25.0 |
| | 자영업 | 47 | 24.0 |
| | 전문직 | 16 | 8.2 |
| | 합 계 | 196 | 100.0 |
| 4대 사회보험 가입 (응답자 170명 기준, 항목별 백분율 산출) | 국민연금 가입함 | 105 | 61.8 |
| | 국민건강보험 가입함 | 162 | 95.3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함 | 50 | 29.4 |
| | 고용보험 가입함 | 56 | 32.9 |

다. 출소자 가족관련 실태

<표 1.6>과 <그림 1.13>~ <그림 1.16> 은 출소자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동거인을 보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76.4%로서 이는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인 7.6%(미혼 5.1%, 사별 2.5%)를 기준으로 볼 때(<표 1.6> 참조), 출소자들의 적지 않은 수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지 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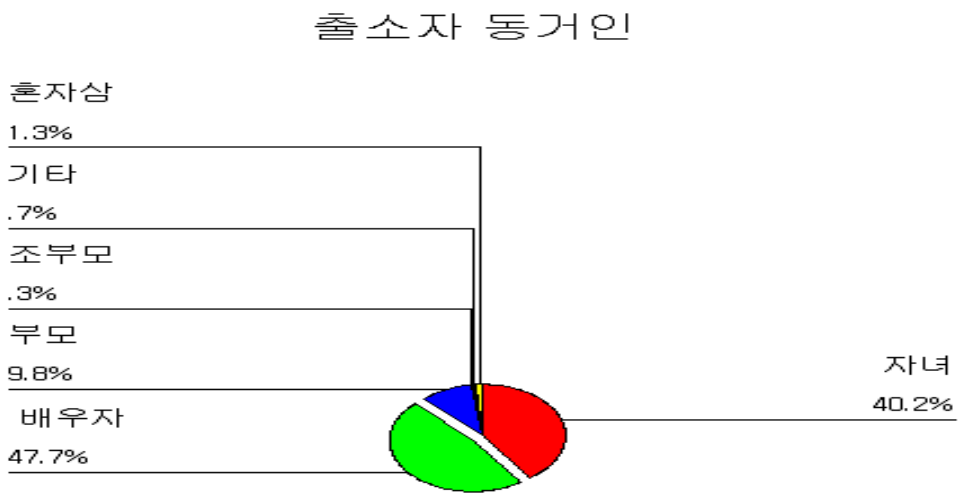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짐작하게 하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은 64.6%로 나타났다. 배우자들의 특성을 보면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높고 20대와 60대 이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4.7세로 출소자들(평균 47.14세)에 비하여 약간 적다. 학력은 출소자들과 유사하게 고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출소자들의 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응답자의 91.0%가 배우자와 매우좋거나 좋은편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6> 출소자 가족관련 사항

| 내용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함께 사는 사람 (응답자 191명 기준, 항목별 백분율 산출) | 자녀와 동거함 | 124 | 64.6 |
| | 배우자와 동거함 | 146 | 76.4 |
| | 부모와 동거함 | 30 | 15.7 |
| | 형제(자매)와 동거함 | 6 | 3.1 |
| | 조부모와 동거함 | 1 | 0.5 |
| | 그 외 사람과 동거함 | 2 | 1.0 |
| | 혼자 살고 있음 | 4 | 2.1 |
| 배우자 나 이 (배우자 나이 평균: 44.7세 ) | 20 대 | 7 | 4.4 |
| | 30 대 | 35 | 22.0 |
| | 40 대 | 63 | 39.6 |
| | 50 대 | 49 | 30.8 |
| | 60대 이상 | 5 | 3.1 |
| | 합 계 | 159 | 100.0 |
| 배우자 학력 |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 4 | 2.5 |
| |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 22 | 19.8 |
| | 고등학교 중퇴 | 18 | 11.3 |
| | 고등학교 졸업 | 85 | 53.1 |
| | 대학졸업(중퇴포함) | 30 | 18.8 |
| | 대학원이상 | 1 | 0.6 |
| | 합 계 | 160 | 100.0 |
| 배우자와 관계 | 매우 좋음 | 50 | 31.8 |
| | 좋은 편임 | 93 | 59.2 |
| | 나쁜 편임 | 11 | 7.0 |
| | 매우 나쁨 | 3 | 1.9 |
| | 합 계 | 157 | 100.0 |

출소자 가족관련 특성을 요약하자면 출소자들의 다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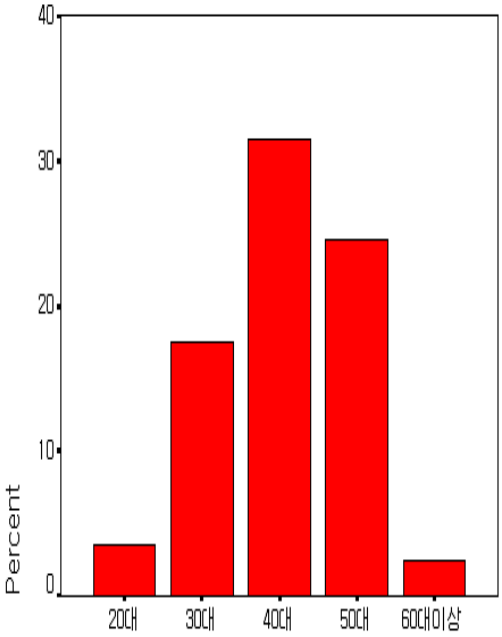
함께 살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이유에 관한 심도 깊게 조사할 필요할 것이다.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은 출소자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연령은 40대와 50대가 다수이고,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출소자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출소자 가정복원의 핵심적인 사항인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에 관한 사안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희망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이 출소자 가족복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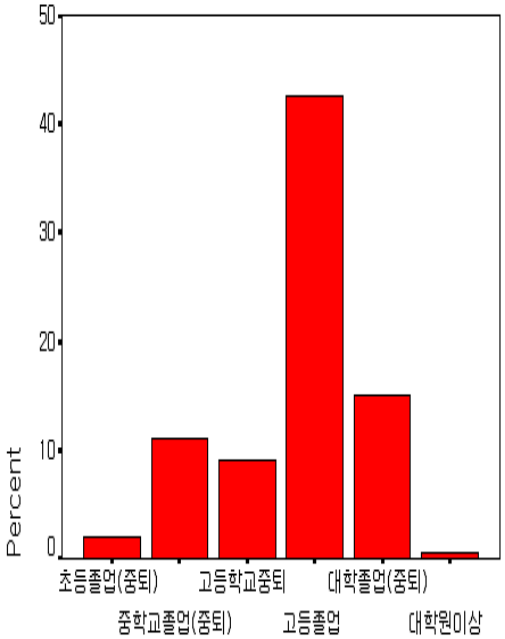

<그림 1.13> 출소자 동거인




<그림 1.14> 배우자와 관계




<그림 1.15> 배우자 연령




<그림 1.16> 배우자 학력

라. 출소자 자녀관련 실태

자녀와 관련된 실태들은 <표 1.7>과 <그림 1.17>~ <그림 1.21>와 같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출소자의 80%이상이 자녀가 있으며.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고(54.2%), 평균자녀수는 2.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42.6%)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85만원 정도(845,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들의 절반가량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표 1.7>참조) 자녀양육비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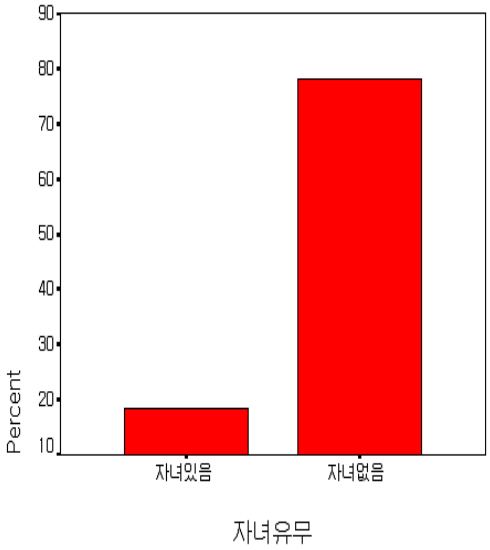
한편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사실을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경우(60%)가 모르는 경우(40%)에 비하여 약간 높았다. 부모의 범죄경력에 대해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출소자 가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쪽 부모가 교정시설에 있었던 동안 자녀양육을 남아있는 한쪽 부모(자녀의 모 또는 부)가 담당한 경우가 다수이고(76.8%), 나머지 유형 중에서 자녀의 조부모가 9.3%로 뒤를 잇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9%는 자

녀들의 양육자가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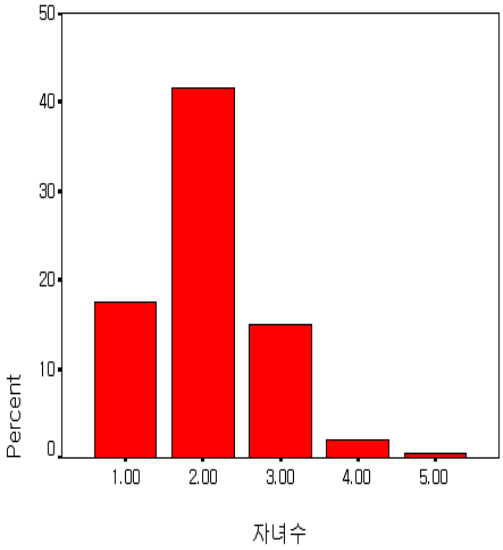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출소자의 다수가 자녀를 두고 있고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을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양육비 부담이 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 출소자의 배우자(자녀의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 가정에 따라 부모의 범죄경력에 대한 자녀들의 인지여부가 달라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녀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개별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7> 출소자 자녀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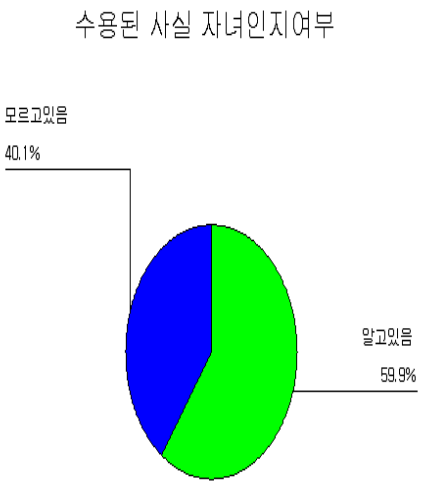
| 내용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자녀유무 | 자녀 없음 | 37 | 19.2 |
| | 자녀 있음 | 156 | 80.8 |
| | 합 계 | 193 | 100.0 |
| 자녀수 (평균 2.04명) | 1명 | 35 | 22.9 |
| | 2명 | 83 | 54.2 |
| | 3명 이상 | 35 | 22.9 |
| | 합계 | 153 | 100.0 |
| 자녀양육비 (월평균양육비: 845,900원) | 50만원 미만 | 27 | 22.1 |
| | 50만-100만 미만 | 52 | 42.6 |
| | 100만-200만 미만 | 31 | 25.4 |
| | 200만 이상 | 12 | 9.8 |
| | 합계 | 122 | 100.0 |
| 수용되었던 사실 자녀 인지여부 | 알고 있음 | 94 | 59.9 |
| | 모르고 있음 | 63 | 40.1 |
| | 합계 | 157 | 100.0 |
| 수용된 동안 자녀양육자 | 자녀엄마 | 104 | 68.9 |
| | 자녀아빠 | 12 | 7.9 |
| | 자녀조부모 | 14 | 9.3 |
| | 자녀친척 | 3 | 2.0 |
| | 자녀들끼리 | 5 | 3.3 |
| | 보호시설 | 3 | 2.0 |
| | 기타 | 10 | 6.6 |
| | 합계 | 151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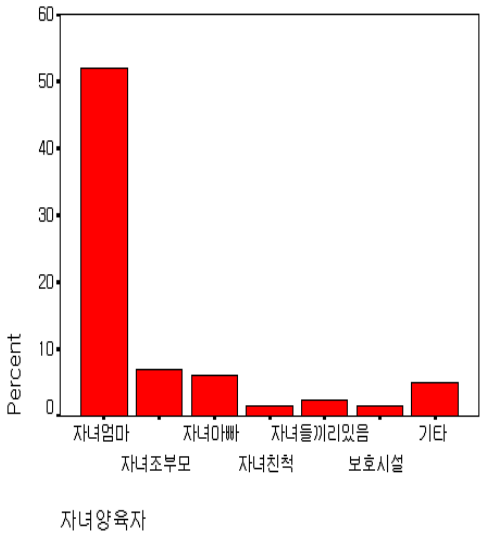

<그림 1.17> 자녀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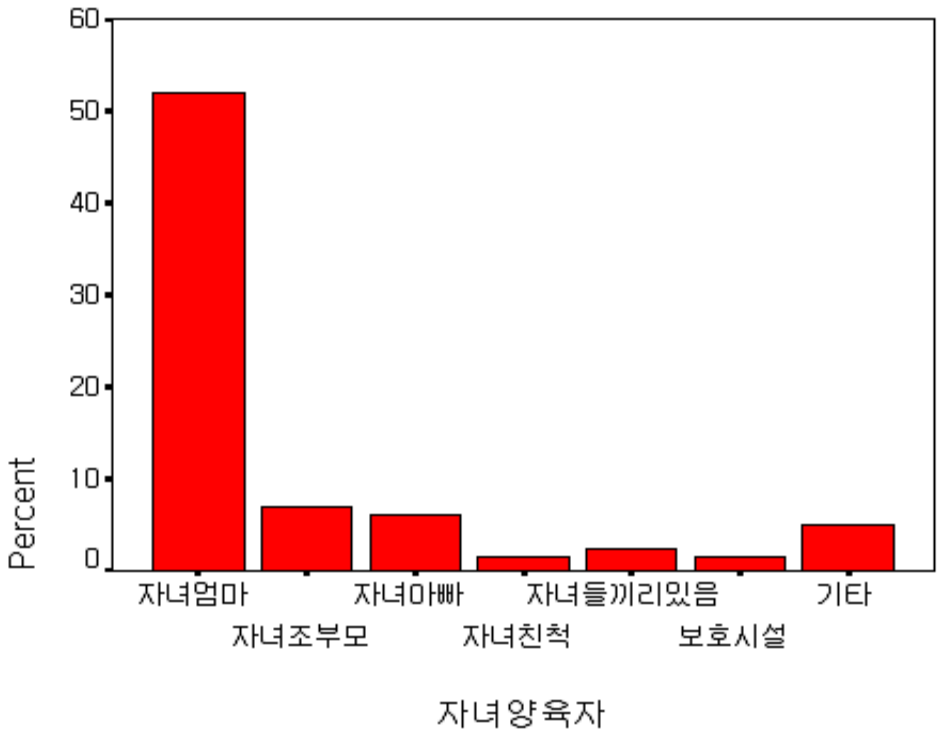

<그림 1.18> 자녀의 수




<그림 1.19> 수영사실 인지여부




<그림 1.20> 자녀양육자




<그림 1.21>

## 2. 출소준비자 및 출소준비자 가정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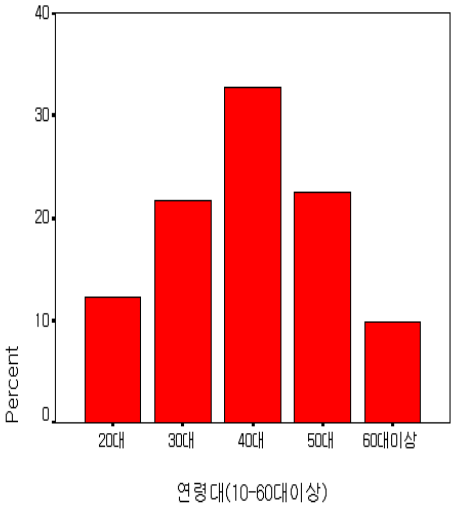
가. 출소준비자의 일반적 특성

<표 1.8>과 <그림 1.22> ~ <그림 1.26> 은 교정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출소 전 1개월 수용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성별을 볼 때 전원이 남자로서 본 조사에서는 여자수용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는 평균 44.29세 이고 이를 연령대로 변환하였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40대, 50대, 30대인데 반해 20대와 60대 이상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출소자와 유사하다. 다만 출소자가 40-50대(72%)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출소준비자들의 경우 동일 연령대가 58.7%로 상대적으로 적고 나머지 연령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은 고졸학력(35.7%)로 가장 많은 것은 출소자 집단과 유사하며 대학학력 이상(25.8%)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출소준비자들은 중학교 졸업이하인 저학력이 27.5%로 출소자 집단에서 동일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20.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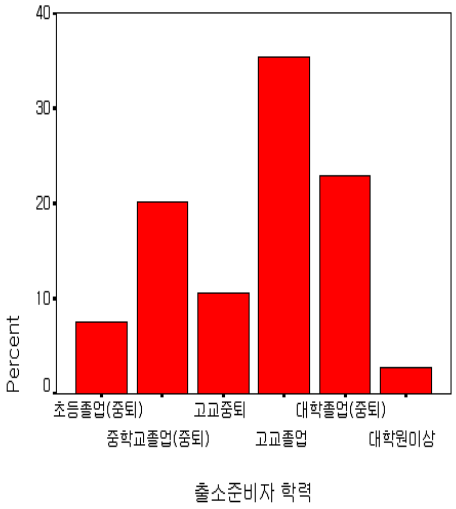
출소자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38.7%(출소자 5.1%)이고 법률혼이 22.2%에 불과한데 비해 이혼은 24.2%로 오히려 법률혼에 비하여 이혼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들의 심각한 가정해체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 출소자들의 경우 배우자와 법적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65.7%)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아울러 미혼(96명)을 제외한 사람들(152명)에 한정하여 혼인상태를 보았을 때 법률혼이 36.2%, 이혼 39.5%로 집계되어 기혼수용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교정시설 입소 전부터 이혼한 경우도 있겠지만 교정시설에의 수용을 계기로 이혼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수용기간 동안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 것이 출소자 가정복원 사업에서 역점을 둘 일임을 시사하고 있다.

종교는 대다수(72.4%)가 종교가 있다는 응답률이 출소자(54.4%)보다 훨씬 높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 종교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는 응답이 76.6%로 출소자(80.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와 출소자 모두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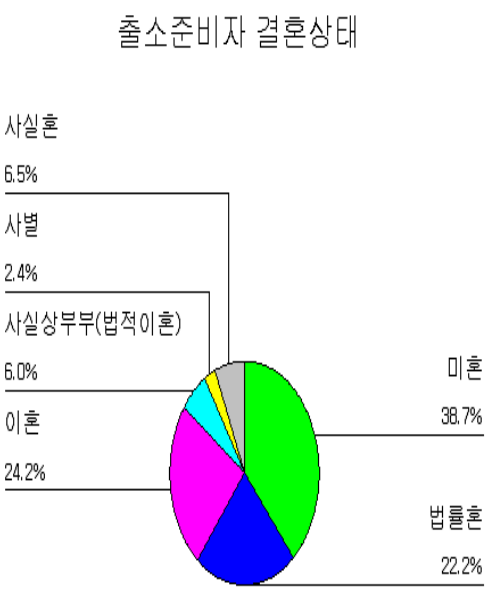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수용자들 역시 출소자와 유사하게 40-50대의 고졸 학력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출소자 집단에 비하여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출소를 앞둔 기혼수용자의 이혼율은 법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더 높아서 기혼수용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와 이혼하여 가정이 해체된 것으로 나타나 다수가 법적인 혼인으로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출소자와 비교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가정을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예: 주거지원사업)이 출소자들의 가족복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며, 따라서 출소자 가족복원사업은 수용기간 동안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과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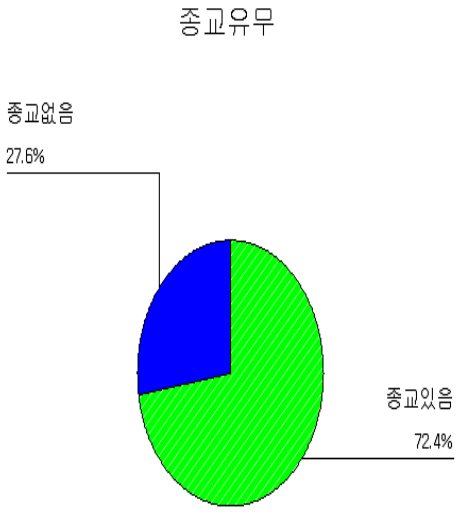

<그림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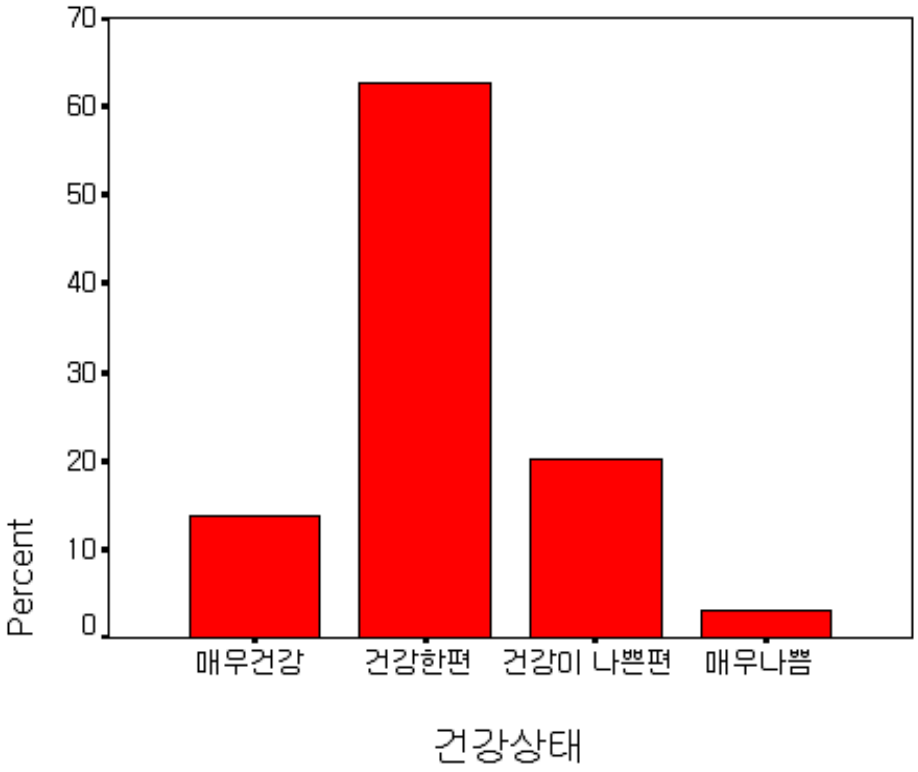

<그림 1.23>




<그림 1.24>




<그림 1.25>




<그림 1.26>

<표 1.8> 출소준비자 일반적 사항

|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성 별 | 남 자 | 254 | 100.0 |
| | 여 자 | - | -0 |
| | 합 계 | 200 | 100.0 |
| 출소준비자 나이 (나이평균:44.29 세 ) | 20 대 | 31 | 12.4 |
| | 30 대 | 55 | 21.9 |
| | 40 대 | 83 | 33.1 |
| | 50 대 | 57 | 22.7 |
| | 60대 이상 | 25 | 10. |
| | 합 계 | 251 | 100.0 |
| 출소자 학력 | 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 19 | 7.5 |
| | 중학교 졸업(중퇴포함) | 51 | 20.2 |
| | 고등학교 중퇴 | 27 | 10.7 |
| | 고등학교 졸업 | 90 | 35.7 |
| | 대학졸업(중퇴포함) | 58 | 23.0 |
| | 대학원이상 | 7 | 2.8 |
| | 합 계 | 252 | 100.0 |
| 결혼상태 | 미혼 | 96 | 38.7 |
| | 법률혼 | 55 | 22.2 |
| | 이혼 | 60 | 24.2 |
| | 사실상 부부(법적 이혼상태) | 15 | 6.0 |
| | 사별 | 6 | 2.4 |
| | 사실혼 | 16 | 6.5 |
| | 합 계 | 248 | 100.0 |
| 기혼자 혼인상태 | 법률혼 | 55 | 36.2 |
| | 이혼 | 60 | 39.5 |
| | 사실상 부부(법적 이혼상태) | 15 | 9.9 |
| | 사별 | 6 | 3.9 |
| | 사실혼 | 16 | 10.5 |
| | 합 계 | 152 | 100.0 |
| 종교유무 | 종교 있음 | 181 | 72.4 |
| | 종교 없음 | 69 | 27.5 |
| | 합 계 | 250 | 100.0 |
|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함 | 35 | 13.8 |
| | 건강한편 | 159 | 62.8 |
| | 건강이 나쁜 편 | 51 | 20.2 |
| | 매우 나쁨 | 8 | 3.2 |
| | 합 계 | 253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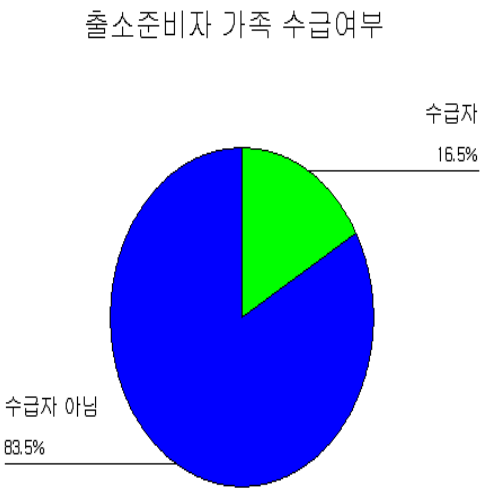
나. 출소준비자 가정의 경제적 상황

<표 1.9>와 <그림 1.27> ~<그림 1.29>은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출소준비자 가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극빈가정인 수급자인지를 볼 때 16.5%가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월 소득액은 100만원미만이 20.1%이고, 100만에서 200만원미만이 25.9%로 합하여 46%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 가정의 빈곤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수용전 직업 역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데 직업이 없음(10.7%), 일용직(14.2%), 비정규직(8.3%)을 합하였을 때 33.2%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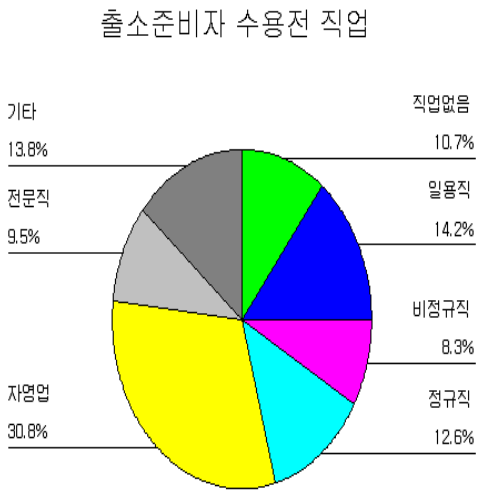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출소준비자 가정의 빈곤한 상황은 높은 수급자율, 낮은 월소득, 불안정한 직업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출소자들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1.9> 출소준비자 경제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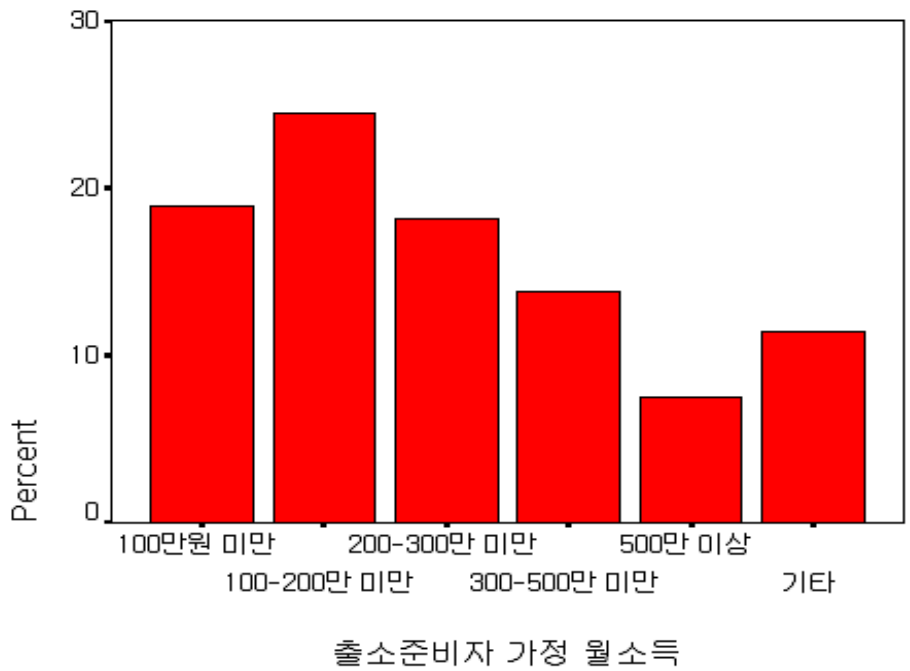
|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수급자 여부 | 수급자임 | 40 | 16.5 |
| | 수급자 아님 | 202 | 83.5 |
| | 합 계 | 242 | 100.0 |
| 월 소득액 | 100만원 미만 | 48 | 20.1 |
| | 100만원-200만원 미만 | 62 | 25.9 |
| | 200만-300만원 미만 | 46 | 19.2 |
| | 300만원-500만원 미만 | 35 | 14.6 |
| | 500만원 이상 | 19 | 7.9 |
| | 기타 | 29 | 12.1 |
| | 합 계 | 239 | 100.0 |
| 수용 전 직업 | 직업 없음 | 27 | 10.7 |
| | 일용직 | 35 | 14.2 |
| | 비정규직 | 21 | 8.3 |
| | 정규직 | 32 | 12.6 |
| | 자영업 | 78 | 30.8 |
| | 전문직 | 24 | 9.5 |
| | 기타 | 35 | 13.8 |
| | 합 계 | 253 | 100.0 |




<그림 1.27>




<그림 1.28>




<그림 1.29>

다. 출소준비자 가족관련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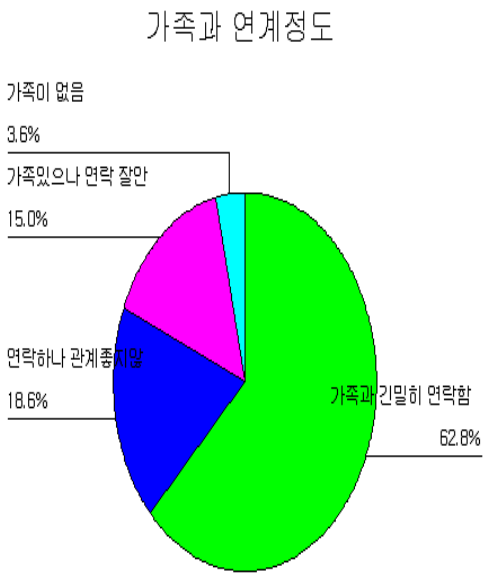
<표 1.10>과 <그림 1.30>~<그림 1.34>는 출소준비자들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가족관계의 유지상황을 보면 다수가 출소를 1개월 앞둔 현재까지 가족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62.8%)로 응답하고 있으나 나머지 37.2%는 가족과 연락은 하나 관계가 좋지않거나 연락이 잘안되거나 가족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주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매우좋았다와 좋은 편이었다)을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47.1%, 자녀와의 관계는 53.7%, 부모와의 관계는 61.0%로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부모관계에서 조차 61%여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출소 후 가족과 살겠다는 응답은 62%인데 비해 가족과 살지않겠다거나 잘모르겠다는 응답 및 가족이 없다는 응답을 합하였을 때 38%에 이르고 있어서 출소 후 가족과의 동거에 관한 수용자들의 인식은 상당한 수준에서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출소 후 함께 살 계획인 사람을 보면, 자녀, 배우자, 부모가 상위권에서 30% 대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상태 등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하겠지만 동거 희망률이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25.1%가 출소 후 혼자 살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족관계의 단절로 인함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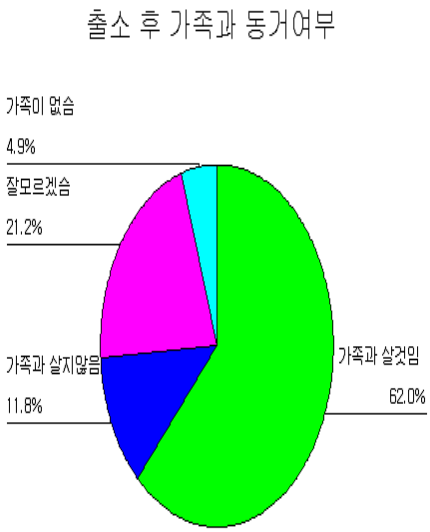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출소준비자들의 다수는 수용생활이 끝나는 시기까지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용자 10명 중 약 4명 정도(37.2%)는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등 가족과의 연계가 부정적인 상태이다. 주된 가족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좋으며 자녀 배우자의 순이고,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소 후 가족과 살겠다는 것에 부정적 또는 회의적인 경우가 10명 중 4명 정도(38%)에 이르고 있고, 함께 살 사람의 유형별 희망률도 낮은 수준이어서 이 역시 수용자들의 출소 후 가족과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0> 출소준비자 가족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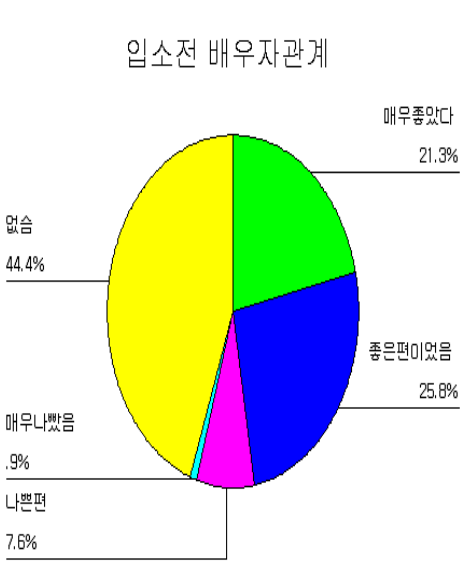
| 내용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가족과 연계상황 | 가족과 긴밀히 연락함 | 155 | 62.8 |
| | 연락은 하나 관계 좋지 않음 | 46 | 18.6 |
| | 가족은 있으나 연락 잘 안됨 | 37 | 15.0 |
| | 가족이 없음 | 9 | 3.6 |
| | 합 계 | 247 | 100.0 |
| 수용전 배우자와 관계 | 매우 좋았음 | 48 | 21.3 |
| | 좋은 편이었음 | 58 | 25.8 |
| | 나쁜 편이었음 | 17 | 7.6 |
| | 매우 나빴음 | 2 | 0.9 |
| | 배우자 없음 | 100 | 44.4 |
| | 합 계 | 225 | 100.0 |
| 수용전 자녀와 관계 | 매우 좋았음 | 47 | 21.6 |
| | 좋은 편이었음 | 70 | 32.1 |
| | 나쁜 편이었음 | 8 | 3.7 |
| | 매우 나빴음 | 4 | 1.8 |
| | 자녀 없음 | 89 | 40.8 |
| | 합 계 | 218 | 100.0 |
| 수용전 부모와 관계 | 매우 좋았음 | 44 | 18.0 |
| | 좋은 편이었음 | 105 | 43.0 |
| | 나쁜 편이었음 | 31 | 12.7 |
| | 매우 나빴음 | 7 | 2.9 |
| | 부모님 계시지 않음 | 57 | 23.4 |
| | 합 계 | 244 | 100.0 |
| 출소 후 가족과 동거여부 | 가족과 살 것임 | 152 | 62.0 |
| | 가족과 살지 않을 것임 | 29 | 11.8 |
| | 잘 모르겠음 | 52 | 21.2 |
| | 가족이 없음 | 12 | 4.9 |
| | 합 계 | 245 | 100.0 |
| 출소 후 함께 살 사람 (응답자 247명 기준, 항목별 백분율 산출) | 자녀와 동거함 | 76 | 30.8 |
| | 배우자와 동거함 | 89 | 36.0 |
| | 부모와 동거함 | 84 | 34.0 |
| | 형제(자매)와 동거함 | 27 | 10.9 |
| | 조부모와 동거함 | 5 | 2.0 |
| | 친구 등과 동거함 | 18 | 7.3 |
| | 애인과 동거함 | 16 | 6.5 |
| | 혼자 살 것임 | 62 | 2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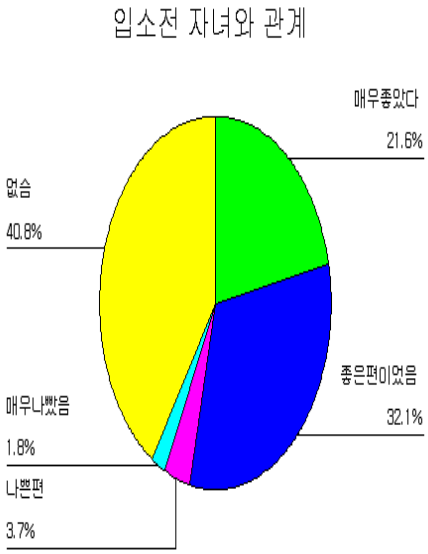

<그림 1.30>




<그림 1.31>




<그림 1.32>




<그림 1.33>




<그림 1.34>

라. 출소준비자 자녀관련 실태

출소준비자들의 자녀와 관련된 실태들은 <표 1.11>와 <그림 1.35>~ <그림 1.38>에 정리하였다. 수용자의 56.4%가 자녀가 있으며.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고(46.7%), 평균자녀수는 1.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8] 수용자의 36%가량이 미성년자녀가 있고(자녀유무에 응답한 236명 기준), 미성년자녀수의 평균은 1.43명(미성년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76명 대상)이다. 따라서 본 표본조사결과를 기초할 때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일일평균 23,100명 가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9] 한편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사실을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경우(55.6%)가 모르는 경우(44.4%)에 비하여 약간 높았다. 이는 출소자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 역시 부모의 범죄경력에 대해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수용자 및 출소자 개별가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정시설에 있었던 동안 자녀양육자는 남아있는 한쪽부모(자녀의 모)가 다수로 64.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유형 중에서 자녀의 조부모가 16.8%로 뒤를 잇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18.5%는 자녀 양육자가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8) 법무부가 가족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수를 추산한 것에 의하면, 매일 40,800여명의 수용자 미성년자녀들이 상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일일평균수용인원(45,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수용자의 유자녀율 55%에 미성년자녀수 평균 1.65명을 곱하여 환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족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성(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수용자들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우선 선정됨)을 감안할 때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수는 40,000여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법무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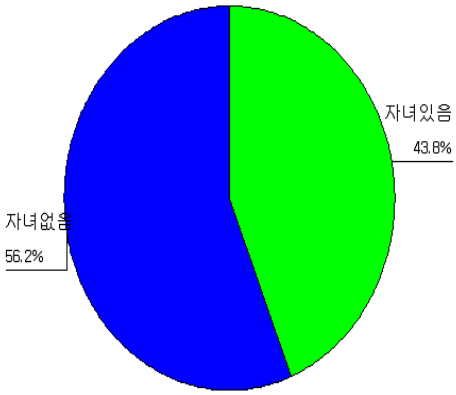
9) 수용자 미성년자녀 일일평균 수 추산근거: 수용자의 일일평균 수용인원 (45,000명) × 수용자 중 미성년자녀있는 경우 (36%)× 평균미성년자녀수(1.43명) = 23,166명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출소준비자의 절반정도가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양육자는 수용자의 배우자 즉 자녀의 엄마가 다수이고 일부는 수용자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이들은 비교적 가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 10명에 2명 정도는 가족 외의 사람들에 의해 보호되는 등 양육자의 안정성은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용된 동안 자녀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들을 중심으로 가족이 결집되는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특수성을 주목한다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출소 후 가족재결합 및 복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의 범죄경력에 대해 자녀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절반 수준이어서 가족복원을 위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운영은 자녀들이 부모의 범죄경력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1> 출소준비자 자녀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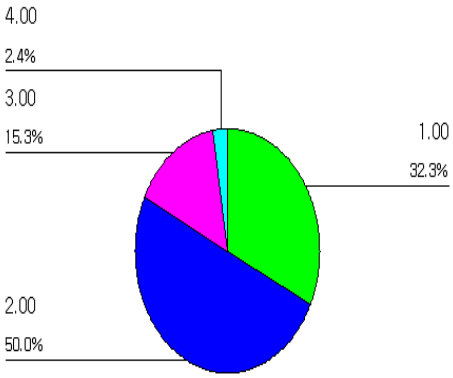
| 내용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자녀유무 | 자녀 없음 | 103 | 43.6 |
| | 자녀 있음 | 133 | 56.4 |
| | 합 계 | 236 | 100.0 |
| 자녀수 (성인자녀포함 평균 1.98명) | 1명 | 47 | 34.3 |
| | 2명 | 64 | 46.7 |
| | 3명 이상 | 26 | 19.0 |
| | 합계 | 137 | 100.0 |
| 미성년자녀 유무 (조사대상자 전체 236명 기준) | 미성년자녀 없음 +자녀 없음 | 151 | 64.0 |
| | 미성년자녀 있음 | 85 | 36.0 |
| | 합 계 | 236 | 100.0 |
| 자녀의 미성년 유무 (자녀있는 응답자 133명 기준) | 미성년자녀 없음 | 48 | 36.1 |
| | 미성년자녀 있음 | 85 | 63.9 |
| | 합 계 | 133 | 100.0 |
| 미성년자녀수 (미성년자녀있는 경우 **평균 1.43명**) | 1명 | 57 | 67.1 |
| | 2명 | 22 | 25.4 |
| | 3명 | 4 | 4.7 |
| | 4명 이상 | 2 | 2.4 |
| | 합 계 | 85 | 100.0 |
| 수용된 사실 자녀 인지여부 | 알고 있음 | 75 | 55.6 |
| | 모르고 있음 | 60 | 44.4 |
| | 합계 | 135 | 100.0 |
| 수용된 동안 자녀양육자 | 자녀엄마 | 77 | 64.7 |
| | 자녀아빠 | - | - |
| | 자녀조부모 | 20 | 16.8 |
| | 자녀친척 | 2 | 1.7 |
| | 자녀들끼리 | 11 | 9.2 |
| | 보호시설 | 1 | 0.8 |
| | 기타 | 8 | 6.7 |
| | 합계 | 119 | 100.0 |

출소준비자 자녀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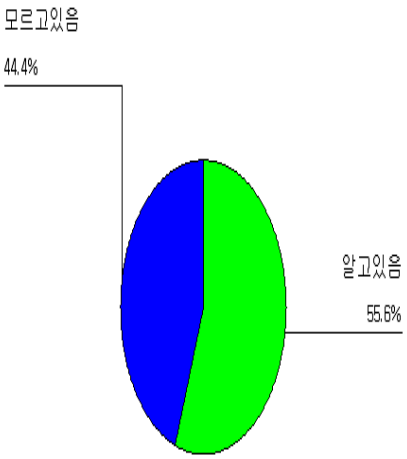

<그림 1.35>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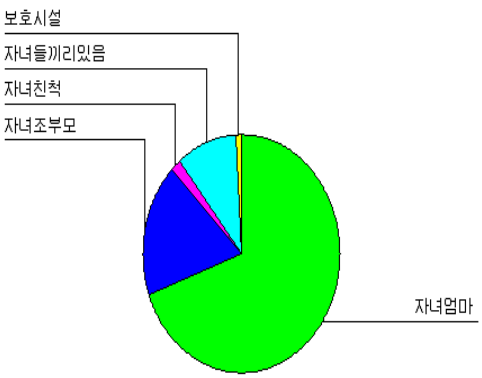

<그림 1.36>

자녀가 수용사실 인지여부




<그림 1.37>

수용된 동안 자녀양육자




<그림 1.38>

마. 출소준비자들의 출소 후 생계전망 (기초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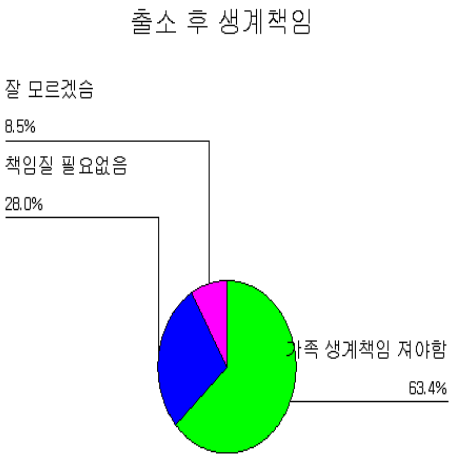
<표 1.12>와 <그림 1.39> ~<그림 1.42> 는 출소 후 기초적인 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출소후 생계책임 여부에 대해 수용자의 다수(63.4%)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생계수단으로는 본인이 즉시 취업해야 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66.9%)인 것으로 나타나 출소자들의 취업문제가 시급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소 후 예상되는 직업에 대해 자영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31.5%), 전문직과 일용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주목할 것은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용직, 비정규직, 직업구하지 못할 것임,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합하여 37.2%로 나타나, 수용자의 10명 중 최소한 3-4명 정도가 출소 후 취업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비율(63.4%)에 비하여 안정적 직업 확보에 대한 낮은 기대율(31.5%)과의 갭(gap)을 메꾸기 위해서는 출소자에 대한 취업알선 정책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출소 후 주거에 관한 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 주거지로 가족(39.1%), 부모(24.3%), 자식의 집(1.2%)를 합하여 64.6%를 제외한 35.4%는 출소 후 주거지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주거는 안정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요소이지만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므로 빈곤한 출소자들이 자력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출소자의 주거안정성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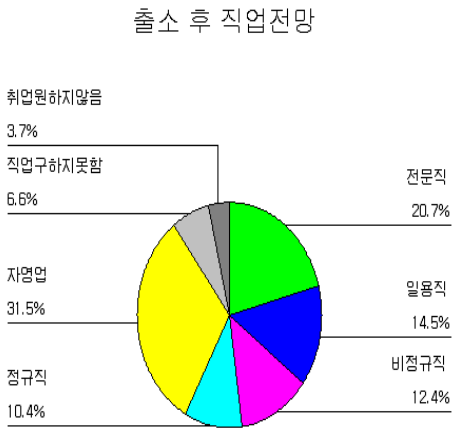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출소준비자들이 평가한 출소 후 기초적인 생활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소준비자의 다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를 위해 즉시 취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출소자들의 취업문제가 시급한 사안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수용자의 10명 중 최소한 3-4명 정도가 출소 후 취업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경우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출소 후 주거에 관한 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아 사회정착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12> 출소준비자 출소 후 기초생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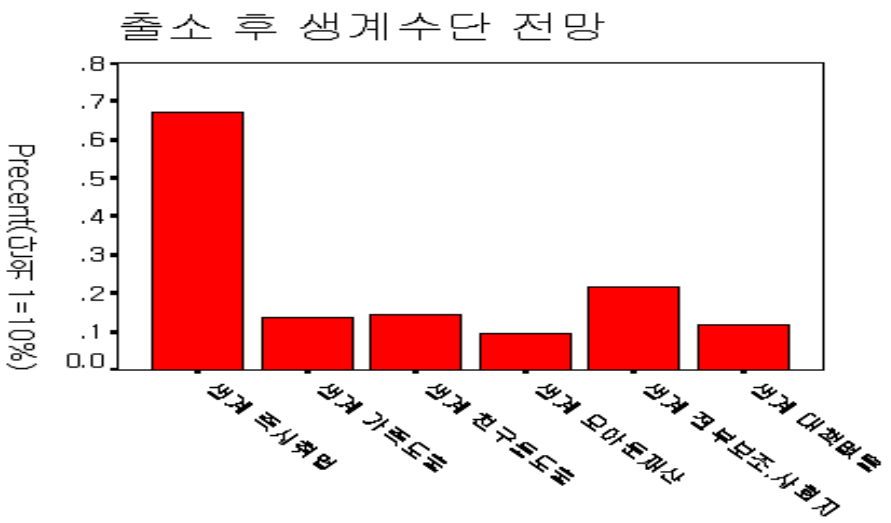
| 내용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가족 생계책임 | 생계 책임져야함 | 156 | 63.4 |
| | 생계책임지지 않아도 됨 | 69 | 28.0 |
| | 잘 모르겠음 | 21 | 8.5 |
| | 합 계 | 246 | 100.0 |
| 생계수단 방법 (항목별 백분율, 응답자 245명 기준) | 본인의 취업 | 164 | 66.9 |
| | 가족 도움 | 33 | 13.5 |
| | 친구, 지인의 도움 | 35 | 14.3 |
| | 모아 둔 재산 | 23 | 9.4 |
| | 정부보조 등 사회의 지원 | 53 | 21.6 |
| | 생계 대책이 없음 | 29 | 11.8 |
| 출소 후 직업관련 예상 | 전문직 | 50 | 20.7 |
| | 일용직 | 35 | 14.5 |
| | 비정규직 | 30 | 12.4 |
| | 정규직 | 25 | 10.4 |
| | 자영업 | 76 | 31.5 |
| | 직업구하지 못할 것임 | 16 | 6.6 |
| | 취업을 원하지 않음 | 9 | 3.7 |
| | 합 계 | 241 | 100.0 |
| 출소 후 주거상황 | 가족과 함께 거주 | 95 | 39.1 |
| | 부모님 지 거주 | 59 | 24.3 |
| | 형제(자매) 집 거주 | 16 | 6.6 |
| | 자식 집 거주 | 3 | 1.2 |
| | 친척집 거주 | 2 | 0.8 |
| | 친구, 애인 집 거주 | 8 | 3.3 |
| | 사회복지 시설 입소 | 10 | 4.1 |
| | 갈 곳이 없음 | 14 | 5.8 |
| | 잘 모르겠음 | 36 | 14.8 |
| | 합 계 | 243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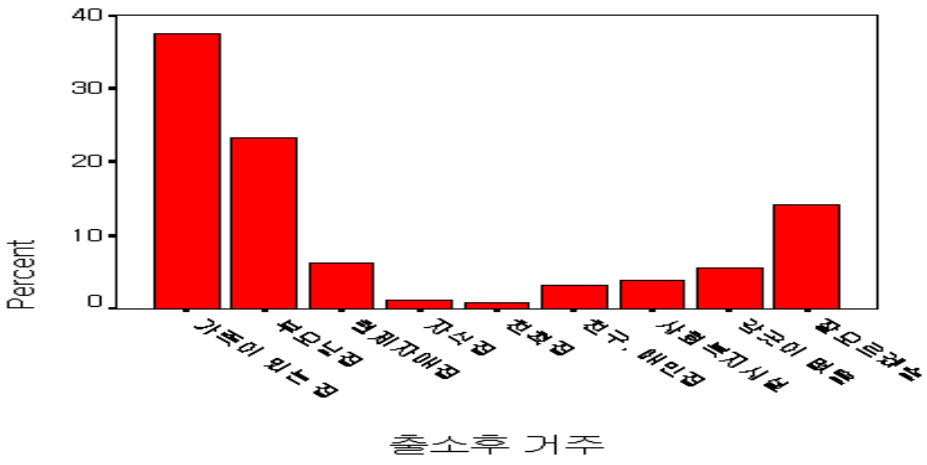

<그림 1.39>




<그림 1.40>




<그림 1.41>




<그림 1.42>

### 3.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 특성(출소자와 출소준비자 비교)

가. 자녀문제: 내현적문제, 학교부적응, 지위비행, 심한비행

출소자 및 출소준비자들의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 특성은 자녀들의 문제(<표 1.13>)와 가족건강성(<표 1.14>)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들의 문제행동은 내현적(심리적, 정서적 문제), 학교부적응(학업태만, 결석 및 무단이탈, 학교중퇴), 지위비행(반항, 불량친구교제, 가출), 심한 비행(학교징계처분, 경찰입건)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출소준비자의 자녀들이 출소자 자녀들에 비하여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있어 출소자와 출소준비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들의 내현적 문제행동과 심한 비행은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들의 내현적 문제 행동은 출소자와 출소준비자 간의 차이가 커서 출소자 자녀들에 비하여 출소준비자 자녀들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2.892$, $p< .01$). 심한비행 역시 출소자 자녀들에 비하여 출소준비자 자녀들이 심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t=1.901$, $p< .05$). 한편 학교부적응과 지위비행은 비록 집단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는 아니지만 (95% 신뢰수준) 두 항목 모두 출소준비자 자녀들이 문제행동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 출소자가정은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정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해 지원되는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1.13> 자녀들의 문제

| 자녀문제 유형 (점수범위) | 구분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t |
|---|---|---|---|---|---|
| 내현적 문제 (5-20) | 출소자 | 146 | 7.23 | 2.64 | 2.892** |
| | 출소준비자 | 124 | 8.33 | 3.46 | |
| 학교부적응 (3-12) | 출소자 | 143 | 4.47 | 1.84 | 1.796 |
| | 출소준비자 | 122 | 4.90 | 2.07 | |
| 지위비행 (3-12) | 출소자 | 146 | 3.90 | 1.52 | 1.634 |
| | 출소준비자 | 122 | 4.22 | 1.83 | |
| 심한 비행 (2-8) | 출소자 | 145 | 2.48 | .90 | 1.901* |
| | 출소준비자 | 123 | 2.74 | 1.30 | |

* p <.05, ** p< .01

나. 가족의 질적 특성: 탄력성 신념, 탄력성 조직유형, 가족 간 친밀성, 가족과 재결합 태도

<표 1.14>의 가족의 질적 특성을 보면, 모든 항목에서 출소자가 출소준비자에 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 조직유형, 가족 간 친밀성, 가족과 재결합에 관한 태도 모두 출소자가정이 출소준비자 가정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출소자 가정이 출소준비자 가정에 비하여 가족관계 및 가정의 질적 특성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 신념, 가족탄력성 조직유형, 가족간 친밀성, 가족과 재결합에 대한 태도 모든 항목에서 출소자들이 출소준비자들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의 재결합에 대한 태도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95% 신뢰수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가족탄력성 중에서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강점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 등을 의미하는 신념체계(t=-2.599, p< .05)와 위기와 역경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스트레스를 중재하며, 변화하는 조건에 적절하도록 재조직하는 가족의 조직유형(t=-2.572, p< .05)은 출소자가 출소준비자에 비하여 점수가 높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한편 가족 간 친밀성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커서 출소자가 출소준비자에 비하여 가족에 대해 친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331, p< .01). 한편 가족 간 재결합과정에서 가족들의 태도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이 역시 출소자가 출소준비자에 대하여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와 출소준비자 집단을 자녀들의 문제와 가족건강성의 측면에서 비교한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가정은 출소준비자 가정에 비하여 가정의 건강성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건강성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은 상호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자녀들의 문제행동의 정도는 출소자가정들이 수용자자가정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출소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확보된 가정의 안정성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안정된 가족 속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범죄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10]

10) 본 조사의 분석대상이 되는 수용자의 절반가량이 자녀가 없는 상태인 까닭에 소수의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은 조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표 1.14> 가족의 질적 특성

| 내용 (점수범위) | 구분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t |
|---|---|---|---|---|---|
| 가족탄력성 신념 (12-48) | 출소자 | 191 | 39.15 | 5.96 | -2.599* |
| | 출소준비자 | 218 | 37.46 | 7.06 | |
| 가족탄력성 조직유형 (8-32) | 출소자 | 191 | 25.32 | 4.14 | -2.572* |
| | 출소준비자 | 220 | 24.15 | 4.96 | |
| 가족간 친밀성 (10-40) | 출소자 | 193 | 32.03 | 6.02 | -3.331** |
| | 출소준비자 | 224 | 29.81 | 7.56 | |
| 가족과 재결합 (7-28) | 출소자 | 145 | 23.39 | 3.67 | -1.507 |
| | 출소준비자 | 231 | 22.73 | 5.04 | |

* p <.05, ** p< .01

## 4. 교정시설에서의 경험 (출소자와 출소준비자 비교)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은 범죄관련 일반적 사항(죄명, 형량, 첫 수용나이, 전과횟수)와 가족과의 접견 정도, 그리고 교정시설에서의 교화프로그램 참여정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표 1.15>은 범죄관련 기본적인 사항들을 두 집단 간에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죄명의 구성비는 두 집단이 비슷하여 경제사범(사기, 횡령, 배임, 조세법위반 등), 절도, 교통사범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량은 출소준비자가 출소자에 비하여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형량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출소자는 1.95년, 출소준비자는 1.97년이다. 이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출소자는 1년 미만(33.0)이 가장 많은데 비해, 출소준비자인 수용자들은 1년-2년미만(42.6%)이 가장 많다. 이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자들은 교정시설 수용자 중에서 비교적 형량이 적은 사람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재범 및 누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형사사법체계에 처음으로 연류된 시점을 교정시설에의 첫 수용나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대라는 응답이 출소자는 7.4%에 불과한데 비해 출소준비자인 수용자들은 17.6%이며, 20대 역시 같은 경향을 보여 출소자와 출소준비자가 각 각 20.0%와 36.1%로 20대로 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된 경우가 출소준비자들이 출소자에 비하여 더 많다. 반면에 출소자들은 30대에서 50대가 다수(72.6%)를 차지하고 있어서 해당연령의 출소준비자 집단(46.3%)에 비하여 훨씬 높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들은 일반수용자에 해당하는 출소준비자들에 비하여 더 늦은 나이에 교정시설에의 수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수 있다.

전과 횟수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출소자 집단의 특성이 위험성이 측면에서 덜하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초범의 비율이 출소자와 출소준비자가 각 각 55.6%와 30.7%로 나타난데 비해, 4범 이상의 누범자는 출소자와 출소준비자가 각 각 12.7%와 30.3%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출소자는 초범이 많은데 비해 출소준비자인 일반수용자들은 4범 이상의 누범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표 1.16>의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을 수용 중 가족과의 접촉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과의 접견율은 두 집단 간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배우자와의 접견은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 1.16>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출소준비자의 경우 미혼자를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 기혼인 출소준비자의 절반가량(49.7%)이 배우자와 접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70.1%가 배우자와 접견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출소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출소자들은 출소준비자들에 비하여 교정시설에서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경우가 더 많았고, 이러한 관계가 연장되어 출소 후 성공적인 재결합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 가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출소 후 가족과의 성공적 재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

한편 교정시설에서의 교화프로그램 참여율을 대표적인 교화프로그램 12개에 대한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는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참여율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특별히 비교되는 항목은 출소자들은 가족접견실을 이용한 경험이 출소준비자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에 관한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들은 일반수용자에 해당하는 출소준비자에 비하여 형량, 재범횟수, 교정시설에의 처음 수용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 및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접견율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 간에 비슷한 수준이지만 배우자와의 접견율은 두 집단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혼 출소준비자 49.7%, 출소자 70.1%),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출소 후 재결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15> 범죄관련 기본사항

단위: 빈도(백분율)

| | 구 분 | 출소자 | 출소준비자 |
|---|---|---|---|
| 죄명 | 강도( 강도상해 등) | 8(4,3) | 16 (7.1) |
| |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 | 13(7.1) | 9 (4.0) |
| | 폭력 | 21(11.4) | 14 (6.2) |
| | 성폭력 (강간 포함) | 7(3.8) | 19 (8.5) |
| | 경제사범(사기, 횡령, 배임, 조세법위반 등) | 71(38.6) | 62 (27.7) |
| | 절도 (특수절도 등) | 25(13.6) | 47 (21.0) |
| | 약물 사범 | 4(2.2) | 15 (6.7) |
| | 교통사범 | 24(13.0) | 17 (7.6) |
| | 기타 (병역법, 무고, 뇌물죄 등) | 11(6.0) | 25 (11.2) |
| | 합 계 | 184(100.0) | 224(100.0) |
| 형량 (형량 평균 출소자: 1.95년 출소준비자: 1.97년) | 1년 미만 | 63(33.0) | 48(19.6) |
| | 1년-2년 미만 | 57(29.8) | 103(42.6) |
| | 2년-3년 미만 | 33(17.3) | 32(13.2) |
| | 3년-5년 미만 | 17(8.9) | 35(14.5) |
| | 5년-10년 미만 | 14(7.3) | 17(7.0) |
| | 10년 이상 | 7(3.7) | 7(2.9) |
| | 합 계 | 191(100.0) | 242(100.0) |
| 첫 수용된 나이 (출소자: 평균 36.68세 출소준비자: 평균 32.23세) | 10대 | 14(7.4) | 42(17.6) |
| | 20대 | 38(20.0) | 86(36.1) |
| | 30대 | 61(32.1) | 34(14.3) |
| | 40대 | 0(0.0) | 38(16.0) |
| | 50대 이상 | 77(40.5) | 38(16.0) |
| | 합계 | 190(100.0) | 238(100.0) |
| 전과횟수 (출소자: 평균 1.99회 출소준비자: 평균 2.99회) | 초범 | 105(55.6) | 74(30.7) |
| | 2회 | 39(20.6) | 55(22.8) |
| | 3회 | 21(11.1) | 39(16.2) |
| | 4회 이상 | 24(12.7) | 73(30.3) |
| | 합 계 | 189(100.0) | 241(100.0) |

<표 1.16> 수용 중 가족과 접촉

단위: 빈도(백분율)

| | 구 분 | 출소자 | 출소준비자 |
|---|---|---|---|
| 가족 접견자 (항목별 백분율, 출소자:194명 기준 출소준비자:245명 기준) | 어머니 접견함 | 67(34.5) | 90(36.7) |
| | 아버지 접견함 | 32(16.0) | 50(20.4) |
| | 배우자 접견함 | 136(70.1) | 80(32.7) |
| | 자녀 접견함 | 48(24.7) | 46(18.8) |
| | 형제(자매) 접견함 | 60(30.0) | 86(35.1) |
| | 조부모 접견함 | 1(0.5) | 2(0.8) |
| | 친척 접견함 | 20(10.3) | 40(16.3) |
| 참여한 프로그램 (항목별백분율, 출소자:161명기준 출소준비자:145명 기준) | 가족만남의 날 | 65(32.5) | 51(35.2) |
| | 가족만남의 집 | 11(6.8) | 15(10.3) |
| | 가족사랑캠프 | 3(1.9) | 12(8.3) |
| | 가족접견실 | 79(49.1) | 30(20.7) |
| | 귀휴 | 15(9.3) | 11(7.6) |
| | 사회견학 | 11(6.8) | 7(4.8) |
| | 사회봉사 | 27(16.8) | 26(17.9) |
| | 학과교육 | 7(4.3) | 19(13.1) |
| | 학사고시반 | 1(0.6) | 12(8.3) |
| | 직업훈련 | 36(22.4) | 52(35.9) |
| | 종교상담 | 51(31.7) | 37(25.5) |
| | 자매결연 | 20(12.4) | 42(29.0) |

## 5. 사회적응 과정의 특성(출소자와 출소준비자 비교)

사회적응과정의 특성은 출소 후 사회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적응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출소자들은 실재로 사회복귀 과정에서 경험한 일들을, 그리고 출소준비자들은 사회복귀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들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이에 관한 결과는 <표 1.17>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8가지변인들(가족과 재결합,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 사회의 냉대와 편견, 지인들과의 관계회복, 취업 및 경제적 문제, 주거의 확보, 건강의 문제, 재범의 유혹)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심하다와 약간있다를 합한 백분율을 기준으로 문제를 경험(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측정하였다. 높은 순서대로 출소자는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77.9%), 주거(거처)확보의 어려움(72.8%),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46.2%), 사회적 냉대와 편견(41.5%), 지인들과의 관계회복의 어려움(41.0%), 가족과의 재결합 과정의 어려움(39.7%), 건강상의 문제(39.5%), 재범의 유혹(20.0%)의 순이다. 출소준비자들의 경우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67.1%), 사회적 냉대와 편견(57.9%), 지인들과의 관계회복의 어려움(57.5%),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50.2%), 건강상의 문제(45.2%), 주거확보의 어려움(40.4%), 가족과의 재결합 과정의 어려움(36.5%), 재범의 유혹으로 인한 어려움(16.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18>).

주목할 것은 출소준비자의 우려와 같이 사회적응과정에서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임을 출소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건강상 문제와 재범유혹에 관한 문제는 두 집단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사회적 냉대와 편견, 그리고 변화된 사회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역시 출소자와 출소준비자 모두 상위권에서 우려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안정된 주거지의 확보의 순위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커서 출소자들은 어려운 문제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비해 출소 준비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지원방안에 함의하는 바는 출소 후 사회적응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두 집단 모두 가장 우선순위로 지적하고 있는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마련, 그리고 비교적 상위의 순서에 위치해 있는 변화된 사회에 적응을 위한 지원, 안

정된 거처확보를 위한 지원,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편견을 교정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출소 후 재범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17>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단위: 빈도(백분율), 사례수: 출소자(195명), 출소준비자(241명)

| | 구 분 | 출소자(경험) | 출소준비자(예상) |
|---|---|---|---|
| 가족과 재결합 과정의 어려움 | 매우 심했음(심할 것임) | 9(4.1) | 13(5.4) |
| | 약간 있었음(약간 있을 것임) | 69(35.6) | 75(31.1) |
| | 거의 없었음(거의 없을 것임) | 57(29.4) | 57(23.7) |
| | 전혀 없었음(전혀 없을 것임) | 60(30.9) | 96(39.8) |
| 사회변화 대한 적응의 어려움 | 매우 심했음(심할 것임) | 14(7.2) | 15(6.2) |
| | 약간 있었음(약간 있을 것임) | 76(39.0) | 106(44.0) |
| | 거의 없었음(거의 없을 것임) | 78(40.0) | 56(23.2) |
| | 전혀 없었음(전혀 없을 것임) | 27(13.8) | 64(26.6) |
| 사회적 냉대와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 매우 심했음(심할 것임) | 8(4.1) | 29(12.0) |
| | 약간 있었음(약간 있을 것임) | 73(37.4) | 111(45.9) |
| | 거의 없었음(거의 없을 것임) | 83(42.6) | 52(21.9) |
| | 전혀 없었음(전혀 없을 것임) | 31(15.9) | 49(20.2) |
| 지인들과 관계 회복의 어려움 | 매우 심했음(심할 것임) | 11(5.6) | 18(7.5) |
| | 약간 있었음(약간 있을 것임) | 69(35.4) | 120(50.0) |
| | 거의 없었음(거의 없을 것임) | 84(43.1) | 49(20.0) |
| | 전혀 없었음(전혀 없을 것임) | 31(15.9) | 54(22.5) |
|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 | 매우 심했음(심할 것임) | 35(17.9) | 58(23.8) |
| | 약간 있었음(약간 있을 것임) | 117(60.0) | 104(43.3) |
| | 거의 없었음(거의 없을 것임) | 30(15.4) | 37(15.4) |
| | 전혀 없었음(전혀 없을 것임) | 13(6.7) | 42(17.5) |
| 거처(주거)확보의 어려움 | 매우 심했음(심할 것임) | 40(20.5) | 37(15.4) |
| | 약간 있었음(약간 있을 것임) | 102(52.3) | 84(35.0) |
| | 거의 없었음(거의 없을 것임) | 42(21.5) | 57(23.8) |
| | 전혀 없었음(전혀 없을 것임) | 11(5.6) | 62(25.8) |
| 건강상의 어려움 | 매우 심했음(심할 것임) | 8(4.1) | 13(5.4) |
| | 약간 있었음(약간 있을 것임) | 69(35.4) | 96(39.8) |
| | 거의 없었음(거의 없을 것임) | 84(43.1) | 74(30.7) |
| | 전혀 없었음(전혀 없을 것임) | 34(17.4) | 58(24.1) |
| 재범의 유혹으로 인한 어려움 | 매우 심했음(심할 것임) | 3(1.5) | 4(1.7) |
| | 약간 있었음(약간 있을 것임) | 36(18.5) | 35(14.5) |
| | 거의 없었음(거의 없을 것임) | 66(33.8) | 64(26.6) |
| | 전혀 없었음(전혀 없을 것임) | 90(46.2) | 138(57.3) |

<표 1.18>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순위

| 순위 | 출소자 | 출소준비자 |
|---|---|---|
| 1순위 |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 |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 |
| 2순위 | 주거확보의 어려움 | 사회적 냉대와 편견 |
| 3순위 |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 지인들과의 관계회복의 어려움 |
| 4순위 | 사회적 냉대와 편견, |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
| 5순위 | 지인들과의 관계회복의 어려움 | 건강상의 문제 |
| 6순위 | 가족과의 재결합 과정의 어려움 | 주거확보의 어려움 |
| 7순위 | 건강상의 문제 | 가족과의 재결합 과정의 어려움 |
| 8순위 | 재범의 유혹 | 재범의 유혹으로 인한 어려움 |

나.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지지자원

출소자 및 출소준비자들이 인식한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에 대한 사항은 <표 1.19>와 <표 1.20>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출소자들은 일반 수용자 표본인 출소준비자들에 비하여 지지자원의 모든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한편, 여러 지지자원의 유형 중 정서적 지원 가능성을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한 것과, 경제적 지원과 생활지원에 관해서는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점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하였다. 반면에 주된 지원자의 유형에 대해 두 집단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출소자들은 주된 지원자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출소준비자들은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에 대한 의존도에 비하여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소자의 경우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원자의 유형으로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생활지원 모두 배우자로 응답하고 있으며, 출소준비자들은 정서적 지원. 취업 및 학업알선과 지원.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모두 친구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부모와 형제자매에 대한 기대는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소자들의 경우 기혼자가 다수이고 가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이며, 출소준비자들의 경우 가정의 해체율이 높고 가족관계 또는 출소자들에 비하여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족 보다는 친구들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의 교제 및 그들로부터의 지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교정시설 출소 후 가족복원을 통한 가족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출소자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출소 후 사회정착과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

구에 대한 의존이 재범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소자 가족복원 및 가족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역시 출소자 적응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표 1.19> 출소자들이 인식한 지지자원

단위: 빈도(백분율), 항목별 백분율산출

|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친구 | 이웃 | 종교인 | 복지사 등 |
|---|---|---|---|---|---|---|---|---|
| 경제적지원(돈,물질 등) | 105(55.2) | 22(11.6) | 46(24.2) | 44(23.2) | 36(18.9) | 9(4.7) | 11(5.8) | 33(17.4) |
| 정서적지원(위로,이해,조언 등) | 131(68.8) | 67(40.0) | 74(39.2) | 66(35.0) | 70(37.0) | 20(10.2) | 30(15.4) | 33(17.4) |
| 생활지원(주거,식사,돌봄 등) | 119(62.6) | 24(12.8) | 51(27.0) | 33(17.5) | 21(11.1) | 13(6.9) | 9(4.5) | 49(26.0) |
| 취업,학업 알선 및 지원 | 42(22.8) | 9(4.6) | 23(11.5) | 24(12.5) | 53(28.0) | 19(9.5) | 10(5.0) | 81(42.9) |
| 문제해결 관련정보 제공 | 68(36.0) | 16(8.5) | 30(15.4) | 41(21.5) | 75(39.5) | 10(5.2) | 12(6.0) | 80(42.0) |

※ 응답자 190명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백분율을 산출함.

<표 1.20> 출소준비자들이 인식한 지지자원

단위: 빈도(백분율), 항목별 백분율 산출

|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 자매 | 친구 | 이웃 | 종교인 | 복지사 등 |
|---|---|---|---|---|---|---|---|---|
| 경제적지원(돈,물질 등) | 67(31.5) | 24(11.2) | 79(36.9) | 80(37.4) | 59(27.8) | 17(8.0) | 13(6.1) | 26(12.2) |
| 정서적지원(위로,이해,조언 등) | 73(28.7) | 44(21.3) | 93(44.9) | 90(43.7) | 95(46.1) | 25(12.1) | 37(17.9) | 23(11.2) |
| 생활지원(주거,식사,돌봄 등) | 66(31.6) | 24(11.5) | 78(37.3) | 69(33.0) | 51(24.5) | 18(8.7) | 18(8.7) | 26(12.4) |
| 취업,학업 알선 및 지원 | 32(15.6) | 10(4.9) | 44(21.5) | 50(24.4) | 67(32.7) | 27(13.2) | 17(8.3) | 32(15.5) |
| 문제해결 관련정보 제공 | 47(22.8) | 16(7.8) | 50(24.3) | 67(32.5) | 73(35.6) | 26(12.7) | 19(9.2) | 34(16.4) |

### 나. 가족희망센터 프로그램 욕구

출소자 가족복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들의 경우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에서 가족희망센터를 인지하고 있지만 출소준비자들은 3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표 1.21>), 사업의 확장 및 서비스 대상자의 적극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표 1.21> 가족희망센터 인지여부

단위: 빈도(백분율)

| | 출소자 | 출소준비자 |
|---|---|---|
| 가족희망센터 알고 있음 | 94(53.7) | 71(35.7) |
| 모르고 있음 | 81(46.3) | 128(64.3) |
| 합 계 | 175(100.0) | 199(100.0) |

<표 1.22>에서 제시한 가족희망센터의 프로그램 참여욕구를 참여의사 매우 높음과 참여의사 조금있음을 합한 백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참여의사가 높은 순서를 표로 제시하였다(<표 1.23>). 출소자의 경우 이미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또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한 까닭에 이에 관한 프로그램의 욕구는 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욕구는 출소자들이 출소준비자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의하는 바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사회적 지원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출소자들을 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 및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결고리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의 용이성을 높을 수 있으므로 공단과 연계된 출소자들을 프로그램 운용의 일차적인 대상자로 하고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 가는 것이 가족복원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적절할 것이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가 높지 않다는 것 또한 주목할 사항이다. 참여욕구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조차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출소 후에는 어떤 형태의 형사사법체계와도 연계되는 것을 꺼리는 출소자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가족희망센터를 중심으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출소자들의 참여욕구를 자극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모색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참여욕구를 순위별로 볼 때, 출소자와 출소준비자 간에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의 출발점은 인구학적으로 출소자들은 자녀와 배우자로 구성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데 비해 출소준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기혼자들의 수가 적고 기혼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미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출소자들은 자녀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출소준비자들은 가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참여욕구가 낮고 사회적응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모두 비교적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단위의 집단활동 프로그램과 가족상담 프로그램이며, 두 집단 모두 욕구가 낮은 프로그램으로는 출소자와 가족의 자조집단과 알콜치료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가족희망센터 프로그램 참여욕구

단위: 빈도(백분율)

| 유형 | 구분 | 참여의사 매우 높음 | 참여의사 조금있음 | 참여의사 거의없음 | 참여의사 전혀없음 | 합 계 |
|---|---|---|---|---|---|---|
| 가족 상담치료 | 출소자 | 40(21.7) | 56(30.4) | 53(28.8) | 35(19.0) | 184(100.0) |
| | 출소준비자 | 36(17.7) | 59(29.1) | 43(21.2) | 65(32.0) | 203(100.0) |
| 양육상담 | 출소자 | 27(15.1) | 59(33.0) | 48(26.8) | 45(25.1) | 179(100.0) |
| | 출소준비자 | 31(17.0) | 25(13.7) | 43(23.6) | 83(45.6) | 182(100.0) |
| 자녀상담 | 출소자 | 23(13.1) | 47(26.7) | 52(29.5) | 54(30.7) | 176(100.0) |
| | 출소준비자 | 28(15.6) | 22(12.3) | 42(23.5) | 87(48.6) | 179(100.0) |
| 자녀 학습지원 | 출소자 | 33(19.1) | 42(23.5) | 42(24.3) | 46(27.7) | 173(100.0) |
| | 출소준비자 | 33(18.5) | 23(12.9) | 41(23.0) | 81(45.5) | 178(100.0) |
| 가족단위 활동 | 출소자 | 49(27.1) | 57(31.5) | 38(21.0) | 37(20.4) | 181(100.0) |
| | 출소준비자 | 41(21.9) | 48(25.7) | 32(17.1) | 66(35.3) | 187(100.0) |
| 가족 집단상담 | 출소자 | 30(16.9) | 44(24.9) | 56(31.6) | 47(26.6) | 177(100.0) |
| | 출소준비자 | 24(13.0) | 42(22.7) | 45(24.3) | 74(40.0) | 185(100.0) |
| 부모교육 | 출소자 | 24(13.7) | 50(28.6) | 53(30.3) | 48(27.4) | 175(100.0) |
| | 출소준비자 | 33(18.0) | 26(14.2) | 45(24.6) | 79(43.2) | 183(100.0) |
| 알콜치료 | 출소자 | 11(6.3) | 20(11.5) | 61(35.1) | 82(47.1) | 174(100.0) |
| | 출소준비자 | 25(13.4) | 26(14.0) | 38(20.4) | 97(52.2) | 186(100.0) |
| 취업지원 | 출소자 | - | - | - | - | - |
| | 출소준비자 | 57(29.8) | 44(23.0) | 28(14.7) | 62(32.5) | 191(100.0) |
| 주거지원 | 출소자 | - | - | - | - | - |
| | 출소준비자 | 47(25.4) | 33(17.8) | 36(19.5) | 69(37.3) | 185(100.0) |
| 자조집단 | 출소자 | 9(5.0) | 23(12.8) | 68(37.8) | 80(44.4) | 180(100.0) |
| | 출소준비자 | 28(15.4) | 24(13.2) | 44(24.2) | 86(47.3) | 182(100.0) |
| 사회적응 지원 | 출소자 | 14(7.8) | 55(30.6) | 60(33.3) | 51(28.3) | 180(100.0) |
| | 출소준비자 | 40(21.5) | 47(25.3) | 34(18.3) | 65(34.9) | 186(100.0) |

<표 1.23> 프로그램 참여욕구 우선순위

| 순위 | 출소자 | 출소준비자 |
|---|---|---|
| 최우선<br>(출소준비자 해당) | - | 취업지원 프로그램(52.8) |
| 1순위 |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58.6%) |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47.6%) |
| 2순위 | 가족상담 치료(52.1%) | 가족상담 치료(46.8%) |
| 3순위 | 자녀양육 상담 프로그램(48.1%) |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46.8%) |
| 출소준비자 해당 | - | 주거지원 프로그램(43.2%) |
| 4순위 | 자녀학습지원(42.6%) | 가족 집단상담(35.7%) |
| 5순위 | 부모교육 프로그램(42.3%) | 자녀 학습지원(31.4%) |
| 6순위 | 가족 집단상담(41.8%) | 부모교육 프로그램(32.2%) |
| 7순위 | 자녀상담 프로그램(39.8%) | 출소자와 가족 자조집단(28.6%) |
| 8순위 |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38.4%) | 자녀양육 상담 프로그램(27.9%) |
| 9순위 | 알콜치료 프로그램(17.8%) | 자녀상담(27.9%) |
| 10순위 | 출소자와 가족 자조집단(17.8%) | 알콜치료 프로그램(27.4%) |

# Ⅴ. 제언

출소자 및 출소 준비 중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정실태와 서비스 욕구를 조사한 1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희망센터」의 사업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가정복원사업 모델과 「가족희망센터」 역할에 관한 제언

### 가.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의 기본 방향

1)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은 출소자 사회복귀 시책들(PRI: Prisoner Re-Entry Initiatives)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이라는 범죄예방정책의 전체적인 틀 내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출소자 사회복귀 시책의 주요 내용은 취업(고용) 촉진, 주거안정, 가족 과 재결합 촉진이 주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가족과의 재결합에 관한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및 경제적 지원프로그램, 사회변화 에 대한 적응지원과 재교육, 안정된 거처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우리사회의 가치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소자와 그들의 가족을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보았을 때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social work) 가치, 출소자를 사회에 해악을 끼친 집단으로 보았을 때 응징(retribution)의 가치, 출소자와 가족들을 가족희망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로 보았을 때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적 이해(self-interest)를 중시하는 가치, 그리고 가족을 출소자 재범예방에 관한 지지 자원(resources)으로 접근하는 가치를 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치갈등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논리는 출소자 가족을 자원으로서 접근하는 가치일 것으로 본다. 출소자의 재범율을 낮춤으로써 사회 안정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가족의 역할과 가족자원이 가지는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출소자 가족보호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고 정치적지지 또한 얻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3)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재범예방이며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은 이의 달성을 위한 하위목표에 위치한다. 따라서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이 범죄통제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재범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하위목표로 규정할 수 있다.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재범예방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목표는 가족자원의 보호이어야 할 것이다. 출소자 가족의 보호와 이를 위한 지원사업은 출소자 재범예방이라는 범죄통제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할 때 사업의 정당성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가정을 복원하는 것은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한 강력한 자원이고 이를 통해 재범예방과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용자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사회적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받을 권리를 국가에 의해 강제로 박탈당하고 다양한 위기에 처하게 된 취약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및 인도적 측면에 출발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박선영·신연희, 2012: 152).

### 나.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의 운용체계와 「가족희망센터」의 역할

1) 출소자 가족자원 보호체계의 구조화

가족자원 보호는 출소자 가족보호라는 목적 하에 사회 여러 분야별로 기능을 결집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과 정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의 기능을 구조화하는 역할을 「가족희망센터」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중앙 부처, 공법인, 민간 비영리 기관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용자원을 연계하고 동원하는 일의 중심에 「가족희망센터」가 위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희망센터」는 범정부와 민간 비영리 기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결집하여 네트워크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출소자들의 생애경험 단계의 연계화

출소자들의 가정을 복원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는 일이 아니며, 더 나아가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시점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이는 본 조사뿐 아니라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정영진·신연희, 2005; 전영실 외, 2007). 가족과의 성공적인 재결합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까지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가족희망센터」는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수용자 가정,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자원, 지역사회와 출소자 가정을 연계하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다. 프로그램 제공 모델

1) 서비스 공급중심

수용자 혹은 출소자들의 가정복원은 크게 가족중심, 지역사회중심, 가족희망센터 중심(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가족희망센터는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장기간의 분리로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불화를 겪고 있는 출소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설치된 공공기관의 조직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접근방식이 혼용되어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시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 운영방식 및 효과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가족중심”의 경우 많고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해 보이지만 수요자와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들은 사회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사회복지 수요자와는 달리 접근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정부의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는 가정을 중심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중심”의 경우 가족들의 생활기반이 지역사회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자원을 결집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장소적으로 결집되어 있거나 실체가 있는 조직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족들의 지원프로그램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설사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자원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평가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수용자 및 출소자 가정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희망센터중심”의 경우 신뢰성있는 공공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수준의 자원(범정부, 지역사회, 개별 가정 등) 을 결집하는 것이 용이하다. 정부의 하위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지자원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인 것이 분명하다. 다만, 공급자중심 내지 관료제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함에 따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적응력이 뒤떨어지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권력과 자원을 가진 「가족희망센터」가 시혜적 관점에서 출소자와 가족을 접근한다면 정작 프로그램의 존재근거가 되는 이들은 주변적 존재로 머물거나 무력해 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과정에서 프로그램 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네트워크 중심 서비스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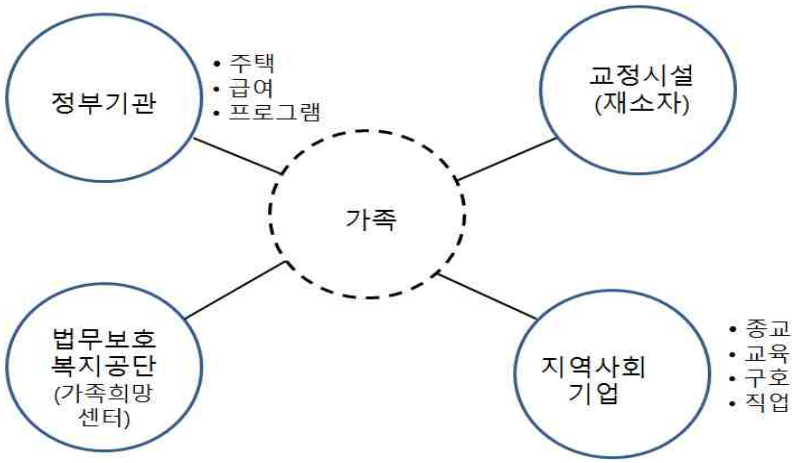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각의 접근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결집시키는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의 서비스공급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중심의 접근은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 대상이 되는 가족은 매우 추상적인 실체라 할 수 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결합된 가족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추상적으로 결합된 가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자원 및 프로그램 당사자로서의 가족의 개념을 혈연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지지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가족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사업은 정책 네트워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접근 모형을 <그림 1.43>에 제시하였다. 정책 네트워크 모델에서 볼 때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은 가족을 표적으로 하여 자원을 가진 여러 기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배분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된다. 법무부를 위시한 정부기관들, 교정시설, 지역사회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자원들, 그리고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센터」가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에 대해 각각의 자원을 서비스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정책네트워크 방식으로 보면 첫째,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지지자원이 될 수 있다. 둘째, 교정기관들은 수용자가 가족관계를 유지 및 가족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셋째,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가족희망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부기관, 교정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끝으로 지역사회 및 기업의 경우에는 수용자 및 출소자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종교, 교육, 구호, 원호, 정서적 지지 그리고 일자리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단과 가족, 교정기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제공자가 될 것이다.




<그림 1.43> 출소자 가족복원을 위한 정책 넷트워크

## 2. 조사결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의 함의

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들이 출소자 가정복원에 미친 성과: 긍정적으로 평가됨

출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들이 출소자 가정복원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출소자들을 일반수용자들과 비교한 본 조사 결과 출소자들은 일반 수용자들에 비하여 가정 및 가족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와 같은 가정의 구조적 안정성, 가족관계의 질적인 건강성, 그리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환

경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1.13><표 1.14> 참조). 따라서 출소자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출소자 가족성원들의 복리보장이라는 현실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문제 예방과 범죄 대물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희망센터」의 사업은 확장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 대상자들의 특성: 위험성이 덜한 출소자들을 위주로 지원되고 있음.

법무보호복지공당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일반 수용자들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거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로는 첫째, 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사대상 출소자들은 출소를 준비하고 있는 수용자들에 비하여 적은 형량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로 죄질이 가벼운 사람들이 공단의 지원자로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5>. 둘째, 첫 수용나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출소자들은 30대 이후가 다수(72.6%)인 반면 출소준비자인 일반수용자들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53.7%). 셋째, 전과 횟수 역시 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들은 다수가 초범인데 비해, 일반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출소준비자들은 초범자의 비율이 적은 반면에, 누범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지원대상자는 재범위험성이 적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단이 사업을 다양화 및 확장하고자 한다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출소자 가정복원의 범위: 가족과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사회복귀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교정시설 단계로 확장되어야 할 것임.

본 조사에 따르면, 본 조사의 출소준비자 표본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수용자 10명 중 약 4명 정도는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등 가족과의 연계가 부정적인 상태였고, 기혼수용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와 이혼하여 가정이 해체된 상태로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었으며, 가족 대상자별로 관계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한 수준이고, 출소 후 가족과의 동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가 10명 중 4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교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였을 때 가족과의 재결합과 가정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출소 전 단계인 교정시설에서 이미 출소 후 가족과의 재결합을 어렵게 만드

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용할 출소자 가정복원 사업은 출소자와 그 가족을 사업 대상자로 하는 사업을 넘어서서 교정시설 단계로 범위를 확장하여 수용자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출소자 가정복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라.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이 출소 후 가족복원의 효과성 제고의 주요 요인임

출소자들은 출소준비자들에 비하여 수용된 동안 배우자로부터 접견을 통한 접촉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용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가 출소 후에도 연장되어 출소 후 재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소자 가정복원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가족유대 및 가족접촉 활성화 방안과 함께 모색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 가족과의 접촉활성화 및 가족관계 유지에 관한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수용자 가정,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출소자 가정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마. 프로그램 지원 방안

1) 출소자 가정복원 및 재범예방을 위한 역점사업의 구성: 취업 및 경제적 지원프로그램,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지원을 위한 재교육, 안정된 거처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을 역점사업으로 구성

조사결과 사회적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출소준비자) 또는 경험한 어려움(출소자)으로 두 집단 모두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두 집단 모두에게서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상의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와 편견에 대한 대안을 마련에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1.17>, <표 1.18> 참조). 아울러 안정된 거처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출소자들은 경험을 토대로 보고하고 있지만 출소준비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출소 후 불안정한 거처가 재범을 유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출소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가족과 재결합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취업 및 경제적 지원프로그램”,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지원을 위한 재교육", "안정된 거처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법무부나 법무공단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중앙 부처, 공법인, 민간 비영리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

2)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우선적 제공: 가족단위의 집단 활동과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우선적 제공

가족희망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의 유형별 참여욕구를 기준으로 볼 때 출소자와 출소준비자 모두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단위의 집단활동 프로그램과 가족상담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두 집단 모두 욕구가 낮은 프로그램으로는 출소자와 가족의 자조집단과 알콜 치료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장래 참여의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래 이용욕구가 높은 가족단위의 집단 활동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을 위해 가족희망센터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사회의 전문기관 및 자원들과의 연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가정의 복원과 가족자원의 활용을 통한 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가족은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라는 점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 출소 후 가족과 재결합하고 사회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출소자들은 일반 수용자 표본인 출소준비자들에 비하여 지지자원의 모든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또한 우선적인 지지 자원으로 출소자들은 자신들의 배우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출소준비자들은 친구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1.19>, <표 1.20>). 따라서 출소 후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가족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출소 후 친구들과의 교제 및 그들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게 할 것이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회정착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출소자 표본과 출소 후 재범에의 노출가능성이 높은 수용자 표본들을 지지자원의 측면에서 비교할 때, 가족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출소자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대

11)실재로 미국에서는 출소자 재범예방과 사회정착을 원조하기 위한 사회복귀 시책(Prisoner Re-entry Initiatives)은 가석방국, 고용노동부, 주택부, 가족부 등 범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소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Petersilia, 2000; Travis et al., 2001).

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프로그램 대상자의 표적 집단은 법무부 및 관련기관과 연계된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조사결과 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출소자들이 출소준비자인 일반 수용자들에 비하여 가족희망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두 집단 모두 「가족희망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소자 가정복원 프로그램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으며 동시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프로그램 제공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 역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희망센터」의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전략은 법무부 및 공단과 연결고리가 있는 집단을 프로그램 운용의 일차적인 대상자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가족희망센터」의 인지도 향상 및 사업 홍보

출소자 가정복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가 높지 않아 참여욕구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조차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희망센터」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 「가족희망 센터」 및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함께 다루어진다면 출소자 및 가족들의 참여욕구를 자극하고 프로그램의 운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승만·신연희(2005),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남상철·신연희(2002), “재소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정책의 방향”, 「교정연구」, 제 15호, pp. 99-124.

박선영·신연희(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주연(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법무부(2013, 2014). 「가족사랑캠프 평가보고서」,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미발간보고서.

법무연수원(2013), 「2012 범죄백서」, 법무부 법무연수원.

신연희(2002), “기혼여자재소자에 관한 연구: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신연희(2008), 출소 후 재범예방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 73호: 191-213.

신연희 (2012), 수용자 위기가족의 문제와 지원 방안: 탄력성 이론의 접근, 「한국범죄학」, 제6권2호, pp. 123-156

신연희 (2013), 미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내용분석: 길버트와 테렐 (Gilbert & Terrell)의 정책내용 분석틀의 적용, 교정담론, 제 8권 2호, pp. 225-258.

전영실·신연희·김영식(2007),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부.

전영실·신연희(2009),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 45호, pp. 279-303.

정영진·신연희(2006),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dalist-Estrin, A.(2003) "Responding to Children and Families of Prisoners: A Community Guide". Family and Corrections Network (http://www.fcnetwork.org/cpl/cplindex.html).

Allard, P. & Lu, L., *Rebuilding Families, Reclaiming Lives: State Obligations to Children in Foster Care and Their Incarcerated Parents*. New York, NY: Brennan Cen er for Justice at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06.

Bilchik, S., (2007). "Mentoring: A Promising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Prisoners". Research in Actions, Issue 10.Kaplan, Cassell, & Gore, 1977

Hairston, C. F.(1991), “Family Ties During Imprisonment: Important to Whom and For What?”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8(1), 87-104.

Mills, A. & Codd, H.(2008) "Prisoners' Families and Offender Management: Mobilizing Social Capital". *Probation Journal*. 55. 9-24.

Mustin, J.(1987), "The Family: A Critical Factor for Corrections", Family and Corrections Network(http://www.fcnetwork.org/cpl/cplindex.html).

Oregon Department of Corrections(2002).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roject.* Oregon Department of Corrections.

Petersilia, J. (2000), *Challenges of Prisoner Reentry and Parole i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California Policy Research Center.

Travis, J., Solomon, A. J. & Waul, M . (2001), *From Prison to Home: The Dimensions and Consequences of Prisoner Reentry*,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Visher, C., Vigne, N. & Travis, J. (2004), *Returning Home: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of Prisoner Reentry: Maryland Pilot Study*. Urban Institute Justice Policy Center.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Wolff, N. & Draine, J. (2004), "Dynamics of Social Capital of Prisoners and Community Reentry: Ties That Bind?", *Journal of Correctional Health Care*. Vol. (10): 457-490.

<별첨 1>: **<지역사회용: 출소자용>**

# 가정 실태와 서비스 욕구 조사

## 인 사 말 씀

안녕하세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복원센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는 여러분들 가정의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며,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을 원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지는 총 6쪽이니 문항마다 가능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9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복원센터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연구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신 연희 교수(031-467-8034)
▶주관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복원센터 강지수 계장(070-8708-1569)

## I. 일반적 사항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____① 주거지원자 ____② 창업지원자 ___③ 모두 해당

2. 거주하는 **지역**을 적어주세요. ( )시/ 군

3. 귀하의 **성별**은? ____① 남 ____② 여

4. 귀하의 현재 **나이**는? 만 ( ) 세

5. 귀하의 **학력**을 적어주세요.
____①초등학교졸업(중퇴포함) ____②중학교 졸업(중퇴포함) ____③고등학교 중퇴
____④고등학교 졸업 ____⑤대학교 졸업(중퇴포함) ____⑥대학원 이상

6.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____①미혼 ____②법률혼 ____③이혼 ____④사실상 부부(법적이혼상태)
____⑤사별 ____⑥ 사실혼

7.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____① 종교가 있음 _____② 종교가 없음

8.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① 매우건강하다 ____② 건강한편이다 ____③건강이 나쁜 편이다 ____④건강이 매우 나쁘다

9.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____①직업없음 ____②일용직 ____③비정규직 ____④정규직 ____⑤자영업 ____⑥기타( )

10. 귀하 가정의 **월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 귀하의 수입 + 배우자 수입 + 기타 지원금)
____① 100만원 미만 ____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____③ 2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 ____④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____⑤ 500만원 이상 ____⑥ 기타( )

11.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입니까?
_____①일반수급자 _____②조건부수급자 ___③동거인 중 수급자가 있음 ____④수급자가 아님

12. 귀하께서 가입하신 **사회보험(국민연금 등) 모두에 "O"** 표시해 주세요.
_____①국민연금 _____②건강보험 ___③산재보험 ____④고용보험

13. 귀하 가정의 **총 부채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 )만원

## II. 가정생활

1.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사람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___①자녀 ___②배우자 ___③부모님 ___④형제,자매 ___⑤조부모님 ___⑥기타 ___⑦혼자삼

※ **배우자가 있는 분**만 응답하세요.

1.1 배우자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 )
1.2 배우자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___①초등학교졸업(중퇴포함) ___②중학교 졸업(중퇴포함) ___③고등학교 중퇴
___④고등학교 졸업 ___⑤대학교 졸업(중퇴포함) ___⑥대학원 이상
1.3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____①매우좋음 ____②좋은 편임
____③나쁜 편임 ____④매우 나쁨

2. 귀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_____①자녀 없음 (☞ **7번 으로** 가세요)　　_____②자녀 있음, 있다면 **자녀수** (　　) 명

3.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나이**를 모두 적어주세요.

**자녀나이:** (　_____ 세,　　_____ 세,　　_____ 세,　　_____ 세)

3.1 **자녀 양육 및 보육비로 매월** 얼마 정도씩 듭니까?　약 (　　)만원

4. 자녀들이 귀하가 과거에 수용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_____①알고 있음　　_____②모르고 있음

5. 귀하가 수용되어 있던 동안 **어린 자녀들**은 누가 돌보았습니까?

____①자녀의 엄마　　____②자녀의 조부모　　____③자녀의 아빠

____④자녀의 친척　　____⑤자녀들끼리 지냄　　____⑥시설　　_____⑦기타

6. 귀하 **자녀(들)** 중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느 정도나 하는지 적절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 | 정말 그렇다 | 비교적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 | 전혀 그렇지않음 |
|---|---|---|---|---|
| 1)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사람들을 피하고 만나기를 두려워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신경성으로 배나 머리 등이 아프다고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불면증, 우울증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6)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낮다 | ④ | ③ | ② | ① |
| 7)학교를 결석하거나 무단이탈한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8)학교를 중퇴하였거나 하려고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9)어른에게 반항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0)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싸움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가출을 하기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2)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3)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III. 지난 생활

1. 귀하께서는 교정시설에서 언제 **가정으로 복귀**하셨습니까?　(　　)년　(　　)월

2. 어떤 이유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습니까? 주된 **죄명**을 적어주세요. (　　)

3. 당시에 **형량**을 적어주세요.　(　　)년　(　　)월

4. 귀하께서는 교정시설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수용**되었습니까?　총 (　　)번

5. 귀하께서 최초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만 (　　)세

6. 귀하가 **출소하던 해**에 **가족과 접견**은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___①거의 매일　　___②1주일에 2-3회　　___③1주일에 한번　　___④2주에 한번

___⑤한 달에 한번 ___⑥두 달에 한번 ___⑦6개월 동안 1-2회 정도 ___⑧전혀 안 함

7. 출소하던 해에 **접견 온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사항 **모두에 "O" 표시**해 주세요.

___①어머니 ___②아버지 ___③배우자 ___④자녀
___⑤형제( 또는 자매) ___⑥조부모님 ___⑦친척 ___⑧가족과 접견한적 없음

8. 귀하께서 **교정시설에서 참여하였던 프로그램 모두에 " O " 표시**해 주세요.

___①가족만남의 날 ___②가족만남의 집 ___③가족사랑캠프
___④가족접견실 접견 ___⑤귀휴 ___⑥사회견학
___⑦사회봉사 ___⑧학과교육(검정고시반) ___⑨학사고시반
___⑩직업훈련 (*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취득하신 **기능자격 개수** _____ **개**)
___⑪종교상담 ___⑫자매결연

## IV. 현재의 생활

1. 귀하께서는 **사회복귀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구체적인 예**도 적어주세요.

1) 가족과 재결합과정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했다 ___②약간 있었다 ___③거의 없었다 ___④전혀 없었다

☞① 혹은 ②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 예: _____

2) 변화된 사회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했다 ___②약간 있었다 ___③거의 없었다 ___④전혀 없었다

☞① 혹은 ②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 예: _____

3) 사회적 냉대와 편견

___①매우 심했다 ___②약간 있었다 ___③거의 없었다 ___④전혀 없었다

☞① 혹은 ②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 예: _____

4)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했다 ___②약간 있었다 ___③거의 없었다 ___④전혀 없었다

☞① 혹은 ②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 예: _____

5)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

___①매우 심했다 ___②약간 있었다 ___③거의 없었다 ___④전혀 없었다

☞① 혹은 ②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 예: _____

6) 안정된 주거(거처) 확보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했다 ___②약간 있었다 ___③거의 없었다 ___④전혀 없었다

☞① 혹은 ②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 예: _____

7) 건강상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했다 ___②약간 있었다 ___③거의 없었다 ___④전혀 없었다

☞① 혹은 ②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 예:

_____

8) 재범의 유혹

___①매우 심했다 ___②약간 있었다 ___③거의 없었다 ___④전혀 없었다

☞① 혹은 ②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 예:

_____

2. **사회복귀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 | 정말 그렇다 | 비교적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 | 전혀 그렇지않음 |
|---|---|---|---|---|
| 1)가족들은 나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 ④ | ③ | ② | ① |
| 2)가족과의 결합이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 | ④ | ③ | ② | ① |
| 3)우리 가족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내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4)우리 가족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5)가족은 나를 포기했다 | ④ | ③ | ② | ① |
| 6)집에 돌아왔지만 좋은 일이 있지도 않다 | ④ | ③ | ② | ① |
| 7)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가족들이 도와주고 있다 | ④ | ③ | ② | `① |

3. 다음 사항들에 대해 귀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 O " , 아니면 "X" 표시해 주세요.

|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친구 | 이웃 | 종교인 | 복지사 등 |
|---|---|---|---|---|---|---|---|---|
| 1) 경제적 지원(돈, 물질 등)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 2) 정서적 지원(위로, 이해, 조언 등)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 3) 생활지원(주거, 식사, 돌봄 등)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 4) 취업, 학업 알선 및 지원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 5)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제공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 V. 사회적 지원

1. 귀하께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복원센터**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___①알고 있음 ___②모르고 있음

2. 가족희망복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면, 귀하(또는 귀하가족)의 **참여의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 프로그램 유형 | 매우 높음 | 조금 있음 | 거의 없음 | 전혀없음 |
|---|---|---|---|---|
| 1)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 | | |
| 2)자녀양육 상담 | | | | |
| 3)자녀대상 상담 및 치료 | | | | |
| 4)자녀학습지원(대학생 멘토링 등) | | | | |
| 5)가족단위 활동들(가족캠프, 숲체험 등) | | | | |
| 6)가족집단상담 | | | | |
| 7)부모교육 프로그램 | | | | |
| 8)알콜치료 프로그램 | | | | |
| 9)출소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 | | | | |
| 10)변화된 사회에 대한 적응훈련 | | | | |

3. 다음은 **가족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 **우리가족은----**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가족들이 협력해서 일을 할 때 더 잘된다고 믿는다. | ④ | ③ | ② | ① |
| 2)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후관계를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④ | ③ | ② | ① |
| 4)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이유와 해결책을 곰곰히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④ | ③ | ② | ① |
| 6)어려운 일은 잠재력과 힘을 발휘해서 서로 격려하여 극복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적극적으로 잘하려는 의지로 밀고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8)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 ④ | ③ | ② | ① |
| 9)보다 더 큰 가치와 목표를 지향해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10)가족 간에 서로 믿음과 지지로 위로해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11)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2)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재조직하여 변화를 수용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4)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돕는다. | ④ | ③ | ② | ① |
| 15)서로 돌봐주고 이끌어 주는 지도자나 협력자 역할을 서로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6)상호 협력하고 같이 일하고 헌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7)가족들 각자의 욕구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8)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9)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0)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1)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들어 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2)나의 개인적 문제를 상의할 만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3)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충고를 해 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4)비밀스런 걱정이나 두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5)개인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6)나의 문제를 이해해 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7)나와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8)나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9)즐길 수 있는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0)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4. 귀하 가정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복원센터**에 **바라는 사항**을 적어주세요.

1)___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_____

_____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첨 2>: **<사회복귀준비자용: 수용자용>**

# 가정 실태와 서비스 욕구 조사

안녕하세요? 사회복귀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희망 가득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복원센터」는 행복한 가정을 계획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는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실태를 파악하여 가족과의 성공적인 재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며,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을 원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지는 총 6쪽이니 문항마다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10월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연구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신 연희 교수(031-467-8034)
▶주관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복원센터 강지수 계장(070-8708-1569)

## I. 일반적 사항

1. 귀하께서 현재 계시는 교정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적어주세요. ( )시/ 군

2. 귀하의 **성별**은? ____① 남 ____② 여

3. 귀하의 현재 **나이**는? 만 ( ) 세

4. 귀하의 **학력**을 적어주세요.
____①초등학교졸업(중퇴포함) ____②중학교 졸업(중퇴포함) ____③고등학교 중퇴
____④고등학교 졸업 ____⑤대학교 졸업(중퇴포함) ____⑥대학원 이상

5.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____①미혼 ____②법률혼 ____③이혼 ____④사실상 부부(법적이혼상태) ____⑤사별
____⑥ 사실혼

6.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____① 종교가 있음 _____② 종교가 없음

7.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① 매우건강하다 ____② 건강한편이다 ____③건강이 나쁜 편이다 ____④건강이 매우 나쁘다

8. 귀하의 과거 시설에 **수용되기 전**에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___①직업없음 ___②일용직 ___③비정규직 ___④정규직 ___⑤자영업 ___⑥전문직 ___⑦기타

## II. 가정생활

1.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____①가족과 긴밀히 연락됨 _____②가족과 연락은 되나 관계가 좋지 않음
____③가족은 있으나 연락이 잘 안됨 _____④가족이 없음 (☞ III으로 가세요.)

2. 귀하 가정의 **월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 귀하의 수입 + 배우자 수입 + 기타 지원금)
____① 100만원 미만 ____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____③ 2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 ____④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____⑤ 500만원 이상 ____⑥ 기타( )

3. 귀하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입니까? _____①수급자임 _____②수급자 아님

4. 귀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_____①자녀 없음 (☞ **9번 으로** 가세요) _____②자녀 있음, 있다면 **자녀수** ( ) 명

5.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나이**를 모두 적어주세요.
**자녀나이:** ( _____ 세, _____ 세, _____ 세, _____ 세)

6. 자녀들이 귀하가 **수용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_____①알고 있음 _____②모르고 있음

7. 현재 **어린 자녀들**은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____①자녀의 엄마 ____②자녀의 조부모 ____③자녀의 아빠
____④자녀의 친척 ____⑤자녀들끼리 지냄 ____⑥시설 _____⑦기타

8. 귀하 **자녀(들)** 중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느 정도나 하는지 적절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 | 정말 그렇다 | 비교적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 | 전혀 그렇지않음 |
|---|---|---|---|---|
| 1)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2)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사람들을 피하고 만나기를 두려워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4)신경성으로 배나 머리 등이 아프다고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불면증, 우울증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6)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낮다 | ④ | ③ | ② | ① |
| 7)학교를 결석하거나 무단이탈한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8)학교를 중퇴하였거나 하려고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9)어른에게 반항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0)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싸움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1)가출을 하기도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2)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13)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9. 다음은 **가족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 우리가족은----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가족들이 협력해서 일을 할 때 더 잘된다고 믿는다. | ④ | ③ | ② | ① |
| 2)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후관계를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3)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④ | ③ | ② | ① |
| 4)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이유와 해결책을 곰곰히 생각한다. | ④ | ③ | ② | ① |
| 5)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④ | ③ | ② | ① |
| 6)어려운 일은 잠재력과 힘을 발휘해서 서로 격려하여 극복한다. | ④ | ③ | ② | ① |
| 7)적극적으로 잘하려는 의지로 밀고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8)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 ④ | ③ | ② | ① |
| 9)보다 더 큰 가치와 목표를 지향해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10)가족 간에 서로 믿음과 지지로 위로해 나간다. | ④ | ③ | ② | ① |
| 11)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2)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3)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재조직하여 변화를 수용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4)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돕는다. | ④ | ③ | ② | ① |
| 15)서로 돌봐주고 이끌어 주는 지도자나 협력자 역할을 서로 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6)상호 협력하고 같이 일하고 헌신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7)가족들 각자의 욕구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8)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④ | ③ | ② | ① |
| 19)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0)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1)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들어 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2)나의 개인적 문제를 상의할 만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3)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충고를 해 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4)비밀스런 걱정이나 두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5)개인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6)나의 문제를 이해해 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7)나와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8)나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29)즐길 수 있는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 30)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줄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 ④ | ③ | ② | ① |

10. 이곳에 오시기 전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____①매우좋았다 _____②좋은 편이었다

____③나쁜 편이었다 _____④매우 나빴다 ____⑤부모님이 계시지 않음

11. 이곳에 오시기 전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____①매우좋았다 _____②좋은 편이었다

____③나쁜 편이었다 _____④매우 나빴다 ____⑤배우자가 없음

12. 이곳에 오시기 전에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____①매우좋았다 _____②좋은 편이었다

____③나쁜 편이었다 _____④매우 나빴다 ____⑤자녀가 없음

## III. 현재 생활

1. 어떤 이유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습니까? 주된 **죄명**을 적어주세요. ( )

2. **형량**을 적어주세요. ( )년 ( )월

3. 귀하께서는 교정시설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수용**되었습니까? 총 ( )번

4. 귀하께서 **최초**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만 ( )세

5. 귀하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족과 접견**은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___①거의 매일 ___②1주일에 2-3회 ___③1주일에 한번 ___④2주에 한번

___⑤한 달에 한번 ___⑥두 달에 한번 ___⑦6개월 동안 1-2회 정도 ___⑧전혀 안함

6. **접견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사항 **모두에 "O" 표시**해 주세요.

___①어머니 ___②아버지 ___③배우자 ___④자녀

___⑤형제( 또는 자매) ___⑥조부모님 ___⑦친척 ___⑧친구

___⑨선배, 후배 등 ___⑩접견한 적 없음

7. 귀하께서 교정시설에 계시는 동안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모두에 " O " 표시**해 주세요.

___①가족만남의 날 ___②가족만남의 집 ___③가족사랑캠프

___④가족접견실 접견 ___⑤귀휴 ___⑥사회견학

___⑦사회봉사 ___⑧학과교육(검정고시반) ___⑨학사고시반

___⑩직업훈련 (*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취득하신 **기능자격 개수 _____ 개**)

___⑪종교상담 ___⑫자매결연

___①가족만남의 날 ___②가족만남의 집 ___③가족사랑캠프

___④가족접견실 접견 ___⑤귀휴 ___⑥사회견학

___⑦사회봉사 ___⑧학과교육(검정고시반) ___⑨학사고시반

___⑩직업훈련 (*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취득하신 **기능자격 개수 _____ 개**)

___⑪종교상담 ___⑫자매결연

## IV. 장래 생활

1. 귀하는 출소 후 가족들과 함께 살 계획이십니까?
___①가족과 함께 살 것임 ___②가족과 살지 않을 것임 ___③잘 모르겠음 ___④가족이 없음

2. 출소 후 누구와 함께 살 계획이십니까? 해당되는 사람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___①자녀 ___②배우자 ___③부모님 ___④형제,자매 ___⑤조부모님
___⑥친구(선배, 후배) ___⑦애인 ___⑧친척 ___⑨시설 ___⑩혼자 살 것임

3. 귀하께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까?
____①생계를 책임져야함 ___②그렇지 않음 ___③잘모르겠음

4. 사회복귀 후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입니까? 해당사항 **모두**에 표시하세요.
___①즉시 취업할 것임 ___②부모나 가족의 도움 ___③친구나 선후배의 도움
___④모아둔 재산(돈)사용 ___⑤정부보조 및 사회적 지원 ___⑥대책이 없음

5. 출소 후 어디에서 거주할 것입니까?
___①가족(배우자, 자녀)이 있는 집 ___②부모님 집 ___③형제,자매집
___④자식의 집 ___⑤친척집 ___⑥친구나 애인의 집

___⑦사회복지시설 ___⑧갈 곳이 없음 ___⑨잘모르겠음

6. 사회복귀 후 귀하의 **직업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____①전문직 ____②일용직 ____③비정규직 ____④정규직
____⑤자영업 ____⑥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임 ____⑦취업을 원하지 않음

7. 귀하께서는 **사회복귀과정**에서 다음에 대해 어느 정도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1) 가족과 재결합과정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할 것임 ___②약간 있을 것임 ___③거의 없을 것임 ___④전혀 없을 것임
2) 변화된 사회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할 것임 ___②약간 있을 것임 ___③거의 없을 것임 ___④전혀 없을 것임
3) 사회적 냉대와 편견
___①매우 심할 것임 ___②약간 있을 것임 ___③거의 없을 것임 ___④전혀 없을 것

임

4)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할 것임 ___②약간 있을 것임 ___③거의 없을 것임 ___④전혀 없을 것임

5)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

___①매우 심할 것임 ___②약간 있을 것임 ___③거의 없을 것임 ___④전혀 없을 것임

6) 안정된 주거(거처) 확보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할 것임 ___②약간 있을 것임 ___③거의 없을 것임 ___④전혀 없을 것임

7) 건강상의 어려움

___①매우 심할 것임 ___②약간 있을 것임 ___③거의 없을 것임 ___④전혀 없을 것임

8) 재범의 유혹

___①매우 심할 것임 ___②약간 있을 것임 ___③거의 없을 것임 ___④전혀 없을 것임

8. **사회복귀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정말 그렇다 | 비교적 그렇다 | 그렇지 않은 편 | 전혀 그렇지않음 |
|---|---|---|---|---|
| 1)가족들은 나를 반가이 맞아 줄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2)가족과의 결합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3)우리 가족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낼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4)우리 가족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5)가족은 나를 포기했다 | ④ | ③ | ② | ① |
| 6)집에 돌아가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 ④ | ③ | ② | ① |
| 7)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가족들이 도와줄 것이다 | ④ | ③ | ② | ① |

## V. 사회적 지원

1. 사회복귀과정에서 귀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 O " , 아니면 "X" 표시해 주세요.

|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친구 | 이웃 | 종교인 | 복지사 등 |
|---|---|---|---|---|---|---|---|---|
| 1) 경제적 지원(돈, 물질 등)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 2) 정서적 지원(위로, 이해, 조언 등)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 3) 생활지원(주거, 식사, 돌봄 등)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 4) 취업, 학업 알선 및 지원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 5)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제공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2. 귀하께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복원센터**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___①알고 있음 ___②모르고 있음

3. 가족희망복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실시**한다면, 귀하(또는 귀하가족)의 **참여의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 프로그램 유형 | 매우 높음 | 조금 있음 | 거의 없음 | 전혀없음 |
|---|---|---|---|---|
| 1)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 | | |
| 2)자녀양육 상담 | | | | |
| 3)자녀대상 상담 및 치료 | | | | |
| 4)자녀학습지원(대학생 멘토링 등) | | | | |
| 5)가족단위 활동들(가족캠프, 숲체험 등) | | | | |
| 6)가족집단상담 | | | | |
| 7)부모교육 프로그램 | | | | |
| 8)알콜치료 프로그램 | | | | |
| 9)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
| 10)가족과 함께 거주할 주거지원 | | | | |
| 11)출소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 | | | | |
| 12)변화된 사회에 대한 적응훈련 | | | | |

4. 귀하 가정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복원센터**에 **바라는 사항**을 적어주세요

_____

_____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합니다. ♣

세부연구 2

#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최 관**

**한세 대학교**

# 세부연구 2.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 목 차


**Ⅰ. 서론** ····· 107

1. 대국민 인식조사의 필요성 ····· 107

2. 연구의 목적 ····· 108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09

1. 출소자 재범과 관련된 범죄 이론적 고찰 ····· 109

2.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 ····· 114

**Ⅲ.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의식 조사** ····· 124

1. 연구방법 ····· 124

2.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 ····· 130

**Ⅳ. 대국민의식 조사 선행연구 개관 및 정책제언 분석** ····· 169

1. 출소자 지원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 ····· 169

2. 법률적 지원측면 ····· 171

3. 제도적 지원측면 ····· 172

**Ⅴ. 가족희망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및 추후사업방향 제시** ···· 179

1. 가족희망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 179

2. 추후사업방향제시 ····· 182

**<참고문헌>** ····· 187

# Ⅰ. 서 론

## 1. 대국민 인식조사의 필요성

출소자는 구치소 및 교도소 그리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후 해당 처분을 모두 마치고 사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한국의 경우 매년 6만 명 이상의 출소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오고 있다. 2007년에 새로이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2](이하 행집행법이라 통일함) 제1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행정이 추구하는 근본 목표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집행 관련 법률 그리고 교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해보면 출소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의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소자가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패할 경우 또한 여전히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가 있는 경우에 교정은 재범방지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여야 한다.

즉, 2014년 현재 한국 교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출소자들에 의한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 검찰청의 범죄분석을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간의 수형자의 입소경력별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재범률이 5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도소에 입소하는 범죄자 2명중에 1명은 무조건 범죄로 인해 다시 교도소에 유입이 된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정행정의 실패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 교정당국 역시 높은 재범률로 인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서 사회적 복귀로 귀결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를 들어 교정시설 내의 교화프로그램, 석방 전 준비제도, 석방 후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불안한 고용과 주거, 해체된 가족관계, 미비한 사회지원들이 거론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대중들 특히, 교정

12) 2007년 12. 21. 법률 제8728호로 공포되어 2008. 12. 22부터 시행되고 있음.

시설에서 출소한 출소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주민들, 일반시민들의 의식이나 편견 등이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선영, 2012; 이윤호외 2006, Brooks et al., 2006; Clear et al., 2001; Immerwahr & Johnson, 2002; Petersilia, 2003).

즉, 출소자들과의 상징적 상호작용과정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의식과 편견을 만들어가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궁극적으로 출소자들이 대한민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에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이윤호외,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한 국가로부터의 처벌로 인해 해체된 가족관계에 중점을 두어, 재범방지를 위한 해당 출소자와 해체된 가족관계 복원정책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족희망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족의 복원을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일반 시민들의 출소자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일반시민들의 이해와 관용 그리고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장에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소자에 대한 시민들의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가족희망센터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수립을 기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의 출소자 및 가족복원정책, 및 대국민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범죄행위와 관련된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출소자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둘째, 대국민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과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다.

셋째,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해당 가족지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키고 일반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족희망센터에 제시하기 위함이다.

#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출소자 재범과 관련된 범죄 이론적 고찰

출소자와 그 가족들과 관련된 사회적 차별과 무관심, 배제의 이면에는 범죄경력을 가진 자들을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수록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물론 이러한 출소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1차적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에게 있다. 출소자들은 일반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행위를 범하여 수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공공연히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고,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강력한 사회적 제재를 강조하게 된다. 출소자들에 대해 출소 후 낙인(Labeling)을 통한 철저한 사후감독을 요구하고, 취업시 포괄적인 신원조회를 통해 출소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바램은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선량한 시민을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즉 공공안전의 확보를 기하고 싶다는 것이다(Zimring & Johnson, 2006).

하지만, 철저한 감시와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배제전략은 궁극적으로 공공안전의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배제와 분리, 그리고 차별은 출소자들에게 합법적인 대안적 삶을 찾을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이다(Travis, 2005).

이와 같은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출소자에 대한 포용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포용전략은 '재통합(Re-Integrative)'과 '화해중재(Peacemaking Criminology)' 그리고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복귀 의지가 강한 출소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계(Structured Reentry Partnership)를 개발하여 일반시민들이 출소자와 그 해당 가족들의 사회복귀 및 가족복원을 위하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Gideon, 2008).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식적 또는 행동적 양태들은 출소자의 재범 나아가서 성공적인 지역사회복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범죄 원인론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개인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낙인(Labeling)이론을 시작으로 하여, 기존의 전통적 범죄이론과는 달리, 반사회적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제도적, 법적 대응형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재통합적 수치(Re-Integrative Shaming), 화해중재(Peacemaking Criminology),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등의 내용들은 출소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얼마나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1) 낙인이론

낙인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Mead(1934)는 낙인의 형성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주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상징적 상호작용 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즉, 낙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낙인이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비공식적 낙인의 형성은 자신에 대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신의 자아에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문제아 또는 반사회적 일탈자로 평가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낙인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연구했던 외국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Tannenbaum(1938)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주어진 “꼬리표(Tag)”를 시작으로 해당 청소년의 자아상(Self-Image)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은 그 꼬리표에 근거하여 해당 청소년을 대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재범을 위한 범죄 성향이 더욱 더 강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반사회적 일탈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것은 단번에 여러 다른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는 주지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나아가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일탈행동에 연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Becker(1963)는 주장하였다. Lemert(1967) 역시 범죄와 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는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일차적 일탈이 선행적으로 발생한 후, 형사사법기관과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반응으로 인하여 이차적 일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국내학자들을 살펴보면, 이순래와 박현기(2007)는 낙인이 내재화 되는 과정에 미치는 내외적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주로 ‘주위사람들의 낙인’과 ‘자기낙인’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비행청소년을 둘러싼 공식적 체계와 비공식적 인물들 즉 부모, 교사, 친구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일차적인 낙인을 ‘주위사람들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위 사람들에 의한 낙인을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일수록 재범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이러한 주위사람들의 낙

인을 내재화하고 자아의식의 한 부분으로 고착시켜가는 것을 '자기낙인'이라고 하였고, 자기낙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열등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경찰과 교정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를 담당하는 것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사범을 중심으로 하여 봉사명령, 수강명령, 훈방, 벌금형 등의 공식적인 형벌처리를 대신하는 소위 "다이버전(Diversion)"을 활용하여 범죄자들의 낙인효과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점에서 낙인효과에 대해 살펴본다면, 형사사법기관과 일반시민들에 의해 형성된 "범죄자 혹은 출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라는 인식은 해당 출소자나 가족들이 그러한 주위의 인식에 대한 내재화 과정을 통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낙인이 더 나아가 혐오와 차별로까지 이어진다면 해당 출소자의 범죄적 성향을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출소자에게 행해지는 부정적인 태도는 수형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개선되고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재통합적 수치

재통합적 수치이론의 논거는 일반시민들이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게 보이는 반응과 그 결과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낙인(Labeling)의 측면보다는 수치심(Shaming)에 더욱 초점을 둔 이론이다. 1989년 Braithwaite는 자신의 저서인 "범죄, 수치, 그리고 재통합"을 통해 수치심에 대해서 정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반감으로서, 수치심을 인식하게 되는 타인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는 것 또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 회한을 불러일으키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수치심을 내포한 느낌이 범죄통제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Braithwaite는 범법 및 무질서행위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치심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 재통합적 수치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게 하여 지역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면에 해체적 수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일반 사람들 간의 화해과정이 없으며 이러한 수치는 궁극적으로 범죄자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재통합적 수치가 낮은 재범위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재통합적 수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들이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온화한 용서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Braithwaite(1989)는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 성공적으로 재입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시민들로부터의 용서와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철저하고, 엄격하며, 확실히 법의 준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또한 수형자 교화/개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수형자 처우의 기본 방향이 용서 및 화해라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선영(2012)은 재통합적 수치철학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범죄자를 위한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소년 범죄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중재자가 함께 참석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범죄자로부터의 진정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수치를 이끌어내고 용서와 화해, 수용의 과정을 겪으면서 청소년 범죄자가 경험하게 되는 수치적 느낌이 해체적 성격이 아닌 통합적 성격의 수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복적 사법으로 일컬어지는 피해자 - 가해자 중재/조정 프로그램과 유사한 면을 지니게 된다. 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당사자는 국가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과 피해자임을 강조하였다.

### 3) 화해중재

“화해중재”는 1990년대 미국이 범죄와의 전쟁으로 요약되는 강력한 범죄통제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론이다. 상기에서 설명된 여러 이론들과 함께 전통적 범죄학의 연구영역이었던 ‘한 개인의 범죄 성향과 범죄원인에 대한 탐색’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범죄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하며 추가적으로 어떠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방법을 통해 범죄 및 무질서 문제에 관여하는 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새로운 대안으로서 화해중재는 1991년 Pepinsky와 Quinney의 저서 “화해중재로서의 범죄학(Criminology as Peacemaking)”에 인본주의, 종교, 페미니즘, 마르크시즘 등의 여러 철학적 사상들을 기초로 하여 통합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이론은 형사사법체제는 범죄 및 무질서행위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관리하도 대처할 뿐이며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이론을 수용한 정책가들 역시 범죄 및 무질서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의 대인관계에 기초한 화

합성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혹은 사회적 기관들 간의 복지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서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화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화해중재를 주장하는 범죄 및 형사사법학자들은 범죄 및 무질서란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주장하면서, 중재, 분쟁해결, 화해, 용서,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재통합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과 같은 형사사법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합력하여 붕괴된 대인관계의 화합성을 재설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4) 회복적 사법

범죄학자인 Akers와 Sellers(2004)는 재통합적 수치와 화해중재와 함께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무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고전적 범죄학이론은 한명의 범죄학자에 의해서 개념화 되고 이론화된 것과 달리 이 회복적 사법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이 해당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1990년대에 Zehr(1990), Umbreit(1996), Van ness와 Strong(1997), Bazemore와 Schiff(2001)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이론화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일반적으로 응보적 형사사법체계와 구별되는데, 응보적 형사사법의 입장에서는 통제는 엄격하고 강하여야 하며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자는 낙인을 부여하여야 하며, 엄중하고 근엄한 형벌에 의존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Bazemore와 Schiff(2001)는 응보적 형사사법철학은 결국 높은 재범률을 야기하였고 나아가서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 및 무질서에 의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훼손되면 반드시 범죄자, 피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의 세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회복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Zehr, 1990). 본 모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해자 화해/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VOM)”으로도 불리우이는 본 과정을 통해 피해자, 가해자,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회복적 사법 차원에서의 이익을 얻게 된다. 회복적 사

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회복적 사법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정부 기관들보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더욱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형사사법과정에 일반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여러 학자(Braithwaite & Mugford, 1994; Clear & Karp, 1999; Stuart, 1996; Van Ness & Strong, 1997)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형사사법체계로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및 무질서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선영(2012) 역시, 회복적 사법이 제시하는 범죄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식 - 일반 시민의 중재를 통한 피해자, 가해자간 이해, 용서, 화해, 회복 -을 통해 수형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은 극복될 수 있으며 출소하는 수형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된 지원과 지지가 이끌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

### 1) 미국에서의 연구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러 연구들(Zimring & Johnson, 2006; Simmons, 1975)을 통해서 교정시설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은 수형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방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는 사회 내에서 약속된 법을 어긴 구성원들에 대한 반사적인 감정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또한 낙인을 부여하고 그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지게 만든다(Zimring & Johnson, 2006; Simmons, 1975). 더욱이, Simmons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거리라는 개념을 구체화 시켰는데, 사회적 거리란 “사회적 관계에 있어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이해 및 친근감의 수준 내지 정도”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Simmons는 사회거리척도(Social Distance Scale)를 완성하여 연구에 참고하였고 연구 결과,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끼리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깨는 구성원(그 가족들 포함)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hukla와 Dubey(1985) 역시 Borgadus가 개발한 사회거리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범법자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범법자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범법자에 대한 편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연구로서, 1985년 Melvin이라는 심리학자는 범죄자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수형자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Prisoners, APT)”를 개발하여, 다른 학자들(Neiderdoffer, 1969; Jacobi, 1975)이 주장했던 내용(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범죄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끼치는 지)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일반시민, 경찰공무원들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해당 가족들에 대해서 더욱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출소자와 그 가족들의 가족복원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견은 사회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 나타났으며, 이러한 편견이 출소자의 재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가족들의 가족관계 역시 훼손하는 곳으로 조사되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은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Petersilia(2003)는 본인의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범죄대응 전략을 위해서 범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범죄자들의 출소 후 사회 내 경험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했던 여러 학자들(Brooks et al., 2006; Travis, 2005; Golembeski & Fullilove, 2005)도 출소 후 수형자는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므로, 출소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관계의 복원 역시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는 재소자들의 사회 재통합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출소자에 대한 편견이 필수적으로 지양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태도로 지역사회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출소자 가족복원과 관련된 미국에서의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그 해당 가족복원에 대한 대중의 태도연구는 2000년부터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 내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대중들이 수형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Urban Institute의 질적 연구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출소자, 출소자 가족, 지역사회주민, 정책가, 학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는 Reentry Roundtable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특히,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여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조사하였다(Immerwahr & Johnson, 2002).

연구 결과, 대부분의 시민, 정책가, 학자들은 수형자 및 그 가족복원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대신 출소자들은 해당 범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형벌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대학등록금과 같은 특별해택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도시 내부에 빈민계층과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집단들은 중산층에 속하는 집단보다 수형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Urban Institute는 2006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내 세 군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 및 복귀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출소자 자체를 지원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출소자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Urban Institute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정도에는 차이가 발생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대중 및 해당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미국 Urban Institute의 연구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 출소자와 관련된 사회복귀 관련 내용들이 조사에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하트 연구소는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였는데, 총 1,05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90% 이상의 참여자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내 직업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88%의 조사 참여자들은 교정시설을 나온 출소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서비스에 대해서 지지하였다. 또한 68%의 조사응답자들은 중범죄자들부터 박탈되었던 선거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시민들이 엄중한 처벌을 기반으로 한 현행 사법모델이 국가의 효과적인 범죄통제 및 예방목적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서, Robert와 그 동료(2005)들은 매사추세츠에서 2005년에 748명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체계 뿐만 아니라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90%이상의 연구 응답자들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주거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78%의 응답자들은 교정시설내의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조건화한다면 집중 보호관찰을 전제로 한 조기 석방 역시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75%이상의 시민들이 수형자 및 그 가족복원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 역시 더 낼 마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론조사 형태를 띤 연구 역시 존재하는데, 2006년 Zogby는 1,039명의 시민들을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의 복원지원과 관련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9%의 지역사회 시민들은 출소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93%의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출소자와 그 가족복원을 위한 직업훈련, 치료프로그램, 주거지원와 같은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출소자들에 대한 출소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44%의 조사 참여자들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라고 응답하였고, 27%는 출소 전 1년 전부터, 20%는 출소 6개월 전부터라고 응답하여 시민들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미국 부시정부가 추진하였던 ‘제 2의 기회법(The Second Chance Act)’을 통한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한 정부의 재원 확보에 관한 정책의 경우, 응답자의 78%는 이러한 수형자 및 그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Krisberg & Machionna, 2006).

제 2의 기회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미국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가 정부차원에서 혹은 비영리기관과의 협력으로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영역은 출소 후 지원은 물론 출소 전 교정기설 내 교육, 훈련,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2013년의 경우 $250 million에 달하는 500건의 자금 지원이 주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기관들에게 지원되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2008년에 뉴욕에서 진행되었는데, Gideon는 879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지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85%의 응답자들이 출소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83%의 응답자들이 당시 부시 행정부가 시행하였던 소위 “제 2의 기회법”, “중범죄자 및 폭력범죄자 사회복귀 이니셔티브”, “수형자 사회복귀 이니셔티브”을 위한 세금증가를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중범죄자 및 폭력범죄자 사회복귀 이니셔티브(Serious and Violent Offender Reentry Initiative: SVORI)는 2003년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만든

것으로서, 관련 기관이 형사사법체계 즉, 출소하는 수형자의 고용, 교육, 건강, 주거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연간 67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발된 60개 이상의 기간이 500,000달러에서 2,000,000달러까지 3년간 본 이니셔티브의 자금을 지원받아 9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였다. 특히, SVORI는 출소자를 위한 3단계 사회복귀 과정: '출소전 집중적 준비기간', '출소후 초기 적응기간', '출소후 지속적인 사회적응기간'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필요도 진단과 위험성 평가, 개별 사회복귀 계획, 전환단계 지원팀, 지역사회 자원활용 등을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형자 사회복귀 이니셔티브(Prisoner Reentry Initiative: PRI)는 2004년 부시 대통령이 출소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약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2006년에 첫 자금 지원이 있었다. 수형자 사회복귀 이니셔티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재통합을 목표로 구축되었으며 출소 전, 출소 후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재적응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입소하면 학업, 직업, 건강, 인지능력, 대인관계, 일상생활, 관련 재통합 기술들을 진단하고 출소 전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각각의 수형자들을 직업훈련, 마약치료, 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적절히 배치하게 된다. 본 사업은 미국 법무부가 소관 부처이며,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관리하는 것은 법무부 산하 Office of Justice Program이 주관하며 총 2년간의 각 기관의 수형자 사회복귀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본 이니셔티브는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 노동부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단체와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특히 성범죄자, 직업적 범죄자, 정신문제가 있는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2) 한국에서의 연구

한국에서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지원과 관련된 최초의 연구는 1994년 최인섭과 김지선에 의해 시행된 연구로서, 전과자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과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서울 시민 800명을 표본 추출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범죄유형별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마약 복용 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기, 비폭력, 살인, 절도범의 순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현실적인 문항으로 출소자를 고용하는지의 여부와 직장동료로서 받아들이는지의 여부도 조사되었는데, 69%의 응답자가 전과기록에도 불구하고 전과자를 고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56% 이상이 직장동료로서의 전과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과자 지원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관련 질문에서는 80% 이상의 조사응답자가 출소 예정자를 위한 직업 훈련과 출소 후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 내 존재하는 출소자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정책(81%)과 경범죄자에 대한 3D 업종에서의 사회봉사명령(70%)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소위 “갱생보호회”의 활동에 참여 여부에 관해서는 51%의 응답자가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여 수형자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윤호, 윤옥경, 남재성, 함혜현, 김순석, 김대권(2006)이 진행한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교도소 수용자 330명, 출소자 109명, 일반시민 211명, 형사사법종사자 161명, 고용주 137명으로 총 948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전과자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형사사법기관에서의 불평등한 대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인 냉대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시민 88.6%, 고용관계자 74.4%,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은 58.5%였다. 또한 전과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기업에 특혜를 주고 정부의 취업 및 창업 교육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조사응답자들 중 75% 이상이 전과경력으로 인해 사직을 권고 받거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형사사법 종사자의 인식에 있어서 채용 시 전과기록을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28%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자들의 70.6%가 출소 이후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에 대한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취직에 따른 사회재적응을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적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를 도입해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출소자의 신원을 국가가 보증하고, 만약 이들이 출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가가 미리 가입한 보험 등으로 지역사회의 기업체에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는 미국의 텍사스의 RIO Project와 같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만 민간 기업에서의 출소자 교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인식개선에 대한 운동의 필요성 역시 역설하였다.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일반의 그릇된 인식일 것이다. 특히 출소자들이 생각하는 취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서 다른 동료나 상사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전과자와 함께 일하기 싫다는 이유(37%)라는 것이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지지체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포럼, 세미나, 연구 활동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출소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법 그리고 제도의 입안을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국, 출소자들의 사회적 보호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0년 황의갑과 박선영에 의해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지원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의 한 사립대학교의 대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지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 중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 및 무질서의 원인을 개개인의 탓으로 규정하는 심리/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을 수용할수록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지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범죄 및 무질서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사회과정이론을 수용할수록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지원에 대한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용서에 대한 신념이었으며, 해당 가족의 월수입,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그 뒤를 이었다.

추가적으로 박선영(2012)은 “성공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주된 요소로서 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반감과 차별에 주목하여 국민들의 반감을 극복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이 참여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크게 5가지 정책적 제언을 시사했는데 첫째로 이해, 용서, 화해, 수용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과

정제정을 강조하였고 둘째, 시민포럼, 캠페인, 미디어를 통해 수형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장려하며 셋째,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용서와 화해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넷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다섯째, 수형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상기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지원에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귀 및 가족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부조직이,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사업을 위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 3.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대중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태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의 부족으로 본 대국민조사연구의 가설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의 처벌에 대한 태도, 교화 및 개선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소득, 거주 지역, 교육, 종교, 범죄피해 등이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검토되었다.

### 1) 성별

성별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출소자 사회복귀 혹은 그 가족지원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pplegate et al., 2002; Evans & Adams, 2003; Sprott, 1999). 하지만 박선영(2012)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은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 문제와 관련하여 성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010년 황의갑과 박선영의 연구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 문제에 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 2) 나이

나이에 따른 태도의 상대적인 차이는 개개인의 나이가 성숙, 육체적 강함, 신뢰 등과 같이 주요한 지표역할을 하고 역시, 한 개개인이 인생여정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Welch, 2004). 즉, 본 연구와 관련하여 노동, 보모역할, 피해경험과 같은 개인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이별 단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궁극적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몇몇의 연구들(Langworthy & Whitehead, 1986; McCorKle, 1993; Grasmick & McGill, 1994)은 나이가 어릴수록 수형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ohen et al., 1991; Cullen et al., 1985). 또한 박선영(2012)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그 가족복원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소득

소득과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문제 연구결과들의 경우 먼저, Evans와 Adams(2003)의 연구는 지역사회주민들의 수입과 사회복귀 및 가족복원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도 소득과 출소자 사회복귀 및 가족복원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산층집단이 고소득 혹은 저소득 집단보다 출소자 사회복귀 및 가족복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Baumer et al. (2003)의 연구는 가족들의 수입이 증가할수록 출소자 사회복귀 및 가족지원에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거주 지역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Mackey et al., 2006; Roberts et al., 2005)들은 거주지역과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지원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Mackey et al. (2006), Roberts et al. (200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도시 출신들이 출소자들 관련된 문제에 좀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alco(2008)의 연구는 거주 지역은 출소자 복귀 및 지원 문제에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5) 교육

몇몇의 연구들은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출소자 복귀 및 제반지원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Barken & Cohn, 1994; Baumer et al., 2000; Borg, 1997; Britt, 1998; Hans, 1986; Sims, 2003; Tyler & Boeckmann, 199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2008년에 교육수준이 높은 백인들이 낮은 백인보다 출소자 복귀 및 제반지원에 더욱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한 Gideon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형자 복귀 및 제반지원 문제와 교육은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2012).

### 6) 종교

종교가 출소자 관련 제반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몇몇의 학자들(Britt, 1998; Evans & Adams, 2003; Grasmick & McGill, 1994; Young & Thompson, 199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종교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보다는 더욱더 심각한 낙인을 부여하고 처벌역시 엄격하고, 신속하고, 확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Bohm et al., 1991; Lambert et al., 2005; Falco, 2008; 박선영, 2012)의 연구결과들은 종교가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그 가족지원에 더욱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기의 내용들을 조사한 결과 종교는 출소자 복귀 및 제반사안 들에 주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 7) 범죄피해

범죄피해경험 역시 출소자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다양하고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lumstein과 Cohen(1980), Borg(1997), Sprott와 Doob(1997)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범죄피해경험은 시민들로 하여금 엄격한 형벌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범죄피해경력은 출소자 관련 문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박선영, 2012; Baron & Hartnagel, 1996; Bohm & Vogel, 1994; Costelloe et al., 2000; Falco, 2008; Rossi & Berk, 1997).

# Ⅲ.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의식 조사

## 1.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연구는 무엇보다도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그 대상을 대한민국 전국으로 하였다. 설문지(부록 1 참조)에서와 같이 전국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표본수를 할당하고 연령과 성비를 고려하여 비례확률추출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참여자는 20세 이상 70세 이하 남녀 총500명이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인바이트에 의해 2014년 11월 24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시간과 비용의 제한에 의해 본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본 설문조사를 위해 먼저, 조사패널이 적절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조사전문기관을 비교선정한 후, 선정된 조사전문기관에서 보유 및 구축하고 있는 패널집단에 설문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온라인 형태의 인터넷페이지형태로 제공 후, 해당 기간 안에 설문조사에 응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2) 설문지에 대한 설명

본 연구수행을 위한 설문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3파트(인구사회학적 요소, 출소자들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정도, 출소자 및 가족복원 사업 정책지지 정도)로 이루어졌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7가지 인구사회학적 요소(거주지, 성별, 연령대, 범죄피해경험,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들로 구성하였다. 거주지의 차이를 보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으며,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다. 연령대의 경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이루어졌으며, 범죄피해경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와 ‘없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대학원졸 이상’으로 나누었다. 소득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무응답’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경우 ‘무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등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출소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출소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수용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7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우리 사회가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서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 ③ “나는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옆집으로 이사와도 괜찮다”, ④ “내가 임대할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게 임대해 주겠다”, ⑤ “직장 동료가 출소자나 그 가족이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⑥ “내가 고용주라면, 나는 출소자나 그 가족임을 알더라도 그 들을 고용한다”, ⑦ “자녀가 있다면, 출소자의 자녀와 내 자녀가 친구가 되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질문들이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정말 그렇다 1, 그런 편이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4, 모름 혹은 무응답 5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차별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귀하가 생각하기에 출소자들이 왜 우리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① 출소자는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② 출소자들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③ 출소자들로부터 언제 무슨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④ 출소자와 아는 사람인 것이 남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까봐 등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출소자 및 가족복원 사업 정책지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 5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① “정부는 출소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출소자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매우찬성 1, 찬성 2, 반대 3, 매우반대 4, 모름 혹은 무응답 5 등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하였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해서 찬성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출소자 가족을 지원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녀학업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1, 가족취업지원 2, 주거지원 3,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4,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가족단위 활동 5, 창업지원 6, 숙식제공 7, 긴급 원호 8, 기타 9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어떤 이유로 출소자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어떤 이유가 출소자 지원 사업을 위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 1, 출소자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불리한 점이 많아 국가의 지원이 필요 2, 출소자를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결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 3, 출소자의 자녀가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 4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상기 질문에 대해서 반대하였을 경우, “출소자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면 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 1, 범죄가해자를 돕는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기 때문 2,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해도 출소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3, 출소자 이외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 4 등으로 구성하였다.

“출소자의 자녀가 제 2의 피해자라는 견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일 출소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재피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출소자를 격리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다 1, 출소자 자녀는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죄인과 가족의 분리’ 하는 대국민 홍보와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 2, 억울하지만 출소자의 가족이니 고통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 출소자의 자녀들을 제 2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등으로 구성하였다.

### 3)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Ⅱ장에서의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7개의 변인들(거주지역, 성별, 나이, 범죄피해경험,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구성되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여성이면서,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출소자와 그 가족복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며, 범죄피해 경험이 있으며 법집행과 처벌을 선호할수록 출소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변인별 가설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독립변인과 가설

| 변 수 |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태도 |
|---|---|
| 거주지역 (대도시=1) | + 긍정적 |
| 성별 (여=2) | + 긍정적 |
| 나이 (저→고) | + 긍정적 |
| 범죄피해경험 (유=1) | - 부정적 |
| 교육수준 (저→고) | + 긍정적 |
| 소득수준 (저→고) | - 부정적 |
| 종교 기독교 | - 부정적 |
| 불교 | + 긍정적 |
| 천주교 | + 긍정적 |
| 기타 | + 긍정적 |

## 4) 연구 변인

### 가. 독립변인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Falco, 2008; Brooks et al., 2006; Krisberg & Machionna, 2006; Mackey et al., 2006; Zimring & Johnson, 2006; Lambert et al., 2005; Travis, 2005; Roberts et al., 2005; Golembeski & Fullilove, 2005; Welch, 2004; Petersilia, 2003; Evans & Adams, 2003; Baumer et al., 2003; Sims, 2003; Immerwahr & Johnson, 2002; Applegate et al., 2002; Bazemore & Schiff, 2001; Baumer et al., 2000; Costelloe et al., 2000; Sprott, 1999; Clear & Karp, 1999; Britt, 1998; Borg, 1997; Van ness & Strong, 1997; Tyler & Boeckmann, 1997; Sprott & Doob, 1997; Rossi & Berk, 1997; Baron & Hartnagel, 1996; Baron & Hartnagel, 1996; Stuart, 1996; Umbreit, 1996; Young & Thompson, 1995; Gasmick & McGill, 1994; Barken & Cohn, 1994; Grasmick & McGill, 1994; Bohm & Vogel, 1994; Braithwaite & Mugford, 1994; McCorKle, 1993; Bohm et al., 1991; Cohen et al., 1991; Zehr, 1990; Braithwaite, 1989; Braithwaite, 1989; Langworthy & Whitehead, 1986; Hans, 1986; Cullen et al., 1985; Blumstein & Cohen, 1980; Jacobi, 1975; Simmons, 1975; Neiderdoffer, 1969; Lemert, 1967; Becker, 1963; Tannenbaum, 1938; Mead,1934; 박선영, 2012; 이순래와 박현기, 2007)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소자에 대한 처벌과 편견, 교화 및 개선, 출소자, 출소자와 그 가족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로서 검증된 7가지 항목의 개인적 특성들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주지역, 성별, 나이, 범죄피해경험,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 등이 이에 속한다.

첫째, 거주지역의 경우,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도시를 1로, 중소도시를 2로, 농어촌을 3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성별로는 남성을 1로, 여성을 2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나이는 있는 그대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연령대로 다시 구분하였다. 넷째, 범죄피해경험의 유무는 "과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있으면 1, 없으면 2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육수준의 경우는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중졸이하는 1, 고졸은 2, 대졸이상은 3, 대학원졸 이상을 4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소득수준의 경우, "귀 댁의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 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100만원 미만은 1,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은 2,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은 3,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은 4, 4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은 5, 5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은 6, 600만원에서 700만원 미만은 7, 700만원 이상은 8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종교의 경우 "귀하의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종교 없음은 1, 기독교는 2, 불교는 3, 천주교는 4, 기타 5로 구분하여 조사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귀하의 신앙심을 측정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신앙심의 정도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 나. 종속변인

① 출소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사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복귀된 출소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7개 문항이 제시되었다. 각 문항에 점수가 부여되어 총점으로 합산되고,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해서 지지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출소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수용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사회가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서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 3) "나는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옆집으로 이사와도 괜찮다", 4) "내가 임대할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게 임대해 주겠다", 5) "직장동료가 출소자나 그 가족이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6) "내가 고용주라면, 나는 출소자나 그 가족임을 알더라도 그 들을 고용한다", 7) "자녀가 있다면, 출

소자의 자녀와 내 자녀가 친구가 되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질문들이 설문내용으로 실험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다. 각 문항들에 대해서는 리커트 4점 혹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정말 그렇다 1, 그런 편이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전혀 그렇지 않다 4, 모름 혹은 무응답 5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 정말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통합하여 1점으로 부여하였으며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0점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왜 차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귀하가 생각하기에 출소자들이 왜 우리사횡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소자는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1, 출소자들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 출소자들로부터 언제 무슨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3, 출소자와 아는 사람인 것이 남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까봐 4 등으로 표시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② 출소자 및 가족복원 사업 정책지지 정도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사업과 관련된 정책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5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정부는 출소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출소자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매우찬성 1, 찬성 2, 반대 3, 매우반대 4, 모름 혹은 무응답 5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해서 찬성하였을 경우 추가적으로 “출소자 가족을 지원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할지 아래 보기 중 두 가지를 고르거나 기타 란에 적어주세요” 라는 질문을 통해 자녀학업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1, 가족 취업지원 2, 주거지원 3,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4,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가족단위 활동 5, 창업지원 6, 숙식제공 7, 긴급 원호 8, 기타 9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어떤 이유로 출소자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어떤 이유가 출소자 지원사업을 위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기 질문에 대해서 반대하였을 경우, “출소자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면 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리고 “출소자의 자녀가 제 2의 피해자라는 견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일 출소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재피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래의 <표 2.2>는 본 조사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전체 조사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500명으로서 남자 250명과 여자 250명 각각 50%씩을 차지하였다. 먼저 거주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303명으로 60.6%를 차지하였고, 중소도시가 179명으로 35.8%를 차지하였으며, 농어촌출신이 18명으로 3.6%를 차지하였다. 나이와 관련하여, 참가자들 중 가장 작은 나이가 20세였고, 가장 많은 나이가 69세였으며, 전체 나이평균은 39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대가 18.6%, 30대가 35.0%, 40대가 29.6%, 50대가 13.2%, 60대가 3.6% 였다.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72.65%의 실험참가자들이 범죄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27.4%의 참가자들만이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가 0.4%, 고졸이 15.8%, 대졸 이상이 71.6%,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원졸 이상이 1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는 1.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9.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6.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23.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20.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은 13.2%,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7.4%, 마지막으로 700만원 이상은 6.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의 경우 총 500명의 조사대상자들 중 47.6%가 무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가 22.2%, 불교가 15.4%, 천주교가 12.0%, 기타가 2.8%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7개로 구성된 출소자 및 그 가족지원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의 최소값이 0, 최대값이 7, 평균이 4.57, 표준편차가 2.141이었다. 출소자 및 그 가족지원에 대한 태도 척도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타당성(요인부하량) >.39이며 또한 신뢰도(Cronbach’s α= .72)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표 2.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00)

| 특성 | 범주 | 명 / 빈도 (%) |
|---|---|---|
| 거주지역 | 대도시 | 303 (60.6%) |
| | 중소도시 | 179 (35.8%) |
| | 농어촌 | 18 (3.6%) |
| 성별 | 남자 | 250 (50.0%) |
| | 여자 | 250 (50.0%) |
| 연령대 | 20대 | 93 (18.6%) |
| | 30대 | 175 (35.0%) |
| | 40대 | 148 (29.6%) |
| | 50대 | 66 (13.2%) |
| | 60대 | 18 (3.6%) |
| 범죄피해경험 | 있다 | 137 (27.4%) |
| | 없다 | 363 (72.6%) |
|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2 (0.4%) |
| | 고졸 | 79 (15.8%) |
| | 대졸 이상 | 358 (71.6%) |
| | 대학원졸 이상 | 61 (12.2%) |
| 소득수준 | 100만원 이하 | 9 (1.8%) |
| | 100-200만원 미만 | 46 (9.2%) |
| | 200-300만원 미만 | 82 (16.4%) |
| | 300-400만원 미만 | 115 (23.0%) |
| | 400-500만원 미만 | 103 (20.6%) |
| | 500-600만원 미만 | 66 (13.2%) |
| | 600-700만원 미만 | 37 (7.4%) |
| | 700만원 이상 | 31 (6.2%) |
| | 무응답 | 11 (2.2%) |
| 종교 | 무교 | 238 (47.6%) |
| | 기독교 | 111 (22.2%) |
| | 불교 | 77 (15.4%) |
| | 천주교 | 60 (12.0%) |
| | 기타 | 14 (2.8%) |

## 2) 문항 분석 결과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설문 참가자들이 어떠한 응답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시민들의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 문항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속변인들은 크게 출소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출소자 및 가족복원사업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소자 차별 여부

먼저 아래의 <표 2.3>과 같이, 출소자에 대한 차별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서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500명중에 84%(42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출소한 출소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과거에 저지른 형벌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어떠한 변인들이 일반인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았다. 총 7가지의 독립변인들 중에서 상기의 문항에 대한 현저한 시각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우리사회가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서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2.3> 출소자에 대한 차별 여부

| 구분 | 응답 | 그렇다 명(%) | 아니다 명(%) |
|---|---|---|---|
| ***거주지역*** | | | |
| 대도시 | 303 | 253 (83.5%) | 50 (16.5%) |
| 중소도시 | 179 | 151 (84.4%) | 28 (15.6%) |
| 농어촌 | 18 | 16 (88.9%) | 2 (11.1%) |
| ***성별*** | | | |
| 남자 | 250 | 209 (83.6%) | 41 (16.4%) |
| 여자 | 250 | 211 (84.4%) | 39 (15.6%) |
| ***연령대*** | | | |
| 20대 | 93 | 76 (81.7%) | 17 (18.3%) |
| 30대 | 175 | 146 (83.4%) | 29 (16.6%) |
| 40대 | 148 | 132 (89.2%) | 16 (10.8%) |
| 50대 | 66 | 53 (80.3%) | 13 (19.7%) |
| 60대 | 18 | 13 (72.2%) | 5 (27.8%) |
| ***범죄피해경험*** | | | |
| 있다 | 137 | 116 (84.7%) | 21 (15.3%) |
| 없다 | 363 | 304 (83.7%) | 59 (16.3%) |
| ***교육수준*** | | | |
| 중졸 이하 | 2 | 1 (50.0%) | 1 (50.0%) |
| 고졸 | 79 | 60 (75.9%) | 19 (24.1%) |
| 대졸 이상 | 358 | 306 (85.5%) | 52 (14.5%) |
| 대학원졸 이상 | 61 | 53 (86.9%) | 8 (13.1%) |
| ***소득수준*** | | | |
| 100만원 이하 | 9 | 7 (77.8%) | 2 (22.2%) |
| 100-200만원 미만 | 46 | 37 (80.4%) | 9 (19.6%) |
| 200-300만원 미만 | 82 | 68 (82.9%) | 14 (17.1%) |
| 300-400만원 미만 | 115 | 95 (82.6%) | 20 (17.4%) |
| 400-500만원 미만 | 103 | 88 (85.4%) | 15 (14.6%) |
| 500-600만원 미만 | 66 | 59 (89.4%) | 7 (10.6%) |
| 600-700만원 미만 | 37 | 32 (86.5%) | 5 (13.5%) |
| 700만원 이상 | 31 | 26 (83.9%) | 5 (16.1%) |
| 무응답 | 11 | 8 (72.7%) | 3 (27.3%) |
| ***종교*** | | | |
| 무교 | 238 | 196 (82.4%) | 42 (17.6%) |
| 기독교 | 111 | 92 (82.9%) | 19 (17.1%) |
| 불교 | 77 | 65 (84.4%) | 12 (15.6%) |
| 천주교 | 60 | 56 (93.3%) | 4 (6.7%) |
| 기타 | 14 | 11 (78.6%) | 3 (21.4%) |
| **전체** | 500 | 420 (84.0%) | 80 (16.0%) |

출소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귀하가 생각하기에 출소자들이 왜 우리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총 500명의 설문 응답자들 중에 49.5%(208명)는 출소자들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6.2%(110명)는 출소자들로부터 언제 무슨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3.8%(100명)가 출소자는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0.4%(2명)는 출소자와 아는 사이인 것이 남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까봐 라고

대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왜 출소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과거의 범죄경력에 대한 낙인, 재범위험성,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출소자와의 친분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들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출소자들에 대한 차별편견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소자와 가족에 대한 위험성 인식 차이

출소자에 대한 위험성 인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500명중 4.4%(22명)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3.6%(268명)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6.8%(134명)과 1.6%(8명)은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3.6%(68명)는 모름 또는 무응답 하였다(표 2.4 참조). 어떤 변인에서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면, 성별($\chi^2$(df=4, N=500) = 13.317, p = .010)과 연령대($\chi^2$(df=16, N=500) = 27.635, p = .03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3],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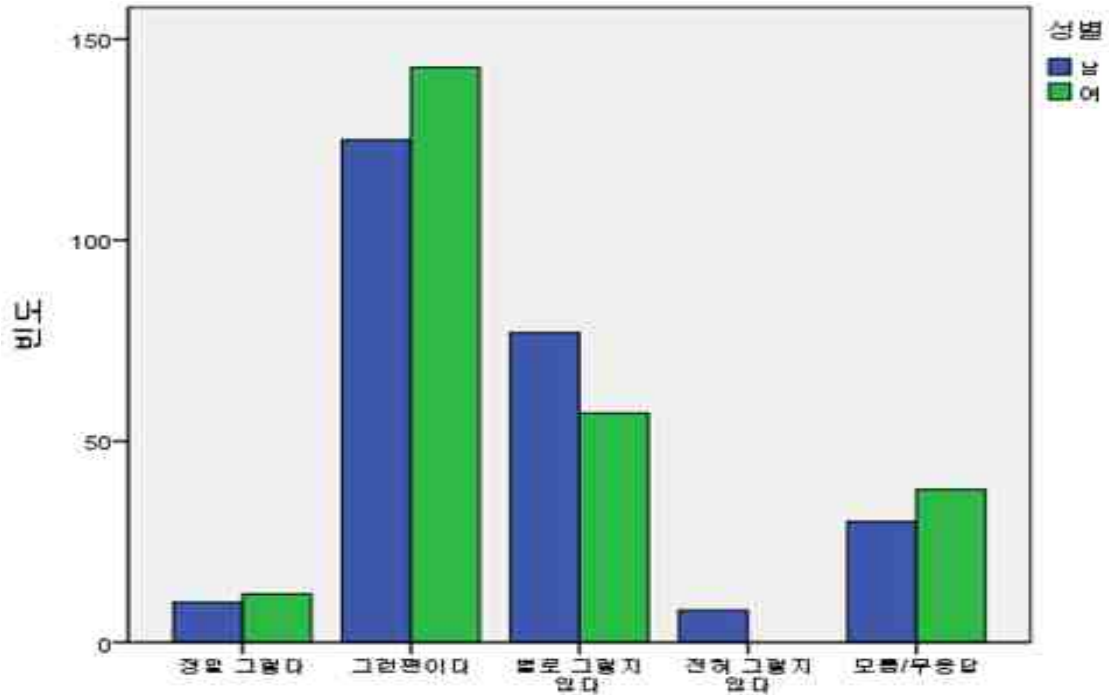
13) df는 자유도를 의미하며, 향후 통계분석에서 그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표 2.4>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험성 인식여부

| 구분 | 응답 | 정말 그렇다 명(%) | 그런 편이다 명(%) | 별로 그렇지않다 명(%) | 전혀 그렇지않다 명(%) | 모름/ 무응답 명(%)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303 | 16 (5.3%) | 163 (53.8%) | 73 (24.1%) | 4 (1.3%) | 47 (15.5%) |
| 중소도시 | 179 | 6 (3.4%) | 95 (53.1%) | 55 (30.7%) | 4 (2.2%) | 19 (10.6%) |
| 농어촌 | 18 | 0 (0.0%) | 10 (55.6%) | 6 (33.3%) | 0 (0.0%) | 2 (11.1%) |
| ***성별*** | | | | | | |
| 남자 | 250 | 10 (4.0%) | 125 (50.0%) | 77 (30.8%) | 8 (3.2%) | 30 (12.0%) |
| 여자 | 250 | 12 (4.8%) | 143 (57.2%) | 57 (22.8%) | 0 (0.0%) | 38 (15.2%) |
| ***연령대*** | | | | | | |
| 20대 | 93 | 9 (9.7%) | 55 (59.1%) | 17 (18.3%) | 1 (1.1%) | 11 (11.8%) |
| 30대 | 175 | 8 (4.6%) | 100 (57.1%) | 38 (21.7%) | 1 (0.6%) | 28 (16.0%) |
| 40대 | 148 | 4 (2.7%) | 68 (45.9%) | 50 (33.8%) | 4 (2.7%) | 22 (14.9%) |
| 50대 | 66 | 1 (1.5%) | 36 (54.5%) | 22 (33.3%) | 1 (1.5%) | 6 (9.1%) |
| 60대 | 18 | 0 (0.0%) | 9 (50.0%) | 7 (38.9%) | 1 (5.6%) | 1 (5.6%) |
| ***범죄피해경험*** | | | | | | |
| 있다 | 137 | 6 (4.4%) | 79 (57.7%) | 34 (24.8%) | 2 (1.5%) | 16 (11.7%) |
| 없다 | 363 | 16 (4.4%) | 189 (52.1%) | 100 (27.5%) | 6 (1.7%) | 52 (14.3%) |
| ***교육수준*** | | | | | | |
| 중졸 이하 | 2 | 0 (0.0%) | 2 (100.0%) | 0 (0.0%) | 0 (0.0%) | 0 (0.0%) |
| 고졸 | 79 | 4 (5.1%) | 34 (43.0%) | 25 (31.6%) | 2 (2.5%) | 14 (17.7%) |
| 대졸 이상 | 358 | 15 (4.2%) | 203 (56.7%) | 90 (25.1%) | 4 (1.1%) | 46 (12.8%) |
| 대학원졸 이상 | 61 | 3 (4.9%) | 29 (47.5%) | 19 (31.1%) | 2 (3.3%) | 8 (13.1%) |
| ***소득수준*** | | | | | | |
| 100만원 이하 | 9 | 1 (11.1%) | 4 (44.4%) | 2 (22.2%) | 0 (0.0%) | 2 (22.2%) |
| 100-200만원 미만 | 46 | 4 (8.7%) | 19 (41.3%) | 17 (37.0%) | 0 (0.0%) | 6 (13.0%) |
| 200-300만원 미만 | 82 | 2 (2.4%) | 49 (59.8%) | 17 (20.7%) | 2 (2.4%) | 12 (14.6%) |
| 300-400만원 미만 | 115 | 4 (3.5%) | 58 (50.4%) | 30 (26.1%) | 3 (2.6%) | 20 (17.4%) |
| 400-500만원 미만 | 103 | 3 (2.9%) | 55 (53.4%) | 32 (31.1%) | 1 (1.0%) | 12 (11.7%) |
| 500-600만원 미만 | 66 | 2 (3.0%) | 40 (60.6%) | 19 (28.8%) | 0 (0.0%) | 5 (7.6%) |
| 600-700만원 미만 | 37 | 1 (2.7%) | 19 (51.4%) | 10 (7.5%) | 1 (2.7%) | 6 (16.2%) |
| 700만원 이상 | 31 | 3 (9.7%) | 18 (58.1%) | 7 (22.6%) | 1 (3.2%) | 2 (6.5%) |
| 무응답 | 11 | 2 (18.2%) | 6 (54.5%) | 0 (0.0%) | 0 (0.0%) | 3 (27.3%) |
| ***종교*** | | | | | | |
| 무교 | 238 | 11 (4.6%) | 136 (57.1%) | 58 (24.4%) | 3 (1.3%) | 30 (12.6%) |
| 기독교 | 111 | 5 (4.5%) | 58 (52.3%) | 31 (27.9%) | 1 (0.9%) | 16 (14.4%) |
| 불교 | 77 | 3 (3.9%) | 43 (55.8%) | 21 (27.3%) | 1 (1.3%) | 9 (11.7%) |
| 천주교 | 60 | 3 (5.0%) | 24 (40.0%) | 22 (36.7%) | 2 (3.3%) | 9 (15.0%) |
| 기타 | 14 | 0 (0.0%) | 7 (50.0%) | 2 (14.3%) | 1 (7.1%) | 4 (28.6%) |
| 전체 | 500 | 22 (4.4%) | 268 (53.6%) | 134 (26.8%) | 8 (1.6%) | 68 (1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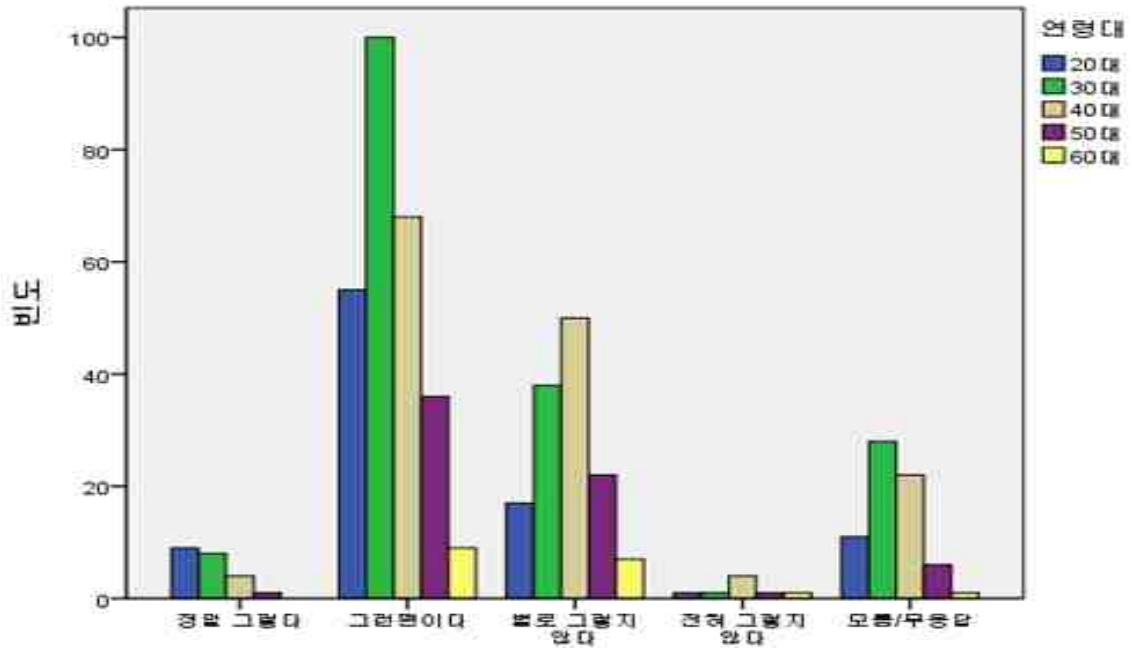
우선, 성별에 따라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는 인식차이와 관련하여,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사회로 돌아오는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위험을 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참조).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한 여자 250명 중에 155명이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 와 '그런 편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한 경우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자는 총 응답자 250여명들 중에 135명만이 ‘정말 그렇다’ 와 ‘그런 편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85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와 ‘별로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하고 있어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이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사회적인 위험을 좀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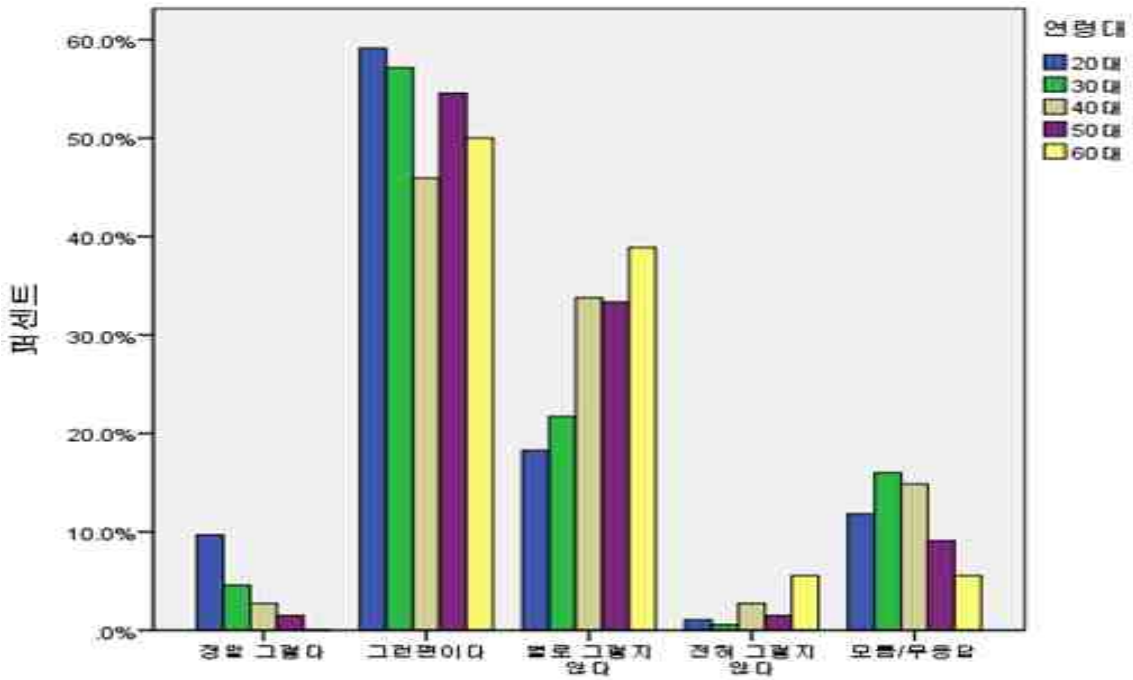



< 그림 2.1> 성별에 따라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는 인식 차이(빈도)

또한, 연령대 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20대(68.8%=64명 ‘그런 편이다’ 또는 ‘정말 그렇다’ 라고 생각함)가 다른 연령대(30대; 61.7%=108명, 40대; 48.6%=72명, 50대; 56.0%=37명, 60대=9명; 50.0%)의 사람들보다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2.2>, <그림 2.3>에 제시하였다.




<그림 2.2> 연령대에 따라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는 인식 차이(빈도)




<그림 2.3> 연령대에 따라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는 인식 차이(퍼센트)

③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 정도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나는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옆집으로 이사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500명중 1%(5명)가 ‘정말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15%(75명)가 ‘그런 편이다’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44%(22명)는 ‘별로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고 37.2%(186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8%(14명)는 모름 혹은 무응답하였다(표 2.5 참조). 어떤 변인에서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면, 성별($\chi^2(4, N=500) = 26.356$, $p < .001$)과 연령대($\chi^2(16, N=500) = 55.481$, $p < .001$)에 따라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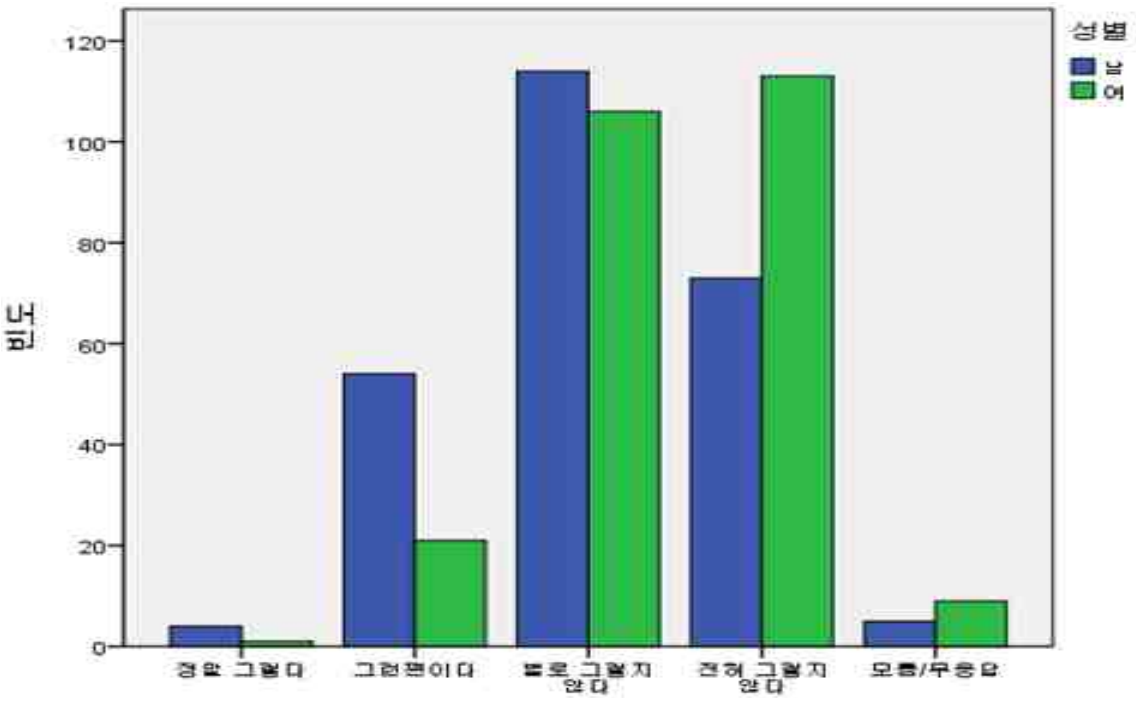
질문: 나는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옆집으로 이사와도 괜찮다.

<표 2.5>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 여부

| 구분 | 응답 | 정말 그렇다 명(%) | 그런 편이다 명(%) | 별로 그렇지않다 명(%) | 전혀 그렇지않다 명(%) | 모름/ 무응답 명(%)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303 | 4 (1.3%) | 46 (15.2%) | 120 (39.6%) | 122 (40.3%) | 11 (3.6%) |
| 중소도시 | 179 | 1 (0.6%) | 26 (14.5%) | 90 (50.3%) | 60 (33.5%) | 2 (1.1%) |
| 농어촌 | 18 | 0 (0.0%) | 3 (16.7%) | 10 (55.6%) | 4 (22.2%) | 1 (5.6%) |
| ***성별*** | | | | | | |
| 남자 | 250 | 4 (1.6%) | 54 (21.6%) | 114 (45.6%) | 73 (29.2%) | 5 (2.0%) |
| 여자 | 250 | 1 (0.4%) | 21 (8.4%) | 106 (42.4%) | 113 (45.2%) | 9 (3.6%) |
| ***연령대*** | | | | | | |
| 20대 | 93 | 1 (1.1%) | 9 (9.7%) | 23 (24.7%) | 58 (62.4%) | 2 (2.2%) |
| 30대 | 175 | 1 (0.6%) | 18 (10.3%) | 79 (45.1%) | 72 (41.1%) | 5 (2.9%) |
| 40대 | 148 | 1 (0.7%) | 29 (19.6%) | 71 (48.0%) | 42 (28.4%) | 5 (3.4%) |
| 50대 | 66 | 1 (1.5%) | 14 (21.2%) | 38 (57.6%) | 11 (16.7%) | 2 (3.0%) |
| 60대 | 18 | 1 (5.6%) | 5 (27.8%) | 9 (50.0%) | 3 (16.7%) | 0 (0.0%) |
| ***범죄피해경험*** | | | | | | |
| 있다 | 137 | 2 (1.5%) | 24 (17.5%) | 54 (39.4%) | 54 (39.4%) | 3 (2.2%) |
| 없다 | 363 | 3 (0.8%) | 51 (14.0%) | 166 (45.7%) | 132 (36.4%) | 11 (3.0%) |
| ***교육수준*** | | | | | | |
| 중졸 이하 | 2 | 0 (0.0%) | 0 (0.0%) | 1 (50.0%) | 1 (50.0%) | 0 (0.0%) |
| 고졸 | 79 | 1 (1.3%) | 17 (21.5%) | 29 (36.7%) | 28 (35.4%) | 4 (5.1%) |
| 대졸 이상 | 358 | 3 (0.8%) | 43 (12.0%) | 166 (46.4%) | 138 (38.5%) | 8 (2.2%) |
| 대학원졸 이상 | 61 | 1 (1.6%) | 15 (24.6%) | 24 (39.3%) | 19 (31.1%) | 2 (3.3%) |
| ***소득수준*** | | | | | | |
| 100만원 이하 | 9 | 1 (11.1%) | 0 (0.0%) | 6 (66.7%) | 1 (11.1%) | 1 (11.1%) |
| 100-200만원 미만 | 46 | 0 (0.0%) | 13 (28.3%) | 19 (41.3%) | 13 (28.3%) | 1 (1.3%) |
| 200-300만원 미만 | 82 | 0 (0.0%) | 12 (14.6%) | 35 (42.7%) | 33 (40.2%) | 2 (2.4%) |
| 300-400만원 미만 | 115 | 1 (0.9%) | 14 (12.2%) | 56 (48.7%) | 41 (35.7%) | 3 (2.6%) |
| 400-500만원 미만 | 103 | 1 (1.0%) | 15 (14.6%) | 43 (41.7%) | 42 (40.8%) | 2 (1.9%) |
| 500-600만원 미만 | 66 | 0 (0.0%) | 10 (15.2%) | 32 (48.5%) | 24 (36.4%) | 0 (0.0%) |
| 600-700만원 미만 | 37 | 1 (2.7%) | 7 (18.9%) | 14 (37.8%) | 13 (35.1%) | 2 (5.4%) |
| 700만원 이상 | 31 | 1 (3.2%) | 4 (12.9%) | 13 (41.9%) | 12 (38.7%) | 1 (3.2%) |
| 무응답 | 11 | 0 (0.0%) | 0 (0.0%) | 2 (18.2%) | 7 (63.6%) | 2 (18.2%) |
| ***종교*** | | | | | | |
| 무교 | 238 | 2 (0.8%) | 32 (13.4%) | 101 (42.4%) | 96 (40.3%) | 7 (2.9%) |
| 기독교 | 111 | 1 (0.9%) | 19 (17.1%) | 50 (45.0%) | 38 (34.2%) | 3 (2.7%) |
| 불교 | 77 | 0 (0.0%) | 11 (14.3%) | 40 (51.9%) | 26 (33.8%) | 0 (0.0%) |
| 천주교 | 60 | 1 (1.7%) | 11 (18.3%) | 21 (35.0%) | 23 (38.3%) | 4 (6.7%) |
| 기타 | 14 | 1 (7.1%) | 2 (14.3%) | 8 (57.1%) | 3 (21.4%) | 0 (0.0%) |
| 전체 | 500 | 5 (1.0%) | 75 (15.0%) | 220 (44.0%) | 186 (37.2%) | 14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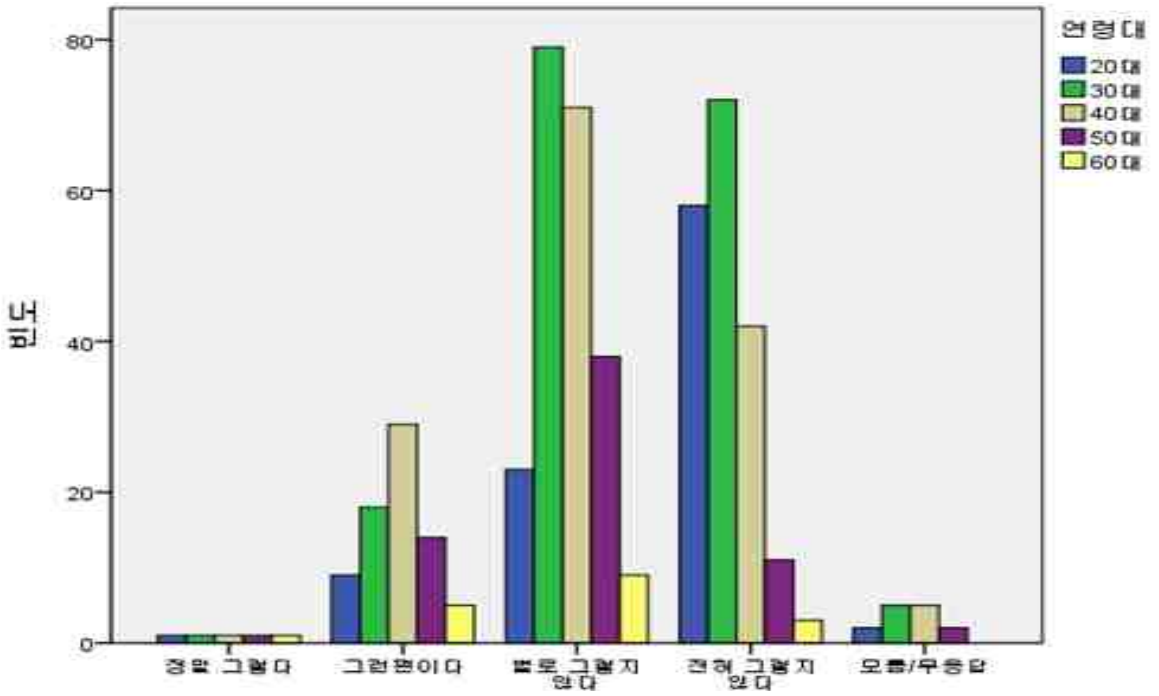
우선, 성별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의 경우 이사 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한 여성은 45.2%(113명)였고 남성은 29.2%(73명)으로 여성이 더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조). '별로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한 경우는 여성은 42.2%(106명), 남성은 45.6%(114명)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런 편이다' 라고 답변한 경우는 남성이 21.6%(54명)인 반면 여성은 8.4%(21명)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의 차이는 두드

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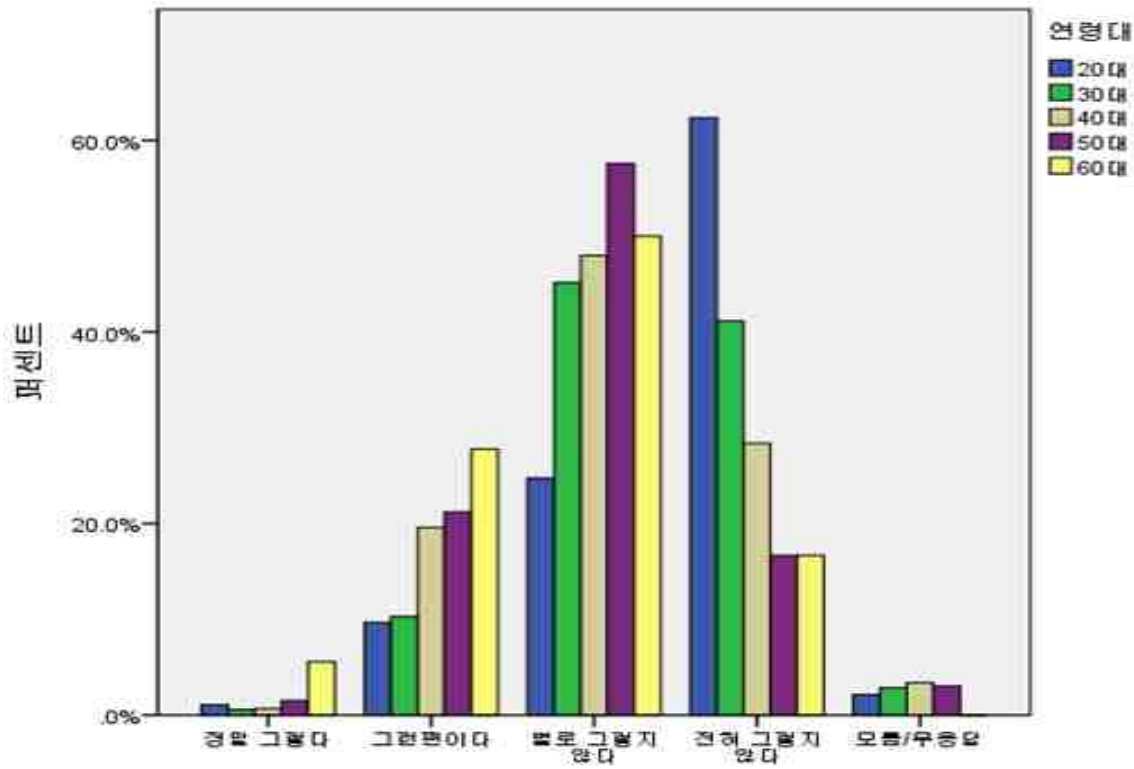



<그림 2.4> 성별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 여부(빈도)

또한 연령대를 보면 20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가 62.4%(5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 60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각각 45.1%(79명), 48.0%(71명), 57.6%(38명), 50.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우 20대와 30대 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40-60대가 출소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2.5>와 <그림 2.6>에 제시하였다.




<그림 2.5> 연령대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 여부(빈도)




<그림 2.6> 연령대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 여부(퍼센트)

④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내가 임대할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인 500명중 0.4%(2명), 14.8%(74명)이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를 선택하였고, 47.6%(238명)와 31.2%(156명)은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6%(30명)는 모름/무응답 하였다(표 2.6 참조).

어떤 변인에서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면, 성별($\chi^2(4, N=500) = 15.913$, $p = .003$), 연령대($\chi^2(16, N=500) = 34.653$, $p = .004$), 종교($\chi^2(16, N=500) = 37.775$, $p = .002$)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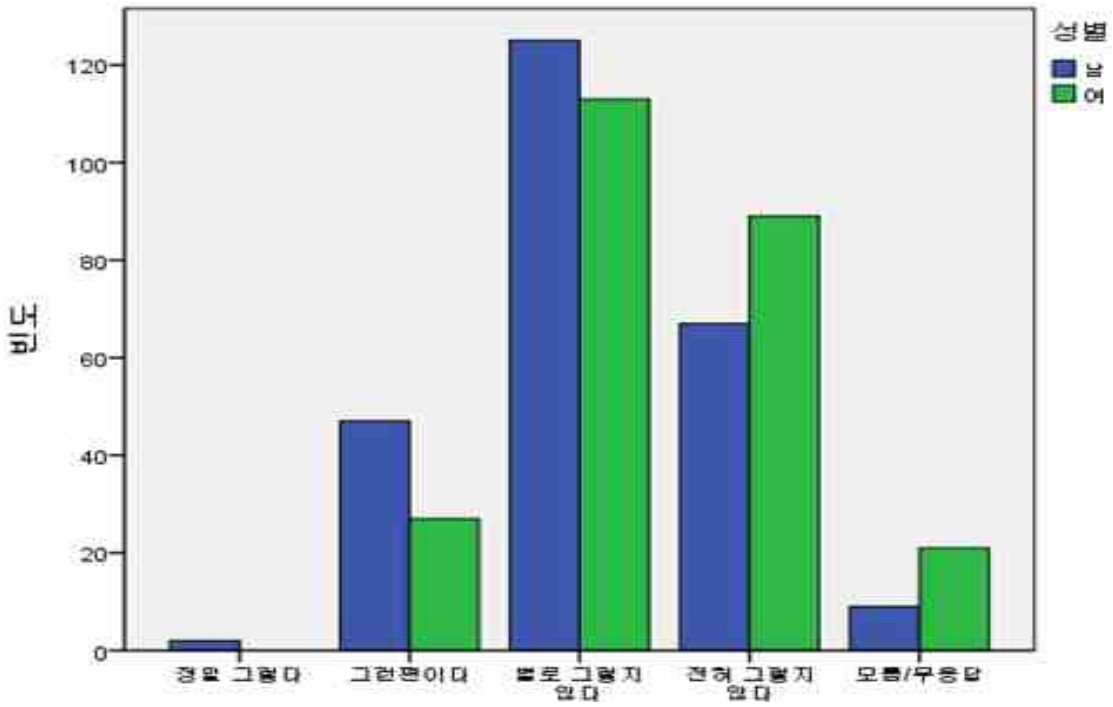
질문: 내가 임대할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게 임대해 주겠다.

<표 2.6>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

| 구분 | 응답 | 정말 그렇다 명(%) | 그런 편이다 명(%) | 별로 그렇지않다 명(%) | 전혀 그렇지않다 명(%) | 모름/ 무응답 명(%)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303 | 2 (0.7%) | 49 (16.2%) | 139 (45.9%) | 97 (32.0%) | 16 (5.3%) |
| 중소도시 | 179 | 0 (0.0%) | 21 (11.7%) | 92 (51.4%) | 54 (30.2%) | 12 (6.7%) |
| 농어촌 | 18 | 0 (0.0%) | 4 (22.2%) | 7 (38.9%) | 5 (27.8%) | 2 (11.1%) |
| ***성별*** | | | | | | |
| 남자 | 250 | 2 (0.8%) | 47 (18.8%) | 125 (50.0%) | 67 (26.8%) | 9 (3.6%) |
| 여자 | 250 | 0 (0.0%) | 27 (10.8%) | 113 (45.2%) | 89 (35.6%) | 21 (8.4%) |
| ***연령대*** | | | | | | |
| 20대 | 93 | 0 (0.0%) | 10 (10.8%) | 41 (44.1%) | 36 (38.7%) | 6 (6.5%) |
| 30대 | 175 | 0 (0.0%) | 29 (16.6%) | 71 (40.6%) | 65 (37.1%) | 10 (5.7%) |
| 40대 | 148 | 1 (0.7%) | 20 (13.5%) | 76 (51.4%) | 39 (26.4%) | 12 (8.1%) |
| 50대 | 66 | 0 (0.0%) | 10 (15.2%) | 41 (62.1%) | 13 (19.7%) | 2 (3.0%) |
| 60대 | 18 | 1 (5.6%) | 5 (27.8%) | 9 (50.0%) | 3 (16.7%) | 0 (0.0%) |
| ***범죄피해경험*** | | | | | | |
| 있다 | 137 | 1 (0.7%) | 22 (16.1%) | 59 (43.1%) | 52 (38.0%) | 3 (2.2%) |
| 없다 | 363 | 1 (0.3%) | 52 (14.3%) | 179 (49.3%) | 104 (28.7%) | 27 (7.4%) |
| ***교육수준*** | | | | | | |
| 중졸 이하 | 2 | 0 (0.0%) | 0 (0.0%) | 1 (50.0%) | 1 (50.0%) | 0 (0.0%) |
| 고졸 | 79 | 0 (0.0%) | 15 (19.0%) | 35 (44.3%) | 22 (27.8%) | 7 (8.9%) |
| 대졸 이상 | 358 | 2 (0.6%) | 43 (12.0%) | 175 (48.9%) | 117 (32.7%) | 21 (5.9%) |
| 대학원졸 이상 | 61 | 0 (0.0%) | 16 (26.2%) | 27 (44.3%) | 16 (26.2%) | 2 (3.3%) |
| ***소득수준*** | | | | | | |
| 100만원 이하 | 9 | 0 (0.0%) | 2 (22.2%) | 4 (44.4%) | 2 (22.2%) | 1 (11.1%) |
| 100-200만원 미만 | 46 | 0 (0.0%) | 10 (21.7%) | 20 (43.5%) | 15 (32.6%) | 1 (2.2%) |
| 200-300만원 미만 | 82 | 0 (0.0%) | 10 (12.2%) | 39 (47.6%) | 26 (31.7%) | 7 (8.5%) |
| 300-400만원 미만 | 115 | 1 (0.9%) | 16 (13.9%) | 58 (50.4%) | 34 (29.6%) | 6 (5.2%) |
| 400-500만원 미만 | 103 | 0 (0.0%) | 17 (16.5%) | 46 (44.7%) | 35 (34.0%) | 5 (4.9%) |
| 500-600만원 미만 | 66 | 0 (0.0%) | 10 (15.2%) | 33 (50.0%) | 21 (31.8%) | 2 (3.0%) |
| 600-700만원 미만 | 37 | 0 (0.0%) | 8 (21.6%) | 19 (51.4%) | 8 (21.6%) | 2 (5.4%) |
| 700만원 이상 | 31 | 1 (3.2%) | 1 (3.2%) | 14 (45.2%) | 13 (41.9%) | 2 (6.5%) |
| 무응답 | 11 | 0 (0.0%) | 0 (0.0%) | 5 (45.5%) | 2 (18.2%) | 4 (36.4%) |
| ***종교*** | | | | | | |
| 무교 | 238 | 1 (0.4%) | 35 (14.7%) | 111 (46.6%) | 76 (31.9%) | 15 (6.3%) |
| 기독교 | 111 | 0 (0.0%) | 21 (18.9%) | 57 (51.4%) | 30 (27.0%) | 3 (2.7%) |
| 불교 | 77 | 0 (0.0%) | 7 (9.1%) | 43 (55.8%) | 24 (31.2%) | 3 (3.9%) |
| 천주교 | 60 | 0 (0.0%) | 10 (16.7%) | 22 (36.7%) | 19 (31.7%) | 9 (15.0%) |
| 기타 | 14 | 1 (7.1%) | 1 (7.1%) | 5 (35.7%) | 7 (50.0%) | 0 (0.0%) |
| 전체 | 500 | 2 (0.4%) | 74 (14.8%) | 238 (47.6%) | 156 (31.2%) | 30 (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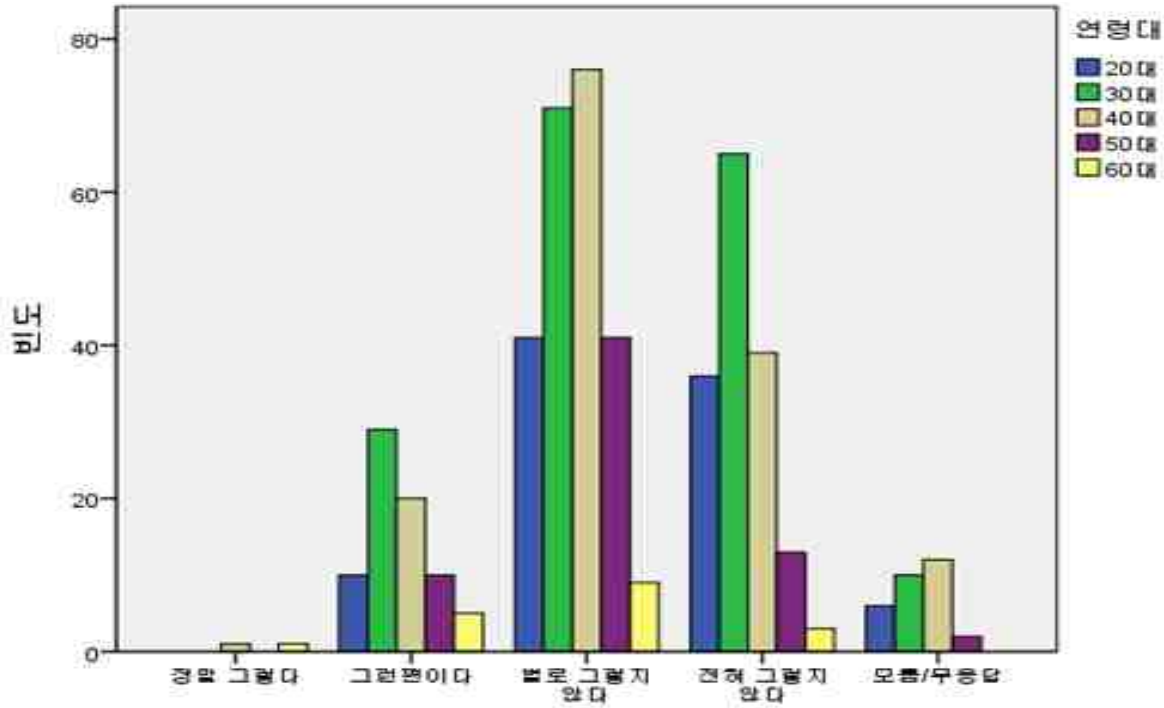
우선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인 ‘별로 그렇지 않다’ 라고 답변한 경우 여성이 45.2%(113명), 남성이 50.0%(125명)로 부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답변한 경우는 여성이 35.6%(89명)인 반면 남성은 26.8%(67명)으로 여성의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그러나 ‘그런 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우는 남성이 18.8%(47명)인 반면, 여성은 10.8%(27명)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출소자나 그 가족들에게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그림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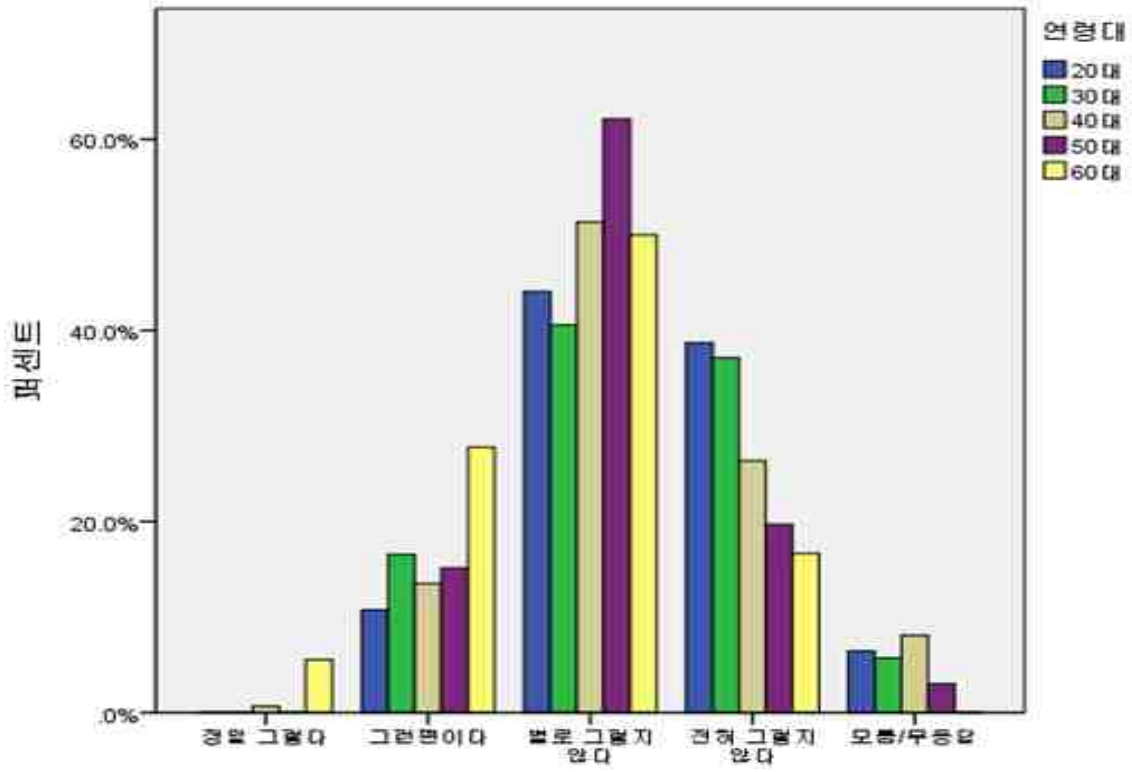



<그림 2.7> 성별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빈도)

연령대의 경우에도 각 연령대를 불문하고 '별로 그렇지 않다' 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50대와 60대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가 각각 19.7%(13명)과 16.7%(3명)이었지만 '그런 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우도 각각 15.2%(10명)과 27.8%(5명)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2.8과 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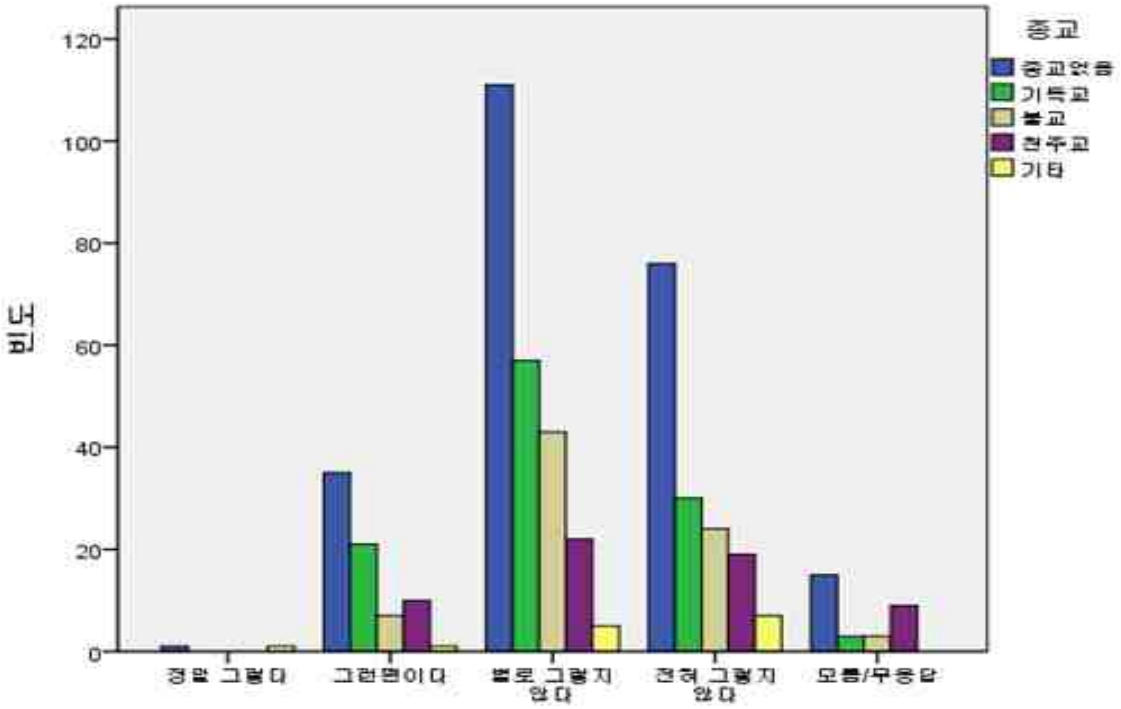



<그림 2.8> 연령대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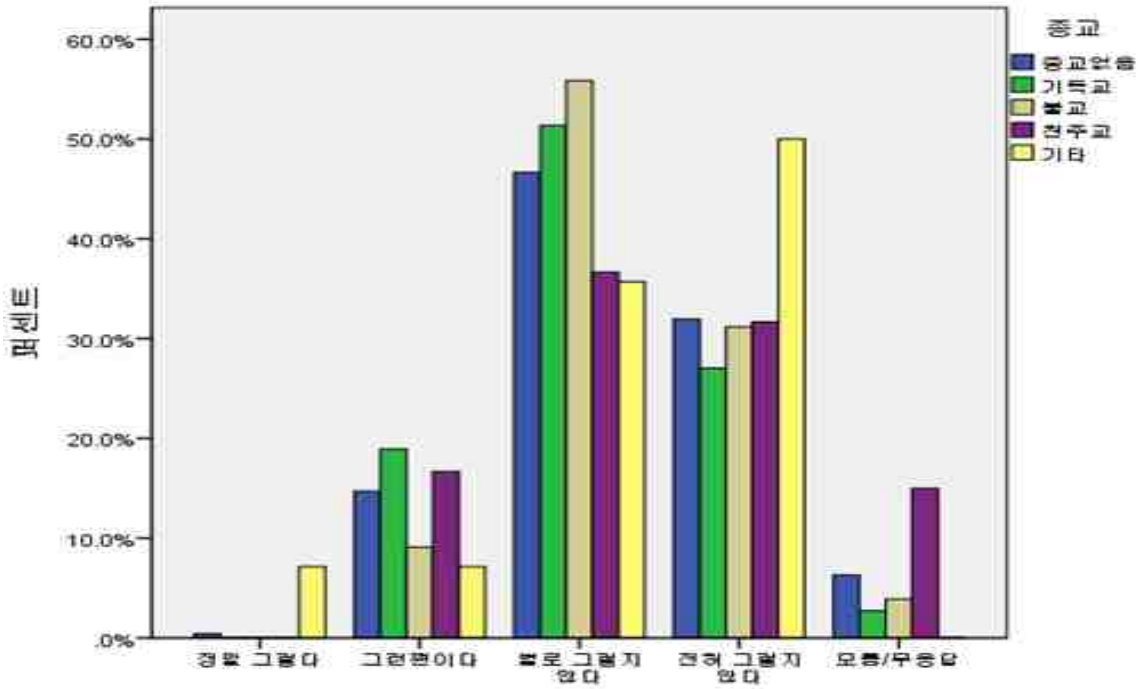



<그림 2.9> 연령대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퍼센트)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거나 어떠한 종교이냐를 불문하고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27.0%(30명)이지만 ‘그런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우도 18.9%(21명)으로 나타나 타 종교나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결과는 <그림 2.10>과 <그림 2.11>에 제시하였다.




<그림 2.10> 종교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빈도)




<그림 2.11> 종교에 따른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퍼센트)

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소자에 대한 직장동료로 수용 여부

출소자에 대한 직장동료로서 수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직장동료가 출소자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응답자 전체 500여 명 중 1.4%(7명)과 30.4%(152명)이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64.6%의 응답자들이 출소자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표 2.7 참조).

어떤 변인에서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면, 범죄 피해 경험($\chi^2(4, N=500) = 10.786$, $p = .029$)에 따라 출소자를 직장동료로 수용하는지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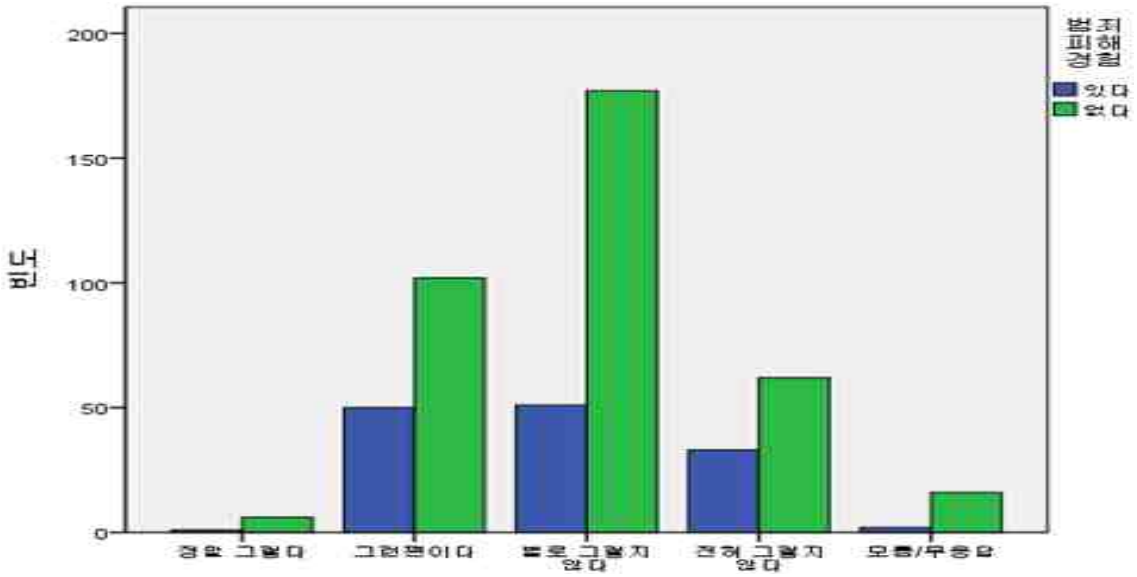
질문: 직장동료가 출소자 혹은 그 가족이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표 2.7>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장동료로 수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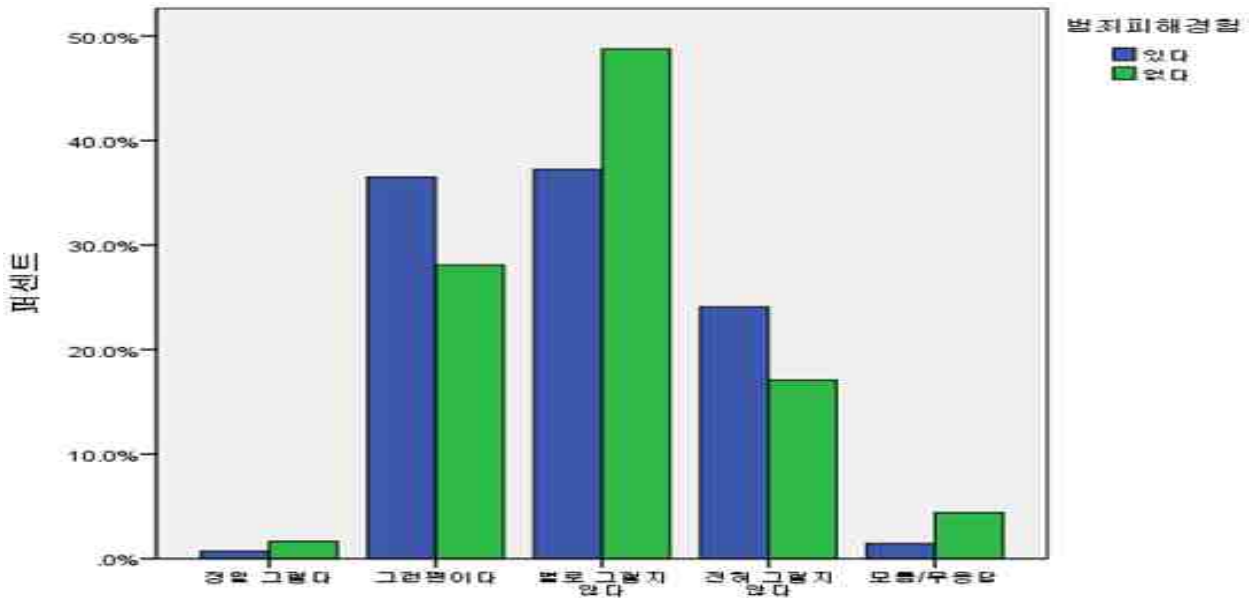
| 구분 | 응답 | 정말 그렇다 명(%) | 그런 편이다 명(%) | 별로 그렇지않다 명(%) | 전혀 그렇지않다 명(%) | 모름/ 무응답 명(%)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303 | 6 (2.0%) | 93 (30.7%) | 134 (44.2%) | 60 (19.8%) | 10 (3.3%) |
| 중소도시 | 179 | 1 (0.6%) | 56 (31.3%) | 84 (46.9%) | 32 (17.9%) | 6 (3.4%) |
| 농어촌 | 18 | 0 (0.0%) | 3 (16.7%) | 10 (55.6%) | 3 (16.7%) | 2 (11.1%) |
| ***성별*** | | | | | | |
| 남자 | 250 | 5 (2.0%) | 84 (33.6%) | 114 (45.6%) | 40 (16.0%) | 7 (2.8%) |
| 여자 | 250 | 2 (0.8%) | 68 (27.2%) | 114 (45.6%) | 55 (22.0%) | 11 (4.4%) |
| ***나이*** | | | | | | |
| 20대 | 93 | 0 (0.0%) | 19 (20.4%) | 47 (50.5%) | 22 (23.7%) | 5 (5.4%) |
| 30대 | 175 | 1 (0.6%) | 53 (30.3%) | 80 (45.7%) | 35 (20.0%) | 6 (3.4%) |
| 40대 | 148 | 3 (2.0%) | 51 (34.5%) | 59 (39.9%) | 29 (19.6%) | 6 (4.1%) |
| 50대 | 66 | 2 (3.0%) | 19 (28.8%) | 36 (54.5%) | 8 (12.1%) | 1 (1.5%) |
| 60대 | 18 | 1 (5.6%) | 10 (55.6%) | 6 (33.3%) | 1 (5.6%) | 0 (0.0%) |
| ***범죄피해경험*** | | | | | | |
| 있다 | 137 | 1 (0.7%) | 50 (36.5%) | 51 (37.2%) | 33 (24.1%) | 2 (1.5%) |
| 없다 | 363 | 6 (1.7%) | 102 (28.1%) | 177 (48.8%) | 62 (17.1%) | 16 (4.4%) |
| ***교육수준*** | | | | | | |
| 중졸 이하 | 2 | 0 (0.0%) | 1 (50.0%) | 1 (50.0%) | 0 (0.0%) | 0 (0.0%) |
| 고졸 | 79 | 3 (3.8%) | 23 (29.1%) | 37 (46.8%) | 11 (13.9%) | 5 (6.3%) |
| 대졸 이상 | 358 | 3 (0.8%) | 105 (29.3%) | 165 (46.1%) | 73 (20.4%) | 12 (3.4%) |
| 대학원졸 이상 | 61 | 1 (1.6%) | 23 (37.7%) | 25 (41.0%) | 11 (18.0%) | 1 (1.6%) |
| ***소득수준*** | | | | | | |
| 100만원 이하 | 9 | 0 (0.0%) | 3 (33.3%) | 4 (44.4%) | 1 (11.1%) | 1 (11.1%) |
| 100-200만원 미만 | 46 | 0 (0.0%) | 22 (47.8%) | 16 (34.8%) | 8 (17.4%) | 0 (0.0%) |
| 200-300만원 미만 | 82 | 1 (1.2%) | 26 (31.7%) | 47 (57.3%) | 8 (9.8%) | 0 (0.0%) |
| 300-400만원 미만 | 115 | 2 (1.7%) | 30 (26.1%) | 53 (46.1%) | 25 (21.7%) | 5 (4.3%) |
| 400-500만원 미만 | 103 | 2 (1.9%) | 35 (34.0%) | 38 (36.9%) | 24 (23.3%) | 4 (3.9%) |
| 500-600만원 미만 | 66 | 0 (0.0%) | 17 (25.8%) | 33 (50.0%) | 13 (19.7%) | 3 (4.5%) |
| 600-700만원 미만 | 37 | 1 (2.7%) | 7 (18.9%) | 19 (51.4%) | 8 (21.6%) | 2 (5.4%) |
| 700만원 이상 | 31 | 1 (3.2%) | 8 (25.8%) | 14 (45.2%) | 7 (22.6%) | 1 (3.2%) |
| 무응답 | 11 | 0 (0.0%) | 4 (36.4%) | 4 (36.4%) | 1 (9.1%) | 2 (18.2%) |
| ***종교*** | | | | | | |
| 무교 | 238 | 2 (0.8%) | 70 (29.4%) | 117 (49.2%) | 39 (16.4%) | 10 (4.2%) |
| 기독교 | 111 | 2 (1.8%) | 37 (33.3%) | 47 (42.3%) | 23 (20.7%) | 2 (1.8%) |
| 불교 | 77 | 0 (0.0%) | 23 (29.9%) | 37 (48.1%) | 17 (22.1%) | 0 (0.0%) |
| 천주교 | 60 | 2 (3.3%) | 18 (30.0%) | 24 (40.0%) | 12 (20.0%) | 4 (6.7%) |
| 기타 | 14 | 1 (7.1%) | 4 (28.6%) | 3 (21.4%) | 4 (28.6%) | 2 (14.3%) |
| 전체 | 500 | 7 (1.4%) | 152 (30.4%) | 228 (45.6%) | 95 (19.0%) | 18 (3.6%)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직장동료가 출소자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우는 '정말 그렇다'가 0.7%(1명), '그런 편이다'가 36.5%(50명)인 반면 부정적인 답변인 '별로 그렇지 않다'가 37.2%(51명), '전혀 그렇지 않다'가 24.1%(33명)로 나타나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답변인 '정말 그렇다'가 1.7%(6명), '그런 편이다'가 28.1%(102명)이었고 부정적인 답변인 '별로 그렇지

않다’ 가 48.8%(177명), ‘전혀 그렇지 않다’ 가 17.1%(62명)로 역시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 범죄 피해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범죄 피해 경험자가 27.4%(137명)이고 비경험자가 72.6%(363명)으로 범죄 피해 경험자의 숫자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 때문이지 여부는 다른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직장 동료로서 수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12>와 <그림 2.13>에 제시하였다.




<그림 2.12> 범죄 피해 경험에 따른 출소자에 대한 직장동료로 수용 여부(빈도)




<그림 2.13> 범죄 피해 경험에 따른 출소자에 대한 직장동료로 수용 여부(퍼센트)

⑥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 여부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고용주라면, 나는 출소자나 그 가족임을 알더라도 그들을 고용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500명 중 22.8%가 그런 편이거나 정말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71.8%의 참여자들이 별로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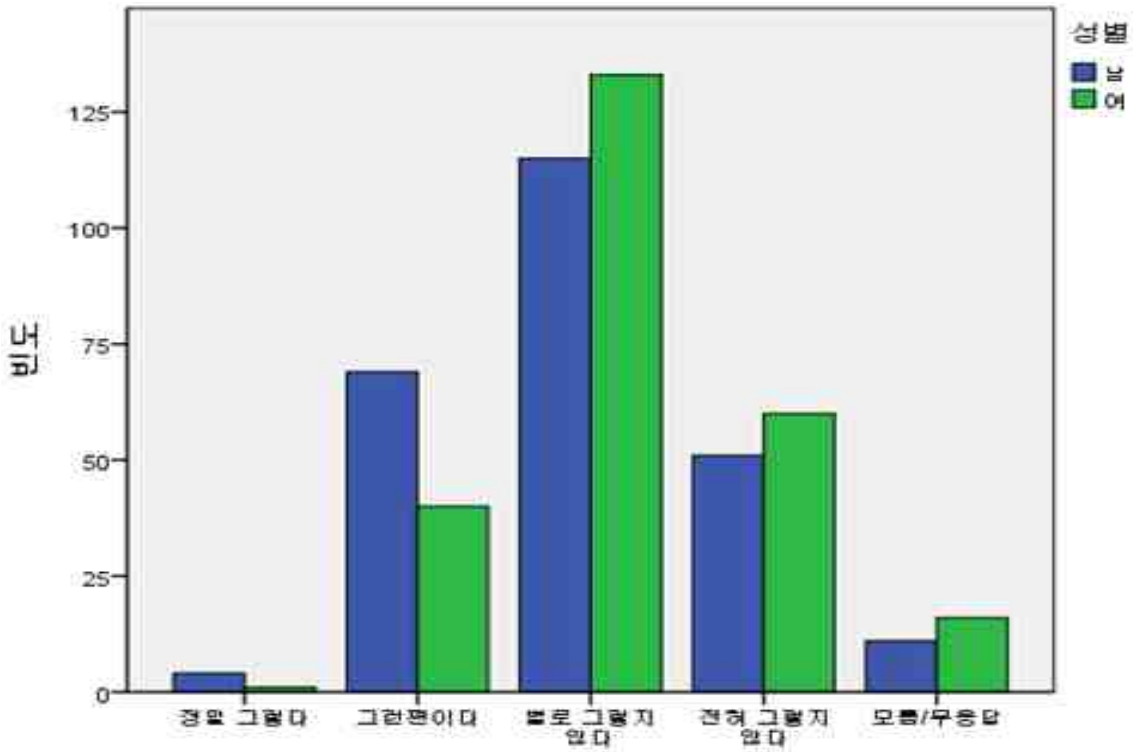
어떤 변인에서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면, 성별($\chi^2(4, N=500) = 12.478$, $p = .014$), 연령대($\chi^2(16, N=500) = 27.936$, $p = .032$), 최종학력($\chi^2(12, N=500) = 24.534$, $p = .017$)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내가 고용주라면, 나는 출소자나 그 가족임을 알더라도 그들을 고용한다.

<표 2.8>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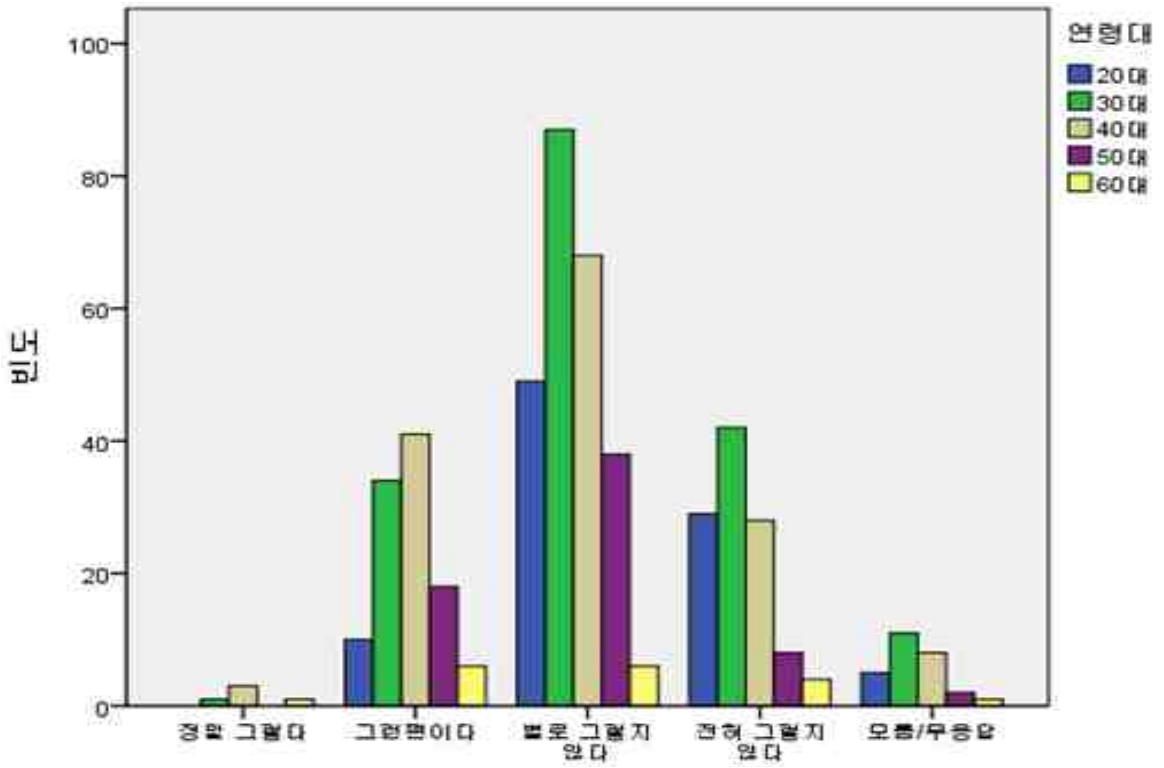
| 구분 | 응답 | 정말 그렇다 명(%) | 그런 편이다 명(%) | 별로 그렇지않다 명(%) | 전혀 그렇지않다 명(%) | 모름/ 무응답 명(%)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303 | 4 (1.3%) | 63 (20.8%) | 154 (50.8%) | 71 (23.4%) | 11 (3.6%) |
| 중소도시 | 179 | 0 (0.0%) | 44 (24.6%) | 86 (48.0%) | 35 (19.6%) | 14 (7.8%) |
| 농어촌 | 18 | 1 (5.6%) | 2 (11.1%) | 8 (44.4%) | 5 (27.8%) | 2 (11.1%) |
| ***성별*** | | | | | | |
| 남자 | 250 | 4 (1.6%) | 69 (27.6%) | 115 (46.0%) | 51 (20.4%) | 11 (4.4%) |
| 여자 | 250 | 1 (0.4%) | 40 (16.0%) | 133 (53.2%) | 60 (24.0%) | 16 (6.4%) |
| ***연령대*** | | | | | | |
| 20대 | 93 | 0 (0.0%) | 10 (10.8%) | 49 (52.7%) | 29 (31.2%) | 5 (5.4%) |
| 30대 | 175 | 1 (0.6%) | 34 (19.4%) | 87 (49.7%) | 42 (24.0%) | 11 (6.3%) |
| 40대 | 148 | 3 (2.0%) | 41 (27.7%) | 68 (45.9%) | 28 (18.9%) | 8 (5.4%) |
| 50대 | 66 | 0 (0.0%) | 18 (27.3%) | 38 (57.6%) | 8 (12.1%) | 2 (3.0%) |
| 60대 | 18 | 1 (5.6%) | 6 (33.3%) | 6 (33.3%) | 4 (22.2%) | 1 (5.6%) |
| ***범죄피해경험*** | | | | | | |
| 있다 | 137 | 1 (0.7%) | 36 (26.3%) | 62 (45.3%) | 33 (24.1%) | 5 (3.6%) |
| 없다 | 363 | 4 (1.1%) | 73 (20.1%) | 186 (51.2%) | 78 (21.5%) | 22 (6.1%) |
| ***교육수준*** | | | | | | |
| 중졸 이하 | 2 | 0 (0.0%) | 0 (0.0%) | 2 (100.0%) | 0 (0.0%) | 0 (0.0%) |
| 고졸 | 79 | 0 (0.0%) | 24 (30.4%) | 33 (41.8%) | 12 (15.2%) | 10 (12.7%) |
| 대졸 이상 | 358 | 5 (1.4%) | 66 (18.4%) | 186 (52.0%) | 87 (24.3%) | 14 (3.9%) |
| 대학원졸 이상 | 61 | 0 (0.0%) | 19 (31.1%) | 27 (44.3%) | 12 (19.7%) | 3 (4.9%) |
| ***소득수준*** | | | | | | |
| 100만원 이하 | 9 | 0 (0.0%) | 1 (11.1%) | 5 (55.6%) | 1 (11.1%) | 2 (22.2%) |
| 100-200만원 미만 | 46 | 0 (0.0%) | 13 (28.3%) | 22 (47.8%) | 9 (19.6%) | 2 (4.3%) |
| 200-300만원 미만 | 82 | 0 (0.0%) | 20 (24.4%) | 48 (58.5%) | 11 (13.4%) | 3 (3.7%) |
| 300-400만원 미만 | 115 | 3 (2.6%) | 22 (19.1%) | 55 (47.8%) | 29 (25.2%) | 6 (5.2%) |
| 400-500만원 미만 | 103 | 0 (0.0%) | 25 (24.3%) | 45 (43.7%) | 26 (25.2%) | 7 (6.8%) |
| 500-600만원 미만 | 66 | 0 (0.0%) | 14 (21.2%) | 34 (51.5%) | 17 (25.8%) | 1 (1.5%) |
| 600-700만원 미만 | 37 | 1 (2.7 %) | 7 (18.9%) | 21 (56.8%) | 6 (16.2%) | 2 (5.4%) |
| 700만원 이상 | 31 | 1 (3.2%) | 5 (16.1%) | 16 (51.6%) | 9 (29.0%) | 0 (0.0%) |
| 무응답 | 11 | 0 (0.0%) | 2 (18.2%) | 2 (18.2%) | 3 (27.3%) | 4 (36.4%) |
| ***종교*** | | | | | | |
| 무교 | 238 | 3 (1.3%) | 46 (19.3%) | 125 (52.5%) | 54 (22.7%) | 10 (4.2%) |
| 기독교 | 111 | 1 (0.9%) | 31 (27.9%) | 54 (48.6%) | 22 (19.8%) | 3 (2.7%) |
| 불교 | 77 | 0 (0.0%) | 17 (22.1%) | 40 (51.9%) | 16 (20.8%) | 4 (5.2%) |
| 천주교 | 60 | 0 (0.0%) | 13 (21.7%) | 25 (41.7%) | 15 (25.0%) | 7 (11.7%) |
| 기타 | 14 | 1 (7.1%) | 2 (14.3%) | 4 (28.6%) | 4 (28.6%) | 3 (21.4%) |
| 전체 | 500 | 5 (1.0%) | 109 (21.8%) | 248 (49.6%) | 111 (22.2%) | 27 (5.4%) |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출소자를 고용하는 것에 긍정적(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으로 답변한 경우는 남성(73명)이 여성(41명)보다 더 많았고 부정적인 인식(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은 여성(193명)이 남성(166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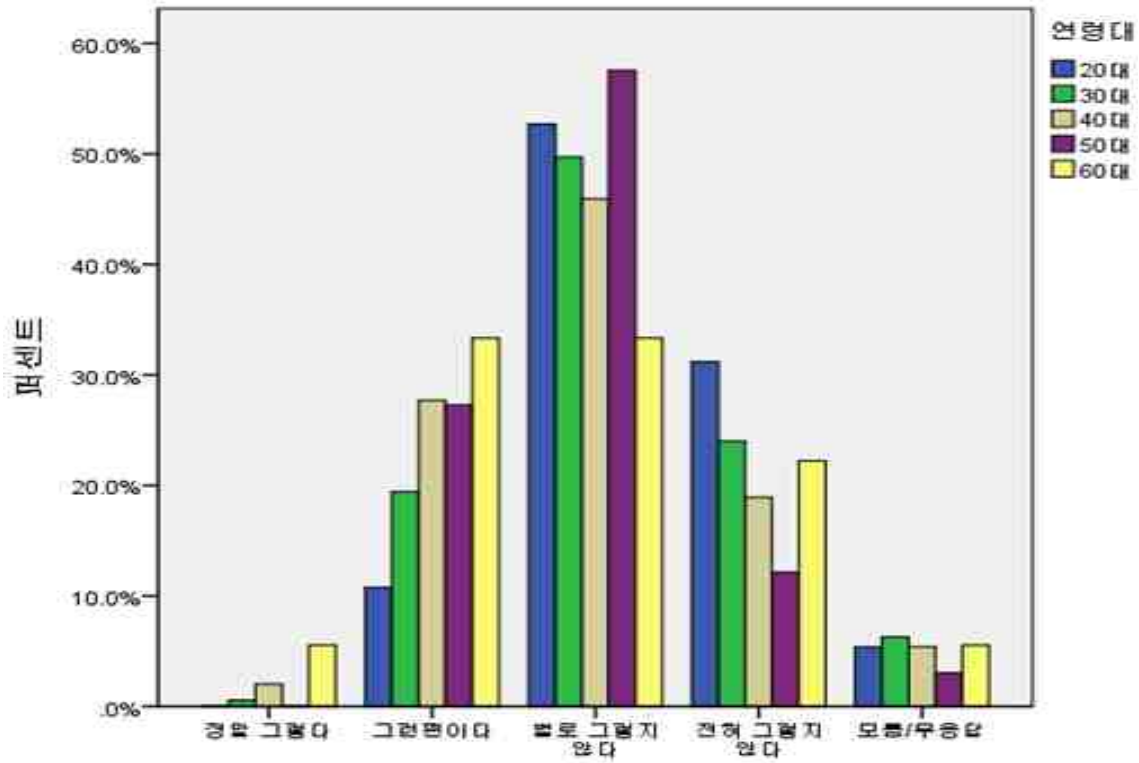



<그림 2.14> 성별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 여부(빈도)

또한 연령대를 보면 전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인 '별로 그렇지 않다'가 많았다. 그러나 60대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인 '그런편이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별로 그렇지 않다와 동일하게 33.3%(6명)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2.15>와 <그림 2.1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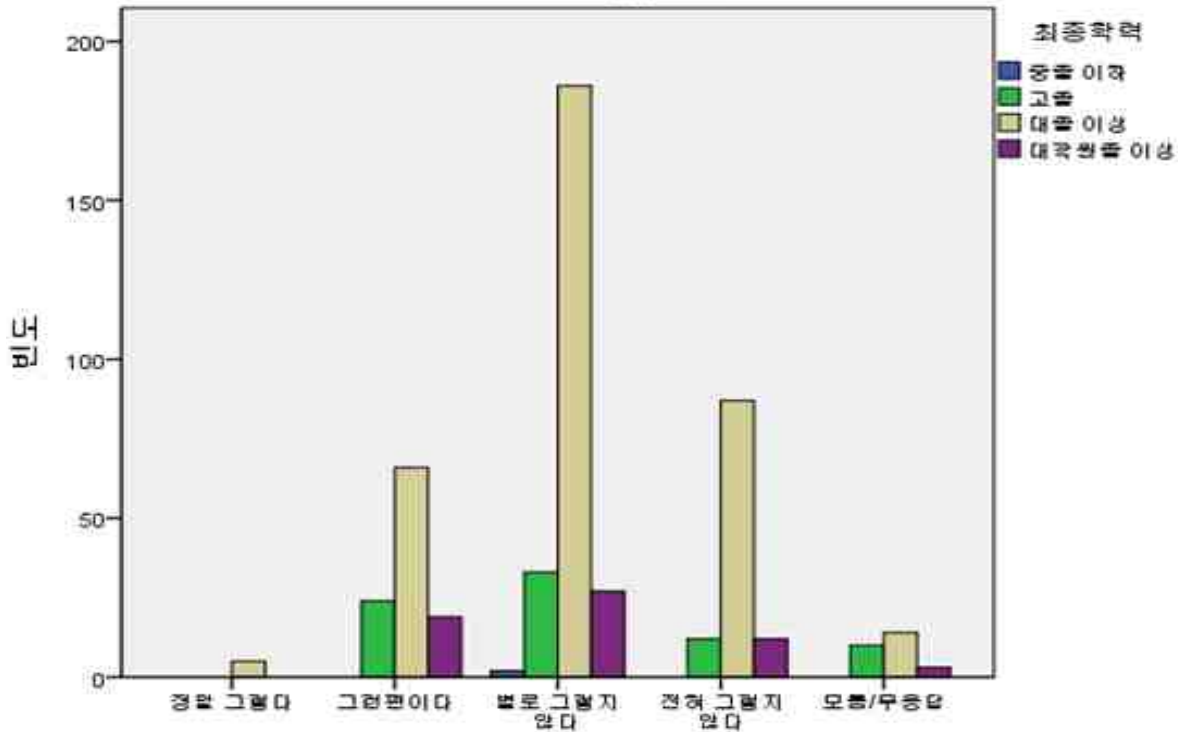



<그림 2.15> 연령대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 여부(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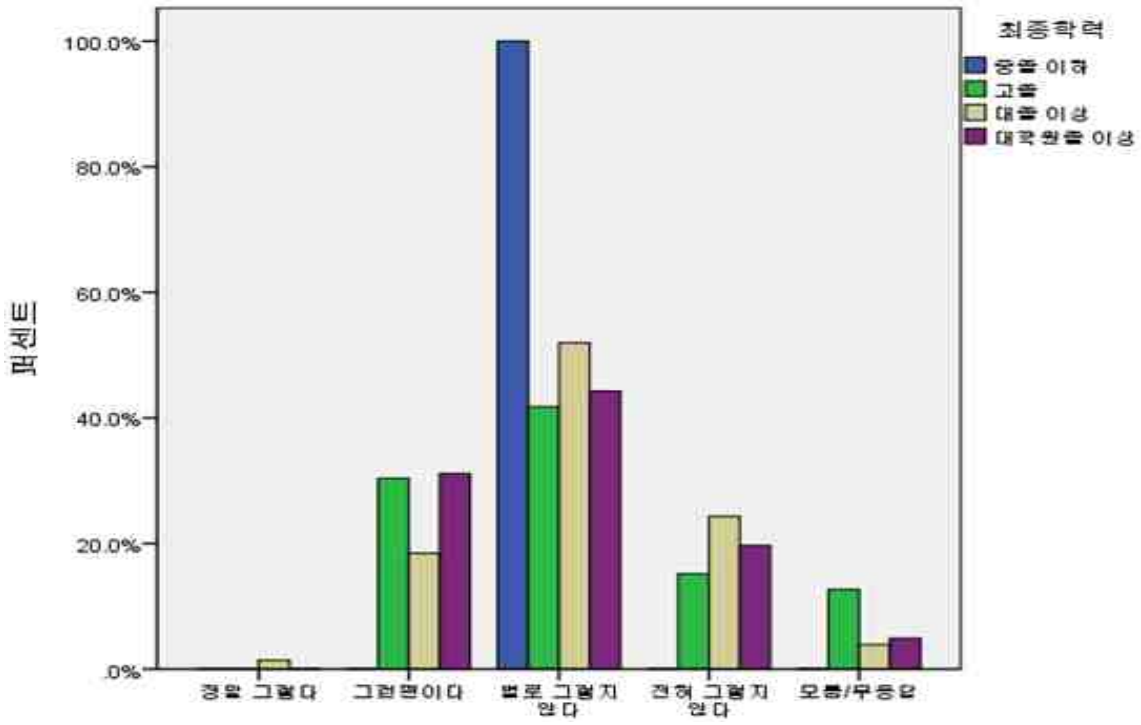



<그림 2.16> 연령대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 여부(퍼센트)

최종 학력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출소자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원졸 이상의 44.3%(27명), 대졸 이상의 52.0%(186명), 고졸의 경우 41.8%(33명), 중졸이하의 경우 100.0%(2명)가 '별로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여 대다수가 출소자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통계적인 차이가 실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졸 이상71.6%(419명)이기 때문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인지 여부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2.17>과 <그림 2.18>에 제시하였다.




<그림 2.17> 최종학력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 여부(빈도)




<그림 2.18> 최종학력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 여부(퍼센트)

⑦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본인의 자녀와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관계 인식 여부

참여자의 자녀와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녀가 있다면, 출소자의 자녀와 내 자녀가 친구가 되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500명중 20.4%가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혹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였고, 7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우 신경 쓰거나 혹은 신경 쓰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표 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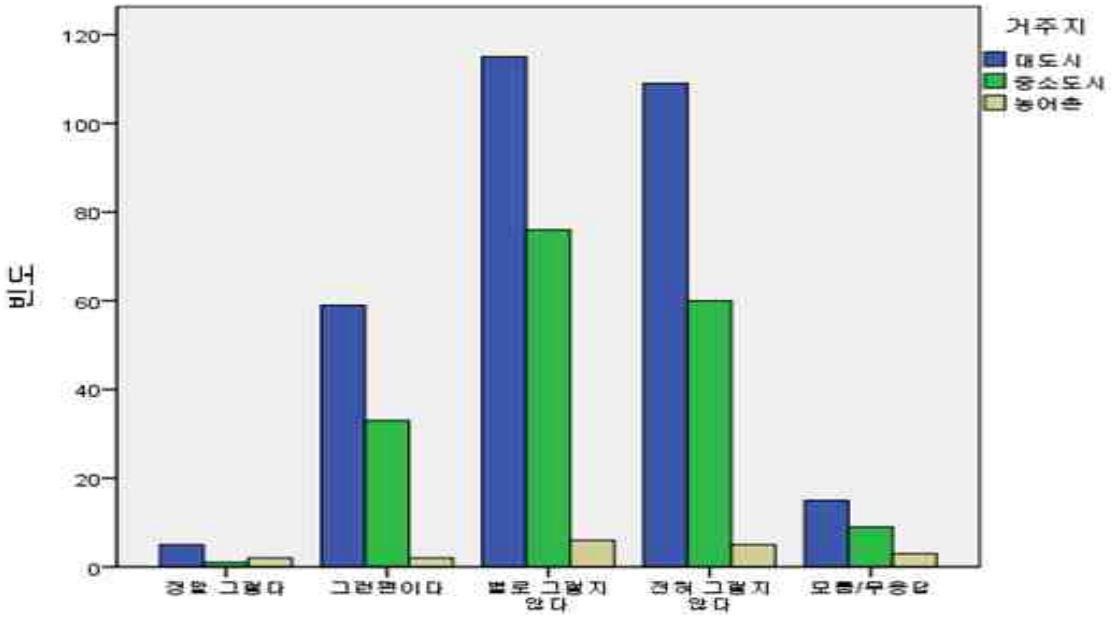
어떤 변인에서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면, 거주지($\chi^2$(8, N=500) = 17.650, p = .024), 성별($\chi^2$(4, N=500) = 25.915, p < .001), 연령대($\chi^2$(16, N=500) = 30.716, p = .01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자녀가 있다면, 출소자의 자녀와 내 자녀가 친구가 되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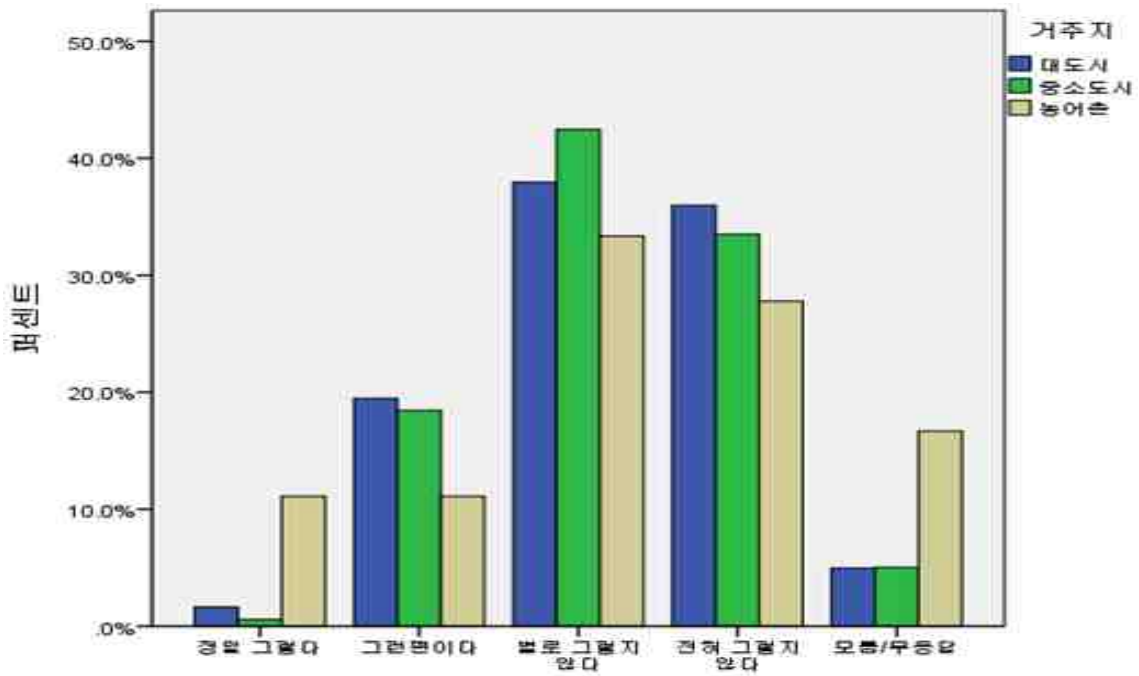
<표 2.9> 본인의 자녀와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관계 인식 여부

| 구분 | 응답 | 정말 그렇다 명(%) | 그런 편이다 명(%) | 별로 그렇지않다 명(%) | 전혀 그렇지않다 명(%) | 모름/ 무응답 명(%)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303 | 5 (1.7%) | 59 (19.5%) | 115 (38.0%) | 109 (36.0%) | 15 (5.0%) |
| 중소도시 | 179 | 1 (0.6%) | 33 (18.4%) | 76 (42.5%) | 60 (33.5%) | 9 (5.0%) |
| 농어촌 | 18 | 2 (11.1%) | 2 (11.1%) | 6 (33.3%) | 5 (27.8%) | 3 (16.7%) |
| ***성별*** | | | | | | |
| 남자 | 250 | 8 (3.2%) | 58 (23.2%) | 107 (42.8%) | 68 (27.2%) | 9 (3.6%) |
| 여자 | 250 | 0 (0.0%) | 36 (14.4%) | 90 (36.0%) | 106 (42.4%) | 18 (7.2%) |
| ***연령대*** | | | | | | |
| 20대 | 93 | 2 (2.2%) | 12 (12.9%) | 28 (30.1%) | 47 (50.5%) | 4 (4.3%) |
| 30대 | 175 | 3 (1.7%) | 29 (16.6%) | 70 (40.0%) | 62 (35.4%) | 11 (6.3%) |
| 40대 | 148 | 2 (1.4%) | 26 (17.6%) | 63 (42.6%) | 47 (31.8%) | 10 (6.8%) |
| 50대 | 66 | 0 (0.0%) | 21 (31.8%) | 30 (45.5%) | 14 (21.2%) | 1 (1.5%) |
| 60대 | 18 | 1 (5.6%) | 6 (33.3%) | 6 (33.3%) | 4 (22.2%) | 1 (5.6%) |
| ***범죄피해경험*** | | | | | | |
| 있다 | 137 | 3 (2.2%) | 26 (19.0%) | 52 (38.0%) | 53 (38.7%) | 3 (2.2%) |
| 없다 | 363 | 5 (1.4%) | 68 (18.7%) | 145 (39.9%) | 121(33.3%) | 24 (6.6%) |
| ***교육수준*** | | | | | | |
| 중졸 이하 | 2 | 0 (0.0%) | 0 (0.0%) | 1 (50.0%) | 1 (50.0%) | 0 (0.0%) |
| 고졸 | 79 | 1 (1.3%) | 19 (24.1%) | 31 (39.2%) | 23 (29.1%) | 5 (18.5%) |
| 대졸 이상 | 358 | 7 (2.0%) | 61 (17.0%) | 138 (38.5%) | 133 (37.2%) | 19 (5.3%) |
| 대학원졸 이상 | 61 | 0 (0.0%) | 14 (23.0%) | 27 (44.3%) | 17 (27.9%) | 3 (4.9%) |
| ***소득수준*** | | | | | | |
| 100만원 이하 | 9 | 0 (0.0%) | 2 (22.2%) | 4 (44.4%) | 1 (11.1%) | 2 (22.2%) |
| 100-200만원 미만 | 46 | 0 (0.0%) | 13 (28.3%) | 21 (45.7%) | 9 (19.6%) | 3 (6.5%) |
| 200-300만원 미만 | 82 | 2 (2.4%) | 16 (19.5%) | 41 (50.0%) | 22 (26.8%) | 1 (1.2%) |
| 300-400만원 미만 | 115 | 4 (3.5%) | 22 (19.1%) | 39 (33.9%) | 43 (37.4%) | 7 (6.1%) |
| 400-500만원 미만 | 103 | 1 (1.0%) | 18 (17.5%) | 34 (33.0%) | 44 (42.7%) | 6 (5.8%) |
| 500-600만원 미만 | 66 | 0 (0.0%) | 11 (16.7%) | 28 (42.4%) | 25 (37.9%) | 2 (3.0%) |
| 600-700만원 미만 | 37 | 0 (0.0%) | 5 (13.5%) | 16 (43.2%) | 14 (37.8%) | 2 (5.4%) |
| 700만원 이상 | 31 | 1 (3.2%) | 6 (19.4%) | 11 (35.5%) | 11 (35.5%) | 2 (6.5%) |
| 무응답 | 11 | 0 (0.0%) | 1 (9.1%) | 3 (27.3%) | 5 (45.5%) | 2 (18.2%) |
| ***종교*** | | | | | | |
| 무교 | 238 | 5 (2.1%) | 41 (17.2%) | 98 (41.2%) | 79 (33.2%) | 15 (6.3%) |
| 기독교 | 111 | 1 (0.9%) | 27 (24.3%) | 42 (37.8%) | 38 (34.2%) | 3 (2.7%) |
| 불교 | 77 | 0 (0.0%) | 9 (11.7%) | 37 (48.1%) | 29 (37.7%) | 2 (2.6%) |
| 천주교 | 60 | 1 (1.7%) | 16 (26.7%) | 17 (28.3%) | 20 (33.3%) | 6 (10.0%) |
| 기타 | 14 | 1 (7.1%) | 1 (7.1 %) | 3 (21.4%) | 8 (57.1%) | 1 (7.1%) |
| 전체 | 500 | 8 (1.6%) | 94 (18.8%) | 197 (39.4%) | 174 (34.8%) | 27 (5.4%) |

거주지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관계없이 대부분은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에 따라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관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실제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도시60.6%(303명)와 중소도시35.8%(179명)인 반면에 농어촌은 3.6%(18명)밖에 되지 않아 발생한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2.19>와 <그림 2.20>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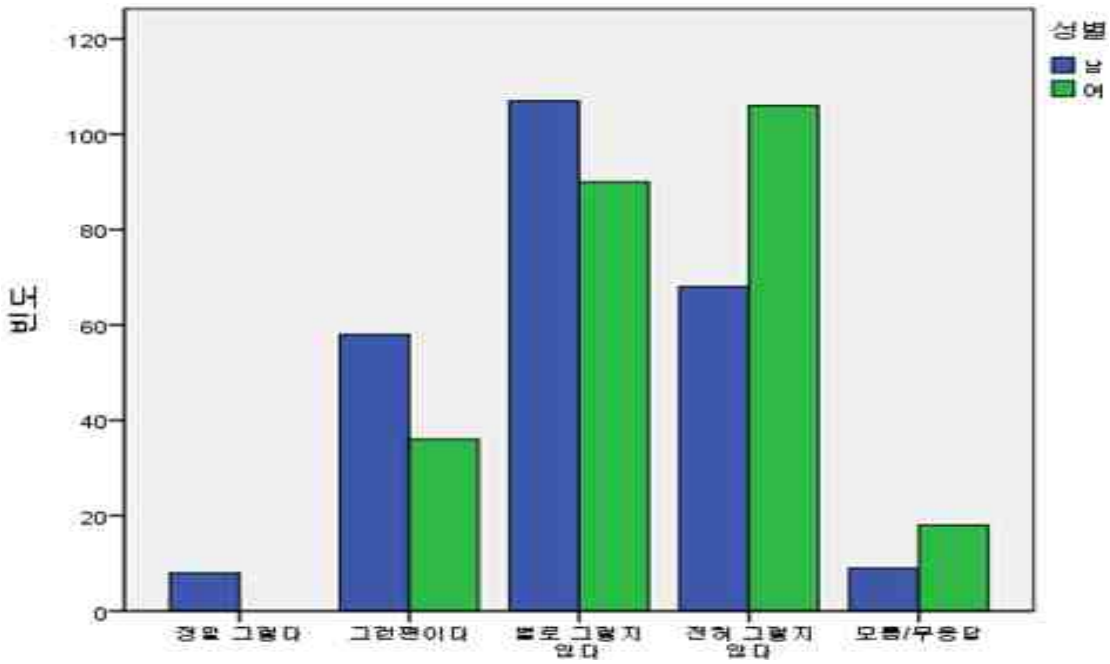

<그림 2.19> 거주지에 따른 본인의 자녀와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 관계 인식 여부(빈도)




<그림 2.20> 거주지에 따른 본인의 자녀와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 관계 인식 여부(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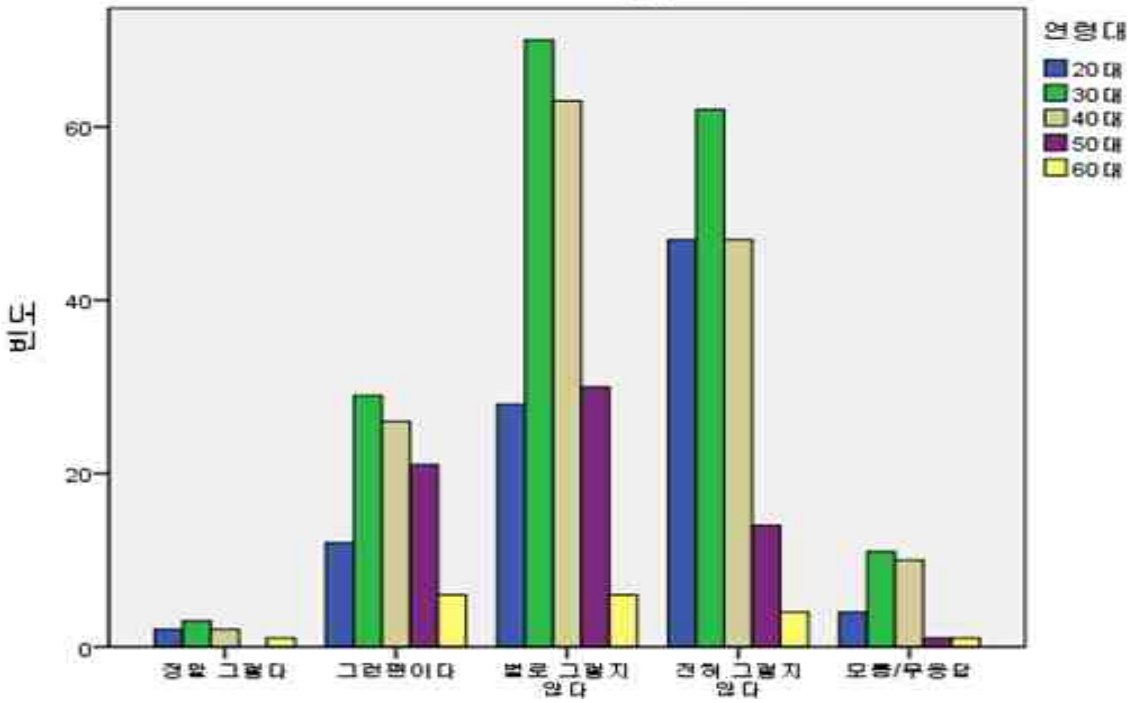
성별의 경우에는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지만 여성(78.4%=196명)의 경우 남성(70%=175명)보다 자녀들이 출소자의 자

녀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2.2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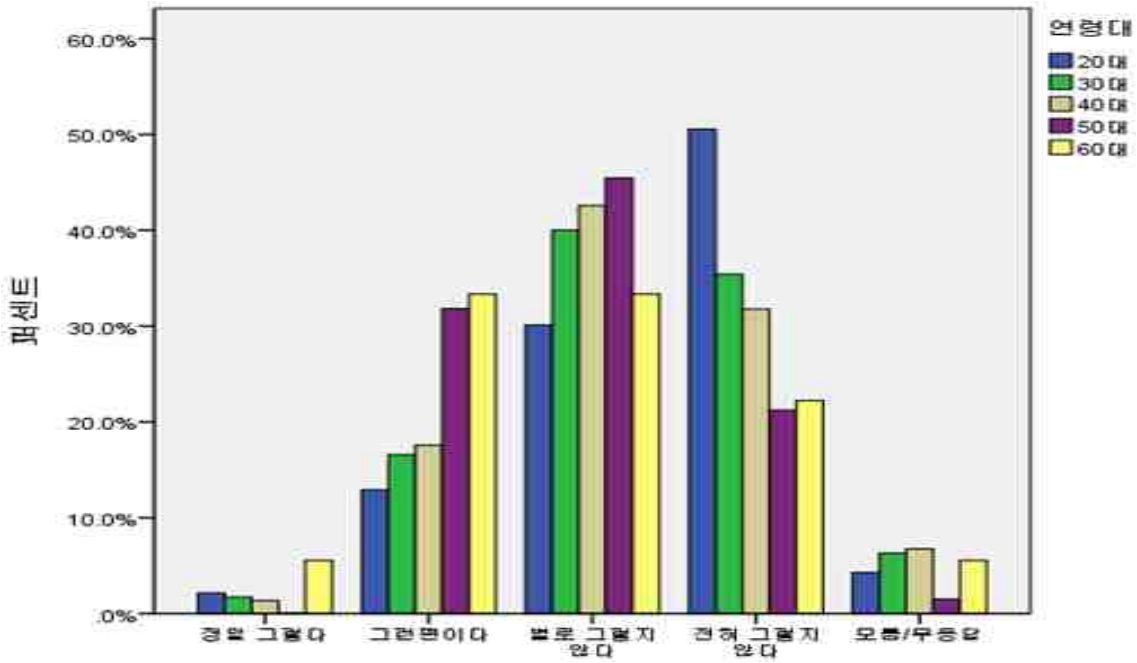



<그림 2.21> 성별에 따른 본인의 자녀와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 관계 인식 여부(빈도)

또한 연령대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20대(80.6%=75명), 30대(75.4%=132명), 40대(74.4%=110명)는 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반면에 50대(31.8%=21명)와 60대(38.9%=7명)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2.22>와 <그림 2.23>에 제시하였다.




<그림 2.22> 연령대에 따른 본인의 자녀와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 관계 인식 여부(빈도)




<그림 2.23> 연령대에 따른 본인의 자녀와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 관계 인식 여부(퍼센트)

⑧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여부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는 출소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출소자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500명 중 54.6%가 지원을 해주는 것에 찬성 혹은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4%가 반대 혹은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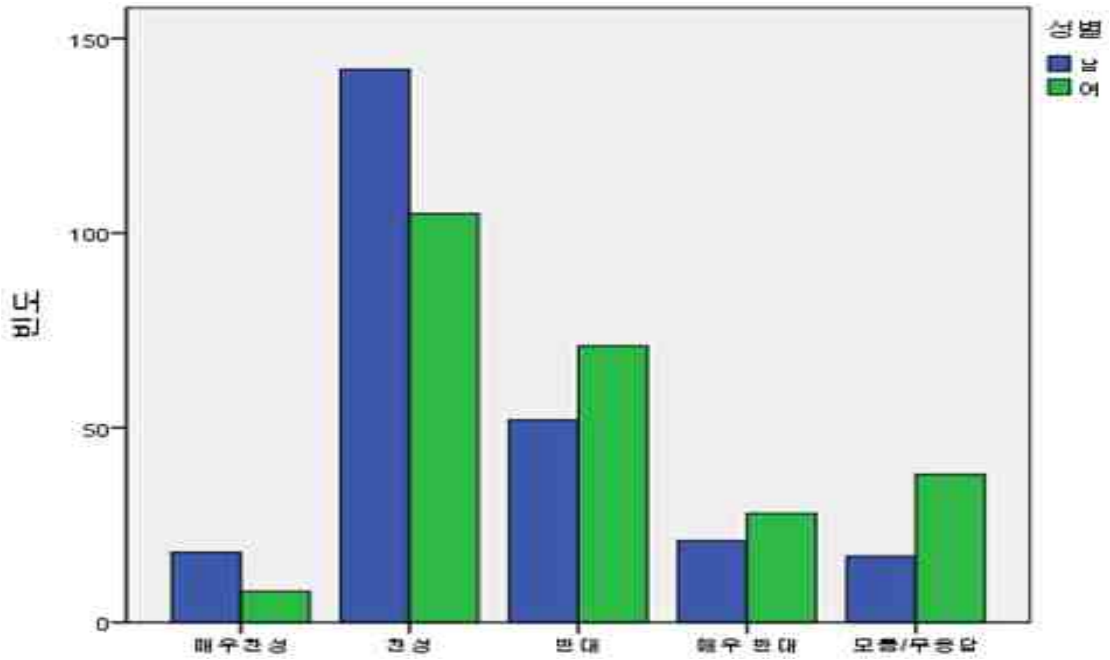
어떤 변인에서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면, 성별($\chi^2(4, N=500) = 21.342, p < .001$)과 연령대($\chi^2(16, N=500) = 58.238, p < .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정부는 출소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출소자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표 2.10>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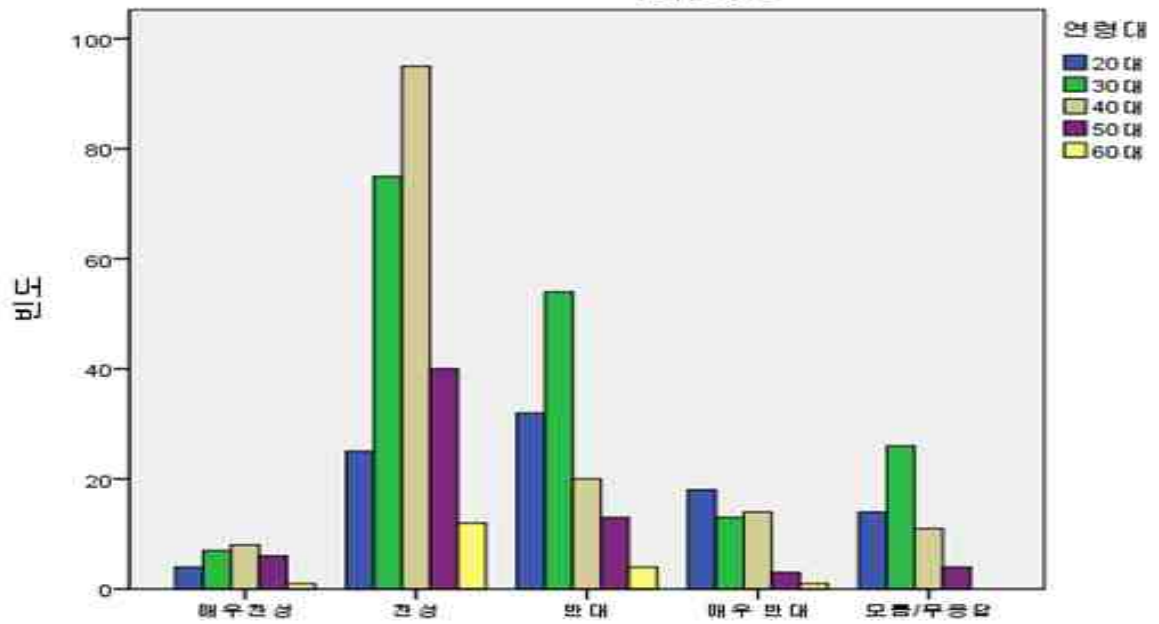
| 구분 | 응답 | 매우찬성 명(%) | 찬성 명(%) | 반대 명(%) | 매우반대 명(%) | 모름/ 무응답 명(%) |
|---|---|---|---|---|---|---|
| ***거주지역*** | | | | | | |
| 대도시 | 303 | 16 (5.3%) | 137 (45.2%) | 78 (25.7%) | 35 (11.6%) | 37 (12.2%) |
| 중소도시 | 179 | 9 (5.0%) | 99 (55.3%) | 41 (22.9%) | 14 (7.8%) | 16 (8.9%) |
| 농어촌 | 18 | 1 (5.6%) | 11 (61.1%) | 4 (22.2%) | 0 (0.0%) | 2 (11.1%) |
| ***성별*** | | | | | | |
| 남자 | 250 | 18 (7.2%) | 142 (56.8%) | 52 (20.8%) | 21 (8.4%) | 17 (6.8%) |
| 여자 | 250 | 8 (3.2%) | 105 (42.0%) | 71 (28.4%) | 28 (11.2%) | 38 (15.2%) |
| ***연령대*** | | | | | | |
| 20대 | 93 | 4 (4.3%) | 25 (26.9%) | 32 (34.4%) | 18 (19.4%) | 14 (15.1%) |
| 30대 | 175 | 7 (4.0%) | 75 (42.9%) | 54 (30.9%) | 13 (7.4%) | 26 (14.9%) |
| 40대 | 148 | 8 (5.4%) | 95 (64.2%) | 20 (13.5%) | 14 (9.5%) | 11 (7.4%) |
| 50대 | 66 | 6 (9.1%) | 40 (60.6%) | 13 (19.7%) | 3 (4.5%) | 4 (6.1%) |
| 60대 | 18 | 1 (5.6%) | 12 (66.7%) | 4 (22.2%) | 1 (5.6%) | 0 (0.0%) |
| ***범죄피해경험*** | | | | | | |
| 있다 | 137 | 10 (7.3%) | 68 (49.6%) | 38 (27.7%) | 13 (9.5%) | 8 (5.8%) |
| 없다 | 363 | 16 (4.4%) | 179 (49.3%) | 85 (23.4%) | 36 (9.9%) | 47 (12.9%) |
| ***교육수준*** | | | | | | |
| 중졸 이하 | 2 | 0 (0.0%) | 0 (0.0%) | 2 (100.0%) | 0 (0.0%) | 0 (0.0%) |
| 고졸 | 79 | 5 (6.3%) | 34 (43.0%) | 23 (29.1%) | 4 (5.1%) | 13 (16.5%) |
| 대졸 이상 | 358 | 17 (4.7%) | 175 (48.9%) | 85 (23.7%) | 42 (11.7%) | 39 (10.9%) |
| 대학원졸 이상 | 61 | 4 (6.6%) | 38 (62.3%) | 13 (21.3%) | 3 (4.9%) | 3 (4.9%) |
| ***소득수준*** | | | | | | |
| 100만원 이하 | 9 | 1 (11.1%) | 2 (22.2%) | 1 (11.1%) | 1 (11.1%) | 4 (44.4%) |
| 100-200만원 미만 | 46 | 1 (2.2%) | 23 (50.0%) | 14 (30.4%) | 2 (4.3%) | 6 (13.0%) |
| 200-300만원 미만 | 82 | 2 (2.4%) | 39 (47.6 %) | 24 (29.3%) | 10 (12.2%) | 7 (8.5%) |
| 300-400만원 미만 | 115 | 6 (5.2%) | 57 (49.6%) | 27 (23.5%) | 11 (9.6%) | 14 (12.2%) |
| 400-500만원 미만 | 103 | 9 (8.7%) | 54 (52.4%) | 25 (24.3%) | 6 (5.8%) | 9 (8.7%) |
| 500-600만원 미만 | 66 | 2 (3.0%) | 38 (57.6%) | 12 (18.2%) | 10 (15.2%) | 4 (6.1%) |
| 600-700만원 미만 | 37 | 4 (10.8%) | 17 (45.9%) | 9 (24.3%) | 3 (8.1%) | 4 (10.8%) |
| 700만원 이상 | 31 | 1 (3.2%) | 16 (51.6%) | 7 (22.6%) | 5 (16.1%) | 2 (6.5%) |
| 무응답 | 11 | 0 (0.0%) | 1 (9.1%) | 4 (36.4%) | 1 (9.1%) | 5 (45.5%) |
| ***종교*** | | | | | | |
| 무교 | 238 | 12 (5.0%) | 99 (41.6%) | 69 (29.0%) | 23 (9.7%) | 35 (14.7%) |
| 기독교 | 111 | 3 (2.7%) | 65 (58.6%) | 24 (21.6%) | 9 (8.1%) | 10 (9.0%) |
| 불교 | 77 | 4 (5.2%) | 45 (58.4%) | 18 (23.4%) | 7 (9.1%) | 3 (3.9%) |
| 천주교 | 60 | 6 (10.0%) | 30 (50.0%) | 9 (15.0%) | 9 (15.0%) | 6 (10.0%) |
| 기타 | 14 | 1 (7.1%) | 8 (57.1%) | 3 (21.4%) | 1 (7.1%) | 1 (7.1%) |
| 전체 | 500 | 26 (5.2%) | 247 (49.4%) | 123 (24.6%) | 49 (9.8%) | 55 (11.0%) |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의 지원에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한다는 답변이 각각 64%(160명)와 45.2%(113명명)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정부의 지원에 찬성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반대 또는 매우 반대의 경우 남성이 29.2%(73명), 여성이 39.6%(99명)로 여성의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2.2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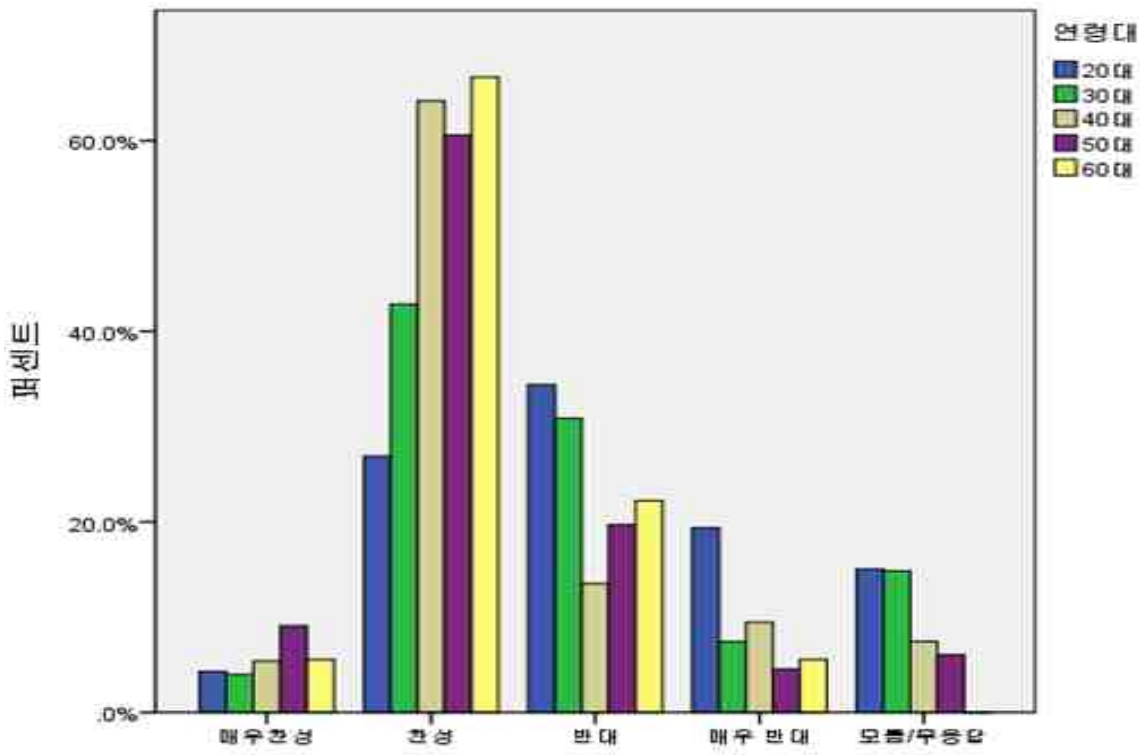



<그림 2.24> 성별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여부(빈도)

연령대를 보면 20대의 경우에는 찬성과 매우 찬성이 31.2%(29명), 반대와 매우 반대가 53.8%(50명)로 반대의 의견이 더 많았지만 30대에서 60대의 경우에는 찬성과 매우 찬성이 각각 46.9%(82명)(반대와 매우 반대의 경우는 38.3%=67명), 69.6%(103명), 69.7%(46명), 72.3%(13명)로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결과는 <그림 2.25>와 <그림 2.26>에 제시하였다.




<그림 2.25> 연령대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여부(빈도)




<그림 2.26> 연령대에 따른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여부(퍼센트)

이와 관련하여, 출소자 가족을 지원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할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한 273명의 실험참여자들 중 “자녀 학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165명),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144명), “가족 취업지원”(138명), “주거지원”(37명),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가족단위 활동”(31명), “창업지원”(12명), “긴급원호”(12명), “숙식제공”(5명), 그리고 “기타”(2명)로 조사되었다. 즉, 일반시민들은 자녀 학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 그리고 가족 취업지원 등이 출소자 및 해당 가족들에게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떤 이유로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출소자를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결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49.8%),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29.7%), “출소자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불리한 점이 많아 국가의 지원이 필요”(12.5%), “출소자의 자녀가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8.1%)라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출소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결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출소자 이외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31.4%),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29.1%), “범죄가해자를 돕는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기 때문”(20.9%),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출소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18.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 보다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범죄자들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출소자의 자녀가 제2의 피해자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소자의 자녀가 제2의 피해자라는 견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소자 자녀는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죄인과 가족을 분리’ 하는 대국민 홍보와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55.4%), “국가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출소자를 격리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다”(24.4%), “억울하지만 출소자의 가족이니 고통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12.2%), “출소자의 자녀들을 제2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8.0%)라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는 실험참가자 500명 중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출소자들의 자녀들은 제2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출소자 자녀와 출소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홍보 및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50%이상의 실험참가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 3) 상관관계분석

정부는 출소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출소자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 찬성하는지 여부와 연속변수인 나이, 학력, 소득, 신앙심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지원 여부를 묻는 문항의 경우, 설문지상에서는 1은 '매우 찬성', 2는 '찬성', 3은 '반대', 4는 '매우 반대', 5는 '모름/무응답'으로 되었다. 이에 정확한 통계처리를 위해서 다시 1은 '매우 찬성', 2는 '찬성', 3은 '모름/무응답', 4는 '반대', 5는 '매우 반대'로 재 코딩하였다. 그 결과 출소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견과 나이, 학력, 소득, 신앙심의 정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박선영(201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박선영의 연구는 나이가 많을수록(.16=상관관계 강도),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17), 수형자와의 친분(.15)이 있을수록 일반시민들이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일수록 수형자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태도(.1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피해여부, 학력수준, 소득수준, 종교, 거주 지역은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일반시민들에 대한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지원여부에 학력, 소득, 신앙심과 같은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 2.11>에 제시하였다.

<표 2.11>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여부

| 변수 | 연령 | 학력 | 소득 | 신앙심 | 출소자 복귀 및 지원 |
|---|---|---|---|---|---|
| 연령 | 1 | -.032 | .048 | .115 | -.026 |
| 학력 | | 1 | .242 | .115 | .078 |
| 소득 | | | 1 | -.071 | .099 |
| 신앙심 | | | | 1 | -.136 |
| 출소자 복귀 및 지원 | | | | | 1 |

주: *p<.05, **p<.01, ***p<.001

### 4) 소결

본 연구는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 7개의 변인들인 성별, 나이, 종교, 범죄피해경험, 교육수준, 거주지, 소득수준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출소자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출소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차별의 이유에 대해 순서대로 범죄자들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출소자들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범죄자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출소자들에 대한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앞에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된 7개의 변인들 중에서 '성별' 과 '연령대' 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첫째,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출소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40-50대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사회로 돌아오는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위험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에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출소자나 그 가족들에게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출소자를 고용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경우가 더 많았고 자녀들이 출소자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둘째, 연령대의 경우에는 20대와 같이 나이가 어릴수록, 50대나 60대에 비해 출

소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출소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자녀들이 출소자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부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종교의 경우에는 종교가 없거나 어떠한 종교이냐를 불문하고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임대 여부에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 타 종교나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죄피해 경험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경험유무를 떠나서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장동료로서의 수용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섯째,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고학력일수록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고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실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졸 이상(71.6%)이기 때문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인지 여부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거주지의 경우 도시에 거주할수록 본인들의 자녀와 출소자의 자녀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에 따라 출소자 자녀와의 친구관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실제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도시(60.6%)와 중소도시(35.8%)인 반면에 농어촌은 3.6% 밖에 되지 않아 발생한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소득수준은 본 출소자 사회복귀 및 그 가족복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황의갑과 박선영(2010), 그리고 박선영(2012)년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박선영(2012)의 경우 출소자의 사회 복귀 및 그 가족 복원 문제에 대해서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12년에 진행된 연구와 2014년에 진행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차이가 실제 차이인지 아니면 샘플링의 문제였는지 여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2010)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과 범죄피해 여부도 수형자 복귀 및 제반 지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출소자 및 그 가족을 직장동료로 수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 인식 여부, 이웃 수용 여부, 임대 여부 등에서는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직장동료로서 출소자와 그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범죄 피해 경험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직장 동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직장에서 다시 범죄 피해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출소자의 경우 대부분은 교육 수준이 낮아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인식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Ⅳ. 대국민의식 조사 선행 연구 개관 및 정책제언 분석

## 1. 출소자 지원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

출소자와 그 해당 가족들이 한국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서의 성공적인 복귀를 방해하는 요소들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출소자들이 교정시설로부터 출소한 이후 접하게 되는 한국사회에서의 각종 냉대와 차별,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의 제한 및 차단, 취업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 등으로 인한 사회복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다시 범죄 및 반사회적 일탈행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자 지원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공생을 위한 사회구현을 위해 어떠한 지원책들이 출소자 및 그 해당 가족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왔고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표 2.12>와 같다.

<표 2.12> 출소자 지원정책제언과 관련된 선행연구

| 구분 | 이름 | 지원정책제언 내용 |
|---|---|---|
| 1 | 김정호 (2013) | 1.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출소자의 취업 장려 |
| 2 | 박선영 (2012) | 1.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형자에 대한 반감 극복<br>2. 미디어를 통한 수형자에 대한 반감 극복<br>3. 피해자 -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수형자에 대한 반감 극복<br>4.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br>5.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지원법 제정 |
| 3 | 신의기외 (2008) | 1. 각종 차별 관련 법률의 개정 |
| 4 | 이윤호외 (2006) | 1. 각종 차별 관련 법률의 개정<br>2. 출소자들의 효과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일자리, 거주공간 등) |
| 5 | 이원복외 (2011) | 1.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br>2. 일자리, 거주 공간, 취업프로그램 운영 |
| 6 | 정진수외 (2009) | 1.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출소자의 취업 장려 |
| 7 | 최영신외 (2007) | 1.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도입<br>2. 주거지원정책의 효율과 추구<br>3. 미디어를 통한 출소자에 대한 반감 극복 |

| 구분 | 이름 | 지원정책제언 내용 |
|---|---|---|
| 8 | 최영신외<br>(2006) | 1. 숙식제공과 관련된 갱생보호시설의 확충<br>2.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br>3. 직업능력 개발 방안<br>4. 안정적 주거 지원 방안<br>5. 모자가정 지원 방안 |
| 9 | 최인섭외<br>(1994) | 1.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br>2.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반감 감소 프로그램 운영 |
| 10 | 최옥채<br>(2011) | 1.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출소자의 취업 장려 |
| 11 | 천정환외<br>(2010) | 1.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출소자의 취업 장려 |
| 12 | 한인섭<br>(1991) | 1. 교정프로그램 및 지원프로그램에 민간인 참여를 통한 일자리, 거주 공간 제공 |
| 13 | Bazemore et al.<br>(2001) | 1. 각종 차별 관련 법률의 개정<br>2. 출소자 및 그 해당 가족들에 대한 직업훈련제도 구축 |
| 14 | Doob et al.<br>(1984) | 1. 수형자 교육의 현실화<br>2.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 15 | Mackey et al.<br>(2006) | 1.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출소자에 대한 반감 극복<br>2. 출소자 및 그 해당 가족들에 대한 직업훈련제도 구축 |
| 16 | Rebert<br>(1995) | 1.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출소자 지원 사업 확대<br>2.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 17 | Spitzberg et al.<br>(2002) | 1.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출소자 지원 사업 확대 |
| 18 | Weitzer et al.<br>(2004) | 1. 미디어 홍보를 통한 출소자 관련 반감 극복<br>2. 민/관 협력체제 구축 |
| 19 | Zimring et al.<br>(2006) | 1.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출소자에 대한 반감 극복<br>2.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 2. 법률적 지원 측면

법률적 지원 측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4가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 개정”, “출소자 차별금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지원”의 제정 및 통과 등이 있다(정진수외 2009; 이윤호외 2006; Bazemore et al. 2001; 신의기외 1994; 최인섭외 1994).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법률규정[14]은 출소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최인섭외 1994; 신의기외 1994). 하지만 사회적 통합의 차원에서 엄격한 절차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신임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출소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Bazemore et al. 2001).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의 법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차원 즉, 현행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3년 혹은 2년으로 축소하고 기타 규정(나머지 기간 혹은 결격사유)들에 대해 철폐하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전과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014년 현재 한국에서는 전과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인노무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업무를 제한받고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사회재통합에 심각한 부작용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사법을 위반한 출소자의 경우 약사법에 의한 약사업무행위에 제한을 둔다든지, 또한 특정 출소자가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회계사 업무 등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이윤호외, 2006). 일반적으로 직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는 가장 먼저 그 해당 직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업특성의 고려 없이 단지 관련 전과사실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소자들의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나아가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선에서 사회 방위 차원의 입법을 제외한 많은 부분의 법률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출소자들이 직업 선택의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법률적 방안들을 개정해 나

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중에서 출소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분(Private Sector)에서 발생 가능한 차별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출소자의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신의기외, 1994).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이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국회에서 심의중이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를 제한하는 행위, 예를 들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의 개정을 통한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본법의 시행령 제2조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를 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자의 배우자, 그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그리고 그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로 제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정진수외, 2009).

결론적으로, 본법에 의해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주거지역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출소자들은 가족이 없는 경우 역시 많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일정한 거주 지역 및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소 직후 소위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움 받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본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출소자는 3개월에 한하여 사회 적응을 위한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의 기간은 대단히 짧아 출소자 및 그 해당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출소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인 출소직후에 특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6개월 이상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 3. 제도적 지원측면

제도적 지원측면은 크게, 일자리와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등이 있다. 먼저, 일자리 및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의 경우, 숙식제공(이윤호외 2006; 최영신외 2006; 이원복외 2011), 직업훈련(이윤호외 2006; 최영신외 2006; 최영신외 2007; Mackey et al. 2006; Doob et al. 1984;

Bazemore et al. 2001), 취업지원(이윤호외 2006; 최영신외 2006; 이원복외 2011; Zimring et al. 2006; Doob et al. 1984; Rebert 1995), 창업지원(이윤호외 2006; 최영신외 2006; 이원복외 2011; Mackey et al. 2006; Zimring et al. 2006; Doob et al. 1984; Rebert 1995), 거주지원(이윤호외 2006; 최영신외 2006; 이원복외 2011; 최영신외 2007; Zimring et al. 2006; Doob et al. 1984; Rebert 1995), 가족희망복원(박선영 2012; 최영신외 2006), 기타자립지원(박선영 2012; 최영신외 2006; 최인섭외 1994; Spitzberg et al. 2002; Rebert 1995)등이 제시되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제공의 경우, 출소자 및 그 해당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바로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반인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립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소자들만을 위한 공간 마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사회 적응 및 정착 능력을 키워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편견을 억제하면서 직업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교정시설 내로 납품하는 소규모 생산 공장 건립(이윤호외 2006; 최영신외 2006; 이원복외 2011), 교정시설에서 모범적 생활을 한 출소자의 경우 국가에서 우선취업대상으로 고려하는 제도(Mackey et al. 2006; Zimring et al. 2006; Rebert 1995) 등이 제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미국의 2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째로 텍사스 주의 RIO 프로그램으로서 텍사스 주 고용노동위원회와 지역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내의 62개의 권역별 지역 센터에서 가석방 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뉴욕시의 CEO 프로그램으로서 출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시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식을 함양시키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출소자에게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와 출소예정자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재범억제를 통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소위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 취업지원 사업주체로서 전국 22개 지역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일반출소자 및 예정자들이며, 예외적으로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 이상에서 24세까지 참여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취업설계단계로서 초기상담(상담사와 일대일 대면상담 3회 이상), 직업심리검사(집중상담병행), 집단상담(직업행복프로그램 16시간)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2단계는 직업능력개발단계로서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능력

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한 창업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3단계는 취업성공단계로서 주로 구인정보 제공과 동행 면접 지원 그리고 구직서류와 면접 및 이미지 클리닉과정을 통해 1, 2단계 참여대상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4단계는 사후관리단계로서 취업자에게는 근속유지와 미취업자에게는 지속적인 취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단계 취업지원단계의 집단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25만원을 지원하며, 2단계 직업능력개발단계에서 훈련에 참여할 시 월 최대 284,000원(1일 18,000원)과 훈련 장려금(교통비, 식비 등) 역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3단계 취업성공의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서 근속기간(1, 3, 6개월 근속 시 20, 30, 50만원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의 출소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채용 시 사업주에게 임금의 최대 75%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들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란 경제적 이윤추구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공익적 이유 역시 중요한 가치로 둔다(정진수외 2009; Spitzberg et al. 2002; Rebert 1995).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이 일반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취업 및 창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출소자들과 그 해당가족들에 대한 사회복귀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발전시키는 것 역시 주요한 제도적 지원책이 될 것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육성 지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천정환외, 2010). 법적 정의로서 사회적 기업은 소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와 같은 취업알선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해당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사회적 목적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 구분할 수 있다(최옥채, 2011).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8조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유형으로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 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15]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② 일자리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③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④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⑤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소자 및 그 가족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인증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4년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들은 정보주도형 인증 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직접지원이라는 지원방식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정진수외, 2009).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출소자별, 그 해당가족별 지원이 불가능하며 또한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 관련 주 총괄부서는 산업경제부처, 사회복지부 등이나 부처 간 통합위원회 또는 별도의 독립청을 통해 해당업무들을 관장하고 있다(Spitzberg et al. 2002; Rebert 1995).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시민 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이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과 관련된 중앙조직인 CNIEA가 있으며, 고용, 보건, 아동복지 등을 총괄하는 '사회지원국' 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서구 유럽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간 비영리기관(NPO)들을 중심으로 자선활동을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 및 기업가들의 기부 및 자선활동이 출소자를 포함한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민간단체의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야 한다. 먼저, 사회적 기업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은 산업 환경의 가변성과 경쟁강도와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어야 하는 지원 환경을 의미하며, 기업에서의 도움과 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부 및 지자체로 구성된 고객, 산업 내 기술변화의 가변성, 산업의 경쟁 환경 등과 함께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공감과 협조의 같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 법 그리고 제도적 요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조영복 외, 2008).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환경적 요인이 영리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 내 기술이나 환경의 가변성 보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는 향후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사회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이광우, 2008).

김정호(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인 ㈜서서도시개발은 한국법무보보호복지공단과 MOU 체결 등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체제 구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울시 산하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로 제품수요량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출소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수익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인 SK 행복한 뉴라이프 재단도 정부기관과 협력으로 사업장 및 마케팅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여러 개의 지점을 설립하여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음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소자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수익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최조순, 2012).

취약계층으로서 출소자 및 해당가족들에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서 발견하기 힘든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지닌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서 사회적 기업의 태생부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지속했으며, 그 성장 동력에는 지역 사회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접근전략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특히 지역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네트워크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재구조화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스스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호혜적인 문화를 확산시켜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다.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크게 학과 교육프로그램과 처우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과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켈리포니아교정국에서는 주관 할의 33개 교도소 중 32개 교도소에서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라는 학력인증기관을 설립 후 학력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개의 과정들(성인기초교육 Ⅰ; 성인기초교육Ⅱ; 성인기초교육Ⅲ; 일반학력인증; 학업능력개발; 컴퓨터 활용)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학력 및 자격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출소자들의 전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낮추고 성공적으로 사회 복귀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최영신외 2006; 최영신외 2007; Zimring et al. 2006; Doob et al. 1984). Zimring et al. (2006)는 교정시설에서 복역 기간 동안 학력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출소자로서 사회에서 가지는 편견을 극복하고 직업을 성공적으로 가지는 것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처우 프로그램의 경우,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신외 2006; 최영신외 2007; Zimring et al. 2006). 일본의 경우 각성제뿐만 아니라 여러 약물중독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출소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재범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1년 12월부터 도쿄의 민간단체에서는 알코올 문제 처우를 위한 자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술의 해악에 대한 학습회’를 개시하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출소자들이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역시 출소자들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각성제로 부터의 의존 현상, 분노 조절과 같은 문제, 술 그리고 담배와 관련된 문제들이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수외 2009; 이윤호외 2006; 최영신외 2006; 최영신외 2007).

또한 영국에서는 특히 여성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으로서 Women in Prison(이하 WIP)을 운영하고 있다. WIP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그중에서도 재정착 서비스, 인적자본 개발 및 교육훈련 서비스, 일반 시민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여성 출소자를 포함한 출소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인적자본 개발 및 교육훈련 서비스의 경우,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심리 정서적인 지원도 병행하여 WIP 실무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고 또한 또래집단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동료들 사이의 지지 집단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본 서비스의 주요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및 취업과 관련된 상담과 조언
② 원격교육 과정에 대한 수업료 및 기타 다른 교육 그리고 취업 관련 과정에 대한 자금 지원
③ 취업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피부 관리, 미용 관련 장비 등 지원
④ 정기적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표회, 경연대회 등의 개최 등을 제공

미국의 경우는 The Fortune Society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이 성공적으로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출소자들은 출소 후 6개월 동안은 스스로 사회복귀노력을 하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6-18개월 동안 약물남용 치료서비스, 에이즈 관련 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을 습득하는 사회생활기술 훈련, 종교 관련, 문제행동 치료관련[16], 자기개발[17] 관련 서비스

16) 문제행동 치료관련:
① 알코올중독치료(상담위주); ② 알코올중독치료(12단계인지프로그램); ③ 폭력행동조절; ④ 분노행동조절; ⑤ 음악치료; ⑥ 독서치료; ⑦ 약물, 알코올, 분노행동, 변태성욕치료; ⑧ 자신의 문제행동 자각 및 해결법 도출; ⑨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 ⑩ 조직폭력배특화프로그램; ⑪ 금연프로그램; ⑫ 커뮤니케이션, 분노 및 감정조절; ⑬ 용서와 치유에 관한 심층세미나; ⑭ 수용자-외부멘토와의 1:1 심층상담; ⑮ 뮤지컬을 활용한 응악치료프로그램; ⑯ 응악치료프로그램.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1주일에 약 35시간의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을 해야 하고 일주일에 약 10시간 정도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처우 프로그램으로서 교정시설처분으로 인해 해체되거나 해체위험에 있는 가족관계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소자들은 출소 후 가장 염려하는 걱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머지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둔 수형자의 경우 이들을 두고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녀들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소자 및 해당 가족들 역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단절되었던 시기가 출소 이후에 복원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혹은 복원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자녀들 역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조부모, 일가친척 등에 의해 양육되면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Zimring et al. (2006)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녀들이 부모와 분리되면서 안정되고 따뜻한 가정환경을 갖지 못하면서 불안, 우울증, 공격적 성향,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집중장애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학업성적 하락, 무단결석, 청소년 임신 등과 같은 비행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출소자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Girls Scouts Beyond Bars; The Maryland Demonstration Project; Florida's Two-City Program; Ohio's Program)을 통해 출소자와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출소 후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설정이 전제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정책적 제언분석은 본 연구결과들에 대한 정책적 제언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17) 자기계발 관련:
① 대인관계기술 및 리더십함양; ② 목표설정 및 자기개발; ③ 구직방법, 근로의식 함양; ④ 책임있고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나기; ⑤ 내부갈등해결 및 자신감 회복; ⑥ 리더십훈련; ⑦ 자기개발, 재무관리, 성과관리 등; ⑧ 자기개발, 긍정적 자아확립; ⑨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자아발견; ⑩ 지역사회봉사활동; ⑪ 사회저명인사초청 강연; ⑫ 인격수양, 잘못된 행동 고리끊기; ⑬ 자녀와의 의사소통, 관계회복; ⑭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 ⑮ 부모학교, 가족관계회복; ⑯ 부부관계회복프로그램.

# Ⅴ. 가족희망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및 추후 사업방향 제시

## 1. 가족희망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 1)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편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첫 번째 실태는 대한민국의 경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출소자뿐만 아니라 그 해당 가족까지에 범죄와 관련된 차별로 인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서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500명 중에 84%(420명)의 응답자들이 출소한 출소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과거지 저지른 형벌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응답하였다(상기 표 3 참조). 또한 그렇다면 이렇게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이 한국사회에서 왜 차별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500명의 응답자들 중에 49.5%(208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출소자들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26.2%(110명)의 응답자들은 출소자들로부터 언제 무슨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독특한 연구결과를 내포하는데, 무엇보다도 출소자와 그 해당 가족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출소자=그 가족”을 하나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Travis(2005)의 저서 “그러나 그들 모두는 돌아온다(But They All Come Back)”를 통해, 보이지 않는 처벌(Invisible Punishment)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상징적인 거리(Symbolic Distance)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윤호외(2006)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처벌은 혐오, 천시, 배제, 분리 등의 기제가 작동하는 직접적인 형태로도 이루어지지만,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간접적 형태는 외형상 중립적이거나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기준이 결국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출소자들의 가족들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한국사회는 다시 지역사회로 회귀하는 출소자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출소자들의 직업, 주거, 보건, 복지제도, 가족복원을 위한 조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자와 그 가족들을 개개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집단 및 공동체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출소자들에게

부여되는 편견이 해당 가족들에게 까지 투영되는 것이다. Crawford(2002) 역시 이러한 보이지 않는 편견 혹은 처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위 '해당 가족들이 출소자와 관계가 있다' 는 특정 범주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당하게 또는 불리하게 불평등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표 4>의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험성 인식을 통해서도 재확인 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500명 중에서 58%(290명)의 참가자들이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 수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도 500명의 응답자들 중에 16%(80명)만이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이웃으로 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상기 표 5 참조). 역시,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장동료로 수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500명 중 64.6%의 응답자들이 출소자 혹은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상기 표 7 참조). 또한,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 고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시, 전체 응답자들 중 71.8%가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상기 표 8 참조). 마지막으로, 본인들의 자녀와 출소자자녀와의 친구관계 인식여부 역시, 자녀가 있다면 출소자의 자녀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75.2%의 사람들이 매우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상징적인 구분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과 관련하여 이윤호외(2006)는 전과와 관련된 편견 중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위 '전과' 경력이 알려질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구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인섭외(1995)와 이윤호외(200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참가자들의 70%이상이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중에서도 80%이상이 단순 노동이나 생산직 혹은 기능직 그리고 서비스직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단순한 노동직에 주로 종사하게 되는 이유는 상기에 언급된 직종들이 특별한 기술들을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채용 시에 특별한 신용보증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경력 혹은 전과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취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게 된다. 한편으로는 경력 발각으로 인한 해고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출소자와 해당 가족들은 자신 혹은 가족구원들 중에 범죄경력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외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강력한 낙인과 편견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사회와 출소자들 가시에 명확한 상징

적인 거리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출소자와 그 가족들을 개개인의 독립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가족들 역시 출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 낙인 및 편견을 함께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들은 출소자의 재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래(2003)은 전과자에 대한 편견과 냉대(56,7%)가 출소자들의 재범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소자들에 범죄성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출소자와 출소자 가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중적 잣대 존재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주요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 출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표 3>의 연구결과에서는 출소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84%에 달하고, 이러한 차별의 이유로서 과반수의 사람들이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58%의 응답자들은 출소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에 위험을 끼친다고 응답하였다(표 4 참조).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에서 출소자 및 그 가족들과 가까이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표 5, 6, 7, 8, 9). 하지만 표 10의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지원에 찬성하였고, 출소자 자녀들은 제2의 피해자이므로 국가가 대국민 홍보와 가치관 교육을 통해 이러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출소자의 자녀들이 제2의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또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미시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출소자와 그 해당 가족들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출소자와 그 가족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더욱더 연장시키고, 사회적 관계들의 재구축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한다(Zimring & Johnson, 2006). 출소자는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간접적인 편견들로 인해 소위 '다른 죄값'을 치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시민들로부터의 지역사회 안전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은 가까운 친척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외로움과 고

독은 상당히 견디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교도소에서 만난 범죄인 동료를 찾거나 아니면 알코올과 같은 약물에 쉽게 의존하게 된다(Welsh & Harris, 2004).

상기와 같은 이중적 잣대 존재로 인해,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은 스스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출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해당 가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범죄의 세계로 빠지게 되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시킬 수 있다.

## 2. 추후사업방향 제시

### 1)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편견 억제를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다양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지역 사회의 성공적인 일원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들이 편입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낙인 그리고 편견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소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문화 및 경향 때문에 출소자의 가족들은 이중의 편견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견과 낙인을 억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프로그램(가족사업; 지역친화사업; 교육사업; 보호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사업은 다시 '가족심리 상담프로그램'과 가족친화프로그램 등으로 구분가능하다. 또한 교육사업은 상담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연구용역, 내부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등과 공단직원 및 보호위원 법사랑 위원, 지역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호 사업 및 상담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총체적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호사업은 출소자 및 출소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증진을 위한 직접 그리고 간접적 지원들을 주요 업무로 한다. 나머지 하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이다. 출소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편견 억제는 그러한 편견을 만드는 주체인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가족희망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사회성향상, 자아탐색, 진로탐색 및 자기개발, 분노조절 프로그램, 집단심리검사 등 일반적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의 편견 억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 환원 성격의 프로그램들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출소자의 자녀를 제2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500명 중에 55.4%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출소자 자녀는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죄인과 가족을 분리하는 대국민 홍보와 가치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4.4%의 응답자들이 “국가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출소자를 격리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80%의 응답자들이 출소자의 자녀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응답하였고, 그 자녀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필역하였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지역사회와 화합하고 공동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출소자와 그 가족들을 복원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편견 억제를 위한 홍보 가치관 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출소자 및 그 가족복원을 위한 가족희망센터에 아주 중요한 사업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2) 가족희망센터의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본 연구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출소자 및 가족에 대한 편견을 억제하고 지원할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이 그들의 가족복원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지원의 필요성에 느낀 273명의 본 연구 참가자들은, “자녀학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165명),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144명), “가족 취업지원”(138명) 등의 필요성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가족희망센터 혹은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여부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기준 현재 가족희망센터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역친화사업’과 ‘교육사업’을 제외하고 ‘가족사업’과 ‘보호사업’을 주요사업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사업’은 다시 ‘가족심리 상담 프로그램(가족심리상담; 가족심리검사; 가족집단상담)’과 ‘가족친화프로그램(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사업’은 ‘자녀학업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며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형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가족심리 상담프로그램에서 가족심리상담의 경우 해당 출소자 가구 이내에서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심화 프로그램으로서 개인 상담과 가족 내 집단상담 등의 업무일체를 담당한다. 가족심리검사의 경우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심리검사 일체를 지칭하며 모든 상담 및 프로그램과 동시 진행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가족집단상담의 경우는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집단 상담으로 가족 간의 집단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에서 가족 교육의 경우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 이론 교육으로 주로 워크숍 혹은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가족캠프의 경우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며 캠프 내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캠프 구성원에 따라 부부캠프, 가족캠프, 청소년 캠프 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문화체험 행사의 경우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가족캠프에 비해 문화 예술 체험, 레저의 특징이 가미된다.

또한, 보호사업의 경우 자녀학업지원이 핵심 사업이며 교복, 교재, 학용품 구입, 학비 및 급식비 지원 그리고 방과 후 활동비 지원 등의 직접지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 도우미 서비스와 같은 학업 멘토링 등의 간접지원이 있다.

본 연구조사결과, 지원을 필요성을 느낀 과반수 이상(273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165명이 “자녀학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학업 지원’은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된다. ‘직접지원’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10만원 이하, 초등학생은 15만원 이하, 중학생은 20만원 이하, 고등학생은 25만원 이하 등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교재, 교복, 학용품 등에 대한 구입 지원과 교통비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간접지원’의 경우 외부 활동 상담사를 활용한 상담사와 출소자 자녀 사이의 1대1 상담 멘토링을 위한 소위 ‘상담 멘토링’, 지역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대학생 보호위원 등 멘토링 활용을 통한 개인 학습지도 등의 ‘학업 멘토링’, 체육활동 또는 체험 활동, 학습치료 등 자녀의 학업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문화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녀학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가족희망센터 포함)의 내부 자료를 통해 2014년도 시행성과를 살펴보면, 600명 계획에 919명(153.2%)이 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으며, 총 3,180건(교재 420; 학용품 335; 학비 12; 교복 139; 간접지원 2,166; 기타 108)에 대해 170,984,000원이 지원되었다. 시민들이 소위 ‘자녀학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한 것은, <표 10>의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지원에 찬성하였고, 출소자 자녀들은 제2의 피해자라는 인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사회 안전 및 재범 방지 차원에서 가족희망사업의 중점 사업으로 ‘자녀학업지원’과 같은 ‘보호사업’에 더욱 많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 과반수 이상(273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144명이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14년 1월부터 동년 12월말까지의 가족희망센터 사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260명에 대한 지원계획을 시작으로 최종으로 297명이 가족사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았다. 즉, 기존 계획 260명보다 많은 297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원을 필요성을 느낀 과반수 이상(273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138명이 “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예하 22개[18]의 지부, 센터, 지소에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기타 자립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민들이 현재 가족희망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자녀학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취업지원” 등은 가족희망센터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해당 업무들이 가족희망센터 혹은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혹은 가족희망센터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나아가 시행하는 혹은 시행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 홍보 부족에서 기인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취업지원사업은 법무보호복지공단예하의 전국 지부 및 지소에서 담당하고 심리상담 사업은 가족희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적극적 홍보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족희망센터가 2013년 10월 4일 개소이후 2014년에는 센터 미건립으로 인해 가족심화상담프로그램 및 지역친화프로그램 사업수행의 지체 등의 문제들로 홍보적 측면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음을 인지하면서도 본래 취지인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통한 재범방지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센터와 그 해당 업무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 3) 일반시민들의 이중적 잣대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중적 잣대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은 가족희망센터내의 지역사회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는 지역적, 시

18) 서울지부(서울서부지소; 서울북부지소 포함), 인천지부, 경기지부(경기동부지소), 경기북부지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대전충남지부, 대구경북지부(경북서부지소 포함),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경남서부지소 포함), 광주전남지부(전남동부지소; 광주남부지소), 전북지부, 제주지부, 여성지원센터 등.

간적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부와의 연계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에 주기별로 차별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현재 한국의 교육기관(초, 중, 고등학교 등)에서는 1년에 1번씩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다문화 교육과 같은 특별강연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의 연계 혹은 독립된 프로그램을 가족희망센터 차원에서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출소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이중적 잣대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출소자와 그 가족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정호(2013). “출소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지속방안”. 보호관찰. 13(2): 221-247.

박선영(2012). 수형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현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 최영신(2008). 수용자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입법 타당성 검토 및 법률시안 작성.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순래 · 박현기(2007). “비행소년의 발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1(2): 149-190.

이원복 · 김미숙 · 박민선 · 박혜련(201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출소자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은 중심으로.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황의갑 · 박선영(2010). “수형자 사회복귀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6(2): 311-342.

유현숙 · 김남희 · 김안나 · 김태준 · 이만희 · 장수명(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

이광우(2008).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숙정 · 박소연 · 유지현(2013). “대학생용 조직생활 성공역량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7(1): 51-76.

이윤호 · 윤옥경 · 남재성 · 함혜현 · 김순석 · 김대권(2006).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정진수 · 김기환 · 유병철 · 이창한(2009).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천정환 · 김기현(2010). “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교정적 의의”. 교정연구. 48.

최인섭 · 김지선(1995).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 황정임(2006).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 홍영오 · 이법호 · 정영진 · 이창한 · 김안식(2007).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연계.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옥채(2011).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방향”. 교정담론. 5(1).

최조순(201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인섭(1991).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kers, R. & Sellers, C. S. (200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Los Angeles, CA: Roxbury Publishing.

Applegate, B., Cullen, F. & Fisher, B. (2002). “Public views toward crime and correctional policies: Is there a gender gap?”.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89-100.

Barkan, S. E. & Cohn, S. F. (1994). “Racial prejudice and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by whit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2): 202-209.

Baron, S. W. & Hartnagel, T. F. (1996). “Lock them up: Attitudes toward punishing juvenile offender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8: 191-212.

Baumer, E. P., Rosenfeld, R. & Messner, S. F. (2000). The effect of homicide rates on support for capital punish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San Francisco, California.

Baumer, Eric P., Steven F. Messner, & Rosenfeld. R. (2003). "Explaining Spatial Variation in Support for Capital Punishment: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 844-875.

Bazemore, G. & Schiff, M. (2001). Restorative Justice and the Offender: The challenge of reintegration.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Becker, Howard 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Blumstein, A. & Cohen, J. (1980). “Sentencing of convicted offenders: An analysis of the public's views”. Law and Society Review, 14: 223-62.

Bohm, R. M., Clark, L. J. & Aveni, A. F. (1991). “Knowledge and death penalty opinion: A test of the Marshall Hypothe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8(3): 360-387.

Bohm, R. M. & Vogel R. E. (1994). “A comparis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uninformed and informed death penalty opin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 125-143.

Borg, M. J. (1997). “The southern subculture of punitiveness? Regional

variation in support for capital punish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25-45.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aithwaite, J. & Mugfold, S. (1994). "Conditions of successful reintegration ceremoni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4: 139-171.

Britt, C. L. (1998). "Race, religion, and support for the death penalty: A research note". Justice Quarterly, 15(1): 175-191.

Brooks, L. E., Visher, C. A., & Naser, R. L. (2006). Community resident's perceptions of prisoner reentry in selected Cleveland neighborhood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Clear, T.R., & Karp, D.R. (1999). The community justice ideal: Preventing crime and achieving justice. Boulder, CO : Westview.

Clear, T.R., Rose, D.R., & Ryder, J.A. (2001). "Incarceration and the community: The problem of removing and returning offenders". Crime and Delinquency, 47(3): 335-351.

Cohen, S. F., Barkan, S. E., & Halteman, W. A. (1991). "Punitive attitudes toward criminals: Racial consensus or racial conflict". Social Problems, 38(2): 287-296.

Costelloe, M. T., Chiricos, T., Burianek, J., Gertz, M. & Maier-Katkin, D. (2002). "The social correlates of punitiveness toward criminals: A comparison of the Czech Republic and Florida". The Justice System Journal, 23(2): 191-213.

Cullen, F. T., Clark, G. A., Cullen, J. B. & Mathers, R. A. (1985). "Attribution, salience and attitudes toward criminal sanction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2(3): 305-331.

Doob, A. & Roberts, J. (1984) "Social Psychology, social attitudes and attitude towards sentenc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6: 269-280.

Evans, T. D. & Adams, M. (2003). "Salvation or damnation? Religion and correctional ideology".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1): 15-35.

Falco, D. L. (2008). Assessing Students' Views toward punishment: A comparison of Punitiveness among criminology and non-criminolog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8). Retrieved from http://dspace.lib.iup.edu:8080/dspace/bitstream/2069/120/1/Diana+Falco.pdf

Gideon, L. (2008). Public attitude toward prisoners rehabilitation, reintegration and reentry. Presented at the ACJS Annual Meeting in 2008.

Golembeski, C. & Fullilove, R. (2005). "Criminal (in)justice in the city and its associated health consequen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10): 1701-1714.

Grasmick, H. G. & McGill, A. L. (1994). "Religion, attribution style, and punitiveness toward juvenile offenders". Criminology, 32(1): 23-46.

Hans, V. P. (1986). "An analysi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insanity defense". Criminology, 24: 393-414.

Immerwahr, J. & Johnson, J. (2002). The revolving door: Exploring public attitude toward prisoner reentry. Retrieved from http://www.urban.org/UploadedPDF/410804_RevolvingDoor.pdf

Jocobi, J. H. (1975). Reducing Police stress: A psychiatrist's point of 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Krisberg, B. & Marchionna, S. (2006). Attitudes of US voters toward prisoner rehabilitation and reentry policies.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page. Retrieved from http://www.nccd-crc.org/nccd/pubs/2006april_focus_zogby.pdf

Lambert, E. G., Pasupuleti, S. & Allen, R. (2005). "Punishment and rehabilitation views of social work majors and non-social work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South Carolina Academy of Science, 3(1): 31-42.

Langworthy, R. H. & Whitehead, J. T. (1986). "Liberalism and fear as explanations of punitivenss". Criminology, 24: 575-591.

Lemert, Edwin M. (1967). Hunam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Mackey, D. A., Courtright, K. E. & Packard, S. H. (2006). "Testing the rehabilitative ideal among college students". Criminal Justice Studies, 19(2): 153-170.

McCorkle, R. C. (1993). "Punish and rehabilitate? Public attitudes toward

six common crimes". Crime and Delinquency, 39(2): 240-252.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elvin, K. B., Gramling, L.K., & Gardner, W.M. (1985). "A scale to measure attitudes toward prison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2(2): 241-253.

Niederdoffer, A. (1969). Behind the shield: The police in urban society. Garden City, NY: Doubleday

Pepinsky, H. E., & Quinney, R. (1991). Criminology as peacemaking.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Petersilia, J. (2003). When prisoners come home. NewYork, NY: Oxford press.

Roberts, C. A., Doble, J., Clawson, E., Selton ,C. & Briker, A.(2005). Rethinking Justice in Massachusetts: Public attitudes toward crime and punishment. Boston, MA: The Boston Foundation.

Rossi, P. H. & Berk, R. A. (1997). Just punishments: Federal guidelines and public views compared. NewYork, NY: AldineDeGruyter.

Simmons, J. L. (1975). "Public Stereotype of Deviants", Perception in Criminology.

Sims, B. (2003). "The impact of causal attribution on correctional ideology: A national study". Criminal Justice Review, 28(1): 1-25.

Sprott, J. B. & Doob, A. N. (1997). "Fear, victimization, and attitudes to sentencing, the courts, and the polic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275-291.

Sprott, J. B. (1999). "Are members of the public tough on crime? The dimensions of public punitivenes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7(5): 467-474.

Stuart, B. (1996). "Circle Sentencing in Yukon Territory, Canada: A Partnership of the Communit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20(1): 291-309.

Tannenbaum, F. (1938). Crime and the Community. Boston: Ginn.

Travis, J. (2005). But they all come back.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Tyler, T. R. & Boeckmann, R. J. (1997).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but why? The psychology of public support for punishing rule breakers". Law &

Society Review, 31(2): 237-265.

Umbreit, M. S. (1989). “Victims seeking fairness, not revenge: Toward restorative justice”. Federal Probation, 53(3): 52-57.

Van Ness, D. W. & Strong, K. H. (1997). Restoring justice.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mpany.

Weiner, T. S. & Eckland, B. K. (2004) Education and political party: The effects of college or social 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1): 911-928

Welsh, W. N. & Harris. P. W. (2004). Criminal justice policy & planning. Albany, NY: LexisNexis.

Young, R. L. & Thompson, C. Y. (1995). “Religious fundamentalism, punitiveness, and firearms ownership”.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8(2): 81-98.

Zehr, H. (1990). Chainginglenses. Scottsdale, PA: Herald Press.

Zimring, F. E. & Johnson, D. T. (2006). “Public opinion and the governance of punishment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 605: 266-280.

세부연구 3

# 대상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
-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

# 세부연구 3. 대상자의 출소겸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 195

**Ⅱ. 이론적 배경** ····· 197
1. 출소자의 범죄사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197
2. 여성출소자 ····· 202
3. 수감 중 가족 접촉 ····· 209

**Ⅲ.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 ····· 228
1.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 결과 ····· 228
2.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를 통한 제언 ····· 278

**Ⅳ.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 ····· 295
1.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 결과 ····· 295
2.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를 통한 제언 ····· 343

**Ⅴ.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 본 가족복원사업의 의의와 과제** ····· 358

# Ⅰ.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범죄 사실은 감추어져야 하고 타인이 알면 안 되는 치부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범죄 사실에 대해 사회나 이웃이 알았을 경우 출소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받는 부정적 영향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과의 유대가 재범률을 줄임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출소자의 성공적이고도 건강한 사회 적응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Home Office, 2006). 수감기간 중 가족과의 유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가족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즉 출소자의 범죄 사실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출소자 가족복원과 가족유지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사실이 가족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은 가족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 수감 전 가족과의 관계, 부모-자녀 관계 양상, 가족 의사소통방식, 출소자 및 배우자의 개인심리적 특성, 범죄의 유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복잡하고 미묘한 영역이다.

집단주의적이고 관계 중심적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소자 개인의 범죄 사실로 인해 출소자 가족 전체가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 사회 뿐 아니라 출소자 가족 내에서 출소자의 범죄 사실을 다루는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 풍토 속에서 출소자의 범죄 사실은 무의식적인 가족 간 합의에 의해 “가족의 숨겨진 신화”로서 작동하여 공개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족의 역동은 가족 간의 친밀한 소통과 신뢰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출소자의 범죄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과 상처를 공유하고 소통할 기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서적 지지자와의 단절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과자의 가족이라는 주위의 시선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서(남상철 외, 2002), 출소자의 가족관계는 수감 생활 뿐 아니라 출소 후 삶의 모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출소자에게 있어 사회와의 화해를 위한 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전영실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출소자 가족들이 범죄 사실을 다루는 방식 및 이러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고

자 한다. 또한 숙식제공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족복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과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분석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이 가족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출소자 가족들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출소자 가족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진단하며, 범죄 사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공 사례(촉진요인) 발굴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출소자의 범죄 사실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출소자 가족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소자 가족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출소자 가족이 겪는 문제점을 안다면, 문제점의 해결을 통해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범죄자가 수감되어 가족 내에서 부재되었을 때,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첫 번째 접촉자인 출소자 배우자와 출소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가. 수감 중 가족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가족구성원의 수용으로 인하여 가족이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수용자 가족의 경우 가정이 가지는 문제 해결능력이나 역할 수행과 같은 본래의 가능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는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신연희 외, 2007).

가족과의 분리는 수용자들에게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움, 불안과 갈등을 겪게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또한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정서적인 고통, 아이들과의 관계 변화, 가족과의 갈등, 노동의 문제, 가난, 공공지원의 필요, 면회의 어려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출소를 기다리며 지내는 동안 가족들은 가장을 상실하거나 주양육자를 상실하여 남은 가족이 실제 경제적인 활동까지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기수용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수용과 더불어 수용자뿐만 아니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6배 이상이 되는 가족들이 다양한 위기에 놓여있다(김용수 외,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자와 가족들의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가족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이 있으며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국가의 가족정책 역시 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 심리적 어려움

수용자 가족들은 수치심과 수용자 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 또한 수용자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눈초리에 시달리게 된다. 심지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바꾸어야 한다. 가족에게 주어지는 간접적인 낙인효과는 혈연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수용자 자녀들이 겪게 될 고통은 제2차적인 간접 피해자를 만들게 되고 제2의 범죄자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나철, 1992).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범죄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처하는 가족과 한쪽 부모와 안정된 가정을 잃게 되는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이다. 그리고 이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되어가면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어 한쪽 또는 양쪽 부모 모두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달과정상 가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사회는 수용자 자녀들을 정책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은 집단으로 소외된 채 방치되어 왔다(신연희, 2012).

3) 가족해체

수용자들은 교도소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수용자가 교도소에 수용되면 그 가족들은 범죄인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함께 수치심, 증오심, 소외감 등을 느끼며 범죄의 숨겨진 희생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심, 불신감만 쌓이게 되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심지어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박영숙, 2007).

부모 중 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부부의 이혼 그리고 부모의 이혼을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전영실 외, 2007).

만약 가족 구성원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가정해체가 발생한다면 수형자의 교화 효과와 출소 이후의 사회적응의 기대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수형자의 가족해체는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과 수형자간 접견이 자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들이 수형자와 자주 접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신연희, 2009). 수형자가 가족들과 먼 거리에 떨어져있는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으며, 그 다음 문제로는 경비 문제를 지적했다. 수형자와 원거리에 있다 보니 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족들은 자주 방문하고 싶지만 비용 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자주 방문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4) 경제적 어려움

신연희(2002)의 연구에서 우선 출소자 가족들의 상황을 주목하는 입장에서 출소자 가족들은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의 구속으로 인하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그들의 가장이 수감됨으로 인해 생계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는 부분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직접적이고도 궁극적인 문제들이다. 또한 가족들은 수형자의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인 지원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지지와 정서적인 지지의 부족이라는 이중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구금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가정이었을 경우에도 심각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남편이 구금된 경우 부인이 남편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하고 자녀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배려나 돌봄을 할 수 없게 되고 자녀는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다. 이러한 수용자 가정의 스트레스는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박영숙, 2007).

### 나.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는 출소자가 감옥에서 나와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힘이다. 가족과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출소자에게는 보금자리로 인식되며, 보금자리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출소자들의 의지를 북돋는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배우자는 출소자와 자녀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출소자와 출소자 자녀의 관계개선에 있어 자녀의 어머니인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출소자가 겪는 사회적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만나서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대답한 수감자는 54.1%, 출소자는 42.2%였다. 즉, 출소자 가족복원을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감 기간 내의 지속적인 접촉과 함께 출소자가 가족과 배우자 관계를 풀 시간이 필

요한 것이다.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은 출소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이다.

배우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아내 혹은 남편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1차 충격으로 다가오고, 사회적인 시선이 2차적으로 그들을 괴롭힌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라지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됨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낙인으로 수형자의 배우자도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시달린 배우자들은 출소자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혼 등 가정해체가 일어난다. 출소자 588명 중 27%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답했고, 이 중 23%가 ‘출소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3). 성인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신연희, 2002)에서는 조사대상 여자수용자의 90.5%, 남자수용자의 67.2%가 자녀가 있는데, 수용된 후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하였다. 여성 출소자가 남성에 비해 가족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를 기다리는 배우자들은 수감 전에도 관계가 좋았던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 있지만, 수감 시 접촉의 기회가 많았던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배우자 그리고 가족은 출소자의 의식주 해결,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을 구현하여 범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소자와 배우자간 그리고 나아가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 출소자의 범죄 사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자들은 어린이들이 부모의 구금으로 받는 상실감을 어린이가 부모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과 비교하여 설명한다(Temin, 2001). 부모 수용의 결과는 빈곤과 저소득의 문제, 안전하지 않은 주거환경, 비효과적인 교육환경, 불균형적인 식생활과 취약한 보건의료 환경 등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Brooks-Gunn et al., 1997).

부모의 수용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자녀들의 심리적 외상, 불안·수치심·불면증·우울감·죄책감 등과 같이 내현화된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노·공격·주변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의 표출 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적절한 보살핌, 훈육과 지도감독의 부족이 학교에서의 부적응적 행동이나 비행행동에의 연류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그 양상은 다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신연희, 2012; Hagan &

Dinovitzer, 1999; Murray and Farrington, 2008).

부모의 부재로 경제적, 물리적, 정서적으로 열악해진 환경은 고사하더라도 부모가 범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이는 수용된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으로, 여기에 부모의 교도소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또래친구, 가까운 친척들, 선생님, 이웃사람들로부터 외적인 낙인이 추가되었을 때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Eddy & Reid, 2002). 부모의 범죄 경험으로 인한 사회적인 낙인은 출소자의 자녀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3년 11월 성범죄 전과자인 아버지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박모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동아일보,2013.12.3.).

수감부모를 둔 자녀들의 또 다른 정신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낮은 학업성취이다. 내현화된 문제나 외현화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거나 대학을 가는 확률이 적었다(McLeod and Kaiser 2004).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어린 시절인 유치원에서부터 부정적으로 꾸준하게 학업에 나타난다(McLeod and Kaiser 2004).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낮은 학업성취에 대한 문제들은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관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Dallaire 2010).

국내연구에서도 기혼 남녀수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전영실, 신연희, 2009)에 따르면 자녀가 교정시설 방문 시 '아이가 말이 없어짐',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었다'는 응답이 각각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환경도 매우 불안정해진다. 수형자 자녀 중 30%는 부모의 입소 뒤 2번 이상 보호자가 바뀌었다. 보호자가 없어 아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20%가 넘었다. 자연스럽게 공부와도 담을 쌓게 된다. 부모의 입소 후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떨어졌다는 대답은 25%, 학교를 결석하거나 무단이탈을 하는 아이도 11%를 차지했다. 학교를 중퇴해 버리는 아이도 7%에 달했다.

수용자 자녀나 범죄자 자녀들의 연구는 주로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자녀들의 충격을 다루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폭력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Hagan & Dinovitzer, 1999; Moffitt, 1993; Moffitt et al., 2001; Murray and Farrington, 2008; Nagin & Temblay, 2001; Wildeman, 2009). 비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례가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수용자자녀들이 더 많다고 한다(Murray & Farrington, 2005; Phillips et al., 2002).

어린 나이(후기 아동기, 초기 청소년기)에 범행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이러한 행동을 성인기에도 계속하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Gendreau, Little, & Goggin,

1996; Loeber, Stouthamer-Loeber, & Green, 1991; Moffitt, 1993; Patterson, Capaldi, & Bank, 1991). 또한 이런 청소년들은 다른 문제행동에도 높은 위험 가능성을 지녔는데, 학업성취의 어려움, 약물사용, 이른 성적 행동 등이며 이러한 행동들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높았다(Dryfoos, 1990; Hawkins, 1995; Howell, 1995).

## 2. 여성 출소자

가족 내에서 배우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역할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소자 가족복원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그러나 사회,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으며, 그만큼 여성 출소자가 겪는 어려움도 크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성 출소자 가족복원을 위해 남성과는 차별되는 여성 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여성 출소자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어머니로서 여성 출소자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여성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1) 여성 출소자와 가족 관계

우선 여성 출소자의 가족 관계 내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기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김인숙, 1992), 남자 수형자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32.8%에 비해 여성 수형자는 21.3%로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최영신, 황정임, 2006). 즉, 여성범죄의 70-80%가 기혼여성에 의한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기혼자가 81.9%, 미혼자가 18.1%로 드러났다. 이를 미루어보아 여성 출소자의 경우 출소 후 가정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1> 여성범죄자 결혼관계 인원 및 구성비(2008년-2012년)

| 구분 / 연도 | 결혼관계 | | |
|---|---|---|---|
| | 기혼 | 미혼 | 계 |
| 2008년 | 310.049(81.3) | 71.192(18.2) | 381.241(100) |
| 2009년 | 330.907(81.1) | 77.204(18.9) | 408.111(100) |
| 2010년 | 255.405(81.1) | 59.350(18.9) | 314.755(100) |
| 2011년 | 258.523(82.1) | 56.342(17.9) | 314.865(100) |
| 2012년 | 290.731(81.9) | 64.123(18.1) | 354.854(100) |

주: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 ( )안은 분포백분률

구체적으로 수감 후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여자 수형자들은 대체적으로 구금 전부터 불안정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구금으로 인해 가정 상태 악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정 해체에 이르게 되면서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보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인 경우가 남자 수형자에 비해 높았다(신연희, 2002).

아버지가 수감될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와 대부분 생활하게 되지만, 어머니가 수감되는 경우 약 1/3 가량만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른 친척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났는데(Glaze & Maruschak, 2008; Munola, 2000), 이는 여자 수형자의 경우는 남편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배우자와 자녀가 흩어져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신연희, 2002).

이렇듯 어쩔 수 없이 자녀양육을 배우자나 친척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여성 수형자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더욱 고통 받게 된다(Penny Leapheart, 1997).

또한 여자가 구금된 경우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녀들을 본가로 보내어 어머니의 강제적 단절을 일으키는데, 이는 구금 후 남자 수형자에 비해 여자 수형자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점차 가정해체가 심화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설사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속 후 남편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신연희, 2002)에 따르면 남자 수용자 67.2%, 여자 수용자 90.5%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여성 출소자의 가장 큰 원동력인 자녀와의 단절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이외 많은 연구에서 대다수의 수형자들이 편부, 편모,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성장

하고 가정폭력을 겪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하지 못한 원가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 여성 출소자의 경제적 현실

여성의 경우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취업 기회 등과 같은 기회 구조적 변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 출소자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여성 출소자의 경우 생계형 범죄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Mumola(2000)의 연구에서도 수감 전 여성 범죄자(50%)가 남성(27%)에 비해 약 2배가량 더 실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여성 수형자는 동등하게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laze & Maruschak, 2008). 전반적인 국내 여성수형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횡령, 살인, 절도와 같은 특정 범죄유형의 비율이 남자 수형자에 비해 높으며, 3년 미만인 단기 수형자 및 초범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범죄동기가 '생활비 충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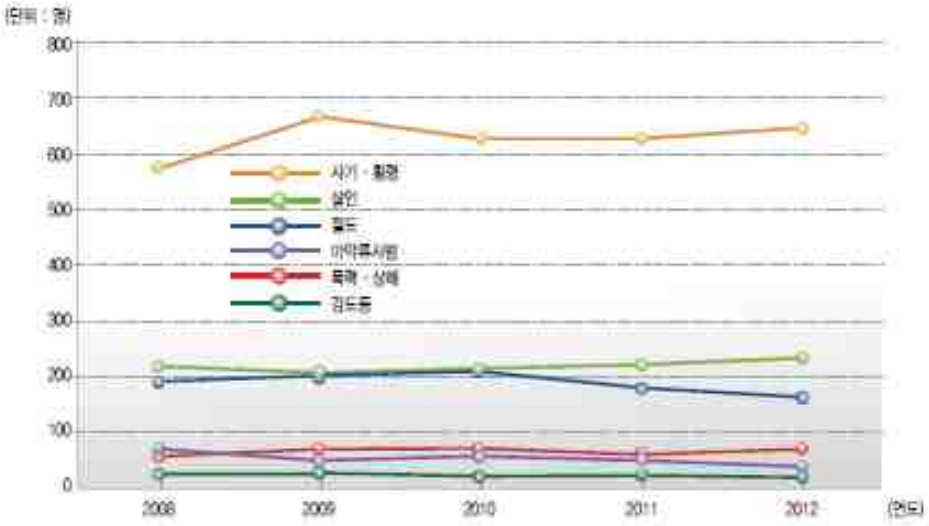
아래의 표는 2008년-2012년까지 청주여자교도소 및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여성 수형자의 죄명별 인원과 죄명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3.2> 여성수형자 죄명별 인원(2008년-2012년)

| 연도 / 죄명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계 | 1,474(100) | 1,538(100) | 1,447(100) | 1,504(100) | 1,571(100) |
| 절 도 | 191(13.0) | 202(13.1) | 212(14.7) | 184(12.2) | 156(9.9) |
| 사기 · 횡령 | 566(38.4) | 660(42.9) | 570(39.4) | 623(41.4) | 649(41.3) |
| 폭력 · 상해 | 56(3.8) | 63(4.1) | 63(4.4) | 58(3.9) | 67(4.3) |
| 강 도 등 | 42(2.9) | 46(3.1) | 41(2.8) | 42(2.8) | 39(2.5) |
| 살 인 | 226(15.3) | 208(13.5) | 206(14.2) | 218(14.5) | 236(15.0) |
| 약취 유인 | 7(0.5) | 3(0.2) | 3(0.2) | 4(0.3) | 3(0.2) |
| 마약류사범 | 77(5.2) | 50(3.3) | 55(3.8) | 51(3.4) | 45(2.9) |
| 과 실 범 | 21(1.4) | 17(1.1) | 7(0.5) | 13(0.9) | 23(1.5) |
| 기 타 | 288(19.5) | 289(18.8) | 290(20.0) | 311(20.7) | 353(22.5) |

주: 1.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
2. 폭력은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포함
3. ( )안은 분포백분률

<그림 3.1> 여성수형자 죄명 변화추이 2008년-2012년(범죄백서, 2013)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최근인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사기 및 횡령이 40% 전반을 형성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년간 변화 추이는 큰 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erry & Eigengberg(2003)의 여성 수형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수형자들은 대부분 도시 빈민 지역 출신이었다. 이러한 지역의 자녀들은 대부분은 홀어머니나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기 때문에, 여성이 저지른 가장 일반적인 범죄유형은 생계유지를 위한 비합법적인 사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여성들은 어린 시절 학대경험을 겪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 복용 및 비행에 연루되다가 수감되고, 석방 후 다시 재범을 일으켜 자녀가 어머니와 똑같은 악순환을 밟게 된다고 한다. 덧붙여 Bloom(1995)에 따르면 여성수형자들은 범행 당시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고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구조사는 범행당시 경제수단이 열악하고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범죄의 중요 동기가 경제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여성 출소자는 안타깝게도 출소 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제한된 취업구조로 인해 고통 받게 된다. 2013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성 범죄자 생활환경 인원 및 구성을 조사한 결과, 하류가 39.4%, 중류가 22.8%, 상류가 0.6%로 하류가 약 40%에 육박해, 여성범죄자들 생활고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표 3.3> 여성범죄자 생활환경 인원 및 구성비

| 구분 / 연도 | 생 활 정 도 | | | | |
|---|---|---|---|---|---|
| | 계 | 하 류 | 중 류 | 상 류 | 미 상 |
| 2008 | 381.241 (100) | 158.234 (41.5) | 98.232 (25.8) | 2.686 (0.7) | 122.089 (32.0) |
| 2009 | 408.111 (100) | 167.145 (41.0) | 102.945 (25.2) | 2.685 (0.7) | 135.336 (33.2) |
| 2010 | 314.755 (100) | 132.111 (42.0) | 80.943 (25.7) | 2.566 (0.8) | 99.135 (31.5) |
| 2011 | 314.865 (100) | 127.951 (40.6) | 74.270 (23.6) | 1.967 (0.6) | 110.677 (35.2) |
| 2012 | 354.854 (100) | 139.403 (39.3) | 80.877 (22.8) | 2.207 (0.6) | 132.367 (37.3) |

주: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 ( )안은 분포백분률

덧붙여 특히 여성 출소자의 경우 남성 출소자에 비해 낮은 고용율과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성이 있어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Greenfeld & Snell, 1999; McClellan, Farabee, & Crouch, 1997). 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법 기관의 역할에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Kaukinen&Sandra, 1999). 여성 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뚜렷한 기술이 없으며, 교육 수준이 낮다(김인숙, 1992). 이러다보니 취업 구조는 제한되어있고, 여기에 사회적 낙인까지 찍힌 상황에서 여성 출소자들은 향락산업과 관련된 퇴폐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사 직업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불안정한 고용상태일 경우가 많아 저임금 혹은 열악한 조건 하에서 지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다 보니 다시 현실에서 비합법적인 범죄행위로 빠져들 위험에 노출되고, 자녀와의 결합 및 과거 역할로의 재편입에 있어 다시 어려움에 봉착되는 경우가 많다(hawkins 1995:118-120).

### 나. 어머니의 수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녀이다. 수형자 가족들은 부모의 구속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자녀 특히 미성년자 자녀는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자녀가 있는 수형자들은 90%이상이 수감

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신연희, 2002), 이는 자녀 양육 혹은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배우자의 부재로 많은 수형자 가정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여성 수형자의 경우 남성 수형자의 경우보다 가정해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또한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구금되는 경우와, 사회 저소득층 대상자가 구금되는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며, 곧바로 경제적 빈곤과 직결된다. 그런데 여자 수용자의 경우 수용 전에 대부분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Stanton, 1980), 생계에 대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무관심속에서 자녀는 방치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함께 사는 생활을 유지하다가 구금으로 인해 자녀는 부득이하게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정서적/발달적/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관계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 양육자 변경, 학교의 이전 등 외부적 환경 변화 역시 상당하다.

구금과 그에 따른 불안정한 양육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들은 다양한 부정적 심리/정서적 충격을 받게 된다. 특히 여성 수형자들이 자녀 문제로 남성 수형자들보다 심리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어머니의 구금이 아버지의 구금보다 더 충격적이라 그만큼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모자간 상호의존적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것으로, 여자수형자들이 남자수형자들에 비해 구속 전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심리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신연희, 2002). 참고로 구금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더욱 크나큰 충격을 동반하는데 Carolus(1997)에 따르면 아이들이 구금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며, 문제는 이러한 고통 등에 대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조차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의 분리를 자녀들은 자신에 대해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서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Liebling, Maruna, Willan, 2005).

이와 더불어서 자녀들은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사회적인 낙인으로 고통 받게 되는데, 자녀들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한 부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자녀 스스로가 부모의 범죄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 고통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직 어린 아동 및 청소년에게 날카로운 사회적 편견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제 2의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범죄자의 자녀로 더욱 생각하는 경향이 커 보인다. 낙인이론에

의하면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수치는 가족들에게 고립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며 그로 인해 사회망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1991).

종합적으로 부모와의 단절, 경제적 궁핍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과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에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져 자녀들은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기 매우 힘들다.

이로 인해, 수감을 경험한 부모의 자녀들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West & Farrington은 부모의 범죄와 아동의 비행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연구결과 비행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Farrington(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구금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대상자를 구금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진 소년, 죽음 등 다른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소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소년 -이렇게 3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금으로 부모와 떨어지게 된 소년들이 비행 등 더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소년보다 약 5배 정도, 구금 이외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소년보다 약 3개 정도가량 성인 범죄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 청소년국과 비행방지국의 199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자의 자녀가 비행청소년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범죄대물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자녀들은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불우한 환경을 물려받게 됨에 따라 부모를 이어 범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어머니가 구금 되는 동안 자녀들 중에는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한다(Greene, Haney & Hurtado, 2000). 이는 자녀들이 비행위험요인이 내제된 가정이란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으로 보았으며(박영숙, 2007), 여성이 수감된 경우 더욱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그러하다. Glueck은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앗아가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부모의 구금 후 부정적인 자녀의 행동변화는 우울증, 공격성, 퇴행, 위축, 섭식장애, 수면장애, 과잉행동장애, 집착, 가출, 낮은 학업성취도, 무단결석 등의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Murray & Farrington, 2005). Kampfnersms(1995)의 수형자 자녀 대상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치심, 낙인, 부모와의 약해진 유대감, 발달장애, 돌보는 이의 변화로 인한 불안감 증가, 학대, 방치, 성적 하락, 경제적인 원조 박탈, 비행에 연류, 대인관계 회피 등 자녀들이 다양한 부정적 경험을 겪는다고 밝혔다. Hanlon 외(2005)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아동은 학업적 면에서 문제는 없으나, 자녀의 45% 가량이 학업에 전혀 흥미가 없고, 33%가 낙제점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구금되었

을 때 자녀들이 폭력적이고 싸움이나 술을 하는 반면, 어머니가 수감되었을 땐 지나치게 울거나 두려워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위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Tracis & Buckhead, 1982)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 반대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Hanlon 외(2005) 연구에 따르면, 비록 대략 1/3 정도의 자녀들이 싸움에 여러 차례 휘말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문제 행동에 심하게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략 1/3의 자녀들은 본인이 탈선 행동과 관련 있다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격적 혹은 공격성과 관련된 행동들은 10%미만의 자녀들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어, 수감 부모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행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보였는데, 수용 후 자녀들 행동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 행동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사법기간 접촉 및 처분 관련한 문항을 살펴보면, '보호 처분을 받은 적 있음'과 '소년원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1%만 그렇다고 응답해 부모가 수감된 자녀들이 심한 비행에 노출되는 것은 극히 소수였다. 하지만 낮은 비율의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한 점, 그리고 주로 내현적 문제 행동 등(소극적, 의기소침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비율 자체가 낮더라도 자녀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며 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수감 중 가족 접촉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낙인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낙인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자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회통제기관의 반응은 그 행위자의 자아 개념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대인관계는 물론 기회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전과자 혹은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권으로부터는 계속 추방되어 생활 기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강세현, 1997). 그 중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생활로부터의 격리를 이야기 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에 구금되면 가족, 친구 및 주변의 지인들과 격리되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대화 등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로인해 수용생활 동안 상당

수의 수용자들의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수용자들이 법적 결혼관계의 해제, 사실상 이혼, 그리고 자녀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신연희 2002; 전영실·신연희·김영식 2007).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를 경험하지만, 대다수의 수용자들은 출소 후 가족과 재회해야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으로 재결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윤옥경 외, 2006). 그러나 수용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가 출소 후 가족과 재회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재결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중에도 지속적인 가족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의 역할을 사회적 지지네트워크로 보는 입장에서는 가족과의 유대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적인 자극으로부터 개인들을 지켜준다는 사회심리학의 일반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Kaplan, Cassell, & Gore, 1977). 엄격한 규율과 통제, 초과구금, 거실에서의 끝없는 소음, 사생활 및 자유의 극심한 제한,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생활로 특징지을 수 있는 교도소의 환경(Wilfey, Rodon & Anderson, 1986)에서 수용자들은 스트레스가 충만할 수 있다. Agnew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 앞서 열거된 긴장요인 등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였다(Agnew, 1992). 이때 가족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은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며, 역으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단절되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출소자들은 심리적으로 무능해져서 출소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지지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사회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Hairston, 1988). 따라서 이러한 수용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교정시설 외부와의 접촉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배려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UN피구금자처우최저준칙 제37조 「외부와의 접촉(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에서 “수용자는 필요한 감독 절차에 따라 통신수단이나 접견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 또는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접견제도는 그 종류를 소송관련 접견(legal visit), 법정접견(statutory visit), 상우접견(privilege visit), 특별접견(special visit) 등으로 구분하여 접견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Livingstone 외, 1999). 특히 Prison Rules 제31조 제1항은 “수용자와 그의 가족, 양편의 이익에 바람직하도록 유대관계의 유지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감옥법 제45조(접견) 제 1항은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서는 “접견의 참여, 서신의

검열, 기타 접견 미 서신에 관한 제한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견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89조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품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 수용 중 가족과의 접촉

1) 가족의 접촉 방법

수형자의 사회적응성 및 가족관계 회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법이 시도 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접견교통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접견교통권제도를 통해 피수형자와 가족 및 친지 그리고 관련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고,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어 재범방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동임, 2012).

우리나라의 수형자의 처우에 따라 가족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접견, 유선, 귀휴, 가족 만남의 집 및 가족 만남의 날이 있다. 수형자를 분류할 때에 경비처우급[19]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에 분류하여 수용하기 때문에 접견이나 유선사용, 가족만남의 날 또한 경비처우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 접견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형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함부로 박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접견[20]은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 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하다. 또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허가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고, 수형자의 교화활동을 촉진하고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강화하고자, 보안야근근무체계 개편에

19)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할 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重)경비처우급(S4)으로 구분한다(범죄백서, 2013).

20)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7/cor_7020.jsp

맞추어 4부제 실시 기관의 경우 토요일에도 접견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부제실시기관의 경우 수형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로서 평일에 접견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접견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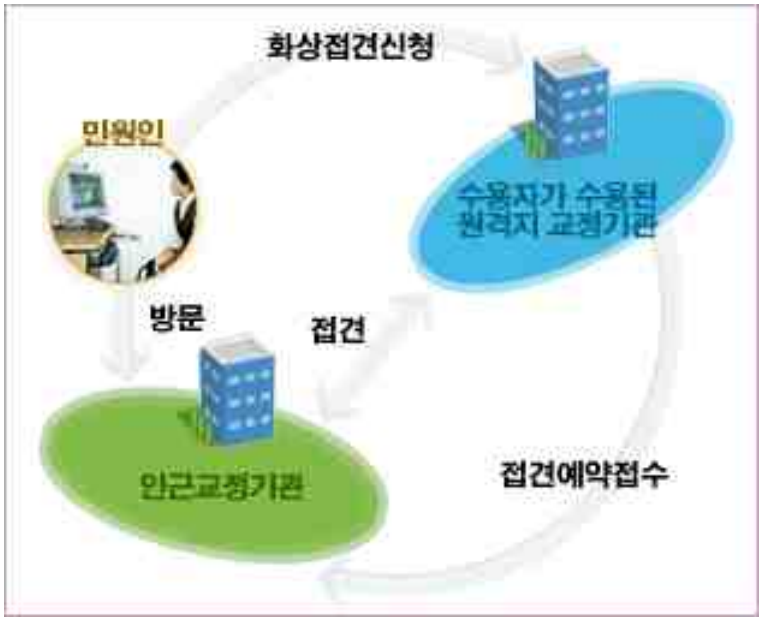
<표 3.4>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범죄백서, 2013)

| 처우 | 단계 | 개방처우급 (S1) | 완화경비처우급 (S2) | 일반경비처우급 (S3) | 중경비처우급 (S4) |
|---|---|---|---|---|---|
| 접견 | 허용 횟수 | 1일 1회 | 월 6회 | 월 5회 | 월 4회 |
| | 장소 | 접견실 외의 적당한 장소(개방시설 수용자 포함) | 접견실이 원칙, 처우상 필요시 접견실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 가능 | | |
| | 기타 | 화상접견은 접견횟수에 포함, 징벌대상자 접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구류형·순수노역수형자는 중경비처우급과 동일적용 | | | |

접견의 또 다른 방법인 화상 접견[21]은 가족친지 등이 수형자를 접견하기 위하여 먼 거리에 있는 교정시설까지 직접 찾아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하고자 마련된 시스템이다. 이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 수용자 가족이나 친지 등 이 인근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컴퓨터 모니터)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화상 접견은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화상접견도 접견 횟수에 포함되며, 교도관이 참여하는 등 일반접견과 같은 규정을 제공한다. 접견하고자 하는 수형자가 어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확인한 후 전화, 인터넷 등으로 예약신청을 한 후 이용 가능하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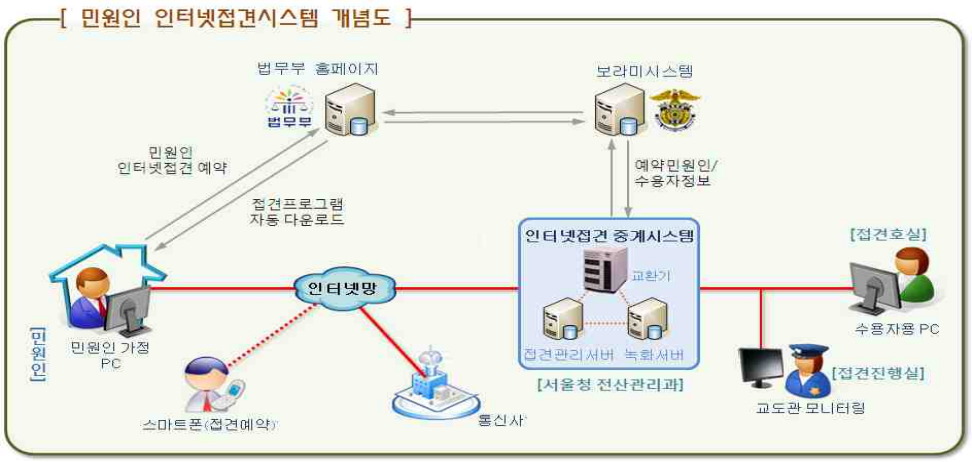
21)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7/cor_7030.jsp

<그림 3.2> 화상접견(교정본부 홈페이지)




또한 인터넷 화상접견이란 수형자 가족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하는 면회방식으로 2013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03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원격 화상접견 이용횟수가 첫해에는 3만 6천여 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18만여 건으로 수형자의 가족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접견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수형자의 가족의 가정 내 PC(웹컴)와 교정시설 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통제기능의 화상접견 중계서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인터넷 화상접견은 최초 한 번은 수형자가 수용된 기관을 수형자 가족이 직접 방문하여 가족 여부를 증명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가정 내 컴퓨터에 화면 복사 방지 등 보안 프로그램 자동 설치 및 화상접견 데이터 녹음·녹화 및 저장·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통해 짧은 시간의 만남을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3년 4월 10일).

<그림 3.3> 인터넷 접견시스템 개념도(법무부 보도자료, 2013년 4월 10일)




나) 서신, 전화

수형자의 장기간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거리 접견으로 인한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4월부터 모범 수형자에 대해여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처우 상 필요할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부교통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5>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범죄백서, 2013)

| 처우 | 단계 | 개방처우급 (S1) | 완화경비처우급 (S2) | 일반경비처우급 (S3) | 중경비처우급 (S4) |
|---|---|---|---|---|---|
| 전화사용 | 허용횟수 | 월 5회 | 월 3회 | 처우 상 필요시 | 처우 상 필요시 |
| | 대상 | - S1급, S2급, S3급 이하 처우 상 필요시 2회 연장 및 월 2회 이내 허가 가능<br>- 소장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사용 회수 확대 또는 통화차단 가능<br>-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공중전화기 카드), 1회 통화 3분 이내 | | | |

수형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서신의 회수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친족이외의 자라도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폭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수형자가 서신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하여 주고, 용지 및 우편료는 자비부담 또는 관급으로 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거주 등의 사정으로 방문접견이 곤란하거나 접견인원초과, 접견횟수초과 등으로 직

접 방문 접견할 수 없을 때 인터넷 서신[22]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서신은 원거리(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친지 및 친구 등이 수형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신을 출력 후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밟고 서신을 받을 수형자를 조회한 후, 인터넷 서신을 작성하면 된다. 1기관 1일 1통이 기준이며 입력제한시간은 60분, 분량은 A4 1장 이내이다. 파일, 사진, 그림 첨부는 불가하며 작성 시 언어는 한글과 영어만 지원하며, 한글은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나 문장은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터넷 서신은 발송이 불가능하며 우편 서신으로만 답장이 가능하다.

다) 귀휴

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귀가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다. 귀휴는 수형자의 석방 후 생활준비,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 등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와의 유대를 상화시켜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007. 12. 21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5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등 귀휴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범죄백서, 2013).

라) 가족만남의 집 · 날, 가족사랑캠프

가족만남의 날이란 수형자와 가족들이 교정시설 내 일정한 장소에서 준비해온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만남의 집은 수형자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절시설에 별도로 설치된 일반 주택형 건물에서 수형자와 가족들이 1박2일간 함께 숙식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한하며, 경비처우급이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사랑캠프는 수용생활로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관계 전문가가 진행하는 전문프로그램을 각 교정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허경미, 2013).

22)교정본부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7/cor_0701/cor_701030.jsp

<표 3.6>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범죄백서, 2013)

| 처우 단계 | | 개방처우급 (S1) | 완화경비처우급 (S2) | 일반경비처우급 (S3) | 중경비처우급 (S4) |
|---|---|---|---|---|---|
| 사회복귀 | 가족만남의 날 | S2급 이상 (접견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처우상 필요시 | | 불 허 |

2) 가족의 접촉 실태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수용자의 구금에서 교정교화로 변화함에 따라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및 사회동료들과의 유대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수형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접견과 서신, 전화는 2011년 이용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귀휴나 가족만남의 날 · 집은 각각 2013년 1,282명, 11,578명, 1,265명이 이용하여 꾸준히 이용자의 숫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접견 이용인원인 2,159,672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가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법무연감, 2014).

신연희(2007)의 기결수형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접견을 수형자의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 자녀 순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70%정도가 1개월에 1회 이상 방문을 하고는 있지만 가족이 자주 접견오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20%대가 되어 접견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류방법별 접촉빈도를 보면, 서신수신과 서신발신의 경우는 1주에 1회 이상인 비율이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접견의 경우는 1개월에 1회 이상과 1주에 1회 이상인 비율이 각각 30%대를 차지하였다.

## 나. 수용 중 가족과의 접촉이 수형자에게 주는 영향

가. 수용 중 가족과의 접촉 영향

수용 중에 가족과의 접촉과 가석방 성공률과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로는 1925년부터 1935년까지 일리노이주의 가석방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Ohlin(195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접견을 통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되다가 출소한 가석방자의 71%가 가석방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비해 가족과 접견을 하지 않았던 가석방자는 34%만이 가석방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수용기간동안 가족과의 관계유지가 출소후의 재범율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Holt와 Miller(1972)는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412명의 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에서의 가족과의 접견경험에 따라 출소 후 사회에의 성공적인 편입여부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구금 중에 정기적으로 가족과 접견을 한 경우는 접견을 한 적이 없거나 거의 없었던 경우에 비하여 가석방 후 1년 동안 재범률이 월등히 적었으며, 외부인과의 접견을 한 적이 없었던 경우(재수용율 12%)가 최소한 3인 이상으로부터 접견을 받았던 경우(재수용율 2%)에 비하여 가석방 1년 이내에 교도소에 다시 수용되는 비율은 6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기간 동안 접견을 한 적이 없는 가석방자의 50%가 출소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로 경찰에 체포됨에 비하여, 수용기간동안 최소한 3인 이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접견을 한 적이 있었던 가석방자는 30%만이 출소 후 1년 이내에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수용기간동안 외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수록 출소 후 가석방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로써 수용생활 동안의 가족과의 접견 정도에 따라 출소 후 1년 동안 가석방 성공률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또한 Howser과 Madonald(1982)는 교정시설에서 가족과의 유대를 지속하는 것이 출소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생활 동안 가족과 재결합프로그램의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간의 재입소율을 비교한 통계검증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수형자의 가족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수용생활의 부적응 행동인 규율위반행위를 줄일 수 있고 교화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출소후에도 재범률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Harm, 1999). 구속기간 동안 자녀들의 방문을 많이 받은 수형자일수록 출소 후에 자녀와 재결합하는데 문제를 적게 겪으며 가석방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며, 지속적인 접촉은 수형자로 하여금 자녀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출소 후의 생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기대와 보다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며 따라서 출소 후 적응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지적을 해오고 있다(Fishman&Cassin 1981, Baunch 1985).

수용자에 대한 방문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론적 논의들 중 첫 번째로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을 들 수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유대가 범죄를 범하려는 경향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본다(Hirschi, 1696). 이러한 논의는 수용자 방문을 정당화시키고 장려해야함을 함의시킨다.

두 번째 이론은 사회자본이론으로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수용된 동안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는 수용생활의 적응과 재범예방에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외부와의 유대 및 강한 연계는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Mills & Codd, 2008; Wolff & Drain, 2004; Rose & Clear, 2002). 수용자 방문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수용생활과 석방 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Bales and Mears, 2008: 291). 수용자들의 가족 또는 친구 등 외부와의 관계가 질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은 사회자본을 보존하는 것으로써 이는 출소 후 적응과정에서 필요한 가용자원이 된다고 보고 있다(Wolff & Drain, 2004).

실질적으로 수용 중에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수용으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이 헤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함으로써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해주며, 둘째, 수용자와 가족이 서로 만남으로써 개별 가족성원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셋째, 수용자는 가족과의 접촉을 통해 수용생활 및 출소 후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Hairston, 1991).

수용 후 자녀와 접견을 한 적이 없는 수용자들이 자녀와 접견을 한 적이 있는 수용자들에 비하여, 자녀와 간헐적으로 서신을 교환하는 수용들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하는 수용자들에 비하여, 그리고 출소 후의 가족관계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수록 무기력한 귀인양식(helpless attributional style)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중의 심리적 건강과 외부인과의 접촉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Richards(1978)의 조사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장기 수용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에서 Richards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지속되는 것은 장기 수용자들에게 수용생활에서의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수형자와 가족의 빈번한 접촉은 수형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정서적인 유대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iven, 2005), 나아가 출소 후 수형자가 빠르게 사회복귀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가족과 면회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May, 2008).

국내연구에서는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동료수용자 그리고 교도관들과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가족관계와 수용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국내의 연구에서는 구금 후 자녀와 접견을 한 적이 없는 수용자들은 자녀와 접견을 한 적이 있는 수용자들에

비하여, 그리고 자녀와 간헐적으로 서신을 교환하는 수용자들은 자녀와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하는 수용자들에 비하여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신연희, 2002: 18-19).

근래에 들어서는 정연진·신연희(2006)는 수용생활초기부터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수용자들에게는 자녀 또는 가족과의 통합을 위해 부모교육,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에 사회가 개입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연희(2008)는 서신·접견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수형자들의 출소 후에 대한 대비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수용자가 출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느냐는 가족을 위시한 외부와의 접촉과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논의와 함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의 가족방문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 여성수용자의 가족과의 접촉이 주는 영향

최인섭(1999)은 기결여자 수형자로 구성된 조사대상자 중 대다수인 74.2%가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가진 이들의 71%가 자녀와의 면회경험이 없는 상태로서 여자수용자의 자녀와의 단절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Casey Acevedo등(2004)은 중구금 교도소에서 석방된 어머니 158명을 대상으로 어린 자녀의 방문이 갖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어린 자녀의 방문이 다른 성인 가족의 방문과 질적으로 다르며, 전자가 어머니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다른 성인에 대해서는 가지지 않는 자녀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서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교도소에 수용된 어머니에 대한 어린 자녀의 방문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린 자녀의 방문을 받는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심각하고, 폭력적인 규율위반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교도소에서 자녀를 보게 되는 것은 즐겁지만, 자녀의 방문이 끝난 후의 분리 고통이 우울과 분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어린 자녀의 방문이 수용자의 시설 내에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수용중의 자녀방문이 어머니의 석방 후 생활 준비와 자녀와의 재결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Cecil 등(2008)은 여성이 구금된 동안 다른 가족들이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견고

하게 지지해 줄 때 자녀가 보다 잘 적응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이유로 구금된 어머니와 자녀 양육자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혼 수용자들의 경우 자녀와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Wright 등(2008)은 여성수용자의 가족관계가 교도소에서의 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여성범죄자의 독특한 욕구 중 하나로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들고 있다. 또한 교도소에서 여성의 문제 행동은 외부에 있는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Wright et al., 2008: 317). 이 연구는 여성수용자의 가족유대가 교도소 내 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용 중 가족과의 접촉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유대성이 수용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 간접적으로 수용 중 가족의 접촉이 중요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Belknap(2007)은 여성수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교도소에서 방문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수용기간에 어머니가 자녀와 지속적인 접촉 기회를 가질 경우 재결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금된 여성, 특히 빈곤층 여성에게는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구금생활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파괴적이면서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효과를 살펴 본 연구들을 보면, 김두섭·전영실(1996)의 연구에서는 여성수용자들의 경우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였으며, 가족방문 빈도가 높을수록 교도관에 대한 동조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수용자들의 경우 가족의 방문이 많을수록 교도소 내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Rodosh(2002)는 어머니-영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더 낮다고 논의하였다. 어머니-영아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적인 환경에서 여성이 영아인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갖고, 이런 프로그램에 동반되는 포괄적인 카운슬링을 받는 것이 모두 성공적인 경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3) 수감 중 가족과의 접촉 방해요소

가족과 수형자와의 접촉이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수형자 가족은 수형자인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빠지는데 교정시설이 주거지와 너무 먼 거리일 경우 교통비를 비롯한 수박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면회 횟수의 제한, 면회 장소의 불편함, 면회시간의 한정 등의 크고 작은 고통을 겪게 된다(허경

미, 2013).

과거 집에서 교도소까지의 거리 및 소요되는 경비 등이 가족방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전영실 외, 2009).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교정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전국 40개의 교정시설에 41개의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형자와 가족접견을 하기 위하여 가족만남의 집이 있는 먼 교정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집에서 교도소 까지 오는데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요시간은 접견을 자주 오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형자 가족의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는데, 수형자들의 가족들이 상당수가 생활보로대상자로서 일상적인 생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견교통권의 한 종류인 가족접견권도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그의 상응하는 권리의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가족만남의 집의 이용현황을 보면, 가족접견권이 수형자에게 보장된 적극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베푸는 은혜적인 조치로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2010년 동안 평균 교정시설에 수용된 평균인원이 4만5천여 명이라고 할 때 2010년 한 해 동안 1,223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전체 수용인원대비 가족접견 이용인원은 3%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도록 허가된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1~3%에 불과하다(김병수, 2012).

가족만남의 집은 1박2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교화상 필요한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1항, 법무부예규 제946호). 하지만 가족접견의 주요 대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1박 2일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간에 충분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창설 취지이므로 2박 3일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다(허주욱, 2010).

전영실외(2007)의 연구에서 보면 자녀가 접견을 온 적이 없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가 접견오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86.4%였으며, 희망하는 경우는 13.6%에 불과하였다. 즉 자녀가 접견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자녀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 제시한 것을 보면, 자녀입장에서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나 교도소 환경이 자녀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자녀의 공부 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등 주로 자녀입장을 배려해서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수용기간 동안 자녀와의 만남이 단절되는 것은 수용기간 동안의 정서적 문제, 출소 후 자녀와의 재결합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 다. 부모의 수감 중 자녀 접촉의 필요성

부모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감된 부모에게도 도움을 준다. 수감기간동안 자녀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고(Hairston 2002), 다른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들과 관련이 있었다(Edin et al. 2004; Sampson and Laub 1993; Uggen, Manza, and Behrens 2004). 또한 수감된 부모와의 접촉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상실감을 겪는 자녀들에게도 큰 안정감을 형성하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또한 수형자 자녀의 삶에 있어서 친밀한 인간관계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보호요소이다. 부모의 수감 전 부모와의 강력한 결합이 처음 부모 수감직후에는 자녀에게 더 심한 아픈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결합이 부모의 수감기간동안 자녀가 더 잘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녀들의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체양육자나 지역 사회 내 다른 성인들과의 건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는 정서적 건강, 행동 양식, 학교생활 등에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각 정부에서는 수감 중 자녀지원을 통해 수형자 자녀의 범죄인화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자녀지원을 통한 수형자의 가족강화를 통해 수형자의 재범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귀휴제도와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화상접견과 가족캠프 등 접견제도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고 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접견제도 외에도 감옥 밖에 홀로 남겨진 자녀를 위한 지원과 함께 가족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 자녀의 주양육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용자 자녀를 위한 멘토링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고, 가족 강화 프로그램으로 어머니 수형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가족과 친구의 핸드북, 양육자 가이드북 등으로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다. 영국에서는 부모 교육과 관계성 증진 기술 프로그램 강화, 아버지 수용자를 위한 가이드, 수용자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를 위한 가이드 등 수용자를 비롯한 자녀의 주양육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었다. 또한 호주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방문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교도소 방문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이용비용, 주차비, 숙박비, 아동 돌보기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가족의 교도소 방문이 용이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등 보다 다양한 자녀지원 프로그램이 선행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호주의 수감 중 자녀지원 관계법령, 관련기관, 자녀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7> 나라 별 수감 중 자녀지원 비교

| 국가 / 제도 | 한국 | 미국 | 영국 | 호주 |
|---|---|---|---|---|
| 1. 관계법령 | A.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77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9조<br>-귀휴를 위한 법률<br><br>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목적: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으나 위의 규칙에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출소자 본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br>-내용: 가족관계 회복지원, 중간처우, 사회처우 | A. 2001 가족의 안전과 안정 촉진 개정법(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Amendments)<br>-“수용자 자녀 멘토링 시책‘을 지원<br><br>B. 2006 수용자자녀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자녀와 가족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 of children and Families)<br>-법률에 의해 명문화하고, 소관 사무를 위임<br>-자녀와 가족국에 의해 운영된 수용자 자녀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2008년 회계연도에는 $45.6 백만의 예산으로 219개의 멘토링 프로그램 및 평가기관에 예산지원 | A. 내무부의 대중 보호와 재범감소를 위한 5개년 계획(protecting the Public and Reducing Reoffending)<br>-수용자의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부모교육과 관계성 증진 기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방형 교도소를 늘려서 가족 접촉을 용이하게 하였다.<br><br>B. 아동/청소년 계획(Children and Young People's Plan)<br>-잉글랜드에서 150개 지방정부 중에서 13개 정부가 수용자 자녀를 인식하고 5개 정부는 수용자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br><br>C. 수용자 자녀 검토(Children of Offender Review)<br>-영국에는 수용자 자녀 숫자가 예상보다 많지만 그럼에도 체계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고찰과 제언을 이룸<br><br>D 스코틀랜드 권고안<br>-스코틀랜드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보다 구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수형자 자녀의 상황과 필요를 조사하고 28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 A. 법무부의 양육 - 운영절차 매뉴얼(Custodial Corrections - Operations Procedures Manual)<br>-수용자의 가족 방문을 위한 매뉴얼 제공 |

| 국가 / 제도 | 한국 | 미국 | 영국 | 호주 |
|---|---|---|---|---|
| 2. 관련 기관 |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에 대한 관할부서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br><br>A. 교정본부<br>-목적: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시설 내 처우를 담당함으로써 출소 전 수형자에게 집중적으로 사회적응을 준비시키기 위함.<br>-내용: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각 교도소의 사회복귀과를 설치하여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수립, 시행을 한다. | 보건성 ACF(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br>-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자질을 갖춘 멘토의 채용, 멘토의 심사, 멘토의 훈련, 멘토의 활동의 심사와 평가 항목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요구되어진다.<br><br>법무부 사법정책실 산하 사법 통계국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br>-주 및 연방 교도시설 수용자에 관한 전국조사 자료를 토대로수용자자녀에 관한 통계를 별도로 보고한다.<br><br>법무부 산하의 교정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br>-수용자 자녀에 관한 보고서와 전문연구 논문 등 다수의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 민간단체 수용자 파트너와 가족 지원 그룹(Partners of Prisoners and Families Support Group)<br>-범죄자 관리청과 계약을 맺고, 전화서비스, 통역서비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의 연결을 도와준다.<br><br>지원형 교도소 방문 (Assistes Prison Visits)<br>-법무부 범죄자 관리청의 한 부서인 지원형 교도소 유닛은 저소득층 복지 지원 수급자에게 교도소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대중교통 이용비용, 렌터카, 주차비, 톨비, 숙박비, 아동 돌보기에 대한 비용 지급이다.<br><br>개별 교도소 운영 프로그램<br>-개별 교도소들은 가족관계 강화하기 위한 가족 방문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한다.<br><br>북아일랜드 교정청<br>-수용자 가족관계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여 현재 세 개의 교도소에서 가족 지원 교도관의 역할과 가족방문센터를 강화하였다.<br><br>스코틀랜드 교정청<br>-여러 분야에 걸친 아동과 가족 그룹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기준들을 포함하며, 아동들을 위한 방문 경험을 개선하고 아동들이 교도소를 방문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 A 법무부 (Department of Attorney General and Justice (New South Wales))<br>- 지역사회 봉사 및 수형자들에 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br><br>B SHINE for Kids<br>-수형자의 가족 및 자녀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구이다. 또한 대부분의 수형자들이 겪는 수형자 가족의 빈곤, 가족관계의 해체, 자녀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지원 및 양육의 곤란 등이 수형자 자녀의 범죄인화를 유발하는 위험을 차단하려는 데 발족의 목적을 두고 있다. |

| 국가 / 제도 | 한국 | 미국 | 영국 | 호주 |
|---|---|---|---|---|
| 3. 자녀 지원 프로그램 | **A. 교정시설 가족관계 강화**<br>-목적: 출소 예정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취업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 가족관계 악화를 극복하기 위함.<br>-내용<br>① 귀휴제도: 일정기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서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성공적 사회적응을 위해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함.<br>② 가족 만남의 날: 수형자의 친족, 가족에 준하는 사람들과 교정시설 내에서 식사하고 담소를 나눌 기회제공.<br>③ 가족 만남의 집: 장기 수형자들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교정시설 인근에 일반가정집과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1박2일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재정 마련<br>④ 가족사랑 캠프: 교정시설 내 또는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의 진행으로 1박2일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br>⑤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 교정시설이 외진 지역에 있는 경우 가족들의 원거리 이동에 곤란이 많다는 지적 하에 접견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됨. | **A. 교정시설 내 가족관계 강화**<br>-사례:<br>① 민간단체 FriendOut side: 접견대기실 서비스 지원, 가족들의 교통지원, 특별교부금 배정.<br>② 플로리다 교정국의 'Reading and family ties-face to face' 프로그램: 원거리에 있는 가족들의 방문이 용이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화상 방문제도 도입<br>③ 뉴욕의 '가족재결합과 친밀한가족접견(Family Reunion and Private Family Visitation)' 프로그램: 교도소 내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하루 동안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br>④ 테네시 여성주립교도소의 "Child Visitation Unit": 3~6개월의 여성수형자 자녀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제공<br>⑤ 펜실베니아 여성 교도소의 "Parent and Children Together": 가족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화합의 시간 등 제공<br>이 외에도 Girl Scouts Beyond Bars와 같이 어머니 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 **A. 교정시설 내 가족관계 강화**<br>-내용<br>① 가족방문 강화 전략: 부모교육과 관계성 증진 기술 프로그램 강화, 개방형 교도소 증진을 통해 가족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br>②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가족학습 프로그램, 아버지 수용자를 위한 가이드 제시, 아동중심 가족방문 지원, 수형자 자녀와의 유대 강화 지원<br>③ 가족방문 비용 지원: 가족들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 환경, 절차 개선,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A 교정시설 내 가족관계 강화**<br>①민간단체 Shine for kids<br>어린이 가족 센터 지원, 가족들의 교통지원, 멘토링 서비스, 아이/부모 활동의 날 |

| | | | | |
|---|---|---|---|---|
| | **B. 수감 중 가족지원**<br>-목적: 교정본부는 '가족이 희망입니다.'라는 모토를 토대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함.<br>-내용: 수용자 자녀보호와 가족관계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위기수용자 가족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br>'장기수용자 가족캠프' 개최, '수용자 가족 접견실' 운영, 미성년 자녀를 고려하여 부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녀가 받는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로서의 명예유지를 고려한 '체포시 행동수칙' 실행,<br>'위기 자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 보호조치 제공<br>이외에도 '수용자 자녀 상담메뉴얼' 개발,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등이 있음. | **B. 수감 중 가족지원**<br>-내용: 가족과 친구의 핸드북, 양육자 가이드북 등의 발간 등을 통한 유용한 정보제공, The National Resource Cen ter on Children and Fa milies of the Incarce rated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형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가족의 위기상황을 위한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함.<br>-특징: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수형자 자녀지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음. 연방정부의 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자녀와 가족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 등. | **B. 수감 중 가족지원**<br>①수용자 가족 도움의 전화(Offenders' families h elpline)<br>② 수용자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를 위한 가이드: 수용자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게 올바른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br>③ 바날도의 수용자 자녀 회복 프로젝트: 2010년부터 민간단체 바날도가 수용자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함.<br>④ Prisoners' Families and Friends service: 출소자와 수형자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서 '친구되기'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 가족을 만나 위로와 상담 제공.<br>⑤ Prison Advice&Care Trust: 구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족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

# Ⅲ.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

## 1.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 결과

### 가.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13명의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 1명의 자녀가 참여하였다. 출소자들의 연령은 28세 이상 60세 이하였으며, 부인들은 26세 이상 55세 이하였다. 출소한 지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부산, 경기, 강원이었다. 이들의 범법 유형은 폭행(4명), 사기(4명), 횡령(1명), 강도(1명), 마약(1명), 음주운전(1명), 방화미수(1명) 등 다양하였다. 참여자 모두는 경제활동을 시작하였고, 참여자 부인들(7명)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 모르는 가정은 다섯 가정이었고, 그 중 네 가정은 자녀의 나이가 어려 아버지의 수감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 알게 된 경위는 어머니가 알린 경우(4가정)와 어머니가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버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알게 된 경우(4가정)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공단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면접 참여에 대한 소정의 비용이 지급되었다.

<표 3.8> 연구 참여자의 특성

| No | 출소자 나이 | 부인의 나이 | 거주 지역 | 범죄유형 | 출소 후 | 현재 직업활동 | 자녀 | 수감정보 |
|---|---|---|---|---|---|---|---|---|
| 1 | 37 | 38 (취업) | 경기 | 방화미수 | 2년 | 택배운전 | 아들 1 | 모름 |
| 2 | 60 | 55 (주부) | 경기 | 사기 | 2년 | 택시운전 | 딸2, 아들 1 | 알게 됨 |
| 3 | 48 | 44 (취업) | 서울 | 폭행 | 4달 | 취업 | 아들 3 | 알게 됨 |
| 4 | 60 | 58 (취업) | 부산 | 사기 | 2년 | 일용직 | 딸1, 아들 1 | 알게 됨 |
| 5 | 52 | 54 (취업) | 강원 | 음주운전 | 1년 | 사업 | 아들 1 | 알게 됨 |
| 6 | 28 | 26 (취업) | 강원 | 폭행 | 10달 | 건설업 | 딸 1 | 모름 |
| 7 | 51 | 47 (주부) | 경남 | 폭행 | 1년 | 일용직 | 딸2 아들 1 | 알림 |
| 8 | 53 | 49 (취업) | 부산 | 금융 | 4달 | 취업 | 딸1, 아들 1 | 알림 |
| 9 | 43 | 42 (취업) | 경기 | 강도 | 3년 | 취업 | 딸1, 아들1 | 알림 |
| 10 | 47 | 38 (주부) | 경기 | 마약 | 2년 | 창업 | 딸 1 | 모름 |
| 11 | 47 | 45 (취업) | 전남 | 사기 | 3달 | 일용직 | 아들 3 | 모름 |
| 12 | 41 | 37 (주부) | 광주 | 횡령 | 3달 | 일용직 | 딸 1, 아들 1 | 알림 |
| 13 | 37 | 39 (주부) | 경기 | 폭행 | 3년 | 취업 | 딸1 | 모름 |

2)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연구자는 윤리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담 시작 전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및 면접 녹음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면접은 연구자가 참여자의 숙소 혹은 근처의 찻집을 찾아간 방문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70분에서 1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였다. 면접은 아내에게 “남편의 수감과 출소와 관련된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출소자인 남편 역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더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후속 질문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비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후속질문은 남편의 수감 기간 및 출소 후 가족에게 필요했던 지원, 아내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아버지의 수감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등이었다. 면접 중 중요 내용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면접 분위기, 면접 전·후 등에서 나타나는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기록되었다. 면접 녹음테이프는 다음 면접이 시작되기 전까지 석사 과정 학생 한 명이 일차 전사하였고 연구자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전사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녹음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되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번호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분하였다.

<표 3.9> 면접용 질문지 내용

| **1)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공개한 가정** | |
|---|---|
| **키워드** | **질문내용** |
| 질문 전<br>확인사항 | - 결혼기간, 수감횟수, 수감이유 등에 대해 확인<br>- 자녀 인원, 성별, 나이 확인(특히 장남, 장녀) |
| 도입 | ① 수감기간동안 가정생활은 어떠셨어요?<br>② 수감 전, 후 부부간의 관계 변화 |
| 수감 공개 관련 | ③ 자녀가 누구, 어떠한 상황을 통해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br>④ 자녀가 수감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br>⑤ 자녀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br>⑥ 수감사실이 자녀의 학교적응이나 관계 등 정서행동/대응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br>⑦ 지금 현재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수감전후로 자녀와의 관계변화)<br>⑧ 수감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후회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br>⑨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

| | |
|---|---|
| | 부분이 있으신가요?<br>⑩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나요?<br>⑪ 비슷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br>배우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

**2)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비공개한 가정**

| 키워드 | 질문내용 |
|---|---|
| 질문 전 확인사항 | - 결혼기간, 수감횟수, 수감이유 등에 대해 확인<br>- 자녀 인원, 성별, 나이 확인(특히 장남, 장녀) |
| 도입 | ① 수감기간동안 가정생활은 어떠셨어요?<br>② 수감 전, 후 부부간의 관계 변화 |
| 수감 공개 관련 | ③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br>④ 아버지(어머니)의 부재에 어떻게 설명하셨나요?<br>⑤ 지금 현재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br>⑥ 수감 전후로 자녀와의 관계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br>⑦ 수감사실 비공개를 후회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br>⑧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3) 분석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아내가 남편의 수감과 출소 후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출소자의 아내들을 면접하고, 면접 자료를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로 분석하였다(Hill, 2001; Hill, Thomson, & Williams, 1997).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은 3-5명의 분석팀이 분석 과정에 참여하고, 연구결과의 편향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분석팀 구성원의 반복적인 합의를 걸쳐 연구결과를 완성하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다르다. 분석팀은 평정자와 감수자로 구성되며, 자료 분석은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분석팀: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평정자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교육학과 상담전공 교수이며, 3명의 평정자는 상담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대학원생 이었다. 평정자들은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총 20시간 동안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을 학습하였고, 예비 면접 자료로 예비 평정을 실시하였다. 예비 평정 작업에서 평정자 간의

의견차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평정작업 전에 각 평정자가 편향(bias)없이 개방적으로 분석에 참여하기 위해 각자의 편향과 기대를 기록하였다.

감수자: 본 연구에는 1명의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감수자(auditor)로 참여하였다. 감수자는 평정팀이 개발한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 분석 결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3회에 걸쳐 평정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정된 결과를 검토하였다.

영역 코딩: 영역 코딩은 면접 자료를 주제별로 편집하여, 자료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면접 자료를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 평정자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심개념 코딩: 중심개념 코딩은 영역의 내용을 추상화하여 요약하는 과정이다. 각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읽고 중심개념을 개발한 다음, 4명의 평정자가 모여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교차 분석: 모든 사례의 영역과 중심개념이 확정되면, 교차 분석에서 각 영역 별로 사례 간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모든 사례에 나타난 범주는 일반적(General)으로, 50% 이상 나타나는 것을 전형적(Typical)으로,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드문(Variant)으로 명명하였다.

감수: 평정팀이 영역과 중심개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다음, 감수자가 평정팀이 개발한 영역과 중심개념이 원 면접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감수자의 피드백을 받은 후 분석팀은 피드백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영역을 개발하였다. 교차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각 영역의 요약 반응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확인되었는지 검토하고, 분석팀에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분석팀은 감수자의 피드백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교차 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 나. 결 과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자들의 가족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수감 기관과 출소 후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출소자와 그 가족들을 면접하고 면접자료를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출소자에게 삶의 의미가 된 가족, 수감기관 및 출소 후 아내에게 필요했던 지원, 자녀에게 필요했던 지원, 아내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그리고 아버지의 수감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이라는 5개의 영역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영역을 구성하는 범주와 중심개념을 중심으로 기

술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인용문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표 3.10>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자와 아내의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영역과 범주 | 응답빈도 |
|---|---|
| **출소자에게 삶의 의미가 된 가족** | |
| * 수감 기간 동안 희망이 되어 준 가족 | 전형적 (n=7) |
| 희망을 심어준 가족의 면회 및 편지 | 참여자 1, 2, 9, 10, 13 |
| 가족이 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음 | 참여자 1, 3, 7, 9, 10, 13 |
| * 수감 및 출소라는 역경을 통해 내가 얻은 것 | 전형적 (n=7) |
| 가족과의 일상에 감사함 | 참여자 10, 12, 13 |
| 가족 응집력이 높아짐 | 참여자 2, 9 |
|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 참여자 1, 3, 12 |
| * 보다 실용적인 구직에 대한 도움 | 드문 (n=2) |
| 내가 속한 지역에서도 배우고 싶은 기술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 참여자 6 |
| 나의 역량, 거주지 등을 배려한 구직 연결 | 참여자 13 |
| 수감 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 | 참여자 13 |
| *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 출소자에게 필요한 상담 프로그램 | 전형적 (n=7) |
| 출소자의 술, 도박, 우울증, 분노조절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 참여자 1, 2, 3, 5, 6, 7 |
| 채무 및 재정 상담 | 참여자 5, 6 |
| 좌절할 때 재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는 프로그램 | 참여자 12 |
| **수감 기간 및 출소 후에 아내에게 필요했던 도움** | |
| * 주거지원의 필요 | 일반적 (n=13) |
| 남편의 수감으로 불안정되었던 주거 환경 | 참여자 1, 3, 4, 6, 7, 8, 9, 10, 11, 12, 13 |
| 공단의 주거기지원으로 안정적인 가족 생활의 시작 | 참여자 1, 2, 5, 6, 7, 8, 9. 10, 11, 12, 13 |
| * 생활비 지원의 필요 | 일반적 (n=13) |
| 생활비 보조 (식비 등) | 참여자 1, 2, 3, 4, 6, 7, 8, 10, 13 |
| 공과금 지원(공과금, 핸드폰 요금 등) | 참여자 3, 4, 6, 7, 11, 12 |
|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참여자 1, 3, 5, 6, 7, 10, 11, 12, 13 |
| * 취업 지원의 필요 | 드문 (n=5) |
| 아내의 취업을 도와주었으면 | 참여자 4, 12 |
|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돌보 서비스 제공 | 참여자 1, 10, 13 |
| * 아내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 드문 (n=5) |
| 아내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창구가 필요함 | 참여자 1, 6, 10, 12 |
| 부부 상담이 필요함 | 참여자 3 |
| **아버지의 수감 기간 및 출소 후 자녀가 필요했던 도움: 어머니의 인식** | |

| | |
|---|---|
| * 교육비 지원 | 전형적 (n=9) |
| 학비 등 필수 비용 | 참여자 4, 8, 11, 12 |
| 교육비 보조 (급식비, 원어민강사비, 도서구입비 등) | 참여자 9, 10, 11, 12, 13 |
| 사교육비 지원 | 참여자 3, 7, 12 |
| *자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 드문 (n=4) |
| 자녀 교육 상담 (진로 지도 및 훈육) | 참여자 7, 11 |
| 자녀의 진로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필요 | 참여자 3, 4, 11 |
|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도록 도운 요인들** | |
| * 가족을 유지해야겠다는 아내의 신념 | 일반적 (n=13) |
|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 참여자 1, 3, 4, 5, 6, 7, 9, 10, 11, 12, 13 |
| 결혼에 대한 책임감 | 참여자 1, 2, 10, 11 |
| * 수감된 남편에 대한 신뢰 | 드문 (n=5) |
| 나에게는 남편이 소중한 사람 | 참여자 1, 7 |
| 배우자에 대한 측은지심 | 참여자 10 |
| 배우자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수감됨 | 참여자 8, 9 |
| *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 드문 (n=4) |
| 그래도 가족이 건강하다 | 참여자 7, 11 |
| 집집마다 어려움이 있다. | 참여자 1, 10 |
| 이 역경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이 많다. | 참여자 11 |
| * 남편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 | 드문 (n=5) |
| 배우자가 더 책임감을 느낌- 가장으로 | 참여자 6, 7, 10, 11 |
| 조금 덜 가부장적, 부인과 상의함 | 참여자 12 |
| 수감을 금연 및 금주 클리닉으로 생각함 | 참여자 7, 11 |
| 남편이 좀 더 현실적으로 삶을 영위할 것으로 생각함 | 참여자 7 |
| *사회적 영적 지지원 | 전형적 (n=11) |
| 시댁의 지지 | 참여자 7, 9, 12, 13 |
| 원가족의 지지 | 참여자 5, 7, 9, 10, 11, 12, 13 |
| 친구들의지지 | 참여자 5, 6, 10, 11, 13 |
| 종교 | 참여자 2, 3, 4, 7, 10, 11 |
| **아버지의 수감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 |
| * 아버지의 수감을 모름 | 드문 (n=7) |
| 자녀의 연령이 어려 알지 못함 | 참여자 1, 6, 10, 13 |
| 수감 기간이 짧은 경우 알리지 않음 | 참여자 11, 12 |
| 자녀가 모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 | 참여자 6, 11, 12, 13 |
|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은 알림 | 참여자 11, 12 |
| 정확히 모르면서 아버지의 부재를 그리워함 | 참여자 12 |
| * 아버지의 수감을 알게 됨 | 드문 (n=4) |
| 자녀가 수감된 상황 혹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통해 알게 됨 | 참여자 2, 3, 4, 5 |

| | |
|---|---|
| * 수감을 알려 줌 | 드문 (n=4) |
| 어머니가 수감 중 아버지의 수감을 알려줌 | 참여자 7, 8, 9 |
| 출소 후 아버지가 스스로 알림 | 참여자 12 |
| * 수감을 알린 후 자녀의 부정적인 반응 | 드문 (n=4) |
| 아버지의 수감 소식에 방황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임 | 참여자 2, 7 |
|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워 함 | 참여자 7, 12 |
| 아버지를 불신한다 | 참여자 3 |
| 수감 내용을 알린 후 자녀에게 상담이 제공되었으면 | 참여자 2, 3, 7, 12 |
| * 수감을 알린 후 자녀의 수용적인 반응 | 드문 (n=4) |
| 자녀가 수월하게 현실을 수용함 | 참여자 11 |
|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자립적으로 대처함 | 참여자 5, 8, 9 |

1) 출소자에게 삶의 의미가 된 가족

본 연구에 참여한 출소자들은 수감 중에 그리고 출소 후 가족이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다고 하였다. 수감 중에는 가족의 면회를 와서 자신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감 중에도 가족이 자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면회를 가지 못한 참여자 7의 부인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희망을 전달하였다.

>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부모님이 자주 면회 왔거든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거든요. 보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랬죠. 그래도 얼굴 보니까 잘 버텨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새벽 4시에 일을 나가고, 오후 4시에 끝나요. 우리 아들하고 놀고 밥 먹고 한 바퀴 돌고 10시에는 자요. 그렇게 자봐야 5-6시간 자는 건데, 그런 원동력이 피곤함을 못 느끼고 계속 일하는 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가 있어 가지고서 하는 거죠. (참여자 1)

>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 같아요. 매달이 되었던 어떻게 되던 계속 꾸준히 와주면서 저는 이제 상상만 할 수 밖에 없고 해주는 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와서 용기를 주는 이런 일이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내라 건강하게 지내라,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참여자 13)

> 그니까 사람이 힘든 상황일 때도 지혜롭게 처신해야지. 살다보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될 수 있잖아요. 안사람이 면회 와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런 거 보면 내일은 해가 뜬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한평생 살면서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성공시대 같은 거 나오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다 아픔이 있잖아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 백 프로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참여자 2)

가정이죠. 저는 혼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람이 목표가 없이 살 것 같아요. 개인적인 부채도 있고 하니깐 갚은, 파산하면 그만이잖아요. 살아갈 이유, 제일 중요한 살아갈 이유,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절실한 이유들이 가정이 없었더라면, 그런 절실할 이유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깐, 가정이 자녀가 있고, 가정이라는 그런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이유죠. (참여자 12)

본 연구에 참여한 출소자들은 수감 및 출소 경험을 통해서 힘들긴 했지만 본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전에는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가족과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 출소 후에는 하루하루 일상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다. 또한 가족에게 자신의 수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기는 하였지만, 가족 전체의 응집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앞만 보며 어찌 보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래서 출소자들은 교도소를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소소한 행복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소한 거지만 저한테는 크게 와 닿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뭐 시작을 본다든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가 그런 일상생활들. (참여자 12)

내 스스로가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초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 애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 뭐. 오히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 가족 밖에 없다. (참여자 2)

사람이 살다가 일부러 죄짓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심이 과하거나 실수로 인해서 들어가는데 인생이 모두 끝장나는 거다. 그래도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모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더 잘아야하고, 그래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어쨌든 결혼해서 살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지는, 많이 벌어다 주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꾸준히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살았거든요. 앞으로는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도록 살려고요. (참여자 3)

오히려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을, 나를 다

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요. 제가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제가 12년, 13년 일만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마음먹기에 달리듯이 나는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하죠. (참여자 12)

출소자들은 가정의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이를 위해 자신의 직업 활동이 중요함으로, 보다 실질적인 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 자신이 속한 지역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자신이 선호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정을 떠나 있어야 하는데, 수감 후 막 같이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질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취직자리를 연결해 줄 때도 거주지와 경력이 고려되기를 희망하였다.

교도소에서 그런 거 해주잖아요. 자격증. 그런 거. 그러면 그 기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응시등록을 주잖아요. 자격을 그러면 그 건축종사분야에서 7년을 일을 해야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그런 자격증을 따고, 이것도 저것도 해서 다 땄는데. 제가 막상 제가 사회에 나가서 그 경력을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제가 업체에 '어디서 땄냐' 그러면, 공공 넘버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받은 건데 그 경력을 들이대면서 하면은 그건 100프로 마니어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지, 자격은 있는데, 그 동안 뭐 했냐 그러면 대꾸도 못하잖아요. 시작자체가 좀 무경력자로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연봉자체가 다르잖아요. 경력자랑 무경력자랑 금전적으로 받는 거 자체가 차이가 커요. (참여자 13)

본 연구에 참여한 출소자는 자신이 보다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많은 출소자들이 수감 이유가 되는 행동에 술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 2는 '남편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라는 질문에 '술꾼'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요구도 진술하였다. 특히 술이나 담배의 경우 수감 기간 동안에는 강제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가, 출소 후에는 다시 술과 담배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겼다. 또한 출소자 1은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출소 후에 교도소 안에 있는 꿈을 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

사실 저도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술 먹으면 어디 가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고 기분 좋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싸움이 되는 거죠. 집사람이 용납을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수감된 8-9개월 동안 어차피

거기서 못 먹었으니까 안 먹었단 말예도. 분명히 나와서도 안 먹겠다고 얘기했고, 근데 어느 순간 또 먹고 있어. (참여자 3)

또한 출소자는 자신이 출소 후에 사회복귀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이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경험할 때 좌절하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랐다. 또 이런 좌절을 부인에게 표현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 또한 출소자들에게는 채무 변재 및 재정 관리 상담이 필요하였다. 참여자 5의 경우에는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보험인가? 국민건강 보험? 제가 이전에 횟집도 하고 그랬거든요. 유통도. 그럴 때 수입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대포차로 날아간 지 한 10년이 됐거든요. 그거를 없애버리면 보험료가 다운이 되는데. 옛날에 사채 200만원 쓴 거를 차를 빼앗아간 거죠. 대포차로 날려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참여자 5)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게. 중심이 서야하는데, 저도 한 달이 넘었는데, 현실하고 부딪치다 보니깐 가끔씩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다 마음가짐을 잡기 위해서, 법무공단에서 해주는 시스템이 그런 치유 프로그램도 있으면. (참여자 12)

2) 수감 기간 및 출소 후 아내에게 필요했던 도움

본 연구에 참여한 출소자들은 수감 전에 가족의 생계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산범의 경우에는 살던 집도 빚을 갚는데 사용되어 가족들이 주거지를 잃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도 월세를 내면 주거를 유지했던 가정들이 많아, 남편의 부재는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수감자들의 가족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주거 지원이었다.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집도 그렇고, 지금 당장 집이라도 있으면 덜 그럴 건데. 대화도 되고. 내가 먼저 전화로 물어봐야 되고, 이제 뭐 챙기게 되고 전화로 말로 다 챙기게 되고 이러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서로 조금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하면 되는데, 당장은 집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큰 거라. (참여자 4의 아내)

그 때 부채도 있었고, 그 시댁 쪽하고도 뭐 이렇게 저를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형편이 안 되었던지라 살고 있던 집을 빼고 그 보증금으로 빚을 조금 정리하고, 방

한 칸짜리로 저랑 애기랑 둘이 옮겼다가 네,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친정으로 제가 내려갔어요. (참여자 10의 아내)

출소 후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지원은 주거 지원이었다. 수감이라는 사건은 대부분 가족이 모여 사는 주거지에 대한 안정성을 위협하였다. 남편의 수감동안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 조건을 바꾸거나, 시댁 혹은 친정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경우가 많았다. 남편의 수감 동안에는 주거의 어려움이 임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그 상황을 버틴 경우가 많았고, 남편의 출소 후에는 같이 살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였다. 하지만 출소한 남편이 경제력을 다시 갖추게 될 때 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때문에 법무부보호관리 공단의 주거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가족이 한 곳에 모여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단의 주거 지원을 받은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보다 떳떳할 수 있었다.

내가 나오자마자 일을 알아보고, 애들 도움 안 받고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더 가족이 좋아졌던 건 정부 덕이야. 이 집을 줬기 때문에 애들이 더 좋아진 거지. 만약에 우리가 뭐 사글세를 가서 쪼달리고 그랬으면 애들이 막 그랬을 텐데, 애들이 또 인정을 한 거야, 난 그게 더 고맙지.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열심히 사시려고 했으니까 공단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말을 안 해도 애들이 그걸 알아. 이 집도 3%안에 들어야 해준다 말을 해 줬죠. 그래서 애들이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3% 안에 들어갔다는 자체를 애들이 인정하는 거지. (참여자 2)

참여자 2의 부인은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먹을 것조차도 정말 힘들었다고'고 표현하였다. 부인들에게는 생활비, 즉 식비 및 기타 공과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들은 남편이 수감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알지 못해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부인들은 수감 중인 남편의 면회에 가서 동사무소에 상황을 알리면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이런 정보를 빨리 알기만 해도 수감 직후의 어려움을 타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비 지원 이런 걸 생각할 그런 게 없었어요. 피해자랑 합의도 해야 하고. 일단은 남편을 빼내는 게 먼저니까. (참여자 6의 아내)

또한 법무부 관리 공단 외의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공을 출

소자 가족들은 원했다. 출소자 본인도 출소 후 단기적으로는 구직활동 중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노동부로부터 있었고, 동사무소에 출소자의 신분을 등록하면 경제력에 따라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비 및 각종 공과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출소자 가정은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데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정보를 알게 되어,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덜 경험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의료지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 백내장이 와 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비비는 거예요. 수술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있어야. 의료지원이 있나? 모르겠는데. 의료보험료를 밀려서 못 내니까. 지금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뭐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수술을 하든지. (참여자 5)

부인들은 남편이 수감되면서 자신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서야 했지만, 전업 주부로만 생활하다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취업에 대한 도움을 어디에선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자녀가 어린 경우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기를 바랐다.

> 아주 잘 사는 집이 아닌 다음에는, 아빠가 가장이 이제 수감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다 자명하잖아요. 경제적인 그런 거 때문에 엄마들이 더 힘들어할 거예요. 당장, 일단은 생활경제적인게 다니까. 일이라도 하고 뭐라도 배워서 해야겠다. 싶어서 일했는데. 기술을 배운다든가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거나, 그런 후원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저는 음식, 요리를 배워서 일하러 다녔어요. (참여자 4의 부인)

> 일단 돈이에요. 요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모유를 먹여도 돈이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나중에 학원까지 가려고 하면 내가 현재 아이를 봐 줄 수 있으면 더 좀 벌이를 할 텐데, 지금 봐 주실 분이 없어요. 제가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못 버니까 지금 신랑 혼자 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빠듯해요. 아이를 봐 주는 서비스나, 부인이 일할 수 있도록 보조가 되면 좋겠어요. (참여자 13의 아내)

> 저는 일자리 같은 경우도 도움을 주었으며, 네, 뭐 자격증 그런 쪽도 괜찮고, 교육이 있었으며, 배우자도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저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경력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취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피부미용이나 아니면 컴퓨터 쪽. (참여자 12의 아내)

본 연구에 참여한 출소자의 부인들은 출소자의 배우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수감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선 사건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출소 후에는 사건 상황은 아니지만, 상담을 받고 이 경험을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부인들은 수감 중에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친정 식구들에게도 수감에 대해 비밀로 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처지를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였다. 또한 수감과 관련하여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남아 있는데, 남편은 출소 후 열심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들은 부부상담이 제공되기를 바랐다.

>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흉볼까봐. (참여자 1의 부인)

>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사실 가족들한테도 다 이야기 할 수 없는 거고. 많이 숨겼어요. 저도 누구한테 가족들한테도 쉽게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전혀 말을 안했어요. 수감 막 되었을 때는 그런 거(상담)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혼자 마음에 쌓아두고 있어야 하니깐, 지금은 카운슬링이나 이런 걸 제공하면은 받고 싶어요. (참여자 12의 부인)

3) 아버지의 수감 기간 및 출소 후 자녀가 필요했던 도움: 어머니의 인식

출소자의 부인들이 자녀를 위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교육비 지원이었다. 학비 등 필수적인 비용도 부담이 되었다. 후에 동사무소를 통해 학비는 보조를 받았지만, 급식비와 원어민 강사비등 학교의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였다. 또한 도서지원비를 받아서 좋기는 했지만, 이미 학기 중반에 지원받아 필요한 책은 이미 구입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게 되거나, 1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을 한 달 지원 금액으로 오해하고 사용한 경우들도 있어서 지원 시기나 지원 시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또 고등학생들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신랑이 수감되었을 때, 이제 보건복지부 전화해서 SOS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차상위 그걸로 해서 애들 그걸 받고. 애들 학교 부분에서 좀 박도 있기 한데. 그래도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더라구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비도 나가고. (참여자 11의 아내)

특별히 수감자의 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실감한 부분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

용이었다. 학교에 학비 지원을 받기 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이전에 제공하던 사교육 일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또한 중, 고등학생인 자녀가 본인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지만, 다른 또래들처럼 학원이라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특히 안타까워하였다. 또한 이전에 하던 취미활동 등을 그대로 지속시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훈육 및 지도하는데 이전에는 남편과 상의했었던 일들을 상의할 수 없어 타인의 조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 그래도 저는 애들 교육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애들 공부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요즘 교육이요, 방학은 길고, 휴일 많고, 학교에서 수업은 공교육이 무너진다 해도 공교육이 너무 애를 안 써요. 학원에 많이 맡겨 버려요. 그래서 반 이상이 학원 다닌다고 그러면 선생도 수업에 그렇게 집중을 안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영어를 놓쳐버렸어요. 계속 영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때부터 학원을 안 보냈더니. (참여자 7 부인)

> 성적이 많이 뒤떨어지기는 맞는 거죠. 예전에는 (학원) 다니고 그랬었는데, 안 다니니깐, 공부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참여자 12의 부인)

> 영어, 수학 같은 거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는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점수를 깍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학원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악기 쪽으로 하나씩 배워놓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속을 털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참여자 3의 부인)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랐다. 꼭 수감과 관련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청소년기에 도움이 되는 진로 상담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바랐다. 또한 수감이나 출소 후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일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담이 제공되기를 바랐다.

> 아이들 진로요. 공무원 해도 되는 건지. 애들 있는 집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면 돼, 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나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숨긴 하도 숨겨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아버지 수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이들 꿈이 좌절되면. (참여자 7의 아내)

글쎄요, 이렇게 마음 쪽으로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 걸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이라도 하고 그러면 나름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자 4의 아내)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부모한테도 필요해요. 나도 그때 아들하고 대입을 계속 했을 거예요. 이게 사춘기 올 때 아이들이 삐뚤어나갈 때는 아이들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상담을 받고 진로를 코치를 받아야겠다는 느낌을, 사실 둘째 아이 6학년 담임선생님이 해 주시기는 했는데. 많이 아쉬웠어요. (참여자 11의 아내)

4)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도록 도운 요인들

출소자들이 가족복귀가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아내가 수감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가족을 유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는 모두 자녀가 있었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으로 우선은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수감 이전부터 이혼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수감되어도 이혼을 가능한 선택으로 고려하지 않은 부인도 있다. 하지만 이혼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부인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막막하니까. 진짜 애라도 데리고 그냥 갈까 그럼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게. 저도 막 안 알아본 건 아닌데, 수감이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 이혼이 아니고 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만 보내면 바로. 도망가고 싶지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애가 있으면. 그렇게 했다가도 애를 보면 또 마음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참여자 6의 부인)

이 사람 미워서 헤어져야 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결혼은 책임을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하늘이 해결해야지. 쓰다달다 해서 헤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쓰던 달던 살아야 된다, 저는 그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쉽게 행동하진 않죠. (참여자 2의 부인)

이렇게 가족을 유지하기로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친 남편의 영향은 수감 이전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감이라는 역경을 경험하게는 되었지만 남편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과정 중에 수감이

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재산범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남편의 경제력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해 오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수감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감된 남편에 대해 측은지심을 느꼈다. 또 남편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부인도 있었다. 또한 실수를 한 남편이지만 '애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아버지였던 점을 기억한 부인도 있었다.

> 저는 남편이 무죄라고 믿었거든요. 식구들을 다 손을 놨었고, 항소 할 때도, 항소는 되지도 않는다고 주변에서 다들 얘기했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는 이제 신랑이랑 저는 무죄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신뢰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마약을)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참여자 10의 부인)

> 그때 저는 남편에 대한 것도 많이 깨달았어요. 여인에게서 남편은 혼이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남편이 배 탈 때도 3-4개월씩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 없어서 힘들거나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정말 이 일이 딱 있고 난 뒤부터 사람이 손도 까닥할 수 없고요. 살림이 안 살아졌어요. 돌아가는 정도에 한 3-4일 정도는 애들 밥도 못해줬어요. (참여자 7의 부인)

> 그냥 애 아빠가 이제 40되고 교도소 한번 갔다 오고 그래도 마음은 착한데 일도 열심히 하고 저는 장점을 좀 더 많이 보고 단점은 천천히 고칠 수 없을까,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악질이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참여자 1의 부인)

부인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긍정적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남편의 수감 상황에서 그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은 남편의 수감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집집마다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남편은 수감되었지만, 가족이 모두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 시련을 통해서 가족의 중요함이나 인생의 의미 등을 깨닫게 되어 내가 얻은 것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 저는 성격이 낙천적인 것 같아요, 돈은 없어요. 결혼의 서약도 소중한 거잖아요. 인간이 살면서 좋은 이름을 남기고 균형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활 해보지고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힘들기는 했지만, 사위도 보고, 손주 보고, 60까지 사는 것도, 지금은 인생이 60부터라니까 다시 힘을 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의 부인)

속으로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참여자 1의 부인)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 게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흐트러져가지고 내 가정까지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거도 있고. 그래도 사람도 그 사람들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잃은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1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재산이 다 그냥 제로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게 건강이잖아요. 애들 건강하고 잘 크고 있고, 나도 건강하니까, 돈 벌 수 있고. 그래 건강이 있으니까 이겨나갈 수 있을 거고. 내가 여기에서 만약 건강도 없고, 애들이 착하게 자라지 않고 애들이 삐뚤어지고 그랬다면 내가 더 감당을 못할 텐데 그래도 그냥 여기에서 그냥 다른 게, 애들 건강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참여자 11)

또한 부인들은 수감을 통한 남편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출소를 기다렸다. 첫째는 수감을 통해 가족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본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느끼고 출소 후에는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였지만, 수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자신과 더 많은 것을 상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남편의 술과 담배 등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 수감 중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도소를 '금연클리닉'으로 생각한 아내도 있었다.

성격부분인데, 저는 원래 어떻게 보면 조금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살았었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집에 가사만 사회생활 안 했던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물론 와이프 상의 없이 모든 일을 처리했던 부분이라, 지금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상의하면서 하죠. (참여자 12)

책임감이죠. 책임감이 더 생긴 거죠. 포기 안 하는 거? 전에는 다른 사람이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참여자 11)

부인들은 가족을 유지하려는 신념을 가지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여도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시댁, 원가족, 친구들의 지지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준 시댁과 원가족, 친구들이 있었고, 또 심리적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제 동생들이 고마웠죠. 친동생이 어려울 때 같이 사는 **사는 동생이 자주 들여다 봐줬구요. 동생들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었고,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참여자 12의 부인)

이모가 큰 애 학원비를 다 대줬어요. 공부를 시켰고. 제일 고마운 건 그거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애들 학습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움 많이 있는데, 다행히 언니가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참여자 11의 부인)

저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친구는 10년 전에 정말 힘들었데요. 근데 그 때 자기를 도와준 분이 있었다고. 그 때 나도 나중에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그런 시점이 있구나. 이제 나도 10년 후에는 얘처럼 그런 날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다시 그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11의 부인)

아, 뭐, 친구들도 힘이 되었고. 한 명. 저의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친정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친구가 이러이러 하면은 여기 있다가는 네가 정말 죽겠다, 비관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버텼었던 건데, 그래도 나중에 잘 살아가지고 갚으면 되지 않겠냐. 거기 용기를 얻어가지고. (참여자 10의 아내)

또 많은 아내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기도를 통해 매일 매일의 어려움을 극복한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불교에서는 남편이 수감된 상황을 남편의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고, 본인의 업보로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돕기도 하였다.

근데 그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상대를 원망을 하면 상대로 나를 원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남편을 원망을 안했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복운이 없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내 전생에 업이었든 어떤 이유에서 '이건 내거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이해도 안 가고, 남 보기도 부끄럽고, 너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어어서 솔직히 창피스럽고 밉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별에 별 마음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될 내 업으로 받아들인다. 그 마음으로 계속 지내왔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부인)

5) 아버지의 수감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본 연구에 참여한 출소자와 부인들은 자녀에게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자녀가 어려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 때

문에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외국으로 잠시 나가 있다거나,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자녀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수감 기간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녀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수감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부재를 그리워하였다.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밀로 속여야 되는데요. 속인다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조카들도 면회 와서 알고 하니까. 최대한 이야기는 안하는, 모르게 하는데, 알게 되면 그때 이야기 해줘야지요. (참여자 13)

아이들이 수감됐다는 그런 걸 눈치 챘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심은 하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하니깐. 왜 아빠가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갔는데, 주말에도 안 오고 하냐, 네 그런 의심은 있었죠. 아이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했었어요. (참여자 12의 부인)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연령대인 경우, 자녀가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버지의 수감을 비밀로 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 자녀들은 대부분 막 사춘기를 시작한 초6 혹은 중학생들이였으며, 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가뜩이나 사춘기를 시작하여 정서적 민감성을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수감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수감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 아이들은 어머니가 설명한 아버지의 부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였다.

그 수감생활은 모르고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다고 그러니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글쎄요, 나는 그 알린다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여자 12의 아내)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를 하다보면 마음에 근심이 차면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면 집중을 못 하잖아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스스로 어린 나이에 고민을 떠안는다는 거는 뭔가에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걔는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안 알리고 그냥 아빠는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갚으러 갔다고만 얘기했지. 아이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다른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우리 아빠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또 괴로울 수도 있잖아

요. (참여자 11의 부인)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들은 자녀가 저학년일지라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자녀가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참여가정 11과 12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전에 다니던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 애들은 아직도 아빠가 들어갔다 나온 지 몰라요. 아빠가 빚 갚기 위해서 돈 벌러 갔다고 제가 얘기하고. 애들한테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안 좋아졌으니, 너희들이 절약은 해야 되다 하고 애들한테 그건 알려줬어요. (참여자 11의 부인)

지금은 자녀에게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출소자의 부인들 중에서는 성인이 되면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 알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그렇지 않고 끝까지 알리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었다. 알리겠다는 경우, 어머니들은 성인되어 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 왜냐하면 그런 걸 해야지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커서 가정을 이뤘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은 아빠를 닮아 간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보이지 않게 아빠를 닮아 가거든요. 한번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참여자 3의 부인)

> 애들이 말귀 못 알아듣고 어릴 때는 초등학생일 때는 외국 가셨다고, 해도 신경 안 쓰고 그러지만, 알죠, 애들이 사춘기 넘고, 성인되면, 오히려 딱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헤쳐 나가야 되냐 얘기하고 그럴수록 대화가 더 필요한 거 같아요. 면회도 교대로 가고, 아버지 얼굴도 보는 게 정서에 안정이 되지 전혀 못 보면 더 스트레스 받죠. 그래도 아버지 얼굴도 애들이 안정을 얻고 보고 갔다 오면 애들이 마음이 편해 하고. (참여자 2의 부인)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연령대로 여기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수감을 알린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7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중학생인 큰 아이가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서 알렸다. 아이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알린 것을 지금은 후회하였다. 지금은 알린 것을 후회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수감 이야기 없이는 상황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다.

큰 애만 알고. 아 큰애도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딴에는 잘 받아들인 것처럼, 아유 뭐 죽을죄는 안 지었잖니. 말을 하자면 죄를 지었는데 큰 죄는 큰 죄인데 그래도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강간을 했던 것도 아니고, 술 먹고 그렇게 됐는데, 막 어쩌겠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본인에게는 상처가 많이. 아직도 깔려 있어요. 아빠 싫어, 미워, 이렇게. 안 알릴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바닥으로 내리치는데. (참여자 7의 부인)

애들은 민감하잖아요. 모든 게. 그때 애들이 특히 아들은 어른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반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다 알죠. 내막 다 알죠. 저절로 다 알죠.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난폭하고 어쩔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문짝도 발로 걷어차고 애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참여자 2의 부인)

참여자 7의 부인은 큰 딸에게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을 후회하였다. 참여자 7의 자녀는 아버지의 수감 소식에 '멍'해 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에 본인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다녔다.

아파도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지나고 보니까 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는 좀 멍하기 그렇더라고요. 좀 멍하다가 뭔 그런 일이 있냐고. 근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하면서 힘들어 했어요. 친구들이 아빠, 누구 아빠는 이러는데, 누구 아빠는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이해를 잘 하는 듯이 보였거든요? 지나고 난 뒤에 오히려 청소년문화의 집 저기서 상담받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되어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의 부인)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수용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한 자녀들도 있었다. 참여자 5의 아들은 아버지의 음주 운전을 말렸지만, 아버지가 음주 운전을 하고 체포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이는 방황하기 보다는 자신의 앞가림을 스스로 찾아서 살아가게 되었다. 학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학업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부자가 단골로 식사를 하러가는 식당의 아주머니와 아버지가 살림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5년 전에 사별한 참여자 5는 식당 아주머니와 살림을 합치고 안정을 찾아하게 되었다.

쟤도 말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밥 먹어라 그러면 뭐, 아니면 안 나와요.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은. 학원도 어디 뭐 지가 알아가지고 공짜로 해 주는 데가 있대요. 거기 다녀서, 지가, 지가 알아서. (참여자 5의 부인)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대견스럽죠. 엄마가 해주지 못한 일들을, 사실 너무 고마운 건 제가 어쨌든 **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큰 애한테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죠. (참여자 3의 부인)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일을 해야 하니까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동생 잘 챙겨주고 그런 거는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잘 하더라고요. 딸래미가 속상하다고 해서 밖으로 나돌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아들내미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당연히 챙겨야 되거든요. 책임감이 생긴 거죠. 전에는 머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빤 없고. 아예, 몇 년 동안 없을 거구,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나 봐요. (출소자 9)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독립해야 될 시기였고, 그걸 맞아가지고 이제 기댈 곳이 없으니까. 혼자 저 혼자 이제 단단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고. 네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은 좀 좋았던 것 같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 좀 그게 외롭고 힘든 거 있었는데. 그리고 가장이라는 게 존재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쭉 있어가지고, 소중한 걸 모르고 가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게 없어졌다 다시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될 존재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 준 거 같아요. (참여자 8의 아들)

아버지의 수감에 대해 알고 성숙한 태도를 보였던 자녀라 할지라도 출소자의 부인들은 자녀에게 상담이 제공되기를 바랐다.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버지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적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인들은 자녀가 속앓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였다.

<표 3.11> 주거지원 남성출소자 가정 내 수감사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주제 1.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아는 가정 | |
|---|---|
| 영역과 범주 | 응답빈도 |
| **수감사실을 알린 방식** | |
| **＊ 아버지 수감 중 어머니가 알림** | **드문(n=4)** |
| 아버지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있는 그대로 말함 | 배우자 4,8 |
| 큰 애한테만 알림 | 배우자 7,9 |
| **＊ 출소 후 아버지가 직접 자녀에게 말함** | **(n=1)** |
| 수감당시에는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출소 후 아빠가 자녀들에게 수감사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함 | 참여자 12 |
| **＊ 수감사실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알게 됨** | **드문(n=2)** |
| 수감되는 날 알리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저절로 알게 됨 | 배우자 2 |
| 자녀들에게 아버지 수감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공단에서 진행하는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됨 | 참여자 3 |
| **＊ 부모의 수감사실을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알게 됨** | **(n=1)** |
| 경찰 체포 현장에 자녀가 같이 있었음 | 참여자 5 |
| **수감 사실을 알린 이유** | |
| **＊ 생계 부양을 책임지던 가장의 수감으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짐을 알려야 했음** | **드문(n=4)** |
|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엄마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함을 설명함 | 배우자 4,9 |
| 성인인 자녀가 가정의 생계를 같이 책임져 주기를 바람 | 배우자 8 |
| 좁은 집으로 이사, 학원비 없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감사실 이야기함 | 참여자 12 |
| **＊ 자녀들이 다 커서 아버지의 수감을 수용하리라고 생각함** | **(n=1)** |
| 수감사실 알려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처하고 접견을 통해 정서안정 도모하고자 함 | 배우자 2 |
| **＊ 수감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거라 생각함** | **(n=1)** |
| 출소 후 지나가는 말로 자연스럽게 수감 사실을 흘림 | 참여자 3 |
| **＊ 자녀가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궁금해 하여서 알려줌** | **(n=1)** |
| 자녀의 성격상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 배우자 7 |

이라 여김

|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의 반응 | |
|---|---|
| ***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수용하고 이해** | **드문(n=4)** |
| 아버지 빈자리를 자녀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함 | 배우자 3 |
| 아버지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수용함 | 참여자 2 |
|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하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함 | 참여자 4<br>배우자 8 |
| *** 자녀가 어려워진 가정 경제를 걱정하고 도움** | **드문(n=3)** |
| 자녀가 취직후 가정의 공과금을 책임짐 | 참여자 2 |
| 엄마,아빠 힘들게 하기 싫어서 대학은 안가겠다고 함 | 참여자 5 |
| 자녀 스스로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단단해 질 수 있었음 | 배우자 8 |
| *** 자녀가 어머니의 집안 일을 도움** | **드문(n=2)** |
|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 부재로 생계유지를 위해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게 되자 세탁기 돌리고 밥하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알아서 하게 됨. | 배우자 3 |
| 자녀가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 동생에 대해 책임감이 생김 | 배우자 9 |
| ***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그리워 함** | **(n=1)** |
| 막내(수감당시 초2)가 아빠를 찾으며 힘들어 함. | 배우자 3 |
| *** 자녀가 방황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임** | **드문(n=2)** |
| 수감 중 사춘기 아들이 문짝을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동 | 참여자 2 |
| 학교 공부에 흥미가 떨어져 성적이 하락함 | 배우자 7 |
| *** 자녀들이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워 함** | **드문(n=2)** |
|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고 잠시 멍해하다가 남들과 다른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함 | 배우자 7 |
|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환경의 변화(좁은 집, 학원 못다님)를 겪게 됨 | 참여자 12 |
| *** 아버지를 싫어하고 미워함** | **드문(n=3)** |
| 술먹고 운전했다고 아빠를 싫어함. | 참여자 5 |
| 자녀가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미워하고 불신하게 됨 | 배우자 7,12 |

| 주제 2.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모르는 가정 | |
|---|---|
| 영역과 범주 | 응답빈도 |
|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은 방식** | |
| ***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말하지 않음** | **전형적(n=7)** |
| 자녀가 어려서 알지 못함 | 참여자 1,6,10,13 |
|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알리지 않음 | 배우자 11 |
| 큰 애한테만 알리고 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음 | 배우자 7,9 |
| ***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다른 이유를 댐** | **드문(n=3)** |
| 원래 배를 타던 아버지라 자녀들에게 배타러 간다고 함 | 배우자 7 |
| 빚을 갚기 위해 돈 벌러 갔다고 함 | 배우자 11 |
| 수감당시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다고 설명함 | 배우자 12 |
|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 |
| *** 자녀가 어려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음** | **드문(n=4)** |
| 어린 자녀가 엄마와 같이 있어서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한 부재가 크게 문제 되지 않음 | 참여자 1,6,10,13 |
| *** 수감기간이 짧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음** | **전형적(n=7)** |
| 수감기간 3개월 | 참여자 6 |
| 수감기간 10개월-14개월 | 참여자 1,7,10,12 |
| 수감기간 21개월-24개월 | 참여자 11,13 |
| *** 자녀가 충격을 받을까봐 알리지 않음** | **드문(n=2)** |
| 사춘기 자녀가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 배우자 11 |
| 아버지 수감이 자녀들에게 충격일 것 같아 알리지 않음 | 배우자 12 |
| **수감 사실을 모르는 자녀의 반응** | |
| *** 자녀가 수감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자녀 관계에 변화가 없었음** | **드문(n=5)** |
|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한 부재가 어린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참여자 1,6,9,13 |

| | |
|---|---|
| 길지 않는 수감기간으로 자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함 | 배우자 7 |
| ***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리워함** | **드문(n=3)** |
| 자녀들이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는데 주말에도 오지 않아 의심함 | 배우자 12 |
|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함 | 배우자 6, 11 |
| *** 수감기간동안 엄마가 든든하게 곁에 있어 자녀들은 사춘기를 잘 이겨냄** | **(n=1)** |
|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스스로의 진로를 잘 찾아감. | 참여자 11 |
| **주제 3. 가정 내 수감 사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남성출소자 및 배우자들의 경험적 제안** | |
| 영역과 범주 | 응답빈도 |
| **아버지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게 낫다** | |
| *** 아버지 행동을 따라 배우면 안되므로** | **드문(n=2)** |
|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1,2 |
| *** 아버지 수감사실을 알려서 어려워진 가정형편을 공유하기 위하여** | **드문(n=2)** |
| 어려워진 가정형편을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배우자 2,4 |
| *** 수감 사실 알려야 자녀가 수감 중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므로** | **(n=1)** |
| 접견을 통해 자녀의 정서안정 뿐만 아니라 수감된 아버지의 스트레스도 경감시킬 수 있음 | 배우자 2 |
| *** 나중에 다 알게 될테니 처음부터 탁 터놓고 얘기하는 게 낫다** | **(n=1)** |
| 감췄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자녀에게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함 | 참여자 9 |
| *** 수감기간이 길면 자녀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n=1)** |
| 수감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자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려야한다고 생각함 | 참여자 12 |
| **아버지 수감 사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알리지 않는 게 낫다** | |
| *** 자녀가 커서도 아버지의 수감사실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 **드문(n=4)** |
| 아버지의 수감사실은 자녀 성장 후에도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므 | 배우자 |

| | |
|---|---|
| 로 앞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을 예정임 | 6,12,13 |
| 수감사실을 안 자녀는 상처받고 힘들어 했으므로 알린 게 후회됨 | 배우자 7 |
| *** 자녀가 수감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건 그 때 이야기 해줘도 되기 때문에 드문(n=3)** | |
| 주변에 의해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면 그때 이야기 해줘도 된다고 생각함 | 배우자 10<br>참여자 13 |
| 자녀가 성장해서 물어본다면 수감사실을 알려도 괜찮을 것 같음 | 배우자 11 |

**주제 1.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아는 가정**

**영역 1. 수감사실을 알린 방식**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출소자 13가정 중 8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게 된 방식으로는 아버지 수감 중 어머니가 알려 준 경우와 출소 후 아버지가 직접 자녀에게 말한 경우, 수감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알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경우가 있었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경우가 수감기간동안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어머니가 알린 경우가 4가정이었다. 이들 가정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형제가 많은 경우에는 큰아이에게만 아버지 수감사실을 알렸다.

> 그 때 애들이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큰 애는 중학교 가고, 작은 애는 6학년 때인가 이랬는데.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래이래 해서 이래 됐다고. 애들이 왜 우리가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식당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배우자 4)

> 네. 큰 애만 알고, 둘째, 셋째는 몰라요. 다행히 감사했던 게 배를 타러 갔었잖아요. 배를 타러 가면 한 삼 개월, 사 개월 있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아빠 배 타러갔어? 응 배 타러 좀 멀리 갔어. 이렇게 얘기가 됐고, 큰애는, 아 큰애도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딴에는 잘 받아들인 것처럼 아유 뭐 죽을 죄는 안 지었잖니. 말을 하자면 죄는 지었는데 큰 죄는 큰 죄인데 그래도 말을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강간을 했던 것도 아니고 술 먹고 그렇게 됐는데 막 어쩌겠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본인한테는 상처가 많이..(배우자 7)

> 큰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죠. 열여섯인가? 그쯤 되었을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땐가? 집사람이 얘기를 잘 했나 봐요. 면회도 오고 그랬었거든요.(참여자 9)

한편 참여자 12의 경우에는 수감당시에는 아버지의 수감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다고 말하였으나, 출소 후 아버지 본인이 자녀들에게 수감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하였다. 이 가정의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의 수감이 자녀에게 충격을 줄 것 같아서 이야기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수감기간이 11개월로 길지 않은 기간이라 자녀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출소 후 어려워진 가정형편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수감사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 결정적으로 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오래했다고 하면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깐 나와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 수감부분을 떠나서 어차피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니깐 아이들이 아빠가 이래저래 해서 나와서 이야기 했죠. 왜 그러냐하면 환경이 변했잖아요.(큰 딸에게?) 큰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는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 평수 좀 넓은데서 잘 살다가 갑자기 학원도 안가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깐 .. 애들 입장에서는...우리 집에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이야기를 했죠. 아빠의 잘못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감 자신감 심어주고 열심 하라고 그런 쪽으로 대화를 다 했죠.(참여자 12)

수감사실을 정확히 밝히지는 알았으나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감되는 날 바로 자녀들이 저절로 알게 된 경우와 직접 수감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수감사실을 은연중에 흘려서  얘기하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족 캠프에 참여하는 가족들도 있었다.

> (아이는 아버지 이야기의 충격으로 좀....)애들은 민감하잖아요. 모든 게. 그 때 애들이 특히 아들은 어른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반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에요?) 애들도 다 알죠. 내막 다 알죠. 저절로 다 알죠.(배우자 2)

> 나가서 가족 프로그램 한번 참석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 미리 얘기를 했다면 아이들도 조금 준비할 수 있는 맘도 있겠죠. 저는 그런거  없이 그냥...(배우자 3)

참여자 5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신고에 의해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대상자를 체포할 때 자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사례이다.

(선생님께서는 음주로 집행유예 됐었는데, 아이한테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같이 있었어요.

### 영역 2. 수감 사실을 알린 이유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공개한 가정들은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 사실을 알린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생계 부양을 책임지던 가장의 수감으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으므로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엄마도 생계유지를 위해 나가서 일을 해야 함을 설명하고,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가정의 생계를 같이 책임져 주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수감을 이야기 하였고,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좁은 집으로 이사가고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됨을 자녀들에게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수감을 알렸다.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래이래 해서 이래 됐다고. 애들이 왜 우리가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식당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배우자 4)

자녀들이 다 커서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리라고 생각하여 자녀에게 수감 사실을 알린 배우자 2의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고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자녀들과 모색하고, 아버지의 수감기간 동안에는 접견을 통해 아버지와 계속 만남으로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수감된 아버지도 가족에 대해 걱정하는 스트레스를 낮출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렸다.

애들이 말기 못 알아듣고 어릴 때는 초등학생일 때는 외국 가셨다고 애도 신경 안 쓰고 그러지만 알죠. 애들이 사춘기 넘고 성인되면 오히려 딱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헤쳐 나가야 되냐 얘기하고 그럴 록 대화가 더 필요한거 같아요. 면회도 교대로 가고아버지 얼굴도 보는게 정서에 안정이 되지 전혀 못보면 더 스트레스 받죠. 그래도 아버지 얼굴도  애들이 안정을 얻고 보고 갔다 오면 애들이 마음이 편해 하고 (배우자 2)

한편, 참여자 3의 경우에는 수감 중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어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는 참여자 3의 배우자가 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었고, 수감 중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게 합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정확히 말한 적은 없지만 유치장에 있을 때 둘째 아들한테 스치듯이 이야기했고, 공단에서 주최하는 가족캠프에도 다녀왔기 때문에 자녀가 알고 있을 꺼라고 참여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 유치장에 있을때도 전화로 둘째 아이한테 거기 가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려준건 없었죠. 면회한번 안왔으니까. 저는 편지만 계속 썼고 아이들이 받는지 안받는지, 나와서는 가끔 농담식으로 자연스럽게 알았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할 기회는 없었어요. 가족 캠프 가서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참여자 3)

또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자녀에게만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7의 경우 큰 아이의 경우에만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렸는데, 그 이유는 큰아이의 성격상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납득하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엄마가 판단해서이다.

> 경제적인 상황이 바닥으로 내리치는데 큰애 만큼은 알아야지 뭔가 얘기가 되겠다. (엄마를 더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네. 말로든 뭘로든.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민은 많이 했어요. 이게 애한테 인생에 도움이 될려나. 아무래도 말을 안하고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벌어야 되겠니 어떻게 하면 되겠니 했는데 '엄마 우리 벌지 말고 한번 버텨 봐요.' 그러더라고요.

### 영역 3.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의 반응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과 힘든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아버지 수감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도 하는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수용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경우는 수감 전부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가족분위기가 좋은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였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며, 아버지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수용하는 자녀도 있었고, 아버지가 감옥에 간 것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아버지가 희생

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도 있었다. 참여자 2의 경우 주거지원을 받아서 임대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그리구 자기들이 어쨌든 표현은 못하지만 아빠의 빈자리에서 자기들이 해야된다 그거를 말은 안하면서 터득을 하구요. 스스로.(배우자 3)

> 애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살기에 다들 바쁘고 하니까. 그러면서 항상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혹시라도 저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이래 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배우자 4)

> 지들이 그걸 알아요. 아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물어보는데,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큰 딸은 아빠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지. 그래서 내가 언제쯤 되면 아빠가 여기 딱 들어갈거다. 키를 딱 받는 날까지도 큰 딸은 사실은 안믿었다는 거예요. 밑의 애들하고는 그런 대화 안해봤는데... 큰 애는 불신이 있었죠. 항상 좋았던 건 아닌데, 아버지니까 표현을 나쁘게만 안했다 뿐이지 집이 됐다 해도 안믿더라구. 근데 청소하러 오는 날 키를 받아서 식구들 다 와서 청소하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거꾸로 고맙다고 그러더라구. 아버지가 잘해줘서 이런 거를 준거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할 일이 전혀 없죠. 나만 계속 마음속에 애들한테 빚졌다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거지...(참여자 2)

> 아버지는 이제 저희땜에 고생많이 하신거 알고 있고 안좋은 일로 수감했지만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다 그렇게 된거니까...(참여자 8의 자녀)

자녀가 어려워진 가정 경제를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녀가 취직 후에 가정의 공과금을 책임지거나, 부모님을 힘들게 하기 싫어서 대학은 안가겠다고 하는 경우,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스스로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단단해 졌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둘째는 그 때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걔가 공과금 다 내고 저는 동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보태주고 동사무소에서 수감 기간 몇 개월 동안은 3개월 동안은 보상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제가 간병, 청소할 수 있는 일은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나올때까지.(배우자 2)

> 고등학교는 자기가 선택하는데,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기 싫어서 대학은 안 가겠대.(배우자 5)

그러기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군대도 갔다오고 그래서 악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많았던거 같아요. 빨리 자립할 수 있었고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혼자 하는 법도 배웠고 그런게 좀 있던거 같아요.(참여자 8의 자녀)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엄마가 책임지게 되자 집안일을 자녀가 돕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3의 경우 엄마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자녀들에게 세탁기 돌리고 밥하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자녀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9 가정의 경우 누나와 남동생의 나이차가 10살이 났는데, 큰딸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수감되고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자 집안일과 동생 돌보는 것을 맡게 되었다.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 모습들이 대견스럽죠, 엄마가 해주지 못한 일들을, 사실 너무 고마운건 제가 어쨌던 수원으로 다니면서 벌어진 일이니까 일을 하면서 큰애한테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죠.(배우자 3)

집사람은 일을 해야되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어떻게 딸래미가 속상하다고 해서 밖으로 나돌 상황이 안된거예요. 아들내미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당연히 챙겨야되거든요. 책임감이 생긴거죠. 전에는 머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빤 없고, 아예 몇 년동안 없을거구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나봐요.(참여자 9)

어린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해 아빠를 찾으며 그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8개월동안 부재한 이유로 막내가 아빠를 찾고...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힘들어 했어요.(배우자 3)

한편,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고 난 뒤 자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는데, 방황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자녀들이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또 아버지가 저지른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황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자녀들이 사춘기와 겹치는 경우였는데 아버지 수감 중에 아들이 문짝을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학교 공부에 흥미가 떨어져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래도 저는 다루기가 아들...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난폭하고 어쩔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문짝도 발로 걷어차고 애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배우자 2)

그 전부터 경제적인 부분과 공부가 딱 끊기는 부분에서 지 적응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쟤가 집에서 문제집 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런대로 따라갔어요. 갔는데 중학교는 진짜 자기 공부잖아요. 노력을 안하더라고요. 학교서는 제가 볼 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집에서는 노력을 안했어요.(배우자 7)

또한 자녀들은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워 했는데, 친구들의 아버지와는 너무 다르게 술마시고 도박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힘들어 했고,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좁은 집으로 이사가거나 학원을 못다니게 되는 환경의 변화도 어려워하였다.

(그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큰 아이 반응은 어땠어요?) 좀 멍하니 그렇더라고요. 좀 멍하다가 뭔 그런 일이 다 있냐고, 근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하면서 힘들어 했어요. 친구들이 아빠, 누구 아빠는 이렇는데 누구 아빠는 이렇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는...너무 나는 친구들 아빠를 학교가서 듣고하면은 우리 아빠랑 너무 틀려. 네.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죠. 다 집에 가면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다. 밖에서 봐가지고 다 어떻게 알 수가 있니. 인간고가 없으면 경제고가 있을거고 다 하나씩 괴로움은 다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다독여 주는 것 밖에 없었죠.(배우자 7)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술먹고 운전한 아버지나 나쁜 일을 하여 수감되었던 아버지를 자녀들이 싫어하고 불신하였다.

술 먹고 운전했다고 아빠 좀 싫어했죠. 나중에.(참여자 5)

음.. 아직도 깔려있어요. 아빠 싫어 미워 이게.(그러면 엄마가 보기에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문제는 아니고 옛날부터 가족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있는데, 작년 일이 아마 결정적인 것 같아요. (배우자 7)

### 주제 2.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모르는 가정

### 영역 1.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은 방식

남성출소자들의 경우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결정은 수감 중 여성배우자의 판단에 따라는 경우가 많았다. 수감 중 여성배우자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다른 이유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어려서 알지 못하는 경우와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상처가 될까봐 알리지 않는 경우, 형제가 여럿인 경우 큰애한테만 알리고 동생들한테는 알리지 않은 가정도 있었다.

> 큰 애만 알고, 둘째, 셋째는 몰라요. 다행히 감사했던게 배를 타러 갔었잖아요. 배를 타러 가면 한 삼 개월, 사 개월 있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아빠 배 타러갔어? 응 배타러 좀 멀리 갔어. 이렇게 얘기가 됐고, 큰애는, 아 큰애도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딴에는 잘 받아 들인 것처럼 아유 뭐 죽을 죄는 안 지었잖니. 말을 하자면 죄는 지었는데 큰 죄는 큰 죄인데 그래도 말을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강간을 했던 것도 아니고 술 먹고 그렇게 됐는데 막 어쩌겠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본인한테는 상처가 많이..(배우자 7)

> 그러니까 나중에 지네들이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가지고 모든 거를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했을 때 그 때 가서 아빠 그 때 그랬다고 얘기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어린 나이에 굳이 공부만 해야 할 때 그런 사념을 넣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점인데 한참 사춘기라 또 아빠가 들어갔는데 그건 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참 그 나이에 또 그런 생각이 많을 땐데 괜히 고민만 안겨줘 갖고 반항심만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 싶어서.(배우자 11)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녀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의 경우, 주로 다른 이유로 아버지의 부재를 설명하였다. 원래 수감전에 배를 타던 아버지의 경우 자녀들에게 배를 타러간다고 얘기를 하였고, 빚을 갚으러 다른지역에 돈 벌러 갔다고 하거나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갔다고 주로 배우자들이 이야기 하였다.

> 애들은 아직도 아빠가 들어갔다 나온지 몰라요. 아빠가 빚 갚기 위해서 돈 벌러 갔다고 제가 얘기하고. 애들한테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안 좋아졌으니 너네들이 절약은 해야 된다 하고 애들한테 그건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중학교 때고 초등학교 때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때, 큰 애가 중학교 때고. 그리고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때 그래가지고.(배우자 11)

### 영역 2.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자녀에게 아버지 수감을 알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어리거나 수감기간이 짧아서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출소자들은 주거지원을 받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며, 초범이 많고 수감기간이 짧은 출소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령이 30대인 출소자의 경우 대부분 자녀의 나이가 영유아에서 취학전 자녀라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한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굳이 수감사실을 밝힐 필요도 없었다.

둘째는 워낙 어려가지구, 알아듣질 못하는 나이구...알리고 뭐고 없었어요.(참여자 9)

애들은 아직도 아빠가 들어갔다 나온지 몰라요. 아빠가 빚 갚기 위해서 돈 벌러 갔다고 제가 얘기하고. 애들한테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안 좋아졌으니 너네들이 절약은 해야 된다 하고 애들한테 그건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중학교 때고 초등학교 때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때, 큰 애가 중학교 때고. 그리고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때 그래가지고.(배우자 11)

본 연구에 참여한 13명의 남성 출소자 중 10명이 24개월 미만의 수감 기간을 복역하였다. 이 중 7명은 수감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굳이 자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근데 저도. 굳이 애들한테는 얘기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 기간이 길어서 정말로 막. 징역생활을 오래했던 거면. 얘기를 해줬을 건데 단기간이고.(참여자 6)

길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형이 짧은데 굳이 애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싶어요.(배우자 11)

또한, 자녀의 상황에 맞춰 얘기하지 않는 가정도 있었는데, 사춘기 자녀가 공부하는데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던지 혹시나 자녀에게 충격을 줄까봐 아버지 수감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가정도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를 하다보면 마음에 근심이 차면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면 집중을 못 하잖아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지 스스로 어린 나이에 고민을 떠안는다는 거는 뭔가에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걔는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안 알리고 그냥 아빠는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갚으러 갔다고만 얘기했지. 아이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다른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우리 아빠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또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배우자 11)

일단은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에 갔다는 거 자체가 충격이겠죠. 심리적으로 물론 저희도 그랬기 때문에 알리진 않았고 왜냐면 그거를 알렸을 때 남아있는 아내라던가 어느 누구 제3자가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그것을 못했을 때는 악영향, 역반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해명하지 않은 이상은 왜냐면 아이들이 어느정도 중학생 이라든가 그 정도 수준에 있을 때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요즘 빠르다고 하면 하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했을때는 저는 그래요. 아이들한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힘들다 지금의 현실들이 힘들다 그게 그렇게 두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어차피 뭐 내 목표가 있고 그전의 과거의 삶보다는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물론 거기서 많은 공부도 했긴 했지만은 사람이라는게 그런 거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말을 하듯이 현재 가난하고 뭐 그런걸 떠나서 희망의 메세지가 제일 큰 거 같아요.(참여자 12)

### 영역 3. 수감 사실을 모르는 자녀의 반응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모르는 자녀들의 반응은 수감 전과 비교해서 아버지-자녀 관계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한 부재가 어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짧은 수감 기간으로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자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다. 어린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부재하기는 하지만 주양육자인 엄마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1의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 수감되었다가 나와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전혀 어색함을 못느끼고 있었다.

제가 4시에 시장에서 배달하거든요. 4시에 일을 나가고 4시에 끝나요. 우리 아들하고 놀고 밥먹고 놀고 한바퀴돌면 10시에는 자요. 그렇게 자봐야 5시간,6시간 자는건데... 그런 원동력이 피곤함을 못느끼고 계속 일하는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애가 있어가지고서 하는거죠. (참여자 1)

아버지 수감기간 동안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는 자녀들이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주말에도 오지 않아서 그 사실을 의심하였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녀도 있었다.

> 아이들한테 말은 안했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거기 수감됐다는 그런걸 눈치를 챘는지 안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의심은 하죠. 어느정도 나이가 있고 하니깐 왜 아빠가 다른지역에 일하러 갔는데 주말에도 안오고 하냐 네 그런 의심은 있었죠 아이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이야기는 했었어요.(배우자 12)

아버지의 수감 기간 동안 사춘기를 맞이했던 소년들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모른 채 고등학교에서 반장도 하였고 스스로의 진로도 잘 세워나갔다.

> 근데 이제 애기가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드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반에 실장인데 요번에 시험 끝나고도 아무 것도 못해주고. 원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출소자 11)

> 그런데 중요한 게 내가 그래서 반에 애들한테 뭐라도 사서 간식이라도 넣어줘야 하지 않냐 다음 주에 체육대회라고 해서 넣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상관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 돈 있으면 자기 옷 산대요. (배우자 11)

### .주제 3. 가정 내 수감 사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남성출소자 및 배우자의 경험적 제안

#### 영역 1. 아버지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게 낫다

남성출소자들의 배우자들은 자녀가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 배우면 안되므로 자녀에게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리는 게 낫다고 진술하였다. 배우자 1의 경우에는 자녀가 커서 사고칠 때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려서 자녀의 행동이 아버지와 같지 않게 되기를 바랬고, 배우자 2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 가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잘 질수 있도록 아버지 수감사실을 알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크면 말해야죠.(크면 왜?)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이한테는.. 아빠의 안좋은거에 대해 해명을.. 따라 배우면 안되잖아요. (배우자 1)

한편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수감됨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이런 가정의 형편을 알고 서로 도우며 같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수감을 알려야 한다고 배우자들은 진술하였다.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냐 헤쳐 나가야 되니까. 막 그때 월세 저기 해가지고 보증금 다 까서 나가야 되게 생겼어요.(배우자 4)

아버지 수감사실을 알리는 게 낫다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버지 수감 사실을 알려 수감 중에 아버지와 자녀를 접견을 통해 계속 만나게 해주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안정에도 기여하고, 수감 중인 아버지의 스트레스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알리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애들이 말기 못 알아듣고 어릴 때는 초등학생 일 때는 외국 가셨다고 애도 신경 안 쓰고 그러지만 알죠. 애들이 사춘기 넘고 성인되면 오히려 딱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헤쳐 나가야 되냐 얘기하고 그럴수록 대화가 더 필요한 거 같아요. 면회도 교대로 가고 아버지 얼굴도 보는 게 정서에 안정이 되지 전혀 못보면 더 스트레스 받죠. 그래도 아버지 얼굴도  애들이 안정을 얻고 보고 갔다 오면 애들이 마음이 편해 하고 (배우자 2)

또한, 참여자 9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어떤 경로로든지 다 알게 될 테니까 처음부터 딱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버지 수감 사실을 감췄다가 자녀가 커서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된다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알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니 저는 머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딱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만약에 감췄다가 나중에 아들래미가 사고치면 “너 임마 똑바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어?”“아버지는?”이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버지도 갔다 왔는데 난 이렇게 살면 안돼?”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어느정도 조금의 거짓말도 보태가지고 납득할만한 그런 머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9)

참여자 12는 수감기간이 짧으면 크게 상관은 없으나, 수감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것이 낫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유는 수감 기간이 길고 아버지 부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자녀들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감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 아버지가 3년이든 4년이든 어딜 갔다라고만 했을 때 한번도 보이지 않고 그것도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를 버렸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어차피 없는 상황에서 힘들게 계속 살아서 비뚤어지는거나 차라리 알려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잡는다면 더 건질 것이 더 있지 않을까요? 물론 10명이 열은 다 할 수는 없겠죠 뭐든지 그런(참여자 12)

**영역 2. 아버지 수감 사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알리지 않는 게 낫다.**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것은 자녀가 성장 후에도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이야기하지 않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알리지 않을 예정이라 하였다. 실제로 참여자 7의 경우에는 큰아이에게만 아버지 수감사실을 알렸는데, 큰아이가 아버지 수감사실을 처음에는 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처받고 힘들어하여 아버지 수감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었다.

> 아이가 커도 그냥. 별로. 말해주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커서 얘기할 때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어떤 점에서?) 어쨌든 그게 좋은 일을 해서 들어간 건 아니니까. (배우자 6)
>
> 최대한 비밀로 속여야 되는데요. 저희조카들이 알아요. 그 면회올 때 데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군대나 그런대서 한 놈은 지금 수능 봐서 알아요. 근데 군대라고 이야기하지 그 녀석은 모를텐데. 머슴아라서 알고 있고 여자애 조카애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저께 우리 식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안쪽에 있었을 때 갔었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드라마보고 이야기하는데...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인다고 될 것같지는 않고요. 최대한 이야기는 안하는 모르게는 하는데 알게 되면...(배우자: 그런 이야기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을거에요) 뽀록나면 그때 이야기 해줘야지요.(배우자: 뽀록날리가 없어.) (참여자 13)

> 아파도 내가 참고 견디는게 지나고 보니까 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적당 수입만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만 들어왔어도 안했을 것 같아요. 너무 변화된걸 납득시키기가 어려워서 큰 애에게만 얘기를 했어요. 작은 애는 왜 돈이 없어 이런 얘기를 안하니까. 왜 이리 힘들어 이런거 안하고 별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쪽인데 큰 애는 그런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어야 되고 납득이 되야지 뭘 하는 애라서요. (배우자 7)

한편, 수감 사실을 자녀에게 계속 알리지 않고 있다가 혹시나 나중에 자녀가 아버지 수감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건 그때 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참여자 세 사례가 있었다. 주변에 의해 아버지 수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면 그때 이야기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녀가 성장해서 물어본다면 지금은 수감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 때는 수감사실을 알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지금 굳이 자녀에게 아버지 수감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은데요 애가 커가지고 아빠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얘기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어째서 그 때는 이야기를?) 억울하게 우리가 당한거다. 아빠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고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당해도 어쩔 수 없고. 그 동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아빠랑 애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라고 하며 쉽게 털어버릴 것 같아요. 지난 일은 당장 일이 아니기 때문에..(배우자 10)

그러니까 나중에 지네들이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가지고 모든 거를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했을 때 그 때 가서 아빠 그 때 그랬다고 얘기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어린 나이에 굳이 공부만 해야 할 때 그런 사념을 넣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점인데 한참 사춘기라 또 아빠가 들어갔는데 그건 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참 그 나이에 또 그런 생각이 많을 땐데 괜히 고민만 안겨줘 갖고 반항심만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 싶어서.(배우자 11)

<표 3.12> 주거지원 남성출소자 가정 내 수감사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사례내용 분석 결과

| 수감사실 공개여부 | 자녀특성 | 가정 내 수감사실 다루는 법 | 수감사실에 대한 자녀의 반응 |
|---|---|---|---|
| **참여자 1.**<br><br>▫ 방화미수<br>▫ 수감기간 : 10개월<br>▫ 초범<br>▫ 수감사실을 공개하지 않음 | ▪ 아들 1명<br>▪ 나이가 어림 | ▪ 자녀가 어려서 수감사실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음<br>▪ 아내는 자녀가 커서 사고를 치면 이야기할 예정이만 남편은 이야기하거나 안하거나 상관하지 않음<br>▪ 아이가 커서 아버지 행동을 따라 배울까봐 걱정이 되어 크면 이야기 할 예정<br>▪ 출소후 자녀와 같이 산책하고 놀아줌 | ▪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에 대해 어려서 모르고 있고, 아버지의 수감기간이 짧아서 인지하지 못함 |
| **참여자 2.**<br><br>▫ 사기<br>▫ 수감기간 : 21개월<br>▫ 초범<br>▫ 수감되는 날 알리지는 않았지만 저절로 알게 됨 | ▪ 딸2, 아들 1<br>▪ 딸 둘 출가<br>▪수감당시)<br>막내 고등학생 | ▪ 수감 당시 정확하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저절로 그 날 셋 다 바로 앎<br>▪ 수감 당시 두 딸 성인. 아들 고등학생.<br>▪ 알린 이유:<br>사춘기 넘고 성인이 되면 수감사실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대처방법을 자녀와 대화로 풀기 위해서, 수감 중 아버지와 접견을 통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덜 받게 하려고. 아버지도 자녀들보고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 수감 당시 그 날 셋 다 바로 앎<br>▪ 첫째 딸: 대학도 못가고 벌어놓은 돈을 아버지 수감 전에 빚 갚느라 다 씀. 울면서 서러워함<br>▪ 둘째 딸: 수감 중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취직하여 집안의 공과금을 다 내어줌<br>▪ 셋째 아들: 아버지 수감기간이 사춘기 때라 문짝을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며 반항<br>▪ 지금은 아버지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수감사실을 수용하고 이해함 |
| **참여자 3.**<br><br>▫ 폭력 및 협박<br>▫ 수감기간 : 8개월 | ▪ 아들 3<br>▪ 현)고2,중2,초3<br>▪ 수감당시)고1, 중1,초2 | ▪ 자녀에게 수감사실 말하지 않고 공단에서 진행하는 가족 프로그램 참여함.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됨<br>▪ 아버지가 유치장에서 둘째 아이한테는 암시적으로 얘기, | ▪ 막내(수감당시 초2)가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궁금해하며 아빠를 찾으며 힘들어함.<br><br>▪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 부재로 생계유지를 위해 어머 |

| | | | |
|---|---|---|---|
| ▫ 3범<br>▫ 수감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공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스스로 알게 됨 | | 수감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음<br>▪ 수감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계속 편지를 썼으나 지금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름<br>▪ 출소후 지나가는 말로 자연스럽게 얘기한 적은 있음(출소자)<br>▪ 수감기간중 어머니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편지에 답장을 못하게 함. 자녀들한테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함(배우자)<br>▪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배우자) | 니가 직장을 다니게 되자 세탁기 돌리고 밥하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알아서 하게 됨. |
| **참여자 4.**<br><br>▫ 사기<br>▫ 3년<br>▫ 재범<br>▫ 수감사실 공개 | ▪ 딸1, 아들 1<br>▪ 현)아들(28) | ▪ 딸 중학생, 아들 6학년 때 집이 잘 살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함<br>▪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 함<br>▪ 아버지 수감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 | ▪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성실하셨던 것을 자녀들이 알고 아버지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하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함<br>▪ 자녀들은 아버지의 수감 이후로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음<br>▪ 아버지가 수감 전부터 가족에게 굉장히 잘했음<br>▪ 아이들 스스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드리고 긍정적으로 수용 |
| **참여자 5.**<br><br>▫ 음주운전<br>▫ 집행유예<br>▫ 재혼 | ▪ 아들 1<br>중학교 2학년 | ▪ 음주운전하고 집에 가있는데 뒷 차가 경찰에 신고. 경찰이 집에 와서 잡혀가는 현장에 아들이 같이 있었음 | ▪ 술 먹고 운전했다고 아빠를 싫어함<br>▪ 고등학교는 자녀가 선택하는데, 엄마, 아빠 힘들게 하기 싫어서 대학은 안가겠 |

| | | | |
|---|---|---|---|
| ▫ 체포장면 목격으로 수감사실에 대해 자녀가 알게 됨 | | | 다고 함 |
| **참여자 6.**<br><br>▫ 폭행<br>▫ 수감기간 : 3개월<br>▫ 자녀의 나이가 어려 수감사실을 공개 하지 않음 | ▪ 딸 1<br>▪ 20개월 미만 | ▪ 애가 어리고 단기간 갔다온 거라 아이에게 굳이 이야기 해주고 싶지 않아함<br>▪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수감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예정(배우자) | ▪ 아이가 어려서 전혀 모름 |
| **참여자 7.**<br><br>▫ 폭행<br>▫ 수감기간 : 10개월<br>▫ 초범<br>▫ 배우자가 아버지 수감 후 큰아이에게 만 알림 | ▪ 딸2 아들 1<br>▪ 현) 중3, 중1, 초3 | ▪ 엄마가 큰애한테만 알림<br>▪ 지금은 알린 걸 후회, 지나고 보니 엄마만 참고 견디면 아이들은 안 아팠을 듯 함. | ▪ 큰애만 알고 둘째, 셋째는 모름<br>▪ 원래 수감전 배를 타던 아버지라 둘째, 셋째 한테는 아버지가 배타러 갔다고 얘기함<br>▪ 큰애에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큰 동요없이 담담하게 잘 받아들인거 같았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매우 힘들어함.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와는 매우 다르게 술마시고 도박하는 아버지를 힘들어 했고, 특히 사춘기가 오면서 학교 성적이 떨어짐 |
| **참여자 8.** | ▪ 딸1, 아들 1 | ▪ 아버지 수감시 아들나이 | ▪ 아버지의 수감이 경제적 |

| | | | |
|---|---|---|---|
| ▫ 사기<br>▫ 3년<br>▫ 재범<br>▫ 수감사실 공개 | ▪ 아들 28세 인터뷰 | 25살이어서 아버지 수감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 | 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었고 독립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줬다고 성인자녀는 생각함.<br>▪ 아버지의 수감 사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지금 함께 살지 못하고 있어서 좀 힘들지만 자신이 좀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성인자녀는 이야기함.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음.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기만을 기다리고 옆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음<br>▪ 중학교 때 자신의 친구 중에 아버지가 감옥에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아버지랑 관계를 단절하고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않음. 그 친구는 성인이 된 지금에도 그 아버지가 계속 연락하며 만나자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서 아예 연락을 하지 않음 |
| **참여자 9.**<br><br>▫ 강도<br>▫ 수감기간 : 3년<br>▫ 첫째에게만 수감사실 공개 | ▪ 딸1, 아들1<br>▪ 현)21세, 11세 | ▪ 큰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내가 알림, 수감시 면회도 오고, 아내가 잘 이야기 함. 아들에게는 어려서 알리지 않음<br>▪ 나중에 어떻게든 다 알게 될 테니까 참여자는 처음부터 탁 터놓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얘기함<br>▪ 지금 수감사실을 감췄다가 나중에 아들이 알고 아들이 사고를 쳤을 때 아버지를 들먹이면 할 이야기가 없으므 | ▪ 딸이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생김<br>▪ 아버지 수감기간 동안 엄마는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br>▪ 아버지의 수감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은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10살 어린 동생을 보살피며 집안 살림을 해야 했는데, 청소년기였음에도 밖으로 나돌지 않고 자신에게 주워진 상황을 잘 이겨냄 |

| | | | |
|---|---|---|---|
| | | 로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 |
| **참여자 10.**<br><br>▫ 마약<br>▫ 수감기간 : 1년2개월<br>▫ 소년원에 다녀온 경험이 있음<br>▫ 자녀에게 알리지 않음 | ▪ 딸 1<br>▪ 현)7살<br>▪ 두 돌 안 되었을 때 수감 | ▪ 매일매일 면회 가서 애기 얼굴을 보여줌<br>▪ 숨길수 만 있다면 숨기고 싶음<br>▪ 그러나 아빠에 대해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알았다면 설명해줄 것임<br>▪ 아빠는 억울한 일을 당한거고 아빠가 많이 노력했었다는 설명을 해줄 것 같음<br>▪ 아빠의 수감사실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면 잘 풀수 있을 것 같음 | ▪ 아버지의 수감사실에 자녀는 모름<br>▪ 나중에 자녀가 커서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좋다면 자녀가 쉽게 수용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엄마는 생각하고 있음 |
| **참여자 11.**<br><br>▫ 사기<br>▫ 수감기간 : 21개월<br>▫ 초범<br>▫ 자녀들에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지금도 자녀들은 모름 | ▪ 아들 3<br>▪ 현) 고1 중1 늦둥이 30개월 | ▪ 아빠의 수감사실을 모름. 수감기간이 짧았던 이유도 있음<br>▪ 빚 갚기 위해 돈을 벌러갔다 온 것으로 설명<br>▪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절약해야한다고 얘기<br>▪ 수감사실 비공개 이유: 큰애 공부할 때 사념이 들어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작은애 사춘기라서 알리지 않음<br>▪ 수감사실 자녀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자녀가 나이가 들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물어보면 공개하는 것도 괜찮음 | ▪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녀들은 전혀 모름<br>▪ 큰아들: 지금 고등학교에서 반장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수감이후 집안 경제 사정이 갑작스레 기울어졌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불편해하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음<br>▪ 둘째아들: 스스로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유급하고 지금은 그 학교에서 훈련받는 것에 대해 행복해함 |
| **참여자 12.** | ▪ 딸 1, 아들 1 | ▪ 수감당시에는 자녀들에게 | ▪ 자녀들이 아빠가 다른지역으로 일하러 갔는데 주말 |

| | | | |
|---|---|---|---|
| ▫ 횡령<br>▫ 수감기간 : 11개월<br>▫ 수감당시에는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출소 후 아빠가 자녀들에게 수감사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함 | ▪ 현)15세, 13세<br>▪ 수감당시) 14세, 12세 | 알리지 않았지만 출소후 아빠가 자녀들에게 수감사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함<br>▪ 아빠의 수감이 자녀들에게 이런 시설에 갔다는거 자체가 충격일 것 같아 알리지 않음.<br>▪ 수감당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다고 엄마가 이야기 함<br>▪ 수감기간 길지 않아 수감하는 동안은 자녀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br>▪ 환경의 변화(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에서 살다가 갑자기 학원도 못 갈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짐)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함<br>▪ 수감 전부터 자녀와 아빠 관계가 좋았음<br>▪ 남성출소자는 형이 3년 이상이면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에 자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함.<br>▪ 그러나 여성배우자는 알린다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잘 모르겠다고 함 | 에도 오지 않아 의심함<br>▪ 큰딸 :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드림<br>▪ 수감 중에 자녀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자녀들과 계속 연결이 되었고 편지를 통해 아빠의 자신감도 보여줄 수 있었음<br>▪ 아이들이 철도 든거 같고 아빠와 편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함<br>▪ 매일통화하고 얼굴보고 밥먹는 시간을 자주 가짐 |
| **참여자 13.**<br><br>▫ 폭행<br>▫ 수감기간 : 2년 좀 넘음<br>▫ 자녀에게 수감사실 알리지 않 | ▪ 딸1<br>▪ 5개월 | ▪ 딸이 커서도 아빠의 수감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의사가 없음<br>▪ 수감당시 면회올 때 조카들도 같이 와서 조카들은 수감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 그런데 조카들이 무심결에 자신의 수감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음. 앞으로 자녀에 | ▪ 출소 후 태어난 자녀에게 그 아이가 성장해서도 아버지 수감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br>▪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림 |

| | | | |
|---|---|---|---|
| 음 | | 게 속인다고 될 것 같지 않다고 남성출소자는 생각함<br>▪ 남성출소자는 만약 자녀가 알게 된다면 수감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함<br>▪ 여성배우자는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 나올 일도 없고 알 수도 없으므로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함 | |

## 다. 요약

이상을 통해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첫째,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의 수감 및 출소경험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출소자들은 수감 중, 그리고 출소 후 가족이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수감 중에는 가족의 면회와 편지가 힘이 되었고, 가족이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출소자 자신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가족과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출소 후에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지내게 되는가 하면 가족 간의 응집력이 오히려 높아지기도 했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나기도 하였다. 출소 후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구직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좋은 가장이 되고자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출소자들은 수감 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남편의 수감으로 남겨진 여성배우자는 주거,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에 혼자 직면하게 되었다. 여성배우자들은 자신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서야 했지만, 전업 주부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고,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 남편의 출소 후에는 가까운 친정 식구들에게도 수감사실을 비밀로 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을 곳이 없어 답답해하고, 남편에 대해 원망과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원하기도 하였다. 또, 여성배우자들은 자녀들이 지원이 부족해 충분히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진로에 대해 자신이 신경 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여성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한 것에는 수감 이전부터 긍정적인 가족 관계의 영향이 컸다. 아이들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족을 유지하는 경우

도 있었지만, 수감된 남편이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수감되었다고 믿었기에 남편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가족이 건강하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역경을 통해 본인이 깨달은 점이 많다는 등 상황에 대한 긍정성이 역경을 견디는 힘이 되었다. 남편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큰 요인이 되었다. 아내들은 남편이 출소 후에는 가장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으며,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과 좀 더 상의를 하고 결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수감 중 술과 담배 등이 불가능하기에 교도소를 '금연클리닉'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여성배우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견딘 원동력에는 시댁, 원가족, 친구 등의 지지가 있었다. 경제적인 도움을 얻거나, 자녀 학습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도 훗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거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교적인 신념 또한 현실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불교에서는 수감상황을 본인의 업보를 인식하고 수용하기도 했다.

둘째, 주거지원 남성출소자 가정 내 수감사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아는 가정에서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린 방식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수감 중 어머니가 알리거나 출소 후 아버지가 직접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공개한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수감사실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저절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례들과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알게 되는 상황도 있었다.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린 이유는 생계 부양을 책임지던 가장의 수감으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짐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자녀가 다커서 아버지의 수감을 수용하리라 보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처하고 접견으로 정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감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알거라 생각해 사실을 자연스럽게 흘린 것, 자녀가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궁금해 했기 때문이었다.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의 반응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났다. 긍정적인 면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수용하고 이해하거나, 자녀가 어려워진 가정 경제를 걱정하고 돕거나,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는 등이 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 오히려 경제적 자립을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등 자녀 스스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느꼈고, 당시에는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가 원치 않게 희생하면서 갈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아버지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하다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처럼 본래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밝힌 후에도 아버지를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 사이 알아서

밥을 하거나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등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방황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자녀들이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하기도 했다. 사춘기 자녀의 경우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성적이 하락했고, 친구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를 비교하거나 방황하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가 희생해야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보였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아버지를 찾으며 힘들어하는 등 그리워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자녀가 어려서 알지 못하거나, 청소년기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알리지 않거나, 큰 애한테만 알리고 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등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원래 배를 타던 아버지라 배를 타러 간다고 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러 갔다고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다고 하는 등 다른 이유를 들어 숨기는 경우가 있었다.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자녀가 어려서 아버지의 부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말할 필요가 없거나, 수감기간이 짧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녀의 상황에 맞춰 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사춘기 자녀가 공부할 때 방해가 되거나 자녀들에게 충격을 줄까봐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수감 사실을 모르는 자녀의 반응은 모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의심하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그리워하는 등 알고 싶어 하는 경우, 스스로 진로를 찾는 등 수감기간동안 스스로 사춘기를 잘 이겨내는 경우가 있었다.

주거지원 남성 출소자 자녀에 대한 수감사실 공개 및 비공개 경험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감사실 공개를 지지하는 이유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 배우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어려워진 가정형편을 이야기하기 위해, 수감사실을 알려 수감 중 접견을 통해 자녀의 정서안정과 함께 아버지의 스트레스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감췄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기 때문에,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 자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 등이 있었다. 비공개를 지지하는 이유에는 자녀가 커서도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성장 후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의견, 수감사실을 안 자녀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 알린 것을 후회했다는 점이 있었고, 자녀가 수감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야기해도 된다는 견해 때문이었다. 이 경우, 주변에 의해 알게 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좋다면 쉽게 수용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위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수감 이전의 가족 관계가 좋을수록 수감 사실에 대해서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보인다. 또한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는 했으나, 갑작스러운 공개는 자녀에게 충격이 될 수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수감 사실 공개가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갔더라도 시간에 따라 자녀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 같은 자녀의 반응이 남성출소자가 사회에 성실하고 건전하게 적응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때문에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수감 사실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버지 수감 사실 공개시 연령 또한 자녀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성인 이후에 사실을 안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사춘기 자녀의 경우, 그 연령대의 민감성으로 인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사춘기의 특성인지 아니면 자녀공개방식의 영향인지는 추후연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수감 사실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기에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수감 사실 공개 여부와는 별도로 자녀와 아버지의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를 통한 제언

### 가.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핵심내용

1) 가족희망센터에 대한 심층면접 핵심내용

| | 심층면접 내용 | 핵심내용 |
|---|---|---|
| 남성출소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요소 | 사실 저도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술 먹으면 어디 가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고 기분 좋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싸움이 되는 거죠. 집사람이 용납을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수감된 8-9개월 동안 어차피 거기서 못 먹었으니까 안 먹었단 말예도. 분명히 나와서도 안 먹겠다고 얘기했고, 근데 어느 순간 또 먹고 있어. (참여자 3) | 남성출소자들은 술로 인해 가족과 갈등이 계속됨 |
| | 제가 머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해가지구서 내가 이렇게 조금.. 그게 참 내 자신을 알거든요. 근데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되요.(참여자 1)<br>저번에 한번 좀 그 자기조절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저는 좀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무슨일이 있어도 차분한테 그면에서 조금 상담을 받아서 좀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애봐서라도.. (참여자 1의 아내) | 분노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 |
| | 심리적인 거니까 그래서 자꾸 같은 꿈을 일주일에 한번씩 꿔요. 그래서 잠자리 위치가 안 좋나 해서 바꿔 봐도 그대로예요. 근데 심리적인 압박감을 너무 받아버리니까(참여자 1)<br>수감자들도 마찬가지 인거 같아요 나오면은 내가 이제 안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 계획적인 것을 엄청 포부도 갖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나왔지만은 현실하고 부딪치다보니 쉽지 않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그 현실에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려고 함에 있어서 너무 장애가 많으니깐 (참여자 12)<br>방에서 생활을 못해요. 잠을 못자요. 네. 그래서 후유증이 있어요. 우리가 거실에서 자요. 답답하대요. 그 후유증 (참여자 7의 아내) | 출소 후 수감생활로 인한 후유증(매주 같은 꿈을 꿈, 답답해서 방에서 생활을 못함, 현실적응에 장애가 많음)으로 괴로워함 |
| | 지금도 미안하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죠. 딸들 시집가는데 누구는 사,오천만원씩이라도 뭐 해줘서 보내고 그러는데 지들 능력대로 다 가고 그런 게 미안해요. 우리 아들도 대학 못가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방위 산업체 가서 군대 문제도 3년 돈 벌면서 해결하고 야간대 들어가서 '아빠 기다리세요. 대기업 들어갑니다.' 나는 아들한테 미안한데...(참여자 2) |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 |
| |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한 달이 넘었는데 현실하고 부딪치다 보니깐 가끔씩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안에 있을 때 그 마음가짐을 잡기 위해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취미라기보다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다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법무공단에서 해주는 시스템이 그런 치유프로그램도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참여자 12) | 출소 후 좌절할 때 마다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공단에 있었으면 좋겠음 |

| | | |
|---|---|---|
| | 굉장히 맘이 많이 편안해지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저 개인적으로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용기가 됐죠(참여자3) | 출소 후 공단에서의 심리 상담을 통해 치유되고 용기가 생김. |
| | 저에게 자주 올수 없었고 편지를 못하는 것이 미운마음도 있었지만 힘들고 시간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걸 못하고 못온 거 라고 하지만 아이들 잘 돌봐주고 도망가지 않고 쉽게 말해서 어쨌든 기다려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3) | 수감기간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 |
| | 그래서 나올 때쯤에는 많이 미안하고 아이들 돌봐주고 어쨌든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참여자 3) | 수감기간동안 힘들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 |
| **아내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요소** |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흉볼까봐. (참여자 1의 아내)<br>글쎄요 이렇게 마음 쪽으로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 걸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이라도 하고 그러면 나름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참여자 4의 아내)<br>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시해주고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하는 것도 좋은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2의 아내) | 남편의 수감생활 중 아내가 자신의 어려움을 어딘가에 호소할 창구가 필요함 |
| | 그냥 애 아빠가 이제 40되고 교도소 한번 갔다 오고 그래도 마음은 착한데 일도 열심히 하고 저는 장점을 좀 더 많이 보고 단점은 천천히 고칠 수 없을까,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악질이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참여자 1의 아내) | 아내는 출소 후 남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 측은지심을 느낌 |
| |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막막하니까. 진짜 애라도 데리고 그냥 갈까 그럼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게. 저도 막 안 알아본 건 아닌데, 수감이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합의 이혼이 아니고 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만 보내면 바로. 도망가고 싶지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니까. 근데 애가 있으면. 그렇게 했다가도 애를 보면 또 마음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참여자 6의 아내) | 남편의 수감기간동안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자녀를 보며 버텨냄 |
| | 그때 저는 남편에 대한 것도 많이 깨달았어요. 여인에게서 남편은 혼이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남편이 배 탈 때도 3-4개월씩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 없어서 힘들거나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정말 이 일이 딱 있고 난 뒤부터 사람이 손도 까닥할 수 없고요. 살림이 안 살아졌어요. 돌아가는 정도에 한 3-4일 정도는 애들 밥도 못해줬어요.<br>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이해도 안 가고, 남 보기도 부끄럽고, 너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어어서 솔직히 창피스럽고 밉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별에 별 마음이 다 들었어요.(참여자 7 아내) |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스러움 |

| | | |
|---|---|---|
| | 남편의 기질이나 그런데 난폭하고 그래서...요즘은 가정폭력으로 법률 상담 그런 것도 같이 가잖아요. 언어폭력도 하나의 그런 것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전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자도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상담도 하고 남편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고칠 수 있는 건고치고 한 사람은 너무 지배적이고 죽을 때까지 주눅 들어 살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개선할 점은 좀 개선하고...법으로도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무조건 폭력만 당하고 피해만 보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참여자 2의 아내) | 폭력가정에 대한 부부 상담이나 폭력가정의 아내에 대한 법적보호가 필요 |
| **가정 내에서 수감 사실을 다루는 방법** | 할 필요가 있어요. 창피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가 좀 자기 맘대로 할 때, 사고 칠 때, 이제 그럴 때는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의 아내)<br>왜냐하면 그런 걸 해야지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커서 가정을 이뤘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은 아빠를 닮아 간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보이지 않게 아빠를 닮아가거든요. 한번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가르쳐 주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애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의 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면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지만 가족은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에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잖아요.(참여자 3의 아내)<br>특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는 집인데 주로 보면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중간에서 끊어야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고, 1순위가 공부가 아니고, 1순위는 좋은 생각, 좋은 그걸 물려주는 것,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제가 바뀌어야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참여자 7의 아내) | 자녀가 잘못된 아빠의 행동을 닮지 않게 하기 위해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 애들이 말기 못 알아듣고 어릴 때는 초등학생일 때는 외국 가셨다고, 해도 신경 안 쓰고 그러지만, 알죠, 애들이 사춘기 넘고, 성인되면, 오히려 딱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헤쳐 나가야 되냐 얘기하고 그럴수록 대화가 더 필요한 거 같아요. 면회도 교대로 가고, 아버지 얼굴도 보는 게 정서에 안정이 되지 전혀 못 보면 더 스트레스 받죠. 그래도 아버지 얼굴도 애들이 안정을 얻고 보고 갔다 오면 애들이 마음이 편해 하고. (참여자 2의 아내) | 자녀가 어릴 때는 아빠의 부재를 신경 안 쓰지만 사춘기가 넘어가면 아버지가 수감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생각함. |
| | 큰 애만 알고. 아 큰애도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딴에는 잘 받아들인 것처럼, 아유 뭐 죽을죄는 안 지었잖니. 말을 하자면 죄를 지었는데 큰 죄는 큰 죄인데 그래도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강간을 했던 것도 아니고, 술 먹고 그렇게 됐는데, 막 어쩌겠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본인에게는 상처가 많이. 아직도 깔려 있어요. 아빠 싫어, 미워, 이렇게. 안 알릴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바닥으로 내리치는데. (참여자 7의 아내)<br>애들은 민감하잖아요. 모든 게. 그때 애들이 특히 아들은 어른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반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다 알죠. 내막 다 알죠. 저절로 다 알죠.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난폭하고 어쩔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문짝도 발로 걷어차고 애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참여자 2의 아내) | 아빠의 수감사실을 알고 상처받고 반항하는 자녀 |

| | | |
|---|---|---|
| | 아이들 케어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도 때로는 알아야할 부분도 있지만 엄마 마음으로는 아빠의 잘못된 행동들을 말하기 싫은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참여자 3의 아내) | 아빠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말하기 싫은 엄마 |
| | 아빠가 이래 이래 해서 이래 됐다고. 애들이 왜 우리가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식당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때부터 애들한테 저는 다 그대로 얘기를 다 해요.(참여자 4의 아내)<br>근데 아빠가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래이래 잘못 되서 부도가 났다 이런 거부터 애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럼 애들이 그걸 듣고 또 나름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참여자 4의 아내) |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엄마가 공개하자 자녀들은 받아드리고 수용함 |
| **자녀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요소** | 글쎄요, 이렇게 마음 쪽으로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 걸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이라도 하고 그러면 나름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자 4의 아내)<br>아이들도 한번쯤은 심리 상담적으로 그것도 왜냐면 아버지가 거친아버지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화를 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리쪽으로 다뤄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술 치유나, 음악치유로. 그런걸로 아이들의 심리적인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거든요. 기본으로 믿음이 깔려있지만 그 외에 아이들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참여자 3의 아내)<br>아이들하고 대화를 그러면 가족전에 수감전에 그런 가정환경들의 상황을 살펴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하고에 대한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그런 상담 카운슬링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참여자 12) | 자녀들의 다친 마음, 분노조절 등을 다루는 상담이 규칙적으로 필요함 |
| | 아파도 내가 참고 견디는게 지나고 보니까 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는 좀 멍하기 그렇더라고요. 좀 멍하다가 뭔 그런 일이 있냐고. 근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하면서 힘들어 했어요. 친구들이 아빠, 누구 아빠는 이렇는데, 누구 아빠는 이렇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이해를 잘 하는 듯이 보였거든요? 지나고 난 뒤에 오히려 청소년문화의 집 저기서 상담 받고 있거든요? 하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되어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의 아내) | 자녀가 아빠의 수감사실을 알고 힘들어 함 |
| |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난폭하고 어쩔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문짝도 발로 걷어차고 애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학교 청소년 시절에 오토바이 타다가 세 번씩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참여자 2의 아내)<br>사춘기 올 때 아이들이 삐뚤어나갈 때는 아이들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상담을 받고 진로를 코치를 받아야겠다는 느낌을...(참여자 11의 아내)<br>아빠만 보면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고, 전혀 생활비 없이 아버지가 사라졌으니까 스트레스를 안받을 수가 없죠. 그게 반항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엄마한테. 난폭하고 폭력적으로 되고 요즘 젊은 애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참여자 2) | 아빠의 수감기간동안 사춘기 청소년 자녀의 반항 |

| | | |
|---|---|---|
| | 아빠는 왜 우리가 큰 딸은 눈물을 좀 흘렸었어요. 자기는 대학도 못가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직장 다니고 이러는데 아빠는 갑자기 왜 적금 들어놓은 것도 시집도 못가고 아빠가 필요하다면 다 줘버리고 난 잔돈도 없는데 아빠는 왜 구속되고 그러냐고 아빠는 그러냐고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되냐면서 애가 울더라고요.(참여자 2의 아내)<br>어, 그런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심리상담 같은 것도 어린아이이고 사춘기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부모님 막 미워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지난 친구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수감되신 경우 친구가 지금 커보니까 아직까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참여자 8의 자녀) | 수감된 아빠에 대한 자녀의 원망 |
| | 아버지 수강경험, 수감사실을 굳이 좋은 영향으로 말한다면 그걸 가장이란 존재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쭉 있어가지고 소중한 걸 모르고 가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익숙해져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게 없어졌다 다시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될 존재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거 같아요.(참여자 8의 자녀) | 성인 자녀는 아버지 존재의 소중함을 느낌 |
| **자녀 학업 및 진로 지도** | 영어, 수학 같은 거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는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점수를 깍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학원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악기 쪽으로 하나씩 배워놓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속을 털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참여자 3의 아내)<br>두 번째로 하나의 취미를 붙여주는 취미활동 그런 프로그램 해주면 좋죠(참여자 12) | 악기를 배우거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자녀의 속을 털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 | 그래도 저는 애들 교육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애들 공부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요즘 교육이요, 방학은 길고, 휴일 많고, 학교에서 수업은 공교육이 무너진다해도 공교육이 너무 애를 안 써요. 학원에 많이 맡겨 버려요. 그래서 반 이상이 학원 다닌다 그러면 선생도 수업에 그렇게 집중을 안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영어를 놓쳐버렸어요. 계속 영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때부터 학원을 안 보냈더니. (참여자 7 아내)<br>교육이죠. 교육 그냥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가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못가니깐(참여자 12의 아내)<br>제일 중요한건 요즘 다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지만 학원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못 배우다 보니깐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뒤떨어지게 되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생 과외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죠. 그런 부분들이..(참여자 12) | 자녀 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보내지 못하고 있음 |
| | 아이들 진로요. 공무원 해도 되는 건지. 애들 있는 집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면 돼, 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나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숨긴 하도 숨겨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아버지 수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이들 꿈이 좌절되면. (참여자 7의 아내) | 자녀의 진로 방향을 잡을 때 아빠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의 꿈이 좌절 되지는 않을까 걱정함 |

| | | |
|---|---|---|
| | 지난번에 그 애들 학습 지원이 유용하게 잘 썼었어요. 교복이나 교재 지원 한 번 받았었거든요. 고등학생은 25만원, 중학생은 20만원. 큰 아들 책 같은 걸 많이 사가지고. 교재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때. 그런 부분이 한 번씩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아들이 필요한 책을 지가 그 때 필요한 책이 몇 권 몇 권 있어서 그거를 사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도 나름대로 책이 많이 필요했는데 많이 자제하면서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했었나 봐요.(참여자 11의 아내) | 자녀학업지원 중 교복, 교재등을 지원해주는 직접지원이 유용하였음. |
| | 학원을 못 다니잖아요. 학원을 못 다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인터넷 그런 요즘은 인터넷 교육들도 많잖아요. 사교육 관련해서 그런 걸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대학원생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시간적으로 계획 잡아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인터넷 원스톱 서비스 같은 EBS같은거 하잖아요 교재 사가지고 (참여자 12) | 대학원생 학습지도, 인터넷을 통한 지도 등 다양한 학습지원이 필요함. |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심층면접 핵심내용

| | 심층면접 내용 | 핵심내용 |
|---|---|---|
| 주거 지원 |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집도 그렇고, 지금 당장 집이라도 있으면 덜 그럴 건데. 대화도 되고. 내가 먼저 전화로 물어봐야 되고, 이제 뭐 챙기게 되고 전화로 말로 다 챙기게 되고 이러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서로 조금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하면 되는데, 당장은 집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큰 거라. (참여자 4의 아내) | 거주할 곳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 |
| | 내가 나오자마자 일을 알아보고, 애들 도움 안 받고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더 가족이 좋아졌던 건 정부 덕이야. 이 집을 줬기 때문에 애들이 더 좋아진 거지. 만약에 우리가 뭐 사글세를 가서 쪼달리고 그랬으면 애들이 막 그랬을 텐데, 애들이 또 인정을 한 거야, 난 그게 더 고맙지.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열심히 사시려고 했으니까 공단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말을 안 해도 애들이 그걸 알아. 이 집도 3%안에 들어야 해준다 말을 해 줬죠. 그래서 애들이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3% 안에 들어갔다는 자체를 애들이 인정하는 거지. (참여자 2) | 공단의 주거 지원이 자녀에게도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됨 |
| | 법무보호서비스를 보통 수용자들이 나와서 받잖아요. 법무보호 서비스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거기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그 외의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수용자들이 느끼는 게 첫 번째로는 주거겠죠 주거 부분인데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가져와서 판결을 하더라고요 위에서 LH공사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신청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일사천리하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법무보호 공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참여자 12) | 주거지원 심사를 받는 과정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

| | | |
|---|---|---|
| | 아버지는 따로 살고 계시고 엄마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 맨날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자주 안 보게 되는거 같고...일단은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중략) 최우선은 주거가 제일로 중요한거 같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8의 자녀) | 가족이 같이 살 공간으로서 주거지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시작과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함 |
| 남성 출소자 취업/ 창업 지원 | 춘천에서 취업 성공패키지 알아봤는데. 월급이 그나마. 원래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중장비인데 춘천에서 중장비 할 수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서. 배우려면 태백이나 충남이나 무조건 멀리 가야 돼서.. 춘천이 이제 중장비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왜 중장비가 없는지, 교육이(참여자 6) | 내가 속한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한 취업성공패키지가 제공되었으면 함 |
| | 그러면 여자들도 분명히 실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 성격테스트란 거죠.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직업을(참여자 3)<br>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아요. 왜냐면 건축 쪽으로는 제가 자격증이 건축기사도 있고요 건축학대회 우리나라 전국대회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벽돌 쌓는 거로는 금메달도 받았고 그리고 기능장까지 있거든요 근데도 조인해보는 게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저한테 소개해주는 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력을 인정받든 못 받든 그건 두 번째 문제지만 맞춰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쉽게 일을 쓰던 용어들 듣던 말들이니까 고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어요. (참여자 13) | 자신의 성향, 능력, 경력,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맞는 취업 연결이 되지 않아 어려움 |
| | 못 물어보고 나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알았을 때 그때가 좀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좀 그랬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막막한 게 많았죠. 경력이 없다보니까 건축에서 일을 했어도 훈련 기간이잖아요 교도소에서 그런 거 해주잖아요. 자격증 그런 거 그러면 그 기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격응시등록을 주잖아요. 자격을 그러다보면 그 건축종사분야에서 7년을 일을 해야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그런 자격증도 따고 이것도 저것도 해서 다 땄는데 제가 막상 제가 사회에 나가서 그 경력을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제가 업체에다가 어디서 땄나 그러면? 공공 넘버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받은 건데 그 경력을 들이대면서 하면은 그건 100프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이는 먹었지 자격은 있는데 그동안 뭐 했냐 그러면 대꾸도 못하잖아요.(대상자 13) | 수감 기간 동안 획득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수감사실을 밝혀야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실제로는 인정받기 어려움 |
| | 내가 전번에 한 방에 있던 사람이 우연히 내 택시를 타가지고 당신 뭐하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 사람은 좀 그래. 그래서 무조건 내가 법무 공단에 데리고 갔죠. 지금은 내가 나왔을 때보다 공단 일이 더 어렵더라구. 말하자면 그 사람을 무슨 운전을 배우게 하려고 해도 그것도 어렵대.(참여자 2) | 예전보다 공단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느낌 |
| | 어쨌든 새로운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서 경제적일 책임을 져야 와이프가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찾고는 있지만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책임감 있게 안정을 주면 와이프들에게도 신뢰를 얻으면서 어느 정도 위기가 극복되고 돈독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참여자 3) | 취업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줌 |

| | | |
|---|---|---|
| **아내 취업 지원** | 저는 일자리 같은 경우도 도움을 주었으면...아내도 같이 자격증 그런 쪽도 괜찮고 교육이 있었으면..(참여자 12의 아내)<br>아주 잘 사는 집이 아닌 다음에는, 아빠가 가장이 이제 수감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다 자명하잖아요. 경제적인 그런 거 때문에 엄마들이 더 힘들어 할 거예요. 당장, 일단은 생활경제적인게 다니까. 일이라도 하고 뭐라도 배워서 해야겠다. 싶어서 일했는데. 기술을 배운다든가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거나, 그런 후원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저는 음식, 요리를 배워서 일하러 다녔어요. (참여자 4의 아내) | 취업성공패키지나 기술교육이 출소자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제공되는 것이 필요 |
| |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그거뿐이에요 나중에 학원까지 가려고하면 내가 현재 아이를 봐줄 수 있으면 더 좀 벌이를 할 텐데 지금 봐주실 분들이 몸들도 다 불편해가지고 제가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못 버니까 지금 신랑 혼자서 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빠듯해요 그래서 지원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하나하나 다 모든 걸 애를 봐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아기 육아도우미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 무조건 돈을 줘야 사람을 부를 수 있잖아요.(출소자 13의 아내) | 어린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기 어려움 |
| **경제적 지원** | 집도 다 넘어가고 심지어 살림살이에 까지 다 빨간딱지가 붙을 정도였으니깐 전혀 아무것도 없었죠. 통장에 돈이랑 이런 것도 아예 없었고요. 공과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비나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생활비가...(참여자 12의 아내)<br>예를 들면 뭐 학비라든지 그리고 아직 얘네 들 분유 값이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도 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3)<br>금전적 인거 아니면. 솔직히 힘든 건 없거든요. 다 금전적인 거니까. 모든 부분이(대상자 6) | 생활비, 공과금, 분유값 등에 많은 돈이 쓰임 |
| **자녀 학비 지원** | 애들이 있다면 학교로 들어가는 학비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금전적 생활비가 가장 큰 문제죠.(참여자 11의 아내) | 자녀 학비로 인해 생활비 어려움을 겪음 |
| | 큰애는 대학생 멘토 학생 붙여줄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알아만 보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인터넷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그걸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놓쳐버렸어요. 그때.. (참여자 3의 아내) | 인터넷, 컴퓨터등이 없어 학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
| **공단 지원 프로그램 홍보** | 출소자들을 위한 정보가 홈페이지...네이버에서 찾다찾다 들어갔어요...출소자들한테 팜플렛이나 그런 거라도 하나씩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있지 않아요?) 그게 민원실 자체에는 있는데 그걸 누가 들어가서 보겠냐구요. 공단 분들이 알려줄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참여자 6) | 공단의 홍보 팸플릿이 한정된 장소에서만 제공되어 정보를 알지 못함 |

| | | |
|---|---|---|
| **공단 지원 확대** | 백내장이 와 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비비는 거에요. 수술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있어야. 의료지원이 있나? 모르겠는데. 의료보험료를 밀려서 못 내니까. 지금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뭐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수술을 하든지. (참여자 5) | 수술비용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함 |
| | 긴급구호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안내를 받으려 했더니 가족이 있어서 안 된다. 독신인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참 애매한 거.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한 건데. 그게 원래 3개월인가 그것도 해당이 되거든요.(참여자 11) | 가족이 있어 긴급구호자금을 받지 못함 |
| **종교 활동** | 그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아내들을 상대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안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분으로 인해서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가정들이 갈라서지 않을까. (참여자 3의 아내)<br>절에도 가고. 일을 조금 배우고 그랬어요.(참여자 4의 아내) | 종교 활동을 통해 가정을 유지시키고 일도 배우는 아내들 |

3) 법무부에 대한 심층면접 핵심내용

| | 심층면접 내용 | 핵심내용 |
|---|---|---|
| **가족 접견** | 그 때는 매번 짧았던 거 같아요. 짧고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도 하나 있으면 정말 손이라도 좀 만져주게 이렇게 저 저런 거 있잖아요. 지켜보시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한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이 벽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참여자 10의 아내)<br>면회 갔고, 가도 한 5분, 10분밖에 못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화상 면회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화상 면회만 하고 저는 안 갔어요.(참여자 7의 아내) | 접견 시간이 짧고 벽 너머에 있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 |
| **수감중 가족 복지 지원** | 어떻게 보면 제가 출소 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듯이 법무법인 안에서 생활에 그런 환경들이 저거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출소 후 보다는 출소 전에 그런 보건복지부 같은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남아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수감 중에는 지금 법무보호서비스가 전무하잖아요. 지금(참여자 12) | 수감 중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공단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함 |
| **수감중 복지 지원 홍보** | 수감자만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참여자 11)<br>신랑이 수감이 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콜 하는 것도 신랑이 안에서 듣고 알려줘서 콜 해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참여자 11의 아내) | 남성출소자 수감 중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복지서비스(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등)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음 |

| | | |
|---|---|---|
| **수감중 경제적 지원** | 그런데 대부분 아주 잘 사는 집이 아닌 다음에는 아빠가 가장이 이제 수감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다 자명하잖아요. 경제적인 그런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더 힘들어할 거에요. (참여자 4의 아내)<br>솔직히 있을 때 더 필요했죠. 들어갔을 때가. 그 때 공과금이라도 해결을 해준다거나 이렇게만 되도 훨 숨 쉬기가 안 나았겠어요? 전기 끊긴 적도 있었고요. 가스는 아예 연결도 안된 집이어서. 프로판가스 이만한 걸 용기를 가지고 매달 한 달에 두, 세 번씩 충전을 해와서 썼어요. 일회용 가스 있잖아요. 그런거 쓰고.(참여자 7의 아내) | 수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함 |

## 나. 남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에 따른 제언

1) 가족희망센터에 대한 제언

**▮ 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보완**

| | |
|---|---|
| **남성 출소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 ▸남성출소자는 술로 인해 가족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술, 도박 등 중독과 관련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br>▸분노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므로 심리 상담에서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br>▸출소 후 수감생활로 인한 후유증(매주 같은 꿈을 꿈, 답답해서 방에서 생활을 못함, 현실적응에 장애가 많음)을 호소하는 출소자에게 그 괴로움에 대해 다뤄줄 필요가 있다.<br>▸수감으로 인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미안해하는 출소자의 마음을 심리 상담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br>▸출소 후에 사회복귀 과정에서 좌절할 때마다 재범하지 않도록 위기를 다뤄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br>▸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다루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br>▸자신의 수감으로 인해 힘들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다뤄줄 필요가 있다.<br>▸출소 후 공단에서의 상담을 통해 치유되고 용기가 생겼다고 보고하는 남성출소자에 대한 상담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
| **배우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 ▸아내가 남편의 수감으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필요하다.<br>▸범죄로 인해 수감된 남편이지만 출소 후 남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남편에 대해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아내의 심정을 다뤄줄 필요가 있다.<br>▸남편의 수감기간동안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보며 버틴 아내를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br>▸남편의 수감으로 인해 아내는 충격과 혼란스러움을 겪는데 상담 시, 이를 다뤄줄 필요가 있다. |

| | |
|---|---|
| | ▸ 아내의 입장에서 폭력가정에 대한 부부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으므로 심리 상담에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br>▸ 자녀가 잘못된 아빠의 행동을 닮지 않게 하기 위해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상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br>▸ 자녀가 어릴 때는 아빠의 부재를 신경 안 쓰지만 사춘기가 넘어가면 수감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알릴 수 있도록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아빠의 수감사실을 엄마가 공개했을 때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배우자가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 **자녀 심리상담 프로그램** | ▸ 수감으로 인해 다친 자녀들의 마음과 분노조절 등을 다루는 상담이 규칙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br>▸ 아빠의 수감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는 자녀의 상처와 반항을 상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br>▸ 수감된 아빠에 대한 자녀의 원망을 상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다. |

**▌ 자녀 학업 및 진로지도 지원**

- ▸ 악기를 배우거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자녀의 속을 털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자녀 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보내지 못하고 있어 자녀학습과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 ▸ 자녀의 진로 방향을 잡을 때 아빠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의 꿈이 좌절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므로 이를 다뤄주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 ▸ 자녀학업지원 중 교복, 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는 직접지원이 유용하였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대학(원)생 학습지도, 인터넷을 통한 학습지도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제언

**▌ 주거지원**

- ▸ 남성출소자들이 출소직후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지원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은 남성출소자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가족이 같이 살 공간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시작과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주거지원 심사 선정 과정진행시 LH공사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 처리되기를 원한다.

## ▌취업지원

- 출소 후 남성출소자에게 취업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족 복귀의 핵심 요소임이 심층면접에서도 드러났다.
- 출소 후 남성출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한 취업성공패키지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필요한 구인 및 취업 요건에 맞는 지부별 취업교육이 필요하다.
- 남성출소자 개개인의 성향, 능력, 경력,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맞는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취업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 수감기간 동안 취득한 자격증이나 경력의 경우, 수감사실을 밝혀야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실제 출소 후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다.
- 남성출소자가 지닌 특성과 경력 등을 파악하여 공단에서 취업을 연계시켜줄 필요가 있다.
- 출소 후 가정 경제의 안정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나 기술교육 등 취업교육이 출소자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제공,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어린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기 어려움으로 아내의 취업 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나 육아도우미와 같은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 ▌공단 경제적 지원 확대

- 남성출소자와 아내는 어린 자녀의 분유비,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보조와 같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 의료보험료가 밀려 의료혜택을 못 받는 남성출소자와 가족들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긴급구호자금 지급 시 가족이 있는 출소자는 해당되지 않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자녀 학업의 기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공단지원 홍보 / 종교 활동

- 공단 홈페이지, 지원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안내를 수감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남성출소자를 기다렸던 아내에게 종교는 아내 자신과 가정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3) 법무부에 대한 제언

**▮ 수감 중 가족지원**

- 가장이자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남은 가족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의 불안정 이였다. 따라서 수감 중 가족의 주거문제에 고려가 필요하다.
- 의료보험 지원을 출소 후가 아니라 수감 중에 가능하게 하여 남아있는 가족이 의료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감 중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혜택(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등)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수감 중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남겨진 가족들의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 남편의 수감기간동안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 수감시 가족접견의 시간이 너무 짧고 손도 잡지 못하는 아쉬움, 벽 너머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에 대해 남성출소자의 아내들이 호소하였다.

### 다. 남성출소자 수감사실 자녀 공개 여부에 대한 제언

남성출소자는 본인의 수감에 대해 자녀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의 빈자리는 쉽게 감추어 질수 없으며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된다. 13가정 중에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린 가정은 8가정이며, 이 중 7가정은 남성출소자의 아내가 아버지 수감기간 동안 자녀에게 수감 사실을 알렸으며 1가정은 남성출소자 스스로 짧은 수감기간(10개월)으로 출소 후 본인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렸다.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는 가정은 모두 5가정인데,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 수감 중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라 굳이 아버지의 수감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자녀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 취업이 되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심층면접 결과 남성출소자들에게 자녀의 수감사실 공개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다. 또한 남편이 수감된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며 계속해서 지켜본 아내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본받지는 않을지, 범죄가 대물림 되지는 않을지, 수감사실로 인해 자녀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등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남성출소자 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 수감사실 자녀 공개 | 수감사실 자녀 비공개 |
|---|---|
| ▶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공개<br>-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 ▶ 자녀가 초등학생 일 경우와 청소년일 경우에는 알리지 않음<br>- 특히 사춘기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정서적인 민감성 때문에 아버지 수감사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어서 알리지 않음 |
| ▶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수감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림<br>- 아버지 스스로 알린 경우는 비교적 짧은 기간(10개월)의 수감 뒤 출소 후에 자녀들에게 본인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며 알림 | ▶ 길지 않은 수감기간(1년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다른 이유를 대며 알리지 않음<br>- 외국거주, 타지역 취업 등의 이유로 수감사실 알리지 않음 |
| ▶ 자녀가 직접 아버지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여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음 | |

◆ 수감사실 공개 방식에 대한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의 경험 ◆

가족희망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시 아버지 수감사실에 대한 자녀 공개 여부는 남성출소자 각 가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자녀가 나이가 어릴 경우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으며, 성인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2) 아내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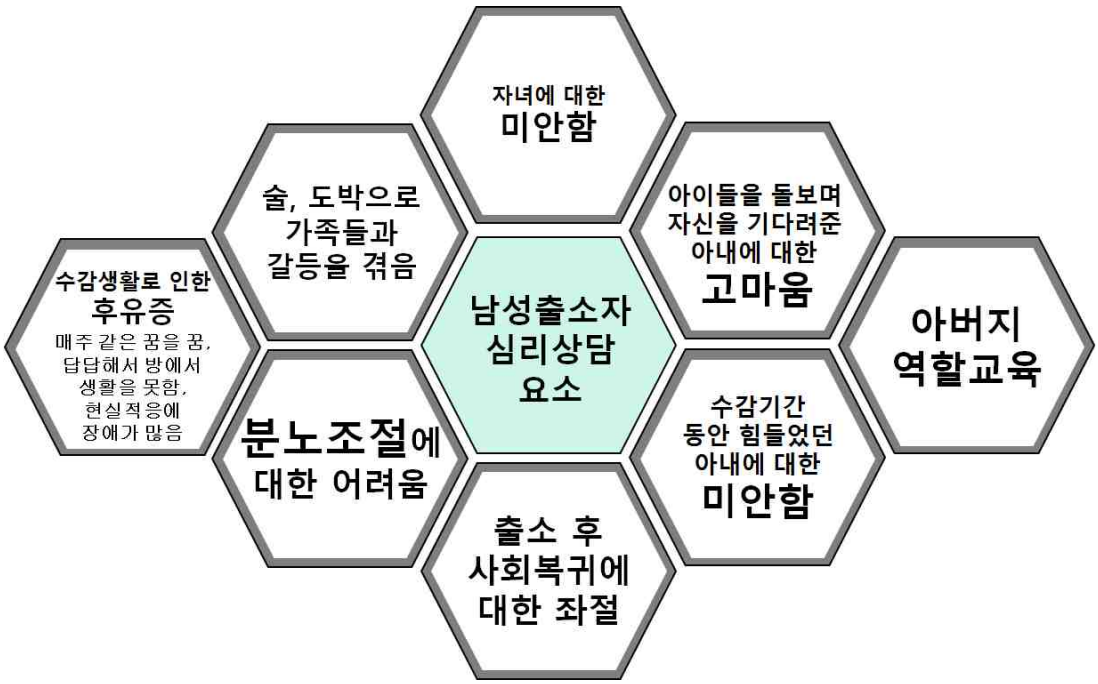
3)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고 상처받고 반항하는 자녀도 있었으며, 의연한척 하지만 마음이 다친 자녀들도 많아서, 아내들은 자녀에게 상담이 제공되기를 바랐다.

4) 자녀가 수감사실을 알더라도, 자녀가 수월하게 현실을 수용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자립적으로 대처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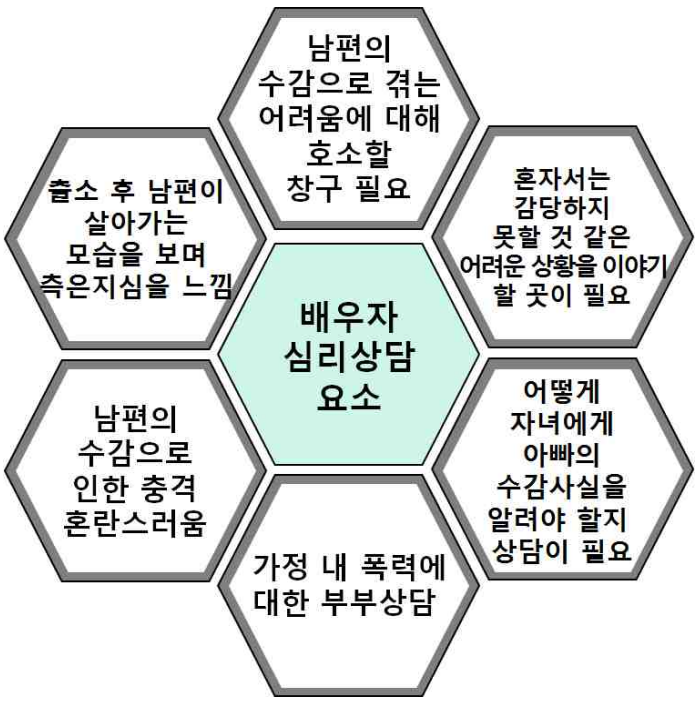
5) 수감 전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자녀들은 수감기간동안 아버지의 부재를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며, 아버지가 출소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빨랐다. 반면 수감 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자녀들이나, 아버지와 지속적인 문제를 보였던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수감 중인 동안 반항이나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으며 출소 후에 아버지와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라. 남성출소자와 배우자, 자녀를 위한 심리상담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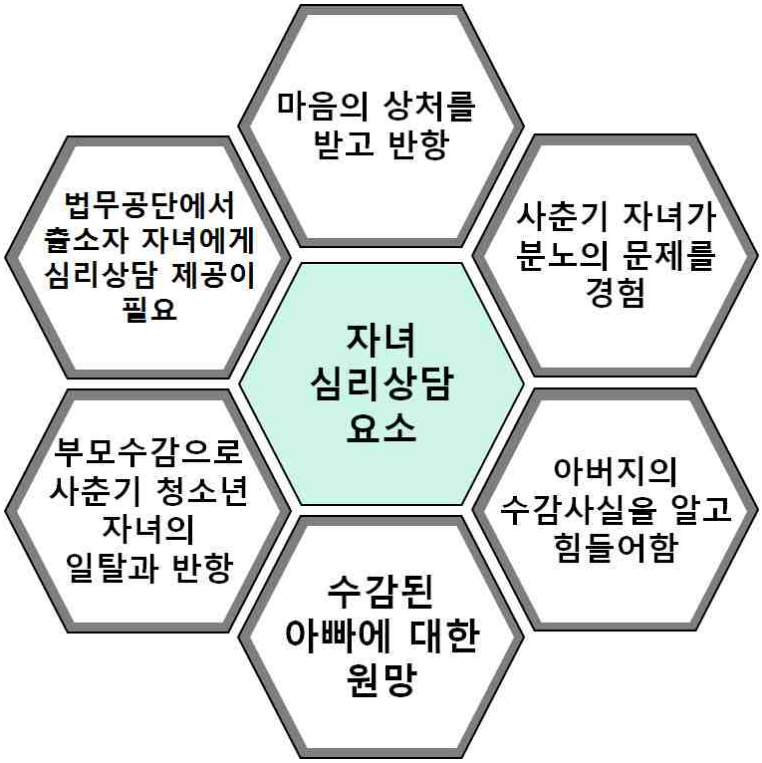
남성출소자 심리상담 요소




배우자 심리상담 요소



자녀 심리상담 구성요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반항
법무공단에서 출소자 자녀에게 심리상담 제공이 필요
사춘기 자녀가 분노의 문제를 경험
자녀 심리상담 요소
부모수감으로 사춘기 청소년 자녀의 일탈과 반항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고 힘들어함
수감된 아빠에 대한 원망

# Ⅳ.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 결과

## 1.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

### 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을 사용하였다(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 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질적 연구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를 결정하고자 하는 양적연구와 달리 연구 대상이 자신의 내적 세계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며, 어떻게 행위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탐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간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주요한 패턴을 심층적이고 구체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내적 경험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을 자연 언어로 생생하고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게 해 준다(Eisner, 1991; Miles & Huberman, 1994; Polkinghorne, 1994). 특히 CQR은 연구자들 간의 논의와 동의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경험 내용을 범주화하고 경험의 과정들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들의 수감 및 출소 경험, 그리고 여성출소자들이 자녀에게 수감 사실을 공개 또는 비공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개인의 내적 경험과 태도 및 신념을 깊이 있게 다루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검토, 수정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CQR의 연구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복적인 검증, 합의에 의한 결과 도출의 엄격성 및 명시적 해석은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의 수감 및 출소 경험에 대한 분석 및 자녀에 대한 수감 사실 공개 및 비공개 경험에 대한 탐색을 통해 여성 출소자에게 있어 필요한 개입 및 지원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CQR의 진행 과정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CQR 과정

| 과정 | 내용 |
|---|---|
| 시작단계 | 1. 주제 선정 및 문헌 연구<br>2. 합의팀 선정<br>3. 면접 초안 작성 및 예비 연구 실시<br>4. 연구대상 선정 기준 수립 |

| | |
|---|---|
| | 5. 연구대상 모집 및 선정<br>6. 면접 실시 및 전사 |
| 사례 내 분석 | 1. 영역 개발<br>2. 사례별 핵심 개념 도출<br>3. 영역 및 핵심 개념 감수<br>4. 감수 결과를 기초로 영역과 핵심 개념 수정 |
| 교차 분석 | 1. 모든 사례에 대한 교차분석 실행 및 영역 내 범주 개발<br>2. 교차분석 감수<br>3. 감수 결과를 기초로 교차 분석 수정 |
| 글쓰기 | 1. 연구 결과 기술<br>2. 결과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기초로 수정<br>3. 명확하고 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반복적인 수정 작업 실시 |

*출처 : Hill, C. E.(2011).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1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사기, 업무상배임, 살인미수, 존속 살인 등으로 수감된 경험이 있는 여성 출소자 10명이다. 수감 기간은 4개월에서 5년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연령은 30대에서 5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수감 이력은 초범, 재범, 집행유예 등이었으며, 평균 수감 기간은 13.8개월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사례 | 지역 | 연령 | 수감 이유 | 수감 기간 | 직업 | | 가족 관계 | 결혼 기간 | 배우자 | |
|---|---|---|---|---|---|---|---|---|---|---|
| | | | | | 수감전 | 수감후 | | | 연령 | 직업 |
| 1 | 경기 | 31 | 폭행 | 집행유예 | 피부관리실 운영 | 주부 | 배우자<br>아들(9)<br>아들(8) | 10 | 31 | 직업군인 |
| 2 | 경기 | 49 | 사기 | 8개월 (재범) | 여행사 | 무직 | 딸(19)<br>아들(10) | 이혼 | | |

| | | | | | | | | | | |
|---|---|---|---|---|---|---|---|---|---|---|
| 3 | 인천 | 43 | 사기 | 8 개월 (초범) | 주부 | 주부 | 배우자<br>딸(17)<br>딸(14) | 18년 | 46 | 일용직 근로자 |
| 4 | 서울 | 51 | 사기 | 10 개월 (초범) | 인테리어 사업 | 옷가게 운영 | 배우자<br>딸(25)<br>아들(18) | 27년 | 50 | 조경 사업 |
| 5 | 서울 | 54 | 업무상 배임 | 21 개월 (초범) | 주부 | 연기 학원 운영 | 배우자<br>딸(31)<br>딸(29)<br>아들(18) | · | 60 | 제화 디자인 |
| 6 | 경기 | 44 | 사기 | 3년 (초범) | 주부 (주식) |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수강 (여성지원센터) | 딸(15)<br>딸(13)<br>아들(11) | 12년 | 44 | 연구원 |
| | | | | | | | | | 이혼 | |
| 7 | 서울 | 38 | 사기 | 8 개월 (초범) | 보험 영업 | 바리스타 제과제빵 교육수강 (여성지원센터) | 아들(13)<br>아들(11) | 8년 | · | 안경점 운영 |
| | | | | | | | | | 이혼 | |
| 8 | 경기 | 40 | 살인미수 | 4 개월 (초범) | 남편과 인터넷 쇼핑몰 운영 | 피부관리 사자격증 준비 (YMCA) | 배우자<br>딸(11)<br>딸(10) | 11 | 36 | 택시 기사 |
| 9 | 경기 | 47 | 존속살인 | 5년 (초범) | 막일 (아파트 청소등) | 요양 보호사 | 배우자<br>딸(22) | 8 개월 | 57 | 사우나 관리 |
| | | | | | | | | | 재혼 | |
| 10 | 인천 | 48 | 사기 | 6 개월 (초범) | 미용업 | 취업 준비 | 배우자<br>딸(23)<br>아들(22) | 24년 | 56 | 부동산 |

2) 분석팀

본 연구에서는 영역 코딩과 핵심개념 코딩 및 교차분석의 모든 과정에 총 3명의 합의팀이 참여하였고, CQR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으로부터 영역의 핵심 개념들이 적절하게 범주화되었는지에 대해 감수를 받았다.

3) 면접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개발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반구조화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는 면접 시 유도심문, 심층적 질문, 어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상담자의 진행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접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김영천, 2006). 면접은 교육학과 상담 전공 교수가 주 질문자로써 진행하였고 상담심리학 박사수료자, 교육학 박사 과정자, 심리학 박사 과정자가 보조 질문자로 참여하였다. 면담 시작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자료의 활용과 범위, 녹음, 비밀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분석 과정 중 부정확한 정보가 있거나 보충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면접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하였다. 면접은 개인별 1회 실시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최소 50분에서 최대 100분이 소요되었다. 면접에 사용된 질문지의 전체 내용은 <표 3.15>과 같다.

<표 3.15> 면접용 질문지 내용

| 1)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공개한 가정 | |
|---|---|
| **키워드** | **질문내용** |
| 질문 전<br>확인사항 | - 결혼기간, 수감횟수, 수감이유 등에 대해 확인<br>- 자녀 인원, 성별, 나이 확인(특히 장남, 장녀) |
| 도입 | ① 수감기간동안 가정생활은 어떠셨어요?<br>② 수감 전, 후 부부간의 관계 변화 |
| 수감 공개 관련 | ③ 자녀가 누구, 어떠한 상황을 통해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br>④ 자녀가 수감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br>⑤ 자녀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br>⑥ 수감사실이 자녀의 학교적응이나 관계 등 정서행동/대응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br>⑦ 지금 현재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수감전후로 자녀와의 관계변화)<br>⑧ 수감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후회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br>⑨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br>⑩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나요?<br>⑪ 비슷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br>배우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
| **2)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비공개한 가정** | |
| **키워드** | **질문내용** |
| 질문 전<br>확인사항 | - 결혼기간, 수감횟수, 수감이유 등에 대해 확인<br>- 자녀 인원, 성별, 나이 확인(특히 장남, 장녀) |

| | |
|---|---|
| 도입 | ① 수감기간동안 가정생활은 어떠셨어요?<br>② 수감 전, 후 부부간의 관계 변화 |
| 수감 공개 관련 | ③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br>④ 아버지(어머니)의 부재에 어떻게 설명하셨나요?<br>⑤ 지금 현재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br>⑥ 수감 전후로 자녀와의 관계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br>⑦ 수감사실 비공개를 후회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br>⑧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4) 영역부호화

영역 부호화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유사한 주제에 관한 정보자료군인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이승은, 정남운, 2003; 송미경 외, 2008 재인용). 합의팀은 우선 각자 1개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역을 구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합의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영역을 결정하였다. 나머지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각자 영역을 구성한 후 전원이 모여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9개의 전체 사례에 해당하는 9개 영역을 최종 결정하였다.

5) 핵심개념 구성

핵심개념 구성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중 핵심이 되는 몇 개의 단어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독립적으로 핵심개념을 구성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Hill et al., 2005).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 연구자가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영역별로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연구자 전원이 모여 핵심개념의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하여 합의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원자료를 참고하여 재토의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료의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이나 해석, 편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연구대상의 관점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례의 전체 맥락과 영역의 초점을 고려하여 핵심 개념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영역과 핵심개념 감수

총 9사례에 대한 영역과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

는 축어록과 합의팀의 영역 및 각 사례별 핵심개념 구성에 관한 합의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함으로써 원자료가 적절한 영역으로 들어갔는지, 영역의 중요한 내용이 누락 없이 발췌되어 요약되었는지, 핵심 개념이 명확하며 원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에 연구팀은 감수 결과에 따라 영역과 핵심개념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연구자들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7) 교차분석

교차분석은 모든 사례에 대한 영역 및 핵심개념이 구성되고 난 후 사례 간 유사성 또는 패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각 영역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범주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에 연구자들은 사례별로 각 영역에서 나타난 핵심 개념들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각 사례들의 핵심 개념을 가장 적절한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원자료의 의미에 가장 적합한 범주로 분류한 후, 핵심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범주명을 결정하였다.

8) 교차분석 감수

교차분석 자료에 대해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각 영역의 핵심 개념들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핵심개념들이 특정 범주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범주화되었는지, 범주명이 모든 핵심개념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는지, 범주들을 더 나누거나 통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합의팀은 감수 결과를 검토한 후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분석 결과를 수정 · 보완 하였다.

## 나. 연구결과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탐색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의 수감 및 출소 경험'과 '주거지원 여성출소자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수감 사실 공개 및 비공개 경험'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의 수감 및 출소 경험'은 5개 영역과 16개 범주, 주거지원 여성출소자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수감 사실 공개 및 비공개 경험'은 9개 영역과 29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Hill 등(1997)의 제안에 따라 표본의 전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범주마다 9개의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경우는 '일반적(general)', 5~8사례에 적용되는 경우는 '전형적(typical)', 2~4사례에 적용되는 경우는 '변동적(variant)'으로 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각 영역에 대한 범주와 이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 또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각각 <표 3.16>, <표 3.17>과 같다.

<표 3.16> 여성출소자의 수감 및 출소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 영역과 범주 | 응답빈도 |
|---|---|
| **여성으로서 수감생활 경험** | |
| *** 예상치 못한 수감** | **일반적(n=9)** |
| 처음 저지른 범죄로 겪게 된 갑작스러운 수감 | 참여자1,3,4,5,6,7,8,9, |
|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 저지른 생계형 범죄 | 참여자 2,3,4,5,6,7 |
| 충동적으로 저지른 강력범죄 | 참여자 1,8,9 |
| *** 낯설지만 그 곳 역시 사람 사는 곳** | **전형적(n=8)** |
| 맞닥뜨린 수감생활에 대한 두려움 | 참여자 1,4,5,7,8,9 |
| 같은 여자로서 이해되고 안쓰러운 동료수감자들 | 참여자 2,3,7, |
| 이질감이 느껴지는 동료수감자 | 참여자 4,5,8 |
| 그리운 자녀지만 수감복 입은 모습은 보여주기 싫음 | 참여자 2,3,4,5 |
| 감옥 내 재교육의 기회 | 참여자 2,5 |
| *** 수감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의 빛** | **일반적(n=9)** |
| 가족은 절망 속 희망의 불씨 | 참여자 1,2,3,4,6,7,8 |
| 나를 지탱해 준 종교의 힘 | 참여자 2,4,7,9 |
|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타고난 성격 | 참여자 2,4,5,7,8 |
| *** 수감생활이 남긴 것** | **일반적(n=9)** |
|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교훈을 얻음 | 참여자 1,4,5,6,7,8,9 |
|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 | 참여자 1,2,3,5 |
| 나와 가족에게 새겨진 낙인 | 참여자 1,2,3,6,7 |
| 수감사실로 인한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 참여자 2,3,5,7 |
| **수감기간 동안 가족들의 경험** | |
| *** 나 아닌 다른 사람 손에 크는 자녀** | **전형적(n=8)** |
| 생계부양과 자녀양육의 짐을 모두 진 남편 | 참여자 1,2,3,5,8 |
| 딸 하나 잘못 둬서 손주까지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니 | 참여자 2,6 |
| 며느리는 못마땅하지만 손주는 키워주시는 시어머니 | 참여자 7 |

| | |
|---|---|
| 고아원에 갈 뻔한 자녀를 맡아준 고마운 친정언니 | 참여자 9 |
| *** 엄마의 수감 중 자녀의 경험** | **전형적(n=6)** |
| 갈피 못잡고 헤매는 자녀(가출, 등교거부, 방황) | 참여자 2,5,9 |
| 어린 동생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애씀 | 참여자 3,6 |
|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듦 | 참여자 4,5 |
| *** 삶의 고단한 짐을 진 남편의 괴로움** | **변동적(n=3)** |
|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남편(외도) | 참여자 4,6 |
| 아내의 수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림 | 참여자 6,8 |
| **여성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 | |
| *** 극과 극인 친정식구의 반응** | **전형적(n=6)** |
| 친정식구의 외면 | 참여자 3,6,8,9 |
| 그래도 피붙이라고 나를 받아주고 기다려준 친정식구 | 참여자 2,6,7 |
| *** 시댁식구와의 단절** | **변동적(n=4)** |
| 수감 전부터 나빴던 사이 | 참여자 7,9 |
| 수감 후 악화된 관계 | 참여자 6,8 |
| *** 가깝고도 먼 배우자** | **전형적(n=6)** |
| 큰일 겪어보니 의지할 곳은 남편뿐 | 참여자 3,4,5,8 |
| 회복하기 어려운 남편과의 갈등 | 참여자 1,7 |
| *** 자녀에게 감추고 싶은 수감사실** | **전형적(n=7)** |
|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음 | 참여자 2,3,8 |
| 말하지 안했는데 어렴풋이 알아 버림 | 참여자 2,3,5,7 |
| 수감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알게 됨 | 참여자 5,6,9 |
| **엄마로서 여성출소자와 자녀와의 관계** | |
| *** 여성출소자가 엄마로서 자녀를 대할 때의 마음** | **전형적(n=7)** |
| 수감기간 공백에 대한 미안함과 엄마로서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 참여자 2,4,6,7,8,9 |
| 잘 버텨준 자녀에 대한 고마움 | 참여자 2,4,9 |
| 범죄 대물림에 대한 두려움 | 참여자 1,7,8 |
| *** 엄마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전형적(n=8)** |
| 정서적 불안과 반항하는 행동 | 참여자 2,3,4,5,6,7,8,9 |
| 학업에 대한 무관심과 성적의 하락 | 참여자 2,3,4,5,9 |

| | |
|---|---|
| 어려움을 통한 성장 | 참여자 2,3,4,5,6,9 |
| **사회적 지지 속에 더불어 사는 삶** | |
| ***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살만한 세상** | **전형적(n=6)** |
| 희망찬 미래를 함께 꿈꾸는 가족 | 참여자 1,3,4,5,7,8 |
| 믿고 지지해주는 고마운 지인들 | 참여자 1,7 |
| *** 출소 후 가장 큰 힘이 된 공단** | **전형적(n=5)** |
|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주거지원 | 참여자 1,2,4 |
|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 | 참여자 2,3,8 |
| *** 공단 지원의 개선점과 필요한 도움** | **전형적(n=8)** |
| 자녀 간접, 직접 학업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람 | 참여자 1,2,3,8 |
| 생활비 보조 및 자녀 학비 지원이 필요 | 참여자 2,3,6,7.9 |
| 여성지원센터의 타지역 건립요구 | 참여자 5,6 |
| 이혼 여성 출소자에 대한 주거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참여자 6 |
| 주거지원시 LH 푯말에 대한 설명 필요 | 참여자 6,8 |

### 영역 1. 여성으로서의 수감생활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수감생활 경험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여성출소자들은 주로 예상치 못한 수감을 경험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처음 저지른 범죄로 겪게 된 수감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 저지른 생계형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충동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여성출소자들도 있었다.

> 판사님이 초범이니까 구속은 안되고 집행유예 이런 걸 줄테니까 그냥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구속이라는 거예요. 난 법정구속이 뭔지도 모르고……(참여자 4)

> 애들 아빠 사업 부도나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엠에프 터져서 어려운 시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다시 생계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6개월 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험회사를 다시 들어갔죠. 그거 가지고 제가 빌리고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서 넣고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계약자 분들은 회사에서 다 배상을 받았어요. 받고 회사에서만 저를 업무상 배임으로 해서 한거죠.(참여자 5)

주식하다가 빚을 져가지고……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집안사람이 고소를 한 거죠. 친지. 형님이 분명히 저한테 주식을 하라고 해서 배분을 하자고 해서 나눈 걸 했는데……몇대몇으로 하자고 한 건데. 이제 갑자기 형님네 집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돈을 빌려준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니까.(참여자 6)

강남에 있는 술집 그 큰 룸사롱에 다니는 여자애가 저희 가정을 깨트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랬는데……계속 전화하고 막 저한테 사람을 확 계속 이성을 잃게 만들었어요. 따귀라도 한 대 때리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자꾸 도망을 가니까 더 사람이 그 순간에 정말 저는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과도 칼 있었잖아요 주머니에. 그래서 어깨를 찔러버렸어요. 그렇게 찔렀는데 걔는 저를 고소했을 때 제가 세 번이가 다섯 번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밖에, 그것도 확 한 번도 아니에요.(참여자 8)

매일 24시간 밥 안 먹고. 깨고 먹고 깨고 먹고. 완전 타락이었죠……카드를 내가 안 주려고 돈을 뺏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애가 있으니까 애아빠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라서...참다 참다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죠.(참여자 9)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수감생활 경험을 낯설지만 그 곳 역시 사람사는 곳으로 진술하였다. 맞닥뜨린 수감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동료수감자들은 같은 여자로서 이해되고 안쓰럽기도 했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동료들이 있기도 하였다. 수감생활 중 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자녀들에게 엄마가 수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접견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감옥 내에서 재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자기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금도 첫날 들어간 기억을 잊지 못해요. 되게 무서웠어요. 옷을 갈아 입잖아요. 근데 갈아입는 과정에서 혹시 몸 속에 무기 같은 게 없나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그런…… 첫 날 딱 들어갔는데 잠자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옷 보따리 말아서 배게도 주고 자기 이불 덮게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두려워서 잠을 못자는 거예요.(참여자 5)

정말 여자들.. 남자들하고는 정말 틀려요 먹고 살기위해서는 나쁜 길로 접어든 사람도 있고 뭐 정말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사람들 서류도 제가 다 써줬어요 거기진짜 바닥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정말 몸을 파는 여자건 마약

을 하는 여자건 살인을 한 여자건 서로 간에 인간관계에서는 최선을 다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은걸 많이 배웠고요.(참여자 2)

전혀 다른 세상이고, 좀 여기는 무조건 나쁜 짓하고 질 나쁘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개념이 바뀌었죠. 여기는 억울한 사람도 들어오고 그런 사람 좋은 사람들도 많다. 그럴 수도 있다? 예전엔 용납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되게 억울한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기가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살인해서 온 사람도 있고 우발적으로.(참여자 7)

강력범죄자들은 강력범죄인 사람들이랑 해놓고 사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사기인 사람들이랑 해놓더라고요. 또 마약범죄는 마약범들끼리 해놓고. 강력범들이랑 있으니까 처음에 적응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거죠. 거기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술집 마담도 있었고. 술집 마담인데 손님 때렸는데, 폭행해가지고 돈을 안줘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오십이 넘었는데 삼십대 남자랑 불륜관계를 하다가 그 남자가 다른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니까 죽여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그러니까 서로 이질감을 느낀 거죠.(참여자 8)

그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봐서는 안될 것 같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알게 되면 그냥 와서 못보고 지내는 것보다 보고 지내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더라구요. 그 옷 입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참여자 5)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책을 나중에는 이제 재판 항소심 2심에서도 안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쉬자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좀 쉬라고 주셨나보다 시간을…… 그래서 그 안에서 책을 엄청 백몇권 읽었을 꺼예요. 책을 내가 자꾸 읽다보니까 이제 애들도 물어보고.(참여자 2)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수감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 희망의 빛이 있었기에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절망 속 희망의 불씨가 되어준 가족, 나를 지탱해준 종교, 그리고 여성출소자가 지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타고난 성격이었다.

음…… 거기서 느꼈던 거는 내가 가족이 있다는 거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안에…… 그니까 나가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전 행복한 거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애는 자기가 나가도 가족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요.(참여자 2)

아이들이에요 저는. 저는 생각한 게 아이들 때문에 살았지 아니었으면 저는 자살했을 것 같고. 아이들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거고. 왜냐면 제가 40인데도 이렇게 문제 일으켜서 엄마 도움을 받는데 우리 아이도 4~50 돼도 자게 건강하게 있어야지 든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에요.(참여자 6)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현명한 사람은. 교회를 제가 그 때 당시에는 8개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기도. 하나님을 믿든 뭘 하든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 생활했던 게 성경책을 필사를 하던가 기도뿐이 없었거든요 할 일이. 한문공부를 막 했었어요 .1년에 책을 한 팔십권정도 읽었으니까요. 책도 읽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져진 것 같아요.(참여자 7))

노여움 타거나 이런 일이 없이 자랐어요. 애기 아빠랑 살면서도 애기 아빠가 너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화낼 줄도 모르고 그러냐고 이상하게 저는 노여움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남편이 그랬으면 속도 상하고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이 애 아빠 속이려고 사기친건데 어디 가서 놀음이 했거나 술마시거나 그랬으면 속상했을텐데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그 사람이 자기도 아이엠에프라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나와서 못 줬다고 하니까…… (참여자 4)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에게 수감생활이 남긴 것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교훈을 얻었지만,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은 새롭게 얻었다. 수감생활이 남긴 걸로 또 다른 것은 나와 가족에게 낙인이 새겨졌으며, 수감사실로 인한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베풀고 싶고.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전에는 좀 쉽게 생각했죠. 불법적인 행동 그런 걸 해도.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바뀌었죠. 바르게 살려고 하죠.(참여자 4)

헛되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이가 38이 됐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이번 일로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7)

사람 보는 눈만 좀 틀려졌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좋은 얘기만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니가 날 얼마나 봤는데? 의심을 먼저 하게 되더라구요.(참여자 3)

지금 거기 안양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소문이 다 났어요. 거기 아파트에 14년 살았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막 애한테도 들어갔겠죠.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거길 나와야겠더라구요.(참여자 2)

제가 아무리 인상 좋고 이랬는데 성격 좋다고 해도 사람을 알기까지는 힘든거죠. 편견?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지만 결국에는 저한테는 찍힌 거잖아요. 빨간 글씨가 있는 거잖아요. 빨간 줄이 그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축은 있어요.(참여자 7)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하고 직장을 들어가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직장을 서류를 내도 저는 서류를 두 번을 내봤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니까 안 뽑아요.(참여자 2)

### 영역 2. 수감 기간 동안 가족들의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모두 자녀가 있는 어머니였다. 모두 수감 전에는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었으나, 수감이후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양육이 되게 되었다. 남편이 키우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남편들은 생계부양과 함께 자녀양육의 짐을 모두 지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친정어머니가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딸 하나 잘못 둬서 손주까지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있었다. 그리고 수감전 이혼한 참여자 7의 경우 수감 전부터 자녀들을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9의 경우에는 고아원에 갈 뻔한 자녀를 맡아준 친정언니에 대한 고마움도 진술하였다.

음…… 엄마는 강하시고, 그리고 뭐라할까 정신력이 강하시다. 그러나 의지가.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 아이들은 똑바로 키우려고 하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거 같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뭔가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거 같애요.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살아오신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으니깐.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엄마가 이제 잘 봐주셨으니깐 감사하죠.(참여자 2)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할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솔직히 믿었던건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가 아주 착하시고 그래서 한건데. 할머니 지금은 힘들어죽겠다 가끔 전화하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중간에 아이들이 응급실 가고 그랬

어요. 열 갑자기 나고 저 만나면서 긴장이 풀리고 그래서.(참여자 7)

처음엔 시댁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애를. 보냈는데 시댁에서 그 때 사건 재판받고 있는데. 시동생이 왔더라고 면회를. 애 안 데리고 가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언니가 또 언니도 마음이 여려가지고 제가 나올 때까지 데리고 있자 해서 언니 집에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참여자 9)

또한 여성출소자의 수감기간 동안 자녀의 경험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자녀들은 가출, 등교거부, 방황을 하며 갈피를 못잡고 헤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린동생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애쓰거나 엄마의 수감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경우도 있었다.

왕따 당한 그런 것도 있었나봐요. 학교를 옮겨 달라는 거. 서울쪽 미용고로 옮겨 달라고 학교를 안 가는 거.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은 안 가더라고요. 집도 나가더라고요. 그냥 졸업시켰어요 선생님께 싹싹 빌고. 이번에도 이제 대학 문제. 대학생이 되면 좀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할 줄 알았더니. 등록금만 내고 일주일 갔다 오더니 안 간다고. 그 다음부터 휴학계 계속 낸 거예요. 두 번째 휴학 낸 거예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엄마 때문에. 무조건 엄마 때문에. 근데 그게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에. 아팠던 상처가. 뜻대로 안 되면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참여자 9)

큰 애가 조금 그 때서부터 한 몇 년…… 2,3년 동안은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랄까? 그런 게 조금 강하게 있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한다 그런……(참여자 3)

그 때 우리 딸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은 연대나 이대를 가고 싶었는데 수시로 동국대학교를 붙은 거예요. 제가 재판 받으러 다닐 때는 재수를 할까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법정구속이 되고 나니까 애가 아예 대학 갈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참여자 4)

아내의 수감 기간 동안 남편들은 삶의 고단한 짐을 혼자서 지게 된다. 생계책임에 육아의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외로움과 비참함, 괴로운 마음을 느낀다.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외도를 하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방황을 하기도 한다.

제가 없는 사이에 애기 아빠가 여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었대요. 친구들 만나면 속상하니까 술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그랬을거고. 나한테 솔직히 얘기를

다 해요. 사실은 너 없을 때는 술집 가서 술도 먹고 외박도 한 두 번씩 하고 그랬대요. 너 나오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 그러겠대요.(참여자4)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남편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망가지고……그니까 자기 관리도 안 되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하여튼 외모도 거의 한 20년은 늙어 보이고 그런 거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고립돼 있는 것 같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되나 그런 것. 그 다음에 내 원망하는 것. 그런 거.(참여자 6)

신랑도 완전 정신이 나가서요, 일을 아예 손을 놔버렸어요.(참여자 8)

### 영역 3. 여성출소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여성출소자들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진술하였다. 여성출소자의 친정, 시댁,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여성출소자의 친정식구들은 출소경험(범죄사실)에 대해서 극과 극인 반응으로 외면을 하거나 피붙이라고 여성출소자를 받아주고 기다려준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감 전에 관계가 좋았던 친정식구들은 출소 후에도 대체로 관계가 좋았으며, 수감 전에 그리 좋지 않는 관계였으면 출소 후에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그래도 출소 후 친정부모와는 잘 지내는 편이나 형제지간에는 외면하고 말도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일 있기 전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거기 가도 얘기도 안하고 나와도 얘기 안하고. 연락 안하게 되더라구요, 잘……(참여자 3)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사는데도 누나가 왜 이런 짓을 한지 모른다고 연락을 안 하거든요. 외면하거든요.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을 다시 알았어요. 세상을 알게 됐어요. 저희가 잘살 때는 동생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제가 구속 딱 되고나서부터는 동생은 면회 한 번도 안 왔어요. 올케도 안 오더라고요.(참여자 6)

사실 아직도.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동생들이 셋이 있거든요. 동생들하고도 지금까지도 안보고 있구요.(참여자 8)

가족이죠. 제일 고마운 건. 엄마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언니랑 동생이 많이 도움 줬거든요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 엄마 아버지가 제일 감사하고.(참여자 7)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는 시댁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시댁식구와 관계가 좋다는 진술은 없었으나 시댁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에 대해서는 진술하였다. 시댁과 결혼 후부터 계속 관계가 안좋았던 경우와 수감 후 관계가 악화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는 돈만 잃은 게 아니구요. 가족도 다 잃었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은 아예 지금도 서먹한 거 보면. 그렇고. 사실 아직도. (참여자 8)

> 처음엔 시댁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애를. 보냈는데 시댁에서 그 때 사건 재판받고 있는데. 시동생이 왔더라고 면회를. 애 안 데리고 가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참여자 9)

출소 후 여성출소자의 배우자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뉘어 나타났다. 수감이라는 큰일을 겪고 나니 시댁식구나 친정식구들보다 더 곁에 남아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남편뿐이라는 반응과 아내의 수감으로 인해 같이 무너지고 넋이 나간 남편, 여러 가지 문제로 출소 후 남편과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진 경우도 있었다.

> 그런데 저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어요. 큰 일을 사람이 겪어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내 신랑밖에 없구나 그거를 되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역시 사람은 큰 일을 겪어봐야 안다고, 정말 날 낳아준 부모님이든, 내 피를 나눈 형제든 그렇게 발 벗고 나서지도 않을뿐더러 그렇지 않다는 걸. 내 남편, 내가 의지하고 그럴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다는 걸 되게 절실하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누가 그렇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이 출소하고 나서 계속 겪으면서 느껴지고, 신랑도, 신랑 나름대로 그런 걸 그래도 막 싸우는데 자기를 생각해주고 그런 거는 자기 마누라밖에 없다는 거를 서로가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참여자 8)

>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남편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망가지니까 자기 관리도 안 되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하여튼 외모도 거의 한 20년은 늙어 보이고 그런 거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고립돼 있는 것 같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되나 그런 것. 그 다음에 내 원망하는 거, 그런 거……(참여자 6)

> 남편에 대한 애증도 심하고 원망도 심했고……제가 표현을 안하는데 솔직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용서 다하려고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참여자 7)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수감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렴풋이 아이들이 눈치 채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들이 어릴 경우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의 수감기간이 비교적 10개월 남짓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다른 이유를 대며 엄마의 수감사실을 숨길 수가 있었다. 다른 이유로는 해외 출장, 장기 병원 입원 등으로 자녀에게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묻지 않는다면 굳이 수감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여성출소자의 수감사실을 자녀가 성인이었을 경우에는 엄마의 수감을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공개하였다. 자녀가 어린데도 수감사실을 아는 경우는 재판과정에 자녀가 참여한 경우나 엄마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경우였다. 또한 여성출소자는 수감사실을 비밀로 하였지만 자녀가 어렴풋이 알아버린 경우는 주로 어른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짐작하여 알고 있는 경우였다. 참여자 5의 경우에는 자녀들과 집에 있을 때 경찰이 집으로 와서 자녀들이 알게 된 경우인데, 누나 둘은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어린 남동생에게는 엄마의 수감사실을 숨겼으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낌으로 알고 눈치를 챈 상태이다.

> 지금도 그냥 어렴풋이 엄마 재판받으러 잠깐 들어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고민을 해요. 저희 딸도 아직 몰라요. 당연히 고민을 하지요. 여러 각도로. 저는 안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참여자 2)

> 그 때는 몰랐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라고 알고……큰 애는 반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3)

> 수용됐을 때도 아이들한테 말 안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상처줄까봐. 아이들은 항상 자라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처주기 싫었어요. 엄마가. 결국엔 좋은 일은 아닌거잖아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었던.(참여자 7)

> 아이들이 있을 때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딸들이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갈 때 딸들이 따라 내려 왔거든요. 아빠한테 연락해서 이따가 아빠랑 오든가 얘기 해 보라고 그러고 갔거든요.…(중략)…어쨌든 데리고 오지 말고 엄마가 일 때문에 어디 갔다고만 설명을 해줘라. 그런데 얘가 눈치 챈 게 자는 줄 알고 아들이 자는 줄 알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느낌으로 아는 거죠.(참여자 5)

우리 아이들은 집안이 연결된 일이라서 아예 모를 수도 없었던 거고 알게 됐었고……셋 다 알게 됐었고. 다 어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 1,2학년 그 정도. 가장 제가 몹쓸 짓했는데.(참여자 6)

### 영역 4. 엄마로서 여성출소자와 자녀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여성출소자들이 엄마로서 자녀를 대할 때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다. 수감기간 동안 엄마의 공백에 대해서 미안함과 엄마로서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잘 버텨준 자녀에 대한 고마움, 범죄대물림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엄마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공개하든 공개하지 않든지 간에 자녀를 볼 때 엄마로서의 미안함과 죄책감은 대부분의 여성출소자들이 느끼는 감정이었다. 또한, 엄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잘 통과하여 의젓해진 자녀들에 대해 여성출소자들은 고마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혹시나 여성출소자 본인을 닮거나 폭력적인 아버지를 닮아 자녀가 나쁜 길로 접어들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 때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이제 고등학교부터 내가 키웠지만. 초중 때가 그 때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일단은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를 못 했다는 거죠. 부모로서…… 일단은 빨래고 먹을 거고 간에. 일단은 지가 어렵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런 것도 혼자서 견뎌내야 했고…… (참여자 9)

방황은 순간적으로 했지만 나쁜 길로 안 빠져서. 지가 대학 가려고 알바도 뛰는 거 보면 고맙죠.(참여자 9)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용돈 벌고 아빠도 벌지만 아빠는 일정한 월급이 없으니까 자기가 월급 받아서 월세 내는 거를 30만원씩 보태서 주고 동생 다 용돈 주고 동생 먹고 싶다는 거 옷도 다 사 입히고 그래서 다 딸이 제일 고마워요.(참여자 4)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죄를 지었었고, 그러면 애들이 혹시라도 삐딱하게 나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죠, 항상.(참여자 8)

여성출소자들의 자녀들은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거나 모르거나에 관계없이 엄마의 수감전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다고 본 연구의 여성출소자들은 진술하였다. 이는 대부분이 엄마의 손에 키워지다가 엄마가 수감됨으로서 양육

자가 바뀌게 되고 엄마는 부재하는 데에서 불러온 문제라고 여겨진다. 자녀는 엄마의 수감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중 성격의 변화를 많이 나타낸다. 말이 많이 없어지고 어두워졌으며 내향적으로 변하였다고 여성출소자들은 진술하였다. 또한 사춘기 청소년일 경우 뚜렷하게 반항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등교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수감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동생을 챙기고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등 자녀가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들은……아들이 그 일 이후로 제가 집에 와서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자기 의견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해요. 그래서 무슨 계기가 되서 우리 작은 딸이 엄마 승균이는 심리치료 하는데 데리고 가 봐야 할 것 같아, 말을 해야 하는데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뒤에 해야 할 말을 앞에 한다거나 결론만 딱 얘기를 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그랬더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뭔가에 자기 마음을 닫고 있대요. 지금도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일하다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엄마 어디야 그러면 엄마 뭐하는데? 일하고 있지...184인데 제가 없는 동안 비만이 됐어요. 편식하는 습관이 생겨서 비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 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한 128, 130 나가요. 본인도 살쪘다고 느껴요……(참여자 5)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있을 때부터 애들이 이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도 예민하게 두리둥실 지내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어지고, 화도 잘 내고 막 좀 약간 원래 애들이 밝잖아요 어린이들은 장난도 잘치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8)

내 자식 흉인데 이거는. 내 입으로 말씀드리기가……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유리창도 몇 번을 여자애가 주먹으로 깼어요.(참여자 6)

성적이 그렇게 못하던 애가 아니었는데 와보니깐 세상에 살이 한 10kg가 쪄있고, 끝에서 4등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만큼이 이게 무섭구나. 내가 없는 그사이에 반에서 밑에서 4등.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4등이래요. 예?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밑에서 4등이에요.(참여자 2)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아들이요. 5학년때까지는 진짜 공부 잘했는데 내가 없는 10개월 동안 6학년 됐잖아요. 그 시가를 딱 놓치니까 중학교 가서는 공부

를 전혀 안하는 거예요. 지금 수학은 거의 포기하고.(참여자 4)

자립심. 자기가 왜냐하면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할머니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 밑에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애가 인식을 했죠, 옛날에는 동생이나 이런 거는 엄마가 알아서 다했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동생이 내가 필요하구나. 제가 없었던 그 빈자리에 얘가 자기 자리를 채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꼬마가 사춘기래서 그런지 잘 대들어요. 짹짹짹 그러면 제가 몇 마디 할려고 그러면 막아요. 엄마 그러지마.(참여자 2)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용돈 벌고 아빠도 벌지만 아빠는 일정한 월급이 없으니까 자기가 월급 받아서 월세 내는 거를 30만원씩 보태서 주고 동생 다 용돈 주고 동생 먹고 싶다는 거 옷도 다 사 입히고 그래서 다 딸이 제일 고마워요.(참여자 4)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아이들도 힘들었을 텐데 쉽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 안하고 지금 다른 애들보다도 더 성실하니까, 애들이. 한 번도 비뚤어 나가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성실하고 다른 애들보다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게 제일 고맙죠. 그 때 한창 사춘기 때 막말로 집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고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킨 게 대견하죠.(참여자 3)

### 영역 5. 사회적 지지 속에 더불어 사는 삶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출소 후에 사회적지지 속에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선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가족들과 믿고 지지해주는 고마운 지인들이다. 출소후 가족들과의 관계가 끈끈해졌으며,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애틋해졌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부부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고 친정식구보다 시댁식구보다 오로지 남편뿐이라는 생각으로 화해와 용서를 하게 되어 더욱 더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일단 계기가 된 거죠. 가족 간에 더 애틋해진 거. 같이 있다는 거 자체가……(참여자 3)

그래서 저는 애기아빠한테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50인데 앞으로 10년 열심히 벌면 우리 지연이 조금씩 벌어서 시집 보낼 수 있고 지가 네일 아트라도 한다니

까 전문대라도 가서 시집가면 남편한테 기안죽고 살 수 있고 OO이 학교 보내서 경찰이 되든 군인이 되서 안정되게 살 수 있고 항상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아 그래 10년 뒤에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참여자 4)

신랑이랑 재미, 신랑도 그런 거를, 집이 제일 편하고, 집이 좋다는 거.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예전에는 표현을 안했었거든요 말로. 그런데 이제는 표현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저를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요 저를. 그러니까 예전에 잃었던 자신감도, 자존감까지도 확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내 존재의 가치도 좀 올라갔고, 그러더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니까.(참여자 8)

예전에는 별 것도 아닌 것 같던 것도 그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구요...아이들 위해서 뭔가 희망이.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면은 목표까지는 못 따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7)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감기간동안 믿고 기다려 준 지인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특히, 여성출소자들은 종교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사회적인 관계망을 튼튼히 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남편이 힘이 되지 않는 여성출소자에게 주변의 지인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감사해요. 좋게 생각하면 그래요. 친한 동생이 있는데 걔가 재판에 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이거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사님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런 분들이 와주시는 거예요.(참여자1)

저를 기다려줬던 사람들 몇몇 있어요. 회사사람들도 있었고요. 교회 사람들도 있었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아예 연락이 안되고요. 2,3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8개월 동안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주고 보고 싶었다. 그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게 하면서 저를 기다려주면서 8개월 동안 연락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어디 갔다 왔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감사하고 (참여자 7)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공단의 지원이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여성 출소자들에게 지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주거지원, 자립의 길을 열어준 공단의 창업지원,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 표현하였다.

법무 공단이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구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안됐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삶이 너무 아팠고, 다들…… 다 말아 먹었고 다 지쳐 있었고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도 갈 데도 없고.(참여자 1)

여러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하게끔 도와주는 데가 복지공단이에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그렇죠. 거기까지 있었는데 자신감이 있겠어요. 바닥이었죠. 근데 그거를 많이 잡아주시려고 애써주고 힘들어 할 때마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고, 그리고 제가 회사를 가고 엄마가 나이가 들어 애들이 공부를 제가 잡아주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대학생을 때렸어요. 법대생들이 봉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법대생 중에 한분이 저희 집에 와서 큰애하고 둘째 애를 일주일에 한번인가 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새로 생겨서 그것도 처음에 제가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 공부도 다 도와주시게끔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나온 사람들이 다시 죄를 안 짓고 가족들하고 잘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든지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그쪽에다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참여자 2)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원들에 대해서 개선점과 함께 필요한 도움들을 이야기하였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는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학업지원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주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및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혼한 여성의 경우 양육권이 없어 본인의 등본에 아이들이 올라가 있지 않는 경우에 주거지원을 받기 힘든데, 주말이라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주거지원을 받은 여성출소자들 중 임대주택 입구에 있는 LH공사 푯말이 출소자를 나타내는 낙인처럼 여겨지고 혹시나 자녀들이 커서 엄마의 수감사실을 이로 인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 또한 여성출소자들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생활비 보조 및 자녀 학비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했으며, 현재 경기도에 하나 밖에 없는 여성지원센터를 타 지역에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애들이 대학생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를.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때 당시에 금전적으로 학원을 못 보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두 학기를 도움을 받았어요. 더 받고 싶었는데 그게 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는

데…… 도움이 좀 한시적인 것 같아요.(참여자 8)

저희가 사는 집에는 LH라는 그 표가 붙는데요. 그럼 이게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이러면 주홍 글씨잖아요. 저 집 그걸 거야. 또,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쨌든 집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신청이 안 되는 걸로.(참여자 6)

거기 있는 동안에 의료보험을 감면을 해주겠다고. 근데 그 제일 경제적인 거는 세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일반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제를 해요. 남편이 돈을 안갖다 줘도 결제를 해요. 만약 우리가 그래가지고 공과금에 대해서 압류 딱지 들어왔다고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다 감면을 해주다고 하면 다 거기 갈 것이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30%든 50%든 감면을 해주면 조금 더 낫더라고요. 세금문제, 경제적인 거 그게 제일 커요. 솔직히 여자들은 거의 다 경제사범인데 돈 때문에 엮여서 들어온 사람들인데...(참여자 3)

여자 센터는 여기 하나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좀 아니지 않아요?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은 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적어도 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참여자 6)

<표 3.17> 주거지원 여성출소자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수감 사실 공개 및 비공개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 주제 1. 수감 사실 공개 가정의 경험<br>영역과 범주<br>수감 사실 공개 방식 | 응답빈도 |
|---|---|
| *** 배우자 및 손위 형제들을 통한 수감 사실 전달** | **(n=1)** |
| 누나 및 술을 먹은 아빠가 엄마를 찾는 초등학생 막내 아들에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털어놓음 | 참여자 4 |
| *** 어쩔 수 없이 알게 됨** | **변동적(n=3)** |
| 친척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초등학교 자녀 세 명 모두 엄마의 수감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됨 | 참여자 6 |
| 성인 딸 둘이 엄마의 체포 장면을 목격함 | 참여자 5 |
| 초등학생 딸이 엄마의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함 | 참여자 9 |
| **수감 사실 공개 이유** | |
| *** 엄마의 부재로 방황하고 슬퍼하는 초등학생 아들** | **(n=1)** |

| | |
|---|---|
| 가출을 하여 PC방과 놀이터를 전전함 | 참여자 4 |
|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엄마를 보여 달라며 울고 불며 떼를 씀 | 참여자 4 |
| *** 의도치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됨 (집안문제, 체포장면 목격, 재판 과정에 참여)** | **변동적(n=3)** |
| 손위 동서와의 금전 문제로 집안 내에서 불거진 문제 | 참여자 6 |
| 갑작스럽게 체포된 엄마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봄 | 참여자 5 |
| 엄마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증언을 해야 했던 초등학생 딸 | 참여자 9 |
| **수감 사실 공개에 대한 자녀의 반응** | |
| *** 엄마의 출소를 기다리며 한껏 밝아진 모습을 보임** | **(n=1)** |
| 엄마의 수감 사실을 친구와 스스럼없이 나누게 됨 | 참여자 4 |
| 엄마의 출소 후 행복한 삶에의 희망을 꿈꾸게 됨 | 참여자 4 |
| *** 엄마의 수감을 이해하고 수용함** | **(n=1)** |
| 엄마의 수감이 가정과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함 | 참여자 5 |
| 엄마가 가족을 위해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함 | 참여자 5 |
| *** 엄마의 수감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 | **변동적(n=2)** |
|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엄마의 수감이 신경쓰임 | 참여자 4 |
| 엄마의 수감이 준 충격과 그로 인한 깊은 마음 속 상처의 응어리 | 참여자 9 |
| **주제 2. 수감 사실 비공개 가정의 경험**<br>**영역과 범주**<br>**수감 사실 비공개 방식** | **응답빈도** |
| *** 엄마가 집을 비운 것을 다른 이유로 설명** | **전형적(n=5)** |
| 일 때문에 집을 비운 것이라 설명함 | 참여자 5, 7 |
|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림 | 참여자 3 |
| 아빠와의 다툼으로 집을 나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함 | 참여자 8 |
| 빚쟁이들을 피해서 해외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림 | 참여자 2 |
| 재판을 받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것으로 설명함 | 참여자 2 |
| *** 수감기간 동안 자녀와의 접견을 거부함** | **변동적(n=3)** |
| 수감복 입은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 | 참여자 5 |
|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상처받을까봐 접견을 거부함 | 참여자 2 |
| 수감되어 있는 엄마의 모습을 자녀의 기억 속에 남기기 싫은 마음 | 참여자 8 |
| **수감 사실 비공개 이유** | |

| | |
|---|---|
| *** 자녀에게 엄마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 | **(n=1)** |
|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존심 상함 | 참여자 2 |
| ***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한 두려움** | **변동적(n=3)** |
|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자녀들이 받을 상처 | 참여자 3 |
| 자녀가 보고 싶었지만 수감되어 있는 엄마의 모습에 상처받을 자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림 | 참여자 2 |
| 한창 자라날 자녀들에게 엄마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음 | 참여자 7 |
| *** 아빠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의 수감 사실 공개 반대** | **(n=1)** |
|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대로 자녀들을 만날 수가 없었음 | 참여자 7 |
| *** 엄마의 수감 사실이 자녀의 인생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에 대한 불안** | **(n=1)** |
| 공부를 잘하는 자녀의 미래에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 참여자 8 |
|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삐딱한 길로 빠질 위험에 대한 두려움 | 참여자 8 |
| **수감 사실 비공개에 대한 자녀의 반응** | |
| ***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지만 자녀 자신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 | **(n=1)** |
|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가족분위기 속에서 자녀 자신도 표현을 꺼림 | 참여자 5 |
| *** 엄마의 부재 기간이 길어지자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 오해함** | **(n=1)** |
|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생각에 상처를 입음 | 참여자 2 |
| *** 엄마의 수감 사실을 눈치채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음** | **변동적(n=3)** |
| 법무부 관할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어렴풋이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게 됨 | 참여자 3 |
| 우연히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낌으로 엄마의 수감을 눈치챔 | 참여자 5 |
| 이모와 아빠에게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엄마의 수감 사실을 짐작함 | 참여자 7 |
| *** 엄마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 | **변동적(n=2)** |
| 우울 증상이 나타남 | 참여자 5 |
| 가족들의 부재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아짐 | 참여자 5 |
| 자신의 중요한 기억 속에 함께 해 주지 않은 엄마에 대한 서운함 | 참여자 8 |
| **주제 3. 효과적인 수감 사실 공개 방식에 대한 출소자들의 경험적 제안** | |
| **영역과 범주** | **응답빈도** |
| **자녀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공개 수준의 차별화** | |

| | |
|---|---|
| ***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수준이 되었을 때 공개** | **(n=1)** |
| 엄마와 아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여자 3 |
| *** 자녀의 요구 수준에 따른 공개 수위 결정** | **(n=1)** |
| 자녀가 알고 싶어하는 만큼 공개하고 나머지 판단은 자녀의 몫으로 남김 | 참여자 3 |
| *** 자녀의 성향에 따라 공개방식과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 | **(n=1)** |
| 정신적으로 강한 자녀에게는 공개 vs성정이 여린 자녀에게는 비공개 | 참여자 5 |
| **자녀의 요구가 수반되지 않은 자발적 공개는 불필요함** | |
| *** 자녀가 엄마의 수감 사실에 대해 아는 것은 자녀에게 불필요한 자격지심만 심어줄 뿐임** | **변동적(n=2)** |
| 수감 사실을 알게 됨으로서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음 | 참여자 2 |
| 수감사실을 몰랐던 자녀들이 이를 알고 기죽는 것은 원치 않음 | 참여자 8 |
| *** 수감 사실에 대해 물어오면 밝힐 수는 있으나 굳이 먼저 공개할 의지는 없음** | **변동적(n=2)** |
| 물어보지 않는데 굳이 밝힐 필요 없음 | 참여자 3 |
| 이혼사실을 숨긴 것처럼 수감 사실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음 | 참여자 2 |
| ***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게 될 것에 대한 염려** | **(n=1)** |
| 빨간 줄이 생겨버린 엄마 때문에 자녀가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음 | 참여자 7 |
| *** 부모를 향한 원망에 대한 두려움** | **(n=1)** |
| 수감된 엄마는 물론 가정을 지키지 못한 아빠에 대한 자녀들의 원망이 두려움 | 참여자 6 |
| *** 가슴 아픈 과거에 대해 부모-자녀 간 소통의 암묵적 회피** | **(n=1)** |
| 지나간 아픔을 들추어내고 싶지 않음 | 참여자 9 |
| *** 예민한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비공개가 필요함** | **(n=1)** |
| 성인기에는 수감 사실을 알아도 상관이 없지만 사춘기에는 반드시 비공개가 유지되어야 함 | 참여자 8 |
| **자녀의 건강한 정서적 · 심리적 발달을 위한 공개의 필요성** | |
| *** 사실 은폐가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n=1)** |
| 엄마의 부재 이유를 몰랐을 때는 방황하던 아들이 이유를 알게 된 이후에는 밝아짐 | 참여자 4 |
|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학생 수준의 자녀에게는 잘못 가르치면 오히 | 참여자 4 |

| | |
|---|---|
| 려 비뚤어질 위험이 있음 | |
| *** 엄마의 부재 이유에 대한 왜곡된 상상으로의 방치보다 상세한 설명과 이해가 바람직한 방법** | **(n=1)** |
| 어쩔 수 없는 엄마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녀의 이해를 구함 | 참여자 5 |
| *** 엄마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통의 장 마련** | **(n=1)** |
| 수감으로 인해 가족이 떨어져 있던 기간에 받았던 상처를 가족 안에서 다루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함 | 참여자 6 |

## 주제 1. 수감 사실 공개 가정의 경험

### 영역 1. 수감 사실 공개 방식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출소자 가정들은 자녀가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아는데 대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으며, 가능한 한 이를 숨기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 환경에 처한 가정도 있었다. 참여자4는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수감 사실을 숨기고자 일 때문에 집을 비운 것으로 둘러댔으나 그 기간이 길어지자 계속해서 엄마를 찾는 막내 아들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결국 술을 먹은 아빠가 엄마의 수감 사실을 털어놓을 수 밖에 없었다.

> 네 애들 둘 다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 얘기 안하다가 일주일 동안 엄마가 안오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10개월만 있다 온다 그랬는데 어디 있냐고 계속 그러니까 누나가 얘길 했대요. 재판 끝나고 온다 했는데……아빠가 술 먹고 얘길 했대요. 고소했던 사람을 이모라고 하거든요. 그 이모가 고소를 해서 엄마가 지금 못 나온다. 그래서 엄마가 10개월 지나면 올거다…… (참여자 4)

한편 수감 사실 공개 여부를 두고 고민할 여지도 없이 자녀들이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아버린 가정도 있었다. 참여자 6은 주식에 투자를 하며 사촌 동서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피소를 당하게 되었고, 세 자녀들은 엄마의 재판 및 수감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 주식하다가 빚을 져가지고……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집안사람이 고소를 한 거죠. 친지. 동서. 그니까 형님이죠. 손위 형님인 거죠. 큰집 작은집이란 말이에요. 어른들끼리도 거의 원수가 됐고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내가 너랑 같이 사니 하

면서도 아이들한테 최고의 그런 안정은 가족이 같이 사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참여자6)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참여자5는 수감에 대한 두려움과 구속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족들과 도주하여 잠적하였으나 결국 딸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는 아픔을 경험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생업을 포기한 배우자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참여자9는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엄마의 수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차라리 나서서 딱 해결을 했으면 아마 쉽게 빨리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순간 두려웠던 거죠. 구속되고 막 그런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 자체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두려웠고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아들이 그때 7살이었어요. 일이 터졌을 때가……2003년도 겨울이었거든요.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어…(중략)…아이들이 있을 때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딸들이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갈 때 딸들이 따라 내려 왔거든요.(참여자5)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자녀에게만큼은 부끄러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당시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 영역 2. 수감 사실 공개 이유

수감 사실을 공개한 가정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와 아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4의 경우 고등학생 딸은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나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에게는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아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엄마의 판단 하에 엄마의 수감 사실을 숨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평소 '하루도 살을 비비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각별했던 아들은 엄마의 부재로 인한 충격에 피씨방과 놀이터를 전전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빠에게 엄마를 보여 달라고 울고 불며 떼를 쓰게 되었다. 결국 아들에게 수감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수감되어 있는 엄마에게 가서 울지 않는다는 아들의 의지를 확인한 후 접견을 결심하게 되었다.

충격이 큰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루도 살을 안비빈 적이 없는데 한 3,4개월 안본 사이에 집에 안들어 왔대요. 학교 끝나고 피씨방 놀이터에 있고……애가 3개월 되니까 울고 불고 하면서 엄마 보여 달라고 아빠한테 하도 떼쓰니까 그럼 엄마한테 가서 안울기로 하고 데리고 왔어요.(참여자4)

한편 손위 동서와의 금전 문제로 집안 내에서 문제가 불거져 수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이었던 자녀들에게 수감 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었던 참여자6은 자신의 '몹쓸 짓'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집안이 연결된 일이라서 아예 모를 수도 없었던 거고 알게 됐었고. (셋 다?) 네. 셋 다 알게 됐었고……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 1,2학년 그 정도. 가장 제가 몹쓸 짓했는데…… (참여자6)

IMF로 어려워진 가정 경제 상황으로 인해 보험 회사에 취직하였으나 편법을 통해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업무상 배임으로 21개월형을 선고받은 참여자5는 구속은 물론 구속되는 엄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잠적하였다. 하지만 결국 딸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었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막내아들은 두 누나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엄마가 체포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가족들은 모두 엄마의 수감 사실을 막내 아들에게 비밀로 유지하였다.

참여자9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딸을 법정에 세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매우 마음아파하였다. 엄마의 재판 과정에 참여해야 했던 참여자9의 딸은 아빠의 죽음, 엄마의 수감, 고아원에 갈 뻔하다가 이모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마음을 못 잡지 못하고 방황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감 되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두 딸은 얼굴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였나요?) 네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엄마가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이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아이들이 있을 때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참여자5)

알아요. 법정에 섰어요 그 때 당시에.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진위를 면면히 물어보더라고요 판사가. 그 때 나이가 어리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애들이 마음을 못 잡으면 갈팡질팡한다고 하잖아요. 혼동이 왔겠죠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도. 그런 걸 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9)

엄마의 수감 사실 공개가 막다른 상황에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결정 내지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해도 근본적으로 자신이 범한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자녀들이 상처받고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부모로서 져야 하는 또 하나의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것이었다.

### 영역 3. 수감 사실 공개에 대한 자녀의 반응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엄마의 출소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가 하면 엄마의 수감을 이해하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참여자4의 아들은 엄마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엄마와 만나지 못하는 시간을 힘들어 하며 방황했지만 엄마와 접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엄마의 출소를 기다리며 한껏 밝아진 모습을 보였다. 물론 수감된 엄마와 처음 만난 후 한달 가량은 엄마를 만날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가족들은 낯선 엄마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다. 또한 참여자4는 출소 후 자신의 수감 기간 동안 부쩍 성숙해진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출소하여 집으로 돌아온 엄마와 행복하게 살 희망으로 엄마 없이도 잘 생활해준 자녀에 대한 대견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 엄마가 두 세달만 있으면 오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중략) 오히려 저를 면회하고 가서는 친한 친구한테 우리 엄마가 나랑 떨어져 있어서 속상하다 친구랑 상담을 했다 하더라구요. 면회를 하고 나니까 엄마가 저 안에 있구나 나쁜 거는 나쁜 거죠. 가 있는 거는. 엄마가 재판 끝나면 오는구나 그걸 알고는 밝아지더라구요. 지금 제가 없는 사이에 애들이 성숙해졌고 엄마 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참여자4)

> 또한 참여자5는 딸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는 아픈 경험을 하였지만 당시 성인이었던 딸들은 엄마의 수감이 엄마가 자녀와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엄마의 희생과 고생, 노력덕분에 자신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엄마를 위로해주었다.

> 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엄마가 열심히 하다가 들어갔고 집이 많이 윤택해졌고 자기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자기들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 자기들 가르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다면서 딸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어요.(참여자5)

참여자4의 딸은 엄마의 수감으로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생각하여 대학도 포기하고 돈을 벌며 동생을 돌보는 의젓함을 보였지만 수감 전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엄마의 출소 후 소극적이고 내향적으로 변해 있었다. 참여자4는 딸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속상하면서도 겉으로 내색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딸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다.

> 성격이 많이 나빠졌어요. 나빠졌다기 보다 우리 딸이 외향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일대일로 하면 하긴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대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 때는 제가 제발 어디 나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게 싫대요.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렇대요. 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그런데 갔다 왔다는 게 잠재적으로 자기는 안 좋겠죠.(참여자4)

> 그 충격에...학교 다닐 때는 그 때는 초등학교였으니까 엄마 학교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얘기 다 하고 졸졸 쫓아다니고 하면서 그랬는데. 요즘 말이 없어요.(중략) 무조건 엄마 때문에. 근데 그게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에. 아팠던 상처가. 뜻대로 안 되면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참여자9)

엄마가 수감될 당시 재판 과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엄마가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모 집에 얹혀 살며 가출과 왕따 등 엄마의 빈자리를 힘겹게 버텨온 참여자9의 딸은 당시의 기억이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남아 상처가 되어 있었다. 어렸을 때는 엄마를 잘 따르고 밝은 딸이었지만 출소 후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엄마 탓으로 돌리고 말이 없어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 주제 2. 수감 사실 비공개 가정의 경험

#### 영역 1. 수감 사실 비공개 방식

참여자들은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수감사실에 대해 자녀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고 따라서 자녀에게는 엄마의 개인적인 일, 출장, 입원, 도피 또는 아빠와의 다툼때문에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면서 엄마의 수감 사실 공개를 꺼렸다. 참여자5는 남편과 장성한 두 딸들에게 막내 아들에게만큼은 수감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였고 아들에게는 엄마의 부재를 일 때문이라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취업한

곳이 불법 대출 사기 조직이었으며 이곳에서의 활동 이력으로 8개월형을 선고 받은 참여자7은 8개월이라는 부재기간을 해외출장이라는 '거짓말'로 덮고자 하였다. 한편 참여자3은 수감으로 인한 부재 기간을 입원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참여자8은 수감 기간을 아빠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서 집을 나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자녀들은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런 자녀들에게 참여자8은 미안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 제가 그 때 미안하다고,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그냥 엄마가 집 나가있었던 거라고 미안하다고 얘기 하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그게 또 상처고 남아있더라고요.(참여자 8)

참여자2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채를 썼으나 결국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아는 딸에게는 빚쟁이들을 피해 친구 집에 도피해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었다. 출소 후에도 참여자는 딸에게 수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재판 때문에 잠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주었는데 굳이 수감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야 할 필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엄마는 해외를 갔고 하루에 몇통씩 전화하는 엄만데 왜 안오냐고 물으니까 이제 집에 딱지붙은 걸 봤었어요 (중략) 얘는 그냥 엄마 어디 친구 집에 있을께 라고 편지를 했어요 왜냐면 빚쟁이들도 많이 찾아가고 그랬으니까……근데 지금도 그냥 어렴풋이 엄마 재판받으러 잠깐 들어가 있었어 정도만 알지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하셨네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참여자2)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자녀가 사무치도록 그리웠지만 출소일까지 자녀와의 접견을 거부함으로써 철저하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자 하였다. 참여자5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수감복을 입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들을 만나보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간 중 한번도 아들을 만나지 않았다. 참여자 2번 또한 여동생이 딸과의 접견을 권했지만 절대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참여자8은 '일부러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그런 게 기억에 남을까 봐.'라고 말함으로써 자녀에게 수감된 엄마의 모습이 나쁜 기억으로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수감한 날부터 집에 올 때 까지 아들을 안봤어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봐서는 안될것 같더라구요.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알게 되면 그냥 와서 못보고 지내는 것보다 보고 지내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더라구요. 그 옷 입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중략)…제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참여자5)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갈까? 아니 데리고 오지마…… 가족면회 있잖아요 아무도 데리고 오지마 아무도 안볼꺼야. 언니 그래도 애들…… 싫어 데리고 오지마.(참여자2)

자녀로 하여금 엄마의 수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각 가정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수감 기간 엄마로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해 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을 자녀에 대한 걱정, 엄마로서의 부끄러움은 자녀에게 수감 사실을 꺼리는 모든 참여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었다.

### 영역 2. 수감 사실 비공개 이유

자녀에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가정의 부모들이 내린 판단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게 작용한 심리는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한 두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3의 배우자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자녀들이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참여자7 또한 수감 기간 자녀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지만 초등학생인 아들들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참아냈다. 참여자2 또한 수감 기간 중 자녀가 보고 싶었지만 출소일까지 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수감되어 있는 엄마의 모습에 상처받을 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부모의 마음이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선입견이 많아서 공개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비슷한 경우 안 좋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가족 얘긴데…… 애들은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우리 나라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선입견들을 봤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만 알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애들도 학교 가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의 반응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저는 그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아요.(참여자3)

아이들한테 상처줄까봐. 아이들은 항상 자라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처주기 싫었어요. 엄마가. 결국엔 좋은 일은 아닌거잖아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었던…(참여자7)

남편과의 이혼으로 시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참여자7은  수감 기간중 자녀를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참여자 자신도 그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한편 참여자8은 혹시라도 엄마의 수감 사실이 자녀의 인생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였다. 아직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공부를 잘해서 장래희망이 검사인 딸의 미래에 누가 되지는 않을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삐딱한 길로 빠지지는 않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일부러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그런 게 기억에 남을까봐. 그리고 애들 인생에서 내가 걸림돌이 될까봐. 아직도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해요. 항상 상도 많이 타오고, 저희 큰 딸은 꿈이 검사거든요.(참여자8)

엄마가 전과자라는 사실 자체가 자녀에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수감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 영역 3. 수감 사실 비공개에 대한 자녀의 반응

가족 내에서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은 엄마의 수감 사실 비공개에 대한 반응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냈다. 참여자5는 초등학생인 막내아들에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숨기고자 접견 거부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였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좀처럼 엄마의 수감 사실을 표면화시키지 않는 가족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5의 아들도 엄마의 수감 사실에 대해 모른척 하였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 엄마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엄마에게 수감 생활에 대해 물어봤고 이러한 화제를 불편해하는 가족들의 반응에 화제를 바꾸어버리기도 하였다. 평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어디를 가든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던 엄마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참여자2의 딸은 엄마가 도망을 갔다는 생각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다.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가 알고 있었는데 모른척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 거기에서의 생활은 자유로웠어? 이러는 거예요. 은연중에.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큰 애도 깜짝 놀라고 작은 애도 뭐 하다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고 저도 놀라고 아빠 안 계실때 저희끼리 있을 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 애가 아는데 표현을 안하는 것 뿐이더라구요. 그래서 한번은 제가 둘만 있을 때 물어봤어요. 바울아 근데 엄마가 집에 안왔을 때 어디 갔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웃어요.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엄마는 알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알면서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 그거예요. 좋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참여자5)

많이 상처를 받았겠죠 엄마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 같아요 이제 도망갔다 내가 어느 나라 어디를 가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도망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참여자2)

수감 사실을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녀들이 엄마의 수감 사실을 눈치로 알아내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참여자3의 자녀는 법무부 관할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어렴풋이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는가 하면 참여자5의 자녀는 우연히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낌으로 엄마의 수감을 눈치챘으며 참여자7은 이모와 아빠에게 단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엄마의 수감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애들은 알지는 못하겠네요?) 예 그래도 은연중에, 은연중에 이모들이 언니랑 동생이 있거든요. 얘기를 해서 물어보더라구요 저번에 만났는데 엄마 혹시 구치소 갔다왔냐. 감방 갔다왔냐 얘기를 하더라구요. (큰애가?) 큰 애가. 엄마 외국 돈벌러 저기 지방 갔다고 아니라고. 무슨 얘기 들었냐고 이모가 얘기하는 말 들었냐고. 아빠한테 얘기했냐고. 그런 말은 안했다고. 엄마 뭐 잘못했냐고. 감방 가는 건 잘못해서 가는 건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구요. 아니라고. 엄마 외국 다녀왔다고 잠깐 돈 많이 벌려고 외국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구요..(참여자7)

수감되기 직전까지 저녁밥을 차려주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상황으로 인해 어린 아들은 우울과 불안 증상을 보였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가하면 산책을 나가자는 아빠의 제안도 거절하는 등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야외 활동에 대해 어떤 의욕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족들 중 누구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에 대해 걱정하고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학교 갔다 오면 말을 안 하고 방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고 아빠가 신경 쓰느라고 나가서 여기는 불광천이 있잖아요.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걸으려고 하면 안나가려고 하고…… 그 때는 아빠가 늦는 거에 대해서 되개 찾는대요. 아빠 왜 안들어 오시냐고.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누나는 왜 안와? 그런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참여자5)

> 그 기억이 있더라구요. 할머니가 키웠었다는 거 엄마 어디 갔냐고, 자기 유치원에서 발표회 했을 때 왜 안 왔냐고. 제가 그 때 미안하다고,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그냥 엄마가 집 나가있었던 거라고 미안하다고 얘기 하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그게 또 상처로 남아 있더라고요. 어려서 기억이 안날 줄 알았는데 기억에 있더라구요. (참여자8)

참여자8은 자녀가 본인의 유치원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엄마로 인해 받은 상처를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엄마를 필요로 할 때 함께 해 주지 못한 것으로 인한 미안함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 주제 3. 효과적인 수감 사실 공개 방식에 대한 출소자들의 경험적 제안

#### 영역 1. 자녀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한 공개 수준의 차별화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엄마의 수감 사실 공개 시, 공개 방법과 공개 수준, 자녀의 연령 및 성격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자3의 배우자는 자녀가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수준이 되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엄마의 수감을 둘러싼 환경 및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 경우 전과자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응하지 못하고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직 너무 어렸을 때는 별로 안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상황을 이해는 하는데 주위에 나갔을 때 이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애들이 반응을 못하지 않을까... 주위 반응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결국은 결과로만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괜찮은데 남들은 단순하지만 전과자라는 말로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애들이 지금 성인이 되서 자기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안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참여자3의 배우자)

한편 참여자3은 자녀의 요구 수준에 따라 공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녀가 엄마의 수감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부모의 반응 수준도 달라져야 하며 그에 대한 판단은 자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애들이 물어봤을 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물어봤다는 건데 얘기했을 때 곧이곧대로 얘기를 하면 판단은 자기 몫인 거예요. 일단은 알고서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해 주고 대충 물어봤을 때는 반만 얘기해 주고 지나고 또 물어보면 그때는 자세히 얘기를 해야죠. 얘기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애들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거 아니예요. 나머지 판단은 걔가 하는 거죠, 본인이.(참여자3)

참여자5는 수감 당시 성인이었던 두 딸에게는 자신의 수감 사실을 공개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그 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편하게 나누는 반면 수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막내아들에게는 수감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소한 이후에도 수감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를 두는 이유에 대해 참여자5는 자녀들의 연령과 성향을 언급하였는데 두 딸들은 성인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한 반면 아들은 어리고 성정이 여려서 상처를 받기 쉬워 수감 사실 공개가 꺼려진다는 것이다.

누나들은 되게 강해요. 우리 큰놈이 되게 강하거든요. 큰놈이 무섭게 해요. 큰놈이 엄마나 누나처럼 무서워해요. 아들이……되게 여리다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가면 안 좋을 것 같더라구요.(참여자5)

참여자들은 불가피한 경우 자녀에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 영역 2. 자녀의 요구가 수반되지 않은 자발적 공개는 불필요함

수감 사실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에 있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엄마의 수감 사실

을 모르고 있던 자녀에게 굳이 먼저 엄마의 수감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참여자2는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자녀에게 불필요한 자격지심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수감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참여자8 또한 수감 사실을 몰랐던 자녀들이 이를 알고 기죽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 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고민을 해요. 저희 딸도 아직 몰라요. 당연히 고민을 하지요. 여러 각도로. 저는 안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거니깐.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지요.(참여자2)

> 괜히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일을 괜히 애들까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범죄자래 이러면서 괜히 기 죽을까봐 그런게 싫어요.(참여자8)

또한 참여자3은 '자기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는 있는데 굳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구요.'라고 말함으로써 수감 사실에 대해 물어오면 밝힐 수는 있으나 굳이 먼저 공개할 의지는 없음을 표현하였고, 참여자2는 자녀에게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숨긴 것처럼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굳이 자녀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7은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현재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자심감을 잃어버린 자신을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까지 그 멍에를 지워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자신의 인생에 생겨버린 원치 않는 '빨간 줄'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나쁜 길로 빠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 그런 얘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렇게 됐다면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미 지금 다 따로 되어있고 이혼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시 이런 얘기를. 만약에 아이가 잘못돼서 혹시나 아이가 나쁜 짓을 해서 웬만하면 말할 수 있겠지만 왠만하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되게 느낀 건 뭐냐면요. 사회에서나 아무리 거기 갔다오면 인식이 되게 안 좋게 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따가운 시선? 제가 아무리 인상 좋고 이랬는데 성격 좋다고 해도 사람을 알기까지는 힘든 거죠. 편견?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만 결국에는 저한테는 찍힌 거잖아요. 빨간 글씨가 있는 거잖아요. 빨간줄이 그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축은 있어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데.

당당하게 사는데 약간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주변에서 좀 들어요. 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하는데 직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착하긴 한데 자신감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참여자7)

참여자6은 수감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자녀들을 친정엄마가 키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불행감을 느끼고 일탈을 일삼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컸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아빠를 원망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엄마의 수감 사실까지 알리게 되면 자녀들이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할까봐 수감 사실 공개가 두렵다고 하였다. 참여자9와 자녀에게 있어 수감은 떠올리기도 싫은 무섭고 가슴 아픈 기억일 뿐이기 때문에 수감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지나간 아픔을 들추어내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5년 동안에 그 들어가는 경험에 대해서는 아이랑 이야기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묻고 가려고. 그냥 얘기해봐야 가슴 서로 간에 아플 것 같고. (이런 이야기 그 때 니가 힘들었을 거라는 이야기. 그 때 엄마가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그 얘기도 일단 지나간 일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도 가슴이 아픈가봐요. 근데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게. 과거의 일이라.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 얘기해봐야 서로가 가슴 아프고.(참여자9)

참여자8은 '성인이 됐을 때에는 뭐 하지만 이제 특히 중, 고등학교 때에는 더더욱 몰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여 예민한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성인기에는 수감 사실을 알아도 상관이 없지만 사춘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 수감 사실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공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영역 3. 자녀의 건강한 정서적 · 심리적 발달을 위한 공개의 필요성

참여자들 중에는 자녀의 건강한 정서적 · 심리적 발달을 위해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참여자4는 엄마의 수감에 대한 충격으로 울기만 하던 자녀가 엄마가 수감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함으로써 밝아지는 아들을 지켜보며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자녀에게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 충격이 커서 오기만 하면 막 울었어요. 4주 정도 매주 면회 올 때마다 울더니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되네 그러면서 날짜 세고 밝아지더라구요. 아주 어리면

모르는데 초등학교 4,5학년, 중학생들은 이해하고. 그때 잘 못 가르치면 더 비뚤어진다고 하더라구요.(참여자4)

참여자5 또한 참여자4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엄마의 부재 이유에 대해 왜곡된 상상을 하도록 방치하기보다 엄마의 수감을 둘러싼 제반 상황과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때 그 상황이 또 오면 그 때는 아들한테도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보고 머릿속에 혼자 상상하도록 놔두는 것보다 그냥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왜 이럴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주고……(참여자5)

한편 참여자6은 엄마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수감으로 인해 가족이 떨어져 있던 기간에 받았던 상처를 가족 안에서 다루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얘기는 안 해봤지만 저는 생각을 저대로 계획이 뭐냐면 입주 날짜를 받아 놓으면 받기 전에 그때까지 남편도 괜찮아지면 약간이라도 더 나아지면 가족끼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떨어져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한 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저에게는 상처인데 아이들이 됐든 남편이 됐든 언젠가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가책의 동물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려고……(참여자6)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험적 조언은 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수감 사실 공개 방식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엄마의 수감 사실 공개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공개여부, 공개 또는 비공개 과정에서의 경험을 나타내는 핵심개념, 수감 및 출소와 관련된 전체 맥락을 고려한 사례 분석으로 정리하면 <표 3.18>과 같다.

<표 3.18> 주거지원 여성출소자 가정 내 자녀에 대한 수감 사실 공개 및 비공개 경험에 대한 사례 내용 분석 결과

| 사례 | 공개 여부 | 핵심개념 | 사례 분석 |
|---|---|---|---|

| | | | |
|---|---|---|---|
| 1 | 비<br>공<br>개 | • 폭행(집행유예)<br>• 지금은 자녀들이 어려서 밝히지 않았지만 성장하면 험한 세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엄마의 수감 경험에 대해 말해 줄 생각임 | - 엄마와 운영하던 피부관리실 종업원과의 폭행 사건 발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br>- 수 차례의 재판과 두 번의 유산,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 정신적 충격<br>-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이기적인 태도, 변호사를 비롯한 법 체계에 대한 큰 실망을 경험함<br>- 범죄 사실에 연루되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다시 큰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으며 견디지 못했다면 자살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br>- 역경을 극복하는데 있어 자녀들, 친정엄마, 배우자의 존재가 큰 힘이 되어줌<br>- 스스로 당당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엄마의 경험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함.<br>- 엄마의 수형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녀들에게 험한 세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함 |
| 2 | 비<br>공<br>개 | • 사기(8개월)<br>• 빚쟁이들을 피해 외국에 있는 친구 집에 피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딸은 엄마가 도망간 것으로 오해하고 상처를 받음<br>• 현재 딸은 엄마의 수감 사실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으며 자녀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생각이 없음 | - 환율 변동으로 인해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채를 썼으나 결국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8개월 형을 선고받음<br>- 수감을 직감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자녀는 이를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된 메시지로 받아들임<br>- 수감으로 인한 부재에 대해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에 있는 친구 집에 피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어지자 딸은 엄마가 도망을 간 것으로 오해를 하고 큰 상처를 받음<br>- 수감 당시, 처음에는 단골 고객들을 비롯하여 자신이 호의를 베풀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으로 수감이 매우 억울하게 느껴졌으나 수감과 관련한 동료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이상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됨<br>- 수감 기간,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친정엄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깨닫는 한편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됨<br>- 이혼으로 자녀를 양육해줄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친정어머니가 자녀들의 양육을 맡아 줌 |

| | | | |
|---|---|---|---|
| | | | -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딸에게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그런 엄마로 인해 상처받을 딸에 대한 걱정으로 딸과의 접견을 거부함<br>- 출소 이후 현재까지 딸은 엄마의 부재가 재판을 받기 위해 잠깐 집을 비운 정도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으며 굳이 자녀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으며 공개적으로 수감 사실을 밝힐 생각도 없음 |
| 3 | 비<br>공<br>개 | • 사기(8개월)<br>•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엄마의 수감 사실을 설명함<br>• 출소 후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자녀들 모두 대충은 알고 있는 상태임 | - 입양된 배우자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시댁 식구(시누이)의 고소로 친구에게 부채를 지게 됨<br>- 연대보증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게 되었으며 결국 친구의 오해를 사게 되어 사기죄로 8개월형을 선고받음<br>- 수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친한 친구의 고소라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고 어이가 없음<br>- 수감 당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들들에게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림<br>- 출소 후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자녀들 모두 대충은 알고 있는 상태임<br>-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자녀들이 위축되고 상처받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엄마의 수감사실을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음(아빠의 입장)<br>- 엄마의 수감 경험에 대해 알고자 하면 공개할 수는 있으나 자녀가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 및 요구 정도에 따라 그 수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자녀의 몫이라 생각함(엄마의 입장) |
| 4 | 일부 자녀에게 공개(고등학생 딸에게는 공개, | • 사기(10개월)<br>• 딸은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나 아들에게는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고자 함<br>• 엄마의 부재에 대해 계속해서 묻 | - 2007년 IMF로 인해 배우자의 인테리어 사업 부도로 빚을 지게 되었으며 돈을 갚지 못하자 친한 언니가 고소를 함으로써 사기죄로 10개월 형을 받게 됨<br>- 처음 수감이 되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어 눈물만 흘렸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 곳에 잡혀온 사람들도 착하고 순수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br>- 딸은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나 아들에게는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고자 함.<br>- 엄마가 집을 비운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엄마의 부 |

| | | | |
|---|---|---|---|
| | 초등학생 아들에게 비공개) | 는 아들에게 아빠가 술을 먹고 재판이 끝나면 돌아올 거라 설명해 주었으며 누나도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해 줌 | 재에 대해 계속해서 묻는 아들에게 아빠가 술을 먹고 재판이 끝나면 돌아올 거라 설명해 주었으며 누나도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해 줌<br>- 엄마의 부재 기간이 3, 4개월 지속되자 아들은 PC방과 놀이터를 전전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엄마를 보여 달라며 아빠에게 울며 떼를 쓰는 아들과의 접견을 결정함<br>- 접견 이후 한달 가량 눈물만 흘리던 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엄마의 출소 날짜를 기다리며 매우 밝아짐<br>- 엄마의 수감으로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총 학생회장까지 했던 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은 공부할 시기를 놓치자 중학교 진학 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음<br>- 수감 전 엄마와 살가운 관계를 유지하던 아들은 출소한 엄마를 보고 한동안은 쑥스러워하고 짜증을 내는 등 전에 없던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감 전 관계로 회복됨<br>- 너무 어린 자녀들에게는 조심스럽지만 초등학교 4,5학년 내지 중학생 연령의 경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
| 5 | 일부 자녀에게 공개 (성인 딸에게는 공개, 초등학생 아들에게는 비공개) | • 업무상 배임(21개월)<br>• 체포장면을 목격한 두 딸들은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막내 아들에게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운 것으로 엄마의 부재를 설명<br>•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상황으로 인해 어린 아들의 불안 수준은 매우 높아졌으 | - IMF로 어려워진 가정 경제 상황으로 인해 보험 회사에 취직하였으나 편법을 통해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업무상 배임으로 21개월형을 선고받음<br>- 구속은 물론 구속되는 엄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잠적하였으나 결국 딸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당함<br>-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에게는 수감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일 때문에 엄마가 집을 비운 것으로 알림<br>- 장성한 딸들과는 수감 사실이나 경험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어린 아들에게는 끝까지 비밀을 유지함<br>- 아들에게는 엄마의 수감 사실을 숨겼지만 아들은 이미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모른척 |

| | | | |
|---|---|---|---|
| | | 며 공부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됨 | 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br>- 수감되기 직전까지 저녁밥을 차려주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상황으로 인해 어린 아들의 불안 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며 공부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됨.<br>- 만약 수감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두 딸들은 물론 아들에게도 수감 사실을 알릴 생각이 있음. 엄마의 부재 이유에 대한 왜곡된 상상으로의 방치보다 상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이해가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됨 |
| 6 | 공개 | • 사기(3년)<br>• 자녀들은 집안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음<br>• 엄마의 수감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로 자녀들은 불행감을 느낌 | - 주식을 하며 지인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사촌 손위 형님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피소, 3년형을 선고 받음<br>- 수감기간 자녀의 주양육자는 친정어머니였으며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을 만남<br>- 자녀들은 집안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음<br>- 수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이었던 자녀들에게서 엄마의 수감이 가져온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의 지나친 감정 통제를 비롯하여 둘째의 충동적인 일탈 행동때문에 속을 썩고 있음<br>- 부모의 이혼, 나이든 할머니의 양육, 아빠의 방황 등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에 대해 아이들은 불행감을 느끼고 있음 |
| 7 | 비공개 | • 사기(8개월)<br>• 엄마의 부재를 외국출장으로 설명함<br>• 수감 기간 중 아이들을 보고 싶었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대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음<br>• 출소 후 엄마의 수감 사실에 대해 | - 배우자의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취업한 곳이 불법 대출 사기 조직이었으며 이곳에서의 활동 이력으로 8개월형을 선고 받음(사기)<br>-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용서하고자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됨<br>- 자녀의 주양육자는 시어머니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함<br>- 자녀에게는 외국 출장을 간 것으로 엄마의 부재 이유를 설명함<br>- 수감 기간 중 아이들을 보고 싶었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대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수감된 |

| | | | |
|---|---|---|---|
| | | 물어오는 자녀에게 끝까지 수감 경험을 밝히지 않음 | 엄마의 모습에 상처받을 아이들에 대해서도 걱정됨<br>- 출소 후 엄마의 수감 사실에 대해 물어오는 자녀에게 끝까지 수감 경험을 밝히지 않음<br>- 아빠의 폭력성으로 인해 심적으로 위축되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안타깝고 자녀에게 미안함 |
| 8 | 비공개 | • 살인미수(4개월)<br>• 엄마와 아빠의 다툼으로 엄마가 집을 나가있었던 것으로 엄마의 부재 이유를 설명함<br>• 수감되어 있는 엄마의 모습이 기억에 남을 것에 대한 염려로 수감 기간 자녀와의 접견을 피함 | - 배우자의 내연녀에게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로 4개월 형을 선고받음<br>- 4개월간의 수감 경험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br>- 엄마와 아빠의 다툼으로 엄마가 집을 나가있었던 것으로 엄마의 부재 이유를 설명함<br>- 유치원 발표회에 엄마가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할 정도로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부재가 큰 상처로 남아 있음<br>- 수감되어 있는 엄마의 모습이 기억에 남을 것에 대한 염려로 수감 기간 자녀와의 접견을 피함<br>- 자신의 수감 사실이 자녀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br>- 수감으로 인한 부재 기간에 자녀들은 어둡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나 현재는 거의 회복된 상태임<br>- 수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비밀로 유지할 것이며, 더욱이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생각임 |
| 9 | 공개 | • 존속살인(5년)<br>• 딸이 엄마의 재판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엄마의 수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아버림<br>• 수감 기간 딸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였으며 | - 알코올 중독으로 생업을 포기한 배우자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잦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 존속살인죄로 5년형을 선고받음<br>-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엄마의 재판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엄마의 수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아버림<br>- 고아원으로 갈뻔한 딸을 친정언니가 맡아서 키워줌<br>- 수감 기간 딸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등교거부, 반항적 태도 등을 보임<br>- 딸은 왕따를 당하는 등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

| | | | |
|---|---|---|---|
| | | 출소 이후에도 등교거부, 반항적 태도 등을 보임 | 경험하였으며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함<br>- 수감 기간 딸과 2번의 면회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엄마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점, 엄마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딸에게 미안함을 표현함<br>- 천주교 단체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대학교 등록을 하였으나 일주일밖에 다니지 않고 휴학을 하는 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함. 그러나 딸은 이 모든 것이 엄마때문이라 말하고 있으며, 엄마는 딸의 가슴에 남아 있는 응어리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픔 |

## 다. 요 약

이상을 통해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의 출소경험(범죄사실)이 가정 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첫째,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의 수감 및 출소 경험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예상치 못한 수감을 경험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처음 저지른 범죄로 겪게 된 수감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곳에서 참여자들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교훈을 얻는가하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하였다. 출소 후 참여자들은 자신 및 가족에게 새겨진 낙인, 수감사실로 인한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모두 자녀가 있는 어머니였는데, 모두 수감 전에는 자녀를 직접 키웠으나 수감 이후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양육되었다. 엄마가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자녀들은 가출, 등교거부, 방황을 하며 갈피를 못잡고 헤매기도 하고 어린동생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애쓰거나 엄마의 수감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또한 아내의 수감 기간 동안 배우자는 생계 책임에 육아의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외로움과 비참함, 괴로운 마음을 느낀다.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외도를 하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방황을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출소 후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하며 가족뿐 아니라 수감 기간 동안 믿고 기다려 준 지인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특히, 여성출소자들은 종교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사회적인 관계망을 튼튼히 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무엇보다 공단의 지원은 여성출소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에서 여성 출소자들에게 지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주거지원, 자립의 길을 열어준 공단의 창업지원,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 표현하였다.

둘째, 주거지원 여성 출소자 자녀에 대한 수감 사실 공개 및 비공개 경험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출소자 가정들은 자녀가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아는데 대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으며, 가능한 한 이를 숨기고 싶어 하였다. 또한 수감사실을 공개한 가정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와 아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 환경에 처한 가정의 경우 술을 먹은 아빠가 엄마의 수감 사실을 털어놓는가 하면 수감 사실 공개 여부를 두고 고민할 여지도 없이 자녀들이 엄마의 수감 사실을 알아버린 가정도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자녀에게만큼은 부끄러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당시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수감 사실을 비공개한 가정의 경우, 참여자들은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수감 사실에 대해 자녀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고 따라서 자녀에게는 엄마의 개인적인 일, 출장, 입원, 도피 또는 아빠와의 다툼때문에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면서 엄마의 수감 사실 공개를 꺼렸다. 자녀로 하여금 엄마의 수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각 가정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수감 기간 엄마로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해 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을 자녀에 대한 걱정, 엄마로서의 부끄러움은 자녀에게 수감 사실을 꺼리는 모든 참여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었다.

효과적인 수감 사실 공개 방식에 대해 출소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엄마의 수감 사실 공개 시, 공개 방법과 공개 수준, 자녀의 연령 및 성격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불가피한 경우 자녀에게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수감 사실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에 있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엄마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있던 자녀에게 굳이 먼저 엄마의 수감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반대로 참여자들 중에는 자녀의 건강한 정서적 · 심리적 발달을 위해 엄마의 수감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험적 조언은 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수감 사실 공개 방식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엄마의 수감 사실 공개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를 통한 제언

### 가.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핵심내용

1) 가족희망센터에 대한 심층면접 핵심내용

| | 심층면접 내용 | 핵심내용 |
|---|---|---|
| 여성출소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 저도 모르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인제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대상자 6)<br>일단은 엄마로서 해야 할 도리를 못 했다는 거죠. 부모로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죠 뭐. 일단은 빨래고 먹을 거고 간에. 일단은 지가 어렵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런 것도 혼자서 견뎌내야 했고.(대상자 9) | 자녀에 대해 엄마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미안함 |
| |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대상자 2)<br>구치소에 3개월 수용됐을 때도 아이들한테 말 안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상처줄까봐. 아이들은 항상 자라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처주기 싫었어요.(대상자 7)<br>근데 그 때 상황에서는 만나서도 그다지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엄마로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자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로 인하여 쟤가 고통 받는데. 항상 말문이 막힌다는 거겠죠.(대상자 9)<br>가장 제가 몹쓸 짓했는데. 지금 이제 그 후유증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이들이.(대상자 6) | 엄마의 수감으로 상처 받았을 자녀에 대한 죄책감 |
| |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죄를 지었었고, 그러면 애들이 혹시라도 삐딱하게 나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죠 항상.(대상자 8) | 자녀들에게 범죄가 대물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
| | 가족면회 있잖아요. 아무도 데리고 오지마 아무도 안 볼꺼야 언니 그래도 애들.. 싫어 데리고 오지마. 자존심 상하잖아요...(참여자2) | 수감에 대해서 자녀에게 수치심을 느낌 |
| | 딸에 대해 바뀐 게 있다면...고마움...(대상자 2)<br>방황은 순간적으로 했지만 나쁜 길로 안 빠져서. 지가 대학 가려고 알바도 뛰는 거 보면 고맙죠.(대상자 9) | 수감 기간중 잘 버텨준 자녀에 대한 고마움 |
| |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좋은 얘기만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니가 날 얼마나 봤는데? 의심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대상자 3) | 세상과 사람에 대해 불신 |
| | 출소하고 나서 바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은. 왜냐하면 거부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 안 믿게 되고, 다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큰 일을 겪어서 그런지 다 벽을 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대상자 8) | 출소직후 심리 상담에 대한 거부 반응 |
| |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남편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망가지고... 그니까 자기 관리도 안 되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하여튼 외모도 거의 한 20년은 늙어 보이고 그런 거요. (대상자6) |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 |

| | | |
|---|---|---|
| 배우자 심리 상담 프로그램 | 남편도 솔직히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 있지만 본인은 지속이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 힘든 생활이 반복이 되가지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하여튼 외모도 거의 한 20년은 늙어 보이고 그런 거요.(대상자 6) | 아내의 수감에 대한 충격으로 남편의 생활이 무너짐 |
| | 네 우울증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조울증 있는 거 같아. 그러더라고요.(대상자 6) | 아내의 수감으로 남편이 우울증이 생김 |
| | 비참했죠...내가 능력이 있고 경제적 좀 많이 저기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미안하죠...풍족하게 했다가 그냥 풍족하게 생활하면서 그렇다면 좀 저긴데 같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좀 안 좋죠.(대상자 3 배우자) | 아내의 수감으로 인해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책하는 남편 |
| | 남편이 또 남편이 공증을 서줬기 때문에 남편 월급에서 (차압이?) 네 (그러면 또 회사에서 알려지기도 하고) 당연히 알려졌죠. (사모님의 이런 사실들도 회사에서) 주변에서 알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진짜 많이 망가졌더라고요.(대상자6) | 아내의 수감으로 남편을 대하는 외부의 부정적 시선 |
| 부부 심리 상담 프로그램 | 큰 일을 사람이 겪어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내 신랑밖에 없구나. 그거를 되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br>이제는 표현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저를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요 저를. 그러니까 예전에 잃었던 자신감도, 자존감까지도 확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내 존재의 가치도 좀 올라갔고, 그러더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니까.(대상자 8) |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
| | 부부상담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이혼 직전 위기 사람들이예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나쁜 짓을 안하게 되고. 그런 걸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상자 1) | 범죄사실로 인해 이혼의 기로에 놓인 부부 |
| 부모 교육 프로그램 |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교도소에. 근데 저는 안 받았는데.어머니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울면서 들어와요.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 그런 게 평범화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대상자 6) | 수감 중 뿐만 아니라 출소 후에도 부모교육 받고 싶음 |
| | 근데 또 출소 후에는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이라고 하면 꼭 출소라는 게 붙잖아요. 차라리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하는 데 대한. 안내도 필요하지만 회원증을 끊어준다든지 그게 낫지 일반인처럼. 구분 못하게. 출소 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남편 만약에 이들이랑 살고 있을 때 이런 게 있으면 해보자고.(대상자6) | 일반인과 구분되지 않는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싶음 |
| | 지금 애들이 중1이면 중1, 중2면 중2 때 부모가 자녀들한테 해야 할 행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부모 된 입장이나 처신할 자세도도 배우고...(대상자 3)<br>아!~ 아주 어리면 모르는데 초등학교 4,5학년, 중학생들은 이해하고. 그때 잘 못 가르치면 더 비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자 4) |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교육의 필요성 |

| | | |
|---|---|---|
| **수감 사실 을다 루는 방법** | 모르겠어요. 애들이. 걱정이에요 사실. 구치소에서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제 죄명이. 살인미수라는 게. 저 같아도 좀 그럴거 같아요. 되게 큰 짐이에요. 짐 덩어리. 저한테는. 후회도 너무 많이 되고...(대상자 8)<br>구치소에 3개월 수용됐을 때도 아이들한테 말 안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상처줄까봐. 아이들은 항상 자라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처주기 싫었어요. 엄마가. 결국엔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었던.(대상자 7) | 초등생 자녀들이 입을 상처에 대한 염려로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음 |
| | 아빠가 엄마가 10개월만 있다 온다 그랬는데 어디 있냐고 계속 그러니까 누나가 얘길 했대요. 재판 끝나고 온다 했는데...아빠가 술 먹고 얘길 했대요.<br>충격이 큰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루도 살을 안비빈 적이 없는데 한 3,4개월 안본 사이에 집에 안들어 왔대요. 학교 끝나고 PC방 놀이터에 있고...(대상자 4) | 엄마의 부재를 궁금해 하는 중학생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공개함. |
| | 큰 애가. 엄마 외국 돈 벌러 저기 지방 갔다고 아니라고. 무슨 얘기 들었냐고 이모가 얘기하는 말 들었냐고. 아빠한테 얘기했냐고. 그런 말은 안했다고. 엄마 뭐 잘못했냐고. 감방 가는 건 잘못해서 가는 건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엄마 외국 다녀왔다고 잠깐 돈 많이 벌려고 외국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대상자 7) | 엄마의 부재에 대한 초등생 자녀의 혼란 |
| **자녀 심리 상담 프로 그램** | 저희 아이가 생각을 해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일단은 불행하잖아요. 지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비슷한 형편 아이들이랑 어울리려고.(대상자 6) | 자녀가 자신에 대해 불행하다고 느낌 |
| | 일단은 애가 성장이 왔잖아요. 머리가 좀 컸잖아요. 반항을 좀 하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대상자 9)<br>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유리창도 몇 번을 여자애가 주먹으로 깼어요.(대상자 6) | 사춘기 자녀의 반항적인 행동과 일탈 |
| |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그냥 엄마가 집 나가있었던 거라고 미안하다고 얘기 하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그게 또 상처고 남아있더라고요. 어려서 기억이 안날 줄 알았는데 기억에 있더라고요.(대상자 8) | 자녀에게 남겨진 어린시절 엄마의 부재에 대한 상처의 흔적 |
| | 큰 애는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너희 엄마가 없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애가 조금 그 때서부터 한 몇 년... 2,3년 동안은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랄까? 그런 게 조금 강하게 있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한다 그런...(대상자 3) | 큰아이에게 엄마가 없는 동안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김 |
| | 학교 갔다 오면 말을 안 하고 방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고...자기 의견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무슨 계기가 되서 우리 작은 딸이 엄마 OO이는 심리치료 하는데 데리고 가 봐야 할 것 같아, 말을 해야 하는데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뒤에 해야 할 말을 앞에 한다거나 결론만 딱 얘기를 해요.(대상자 5)<br>둘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힘들어도 그거를 그냥 넘어가버리는데 첫째는 그렇지 못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자꾸 꽁꽁 앓고 있고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 | 엄마 수감으로 자녀들이 예민해지고, 말도 없어지고, 아두워짐 |

| | | |
|---|---|---|
| | 요.(대상자 7)<br>그 때 4살 5살, 그러니까 2008년에 들어가서 2009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바로 광명시로 하면서 광명시에 있을 때, 애들이 특히 큰 애가 성격이 말이 없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많고 애교도 많고, 바뀌었죠.(대상자 8)<br>성격이 많이 나빠졌어요. 나빠졌다기보다 우리 딸이 외향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일대일로 하면 하긴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대요.(대상자 4)<br>제가 들어가 있을 때부터 애들이 이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도 예민하게 두리둥실 지내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어지고, 화도 잘 내고 막 좀 약간 원래 애들이 밝잖아요. 어린이들은 장난도 잘치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자 8) | |
| | 예뻐하고 그랬는데 충격이 큰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루도 살을 안 비빈 적이 없는데 한 3,4개월 안본 사이에 집에 안 들어왔대요. 학교 끝나고 PC방 놀이터에 있고, 오히려 저를 면화하고 가서는 친한 친구한테 우리 엄마가 나랑 떨어져 있어서 속상하다 친구랑 상담을 했다 하더라고요. (대상자 4) | 엄마의 부재에 대해 자녀가 충격받고 속상해함 |
| | 아이들도 상담을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없는 동안 상담을 받았는데. 홈주니어한테 받았는데 그게 조금 딱 일시적이더라고요. 한번만 받았거든요 상담을 여건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대상자 7) | 상처받은 자녀에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 |
| **자녀 학업 및 진로 지도** | 영향을 줬어요. 공부를 못하는 거죠. 집중을 해야 하는데 모든 생각이 엄마한테 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대상자 5)<br>저희 딸이 그때 제가 갔다 와서 딸하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죠. 얘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얘는 오해를 했었잖아요. 저한테. 성적이 그렇게 못하던 애가 아니었는데 와보니까 세상에 살이 한 10kg가 쪄있고, 끝에서 4등이더라고요. | 엄마의 수감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은 자녀 |
| | 작년에 애들 가르치는 거, 방학 때 하는 거 그거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저희 신랑이 애들 학원을 보낼 정도로는 그렇게 많이 못 벌었었거든요. 두 학기를 도움을 받았어요. 더 받고 싶었는데 그게 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는데.(대상자 8)<br>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엄마 과외비가 너무 비싸니까 안 돼겠지? 우리가 과외를 시킬 정도로 여유는 없고...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부탁을 해 놨어요. 계장님한테. (대상자 4)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원이나 과외를 못하고 있었는데, 공단의 자녀 학업지원이 도움이 됨. |
| | 지금 하고 있는데 키다리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하시는 선생님이 11월이면 수업이 끝나요. 그거는 일 년에 한번밖에 안된대요.(대상자 3) | 자녀 학업지원이 곧 끝나며 일년에 한번밖에 되지 않는데에 대한 아쉬움 |
| | 이 애가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첫인상이 그래요 뭔가 꿈을 심어주자.(참여자6) | 대학생 연결 학업지원 프로그램시 |

| | | |
|---|---|---|
| | |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체능 부분으로 확대될 필요 |
| | 우리 때는 가나다라... 아닌가? 수우미양가 그걸로 성적이 매겨졌는데 요즘에는 절대평가 뭐 해서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대상자 3)<br>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상주를 하시는데 애들이랑 일대일로 해서 무슨 고민으로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그렇게까지 디테일로 해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와서 애들이 떠들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우리 때하고는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그게 많이 다르고 어떻게 해 줄지 모르겠어요.(대상자 3) 꿈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닌 상태에서 애가 부모로부터 보고 배워야 하잖아요. 배울 수가 없잖아요.(참여자8) | 자녀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대학생 멘토가 필요 |
| |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이 데리고 못갈 경우에 있잖아요. 식당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은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서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것을 상상을 못하신데요. 그러면 얘가 대신 데리고 가서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고 콘서트도 갈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공부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진짜 교회 뭐 친 누나. 오히려 친 누나 형제자매는 그런 것을 못해요. 그러니깐 평범하게 객관적으로 넌 무엇을 좋아하냐 하면 같이 뭐 산책도 갈수 있는거고. 그렇잖아요.(대상자 2) | 일상에서 부모와 같이 누리지 못하는 문화생활등에 대해 함께 해줄 존재가 필요함 |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심층면접 핵심내용

| | 심층면접 내용 | 핵심내용 |
|---|---|---|
| **주거 지원** | 저희가 사는 집에는 LH라는 그 표가 붙는데요. 그럼 이게 나중에 애들이 나이가 먹고 이러면 주홍 글씨잖아요. 저 집 그걸 거야.(대상자 6)<br>현관문에 보면 LH나 주거지원이 써져 있잖아요. 붙어져 있잖아요. 공문같은 게, 저도 그게 되게, 누가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 나갔다 들어올 때는 누가 볼까봐 저 나름대로 소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그러는데, 조금 더 크면 애들이 그걸 읽어보고 우리가 나라에서 그런 걸 받는다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럴까?(대상자 8) | LH 퐛말이 주홍글씨처럼 여겨지고 이를 보고 나중에 아이들이 수감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 |
| |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쨌든 집은 있어야 되는데 재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거가 참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살다 보면.(대상자 6) | 거주지역이 변동되면 다시 못 받는 주거지원에 대한 불편함 |

| | | |
|---|---|---|
| | 보증금식으로 처음에 돈 그건 차라리 살면서 갚게 하는 거 아니면 2년 후에 다 갚는 거 그런 거가. 왜냐면 솔직히 나와 가지고 집은 절실한데 그 몇 백을 모으려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대상자 6) | 주거지원 보증금 분할 납부의 필요성 |
| |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이 있어야 도움을 주고. 특히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받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거지원을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민등록상에만 아이들이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주말에는 제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엄마 아버지 집에도 가고 동생 집에도 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은 혼자만 주거지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대요. (대상자 7) | 현재 지원되지 않는 이혼한 여성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의 개선 |
| **취업/ 창업 지원** | 제 나름대로 미용기술 자격증이라도 딴 게 나중에 미용실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따고 일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걸리더라고요.(대상자 8) | 수감 중 자격증 취득시 출소후 나이에 따른 취업정보가 고려되어야 함 |
| |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하고 직장을 들어가게끔 해야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직장을 서류를 내도 저는 서류를 두 번을 내봤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니깐 안 뽑아요.(대상자 2)<br>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여기 고객센터를 어떻게든 다니고 싶어가지고 다니려고 했는데 못 다녔어요. 스카이라이프였거든요. 근데 이미 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죠.(대상자 7) | 출소후 여성출소자 취업시 범죄경력으로 인한 어려움 |
| | 창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공단에서 그 얘기는 있었어요. 창업자금을 삼천인가 오천까지는 융자를 해준다고. 근데 그건 삼천에서 오천이라는 거는 보증금을 해주는 거지 시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안되는거예요. 그 때도 한번 조그만 떡볶이 집이라도 하려고 알아봤었는데 삼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아도 시작을 하려면 숟가락도 사야 되고 젓가락도 사야 되고...어차피 창업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제일 기본적인 것도 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돈 오백이 없어서 신청을 안했거든요.(대상자 3) | 현실적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금 지원의 확충이 필요 |
| **경제적 지원** | 도시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다 감면을 해주다고 하면 다 거기 갈 것이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30%든 50%든 감면을 해주면 조금 더 낫더라고요. 세금문제, 경제적인 거 그게 제일 커요. 솔직히 여자들은 거의 다 경제 사범인데 돈 때문에 엮여서 들어온 사람들인데...(대상자 3)<br>제가 솔직히 지금 50만원 벌거든요. 5,60버는데 그 돈 가지고 아이들 할머니가 옷이나 이런 거 사주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옷 사주고 가방사주고 학용품 좀 사주고 하면 먹을 거 먹을 거 해주면 30만원 깨져요. 그럼 제가 모을 돈이 없어요.(대상자7) | 공과금 및 자녀양육비와 같은 생활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 |

| | | |
|---|---|---|
| **자녀 학비 지원** | 심리상담보다는 학교. 원하는 게 학교거든요. 대학. 그거를 지원하고 싶어요.(대상자 9) | 여성출소자들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필요 |
| **공단 시설 확충** | 거기 전화를 했더니 남자 분들 상대로 여자분들 있을 수 있는 곳은 수원밖에 없대요. 여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버린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상자 5)<br>네. 그리고 여자 센터는 여기 하나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좀 아니지 않아요?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은 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적어도 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대상자 6) | 여성 출소자를 위한 여성지원센터 시설의 확충 |
| **공단 지원 프로그램 홍보** |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혀 몰랐었어요. 알았으면 바로 하고, 좀 더 빠른 시간에 정신을 좀 차렸겠죠.(대상자 8)<br>이게 제가 어디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출소자가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게 선전이 돼요.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전단지가, 광고지가. 그러는 좀 그게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분명히 아니거든요 와보면, 스스로 자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대상자6)<br>여자가 출소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전화한건 자기가 25년 하면서 처음이래요. 결혼식 올린 후에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대상자 8) | 여성출소자 자녀에 대한 진로 및 학업상담, 합동 결혼 지원등 공단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의 필요성 |
| **공단 지원 확대** |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위자료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도움 받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아이들한테도 도움을 받으려고 아동학대 이런 부분도 알아봤는데. 경찰 쪽에 전문기관에 알아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자 7) | 법률 상담에 대한 필요성 |
| **종교 활동** | 그때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힘들 때 항상 교회에서 기도 그 쪽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너무 힘들 때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게 오늘 지나가면 내일 오고 오늘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들으면서 오늘 하루 힘들었어도 하루하루 오잖아요. 그런 말 좋은 말을 되새기면서 많이 인내를 했죠. 아이들이 많이 이제 저 못 보는 동안 아이들을 많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대상자 7)<br>자기 믿음이 좀 있어야 해요. 우리 아들도 종교감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딸이 미션 스쿨 다녔는데 총학생회 나가려면 엄마아빠가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저희도 교회 나간 지 얼마 안됐죠. 아들 데리고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를 다닌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엄마 없어도. 그런데 교회가면 엄마 소식을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친구따라 교회를 옮긴 거예요. (대상자 4) | 여성출소자에게 종교는 역경 극복의 힘 |

3) 법무부에 대한 심층면접 핵심내용

| | 심층면접 내용 | 핵심내용 |
|---|---|---|
| 가족 접견 | 잊어버려요. 제가 아이가 진짜 요만했을 때 왔는데 점점 더 커있고. 그 저도 1년에 한두 번 몇 번 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낯설더라고요. 가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대상자6)<br>일단은 가족 같은 경우에 자꾸 관계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이 서먹서먹하게 힘들어하지 않게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게 어렵더라고요. (대상자 9)<br>접견 횟수도 그렇고 전화도 10분?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게 만남이라든지 이런 횟수가 있으면 되는데 단순히 5분 10분 보려고 멀리서 몇 시간동안 오는 게 안타깝긴 했어요. 경상북도에서 눈 오는데 5시간 걸리는데 눈 오는데 24살짜리 동생이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청도에서 오시더라고요. 청송에서 그쪽에서 오시는데 10분 보려고 오시더라고요. 접견 시간이 너무 짧고 안타까웠죠. 그런 부분이(대상자 7) | 수감 기간 중<br>여성출소자와 가족과의<br>접견의 시간과 횟수를<br>늘릴 필요성 있음 |
| 자녀 양육 시설 | 그 당시에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시설 같은 게 있었으면 그 쪽에는 교육 쪽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대상자 9) | 수감기간 중 보호자가<br>없는 자녀를 양육해 줄<br>수 있는 시설이 필요 |
| 수감 중 자녀 지원 | 그 때요?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는 게 좋죠. 아침에 일찍 와서 아이를 깨워준다거나 엄마 자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은 낫겠죠.(대상자 3)<br>누군가가 나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해가지고 연필을 하나 사들고 가서 학용품 지원이 된다든가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빨리 거기서 적응을 하고 더 성실하게 살 수도 있겠죠. '자매결연... 누군가 한명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대상자 3)<br>준비물이 뭐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못해요. 문방구 가서. 이 얘기도 못 하는 게 남자들이예요. 엄마라든가 이모들이 가서... 요즘에는 일주일치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 과제물을 준비하게끔 나와 있어요. 남자들은 보여줘도 못 찾아요. 그거를... 근데 여자들은 전화를 하든가 문방구 가든가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라도 본다구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됐던 거 같아요.(대상자 3) | 수감 중 엄마 손이 가지<br>못하는 자녀에게<br>학교생활 돌봄 서비스의<br>필요성 |
| 수감 중 사회 복귀 지원 | 장기수감자들은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한식 중식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단기수감자는 못 받아요.(대상자 4) | 장기수처럼<br>단기수에게도 수감 중<br>전문 교육 기회 확대<br>필요성 |
| 출소자 신분 보호 | 거기 있다가 나오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제 기록이 뜨는 거예요. 안 뜨는 게 좋은데...상담원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이게 뭔가...(대상자 3) | 출소자 신분에 대한<br>노출 우려 |

## 나.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연구에 따른 제언

### 1) 가족희망센터에 대한 제언

| ▮ 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보완 | |
|---|---|
| **여성 출소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 ▸자녀에 대해 엄마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미안함을 다루어야 한다.<br>▸엄마의 수감으로 상처 받았을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다루어주는 상담이 필요하다.<br>▸자녀들에게 범죄가 대물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어 주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br>▸여성출소자가 자녀를 대할 때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부끄러움, 후회, 죄책감을 상담시 다루어 준다.<br>▸엄마의 출소경험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담시 다루어 준다.<br>▸수감 기간 중 잘 버텨준 자녀에 대한 고마움을 다루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br>▸세상과 사람에 대해 불신이 생기게 된 상처를 다루어 준다.<br>▸출소직후 심리 상담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음을 인식하고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br>▸배우자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다루어주는 심리상담이 필요하다.<br>▸엄마의 수감사실을 자녀가 알게 될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상담에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 **배우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 ▸아내의 수감 및 출소 사실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우자 상담이 필요하다.<br>▸남편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br>▸아내의 수감으로 인해 비참함을 느끼는 배우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루어주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br>▸아내의 수감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다루어주는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
| **부부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 할 수 있도록 돕는다.<br>▸범죄사실로 인해 이혼의 기로에 놓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 상담이 필요하다. |
| **부모교육 프로그램** | ▸출소 후 부모교육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br>▸사춘기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br>▸출소자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일반인과 같이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 | |
|---|---|
| **자녀 심리상담 프로그램** | ▸자녀가 느끼는 불행감을 상담에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br>▸사춘기 자녀가 경험하는 반항심과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해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br>▸수감으로 인한 엄마의 부재로 인해 생겨났을 문제에 대해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br>▸엄마의 부재로 인해 지나치게 동생을 돌보는 큰아이의 마음을 감싸주는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br>▸엄마의 수감으로 인해 어두워진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상담에서 다뤄 줄 필요가 있다.<br>▸자녀 심리상담시 수감기간 중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서운함에 대해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br>▸자녀들에게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br>▸수감사실을 알고 난 후 자녀가 받았을 영향에 대해 상담시간에 다뤄줄 필요가 있다.<br>▸엄마의 부재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자녀에 대해 상담에서 다뤄 줄 필요가 있다. |

**▌자녀 학업 및 진로지도 지원**

▸엄마의 수감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은 자녀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업지원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대학생 서포터즈 및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 연결 학업지원 프로그램시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체능 부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자녀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대학생 멘토가 필요하다.
▸문화생활을 비롯한 산책, 말동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케어 및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제언

**▌주거지원**

▸주거지원시 LH공사 풋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지역이 변동되어도 주거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 입주 시 보증금 분할 납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혼한 여성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취업/창업/경제적 지원

-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 현실적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금 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 공과금 및 자녀양육비와 같은 생활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 여성출소자들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공단지원 확대

- 여성지원센터가 수도권에 1개소만 개설되어 있으므로, 지방에 있는 여성출소자들을 위해 증설될 필요가 있다.
- 여성출소자 자녀에 대한 진로 및 학업상담, 합동 결혼 지원등 공단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 여성출소자에게 신용회복, 이혼등과 관련된 무료법률상담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종교는 수감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여성출소자에게 종교집단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법무부에 대한 제언

### ▌수감 중 가족/사회복귀 지원

- 수감 기간 중 여성출소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도록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 수감기간 중 보호자가 없는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 생계 책임으로 인해 남편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자녀의 생활(학교 준비물, 위생상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돌봐줄 수 있는 대상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 장기수감자는 물론 단기수감자들에 대해서도 출소 후 취업이 용이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출소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보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다. 여성출소자 수감사실 자녀 공개 여부에 대한 제언

여성출소자는 대부분 수감사실을 자녀가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녀가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거나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상황(친척 간의 고소, 재판과정 참여, 체포 장면 목격)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은 현재 주거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초범으로 9명 중 7명의 수감기간이 10개월 남짓이었다. 그리 길지 않은 수감기간 동안 엄마의 부재에 대해 자녀가 어릴 경우 대부분의 여성출소자들은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여성출소자와 가족들은 장기출장, 입원, 도피 등으로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숨겼다. 자녀에게 엄마의 수감사실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데에 대한 출소자의 선택이나 판단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던 여성출소자의 수감사실 공개여부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 수감사실 자녀 공개 | 수감사실 자녀 비공개 |
|---|---|
| ▶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공개 | ▶ 자녀가 어릴 경우 비공개 |
| ▶ 여성출소자는 어린 자녀에게 수감사실 공개를 극도로 꺼림 | ▶ 길지 않는 수감기간(10개월 미만)동안 장기출장, 입원, 해외도피 등의 이유로 엄마의 수감 사실을 숨김 |
| ▶ 자녀가 어린데도 알게 되는 경우는 의도치 않는 경우 : 친척 간의 고소, 재판과정 참여, 체포장면 목격 | ▶ 비공개한 5가정 중 3가정의 자녀가 어렴풋이 알고 있음 : 우연히 어른들 이야기를 들음, 법무부 관할 상담 과정 중 |
| ▶ 수감사실을 알게 된 후 자녀의 반응은 엄마의 수감을 이해하거나 내색하지는 않지만 상처가 됨 | ▶ 엄마의 수감사실을 알지는 못하나 엄마의 부재로 인해 여러가지 정서적 문제가 나타남 : 우울, 애착 불안, 엄마에 대해 서운함 |

### ◆ 수감사실 공개 방식에 대한 여성출소자의 경험 ◆

가족희망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시 어머니 수감사실에 대한 자녀 공개 여부는 여성출소자 각 가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으며,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2) 여성출소자들은 엄마의 수감사실로 인해 자녀가 받을 상처와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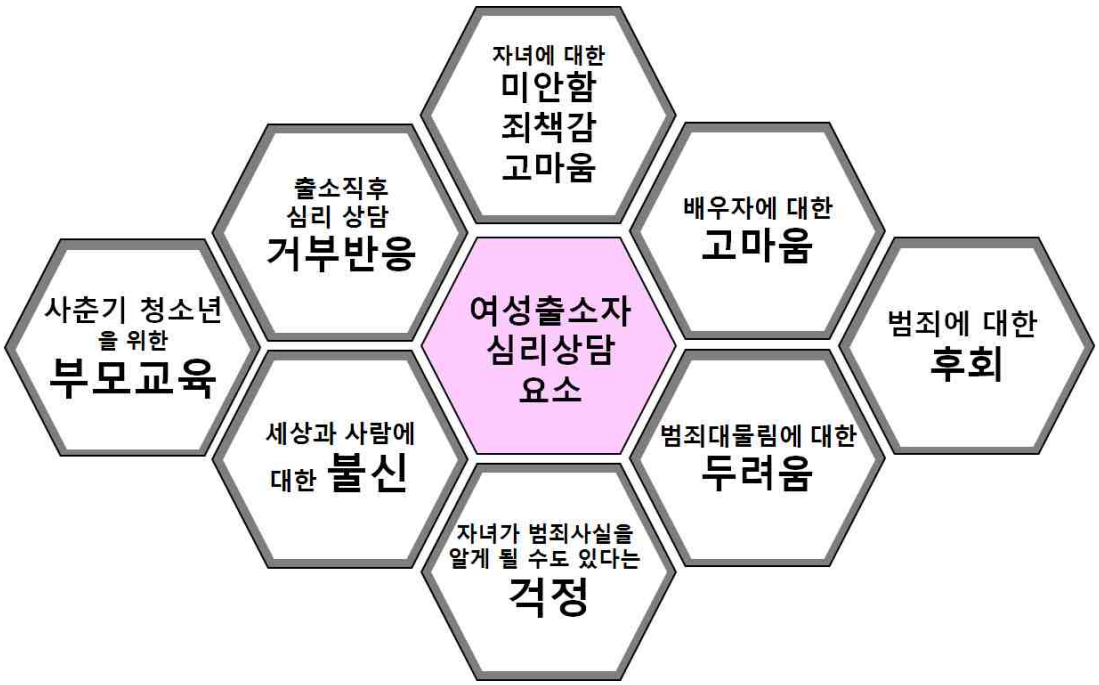
3)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 수감기간이 대체로 짧은 편이라 자녀가 어릴 경우 엄마의 수감사실을 어린 자녀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4) 일부 여성출소자의 자녀들은 엄마의 수감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 출소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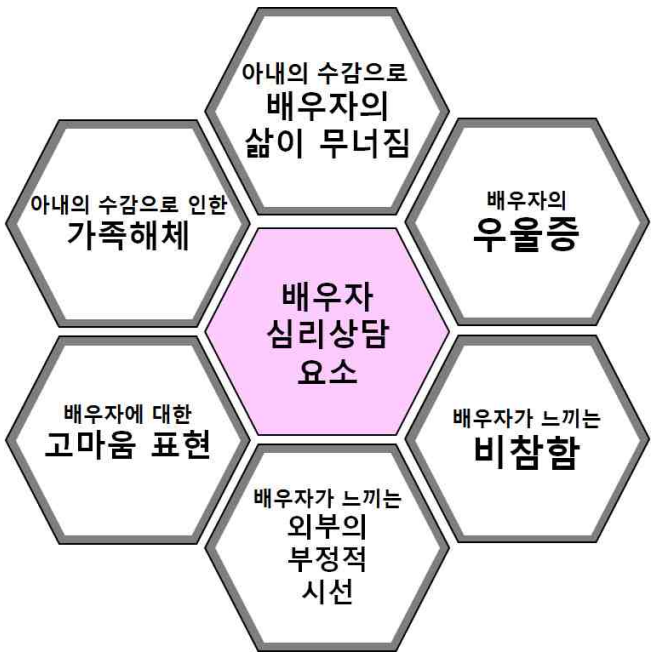
5) 수감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수감 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던 경우에는 출소 후에도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

라. 여성출소자와 배우자, 자녀를 위한 심리상담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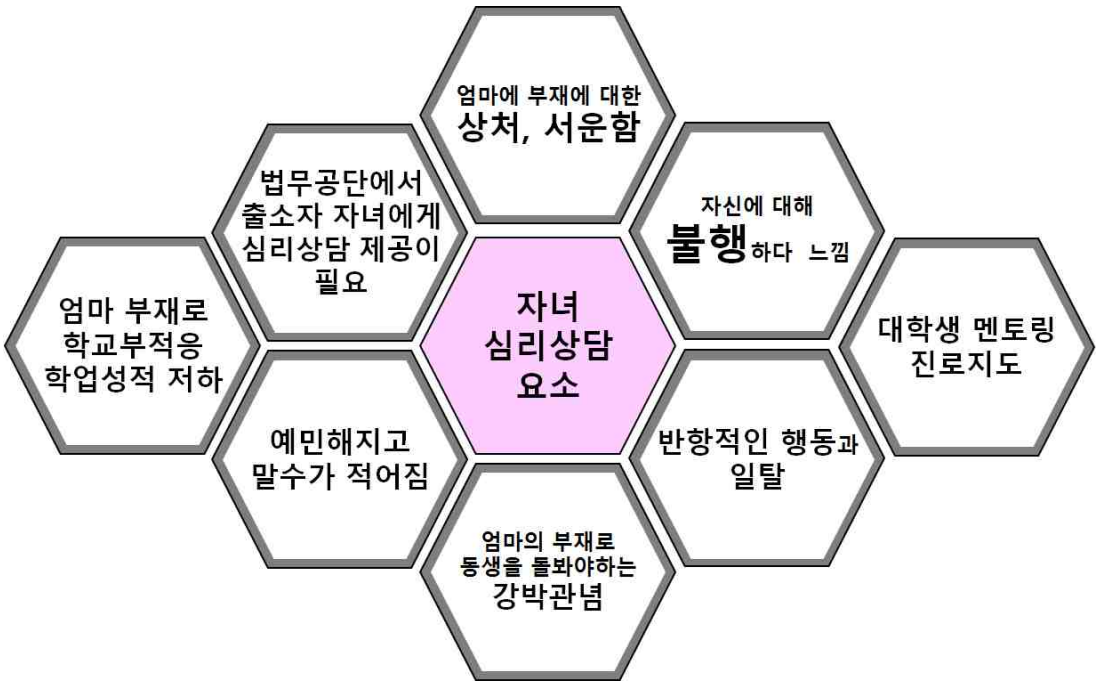
여성출소자 심리상담 요소




배우자 심리상담 요소



자녀 심리상담 요소


엄마에 부재에 대한
상처, 서운함
법무공단에서
출소자 자녀에게
심리상담 제공이
필요
자신에 대해
불행하다 느낌
엄마 부재로
학교부적응
학업성적 저하
자녀
심리상담
요소
대학생 멘토링
진로지도
예민해지고
말수가 적어짐
반항적인 행동과
일탈
엄마의 부재로
동생을 돌봐야하는
강박관념

# Ⅴ.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 본 가정복원사업의 의의와 과제

## 1. 주거지원대상자와 숙식제공대상자 모두에게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남성출소자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 지원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여성출소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아무것도 없고 갈 데 없는 가족을 모이게 해준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숙식제공 대상자의 경우에도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임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가족와 같이 살 수 있는 주거문제가 안정된 가족복원을 위한 가장 핵심요소임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이 출소자의 가족복귀 및 유지를 위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구 2만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출소자 뿐 만 아니라 이혼한 여성출소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숙식제공 대상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숙식제공 대상자의 50%는 미혼, 50%는 이혼(별거, 사별 포함)상태로 나타났다. 숙식제공대상자들 또한 가족을 새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으며 자활에 있어 문제가 없는 숙식제공 대상 출소자들에게는 가족을 새로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에게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촉진할 것이다.

## 2.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와 배우자, 여성출소자 모두에게 자녀는 가장 큰 희망이다.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와 배우자, 여성출소자들은 힘든 수감생활을 자녀를 생각하며 버텨냈으며, 출소 후에도 자녀가 살아가는 힘이자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출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으며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구심점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자녀심리상담과 학습지도, 진로지도, 멘토링 등 자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가정 복원을 위해 중요하다.

### 3.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출소자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취업성공 패키지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중장비 교육을 받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중장비로 취업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아니어서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가야 하나 주거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이사가 불가능하고,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갈수가 없다고 인터뷰 하였다. 또한, 수감중 취득한 자격증이나 경력 등은 출소 후 취업시 수감사실을 알려야 인정받을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었다. 여성출소자의 경우에도 출소 후 교육을 받고 미용자격증을 획득하였지만, 취업시 미용업계는 20대의 젊은 여성만 취업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미용자격증을 쓸 수가 없었다. 경제적인 부분과 경력의 부족함으로 창업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취업은 가정복원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방안이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산업 특성, 연령, 수감 중 취업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수감 중 부모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은 출소 후 가족복원의 기반이 된다.

남성출소자와 여성출소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에서 수감전 부모 자녀관계가 좋았던 가족은 출소후에도 여전히 부모 자녀관계가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감전 부모 자녀관계가 좋지 않았던 남성출소자들은 범죄로 인한 수감으로 인해 출소 후에는 부모 자녀 관계가 파국으로 흘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았을 때 부모 자녀 관계는 가족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 및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는 수감기간동안 자녀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고(Hairston, 2002),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들과 관련이 있다(Edin et al,2004)는 해외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수감 전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과의 접견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감 중 접견과 수감자 대상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감 중 자녀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모수감 자녀에게 멘토링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출된 멘토들이 부모수감 자녀들의 정신적, 정서적인 가이드

를 제시해 주고 자녀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부모 접견 전후로 자녀에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부모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수감 중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은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어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며 이는 출소 후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 후 뿐만 아니라 수감 중에 자녀들의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남성출소자와 여성출소자는 현재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연히 듣거나, 본인이 인터넷 서핑을 통해 어렵게 찾아서 주거지원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거지원 외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출소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현재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출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수감 단계에서부터 출소 전, 출소 후 단계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되는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수감중 가족에게 지원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의료혜택이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충분히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출소자들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6. 수감 중 자녀에게 여성출소자의 수감으로 인해 생긴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인력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여성출소자들의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치지만, 엄마의 부재라는 사실 자체가 자녀의 학교 적응 및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여성출소자 경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다가 수감된 경우가 대부분 이였으므로, 자녀들은 매일 아침밥을 해주고, 책가방 챙겨주고,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이 갑자기 사라지게 됨으로서 마음속에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며 여러 가지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내게 되었다. 따라서 엄마가 범죄자가 되었고 수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도 다루어주어야 하지만 엄마의 수감 중에 엄마의 부재로 인한 학령기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여성이 수감시 남편(25%)보다 조부모(51%)에 의해 자녀가 양육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U.S.Department Of Justice, 2010), 수감된 엄마의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도 자신의 수감 중 자녀를 이모처럼 돌봐줄 수 있는 사람과 자매결연을 맺어 수감 중 자녀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수감 중 엄마의 부재를 채워줄 자녀지원의 중요성은 해외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부모의 자리가 수감으로 인해 부재중일지라도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가정에서의 생활관리와 학교적응 관리의 부재가 더 문제이며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Yablonsky & Haskell, 1989)고 하였다. 엄마의 수감중 자녀에 대해 아버지가 미쳐 신경쓰지 못하고 엄마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을 마련해준다면 더 나아가 범죄대물림 예방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 7. 엄마의 수감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녀들은 엄마부재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자녀들보다 더 큰 정서행동적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성출소자들은 자신들의 수감사실을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모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녀가 수감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다시 엄마에게 되물으며 확인할 때조차 끝까지 자신의 수감사실을 부인했다. 이처럼 여성출소자는 자신의 수감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가 모르기를 바라며 해외출장, 장기입원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 대부분은 자녀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본 심층면접 연구에서 수감사실을 밝힌 여성출소자 자녀의 반응과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여성출소자 자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녀가 정서 행동적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수감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자녀들은 성격이 어두워지고, 거칠게 반항하는 행동, 섭식장애, 학업성적 하락, 학교생활 부적응, 가출 등의 행동들이 나타났다. 반면, 수감사실을 자녀가 명확하게 아는 경우에 자녀들은 엄마의 수감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였으며, 동생들을 돌보고, 가정경제를 위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직접 생활전선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는 해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듣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은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힘들며(Ayers, Sandler, West, & Roosa, 1996; Compas, 1987), 부모의 수감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부모가 부재하였을 때 훨씬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Jonson, 1995).

본 연구에서도 엄마의 수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자녀의 경우,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거라는 왜곡된 상상을 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했다. 반면, 다른 해외문헌에서는 수감 중 부모에 대해 발달상에 맞는 솔직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다고 하였다(Poehlmann,2005). Nolen-Hoeksema & Larson(1999)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부모수감에 대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상실에 대하여 슬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작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부모의 수감사실을 자녀가 아는 것이 부모 부재로 인해 달라진 환경에 훨씬 더 잘 적응하여 대처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모 수감사실 자녀 공개여부는 여전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았고, 수감기간이 최대치(5년)과 최소치(4개월)을 제외한 평균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는 점과 수감사실을 밝혔을 때 자녀의 나이가 성인이 많았던 경우를 고려하여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 8. 여성출소자의 가정과 남성출소자의 가정에서 수감사실을 공개하는 방식과 수감으로 인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여성출소자의 경우 자녀들은 엄마의 부재로 인해 야기된 정서적인 문제가 많았지만 남성출소자의 경우에 수감중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 책임을 졌던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엄마가 일을 나가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출소자의 경우 본 연구 인터뷰 대상자 13가정 중 8가정의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1사례만이 남성출소자 스스로 자녀에게 말했으며, 나머지 7사례 모두 공개 주체가 엄마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출소자의 경우 자녀 공개 사실 여부를 자신이 결정한 반면에, 남성출소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것도 엄마, 알리지 않는 것도 엄마의 몫이였다. 비공개 하는 이유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수감기간이 짧은 경우 알리지 않았는데, 아버지 수감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녀도 있었다.

남성출소자 자녀의 경우 아버지 수감사실을 알고 여성출소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방황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아버지를 불신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재로 남은 한 부모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며, 또한 경제적 어

려움과 양육의 소홀함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전영실, 신연희, 김영식, 2007) 출소자에 대한 분노를 품기 쉽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출소자들이 주거지원을 받고 본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출소자들이였으며, 수감 전 부모 자녀관계나 부부관계가 대부분 좋았고 이러한 관계는 출소 후에도 지속되는 가정이 많았다.

세부연구 4

#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관련 빅데이타(Big Data) 구축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 주거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
- 숙식제공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
- 주거지원대상자와 숙식제공대상자의 심리척도 차이분석
- 숙식제공 대상자 다면적 인성검사(MMPI-2) 특성분석결과

# 세부연구 4.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관련 빅데이터(Big Data) 구축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 목 차


**Ⅰ.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관련 빅데이타(Big Data) 구축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 366

1. 측정도구 ..... 366
2. 주거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 ..... 380
3. 숙식제공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 ..... 403
4. 주거지원대상자와 숙식제공대상자의 심리척도 차이분석 ..... 427

**Ⅱ. 숙식제공 대상자 다면적 인성검사(MMPI-2) 특성분석결과** ..... 431

1. 숙식제공대상자 그룹과 한국규준그룹의 MMPI-2 척도별 차이 ..... 431
2. 인구사회학적·형사사법적 특성에 따른 MMPI 척도별 차이 ..... 437
3. 숙식제공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이 MMPI 척도에 미치는 영향 ..... 443
4. 숙식제공대상자 MMPI 연구를 통한 결론 및 제언 ..... 447

**Ⅲ. 세부연구3과 세부연구4를 통한 가정복원사업의 개선과제 및 추후사업방향제시** ..... 451

1. 심층면접연구 결과에 따른 가정복원사업의 개선과제 제언 및 추후사업방향제시 .... 452
2.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및 추후사업방향제시 .... 468
3. 숙식제공대상자 MMPI-2 특성분석결과를 통한 제언 및 추후사업방향제시 ..... 481

**참고문헌** ..... 482

# Ⅰ.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관련 빅데이타(Big Data) 구축 및 중장기 지안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출소자 가정복 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 연구’를 위해 주거지원 출소자와 숙식제공 출소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설문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각 지부로 배부하여 자료를 수정하였다. 이번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각 지부로부터 수거된 주거지원 대상자 408명 및 숙식제공  대상자 510명, 총 91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주거지원 대상자 및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전체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상자별 가족모델 유형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유형은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로 4가지 모델로 분류하였으며,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 유형은 총 4가지로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가족모델을 근거로 하여, 주거지원 및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모델별 실태문항과 심리척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거지원 및 숙식제공 대상자의 재범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거지원 대상자와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특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 대상자 및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측정문항 및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주거지원 대상자 및 숙식제공 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된 실태문항 및 심리척도가 있고, 각 대상자별로 다르게 사용된 실태문항 및 심리척도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별 사용된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표 4.1> 대상자별 사용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

| 대상자 심리 척도 | 주거지원 대상자 | 숙식제공 대상자 |
|---|---|---|
| 공통으로 사용된 척도 | 스트레스대처<br>아동기학대외상<br>자아탄력성 | |

| | | |
|---|---|---|
| 각각 사용된 척도 | 귀인성향<br>분노표현<br>FACES-Ⅲ<br>부부의사소통<br>배우자지지<br>아버지역할수행 | 공감<br>자활의욕<br>사회적지지<br>부모 애착 |

*FACES Ⅲ(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실태문항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거지원 대상자와 숙식제공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태문항을 개발하였다. 공통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사회 경제 활동 특성, 형사사법적 변인, 사회·가정 복귀 과정 중 겪는 구체적 어려움과 적응요인 및 심리 내적상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주요 영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질문 영역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취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적 변인은 수감기간, 최초수감나이, 수감횟수, 범죄유형 등이 포함된다. 사회·가정 복귀 과정 중 겪는 구체적 어려움과 적응요인 및 심리 내적상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복귀과정 어려움 호소, 가정 어려움 호소, 개인심리 어려움 호소 등이 있다. 세부 영역 내용은 대상자 별로 약간씩 상이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 주거지원 대상자 설문지 구성의 주요 내용과 세부 질문

| 실태문항 설문의 주요내용과 주요영역 | 세부 질문 영역 |
|---|---|
| 주거지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 경제활동 특성 | 1) 성별<br>2) 연령<br>3) 학력<br>4) 취업<br>5) 생계책임<br>6) 소득<br>7) 종교활동<br>8) 가족구성원 |

| | |
|---|---|
| 주거지원 대상자의 형사사법적 특성 | 9) 수감기간<br>10) 최초 수감 나이<br>11) 수감 횟수<br>12) 범죄유형 |
| 대상자가 사회, 가정 복귀 과정에서의 구체적 어려움과 심리내적상태 | 13) 자녀수감사실 인지<br>14) 사회복귀 과정 어려움 호소<br>15) 가정 어려움 호소<br>16) 개인 심리 어려움 호소 |

<표 4.3> 숙식제공 대상자 설문지 구성의 주요 내용과 세부 질문

| 실태문항 설문의 주요내용과 주요영역 | 세부 질문 영역 |
|---|---|
| 숙식제공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 경제활동 특성 | 1) 성별<br>2) 연령<br>3) 학력<br>4) 결혼 상태<br>5) 취업<br>6) 수입<br>7) 어린시절 생활환경 |
| 숙식제공 대상자의 형사사법적 특성 | 8) 수감기간<br>9) 최초 수감 나이<br>10) 수감 횟수<br>11) 범죄유형<br>12) 범죄동기 |
| 대상자가 사회, 가정 복귀 과정에서의 구체적 어려움과 적응요인 및 심리내적상태 (개별 실태 조사에 명시함) | 13) 현가족과의 관계<br>14) 사회복귀 과정 어려움 호소<br>15) 가정 어려움 호소<br>16) 개인 심리 어려움 호소<br>17) 사회 복귀 적응 요인<br>18) 생활습관 |

## 나. 심리척도

1)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1985)가 공동으로 개발한 68개 문항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1987)가 참고하여 오수성과 신현균(2008)이 번안한 것을 김현정(2013)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의 추구, 정서 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5개 문항 씩 총 20개의 문항으로의 구성되었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평소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어떠한 대처방식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문제를 유발하는 개인, 환경관련 요인에 직면함으로써 원인 자체를 변화·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을 말하며,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통해 나타난 감정적 위협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은 스트레스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기존 선행연구들(김여진, 2006; 이장호, 김정희 1988; Lazarus & Folkman, 1984)을 살펴보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 추구 방식을 적극적 대처방식으로, 정서완화적 대처방식과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을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류 방식을 사용하였다.

Likert 식 4점 척도(0: 사용하지 않는다, 3: 아주 많이 사용한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각 하위영역별 척도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정(201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5, 하위요인인 문제중심적 대처는 .84, 사회적 지지추구는 .72, 정서 완화적 대처는 .75, 소망적 사고는 .77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의 결과는 다음 <표 4.4>과 같다.

<표 4.4>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하위요인 명 | | 문항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 적극적 대처방식 | 문제중심적 대처 | 1,2,3,4,5 | 5 | .871 (.896) | .829 (.854) |
| |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 16,17,18,19,20 | 5 | | .839 (.866) |
| 소극적 대처방식 | 정서 완화적 대처 | 6,7,8,9,10 | 5 | .727 (.789) | .559 (.677) |
| | 소망적 사고 | 11,12,13,14,15 | 5 | | .690 (.738) |
| 전체 | | | 20 | .838(.899) | |

* ()은 숙식제공 대상자 신뢰도

2) 아동기학대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아동기학대외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과 Fink(1998)가 제작한 아동기학대외상 척도(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정희진(2008)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아동기 확대 외상 척도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는 5개 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향의 적합성을 고려해 하위 요인 중 성적 학대 5문항을 제외하여 총 20문항을 선정했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겪었던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만 18세 이전의 과거의 경험을 묻는다. Likert식 4점 척도(0: 전혀 없었다, 3: 자주 있었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부정적 진술문인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문항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경험이 심함을 뜻한다. 정희진(2008)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66, 하위요인인 정서적 학대 .81, 정서적 방임은 .95, 신체적 학대는 .79, 신체적 방임은 .54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의 결과는 다음 <표 4.5>과 같다.

<표 4.5> 아동기학대외상 척도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하위요인 | 문항 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정서적 학대 | 1, 2, 3, 4, 5 | 5 | .816(.819) |
| 정서적 방임 | 11*, 12*, 13*, 14*, 15* | 5 | .928(.940) |
| 신체적 학대 | 6, 7, 8, 9, 10 | 5 | .923(.929) |
| 신체적 방임 | 16, 17*, 18, 19, 20 | 5 | .633(.706) |
| 전체 | | 20 | .908(.913) |

*은 역채점 문항임

()은 숙식제공 대상자 신뢰도

3)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lock(1962/1978)에 의해 고안되고 개념화된 척도로서, 그동안 100개의 목록을 사용한 Q-sort(CAQ: California Adult Q-set)를 통해 관찰자에 의해 평정되어왔다. 하지만 경비와 시간의 비효율성과 다수의 평정자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이에 Klohnen(1996)는 CPI(Califonia Personlity Inventory)에서 CAQ의 자아탄력성 문

항과 상관이 .20 이상 있는 문항 48개를 뽑아 CPI의 다른 하위척도와 상관있는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이 척도를 박현진(1996)이 번안하고 김인경(2012)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의도에 맞게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23)]

본 자아탄력성 척도는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측정하는 자신감,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과 관련된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주의인 낙관적 태도,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력을 측정하는 분노조절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분노조절 2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부정적 진술문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의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 수 | chronbach α |
|---|---|---|---|
| 자신감 | 7*,10*,11*,12*,13*,22*,23,24*,26* | 9 | .861(.829) |
| 대인관계 효율성 | 3*,4*,5*,8*,9*,14*,15*,21* | 8 | .852(.869) |
| 낙관적 태도 | 1*,2*,6*,16,17*,18,20*,25*,28,29* | 10 | .828(.750) |
| 분노조절 | 19, 27 | 2 | .677(.721) |
| 전체 | | 29 | .935(.926) |

*은 역채점 문항임

()은 숙식제공 대상자 신뢰도

4) 귀인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와 배우자의 귀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Levenson(1981)이 개발한 것을 안귀덕(1986)이 참고하여 안정숙(2002)이 번안한 귀인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귀인성향 척도는 내적귀인성향, 타인귀인성향, 우연귀인성향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8개 문항씩,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전공선택'은 '직업선택'으로, '수업 중에 앞에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등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적귀인성향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된 것이라는 생각을 의미하며, 타인귀인성향은 타인의 힘이나 권력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 우연귀인성향은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우연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생각하는 신념을 말한다. 연구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정말 그렇다)이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에 대한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Rotter의 통제 소재에 따른 분류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따라서 타인 귀인유형과 우연 귀인유형을 합친 외적 귀인유형과 내적 귀인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장문영(2005)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신뢰도는 내적귀인이 Cronbach's α .71, 외적귀인이 Cronbach's α .78로 나타났다. 이현주(2014)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값이 각각 .68, .81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신뢰도 Cronbach's α는 다음의 <표 4.7>와 같다.

<표 4.7> 귀인성향 척도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하위요인 명 | | 문항 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 내적 귀인성향 | | 1,4,5,9,18,19,21,23 | 8 | .771 | |
| 외적 귀인성향 | 타인귀인성향 | 3,8,11,13,15,17,20,22 | 8 | .862 | .785 |
| | 우연귀인성향 | 2,6,7,10,12,14,16,24 | 8 | | .763 |
| 전체 | | | 24 | .784 | |

5) 분노표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와 배우자의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척도를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 (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중 상태분노를 제외하고 수정한 전성희(2007)의 것을 사용하였다. 본 분노표현 척도는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8개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억제는 분노를 참고 억압하는 빈도를, 분노 표출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분노를 표현하는 빈도를 나타낸다. 분노통제는 얼마나 분노를 조절하려고 시도하는 지와 관련된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 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분노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분노억제 점수가 높으면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분노표출 점수가 높을 경우는 자신의 분노감정을 타인이나 물건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나타내며, 분노통제 점수가 높을 경우는 분노경험과 표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을 뜻한다.

전성희(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분노조절은 .79, 분노억제는 .78, 분노표출은 .73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의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한편, 분노 표현의 방향과 상관없이 분노가 표현되는 빈도에 관한 총점은 다음의 공식(분노표현 점수 = 분노억제 + 분노표출 - 분노통제 +16)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각각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분노통제 점수는 최하 8점 ~ 최고 32점까지이며, 분노표현계수 16점은 음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포함되었다(Spielberger, Krasner, Solomon, 1988). 점수가 낮을수록 분노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여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4.8> 분노표현 척도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분노조절 | 1, 4, 8, 11, 15, 18, 20, 24 | 8 | .830 |
| 분노억제 | 3, 5, 6, 10, 13, 16, 17, 21 | 8 | .824 |
| 분노표출 | 2, 7, 9, 12, 14, 19, 22, 23 | 8 | .869 |
| 전체 | | 24 | .782 |

6)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와 배우자의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lsen(1982)이 고안한 가족기능성 평가도구인 FACES Ⅲ(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를 전귀연(1993)이 참고하여 고은미(200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척도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10개 문항씩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가족응집성에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지

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 공동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의 다섯 가지 구체적인 영역을 포함하며, 가족적응성은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정말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은미(2009)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6, 하위요인인 가족응집성은 .85, 가족적응성은 .74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의 결과는 다음 <표 4.9>과 같다.

<표 4.9> FACES Ⅲ의 척도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영 역 | 문항번호 | 문항 수 | Cronbach α |
|---|---|---|---|
| 가족응집성 | 1, 3, 5, 7, 9, 11, 13, 15, 17, 19 | 10 | .923 |
| 가족적응성 | 2, 4, 6, 8, 10, 12, 14, 16, 18, 20 | 10 | .849 |
| 전체 | | 20 | .940 |

7) 의사소통 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와 배우자 부부의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개발한 CPQ(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35문항을 Christensen와 Heavey(1990)가 11문항으로 축약한 CPQ-SF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Short Form)을 임승락(1998)이 참고하여 연우석(2012)이 번안한 한글판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4].

본 의사소통 유형 척도는 비난/방어 의사소통,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3문항, 5문항, 3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로 비난/방어 의사소통은 배우자 서로 비난하고 또 비난을 받은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혹은 변명하는 등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고, 상호요구/철회 의사소통은 배우자가 서로 문제에 관해 논의, 불평, 요구할 때 다른 한 명의 배우자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회피하고 또한 수동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더 이상 의논하는 것을 피하는 행동을 측정한다.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은 부부 상호간 문제에 대해 서로 토론, 표현,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의사소통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부부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처음 생길 때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

24) '아내'를 '배우자'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의 두 상황에서 부부의 특정한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생각을 Likert 식 9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9: 언제나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연우석(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비난/방어 의사소통은 .76, 상호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57, 긍정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은 .62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의 결과는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10> 의사소통 유형 척도 단축형(CPQ-SF)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하위 요인명 | 문항번호 | 문항수 | Cronbach α |
|---|---|---|---|
| 비난 / 방어 | 6, 10, 11 | 3 | .827 |
| 상호 요구 / 철회 | 1, 3, 4, 8, 9 | 5 | .783 |
| 긍정적 상호작용 | 2, 5, 7 | 3 | .760 |
| 전체 | | 11 | .568 |

8)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출소자와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Zimet et al.(1988)가 개발한 사회적지지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여 응답자들의 수용 가능한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의도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묻는 문항 4개, 친구로부터 지지를 묻는 문항 4개, 주요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묻는 문항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용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는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등이고, 친구로부터 지지문항은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 등이며, 주요타인으로부터 지지는 '내 인생에는 가족, 친구, 공단을 제외한 나의 감정을 보살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MSPSS는 5점 Likert로 이루어져 사회적지지 수용 수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전체 chronbach α 신뢰도는 원척도인 Zimet et al.(1988)에서 .88로 나타났고, 각 하위문항별 신뢰도는 가족으로부터 지지 .87, 친구로부터 지지 .85, 주요타인으로부터 지지 .91이다. 신준섭과 이영분(1999)과 김현지, 권정혜(2012)의 연구에서도 역시 각각 .89, .91로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MSPSS의 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문항별 신뢰도는 아래의 <표 4.11>와 같다.

<표 4.11> 사회적 지지척도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하위 요인명 | 문항번호 | 문항수 | Cronbach α |
|---|---|---|---|
| 가족으로부터 지지 | 1,2,3,4 | 4 | .927 |
| 친구로부터 지지 | 5,6,7,8 | 4 | .885 |
| 주요타인으로부터 지지 | 9,10,11,12 | 4 | .945 |
| 전체 | | 12 | .923 |

9) 아버지 역할수행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특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anfield(1995)가 사용한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Fathering Practice Scale: FPS)를 조선화(1998)가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FPS)는 자녀와의 대화, 양육자의 일관성, 자녀양육 역할, 남편의 역할, 부양자 역할, 자녀 이해도, 자녀에게 애정표현, 자녀교육 역할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와의 대화는 4문항, 양육자의 일관성은 5문항, 자녀양육 역할은 7문항, 남편의 역할은 5문항, 부양자 역할은 7문항, 자녀 이해도는 7문항, 자녀에게 애정표현은 6문항, 자녀교육 역할은 7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8개의 하위변인 중 자녀와의 대화, 자녀양육 역할, 자녀에게 애정 표현, 자녀교육 역할 4개의 하위변인을 선택하고 7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런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주(2009)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5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826의 신뢰도를 보였다.

10) 배우자지지 척도

Abbey, Abramis와 Caplan(1985)이 고안한 사회적 지지와 갈등에 관한 척도를 전지아(1990)가 번안한 것을 연구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지지 6문항, 사회적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6문항을 사용하여 배우자지지를 확인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0점이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지지를 확인하고자 사용된 사회적지지의 6문항은 감정(affect), 긍정(affimation), 원조(aid)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Kan & Antonucci, 1980). 감정은 존중이나 사랑을 의미하며, 긍정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의 적절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서적 지지를 평가한다. 원조는 돈을 빌려주거나, 실제적으로 일의 수행을 도와주는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하며, 기능적 지지를 평가한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유성은, 권정혜(1997)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78의 신뢰도를 보였다.

<표 4.12> 배우자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전체 | 1, 2, 3, 4, 5, 6 | 6 | .972 |

11) 공감척도

본 연구에서는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이 개발하고 Lawrence등(2004)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공감지수(Empathy Quotient : EQ)척도를 허재홍, 이찬종(2007)이 번안한 K-EQ(Korean Empathy Quotient)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적기술'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17문항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이루어져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로 인지공감은 '나는 상대방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쉽게 안다', 정서공감은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을 볼 때 나는 마음이 흔들린다', 사회적 기술은 '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 힘들다' 등이 있다. 허재홍, 이찬종(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공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인지공감 | 1, 2, 3, 4, 5, 6, 7, 8, 9, 10 | 10 | .890 |
| 정서공감 | 11, 12, 13 | 3 | .742 |
| 사회적기술 | 14*, 15*, 16*, 17* | 4 | .779 |
| 전체 | | 17 | .841 |

*은 역채점 문항임

12) 부모애착척도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echment: IPPA)에 기초하여 Raja, McGee와 Stanton(1992)이 개정한 IPPA-개정본(IPPA-R)을 김수희(2009)가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해 사용하였다. 부모애착의 원척도는 본래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김수희(2009)가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점수범위는 각각 12점~49점까지이며, 결과처리 시 부정적 내용의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총 12문항(부, 모 각각 12문항씩)이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 문항의 예로는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힘든 점에 대해 말씀드렸었다',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 등이 있다.

김수희(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각 부 .84, 모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및 문항구성은 아래의 <표 4.14>와 같다.

<표 4.14> 부모애착 척도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

| 영 역 | 문항번호 | 문항 수 | Cronbach α |
|---|---|---|---|
| 부모애착 | 부 : 1,2,3,4,5,6,7*,8,9*,10*,11*,12* | 12 | .876 |
| | 모 : 1,2,3,4,5,6,7*,8,9*,10*,11*,12* | 12 | .883 |
| 전체 | | 24 | .929 |

*은 역채점 문항임

13) 자활의지 척도

자활의지란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하려는 심리적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자활의지의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가장 지지되었던 기대이론, 목표설정이론, 공정성이론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Mossholder(1980)가 내부의 의욕과 동기를 행동 및 태도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고안한 자활의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김영미(2002), 김승의(2006) 등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자활의지를 묻는 문항은 총 11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지금 하는 일이 내 능력에 더 맞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등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승의(200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0.8615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39로 나타났다.

## 2. 주거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

이번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각 지부의 주거지원 대상자 408명으로부터 수합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 가. 주거지원 대상자 전체실태 분석결과

주요 변인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주거지원 대상자 실태(N=408) |
|---|
| ► 성별 : 남자(82.5%), 여자(17.6%) |
| ► 나이 : 50대(40.4%), 40대(34.8%) |
| ► 학력 : 고졸(39.7%), 전문대졸(19.6%), 고교중퇴(11.3%) |
| ► 종교유무 : 종교있음(72.5%), 종교없음(27.5%) |
| ► 종교활동 : 거의하지 않는다(49.6%), 한 달에 2~3회(21.2%) |
| ► 생계책임 : 생계책임 있음(88.9%), 생계책임 없음(11.1%) |
| ► 취업형태 : 비정규직(37.7%), 자영업(29.3%), 정규직(24.6%) |
| ► 월 소득 : 월 100-200만원(46.1%), 월 200-300만원(30.6%) |
| ► 수감기간 : 1년 미만(29.9%), 1~2년(26.4%), 2~5년(21.4%) |
| ► 범죄유형 : 사기(37.2%), 폭력(9.9%), 절도(9.6%) |
| ► 전과횟수 : 초범(60.7%), 2범(17.2%), 3범(11.3%) |
| ► 최초수감나이 : 30대(36.0%), 40대(32.6%), 20대(15.4%) |
| ► 자녀수감사실인지 : 안다(59.7%), 모른다(40.3%) |
| ► 동거가족 :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동거(62.0%), 자녀만 동거(15.4%), 배우자만 동거(11.8%), 배우자와 자녀없음(10.7%) |
| ► 사회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39.2%), 취업의 어려움(15.8%),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15.2%) |
| ► 가정의 어려움 : 자녀양육 및 교육(56.4%), 부부관계(20.2%), 자녀관계(19.2%), 자녀비행 및 문제행동(4.2%) |
| ► 심리적 어려움 : 가족에 대한 미안함(27.3%), 미래에 대한 두려움(16.0%),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12.8%) |

## 나.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별 실태 조사 분석결과

주거지원은 출소 후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본 연구 결과 이러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출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거 여부에 따라 주거지원대상자 가족모델을 정립하였다.

### 1)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N=225)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은 주거지원 대상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모델이다.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에서는 부부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의사소통>요인의 점수가 높은 상위 33.3%(N=73)에 해당하는 출소자를 긍정적 의사소통집단(1-①)으로 분류하였고, 부부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요인 중 <비난/방어>와 <상호 요구/철회>요인의 합산점수에서 상위 33.3%(N=72)에 해당하는 출소자를 부정적 의사소통집단(1-②)으로 분류하였다.

긍정적 의사소통집단과 부정적 의사소통집단의 집단간 심리척도(귀인성향,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노표현,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배우자 지지,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귀인성향-내적귀인(t=4.979, p<.001), 귀인성향-외적귀인(t=6.922, p<.001), 아동기학대외상(t=3.134, p<.001), 자아탄력성(t=6.743,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적극적대처(t=8.304, p<.001), 분노표현-분노표출(t=7.006, p<.001), 분노표현-분노억제(t=7.195, p<.001), 분노표현-분노조절(t=4.810, p<.001),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t=10.059, p<.001), 배우자지지(t=11.726, p<.001), 부부의사소통유형-비난/방어의사소통(t=16.666, p<.001), 부부 의사소통유형-상호/철회의사소통(t=20.125, p<.001), 부부 의사소통유형-긍정적의사소통(t=21.493,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스트레스대처방식-소극적대처에서는 집단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긍정적 의사소통집단이 부정적 의사소통집단보다 내적으로 원인을 찾는 성향이 높았고(내적귀인),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스트레스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였고, 분노조절을 더 잘 하였다. 또한 긍정적 의사소통집단이 부정적 의사소통집단보다 가족관계 검사에서도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이 높고, 배우자에 대한 지지가 높고, 부부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의사소통집단이 긍정적 의사소통집단보다 외적으로 원인을 찾는 성향이 높았고(외적귀인),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이 많았으며,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정적 의사소

통집단이 긍정적 의사소통집단보다 가족관계 검사에서도 부부간 비난방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상호철회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N=43)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은 주거지원 대상자와 배우자가 동거하고 있지만 자녀는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는 모델이다.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분가한 경우, 주거지원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3)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N=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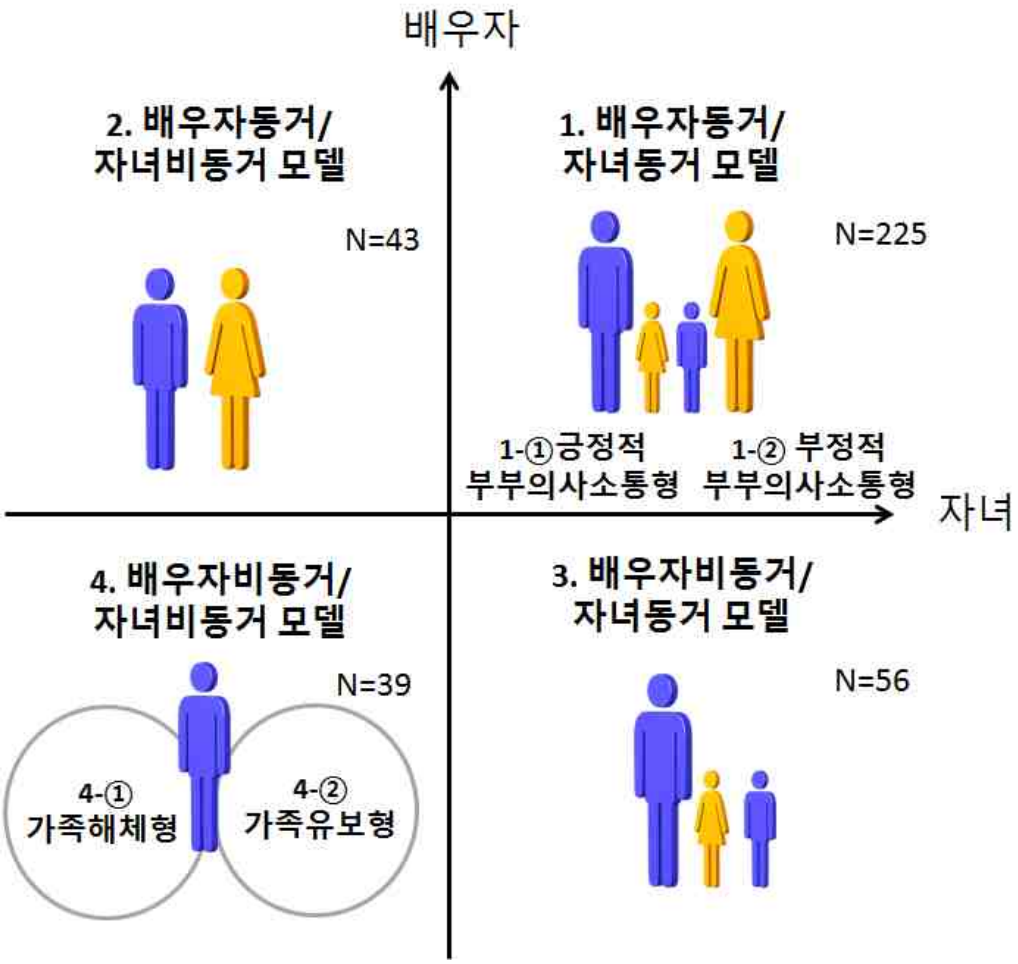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은 주거지원 대상자와 자녀만 동거하고 있는 모델이다.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지 않는 이유로는 배우자와 별거, 이혼, 사별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4)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N=39)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은 주거지원 대상자가 배우자와 자녀 모두 동거하고 있지 않는 모델이다. 주거지원 대상자가 결혼했으나 이혼이나 별거 혹은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지원 대상자가 미혼으로 인해 원가족(부모 및 형제)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모델이다.

가족해체형 모델(4-①)은 출소자가 결혼했으나 이혼이나 별거 혹은 배우자 사별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 없이 독거중인 유형이며, 가족유보형 모델(4-②)은 출소자가 결혼을 유보하여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유형으로 미혼이 여기 해당한다.

가족해체형 모델과 가족유보형 모델의 비교는 샘플수가 지나치게 적어 진행하지 않았다.


배우자
2. 배우자동거/
자녀비동거 모델
N=43
1. 배우자동거/
자녀동거 모델
N=225
1-①긍정적
부부의사소통형
1-② 부정적
부부의사소통형
자녀
4. 배우자비동거/
자녀비동거 모델
N=39
4-①
가족해체형
4-②
가족유보형
3. 배우자비동거/
자녀동거 모델
N=56

가)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실태조사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은 주거지원 대상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모델이다. 전체 408명에서 결측 값 45명을 제외한 363명 중 225명이 이 모델에 해당하며,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은 다른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에 비해 주거지원 대상자가 생계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3.3%로 가장 많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실태(N=225)**

- ► 성별 : 남자(87.1%), 여자(12.9%)
- ► 나이 : 50대(38.7%), 40대(37.3%)
- ► 학력 : 고졸(35.6%), 전문대졸(23.6%)
- ► 종교유무 : 종교있음(73.8%), 종교없음(26.2%)
- ► 종교활동 : 거의하지 않는다(45.5%), 한 달에 2~3회(22.5%)
- ► 생계책임 : 생계책임 있음(93.3%), 생계책임 없음(6.7%)
- ► 취업형태 : 비정규직(37.4%), 정규직(26.6%), 자영업(26.1%)
- ► 월 소득 : 월 100-200만원(47.6%), 월 200-300만원(35.6%)
- ► 수감기간 : 1년 미만(33.6%), 1~2년(26.9%), 2~5년(22.4%)
- ► 범죄유형 : 사기(38.3%), 절도(11.7%), 향정(8.2%)
- ► 전과횟수 : 초범(61.0%), 2범(19.5%), 3범(10.0%)
- ► 최초수감나이 : 30대(38.1%), 40대(36.5%), 20대(14.3%)
- ► 자녀수감사실인지 : 안다(55.0%), 모른다(45.0%)
- ► 사회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86.7%), 취업의 어려움(36.0%),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30.8%)
- ► 가정의 어려움 : 자녀양육 및 교육(77.8%), 부부관계(25.3%), 자녀관계(22.8%), 자녀비행 및 문제행동(5.6%)
- ► 심리적 어려움 : 가족에 대한 미안함(80.3%), 미래에 대한 두려움(43.3%),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37.5%)

나)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실태조사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은 주거지원 대상자와 배우자가 동거하고 있지만 자녀는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는 모델이다.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분가한 경우, 주거지원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등으로 유추한다. 전체 408명에서 결측 값 45명을 제외한 363명 중 43명이 이 모델에 해당하며,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모두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았지만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은 중학교 졸업의 비율이 18.6%로 고등학교 졸업 다음으로 높아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중 학력이 가장 낮았다.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실태(N=43)**

- ► 성별 : 남자(81.4%), 여자(18.6%)
- ► 나이 : 50대(51.2%), 60대(23.3%)
- ► 학력 : 고졸(53.5%), 중졸(18.6%)
- ► 종교유무 : 종교있음(83.7%), 종교없음(16.3%)
- ► 종교활동 : 거의하지 않는다(47.6%), 한 달에 2~3회(26.2%)
- ► 생계책임 : 생계책임 있음(73.8%), 생계책임 없음(26.2%)
- ► 취업형태 : 비정규직(37.2%), 자영업(32.6%), 정규직(25.6%),
- ► 월 소득 : 월 100-200만원(48.8%), 월 100만원 미만(20.9%)
- ► 수감기간 : 10년 이상(33.3%), 1년 미만(26.2%)
- ► 범죄유형 : 사기(40.5%), 살인(13.5%)
- ► 전과횟수 : 초범(59.5%), 3범(21.6%), 2범(10.8%)
- ► 최초수감나이 : 30대(32.4%), 50대(29.7%), 40대(16.2%)
- ► 자녀수감사실인지 : 안다(59.0%), 모른다(41.0%)
- ► 사회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84.6%), 취업의 어려움(43.6%),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사람들의 시선 및 편견(각28.2%)
- ► 가정의 어려움 : 자녀양육 및 교육/부부관계(각47.4%), 자녀관계(21.1%)
- ► 심리적 어려움 : 가족에 대한 미안함(77.5%), 미래에 대한 두려움(52.5%),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30.0%)

다)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실태조사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은 주거지원 대상자와 자녀만 동거하고 있는 모델이다.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지 않는 이유로는 배우자와 별거, 이혼, 사별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유추한다. 전체 408명에서 결측 값 45명을 제외한 363명 중 56명이 이 모델에 해당하며,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중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모두 남성 출소자가 많은 편이나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은 여성출소자의 비율이 39.3% 높으며 이는 주거전체 여성출소자의 비율인 17.6%와 비교해 볼 때에도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수감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78.6%로 다른 모델에 비해 자녀들이 부모의 수감사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실태(N=56)**

► 성별 : 남자(60.7%), 여자(39.3%)
► 나이 : 40대(44.6%), 50대(38.9%)
► 학력 : 고졸(44.6%), 전문대졸(21.4%)
► 종교유무 : 종교있음(73.2%), 종교없음(26.8%)
► 종교활동 : 거의하지 않는다(49.1%), 한 달에 2~3회/일주일에 하루(각20.0%)
► 생계책임 : 생계책임 있음(89.3%), 생계책임 없음(10.7%)
► 취업형태 : 비정규직(46.4%), 자영업(26.8%), 정규직(17.9%),
► 월 소득 : 월 100-200만원(44.6%), 월 100만원 미만(33.9%)
► 수감기간 : 1년 미만(34.5%), 1~2년/2~5년(각23.6%)
► 범죄유형 : 사기(44.0%), 폭력(12.0%), 교통특례(10.0%)
► 전과횟수 : 초범(65.4%), 2범(15.4%), 3범(7.7%)
► 최초수감나이 : 40대(38.3%), 30대(29.8%), 50대(17.0%)
► 자녀수감사실인지 : 안다(78.6%), 모른다(21.4%)
► 사회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81.8%),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43.6%), 취업의 어려움(30.9%)
► 가정의 어려움 : 자녀양육 및 교육(75.6%), 자녀관계(28.9%), 부부관계(22.2%), 자녀비행 및 문제행동(6.7%)
► 심리적 어려움 : 가족에 대한 미안함(83.0%), 미래에 대한 두려움(54.7%),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37.7%)

라)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은 주거지원 대상자 중 배우자와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모델이다. 주거지원 대상자가 결혼했으나 이혼이나 별거 혹은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지원 대상자가 미혼으로 인해 원가족(부모 및 형제)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모델이다. 전체 408명에서 결측 값 45명을 제외한 363명 중 39명이 이 모델에 해당하며,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은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중 200~300만원으로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실태(N=39)**

- ► 성별 : 남자(92.3%), 여자(7.7%)
- ► 나이 : 50대(41.0%), 40대(28.2%)
- ► 학력 : 고졸(43.6%), 고등학교중퇴(15.4%)
- ► 종교유무 : 종교있음(71.8%), 종교없음(28.2%)
- ► 종교활동 : 거의하지 않는다(56.4%), 한 달에 2~3회(25.6%)
- ► 생계책임 : 생계책임 있음(87.2%), 생계책임 없음(12.8%)
- ► 취업형태 : 정규직(38.5%), 비정규직/자영업(각28.2%)
- ► 월 소득 : 월200~300만원(46.2%), 월100~200만원(35.9%)
- ► 수감기간 : 1~2년/10년 이상(각23.7%), 1년 미만(21.1%)
- ► 범죄유형 : 사기(25.8%), 살인(16.1%), 교통특례(12.9%)
- ► 전과횟수 : 초범(54.5%), 2범(21.2%)
- ► 최초수감나이 : 20대/40대(각30.8%), 30대(23.1%)
- ► 자녀수감사실인지 : 안다(60.5%), 모른다(39.5%)
- ► 사회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80.0%), 취업의 어려움(45.7%), 사람들의 시선 및 편견(37.1%)
- ► 가정의 어려움 : 자녀양육 및 교육(74.1%), 부부관계(22.2%), 자녀관계(14.8%)
- ► 심리적 어려움 : 가족에 대한 미안함(81.1%),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59.5%), 미래에 대한 두려움(51.4%)

## 다.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별 심리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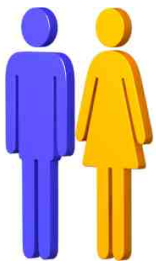
1)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별 심리척도 분석결과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N=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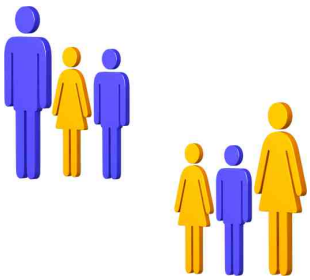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N=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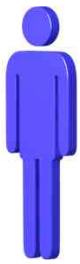


##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N=56)






##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N=39)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별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기위해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아버지역할수행, FACES-Ⅲ(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배우자지지, 귀인성향, 분노표현, 스트레스대처, 의사소통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9개의 심리척도 중 각 척도의 하위요인을 총합해서 척도의 총점이 나올 수 있는 5개의 척도(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아버지역할수행, FACES-Ⅲ, 배우자지지)는 방사형 그래프로 제시하였고,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합쳐질 수 없어서 총점이 나올 수 없는 4개의 척도(귀인성향, 스트레스 대처, 분노표현, 의사소통유형)는 하위요인을 별도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방사형 그래프의 작성기준은 각 척도의 평균의 점수에서 4개 가족모델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따라서 가족모델 간 척도 점수의 비교는 가능하나, 하나의 모델 내에서 척도간 점수 비교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버지역할수행척도에서 4가지 가족모델 중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점수가 가장 높고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배우자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순으로 높다고 말할 수 있어서 가족모델간 비교는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가족모델 내에서는 (문항 수 및 총점이 달라) 척도간 점수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에서 아버지역할수행척도 점수(26.1)가 자아탄력성척도 점수(93.4)보다 낮다고 말할 수 없다.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225명의 심리 척도 분석결과 평균은 아동기학대외상 11.7, 자아탄력성 98.5, 아버지역할수행 27.8, FACES-Ⅲ(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80.3, 배우자지지 23.7이다.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 대상자들은 자아탄력성, 아버지역할수행,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배우자지지 점수가 주거지원 가족모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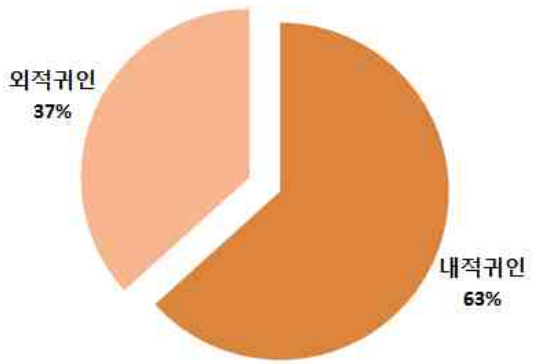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43명의 심리 척도 분석결과 평균은 아동기학대외상 14.7, 자아탄력성 94.4, 아버지역할수행 26.6, FACES-Ⅲ(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73.8, 배우자지지 23.2이다.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 대상자들은 배우자지지 점수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 점수는 주거지원 가족모델 중 가장 낮았다.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56명의 심리 척도 분석결과 평균은 아동기학대외상 11.2, 자아탄력성 93.4, 아버지역할수행 26.1, FACES-Ⅲ(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76.1, 배우자지지 16.7이다.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 대상자들은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배우자지지 점수는 주거지원 가족모델 중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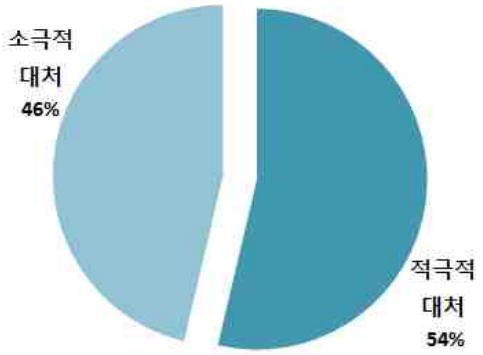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39명의 심리 척도 분석결과 평균은 아동기학대외상 13.8, 자아탄력성 95.9, 아버지역할수행 25.3, FACES-Ⅲ(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76.0, 배우자지지 19.5이다.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 대상자들은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버지역할수행 점수는 주거지원 가족모델 중 가장 낮았다.

2) 주거지원 대상자의 귀인성향, 스트레스 대처, 분노표현, 의사소통유형 척도 하위요인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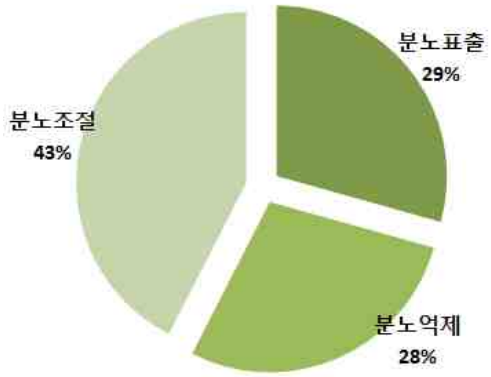
**귀인성향척도 하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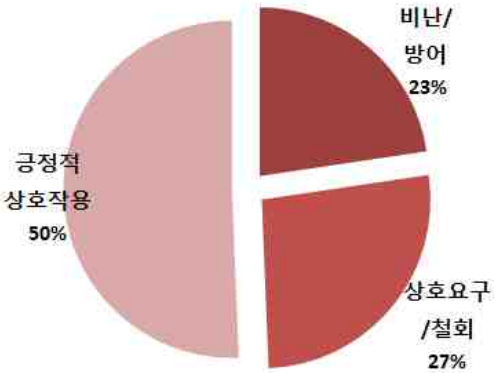

**스트레스 대처척도 하위요인**




**분노표현척도 하위요인**




**의사소통 유형척도 하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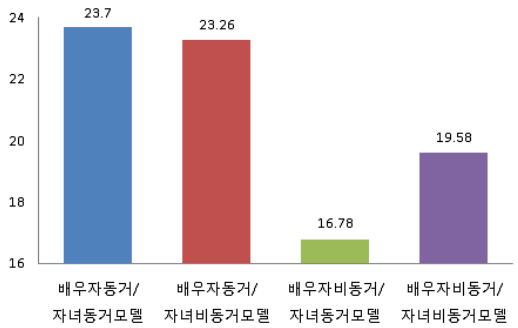

주거지원 대상자의 귀인성향, 스트레스 대처, 분노표현, 의사소통 유형 척도의 하위요인 분석결과 귀인성향에서는 내적귀인이 63%로 외적귀인(37%)보다 내적귀인 성향이 높다. 스트레스 대처척도에서는 적극적 대처가 54%로 소극적 대처(46%)보다 높았으며, 분노표현척도에서는 분노조절이 43%로 가장 높고 분노표출(29%), 분노억제(2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유형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50%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상호요구/철회(27%), 비난/방어(23%) 의사소통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 대상자 4가지 가족모델별로 귀인성향, 스트레스대처, 분노표현, 의사소통 유형 척도의 하위요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도 대체로 위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서 가족모델별로 제시하지 않았다.

## 라. 심리척도별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비교

### 1) 심리척도별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비교

#### 배우자지지(N=345)




▶ 배우자와 동거하는 모델들이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모델들보다 배우자지지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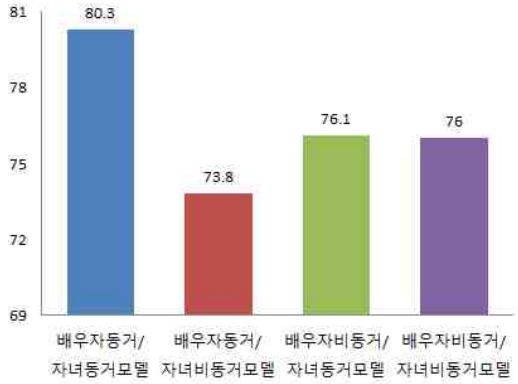
▶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F=13.734, p<.001)*

※ 그래프 상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FACES-Ⅲ) (N=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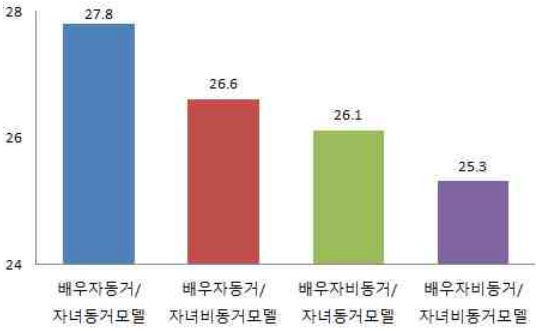

▶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높다.

*(F=3.979, p<.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scheffe 사후 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음

#### 아버지역할수행(N=291)




▶ 배우자와 동거하는 모델들이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모델들보다 아버지역할수행 점수가 높다.

*(F=3.036,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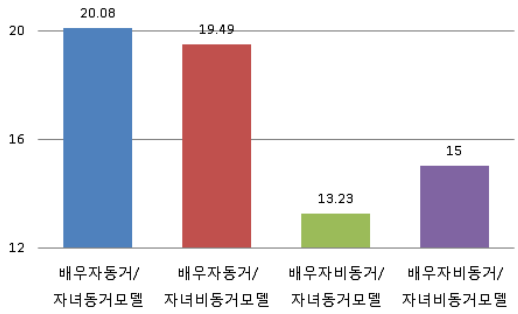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scheffe 사후 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음(

※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의사소통유형 척도 하위요인별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 비교

**의사소통유형척도-긍정적상호작용 (N=344)**




▶ 배우자와 동거하는 모델들의 긍정적의사소통 점수가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모델들보다 높다.

▶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F=15.804,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귀인성향, 스트레스대처, 분노표현, 의사소통유형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마. 주거지원 대상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재범 영향 요인

주거지원 대상자 408명중 결측값 82명을 제외한 326명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대상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거지원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실태(나이, 최종학력, 소득), 형사 사법적 실태(수감기간, 최초수감나이, 범죄유형), 심리적변인(귀인성향,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분노표현, 가족기능성, 배우자지지, 부부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전과횟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최종학력, 소득, 최초수감나이, 아동기 학대외상 및 자아탄력성이었다. 이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Cox와 Snell $R^2$=.182, Nagelkerke $R^2$=.250로 나타났다. 이는 본 회귀 모델이 종속변인 변량의 18.2%와 25.0% 사이를 설명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Hosmer와 Lemeshow 검증 결과, $\chi^2$=65.917, (p<.001)으로 나타나 본 회귀 모델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표 4.15> 전과횟수 분류의 정확도

| | | 예측치 | | | 정확도(%) |
|---|---|---|---|---|---|
| | | 초범 | 재범 | 전체 | |
| 관찰치 | 초범 | 174 | 40 | 214 | 81.3 |
| | 재범 (2범,3범,…,10범) | 57 | 58 | 115 | 50.4 |
| | 전체 | 221 | 98 | 326 | 70.5 |
| $\chi^2$=65.917(df=9, p=.00) | | | | | |

초범과 재범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간에 차이를 보면, 초범에 경우 81.3% 재범에 경우 50.4%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70.5%에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재범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표 4.16> 주거지원 대상자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최종학력 | -.030 | .049 | .368 | 1 | .544 | .971 |
| 100만원 | | | 1.368 | 3 | .713 | |
| 100-200만원 미만 | -.091 | .407 | .049 | 1 | .824 | .913 |
| 200-300만원 미만 | -.342 | .442 | .597 | 1 | .440 | .711 |

| | | | | | | |
|---|---|---|---|---|---|---|
| 300만원 이상 | -.505 | .563 | .805 | 1 | .369 | .603 |
| 10~29세 | | | 42.566 | 3 | .000 | |
| 30~39세 | -.596 | .350 | 2.896 | 1 | .089 | .551 |
| 40~49세 | -1.856 | .382 | 23.674 | 1 | .000 | .156 |
| 50세 이상 | -3.293 | .668 | 24.310 | 1 | .000 | .037 |
| 아동기학대외상 | .008 | .014 | .366 | 1 | .545 | 1.008 |
| 자아탄력성 | -.011 | .009 | 1.434 | 1 | .231 | .989 |
| 상수 | 1.997 | 1.241 | 2.589 | 1 | .108 | 7.368 |

그 결과 주거지원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최초수감나이로 나타났으며, 최초수감나이가 높을수록 재범 확률이 낮다. 최초수감이 40~4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29세인 경우에 비해서 재범일 확률이 0.15배로 낮아지고, 최초수감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0.03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tes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 중 최종학력, 소득,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은 재범에 영향을 예측하는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은 독립변인(최종학력, 소득, 최초수감나이, 아동기학대외상 및 자아탄력성)으로 재범횟수(초범, 2범, 3범 이상)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초수감나이와 소득이 재범횟수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적합하였다.(F=47.482, 유의확률=.000, p<.05) 재범횟수 총 변화량의 22.1%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유의수준 .05에서 재범횟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최초수감나이(t=-9.64, p=.001), 소득(t=-1.99, p=.05)이었다. 하지만 각 요인별 차이와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이 더 적합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로지스틱 결과가 제시되었다.

## 바. 주거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1) 주거지원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실태

※ 가.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나.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다.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라.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 | 실 태 | | 비 교 |
|---|---|---|---|
| 성별 | 가 | 남자(87.1%), 여자(12.9%) | ▸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 모델에서 여성출소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 | 나 | 남자(81.4%), 여자(18.6%) | |
| | 다 | 남자(60.7%), 여자(39.3%) | |
| | 라 | 남자(92.3%), 여자(7.7%) | |
| 나이 | 가 | 50대(38.7%), 40대(37.3%) | ▸ 자녀와 같이 사는 모델의 경우 40대, 50대의 비율이 많았다.<br>▸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으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모델의 경우 50대, 60대의 비율이 많았다. |
| | 나 | 50대(51.2%), 60대(23.3%) | |
| | 다 | 40대(44.6%), 50대(38.9%) | |
| | 라 | 50대(41.0%), 40대(28.2%) | |
| 학력 | 가 | 고졸(35.6%), 전문대졸(23.6%) | ▸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 모델의 학력이 가장 낮았다. |
| | 나 | 고졸(53.5%), 중졸(18.6%) | |
| | 다 | 고졸(44.6%), 전문대졸(21.4%) | |
| | 라 | 고졸(43.6%),고등학교중퇴(15.4%) | |
| 종교유무 | 가 | 종교있음(73.8%),종교없음(26.2%) | ▸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 모델이 가장 종교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
| | 나 | 종교있음(83.7%),종교없음(16.3%) | |
| | 다 | 종교있음(73.2%),종교없음(26.8%) | |
| | 라 | 종교있음(71.8%),종교없음(28.2%) | |
| 종교활동 | 가 | 거의하지 않는다(45.5%), 한 달에 2~3회(22.5%) | ▸ 종교를 가졌다고 말하는 비율에 비해 실제로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은 낮았다.<br>▸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 모델의 경우 가장 종교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다. |
| | 나 | 거의하지 않는다(47.6%), 한 달에 2~3회(26.2%) | |
| | 다 | 거의하지 않는다(49.1%), 한 달에 2~3회/일주일에하루(각20.0%) | |
| | 라 | 거의하지 않는다(56.4%), 한 달에 2~3회(25.6%) | |

| | | | |
|---|---|---|---|
| 생계책임 | 가 | 생계책임 있음(93.3%),<br>생계책임 없음(6.7%) | ▸주거지원 출소자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내 생계 책임을 본인이 지고 있었다. |
| | 나 | 생계책임 있음(73.8%),<br>생계책임 없음(26.2%) | |
| | 다 | 생계책임 있음(89.3%),<br>생계책임 없음(10.7%) | |
| | 라 | 생계책임 있음(87.2%),<br>생계책임 없음(12.8%) | |
| 취업형태 | 가 | 비정규직(37.4%), 정규직(26.6%),<br>자영업(26.1%) | ▸타 모델들이 비정규직,정규직,자영업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비해,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 모델은 비정규직의 모델이 높았다. |
| | 나 | 비정규직(37.2%), 자영업(32.6%),<br>정규직(25.6%), | |
| | 다 | 비정규직(46.4%), 자영업(26.8%),<br>정규직(17.9%), | |
| | 라 | 정규직(38.5%),<br>비정규직/자영업(각28.2%) | |
| 월소득 | 가 | 월 100-200만원(47.6%),<br>월 200-300만원(35.6%) |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 모델의 수입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 모델의 수입이 가장 작았다. |
| | 나 | 월 100-200만원(48.8%),<br>월 100만원 미만(20.9%) | |
| | 다 | 월 100-200만원(44.6%),<br>월 100만원 미만(33.9%) | |
| | 라 | 월200~300만원(46.2%),<br>월100~200만원(35.9%) | |
| 수감기간 | 가 | 1년 미만(33.6%), 1~2년(26.9%),<br>2~5년(22.4%) | ▸자녀가 동거하는 모델들의 수감기간은 짧았다. 자녀없이 배우자와만 동거하는 모델의 경우 수감기간이 가장 길었다. |
| | 나 | 10년 이상(33.3%),<br>1년 미만(26.2%) | |
| | 다 | 1년 미만(34.5%),<br>1~2년/2~5년(각23.6%) | |
| | 라 | 1~2년/10년 이상(각23.7%),<br>1년 미만(21.1%) | |
| 범죄유형 | 가 | 사기(38.3%), 절도(11.7%),<br>향정(8.2%) | ▸모든 모델 유형에서 범죄유형 중 '사기'가 가장 많았다. |
| | 나 | 사기(40.5%),<br>살인(13.5%) | |
| | 다 | 사기(44.0%), 폭력(12.0%),<br>교통특례(10.0%) | |
| | 라 | 사기(25.8%), 살인(16.1%),<br>교통특례(12.9%) | |

| | | | |
|---|---|---|---|
| 전과횟수 | 가 | 초범(61.0%), 2범(19.5%), 3범(10.0%) | ▸주거지원 출소자들은 초범이 가장 많았다. |
| | 나 | 초범(59.5%), 3범(21.6%), 2범(10.8%) | |
| | 다 | 초범(65.4%), 2범(15.4%), 3범(7.7%) | |
| | 라 | 초범(54.5%), 2범(21.2%) | |
| 최초수감 나이 | 가 | 30대(38.1%), 40대(36.5%), 20대(14.3%) | ▸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30대에 최초로 수감된 비율이 가장 많았다. |
| | 나 | 30대(32.4%), 50대(29.7%), 40대(16.2%) | |
| | 다 | 40대(38.3%), 30대(29.8%), 50대(17.0%) | |
| | 라 | 20대/40대(각30.8%), 30대(23.1%) | |
| 자녀수감 사실인지 | 가 | 안다(55.0%), 모른다(45.0%) | ▸주거지원 대상자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수감사실을 과반수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 모델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80%에 달하였다. |
| | 나 | 안다(59.0%), 모른다(41.0%) | |
| | 다 | 안다(78.6%), 모른다(21.4%) | |
| | 라 | 안다(60.5%), 모른다(39.5%) | |
| 사회적 어려움 | 가 | 경제적 어려움(86.7%), 취업의 어려움(36.0%),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30.8%) |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주거지원 대상자가 복수응답한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응답한 비율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
| | 나 | 경제적 어려움(84.6%), 취업의 어려움(43.6%),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사람들의 시선 및 편견(각28.2%) | |
| | 다 | 경제적 어려움(81.8%),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43.6%), 취업의 어려움(30.9%) | |
| | 라 | 경제적 어려움(80.0%), 취업의 어려움(45.7%), 사람들의 시선 및 편견(37.1%) | |
| 가정의 어려움 | 가 | 자녀양육 및 교육(77.8%), 부부관계(25.3%),자녀관계(22.8%), 자녀비행 및 문제행동(5.6%) | ▸주거지원 대상자의 각 모델별 가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 및 교육이였다. |
| | 나 | 자녀양육 및 교육 /부부관계(각47.4%), 자녀관계(21.1%) | |

| | | | |
|---|---|---|---|
| | 다 | 자녀양육 및 교육(75.6%),<br>자녀관계(28.9%),<br>부부관계(22.2%),<br>자녀비행 및 문제행동(6.7%) | |
| | 라 | 자녀양육 및 교육(74.1%),<br>부부관계(22.2%),<br>자녀관계(14.8%) | |
| 심리적 어려움 | 가 | 가족에 대한 미안함(80.3%),<br>미래에 대한 두려움(43.3%),<br>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37.5%)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거지원 대상자들은 자신의 출소경험(범죄사실)로 인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 나 | 가족에 대한 미안함(77.5%),<br>미래에 대한 두려움(52.5%),<br>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30.0%) | |
| | 다 | 가족에 대한 미안함(83.0%),<br>미래에 대한 두려움(54.7%),<br>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37.7%) | |
| | 라 | 가족에 대한 미안함(81.1%),<br>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59.5%),<br>미래에 대한 두려움(51.4%) | |

2) 주거지원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심리척도에 따른 제언

|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
|---|---|
| ✔ 다른 모델들 보다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높음 | ✔ 다른 모델들 보다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낮음 |
|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
| ✔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배우자지지 점수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가장 낮음 | ✔ 배우자지지, 아버지역할수행, 의사소통유형(긍정적 의사소통) 점수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낮음 |

| | | |
|---|---|---|
| **배우자 동거 여부에 따른** | **심리척도에 나타난 특징** | ▫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족모델들에서는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모델들에 비해 배우자 지지와 아버지역할 수행 점수가 높고, 긍정적 의사소통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제 언** | ➤ 배우자와 함께 사는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를 받고, 긍정적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처럼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하나 갖게 되며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가족의 유지 및 회복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 | | |
|---|---|---|
| **자녀 동거 여부에 따른** | **심리척도에 나타난 특징** | ▫ 자녀와 동거하는 모델들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모델들에 비해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FACES-Ⅲ)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제 언** | ➤ 자녀와 함께 사는 주거지원 대상자에서는 가족 간의 응집력이 크고, 조화롭게 가정을 이끌어 갔다.<br><br>➤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주거지원 대상자에서는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이 떨어져 가족위기와 가족해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재범 예측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

| 재범예측 요인 | 제 언 |
| --- | --- |
| ▹ 최초수감나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r>▹ 최초수감나이가 높을수록 재범 확률이 낮다. 최초수감이 40~4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29세인 경우에 비해서 재범일 확률이 0.15배로 낮아지고, 최초수감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0.03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 ▸ 최초 수감 나이가 어릴수록 재범 확률이 높아지므로,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희망센터에서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4)주거지원 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에 따른 제언

-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 모델의 여성출소자는 가정의 생계책임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가족희망센터에서는 여성출소자의 가정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연계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주거지원 대상자의 각 모델별 가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 및 교육이었다. 또한 현재 자녀랑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소자의 가정복귀 및 결속를 위해 가족희망센터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이다. 이에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출소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거지원 대상자들은 자신의 출소경험(범죄사실)로 인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다루는 상담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배우자로부터 지지받고 고마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희망센터에서 제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와 현재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가 있는 출소자 가정인 경우에는 자녀와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고 결속이 강해지도록 부모 및 자녀에게 가족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같이 살지 않는 모델은 20대의 비율이 높아 미혼이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족희망센터는 이들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최초 수감 나이가 어릴수록 재범 확률이 높아지므로,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희망센터에서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주거지원 대상자에서는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이 떨어져 가족위기와 가족해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하나 갖게 되며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가족의 유지 및 회복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3. 숙식제공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

이번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각 지부의 숙식제공 대상자 510명으로부터 수합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가. 숙식제공 대상자 전체실태 분석결과

주요 변인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숙식제공 대상자 실태(N=510)**

► 성별 : 남성(98.4%), 여성(1.6%)
► 연령 : 40대(31.0%) > 50대(24.9%) > 30대(19.7%)
► 최종학력 : 고졸(35.2%) > 중졸(14.7%) > 대졸(9.1%)
► 결혼상태 : 미혼(50.2%) > 이혼(28.2%)
► 직업 : 일용직(44.6%) > 무직(24.0%)
► 한 달 수입: 50만원 미만(31.3%), 50~100만원 미만(20.8%)
100~150만원미만(28.7%), 150만원 미만(80.7%)
►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혼상태 : 혼인가정_부모가 결혼상태(54.9%)
결손가정_부모가 별거, 이혼, 재혼, 동거, 부모님 안 계심(45.1%)
► 가장 힘이 되는 것 : 법무보호복지공단(33.8%), 가족(20.5%)
► 아동기 동거인 : 양친과 생활(57.1%),
타인과 생활_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친척집, 시설에서 생활(32.9%)
► 현재 가족과의 연락상태 : 연락은 하나 함께 지내지 않음(46.2%)
► 가족과 연락 두절된 이유 : 미안해서(41.3%)
►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 : 수감 전(48.1%), 수감직후(23.7%)
► 범죄유형 : 절도(30.5%), 폭력(18.2%)
► 수감횟수 : 초범(28.1%), 2범(20.9%), 3범(19.5%)
► 총 수감기간 : 1년 미만(24.9%), 1-2년 미만(20.6%), 2-5년미만(25.5%)
► 최초 수감 나이 : 10대(20.3%), 20대(32.3%), 30대(20.7%)
► 범죄동기 : 경제적 어려움(41.9%), 홧김에 충동적으로(17.6%)
► 심리적 어려움 : 후회(25.3%), 외로움(24.5%), 무기력(14.1%)
►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 취업(28.9%), 거주할 곳 없음(24.7%)
► 희망하는 가정 : 새로운가정(47.0%), 원래의가정(29.6%)
► 가정을 꾸리는 데 희망하는 공단 지원 : 주거지원(43.5%), 취업알선(34.8%)

## 나.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별 실태 조사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숙식제공 대상자의 어린 시절 양친양육과 현가족 연락을 기준으로 총 4가지 유형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원가족이란 출소자가 어린 시절에 함께 생활한 양친(생부와 생모)을 말한다. 현가족이란 출소자가 현재 미혼일 경우, 부모, 형제를 말하며 출소자가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된다.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은 출소자가 어린 시절 양친(생부와 생모)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현재에도 현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거나 가족과 연락중인 상태를 뜻한다.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은 출소자가 어린 시절 양친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현재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를 뜻한다.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출소자가 어린시절 양친과 함께 살지 않고, 편모, 편부, 조부모, 친척집, 시설 등에서 생활했으며, 현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거나 가족과 연락중인 상태를 뜻한다.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은 출소자가 어린시절 양친아래에서 살지 않고, 편모, 편부, 조부모, 친척집, 시설등에서 생활했으며, 현재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를 뜻한다.

1)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실태조사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은 출소자가 어린 시절 양친(생부와 생모)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현재 현가족(미혼인 출소자의 경우 부모/형제를 의미하며, 출소자가 기혼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의미)과 함께 지내고 있거나 가족과 연락중인 상태를 뜻한다.

전체 510명에서 결측 값 17명을 제외한 493명 중 204명이 이 모델에 해당하며,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은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 중 초범이 가장 높았으며, 재범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실태(N=204)**

► 성별 : 남성(97.1%), 여성(2.9%)
► 연령 : 50대(38.3%) > 40대(36.1%)
► 최종학력 : 고졸(41.3%) > 대졸(12.1%) > 중졸(11.7%)
► 결혼상태 : 미혼(42.6%) > 이혼(28.9%)
► 직업 : 일용직(36.1%) > 무직(25.2%)
► 한 달 수입 : 50만원 미만(29.4%), 50-100만원 미만(16.6%)
100-150만원 미만(27.8%), 150만원 미만(73.8%)
►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혼상태 : 혼인가정_부모가 결혼상태(87.8%)
결손가정_부모가 별거, 이혼, 재혼, 동거, 부모님 안 계심(12.2%)
► 가장 힘이 되는 것 : 가족(39.3%), 법무보호복지공단서비스(37.9%)
► 아동기 동거인 : 양친과 생활(100%)
► 현재 가족과의 연락상태 : 연락은 하나 함께 지내지 않음(73.4%)
► 가족과 연락 두절된 이유 : 미안해서(61.5%)
►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 : 수감전(38.7%)
► 범죄유형 : 절도(23.0%), 사기(17.0%), 폭력(15.0%)
► 수감횟수 : 초범(37.4%), 2범(24.1%), 3범(15.4%)
► 총 수감기간 : 1년 미만(31.7%), 1-2년 미만(21.1%), 2-5년미만(22.6%)
► 최초 수감 나이 : 20대(25.4%) > 30대(20.8%) > 40대(20.3%)
► 범죄동기 : 경제적 어려움(38.3%), 홧김에 충동적으로(16.9%)
► 심리적 어려움 : 후회(46.0%) 외로움(38.5%) 무기력(24.6%)
►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 취업(56.8%), 거주할 곳 없음(33.9%)
► 희망하는 가정 : 새로운가정(43.2%), 원래의가정(41.7%)
► 가정을 꾸리는 데 희망하는 공단 지원 : 주거지원(49.5%), 취업알선(44.3%)

2)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실태조사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은 출소자가 어린 시절 양친(생부와 생모)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현재 가족(미혼인 출소자의 경우 부모, 형제, 출소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포함)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를 뜻한다.

전체 510명에서 결측 값 17명을 제외한 493명 중 78명이 이 모델에 해당하여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차지했다. 수감횟수가 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난 모델이다.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실태(N=78)**

- ► 성별 : 남성(100%)
- ► 연령 : 40대(30.4%) > 50대(27.8%) > 30대(21.5%)
- ► 최종학력 : 고졸(35.4%) > 중졸(16.5%) > 대졸(11.4%)
- ► 결혼상태 : 미혼(47.4%) > 이혼(35.9%)
- ► 직업 : 일용직(56.4%) > 무직(20.5%)
- ► 한 달 수입 : 50만원 미만(29.6%), 50-100만원 미만(28.2%)
  100-150만원 미만(31.0%), 150만원 미만(88.8%)
- ►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혼상태 : 혼인가정_부모가 결혼상태(71.8%)
  결손가정_부모가 별거, 이혼, 재혼, 동거, 부모님 안계심(28.2%)
- ► 가장 힘이 되는 것 : 법무보호복지공단(51.9%), 변화 가능성(22.8%)
- ► 아동기 동거인 : 양친과 생활(100%)
- ► 현재 가족과의 연락상태 : 연락두절(73.4%)
- ► 가족과 연락 두절된 이유 : 미안해서(51.9%)
- ►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 : 수감 전(59.2%)
- ► 범죄유형 : 절도(32.1%), 폭력(19.2%), 사기(14.1%)
- ► 수감횟수 : 초범(20.8%), 2범(16.9%), 3범(23.4%)
- ► 총 수감기간 : 1년 미만(24.4%), 1-2년 미만(23.1%), 2-5년미만(21.8%)
- ► 최초 수감 나이 : 20대(36.7%) > 30대(26.6%) > 40대(11.4%)
- ► 범죄동기 : 경제적 어려움(44.9%), 약물 및 폭력 문제(26.9%)
- ► 심리적 어려움 : 외로움(40.3%) 후회(39.0%) 불안(23.4%)
- ►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 거주할 곳 없음(57.7%), 취업(52.6%)
- ► 희망하는 가정 : 새로운가정(59.0%), 독신(23.1%)
- ► 가정을 꾸리는 데 희망하는 공단 지원 : 주거지원(53.3%), 취업알선(42.3%)

3)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실태조사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출소자가 어린 시절 양친 아래에서 살지 않고 편모, 편부, 조부모, 친척집, 시설 등에서 생활했고, 현재 가족(미혼인 출소자의 경우 부모, 형제, 출소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포함)과 함께 지내고 있거나 가족과 연락중인 상태를 뜻한다.

전체 510명에서 결측 값 17명을 제외한 493명 중 101명이 이 모델에 해당하여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차지했다. 2범과 3범에 비해 초범이 가장 많은 모델이다.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실태(N=101)**

- ► 성별 : 남성(99.0%), 여성(1.0%)
- ► 연령 : 40대(31.3%) > 20대(26.3%)
- ► 최종학력 : 고졸(31.7%) > 중졸(16.8%) > 초졸(7.9%)
- ► 결혼상태 : 미혼(53.5%) > 이혼(20.8%)
- ► 직업 : 일용직(39.6%) > 무직(23.8%)
- ► 한 달 수입 : 50만원 미만(38.4%), 50-100만원 미만(14.1%), 100-150만원 미만(30.3%), 150만원 미만(82.8%)
- ►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혼상태 : 혼인가정_부모가 결혼상태(23.0%) 결손가정_부모가 별거, 이혼, 재혼, 동거, 부모님 안계심(77.0%)
- ► 가장 힘이 되는 것 : 법무보호복지공단(32.0%), 가족(28.2%)
- ► 아동기 동거인 : 양친과 생활(0%) 타인과_생활_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친척집, 시설에서 생활(100%)
- ► 현재 가족과의 연락상태 : 연락은 하나 함께 지내지 않음(77.7%)
- ► 가족과 연락 두절된 이유 : 미안해서(50.8%)
- ►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 : 수감 전(47.0%)
- ► 범죄유형 : 절도(38.0%), 폭력(22.0%), 사기(10.0%)
- ► 수감횟수 : 초범(29.6%), 2범(18.4%), 3범(19.4%)
- ► 총 수감기간 : 1년 미만(19.8%), 1-2년 미만(19.8%), 2-5년미만(33.3%)
- ► 최초 수감 나이 : 20대(32.7%) > 10대(31.6%) > 30대(17.3%)
- ► 범죄동기 : 경제적 어려움(37.3%), 홧김에 충동적으로(22.5%)
- ► 심리적 어려움 : 외로움(32.6%) 후회(31.6%) 불안(27.4%)
- ►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 취업(44.3%), 거주할 곳 없음(33.0%)
- ► 희망하는 가정 : 새로운가정(46.0%), 원래의가정(34.0%)
- ► 가정을 꾸리는 데 희망하는 공단 지원 : 주거지원(52.6%), 취업알선(35.1%)

4)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실태조사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은 출소자가 어린시절 양친 아래에서 살지 않고 편모, 편부, 조부모, 친척집, 시설 등에서 생활했으며, 현재 가족(미혼인 출소자의 경우 부모, 형제를 의미하며 출소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의미)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를 뜻한다.

전체 510명에서 결측 값 17명을 제외한 493명 중 110명이 이 모델에 해당하여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차지했다. 다른 모델에 비해 수감횟수 3범의 비율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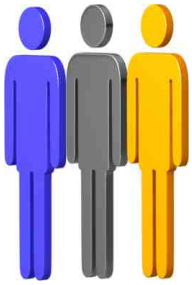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실태(N=110)**

- ► 성별 : 남자(100%)
- ► 연령 : 50대(27.9%) > 30대(26.1%)
- ► 최종학력 : 고졸(26.1%) > 중졸(18.0%) > 초졸(8.1%)
- ► 결혼상태 : 미혼(60.0%) > 이혼(30.0%)
- ► 직업 : 일용직(54.6%) > 무직(24.1%)
- ► 한 달 수입 : 50만원 미만(28.4%), 50-100만원 미만(28.4%), 100-150만원 미만(27.5%), 150만원 미만(84.3%)
- ►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혼상태 : 혼인가정_부모가 결혼상태(10.9%) 결손가정_부모가 별거, 이혼, 재혼, 동거, 부모님 안 계심(89.1%)
- ► 가장 힘이 되는 것 : 법무보호복지공단(52.3%), 주변사람들의지지(16.2%)
- ► 아동기 동거인 : 양친과 생활(0%) 타인과_생활_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친척집, 시설에서 생활(100%)
- ► 현재 가족과의 연락상태 : 연락은 하나 함께 지내지 않음(0%)
- ► 가족과 연락 두절된 이유 : 미안해서(41.9%)
- ►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 : 수감 전(57.1%)
- ► 범죄유형 : 절도(36.4%), 폭력(20.9%), 사기(10.0%)
- ► 수감횟수 : 초범(14.4%), 2범(20.7%), 3범(25.2%)
- ► 총 수감기간 : 1년 미만(17.3%), 1-2년 미만(18.2%), 2-5년미만(27.3%)
- ► 최초 수감 나이 : 20대(41.4%) > 10대(27.9%) > 30대(19.8%)
- ► 범죄동기 : 경제적 어려움(50.5%), 홧김에 충동적으로(18.9%)
- ► 심리적 어려움 : 외로움(43.0%), 후회(37.4%), 불안(23.4%)
- ►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 거주할 곳 없음(63.3%), 취업(50.5%)
- ► 희망하는 가정 : 새로운가정(50.9%), 독신(23.1%)
- ► 가정을 꾸리는 데 희망하는 공단 지원 : 주거지원(51.5%), 취업알선(40.6%)

## 다.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별 심리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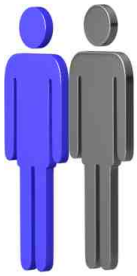
1)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별 심리척도 분석결과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N=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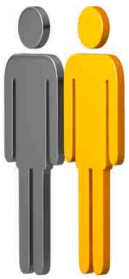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N=78)**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N=101)






##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N=110)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별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감,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자활의지, 사회적지지, 아버지애착, 어머니애착, 스트레스대처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8개의 심리척도 중 각 척도의 하위요인 총점이 합쳐질 수 있는 8개의 척도(공감,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자활의지, 사회적지지, 아버지애착, 어머니애착)는 방사형 그래프로 제시하였고, 척도의 하위요인별 값을 합칠 수 없는 척도(스트레스대처)와 하위요인별 값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척도(사회적지지, 공감)는 아래에 따로 제시하였다.

방사형 그래프의 작성기준은 각 척도의 평균의 점수에서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따라서 4개 가족모델 간 척도 점수의 비교는 가능하나, 하나의 모델 내에서 척도 점수 비교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동기학대외상척도에서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점수가 가장 높고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순으로 점수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가족모델 내에서는 문항 수 및 총점이 달라 척도간 점수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에서 아동기학대외상척도 점수(26.5)가 공감척도 점수(55.3)보다 낮다고 말할 수 없다.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204명의 심리 척도 분석결과 평균은 아동기학대외상 13.6, 자아탄력성 96.5, 자활의지 41.9, 사회적지지 38.2, 아버지애착 34.8, 어머니애착 36.7, 공감 57.3이다.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에 해당하는 숙식 출소자들은 아동기 때 원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현재 가족과도 연락이 가능한 집단으로, 공감, 스트레스대처, 자아탄력성, 자활의지, 사회적지지,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수준이 가족모델 중 높게 나왔다. 또한 아동기 학대 외상의 점수는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 중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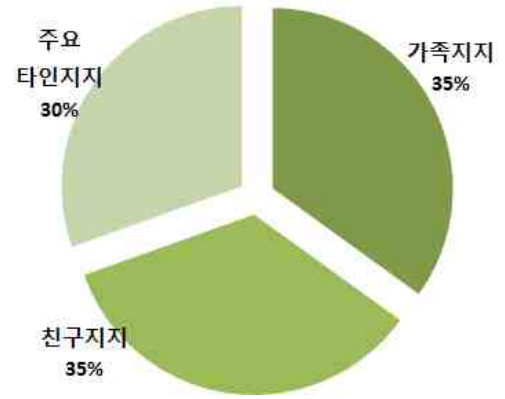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78명의 심리 척도 분석결과 평균은 아동기학대외상 20.7, 자아탄력성 90.5, 자활의지 38.9, 사회적지지 32.3, 아버지애착 31.6, 어머니애착 32.6, 공감 55.4이다.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은 자활의지와 자아탄력성이 가족모델 중 낮은 편으로, 자활의지와 가족관계의 측면에서는 숙식대상자의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현재 가족을 갖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101명의 심리 척도 분석결과 평균은 아동기학대외상 24.0, 자아탄력성 93.1, 자활의지 38.1, 사회적지지 34.8, 아버지애착 30.4, 어머니애착 32.3, 공감 54.0이다.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과 아동기학대외상에서는 가족모델 중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활의지는 가족모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현가족과 연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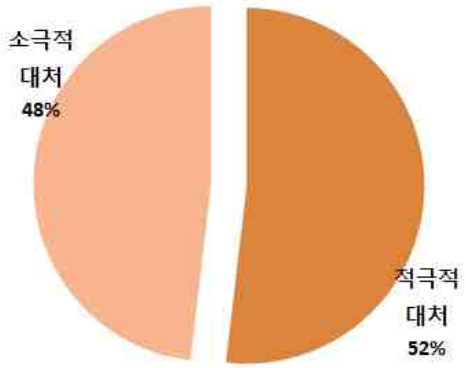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110명의 심리 척도 분석결과 평균은 아동기학대외상 26.5, 자아탄력성 89.4, 자활의지 39.2, 사회적지지 31.1, 아버지애착 28.1, 어머니애착 29.4, 공감 55.3이다.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은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과 비교해서 공감, 스트레스 대처, 자아탄력성, 자활의지, 어머니애착, 아버지애착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아동기학대외상은 가족모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숙식제공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스트레스대처, 공감 척도 하위요인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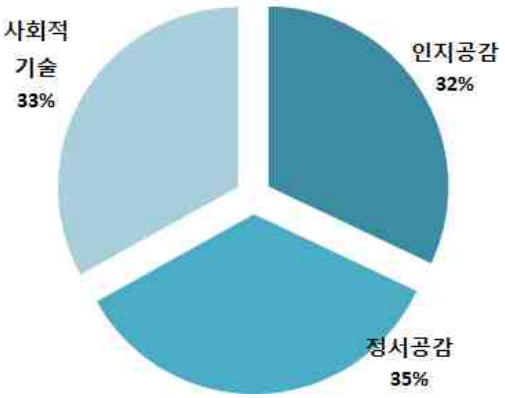
**사회적지지척도 하위요인**




**스트레스 대처척도 하위요인**




**공감척도 하위요인**




숙식제공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 공감 척도의 하위요인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에서는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각 35%, 주요타인지지가 30%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척도에서는 적극적 대처가 52%로 소극적 대처(48%)보다 높았으며, 공감척도에서는 정서공감 35%, 사회적기술 33%, 인지공감 32%로 나타났다.

숙식제공 대상자의 4가지 가족모델별로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 공감 척도의 하위요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서 가족모델별로 제시하지 않았다.

## 라. 심리척도별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 비교

1) 심리척도별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 비교

### 아동기 학대 외상(N=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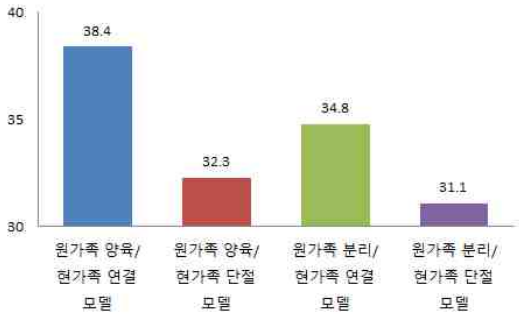

▸원가족과 분리된 모델들이 원가족에게 양육된 모델들보다 아동기 학대 외상 점수가 높다.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 <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 <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

*(F=41.192,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사회적지지(N=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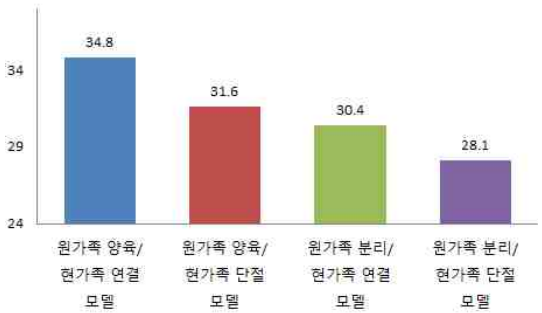

▸현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모델들이 현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모델보다 사회적지지가 높다.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

*(F=12.660,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아버지 애착(N=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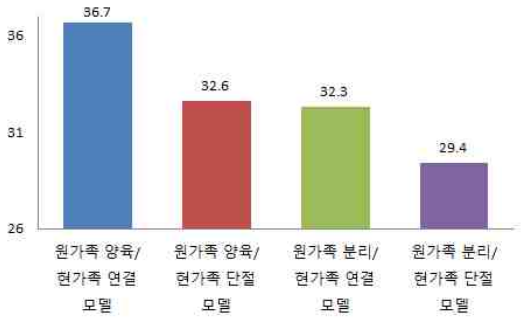

▸원가족과 분리된 모델들이 원가족에게 양육된 모델보다 아버지애착이 낮다.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 <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

*(F=17.816,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어머니 애착(N=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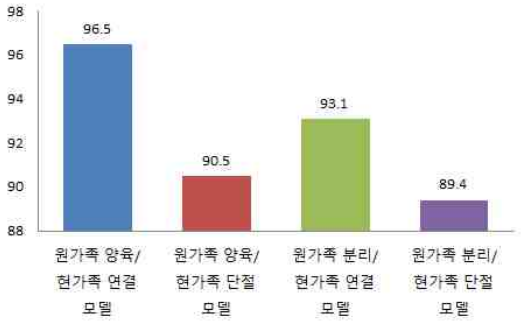

▸원가족과 분리된 모델들이 원가족에게 양육된 모델보다 어머니애착이 낮다.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F=21.120,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자아탄력성(N=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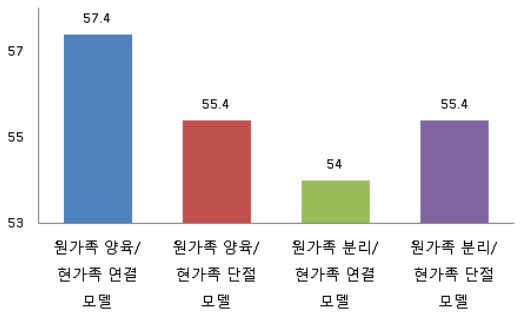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이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보다 자아탄력성이 높다.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F=5.580,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공감(N=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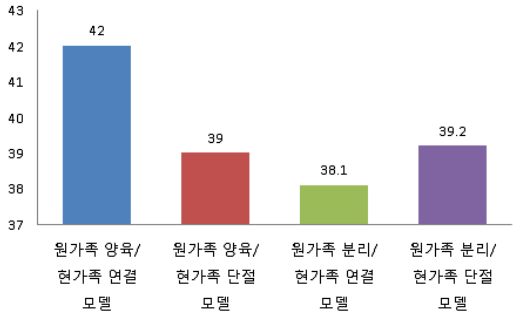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이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보다 공감능력이 높다.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F=5.215,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자활의지(N=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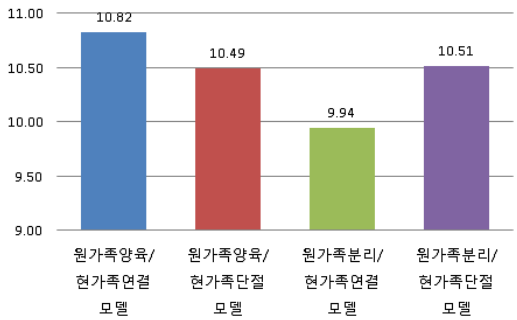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보다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이 자활의지가 높다.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F=7.042,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2) 공감,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지지 척도 하위요인별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 비교

**공감척도-정서공감 (N=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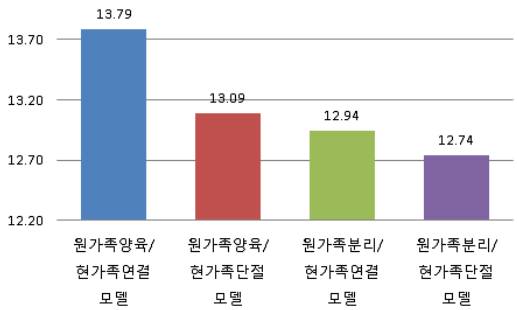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이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보다 정서공감이 높다.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F=4.145, p<.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공감척도-사회적기술 (N=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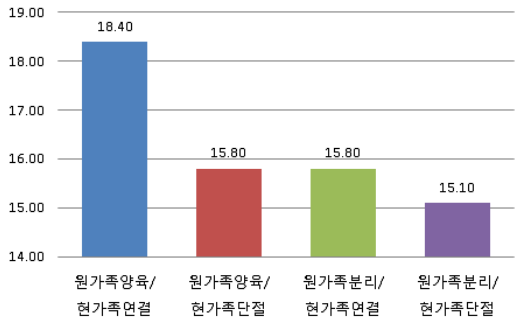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이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보다 사회적기술이 높다.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F=4.556, p<.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스트레스 대처 척도-적극적 대처 방식 (N=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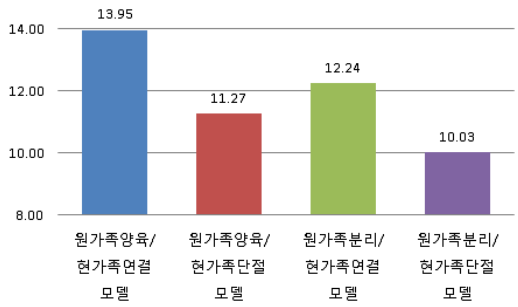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적극적 대처가 높다.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F=10.104,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사회적지지 척도-가족지지 (N=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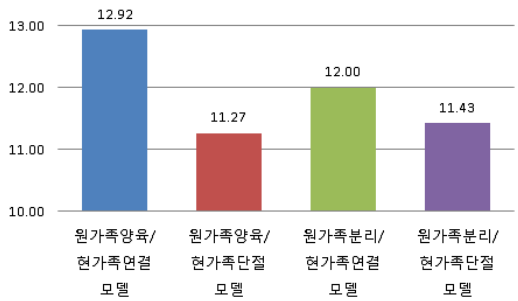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가족지지가 높다.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F=22.069, p<.0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사회적지지 척도-친구지지 (N=341)




- 현가족연결모델이 현가족단절모델보다 친구지지가 높다.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F=4.855, p<.01)*

※ 그래프의 수치는 각 모델별 평균임

※ 공감, 스트레스대처(소극적대처), 사회적지지(주요타인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마. 숙식제공 대상자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재범 영향 요인

숙식제공 대상자 432명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대상자의 재범을 예측해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실태(나이, 학력, 소득), 형사 사법적 실태(수감기간, 최초수감나이, 범죄유형), 심리적변인(공감, 스트레스 대처전략,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자활의지, 사회적지지, 부모애착)에 따른 전과횟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최종학력, 소득, 최초수감나이, 아동기 학대외상 및 자아탄력성이었다. 이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Cox와 Snell R=.207, Nagelkerke $R^2$=.303로 나타났다. 이는 본 회귀 모델이 종속변인 변량의 20.7%와 30.3% 사이를 설명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Hosmer와 Lemeshow 검증 결과, $\chi^2$=100.080, (p<.001)으로 나타나  본 회귀 모델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표 4.17> 수감횟수 분류의 정확도

| | | 예측치 | | | 정확도(%) |
|---|---|---|---|---|---|
| | | 초범 | 재범 | 전체 | |
| 관찰치 | 초범 | 43 | 70 | 113 | 38.1 |
| | 재범 (2범,3범,…,10범) | 17 | 302 | 319 | 94.7 |
| | 전체 | 60 | 372 | 432 | 79.9 |
| $\chi^2$=100.080(df=10, p=.00) | | | | | |

초범과 재범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간에 차이를 보면, 초범에 경우 38.1% 재범에 경우 94.7%가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79.9%에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4.18>와 같다.

<표 4.18> 숙식제공 대상자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Wald | 자유도 | 유의확률 | Exp(B) |
|---|---|---|---|---|---|---|
| 최종학력 | -.184 | .050 | 13.545 | 1 | .000 | .832 |
| 10세 이상~19세 미만 | | | 40.959 | 5 | .000 | |
| 20세 이상~29세 미만 | -.098 | .425 | .053 | 1 | .817 | .907 |
| 30세 이상~39세 미만 | -.899 | .439 | 4.197 | 1 | .040 | .407 |
| 40세 이상~49세 미만 | -1.963 | .459 | 18.295 | 1 | .000 | .140 |
| 50세 이상~59세 미만 | -1.516 | .501 | 9.170 | 1 | .002 | .220 |

| | | | | | | |
|---|---|---|---|---|---|---|
| 60대 이상 | -4.339 | 1.183 | 13.445 | 1 | .000 | .013 |
| 아동기학대외상 | .007 | .013 | .279 | 1 | .598 | 1.007 |
| 자아탄력성 | -.017 | .009 | 3.235 | 1 | .072 | .983 |
| 100만원 미만 | | | 2.213 | 2 | .331 | |
| 100~200만원 미만 | .180 | .263 | .467 | 1 | .494 | 1.197 |
| 200만원 이상 | -.656 | .569 | 1.329 | 1 | .249 | .519 |
| 상수 | 5.368 | 1.260 | 18.155 | 1 | .000 | 214.498 |

그 결과 숙식제공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최종학력과 최초수감나이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재범 확률은 0.8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최초수감나이가 30~3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서 재범 확률이 0.4배로 낮아지고, 최초수감이 40~4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 재범확률이 0.1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최초수감이 50~5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 재범확률이 0.2배로 낮아지고, 최초수감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 재범확률이 0.01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tes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 중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소득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예측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은 독립변인(최종학력, 소득, 최초수감나이, 아동기학대외상 및 자아탄력성)으로 재범횟수(초범, 2범, 3범 이상)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초수감나이, 최종학력, 자아탄력성이 재범횟수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적합하였다.(F=43.272, 유의확률=.000, p<.01) 재범횟수 총 변화량의 22.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유의수준 .05에서 재범횟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최초수감나이(t=-8.56, p=.001), 최종학력(t=-4.78, p=.001), 자아탄력성(t=-3.15, p=.01)이었다. 하지만 각 요인별 차이와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이 더 적합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로지스틱 결과가 제시되었다.

## 바. 숙식제공 대상자 실태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1)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실태

* 가.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나.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다.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라.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 | 실 태 | | 비 교 |
|---|---|---|---|
| 성별 | 가 | 남성(97.1%), 여성(2.9%) | ▸숙식제공 대상자는 남성출소자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br>▸현가족단절모델은 100% 남성출소자였다. |
| | 나 | 남성(100%) | |
| | 다 | 남성(99.0%), 여성(1.0%) | |
| | 라 | 남성(100%) | |
| 나이 | 가 | 50대(38.3%), 40대(36.1%) | ▸전제적으로 40~50대의 비율이 많았다.<br>▸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은 5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br>▸원가족양육모델과 달리 원가족분리모델에서는 각각 20대, 30대 젊은층의 비율이 두 번째로 많았다. |
| | 나 | 40대(30.4%), 50대(27.8%) | |
| | 다 | 40대(31.3%), 20대(26.3%) | |
| | 라 | 50대(27.9%), 30대(26.1%) | |
| 학력 | 가 | 고졸(41.3%), 대졸(12.1%) | ▸전체적으로 고졸, 중졸의 학력이 많았다.<br>▸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의 학력이 가장 높았다. |
| | 나 | 고졸(35.4%), 중졸(16.5%) | |
| | 다 | 고졸(31.7%), 중졸(16.8%) | |
| | 라 | 고졸(26.1%), 중졸(18.0%} | |
| 결혼상태 | 가 | 미혼(42.6%), 이혼(28.9%) | ▸미혼의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의 경우 미혼이 6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 | 나 | 미혼(47.4%), 이혼(35.9%) | |
| | 다 | 미혼(53.5%), 이혼(20.8%) | |
| | 라 | 미혼(60.0%), 이혼(30.0%) | |
| 직업 | 가 | 일용직(36.1%), 무직(25.2%) | ▸일용직과 무직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현가족단절모델은 각각 56.4%, 54.6%로 현가족연결모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br>▸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이 미세한 차이로 무직이 가장 적었다. |
| | 나 | 일용직(56.4%), 무직(20.5%) | |
| | 다 | 일용직(39.6%) 무직(23.8%) | |
| | 라 | 일용직(54.6%) 무직(24.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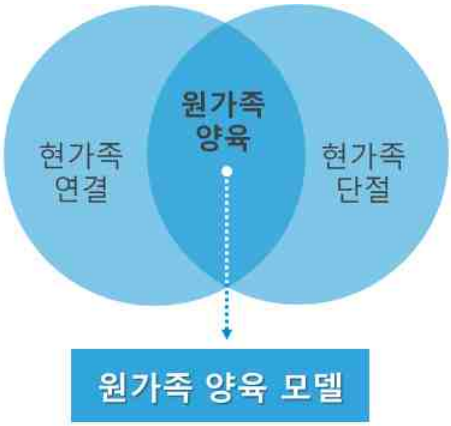
| | | | |
|---|---|---|---|
| 한달 수입 | 가 | 150만원 미만(73.8%),<br>[50만원 미만(29.4%)<br>100-150만원 미만(27.8%),<br>50-100만원 미만(16.6%)] | ▸전체 모델에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비율이 80%이상이었다.<br>▸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50만원 미만이 38.4%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
| | 나 | 150만원 미만(88.8%),<br>[100-150만원 미만(31.0%),<br>50만원 미만(29.6%),<br>50-100만원 미만(28.2%)] | |
| | 다 | 150만원 미만(82.8%),<br>[50만원 미만(38.4%),<br>100-150만원 미만(30.3%),<br>50-100만원 미만(14.1%)] | |
| | 라 | 150만원 미만(84.3%),<br>[50만원 미만(28.4%),<br>50-100만원 미만(28.4%),<br>100-150만원 미만(27.5%)] | |
| 어린 시절 결혼 상태 | 가 | 혼인가정(87.8%),<br>결손가정(12.2%) | ▸현가족연결모델에 비해 현가족단절모델이 어린시절 결손가정인 비율이 많았다.<br>▸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이 어린시절부터 결손가정인 경우가 89.1%로 가장 많았다. |
| | 나 | 혼인가정(71.8%),<br>결손가정(28.2%) | |
| | 다 | 혼인가정(23.0%),<br>결손가정(77.0%) | |
| | 라 | 혼인가정(10.9%),<br>결손가정(89.1%) | |
| 가장 힘이 되는 것 | 가 | 가족(39.3%),<br>법무보호복지공단서비스(37.9%) | ▸전체 모델이 공단을 가장 힘이 되는 것으로 택했지만, 특히 현가족단절모델에서는 50%이상이 공단을 선택했다.<br>▸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은 가족을 가장 힘이 되는 것으로 선택했으나 그 비율은 39.3%로 37.9%인 공단과 비슷했다. |
| | 나 | 법무보호복지공단(51.9%),<br>변화 가능성(22.8%) | |
| | 다 | 법무보호복지공단(32.0%),<br>가족(28.2%) | |
| | 라 | 법무보호복지공단(52.3%),<br>주변사람들의지지(16.2%) | |
| 현재 가족과 연락 상태 | 가 | 연락은 하나 함께 지내지 않음(73.4%) | ▸현가족연결모델도 연락은 하나 함께 지내지 않음의 비율이 70%이상으로 숙식제공 모델자체가 가족관계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 나 | 연락두절(73.4%) | |
| | 다 | 연락은 하나 함께 지내지 않음(77.7%) | |
| | 라 | 연락은 하나 함께 지내지 않음(0%) | |

| | | | |
|---|---|---|---|
| 수감 기간 | 가 | 1년 미만(31.7%), 2-5년미만(22.6%) | ▸원가족양육모델에 비해 원가족분리모델이 수감기간이 더 길었다. |
| | 나 | 1년 미만(24.4%), 1-2년 미만(23.1%) | |
| | 다 | 2-5년미만(33.3%) 1년 미만(19.8%), 1-2년 미만(19.8%), | |
| | 라 | 2-5년미만(27.3%), 1-2년 미만(18.2%), | |
| 범죄 유형 | 가 | 절도(23.0%), 사기(17.0%), 폭력(15.0%) | ▸범죄유형은 절도, 폭력, 사기가 많았고, 특히 절도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 | 나 | 절도(32.1%), 폭력(19.2%), 사기(14.1%) | |
| | 다 | 절도(38.0%), 폭력(22.0%), 사기(10.0%) | |
| | 라 | 절도(36.4%), 폭력(20.9%), 사기(10.0%) | |
| 수감 횟수 | 가 | 초범(37.4%), 2범(24.1%), 3범(15.4%) | ▸현가족연결모델이 초범이 많은 반면, 현가족분리모델은 3범이 가장 많아 재범 비율이 높았다. |
| | 나 | 3범(23.4%), 초범(20.8%), 2범(16.9%) | |
| | 다 | 초범(29.6%), 3범(19.4%) 2범(18.4%), | |
| | 라 | 3범(25.2%) , 2범(20.7%), 초범(14.4%) | |
| 최초 수감 나이 | 가 | 20대(25.4%), 30대(20.8%), 40대(20.3%) | ▸최초수감나이는 20~30대가 가장 많았다.<br>▸원가족양육모델이 최초수감나이가 20대 이상이 많은데 비해 원가족분리모델의 경우, 10대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
| | 나 | 20대(36.7%), 30대(26.6%), 40대(11.4%) | |
| | 다 | 20대(32.7%), 10대(31.6%), 30대(17.3%) | |
| | 라 | 20대(41.4%), 10대(27.9%), 30대(19.8%) | |
| 범죄 동기 | 가 | 경제적 어려움(38.3%), 홧김에 충동적으로(16.9%) |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동기가 되었으며, 특히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은 50%가 경제적 어려움을 동기로 택했다.<br>▸홧김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대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아 대상자들이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느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 | 나 | 경제적 어려움(44.9%), 약물 및 폭력 문제(26.9%) | |
| | 다 | 경제적 어려움(37.3%), 홧김에 충동적으로(22.5%) | |
| | 라 | 경제적 어려움(50.5%), 홧김에 충동적으로(18.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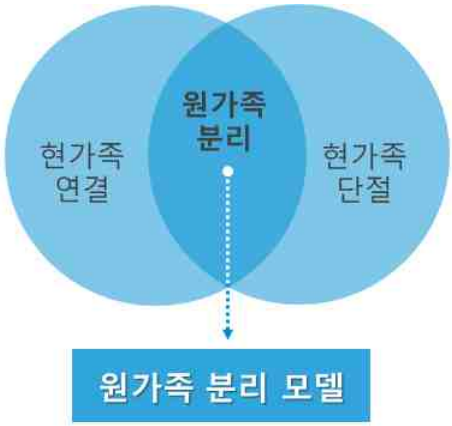
| | | | |
|---|---|---|---|
| 심리적 어려움 | 가 | 후회(46.0%), 외로움(38.5%), 무기력(24.6%) | ▸ 공통적으로 후회, 외로움, 무기력을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야기 했다.<br>▸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은 후회를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br>▸ 현가족단절모델이 현가족연결모델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호소했다. |
| | 나 | 외로움(40.3%), 후회(39.0%), 불안(23.4%) | |
| | 다 | 외로움(32.6%), 후회(31.6%), 불안(27.4%) | |
| | 라 | 외로움(43.0%), 후회(37.4%), 불안(23.4%) | |
| 사회 적응 과정 에서의 어려움 | 가 | 취업(56.8%), 거주할 곳 없음(33.9%) | ▸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취업과 거주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br>▸ 현가족연결모델은 취업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했고, 현가족단절모델은 거주지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했다. |
| | 나 | 거주할 곳 없음(57.7%), 취업(52.6%) | |
| | 다 | 취업(44.3%), 거주할 곳 없음(33.0%) | |
| | 라 | 거주할 곳 없음(63.3%), 취업(50.5%) | |
| 희망 하는 가정 | 가 | 새로운가정(43.2%), 원래의가정(41.7%) | ▸ 공통적으로 새로운가정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br>▸ 현가족연결모델은 원래의 가정을 희망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많았고, 현가족단절모델은 독신으로 살겠다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
| | 나 | 새로운가정(59.0%) 독신(23.1%) | |
| | 다 | 새로운가정(46.0%), 원래의가정(34.0%) | |
| | 라 | 새로운가정(50.9%), 독신(23.1%) | |
| 희망 하는 공단 지원 | 가 | 주거지원(49.5%), 취업알선(44.3%) | ▸ 공통적으로 주거지원과 취업알선을 공단에 바랐다. 특히 주거지원은 50% 이상으로 높았다. |
| | 나 | 주거지원(53.3%), 취업알선(42.3%) | |
| | 다 | 주거지원(52.6%), 취업알선(35.1%) | |
| | 라 | 주거지원(51.5%), 취업알선(40.6%) | |

2)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실태에 따른 제언

가) 원가족양육, 원가족분리 모델에 따른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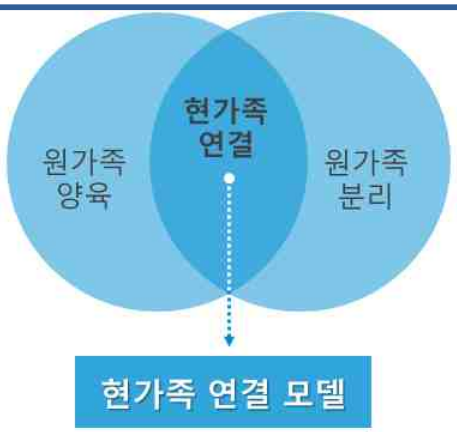

▸수감기간 1년 미만이 가장 많아,
원가족분리모델보다 수감기간이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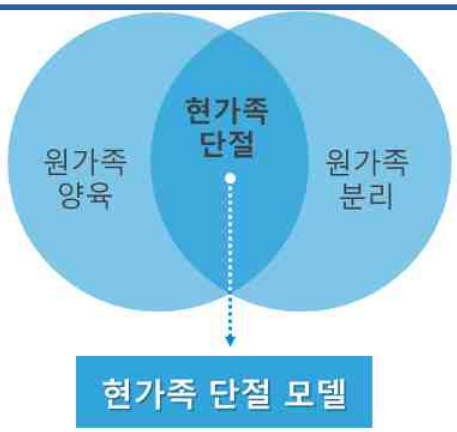

▸수감기간이 2-5년이 가장 많아,
수감기간이 원가족양육모델 보다 길다.

▸원가족분리모델이 원가족양육모델보다 10대에 수감된 사람이 많다.
(원가족양육모델보다 많음, 원가족분리모델에서 최초수감나이는
20대>10대>30대>40대>50대 순으로 나타나고, 원가족양육모델에서
최초수감나이는 20대>30대>40대>50대>10대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원가족분리모델의 출소자들이 10대에 더 많이 수감됨을 알 수 있다.

나) 현가족연결, 현가족단절 모델에 따른 제언




▸범죄횟수가 초범이 가장 많고
현가족단절모델보다 범죄횟수가 적다.




▸ 현가족단절모델은 3범이 가장 많다.

▸현가족과 단절되어 있을수록 범죄횟수가 많으며,
현가족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범죄횟수가 초범이 많았다.

3)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심리척도에 따른 제언

| 모델 | 심리척도에 나타난 특징 | 제 언 |
|---|---|---|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 모델** | ▹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공감, 자활의지, 스트레스 대처(적극적대처) 능력을 보인다. | ▸ 현가족과의 긍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가족희망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 | ▹ 가장 낮은 수준의 아동기 학대 외상을 보인다. | ▸ 원가족 부모와에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
|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 모델** | ▹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보인다.<br>또한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에 비해 아동기학대외상이 높았고, 부모애착이 낮다. | ▸ 아동기학대외상을 상담 장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으며, 부모애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신뢰형성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
| | ▹ 낮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수준을 보인다. | ▸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가족희망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종교, 지역사회 등)가 필요하다. |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 모델** |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을 보인다. | ▸ 현가족이 있는 집단들에게는 최대한 상호긍정적인 연락이나 접촉을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
| |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에 비해서 더 높은 아동기 학대외상을 보이며 낮은 부모애착을 보인다. | ▸ 아동기학대외상을 상담 장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으며, 부모애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신뢰형성과정의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 모델** |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에 비해서 스트레스대처(적극적대처)가 낮게 나타났다.<br>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을 보인다. | ▸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 | ▹ 가장 높은 수준의 아동기 학대외상과 가장 낮은 수준의 부모애착을 보인다. | ▸ 아동기학대외상을 상담 장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으며, 부모애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신뢰형성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

4) 재범 예측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

| 재범예측 요인 | 제 언 |
| --- | --- |
|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재범 확률은 0.8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br>▹ 최초수감나이가 30~3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서 재범 확률이 0.4배로 낮아지고, 최초수감이 40~4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 재범확률이 0.1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최초수감이 50~5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 재범확률이 0.2배로 낮아지고, 최초수감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 재범확률이 0.01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재범 확률이 낮아지므로, 출소 중 또는 출소 후 교육 기회제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한다.<br><br>▸ 최초수감나이가 어릴수록 재범 확률이 높아지므로,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무부, 법무보호복지 공단, 가족희망센터에서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

5)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실태 및 심리척도에 따른 제언

- 10대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원가족(출소자가 어린 시절에 함께 생활한 양친)과 단절된 사람들(예. 고아원, 결손가정등)에게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초범이면서 원가족과 분리된 출소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그 이유는 원가족 아래에서 양육되지 못한 출소자는, 최초수감나이가 빨라지고, 수감기간이 길어지며 원가족 아래에서 양육된 출소자는 최초수감나이가 늦어지고, 수감기간이 짧아진다.

- 현가족(현재 미혼인 출소자의 부모, 형제를 말하며 출소자가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과 단절되어 있는 출소자는 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높은 반면 현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출소자는 초범에서 그친다.

-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 모델 연구를 통해 원가족과 현가족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적극적대처), 사회적지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원가족과 현가족 모두 단절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아동기학대외상과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지지를 보였다.

- 흥미로운 사실은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에 비해 더 높은 아동기 학대외상을 보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을 보였다.

- 따라서 원가족과 분리되어 있더라도 현재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출소자들은 사회적지지척도, 자아탄력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에 따라 출소자들이 결손가정 출신이거나 어린 시절 아동기학대외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가족이 유지되거나 복원되도록 지원해주었을 때 자아탄력성을 회복하고 사회적지지 체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희망센터가 제공하는 가족복원 프로그램이 출소자의 재범예방과 사회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특히 중요한 사실은 주거 대상자만 아니라, 숙식대상자들에게도 가족복원이 사회적응 및 재범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 본 연구결과 숙식제공 대상자들은 가족모델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복원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시 모델별 접근이 필요하다.

## 4. 주거지원 대상자와 숙식지원대상자의 심리척도 차이분석

이 장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각 지부의 주거지원 대상자 408명과 숙식제공 대상자 510명의 수합된 자료 중 주거지원 대상자와 숙식지원대상자에게 공통되게 조사된 세 가지 심리척도인 스트레스대처방식,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모델로 나누기 전인 주거지원 대상자 전체와 숙식제공 대상자 전체의 스트레스대처방식,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 대상자 4모델(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과 숙식제공 대상자 4모델(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 각각의 스트레스대처방식,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가. 주거지원 대상자 전체와 숙식제공 대상자 전체의 심리척도 차이분석

주거지원 대상자 전체와 숙식지원대상자 전체의 스트레스대처방식(적극적대처, 소극적대처),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19> 와 같다.

<표 4.19>

주거지원 대상자와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척도 차이분석

| 척도 | | 모델 | 평균 | 표준편차 | N | F |
|---|---|---|---|---|---|---|
| 스트레스대처방식 | 적극적대처 | 주거지원 대상자 | 19.63 | 5.44 | 405 | 58.012*** |
| | | 숙식제공 대상자 | 16.69 | 6.04 | 500 | |
| | 소극적대처 | 주거지원 대상자 | 16.94 | 4.56 | 405 | 22.716*** |
| | | 숙식제공 대상자 | 15.44 | 4.79 | 500 | |
| 아동기학대외상 | | 주거지원 대상자 | 12.54 | 10.57 | 405 | 88.726*** |
| | | 숙식제공 대상자 | 19.75 | 12.12 | 500 | |
| 자아탄력성 | | 주거지원 대상자 | 96.06 | 16.11 | 405 | 86.479*** |
| | | 숙식제공 대상자 | 86.37 | 15.17 | 500 | |
| Wilks' $\lambda$ = .858, $F$ = 37.356, $p$ < .001, $\eta^2$ = 0.142 | | | | | | |

분석결과 주거지원 대상자 전체와 숙식제공 대상자 전체는 스트레스대처방식(적극적대처, 소극적대처),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858, $F$ = 37.356, $p$ < .001, $\eta^2$ = 0.142).

주거지원 대상자와 숙식제공 대상자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F=58.012,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하위요인인 소극적대처(F=22.716, p<.001) 아동기학대외상(F=88.726, p<.001), 자아탄력성(F=86.479,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대처방식(적극적대처, 소극적대처)에서는 주거지원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숙식제공 대상자보다 높고, 아동기학대외상에서는 숙식제공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주거지원 대상자의 평균점수보다 높고, 자아탄력성에서는 주거지원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숙식제공 대상자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 나.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과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의 심리척도 차이분석

앞서 나눈 주거지원 대상자 가족모델과 숙식제공 대상자 가족모델의 스트레스대처방식(적극적대처, 소극적대처),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20>와 같다.

<표 4.20>

주거지원 대상자 모델과 숙식제공 대상자 모델별 심리척도 차이분석

| 척도 | | 모델 | 평균 | 표준편차 | N | F | Sceffe |
|---|---|---|---|---|---|---|---|
| 스트레스 대처 방식 - 적극적 대처 | 주거 지원 대상자 | ①배우자동거/ 자녀동거 | 20.05 | 5.03 | 223 | 13.421*** | ⑧<④, ⑥,⑦ < ①,②,③ |
| | | ②배우자동거/ 자녀비동거 | 19.36 | 5.67 | 42 | | |
| | | ③배우자비동거/ 자녀동거 | 19.55 | 5.51 | 56 | | |
| | | ④배우자비동거/ 자녀비동거 | 19.05 | 5.71 | 39 | | |
| | 숙식 제공 대상자 | ⑤원가족양육/ 현가족연결 | 18.45 | 5.84 | 205 | | |
| | | ⑥원가족양육/ 현가족단절 | 15.71 | 5.75 | 76 | | |
| | | ⑦원가족분리/ 현가족연결 | 15.85 | 5.48 | 102 | | |
| | | ⑧원가족분리/ 현가족단절 | 15.22 | 6.17 | 109 | | |

| | | | | | | | |
|---|---|---|---|---|---|---|---|
| 스트레스 대처 방식 - 소극적 대처 | 주거 지원 대상자 | ①배우자동거/ 자녀동거 | 17.00 | 4.37 | 223 | 3.823*** | |
| | | ②배우자동거/ 자녀비동거 | 15.90 | 4.88 | 42 | | |
| | | ③배우자비동거/ 자녀동거 | 17.33 | 4.71 | 56 | | |
| | | ④배우자비동거/ 자녀비동거 | 15.82 | 4.24 | 39 | | |
| | 숙식 제공 대상자 | ⑤원가족양육/ 현가족연결 | 16.11 | 4.56 | 205 | | |
| | | ⑥원가족양육/ 현가족단절 | 15.10 | 5.33 | 76 | | |
| | | ⑦원가족분리/ 현가족연결 | 14.99 | 4.33 | 102 | | |
| | | ⑧원가족분리/ 현가족단절 | 15.12 | 5.01 | 109 | | |
| 아동기 학대 외상 | 주거 지원 대상자 | ①배우자동거/ 자녀동거 | 11.80 | 10.71 | 223 | 32.779*** | ①,③,④,⑤ <⑥, ②<⑦,⑧ |
| | | ②배우자동거/ 자녀비동거 | 15.07 | 11.75 | 42 | | |
| | | ③배우자비동거/ 자녀동거 | 11.29 | 8.71 | 56 | | |
| | | ④배우자비동거/ 자녀비동거 | 13.82 | 11.51 | 39 | | |
| | 숙식 제공 대상자 | ⑤원가족양육/ 현가족연결 | 13.60 | 9.85 | 205 | | |
| | | ⑥원가족양육/ 현가족단절 | 20.71 | 11.80 | 76 | | |
| | | ⑦원가족분리/ 현가족연결 | 24.03 | 11.89 | 102 | | |
| | | ⑧원가족분리/ 현가족단절 | 26.58 | 11.19 | 109 | | |
| 자아 탄력성 | 주거 지원 대상자 | ①배우자동거/ 자녀동거 | 98.49 | 16.08 | 223 | 17.076*** | ⑥,⑧ <②,③, ⑦ <①,④ |
| | | ②배우자동거/ 자녀비동거 | 94.24 | 18.15 | 42 | | |
| | | ③배우자비동거/ 자녀동거 | 93.41 | 13.94 | 56 | | |
| | | ④배우자비동거/ 자녀비동거 | 95.92 | 12.93 | 39 | | |
| | 숙식 제공 대상자 | ⑤원가족양육/ 현가족연결 | 89.34 | 14.32 | 205 | | |
| | | ⑥원가족양육/ 현가족단절 | 83.68 | 14.70 | 76 | | |
| | | ⑦원가족분리/ 현가족연결 | 86.39 | 16.24 | 102 | | |
| | | ⑧원가족분리/ 현가족단절 | 83.06 | 14.96 | 109 | | |

Wilks' $\lambda$ = .704, F = 11.072, p < .001, $\eta^2$ = 0.084

분석결과 주거지원 대상자 4모델과 숙식제공 대상자 4모델은 스트레스대처방식(적극적대처, 소극적대처),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704, $F$ = 11.072, $p$ < .001, $\eta^2$ = 0.084).

사후비교를 위해 Scheffe 검정을 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에서는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이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는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과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이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과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학대외상에서는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이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배우자동거/자녀동거,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학대외상에서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과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이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서는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과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이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과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에서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과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이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하위요인인 소극적대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Sceffe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 중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의 경우 주거지원 대상자가 숙식제공 대상자보다 점수가 높았고, 아동기 학대 외상척도의 경우 원가족 분리된 모델이 가장 높았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경우에는 배우자동거/자녀동거 모델이 가장 높았다.

# Ⅱ. 숙식제공 대상자 다면적 인성검사(MMPI-2) 특성분석결과

## 1. 숙식제공대상자그룹과 한국규준그룹의 MMPI-2 척도별 차이

### 가. 타당도 및 임상척도

MMPI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숙식제공 대상자 그룹과 한국 규준 그룹의 타당도 척도및 임상 척도 점수는 다음의 <표 4.21>과 같다. 우선 검사결과 해석이 가능한지, 신뢰로운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도 척도로서 L(부인), F(비전형), K(교정) 척도를 분석하였다. L척도 T점수의 최고값은 74점으로, 65~74의 점수에는 18명이 분포하였다. F척도 T점수의 최고값은 74점으로, 65~74의 점수에는 6명으로 나타났으며, K척도 T점수의 최고값은 73점으로, 65~73의 점수에는 17명이 분포하였다. 이들은 부정응답 성향이 시사되고 자신의 증상이나 문제를 과장하여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VRIN(무선반응 비일관성)점수와 TRIN(고정반응 비일관성)점수를 고려한 결과 검사자료로 해석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척도의 차이 분석결과, L(부인)척도에서 대상자 그룹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L척도의 유의미한 차이($t=4.15$, $p<.001$)는 대상자들이 방어적인 마음가짐으로 검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더 높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K척도는 차이가 없으나 L척도에서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대상자들이 덜 세련되게 자신을 방어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임상 척도의 차이 분석결과,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척도는 Pd(반사회성), Pa(편집증)으로 나타났다. Pd(반사회성) 척도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규칙이나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더 느끼고, 사회적, 도덕적 규범의 무시, 가정 문제,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결여를 반영한다. Pa(편집증) 척도는 세상을 위협적인 곳으로 보고,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적 태도 등을 반영한다.

반면, Hs(건강염려증),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 척도에서는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Hs 척도는 건강에 대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기질적인 원인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다양한 신체적 호소를 하며,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들을 의미한다. Sc(정신분열증)은 기이한 정신상태, 지각의 기이함, 피해망상, 환각과 같은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들과 사회적 소외, 좋지 않은 가족 관계, 성적인 문제, 충동 통제와 집중의 어려움, 두려움, 걱정, 불만을 다루고 있다. Ma(경조증) 척도는 활동 수준, 흥분성, 과대 지각과

같은 경조증의 특징을 의미한다.

<표 4.21> 숙식제공대상자그룹과 한국규준그룹의 MMPI-2 타당도척도 및 임상척도의 차이

| 척도 | 숙식제공대상자그룹 (N=101) | | 한국규준그룹 | | t |
|---|---|---|---|---|---|
| | M | SD | M | SD | |
| L(부인) | 54.24 | 10.06 | 50.08 | 9.93 | 4.15*** |
| F(비전형) | 48.62 | 8.61 | 50.02 | 9.99 | -1.63 |
| K(교정) | 52.23 | 10.53 | 50.04 | 9.76 | 1.89 |
| Hs(건강염려증) | 46.96 | 7.67 | 49.98 | 9.89 | -3.96*** |
| D(우울증) | 51.36 | 10.03 | 49.97 | 10.02 | 1.39 |
| Hy(히스테리) | 49.37 | 8.30 | 50.01 | 10.08 | -7.80 |
| Pd(반사회성) | 59.53 | 9.98 | 50.00 | 10.01 | 9.61*** |
| Mf(남성성-여성성) | 51.95 | 9.06 | 49.97 | 9.84 | 2.18* |
| Pa(편집증) | 52.40 | 8.38 | 49.92 | 10.05 | 2.97** |
| Pt(강박증) | 49.84 | 8.11 | 50.03 | 9.99 | -.234 |
| Sc(정신분열증) | 47.89 | 7.74 | 49.80 | 10.10 | -2.48** |
| Ma(경조증) | 47.43 | 9.53 | 50.06 | 9.91 | -2.78** |
| Si(내향성) | 48.46 | 11.14 | 50.09 | 9.84 | -1.48 |

* p<.05, ** p<.01, *** p<.001

## 나. 재구성 임상척도

MMPI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숙식제공 대상자 그룹과 한국 남자 규준 그룹의 재구성 임상 척도 점수는 다음의 <표 4.22>와 같다. 재구성 임상척도는 Tellegen 등(2003)에 의해 임상 척도에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의기소침 변량을 분리해 내고, 각 임상 척도가 측정하는 고유한 핵심 요인을 추출하여 척도화한 것이다.

재구성 임상척도의 차이 분석결과,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척도는 RC4(반사회적 행동)척도로 나타났다. RC4(반사회적 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며,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적대적으로 비치고, 화를 내며 논쟁적이다. 약물 남용이나 문란한 성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반면, RC1(신체 증상 호소), RC3(냉소적 태도), RC6(피해 의식), RC7(역기능적 부정 정서), RC8(기태적 경험), RC9(경조증적 상태) 척도에서는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RC1(신체 증상 호소) 척도는 신체형 장애와 흔히 관련되는 신체 증상 호소 정도를 반영한다. RC3(냉소적 태도) 척도는 인간 본성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반영하며, 타인의 동기에 대한 다양한 냉소적 신

념을 측정한다. RC6(피해 의식) 척도는 수검자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RC7(역기능적 부정 정서) 척도는 수검자의 부정적 정서 경험(예:불안, 분노, 공포)의 정도를 평가한다. RC8(기태적 경험) 척도는 사고 장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특이 사고 및 지각 경험을 평가한다. RC9(경조증적 상태) 척도는 경조증적 상태의 다양한 정서, 인지, 태도, 행동 특성을 묘사하며, 지나치게 빠른 사고, 높은 에너지 수준, 고양된 자기상, 흥분 추구, 공격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구성 임상척도의 결과를 검토하여 볼 때, 임상척도 6(pa)가 규준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RC6(피해의식)이 유의하게 낮게 나온 것은 다소 불일치한 결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의기소침 점수가 규준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서 제시한 것처럼, MMPI-2의 재구성 임상척도 제작 시, 의기소침 변량을 분리하여 각 임상척도가 측정하는 고유한 핵심요인을 추출하여 제작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며 세상을 위협적인 곳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할 때 지지될만한 결과이지만, 본 척도의 특성상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표 4.22> 숙식제공대상자그룹과 한국규준그룹의 MMPI-2 재구성임상척도의 차이

| 척도 | 숙식제공대상자그룹 (N=101) | | 한국규준그룹 | | t |
|---|---|---|---|---|---|
| | M | SD | M | SD | |
| RCd(의기소침) | 50.31 | 11.18 | 50.03 | 9.96 | .25 |
| RC1(신체증상호소) | 45.13 | 9.10 | 49.90 | 10.08 | -5.27*** |
| RC2(낮은긍정정서) | 50.31 | 9.56 | 49.87 | 10.02 | .46 |
| RC3(냉소적태도) | 47.65 | 10.34 | 50.07 | 10.01 | -2.35* |
| RC4(반사회적 행동) | 56.02 | 13.35 | 50.03 | 10.12 | 4.51*** |
| RC6(피해의식) | 47.58 | 9.51 | 49.93 | 10.04 | -2.48* |
| RC7(역기능적 부정정서) | 45.21 | 9.28 | 50.09 | 10.05 | -5.29*** |
| RC8(기태적경험) | 47.47 | 11.24 | 49.98 | 9.92 | -2.25* |
| RC9(경조증적상태) | 46.63 | 9.77 | 50.01 | 10.04 | -3.47** |

* p<.05, ** p<.01, *** p<.001

### 다. 성격병리 5요인 척도

MMPI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숙식제공 대상자 그룹과 한국 남자 규준 그룹의 성격병리 5요인 척도 점수는 다음의 <표 4.23>과 같다. 성격병리 5요인 척도는 AGGR(공격성), PSYC(정신증), DISC(통제결여), NEGE(부정적 정서성/신경증),

INTR(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 등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검자의 성격 특성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제공해 준다.

성격병리 5요인 척도의 차이 분석결과, AGGR(공격성) 척도와 PSYC(정신증) 척도에서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AGGR(공격성) 척도는 공격적인 주장적 행동을 평가하며, AGGR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을 즐기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다. PSYC(정신증) 척도는 사고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평가하며, 높은 점수는 기이한 감각 및 지각적 경험,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는 믿음, 위험이나 손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두려움 등 현실과의 단절과 관련된다.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결과 중, Pd척도와 RC4 척도가 규준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달리 AGGR(공격성) 척도가 규준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것은 성격병리 5요인 척도가 성격적 요소를 본질적으로 측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본 척도에서 측정하는 공격성을 성격적 요소로 본다면 비록 AGGR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즐기고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공격 성향이 낮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성격적으로 주장성이 강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는 적극성과 의지 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보충 척도 중 지배성(Do)이 유의하게 낮은 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4.23> 숙식제공대상자그룹과 한국규준그룹의 MMPI-2 성격병리 5요인척도의 차이

| 척도 | 숙식제공대상자그룹 (N=101) | | 한국규준그룹 | | t |
|---|---|---|---|---|---|
| | M | SD | M | SD | |
| AGGR(공격성) | 47.77 | 8.81 | 49.98 | 10.01 | -2.52* |
| PSYC(정신증) | 46.80 | 10.80 | 49.95 | 10.13 | -2.93** |
| DISC(통제결여) | 52.02 | 12.66 | 49.96 | 9.98 | 1.64 |
| NEGE(부정적 정서성/신경증) | 48.67 | 9.76 | 49.95 | 9.99 | -1.32 |
| INTR(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 | 51.20 | 10.64 | 50.01 | 9.96 | 1.12 |

* p<.05, *** p<.001

### 라. 내용척도

MMPI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숙식제공 대상자 그룹과 한국 남자 규준 그룹의 내

용 척도 점수는 다음의 <표 4.24>과 같다.

내용척도의 차이 분석결과,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척도는 DEP(우울)로 나타났다. DEP(우울) 척도는 흥미나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우울한 기분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혹은 최근에 자살 사고를 나타내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FRS(공포), OBS(강박성), HEA(건강염려), BIZ(기태적 정신상태), ANG(분노), TPA(A유형 행동), TRT(부정적 치료지표) 척도에서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FRS(공포) 척도는 공포 및 불안과 관련된 척도로서 다양한 두려움 또는 공포증을 호소하거나 소심하거나 부족한 경향을 나타낸다. OBS(강박성) 척도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걱정하며, 반추하는 등의 강박증적 증상의 경향을 나타낸다. HEA(건강염려) 척도는 신체적 건강 문제에 몰두하며 건강하지 못하다고 믿고 여러 신체기관과 연관된 많은 건강 문제를 보고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BIZ(기태적 정신상태) 척도는 망상과 환각을 포함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고하고 비현실감을 나타내며, 지남력을 상실한 경향을 나타낸다. ANG(분노) 척도는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는 경우와 성마르고 잘 토라지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나 공격적이고, 욕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싶다고 느끼는 경향을 나타낸다. TPA(A유형 행동) 척도는 지나치게 열심이고, 행동이 빠르며, 업무중심적이며, 조급하고 경쟁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TRT(부정적 치료지표) 척도는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변화에 대한 동기가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없다고 느끼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4.24> 숙식제공대상자그룹과 한국규준그룹의 MMPI-2 내용척도의 차이

| 척도 | 숙식제공대상자그룹 (N=101) | | 한국규준그룹 | | t |
|---|---|---|---|---|---|
| | M | SD | M | SD | |
| ANN(불안) | 50.62 | 10.61 | 49.99 | 9.92 | .60 |
| FRS(공포) | 45.16 | 7.06 | 49.95 | 10.01 | -6.82*** |
| OBS(강박성) | 47.58 | 10.26 | 49.81 | 10.04 | -2.20* |
| DEP(우울) | 53.13 | 12.94 | 50.00 | 9.99 | 2.43* |
| HEA(건강염려) | 45.48 | 8.37 | 49.98 | 10.03 | -5.41*** |
| BIZ(기태적 정신상태) | 46.84 | 10.42 | 49.97 | 9.93 | -3.02** |
| ANG(분노) | 46.74 | 11.15 | 50.12 | 9.95 | -3.04** |
| CYN(냉소적 태도) | 48.96 | 10.76 | 50.15 | 9.99 | -1.11 |
| ASP(반사회적 특성) | 50.85 | 12.91 | 49.94 | 9.92 | .71 |
| TPA(A유형 행동) | 45.52 | 9.60 | 50.05 | 10.01 | -4.78*** |
| LSE(낮은 자존감) | 51.30 | 12.08 | 49.89 | 10.01 | 1.17 |
| SOD(사회적 불편감) | 50.35 | 11.74 | 50.15 | 9.99 | .168 |
| FAM(가정불화) | 52.11 | 10.85 | 50.09 | 9.95 | 1.88 |

| | | | | | |
|---|---|---|---|---|---|
| WRK(직업적 곤란) | 48.07 | 11.44 | 50.03 | 9.95 | -1.72 |
| TRT(부정적 치료지표) | 47.18 | 11.18 | 50.10 | 9.98 | -2.63* |

* p<.05, ** p<.01, *** p<.001

**마. 보충척도**

MMPI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숙식제공 대상자 그룹과 한국 남자 규준 그룹의 보충 척도 점수는 다음의 <표 4.25>와 같다. 보충척도는 다양한 장면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서 수검자들의 여러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다.

보충척도의 차이 분석결과,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척도는 MDS(결혼생활 부적응), O-H(적대감 과잉통제), MAC-R(알코올중독), GM(남성적 성역할)으로 나타났다. MDS(결혼생활 부적응) 척도는 부부 관계 및 다른 가까운 관계에서의 문제를 평가하다. 높은 점수는 부부 관계와 다른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불만족을 나타낼 수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O-H(적대감 과잉통제)는 공격성의 표현을 억지로 억제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다. 적대감을 과잉통제하는 사람은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할 때조차 공격성을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금 화를 내는 경우 과도하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MAC-R(알코올중독) 척도는 알코올 중독 환자와 아닌 환자를 비교하여 구성되었다. 높은 점수는 물질 남용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GM(남성적 성역할) 척도는 전형적인 남성적 흥미와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 Do(지배성), Ho(적대감), GF(여성적 성역할) 척도에서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Do(지배성) 척도가 높은 사람은 면대면 상호관계가 강하고 침착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성취지향적인 경향이 높다. Ho(적대감) 척도는 냉소적이고, 의심이 많고, 잘 믿지 못하며, 화를 잘 내고 적대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GF(여성적 성역할)는 전형적인 여성적 흥미와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4.25> 숙식제공대상자그룹과 한국규준그룹의 MMPI-2 보충척도의 차이

| 척도 | 숙식제공대상자그룹 (N=101) | | 한국규준그룹 | | t |
|---|---|---|---|---|---|
| | M | SD | M | SD | |
| A(불안) | 47.96 | 10.54 | 50.02 | 9.98 | -1.96 |
| R(억압) | 50.99 | 9.21 | 50.06 | 9.88 | 1.01 |
| Es(자아강도) | 50.80 | 9.63 | 50.07 | 9.86 | .76 |
| Do(지배성) | 46.82 | 10.25 | 50.16 | 9.76 | -3.27** |
| Re(사회적 책임감) | 49.24 | 11.80 | 50.08 | 9.78 | -.71 |
| PK(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50.56 | 10.71 | 50.06 | 10.01 | .47 |
| MDS(결혼생활 부적응) | 52.42 | 9.58 | 50.10 | 9.94 | 2.43* |

| | | | | | |
|---|---|---|---|---|---|
| Ho(적대감) | 47.19 | 10.45 | 50.01 | 9.91 | -2.71** |
| O-H(적대감 과잉통제) | 53.95 | 9.28 | 50.06 | 9.81 | 4.12*** |
| MAC-R(알코올중독) | 57.20 | 10.36 | 50.02 | 9.96 | 6.96*** |
| AAS(중독 인정) | 50.99 | 11.09 | 50.01 | 10.01 | .88 |
| APS(중독 가능성) | 49.99 | 9.75 | 50.03 | 9.81 | -.04 |
| GM(남성적 성역할) | 53.95 | 8.92 | 50.11 | 9.87 | 4.43*** |
| GF(여성적 성역할) | 46.64 | 7.10 | 50.08 | 9.77 | -4.86*** |

* p<.05, ** p<.01, *** p<.001

## 2. 인구사회학적·형사사법적 특성에 따른 MMPI 척도별 차이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MMPI 척도별 차이

숙식제공대상자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학력, 수입)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MMPI-2 척도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차이 분석은 SPSS 21을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Scheffe)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6>과 같다.

<표 4.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MMPI-2 차이 분석

| 척도 | | 나이 | | | | 학력 | | | | 수익(단위:만원) | | | |
|---|---|---|---|---|---|---|---|---|---|---|---|---|---|
| | | 20~39 (N=33) ① | 40~49 (N=25) ② | 50세이상(N=43) ③ | F (사후검증) | 중졸 (N=39) ① | 고졸 (N=47) ② | 전문재졸이상 (N=15) ③ | F (사후검증) | 100 미만 (N=44) ① | 100~150 미만 (N=24) ② | 150 이상(N=31) ③ | F (사후검증) |
| | | M | M | M | | M | M | M | | M | M | M | |
| 타당도 | L | 52.24 | 52.36 | 56.86 | 2.629 | 55.54 | 53.83 | 52.13 | .689 | 55.25 | 55.58 | 51.58 | 1.568 |
| | F | 47.30 | 49.20 | 49.30 | .573 | 51.05 | 47.30 | 46.47 | 2.664 | 49.43 | 49.29 | 47.16 | .702 |
| | K | 51.91 | 52.24 | 52.47 | .026 | 52.72 | 51.64 | 52.80 | .136 | 51.64 | 51.38 | 53.45 | .354 |
| 임상 | Hs | 45.24 | 47.72 | 47.84 | 1.236 | 48.62 | 46.40 | 44.40 | 1.899 | 47.48 | 44.92 | 47.87 | 1.150 |
| | D | 49.70 | 51.40 | 52.60 | .781 | 52.26 | 52.00 | 47.00 | 1.692 | 52.36 | 52.29 | 48.81 | 1.343 |
| | Hy | 47.42 | 50.24 | 50.35 | 1.353 | 51.03 | 48.51 | 47.73 | 1.329 | 49.64 | 47.79 | 50.35 | .657 |
| | Pd | 59.03 | 59.80 | 59.77 | .062 | 60.95 | 57.94 | 60.87 | 1.132 | 59.50 | 59.96 | 59.32 | .028 |
| | Mf | 49.76 | 54.40 | 52.21 | 1.934 | 53.33 | 51.83 | 48.73 | 1.416 | 52.34 | 51.46 | 52.16 | .075 |
| | Pa | 51.94 | 52.00 | 52.98 | .177 | 52.90 | 51.53 | 53.80 | .525 | 52.55 | 51.83 | 52.90 | .109 |
| | Pt | 48.21 | 50.24 | 50.86 | 1.037 | 51.56 | 48.85 | 48.47 | 1.460 | 51.09 | 48.88 | 48.84 | .911 |
| | Sc | 46.24 | 49.12 | 48.44 | 1.178 | 49.82 | 46.30 | 47.87 | 2.265 | 48.55 | 48.04 | 47.16 | .284 |
| | Ma | 46.12 | 49.48 | 47.23 | .897 | 47.05 | 47.51 | 48.13 | .072 | 47.25 | 46.71 | 48.74 | .350 |
| | Si | 48.09 | 49.64 | 48.05 | .185 | 50.10 | 48.19 | 45.00 | 1.164 | 50.09 | 49.21 | 45.42 | 1.689 |
| 재구성 임상 | RCd | 48.97 | 51.20 | 50.81 | .355 | 50.92 | 49.30 | 51.87 | .391 | 51.18 | 51.04 | 49.00 | .380 |
| | RC1 | 43.61 | 46.24 | 45.65 | .714 | 46.72 | 44.85 | 41.87 | 1.597 | 45.95 | 43.79 | 45.42 | .438 |
| | RC2 | 49.94 | 48.80 | 51.47 | .645 | 51.79 | 50.34 | 46.33 | 1.795 | 51.41 | 50.54 | 48.13 | 1.088 |
| | RC3 | 47.67 | 48.20 | 47.33 | .055 | 47.36 | 47.57 | 48.67 | .087 | 47.59 | 50.50 | 45.58 | 1.531 |
| | RC4 | 54.70 | 59.48 | 55.02 | 1.123 | 58.38 | 54.49 | 54.67 | .997 | 55.93 | 53.96 | 58.55 | .835 |
| | RC6 | 46.48 | 49.20 | 47.49 | .578 | 47.67 | 47.87 | 46.47 | .124 | 48.00 | 47.25 | 47.58 | .050 |
| | RC7 | 44.15 | 46.76 | 45.12 | .560 | 45.56 | 44.40 | 46.80 | .420 | 46.57 | 45.46 | 43.74 | .848 |
| | RC8 | 44.88 | 49.20 | 48.44 | 1.342 | 48.74 | 46.32 | 47.73 | .496 | 48.11 | 48.79 | 46.03 | .474 |
| | RC9 | 45.30 | 49.00 | 46.28 | 1.069 | 45.95 | 46.45 | 49.00 | .539 | 46.89 | 46.17 | 47.16 | .071 |
| 성격5요 | AGG | 45.06 | 49.20 | 49.02 | 2.390 | 48.15 | 46.40 | 51.07 | 1.674 | 47.61 | 48.33 | 48.19 | .065 |
| | PSYC | 43.82 | 49.20 | 47.70 | 2.066 | 47.03 | 46.19 | 48.13 | .194 | 47.57 | 46.54 | 46.35 | .132 |
| | DISC | 54.33 | 51.48 | 50.56 | .857 | 53.31 | 51.26 | 51.07 | .325 | 49.34 | 51.71 | 56.16 | 2.827 |
| | NEGE | 46.12 | 49.84 | 49.95 | 1.700 | 49.49 | 48.04 | 48.53 | .232 | 49.41 | 48.79 | 47.97 | .194 |

| 인 | INTR | 50.70 | 51.00 | 51.70 | .087 | 52.03 | 51.57 | 47.87 | .879 | 51.07 | 52.42 | 50.03 | .332 |
|---|---|---|---|---|---|---|---|---|---|---|---|---|---|
| 내용 | ANN | 47.73 | 52.96 | 51.49 | 2.016 | 51.31 | 50.32 | 49.80 | .143 | 52.41 | 49.79 | 49.00 | 1.052 |
| | FRS | 42.79 | 46.16 | 46.40 | 2.871 | 45.59 | 45.45 | 43.13 | .724 | 46.00 | 43.71 | 45.13 | .808 |
| | OBS | 45.70 | 50.12 | 47.56 | 1.328 | 46.97 | 47.02 | 50.93 | .936 | 49.82 | 45.63 | 46.35 | 1.699 |
| | DEP | 51.76 | 53.32 | 54.07 | .297 | 53.31 | 52.68 | 54.07 | .070 | 54.25 | 53.04 | 52.00 | .271 |
| | HEA | 43.18 | 46.00 | 46.93 | 1.973 | 47.49 | 44.94 | 41.93 | 2.648 | 46.16 | 44.50 | 45.58 | .300 |
| | BIZ | 44.48 | 48.40 | 47.74 | 1.293 | 47.59 | 46.23 | 46.80 | .178 | 46.75 | 47.67 | 46.74 | .069 |
| | ANG | 44.39 | 51.44 | 45.81 | **3.233*** (①<②) | 46.41 | 46.30 | 49.00 | .357 | 46.32 | 46.63 | 47.90 | .188 |
| | CYN | 47.12 | 50.04 | 49.74 | .717 | 48.82 | 48.43 | 51.00 | .326 | 49.80 | 50.25 | 47.00 | .800 |
| | ASP | 50.48 | 54.00 | 49.30 | 1.067 | 51.31 | 50.23 | 51.60 | .101 | 50.73 | 51.17 | 50.61 | .013 |
| | TPA | 42.58 | 47.24 | 46.79 | 2.395 | 45.15 | 44.47 | 49.80 | 1.831 | 46.70 | 45.83 | 43.97 | .736 |
| | LSE | 49.09 | 52.24 | 52.44 | .816 | 53.10 | 50.57 | 48.87 | .819 | 53.36 | 50.42 | 49.32 | 1.101 |
| | SOD | 51.79 | 51.64 | 48.49 | .937 | 50.74 | 51.02 | 47.20 | .633 | 52.09 | 49.54 | 47.77 | 1.308 |
| | FAM | 52.18 | 51.08 | 52.65 | .164 | 52.90 | 51.79 | 51.07 | .190 | 54.48 | 50.04 | 50.97 | 1.658 |
| | WRK | 47.18 | 48.12 | 48.72 | .166 | 49.21 | 47.38 | 47.27 | .309 | 48.64 | 48.42 | 47.48 | .094 |
| | TRT | 44.76 | 48.64 | 48.19 | 1.164 | 48.05 | 45.91 | 48.87 | .584 | 48.30 | 46.83 | 46.29 | .315 |
| 보충 | A | 46.45 | 48.52 | 48.79 | .500 | 48.62 | 47.30 | 48.33 | .174 | 49.36 | 48.25 | 46.35 | .739 |
| | R | 50.39 | 50.44 | 51.77 | .262 | 50.79 | 51.74 | 49.13 | .465 | 51.23 | 50.83 | 50.52 | .053 |
| | Es | 53.64 | 49.28 | 49.51 | 2.177 | 48.13 | 51.06 | 56.93 | **4.917**** (①<③) | 49.09 | 50.71 | 52.94 | 1.450 |
| | Do | 46.36 | 47.84 | 46.58 | .165 | 44.41 | 47.57 | 50.73 | 2.358 | 45.07 | 46.75 | 49.45 | 1.734 |
| | Re | 47.97 | 47.36 | 51.30 | 1.169 | 46.82 | 50.51 | 51.53 | 1.386 | 48.66 | 50.00 | 48.65 | .119 |
| | PK | 50.64 | 51.64 | 49.88 | .210 | 50.36 | 50.51 | 51.27 | .039 | 51.41 | 50.83 | 49.23 | .379 |
| | MDS | 51.82 | 51.76 | 53.26 | .284 | 51.74 | 52.47 | 54.00 | .297 | 53.18 | 53.00 | 51.03 | .494 |
| | Ho | 46.30 | 48.00 | 47.40 | .199 | 47.87 | 45.89 | 49.47 | .797 | 48.30 | 49.29 | 44.19 | 2.028 |
| | O-H | 53.61 | 53.08 | 54.72 | .277 | 54.72 | 54.30 | 50.87 | .994 | 53.95 | 53.58 | 54.03 | .018 |
| | MAC-R | 57.18 | 58.60 | 56.40 | .353 | 59.49 | 55.89 | 55.33 | 1.586 | 56.66 | 55.46 | 59.71 | 1.294 |
| | AAS | 46.94 | 55.52 | 51.47 | **4.636*** (①<②) | 51.82 | 50.26 | 51.13 | .210 | 51.16 | 48.42 | 53.42 | 1.385 |
| | APS | 48.97 | 53.16 | 48.93 | 1.781 | 49.49 | 50.21 | 50.60 | .092 | 49.68 | 49.71 | 50.48 | .068 |
| | GM | 56.45 | 52.64 | 52.79 | 1.969 | 52.79 | 53.77 | 57.53 | 1.563 | 52.52 | 55.88 | 54.42 | 1.144 |
| | GF | 47.39 | 46.52 | 46.14 | .292 | 46.08 | 47.51 | 45.40 | .700 | 46.52 | 49.50 | 44.39 | **3.715*** (③<②) |

* p < .05, ** p < .01

1) 나이에 따른 차이 분석

숙식제공대상자들을 나이에 따라 50세 이상의 집단, 40~49세 집단, 20~39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50세 이상의 집단은 43명, 40~49세 집단은 25명, 20~39세 집단은 33명으로 구성되었다.

세 집단 간 MMPI-2 척도들의 차이분석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는 ANG(분노)와 AAS(중독인정)로 나타났다. ANG(분노) 척도에서는 F값은 3.23으로서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40~49세 집단이 20~39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G(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성마르고, 잘 토라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AAS(중독인정) 척도에서는 F값은 4.37로서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40~49세 집단이 20~39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AS(중독인정) 척도는 물질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행동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2)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숙식제공대상자들을 학력에 따라 중학교 졸업 집단, 고등학교 졸업 집단,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 집단으로 나누었다. 중학교 졸업 집단은 39명, 고등학교 졸업 집단은 47명, 전문대학교 이상의 졸업 집단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세 집단간 MMPI-2 척도들의 차이분석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는 ES(자아강도)로 나타났다. ES(자아강도) 척도에서는 F값은 4.92로서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중학교 졸업 집단보다 전문대학교 이상의 졸업 집단이 ES(자아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S(자아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을 잘하고, 심각한 증상의 수나 정도가 덜하며,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3) 수익에 따른 차이 분석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월 수익에 따라 100만원 미만 집단, 100~150만원 집단, 150만원 이상 집단으로 나누었다. 100만원 미만 집단은 44명, 100~150만원 집단은 24명, 150만원 이상 집단은 31명으로 구성되었다.

세 집단간 MMPI-2 척도들의 차이분석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는 GF(여성적 성역할)로 나타났다. GF(여성적 성역할) 척도에서는 F값은 3.72로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100~150만원 집단이 150만원 이상의 수익 집단보다 GF(여성적 성역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150만원의 수익집단이 150만원 이상의 수익 집단보다 전형적인 여성적 흥미와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GF(여성적 성역할) 척도는 타당도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장면에서의 적용적 해석은 어려움이 있다.

**나. 형사사법적 특성에 따른 MMPI 척도별 차이**

숙식제공대상자를 형사사법적 특성(최초수감나이, 수감기간, 수감횟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MMPI-2 척도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차이 분석은 SPSS 21을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Scheffe)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7>과 같다.

<표 4.27> 형사사법적 특성에 따른 MMPI-2 차이 분석

| 척도 | | 최초수감나이 | | | | 수감기간 | | | | 수감횟수 | | | |
|---|---|---|---|---|---|---|---|---|---|---|---|---|---|
| | | 19세 미만 (N=21) ① | 20~29 (N=33) ② | 30세 이상 (N=44) ③ | F (사후검증) | 1년미만 (N=24) ① | 1~5년미만 (N=42) ② | 5년이상 (N=33) ③ | F (사후검증) | 초범 (N=29) ① | 재범 (N=19) ② | 삼범 이상(N=49) ③ | F (사후검증) |
| | | M | M | M | | M | M | M | | M | M | M | |
| 타당도 | L | 50.52 | 54.85 | 55.68 | 1.934 | 56.92 | 54.40 | 52.21 | 1.519 | 56.00 | 52.47 | 53.51 | .839 |
| | F | 48.52 | 49.27 | 48.25 | .133 | 49.04 | 48.45 | 48.39 | .046 | 47.38 | 50.00 | 48.69 | .536 |
| | K | 52.29 | 51.36 | 52.75 | .160 | 52.79 | 52.52 | 51.70 | .087 | 53.24 | 48.89 | 52.71 | 1.134 |
| 임상 | Hs | 46.52 | 46.30 | 47.36 | .198 | 47.92 | 45.52 | 48.09 | 1.262 | 46.86 | 48.42 | 46.57 | .387 |
| | D | 49.62 | 50.45 | 52.75 | .851 | 51.04 | 51.62 | 51.18 | .030 | 51.72 | 50.53 | 51.67 | .099 |
| | Hy | 49.05 | 47.91 | 50.32 | .801 | 50.79 | 47.43 | 50.67 | 1.944 | 49.17 | 50.05 | 49.39 | .066 |
| | Pd | 60.48 | 59.12 | 59.39 | .121 | 59.79 | 59.29 | 59.48 | .019 | 57.34 | 58.53 | 61.02 | 1.294 |
| | Mf | 48.86 | 53.18 | 52.34 | 1.562 | 54.33 | 50.00 | 52.73 | 1.937 | 53.52 | 52.21 | 51.06 | .660 |
| | Pa | 50.76 | 53.36 | 52.43 | .599 | 54.13 | 51.38 | 52.58 | .806 | 51.45 | 55.68 | 51.80 | 1.729 |
| | Pt | 50.48 | 50.15 | 49.25 | .201 | 47.88 | 50.07 | 51.12 | 1.134 | 47.34 | 49.89 | 51.55 | 2.490 |
| | Sc | 47.95 | 47.82 | 47.84 | .002 | 47.13 | 47.93 | 48.18 | .133 | 46.66 | 49.11 | 47.92 | .569 |
| | Ma | 46.24 | 49.03 | 46.75 | .719 | 47.88 | 45.98 | 48.91 | .897 | 46.52 | 50.68 | 46.45 | 1.465 |
| | Si | 48.43 | 48.30 | 48.39 | .001 | 47.04 | 48.74 | 48.70 | .201 | 48.83 | 46.32 | 48.80 | .365 |
| 재구성 임상 | RCd | 49.10 | 51.79 | 49.68 | .467 | 49.46 | 50.71 | 50.09 | .096 | 47.79 | 53.16 | 50.86 | 1.395 |
| | RC1 | 43.90 | 45.79 | 45.09 | .264 | 45.54 | 43.69 | 46.64 | .982 | 44.52 | 49.42 | 43.94 | 2.582 |
| | RC2 | 49.95 | 50.00 | 50.82 | .089 | 50.83 | 50.31 | 49.82 | .076 | 49.38 | 46.74 | 52.39 | 2.621 |
| | RC3 | 47.86 | 48.33 | 47.55 | .054 | 46.50 | 48.62 | 47.45 | .328 | 46.03 | 52.32 | 46.90 | 2.423 |
| | RC4 | 62.24 | 57.12 | 51.80 | **4.974*** (③<①) | 54.25 | 55.24 | 57.39 | .430 | 51.86 | 54.68 | 58.53 | 2.423 |
| | RC6 | 46.05 | 47.18 | 48.50 | .488 | 50.71 | 45.52 | 47.67 | 2.298 | 49.45 | 49.79 | 45.59 | 2.149 |
| | RC7 | 44.95 | 46.45 | 44.41 | .450 | 43.92 | 45.81 | 45.45 | .321 | 44.00 | 47.32 | 45.16 | .705 |
| | RC8 | 45.71 | 48.15 | 47.50 | .299 | 47.00 | 47.14 | 47.82 | .046 | 45.66 | 51.58 | 46.57 | 1.764 |
| | RC9 | 45.52 | 47.79 | 46.39 | .364 | 46.38 | 46.52 | 46.91 | .023 | 45.21 | 51.68 | 45.57 | **3.201*** (①<②) |
| 성격5요인 | AGG | 47.43 | 47.39 | 48.41 | .150 | 47.04 | 48.14 | 47.94 | .120 | 46.14 | 53.11 | 46.69 | **4.493*** (①<②) |
| | PSYC | 44.62 | 46.76 | 47.75 | .584 | 48.38 | 46.69 | 45.52 | .480 | 46.90 | 50.68 | 45.24 | 1.754 |
| | DISC | 62.05 | 51.52 | 47.89 | **10.57*** (②,③<①) | 48.67 | 52.31 | 54.30 | 1.391 | 47.38 | 52.95 | 54.69 | 3.151* |
| | NEGE | 48.19 | 48.64 | 48.39 | .014 | 46.50 | 48.67 | 49.64 | .731 | 48.10 | 47.95 | 49.10 | .142 |
| | INTR | 51.33 | 50.55 | 51.64 | .096 | 50.42 | 50.88 | 52.06 | .184 | 50.86 | 48.58 | 52.55 | .948 |
| 내용 | ANN | 47.86 | 51.70 | 50.57 | .845 | 49.63 | 50.50 | 50.88 | .098 | 49.79 | 52.89 | 50.29 | .554 |
| | FRS | 45.38 | 42.39 | 46.59 | 3.721 | 43.17 | 45.33 | 45.76 | 1.096 | 46.72 | 43.26 | 44.61 | 1.578 |
| | OBS | 44.52 | 49.18 | 47.82 | 1.315 | 46.33 | 47.93 | 47.91 | .210 | 47.17 | 50.21 | 46.86 | .736 |
| | DEP | 50.71 | 54.64 | 52.95 | .593 | 55.92 | 52.38 | 51.48 | .895 | 52.24 | 55.79 | 52.67 | .503 |
| | HEA | 44.71 | 45.15 | 46.00 | .188 | 45.46 | 44.45 | 46.73 | .664 | 44.52 | 48.79 | 44.84 | 1.783 |
| | BIZ | 45.33 | 46.91 | 47.41 | .274 | 47.42 | 46.43 | 46.73 | .067 | 47.00 | 49.37 | 45.47 | .946 |
| | ANG | 46.95 | 46.33 | 46.14 | .039 | 44.96 | 46.10 | 47.79 | .484 | 45.07 | 50.42 | 45.80 | 1.575 |
| | CYN | 48.19 | 48.36 | 49.93 | .278 | 49.38 | 50.07 | 47.03 | .764 | 48.14 | 53.05 | 47.63 | 1.835 |
| | ASP | 55.52 | 52.79 | 47.73 | 3.101 | 47.92 | 51.40 | 52.58 | .932 | 46.28 | 53.68 | 52.90 | 2.899 |
| | TPA | 44.05 | 46.39 | 45.50 | .369 | 44.88 | 46.12 | 45.15 | .155 | 44.59 | 48.89 | 44.78 | 1.427 |
| | LSE | 51.14 | 51.55 | 51.34 | .007 | 49.96 | 51.00 | 52.39 | .292 | 51.21 | 48.74 | 52.67 | .745 |
| | SOD | 51.95 | 51.67 | 48.41 | .989 | 48.54 | 50.21 | 51.39 | .403 | 49.24 | 46.63 | 52.20 | 1.689 |
| | FAM | 51.05 | 54.73 | 51.11 | 1.240 | 54.46 | 51.29 | 51.45 | .724 | 50.59 | 53.79 | 52.18 | .514 |
| | WRK | 47.05 | 48.82 | 48.16 | .148 | 47.67 | 47.69 | 48.76 | .094 | 46.79 | 50.21 | 48.22 | .494 |
| | TRT | 45.48 | 48.64 | 47.07 | .518 | 47.08 | 46.98 | 47.42 | .015 | 47.10 | 49.37 | 46.76 | .381 |
| 보충 | A | 46.57 | 49.70 | 47.41 | .666 | 47.21 | 48.64 | 47.64 | .159 | 47.21 | 50.58 | 47.55 | .671 |
| | R | 50.81 | 49.64 | 51.91 | .572 | 51.08 | 51.10 | 50.58 | .034 | 52.48 | 46.84 | 51.63 | 2.495 |
| | Es | 53.81 | 50.06 | 50.61 | 1.101 | 50.88 | 52.43 | 49.36 | .959 | 51.41 | 48.95 | 51.47 | .514 |
| | Do | 43.57 | 46.58 | 48.14 | 1.414 | 47.79 | 45.76 | 47.12 | .335 | 47.76 | 45.63 | 46.00 | .343 |
| | Re | 42.71 | 48.18 | 52.80 | **5.725*** | 51.29 | 48.40 | 48.58 | .505 | 52.03 | 49.79 | 47.02 | 1.673 |

| | | | | | | | | | | | | | |
|---|---|---|---|---|---|---|---|---|---|---|---|---|---|
| | | | | | (①<③) | | | | | | | | |
| | PK | 50.33 | 51.97 | 49.70 | .417 | 50.17 | 50.10 | 51.36 | .144 | 48.28 | 53.47 | 51.14 | 1.414 |
| | MDS | 50.38 | 52.18 | 53.73 | .887 | 53.83 | 51.62 | 52.18 | .403 | 53.03 | 54.84 | 50.98 | 1.204 |
| | Ho | 47.38 | 48.12 | 46.64 | .187 | 46.71 | 48.67 | 45.64 | .801 | 46.17 | 49.74 | 46.78 | .722 |
| | O-H | 53.90 | 53.61 | 54.50 | .090 | 55.17 | 53.43 | 54.33 | .274 | 55.93 | 51.32 | 54.02 | 1.420 |
| | MAC-R | 60.38 | 59.55 | 54.23 | 3.778 | 55.96 | 56.79 | 58.97 | .671 | 53.00 | 60.32 | 58.61 | 3.809* (①<②) |
| | AAS | 50.57 | 50.82 | 50.68 | .003 | 50.46 | 51.12 | 50.27 | .060 | 49.48 | 50.63 | 51.61 | .336 |
| | APS | 50.24 | 48.33 | 50.75 | .607 | 49.63 | 49.19 | 50.91 | .299 | 49.00 | 50.53 | 50.24 | .198 |
| | GM | 55.76 | 55.33 | 52.41 | 1.479 | 54.63 | 54.76 | 52.58 | .622 | 52.28 | 53.74 | 54.92 | .794 |
| | GF | 44.48 | 46.58 | 47.75 | 1.522 | 46.38 | 46.88 | 46.82 | .041 | 48.48 | 45.58 | 46.27 | 1.208 |

* p<.05, ** p<.01

1) 최초수감나이에 따른 차이 분석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최초수감나이에 따라 19세 미만 최초수감 집단, 20~29세 최초수감 집단, 30세 이상 최초수감 집단으로 나누었다. 19세 미만 최초수감 집단은 21명, 20~29세 최초수감 집단은 33명, 30세 이상 최초수감 집단은 44명으로 구성되었다.

세 집단간 MMPI-2 척도들의 차이분석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는 RC4(반사회적 행동), DISC(통제결여), Re(사회적 책임감) 척도로 나타났다.

RC4(반사회적 행동) 척도에서는 F값은 4.97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19세 이하 최초수감 집단이 30세 이상 최초수감 집단보다 RC4(반사회적 행동)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세 이하 최초수감 집단이 30세 이상 최초수감 집단보다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며,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적대적으로 비치고, 화를 내며 논쟁적인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DISC(통제결여) 척도에서는 F값은 10.57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19세 이하 최초수감 집단이 20~29세 최초수감 집단과 30세 이상 최초수감 집단보다 DISC(통제결여)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세 이하 최초수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동적이고 자기통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신체적으로 위험 추구적인 행동을 할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Re(사회적 책임감) 척도에서는 F값은 5.73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30세 이상 최초수감 집단이 19세 이하 최초수감 집단보다 Re(사회적 책임감)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최초수감 집단이 19세 이하 최초수감 집단에 비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의무와 자기수양을 강조하며, 관습의 존중,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2) 수감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수감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수감 집단, 1~5년 수감 집단, 5년 이상 수감 집단으로 나누었다. 1년 미만 수감 집단은 24명, 1~5년 수감 집단은 42명, 5년 이상 수감 집단은 33명으로 구성되었다. 세 집단간 MMPI-2 척도들의 차이분석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숙식제공대상자들의 MMPI-2 척도별 특성은 숙식제공 대상자의 수감기간에 의해서는 구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수감횟수에 따른 차이 분석

숙식제공대상자들을 수감횟수에 따라 초범 집단, 재범 집단, 삼범 이상 집단으로 나누었다. 초범 집단은 29명, 재범 집단은 19명, 삼범 이상 집단 집단은 49명으로 구성되었다.

세 집단간 MMPI-2 척도들의 차이분석 실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는 RC9(경조증적 상태), AGG(공격성), MAC-R(MacAndrew의 알코올중독) 척도로 나타났다.

RC9(경조증적 상태) 척도에서는 F값은 3.20으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재범 집단이 초범 집단보다 RC9(경조증적 상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범 집단이 초범 집단에 비해 감각 추구 경향, 위험 감수, 빈약한 충동 통제, 수면 요구 감소, 정서적 불안정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과잉활성화의 징후들을 보일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AGG(공격성) 척도에서는 F값은 4.49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재범 집단이 초범 집단보다 AGG(공격성)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범 집단이 초범 집단에 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을 즐기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성을 사용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MAC-R(MacAndrew의 알코올중독) 척도에서는 F값은 3.81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재범 집단이 초범 집단보다 MAC-R(MacAndrew의 알코올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범 집단이 초범 집단에 비해 물질 남용 문제를 보일 가능성과 위험 추구 행동을 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숙식제공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이 MMPI 척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과 MMPI-2 척도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공감, 자아탄력성, 자활의지, 사회적지지, 부모애착, 아동기 외상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심리적 특성과 MMPI 척도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을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MMPI-2 척도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공감, 자아탄력성, 부모애착, 아동기 외상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변인들이 MMPI-2 각 척도들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가.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과 MMPI-2 척도의 상관 분석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공감, 자아탄력성, 자활의지, 사회적지지, 부애착, 모애착, 아동기 외상)과 MMPI 척도별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8>같다.

결과에 의하면 숙식제공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MMPI-2 척도의 D(우울증), Pt(강박증), Si(내향성), RC2(낮은긍정정서), RC7(역기능적 부정정서), NEGE(부정적 정서성/신경증), ANN(불안), FRS(공포), LSE(낮은 자존감), SOD(사회적 불편감), WRK(직업적 곤란), A(불안), Es(자아강도), Do(지배성)와는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GM(남성적 성역할)과는 와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은 MMPI-2 척도의 Si(내향성), RCd(의기소침), NEGE(부정적 정서성/신경증), ANN(불안), DEP(우울) LSE(낮은 자존감), SOD(사회적 불편감), WRK(직업적 곤란), A(불안), PK(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부적 상관이 있으며, D(우울증), Pt(강박증), Sc(정신분열증), RC2(낮은긍정정서), RC3(냉소적태도), RC4(바사회적 행동), RC7(역기능적 부정정서), INTR(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 FRS(공포), OBS(강박성), ANG(분노), CYN(냉소적 태도), ASP(반사회적  특성), TPA(A유형 행동), FAM(가정불화), TRT(부정적 치료지표), MDS(결혼생활 부적응), Ho(적대감), APS(중독 가능성)와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Es(자아강도), Do(지배성), Re(사회적 책임감), O-H(적대감 과잉통제), GM(남성적 성역할)와는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활의지는 MMPI-2 척도의 R6(피해의식)과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에서는 MMPI-2 척도들과의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애착은 MMPI-2 척도의 Pd(반사회성), Pt(강박증), Si(내향성), RCd(의기소침), NEGE(부정적 정서성/신경증), INTR(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 SOD(사회

적 불편감), FAM(가정불화), WRK(직업적 곤란), PK(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MDS(결혼생활 부적응) 척도와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기 학대 외상 경험의 정도는 MMPI-2 척도의 Re(사회적 책임감), O-H(적대감 과잉통제)와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Pa(편집증), Sc(정신분열증), RCd(의기소침), RC4(바사회적 행동), RC6(피해의식), RC7(역기능적 부정정서), RC8(기태적 경험), DISC(통제결여), NEGE(부정적 정서성/신경증), ANN(불안), OBS(강박성), DEP(우울), ASP(반사회적 특성), LSE(낮은 자존감), FAM(가정불화), WRK(직업적 곤란), A(불안), PK(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MDS(결혼생활 부적응), Ho(적대감), MAC-R(알코올중독)과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4.28> 숙식제공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과 MMPI-2 척도별 상관 분석

| 척도 | | 심리적 특성 | | | | | |
|---|---|---|---|---|---|---|---|
| | | 공감 | 자아 탄력성 | 자활의지 | 사회적 지지 | 부모애착 | 아동기 외상 |
| 임상 | Hs(건강염려증) | -.078 | .041 | -.108 | .132 | -.045 | -.004 |
| | D(우울증) | **-.261**** | **-.317**** | -.093 | -.067 | -.189 | .003 |
| | Hy(히스테리) | -.035 | .127 | -.077 | .072 | .004 | -.137 |
| | Pd(반사회성) | -.024 | -.147 | -.076 | -.104 | **-.278**** | .071 |
| | Mf(남성성-여성성) | .150 | .096 | -.017 | .005 | -.044 | -.104 |
| | Pa(편집증) | .022 | -.156 | .025 | -.075 | -.180 | **.321**** |
| | Pt(강박증) | **-.288**** | **-.313**** | -.170 | -.060 | **-.216*** | .192 |
| | Sc(정신분열증) | -.265** | **-.233*** | -.127 | .013 | -.190 | **.261**** |
| | Ma(경조증) | -.034 | -.051 | .014 | .046 | .037 | .148 |
| | Si(내향성) | **-.386**** | ***-.573**** | -.117 | -.080 | **-.255*** | .179 |
| 재구성 임상 | RCd(의기소침) | -.196 | ***-.499**** | -.146 | -.066 | **-.284**** | **.336**** |
| | RC1(신체증상호소) | -.163 | -.109 | -.108 | .164 | .024 | .090 |
| | RC2(낮은긍정정서) | **-.277**** | **-.337**** | -.122 | -.152 | -.195 | .037 |
| | RC3(냉소적태도) | -.101 | **-.223*** | -.026 | .040 | -.011 | .124 |
| | RC4(바사회적 행동) | -.154 | **-.266**** | -.008 | .004 | -.174 | **.268**** |
| | RC6(피해의식) | -.026 | -.039 | **.226*** | .141 | .063 | **.231*** |
| | RC7(역기능적 부정정서) | **-.248*** | **-.386**** | -.078 | -.031 | -.173 | **.313**** |
| | RC8(기태적경험) | -.144 | -.148 | .035 | -.012 | -.023 | **.201*** |
| | RC9(경조증적상태) | .028 | -.169 | -.014 | .073 | .013 | .195 |
| 성격 5요인 | AGGR(공격성) | .069 | .107 | -.051 | .140 | .064 | .048 |
| | PSYC(정신증) | -.044 | -.107 | .104 | .067 | .065 | .155 |
| | DISC(통제결여) | -.097 | -.128 | -.062 | -.044 | -.146 | **.261**** |
| | NEGE(부정적 정서성/신경증) | **-.247*** | ***-.435**** | -.098 | -.075 | **-.233*** | **.294**** |
| | INTR(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 | -.215* | **-.340**** | -.105 | -.092 | **-.282**** | .077 |
| 내용 | ANN(불안) | **-.223*** | ***-.412**** | -.047 | .022 | -.183 | **.252*** |
| | FRS(공포) | **-.231*** | **-.205*** | -.043 | .092 | .116 | -.104 |
| | OBS(강박성) | -.165 | **-.395**** | -.090 | -.049 | -.159 | **.217*** |
| | DEP(우울) | -.098 | ***-.420**** | -.086 | -.006 | -.151 | **.287**** |
| | HEA(건강염려) | -.147 | -.133 | -.071 | .167 | .022 | .051 |
| | BIZ(기태적 정신상태) | -.069 | -.062 | .174 | .069 | .052 | .175 |
| | ANG(분노) | -.118 | **-.256*** | -.066 | .065 | -.089 | .179 |
| | CYN(냉소적 태도) | -.035 | **-.239*** | -.038 | .100 | .014 | .132 |

| | | | | | | | |
|---|---|---|---|---|---|---|---|
| | ASP(반사회적 특성) | -.134 | **-.275**** | -.024 | -.037 | -.103 | **.198*** |
| | TPA(A유형 행동) | -.181 | **-.234*** | -.076 | .080 | -.052 | .168 |
| | LSE(낮은 자존감) | **-.327**** | ***-.557**** | -.061 | -.114 | -.183 | **.210*** |
| | SOD(사회적 불편감) | **-.351**** | ***-.483**** | -.091 | **-.206*** | **-.266*** | .156 |
| | FAM(가정불화) | -.119 | **-.297**** | -.021 | -.082 | **-.230*** | **.347**** |
| | WRK(직업적 곤란) | **-.247*** | ***-.461**** | -.133 | -.077 | **-.272**** | **.311**** |
| | TRT(부정적 치료지표) | -.153 | **-.375**** | -.055 | .034 | -.100 | .154 |
| 보충 | A(불안) | **-.232*** | ***-.504**** | -.124 | -.018 | -.208 | **.303**** |
| | R(억압) | .008 | .063 | .033 | -.023 | -.053 | -.106 |
| | Es(자아강도) | **.264**** | **.334**** | .035 | -.050 | .042 | -.010 |
| | Do(지배성) | **.278**** | **.357**** | .102 | .063 | .039 | -.077 |
| | Re(사회적 책임감) | .190 | **.381**** | .104 | .032 | .195 | **-.367**** |
| | PK(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180 | ***-.478**** | -.045 | -.083 | **-.257*** | **.333**** |
| | MDS(결혼생활 부적응) | -.143 | **-.364**** | -.090 | -.061 | **-.268*** | **.206*** |
| | Ho(적대감) | -.156 | **-.352**** | -.076 | .005 | -.123 | **.277**** |
| | O-H(적대감 과잉통제) | .036 | **.274**** | .097 | .026 | .150 | **-.250*** |
| | MAC-R(알코올중독) | .040 | -.098 | .020 | .045 | .002 | **.207*** |
| | AAS(중독 인정) | -.031 | -.143 | .169 | .165 | .077 | .131 |
| | APS(중독 가능성) | -.111 | **-.259**** | -.156 | -.080 | -.192 | .182 |
| | GM(남성적 성역할) | **.200*** | **.256*** | -.042 | -.049 | .044 | -.087 |
| | GF(여성적 성역할) | .138 | .156 | -.057 | -.068 | .039 | -.187 |

* p<.05, ** p<.01

## 나.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이 MMPI-2 척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공감, 자아탄력성, 부모애착, 아동기 외상)이 MMPI 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단계적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4.29>와 같다.

심리적 변인들이 임상척도들에 미치는 결과에 의하면 Pt(강박성) 척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은 공감으로 나타났다. D(우울), Si(내향성) 척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은 자아탄력성이었다. Mf(남성성-여성성)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동기외상으로 나타났다. Pd(반사회성)은 부모애착이 유의하게 예측했다. Sc(내향성)은 공감과 아동기외상이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 임상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RCd(의기소침), RC2(낮은 긍정정서), RC7(역기능적 부정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다. RC4(반사회적 행동)은 아동기외상이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RC6(피해의식)은 아동기외상과 부모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5요인 척도에 영향을 변인들을 살펴보면, NEGE(부정적 정서성/신경증), INTR(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다. DISC(통제결여)는 아동기외상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다.

내용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ANN(불안), OBS(강박성), DEP

(우울), ANG(분노), ASP(반사회적 특성), TPA(A유형 행동), LSE(낮은 자존감), SOD(사회적 불편감), WRK(직업적 곤란), TRT(부정적 치료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다. FRS(공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공감으로 나타났다. FAM(가정불화)는 아동기외상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다.

보충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A(불안), Es(자아강도), Do(지배성) 책임감), PK(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MDS(결혼생활 부적응), Ho(적대감), O-H(적대감 과잉통제), APS(중독 가능성), GM(남성적 성역할)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다. Re(사회적 책임감)를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은 자아탄력성과 아동기외상으로 나타났다. MAC-R(알코올중독)은 아동기외상과 부모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어졌다.

<표 4.29>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이 MMPI-2 척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표 | | 변인 | t | B | Beta | Constant | $R^2$ | f |
|---|---|---|---|---|---|---|---|---|
| 임상 | D(우울증) | 자아탄력성 | -3.22** | -.239 | -.327 | 74.08 | .107 | 10.39** |
| | Pd(반사회성) | 부모애착 | -2.70** | -.231 | -.278 | 74.39 | .077 | 7.306** |
| | Mf(남성성-여성성) | 아동기외상 | .07** | .260 | .352 | 47.39 | .14 | 12.28** |
| | Pt(강박증) | 공감 | -2.93** | -.298 | -.299 | 66.35 | .089 | 8.55** |
| | Sc(정신분열증) | 공감 | -2.63* | -.258 | -.265 | 59.24 | .128 | 6.51* |
| | | 아동기외상 | 2.39* | .172 | .241 | | | |
| | Si(내향성) | 자아탄력성 | -6.41*** | -.449 | -.566 | 91.69 | .320 | 41.03*** |
| 재구성 임상 | RCd(의기소침) | 자아탄력성 | -5.16*** | -.385 | -.484 | 89.81 | .234 | 26.58*** |
| | RC2(낮은긍정정서) | 자아탄력성 | -3.48** | -.244 | -.350 | 73.80 | .122 | 12.14** |
| | RC4(바사회적 행동) | 아동기외상 | 2.19* | .273 | .229 | 50.92 | .052 | 4.82* |
| | RC6(피해의식) | 아동기외상 | 4.02*** | .495 | .580 | 14.07 | .162 | 8.29** |
| | | 부모애착 | 3.37** | .376 | .485 | | | |
| | RC7(역기능적 부정정서) | 자아탄력성 | -3.32** | -.227 | -.335 | 66.86 | .335 | 11.01** |
| 성격 5요인 | DISC(통제결여) | 아동기외상 | 2.45* | .29 | .25 | 46.66 | .064 | 5.98* |
| | NEGE(부정적 정서성/신경증) | 자아탄력성 | -4.30*** | -.273 | -.419 | 74.49 | .175 | 18.50*** |
| | INTR(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 | 자아탄력성 | -3.58** | -.273 | -.358 | 77.50 | .128 | 12.79** |
| 내용 | ANN(불안) | 자아탄력성 | -3.88*** | -.292 | -.384 | 78.29 | .148 | 15.81*** |
| | FRS(공포) | 공감 | -2.89** | -.248 | -.296 | 59.47 | .088 | 8.33** |
| | OBS(강박성) | 자아탄력성 | -3.93*** | -.300 | -.389 | 76.45 | .151 | 15.49*** |
| | DEP(우울) | 자아탄력성 | -3.83*** | -.342 | -.380 | 85.49 | .144 | 14.68*** |
| | ANG(분노) | 자아탄력성 | -2.03* | -.168 | -.212 | 62.68 | .045 | 4.11* |
| | ASP(반사회적 특성) | 자아탄력성 | -2.35* | -.236 | -.244 | 73.65 | .060 | 5.51* |
| | TPA(A유형 행동) | 자아탄력성 | -2.350 | -.167 | -.071 | 61.28 | .060 | 5.52* |
| | LSE(낮은 자존감) | 자아탄력성 | -5.59 | -.438 | -.514 | 93.16 | .264 | 31.22*** |
| | SOD(사회적 불편감) | 자아탄력성 | -5.47 | -.418 | -.076 | 90.36 | .256 | 29.91*** |

| | | | | | | | | |
|---|---|---|---|---|---|---|---|---|
| | FAM(가정불화) | 아동기외상 | 3.10** | .311 | .315 | 46.38 | .100 | 9.16** |
| | WRK(직업적 곤란) | 자아탄력성 | -4.69*** | -.367 | -.446 | 83.10 | .199 | 21.60*** |
| | TRT(부정적 치료지표) | 자아탄력성 | -3.307 | -.270 | -.334 | 73.00 | .112 | 10.94** |
| 보충 | A(불안) | 자아탄력성 | -5.05*** | -.360 | -.476 | 82.15 | .227 | 25.40*** |
| | Es(자아강도) | 자아탄력성 | -3.19** | .231 | .324 | 28.70 | .105 | 10.20** |
| | Do(지배성) | 자아탄력성 | 3.12* | .234 | .317 | 24.72 | .101 | 9.73** |
| | Re(사회적 책임감) | 자아탄력성 | 2.41* | .214 | .253 | 33.26 | .160 | 8.21** |
| | | 아동기외상 | -2.26* | -.252 | -.237 | | | |
| | PK(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자아탄력성 | -4.70*** | -.336 | -.451 | 82.38 | .203 | 22.17*** |
| | MDS(결혼생활 부적응) | 자아탄력성 | -3.41** | -.238 | -.344 | 74.76 | .118 | 11.67** |
| | Ho(적대감) | 자아탄력성 | -3.17** | -.248 | -.323 | 70.93 | .104 | 10.10** |
| | O-H(적대감 과잉통제) | 자아탄력성 | 2.44 | .174 | .253 | 37.36 | .064 | 5.93* |
| | MAC-R(알코올중독) | 아동기외상 | 3.29** | .474 | .489 | 27.81 | .112 | 5.43** |
| | | 부모애착 | 2.413* | .315 | .358 | | | |
| | APS(중독 가능성) | 자아탄력성 | -2.14* | -.160 | -.224 | 65.35 | .050 | 4.58* |
| | GM(남성적 성역할) | 자아탄력성 | 2.53* | .172 | .068 | 37.25 | .069 | 6.42* |

* p<.05, ** p<.01, *** p<.001

## 4. 숙식제공 대상자 MMPI 연구를 통한 결론 및 제언

### 가. 한국규준그룹과의 비교

숙식제공 대상자 그룹과 한국 규준 그룹의 MMPI-2 임상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척도에서 숙식제공 대상자 그룹이 한국 규준 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상척도에서는 Pd(반사회성), Pa(편집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식 지원 대상자 그룹이 한국 규준 그룹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과 편집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재구성 임상척도에서는 RC4(반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척도에서 Pd(반사회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내용척도에서는 DEP(우울)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숙식 지원 대상자 그룹은 한국 규준 그룹에 비해 DEP(우울) 성향이 높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충척도에서는 MDS(결혼생활 부적응), O-H(적대감 과잉통제), MAC-R(알코올중독), GM(남성적 성역할)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원 대상자들이 적대감을 과잉통제하고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알코올에 의존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남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숙식제공 대상자들은 내적으로 타인에 대해 의심 경계하면서 우울한 성향이

높다. 반면 외적으로 적대감을 과잉통제하면서, 알코올로 자신의 갈등을 습관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다. 또한 남성적 성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생활에서도 부적응 하고 있다.

반면, 다양한 척도에서 숙식제공 대상자 그룹의 점수가 한국 규준 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임상척도에서 Hs(건강염려증),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 척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숙식제공 대상자 그룹이 한국 규준 집단에 비해 오히려 건강에 대한 염려, 정신분열적 증상, 경조증적 상태가 낮음을 의미한다. 재구성척도에서는 RC1(신체 증상 호소), RC3(냉소적 태도), RC6(피해 의식), RC7(역기능적 부정 정서), RC8(기태적 경험), RC9(경조증적 상태) 척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주거지원 대상자 그룹이 한국 규준 그룹에 비해 신체 증상 호소, 냉소적 태도, 피해의식, 역기능적 부정 정서, 기태적 경험, 경조증적 상태가 낮음을 시사한다. 성격병리 5요인 척도의 AGGR(공격성) 척도와 PSYC(정신증) 척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AGGR(공격성) 척도가 낮다는 것은 Pd(반사회성)과 RC4(반사회적 행동)이 높은 원인은 내부적인 공격적 성향 때문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척도에서는 FRS(공포), OBS(강박성), HEA(건강염려), BIZ(기태적 정신상태), ANG(분노), TPA(A유형 행동), TRT(부정적 치료지표) 척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보충척도에서는 Do(지배성), Ho(적대감), GF(여성적 성역할) 척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척도와 재구성 임상척도, 성격 5요인 척도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TRT(부정적 치료지표) 척도가 낮음은 주거지원 대상자 집단은 치료에 있어서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며, Do(지배성) 척도가 낮다는 것은 DEP(우울) 척도가 높게 나타난 것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이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척도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한국 규준 그룹에 비해 신체 증상의 문제를 덜 호소하고 정신분열적 증상을 덜 호소하고 있다. 정서적으로는 분노, 적대감 또한 낮았으며, 환경에 대한 대처에서 공격성과 냉소적 태도, 지배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Pa척도와 RC6의 결과가 대비되고 있는바, 이는 인지적으로 피해의식이 낮음으로 보기 보다는 본 척도 제작당시의 특성과 이들의 의기소침 점수가 규준집단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것을 고려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 나. 인구사회학적· 형사사법적 특성에 따른 MMPI 척도별 차이

숙식제공 대상자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학력, 수입)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

여 MMPI-2 척도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수의 척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40~49세 집단이 20~39세 집단에 비해 분노와 중독인정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교 이상의 졸업 집단이 중학교 졸업 집단보다 자아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형사사법적 특성(최초수감나이, 수감기간, 수감횟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MMPI-2 척도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한 소수의 척도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19세 이하 최초 수감된 집단은 30세 이상 최초 수감된 집단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 성향이 높고 사회적 책임감이 낮았으며, 20~29세 최초수감 집단과 30세 이상 최초수감 집단보다 통제결여 성향이 높았다. 또한, 재범 집단은 초범 집단에 비해 경조증적 상태와 공격성, 알코올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이 MMPI-2 척도에 미치는 영향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공감, 자아탄력성, 부모애착, 아동기 외상)이 MMPI 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아탄력성은 대부분의 MMPI 척도들에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이 특히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Mf(남성성-여성성), RC4(반사회적 행동), DISC(통제결여), FAM(가정불화)척도로 나타났다. 아동기외상은 RC6(피해의식)과 MAC-R(알코올중독)에 부모애착과 함께 영향을 미쳤고, Re(사회적 책임감)에는 자아탄력성과 함께 영향을 미쳤다.

부모애착은 Pd(반사회성)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 라. 숙식제공대상자 MMPI 연구를 통한 제언

### 가. 한국규준그룹과의 비교에 따른 제언

1. 숙식제공대상자는 알코올 남용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숙식제공대상자는 결혼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으므로,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정서적으로 우울로 부터 회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4. 무조건 타인에 대한 의심과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고를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6. 반사회적 성향은 높으나 적대감을 과잉 통제하는 숙식제공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습득 및 훈련이 필요하다.

### 나. 인구사회학적· 형사사법적 특성에 따른 MMPI 척도별 차이에 따른 제언

1. 40-49세 집단에 분노조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집중되어야 한다.
2. 중학교 졸업자는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보다 자아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와 자아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최소한 고등학교 학력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자아강도 향상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3. 최초 수감 나이가 어릴수록 반사회적 행동 성향이 높고 사회적 책임감이 낮으므로 어린나이에 최초수감되는 것을 예방해야한다.
4. 최초수감나이가 19세 이하의 집단은 반사회적 행동성향을 낮추고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20-29세 집단은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재범집단의 치료 또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조증적 상태, 공격성, 알콜중독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

### 다.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이 MMPI-2 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제언

1. 숙식 제공 대상자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 특성중 하나는 자아탄력성이다.
2. 반사회적 행동, 통제결여, 가정불화, 알콜중독, 사회적 책임감을 위해서 아동기 외상치료가 필요하다.
3. 피해의식, 알콜중독, 반사회성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애착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4. 부모애착은 반사회성을 유의하게 예측했고, 아동기 외상은 반사회적 행동, 통제결여, 사회적 책임감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아 범죄예방에 있어서 원가족 경험이 중요하다.

## Ⅲ. 세부연구3과 세부연구4를 통한 가정복원사업의 개선과제 및 추후사업방향제시

앞 장에서는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와 여성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연구 결과, 주거지원·숙식제공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 결과, 그리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2) 특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복원 사업의 개선과제 및 추후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심층면접연구 결과에 따른 가정복원사업의 개선과제 제언 및 추후사업방향제시

### 가. 심층면접연구 결과에 따른 심리적 지원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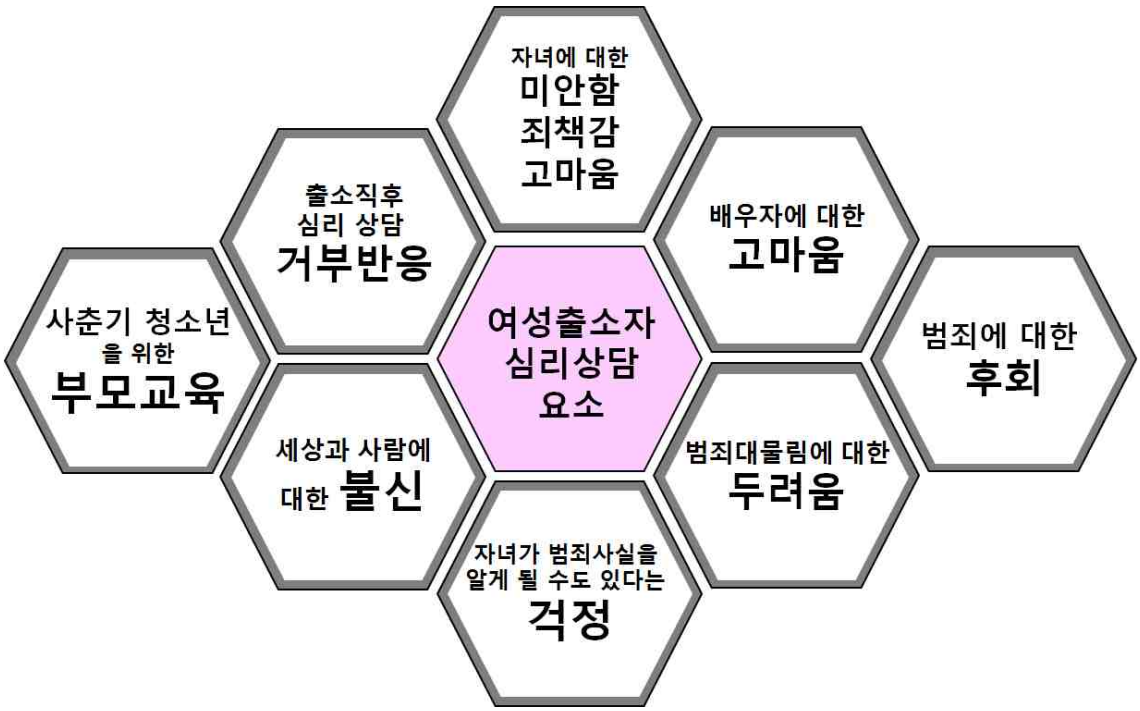



---

- 남성출소자는 술로 인해 가족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술, 도박 중독과 관련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 분노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므로 이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출소 후 수감생활로 인한 후유증(매주 같은 꿈을 꿈, 답답해서 방에서 생활을 못함 등)을 호소하는 출소자에게 그 괴로움에 대해 다뤄줄 필요가 있다.
- 수감으로 인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을 가족들에게 표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버지 역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출소 후에 사회복귀 과정에서 좌절할 때 재범하지 않도록 위기를 다뤄 주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다루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자신의 수감으로 인해 힘들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을 센터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 출소 후 공단에서의 상담을 통해 치유되고 용기가 생겼다고 심층면접에서 보고한 것을 고려했을 때, 남성출소자에 대한 상담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반항하거나, 학교 적응을 못하거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자녀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

## 여성출소자 심리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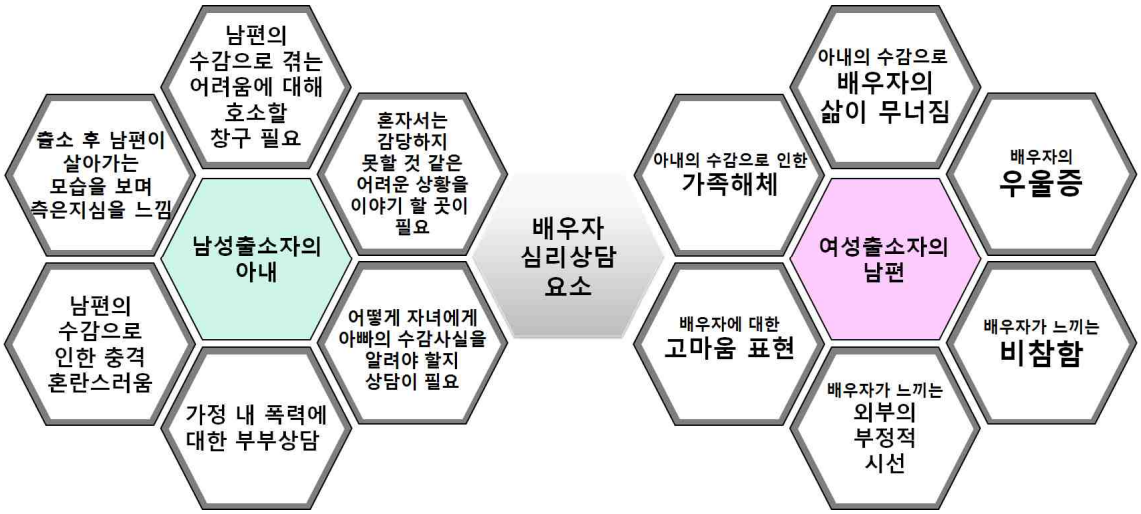



---

- 자녀에 대해 엄마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미안함을 다루어야 한다.
- 엄마의 수감으로 상처 받았을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자녀들에게 범죄가 대물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출소자가 자녀를 대할 때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부끄러움, 후회, 죄책감을 다루어 준다.
- 엄마의 출소경험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어 준다.
- 수감 기간 중 잘 버텨준 자녀에 대한 고마움을 다루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세상과 사람에 대해 불신이 생기게 된 상처를 다루어 준다.
- 출소직후 심리 상담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음을 인식하고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엄마의 수감사실을 자녀가 알게 될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 주거지원대상자 배우자의 심리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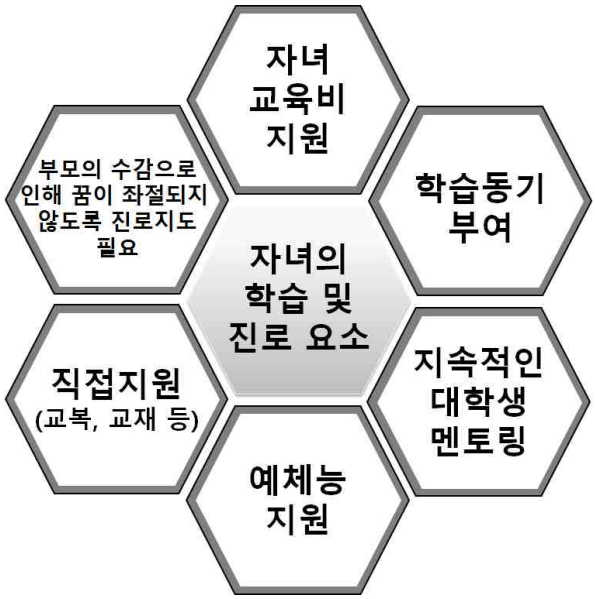

| | |
|---|---|
| **남성 출소자의 아내** | ▸아내가 남편의 수감으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필요하다.<br>▸범죄로 인해 수감된 남편이지만 출소 후 남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아내의 심정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br>▸남편의 수감기간동안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보며 버틴 아내를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br>▸남편의 수감으로 인해 아내는 충격과 혼란스러움을 겪는데 이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br>▸아내의 입장에서 폭력가정에 대한 부부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br>▸자녀가 잘못된 아빠의 행동을 닮지 않게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 **여성 출소자의 남편** | ▸아내의 수감 및 출소 사실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우자 상담이 필요하다.<br>▸남편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br>▸아내의 수감으로 인해 비참함을 느끼는 배우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br>▸아내의 수감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br>▸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 할 수 있도록 돕는다.<br>▸범죄사실로 인해 이혼의 기로에 놓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 상담이 필요하다.<br>▸출소 후 부모교육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br>▸출소자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일반인과 같이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br>▸사춘기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

## 주거지원대상자 자녀의 심리적 요소




- 아빠의 수감으로 인해 다친 자녀들의 마음과 분노조절 등을 다루는 심리 상담이 법무공단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아빠의 수감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는 자녀의 상처와 반항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아빠의 수감기간동안 사춘기 청소년 자녀의 반항에 대해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수감된 아빠에 대한 자녀의 원망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자녀가 느끼는 불행감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사춘기 자녀가 경험하는 반항심과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해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수감으로 인한 엄마의 부재로 인해 생겨났을 자녀문제에 대해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엄마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수감기간 중 자녀가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서운함에 대해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공단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수감사실을 알고 난 후 자녀가 받았을 영향에 대해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엄마의 부재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자녀에 대해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 주거지원대상자 자녀의 학습 및 진로문제




- 악기를 배우거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자녀의 속을 털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자녀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보내지 못하고 있어 자녀교육비 지원이 절실하다.
- 자녀의 진로 방향을 잡을 때 아빠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의 꿈이 좌절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므로 이를 다루어주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 자녀학업지원 중 교복, 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는 직접지원이 유용하였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을 통한 학습지원을 공단에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 엄마의 수감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은 자녀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학업지원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 대학생 학습지도 및 멘토링이 짧게 공단에서 제공했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학생 연결 학업지원 프로그램시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체능 부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자녀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상담이 가능한 대학생 멘토가 필요하다.

☞ **자녀사교육비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 지원 서비스가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나. 심층면접연구 결과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자 경제적 지원 제언

1) 주거지원 제언

| | |
|---|---|
| 남성<br>출소자 | ▸주거지원은 남성출소자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가족이 같이 살 공간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시작과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br>▸남성출소자들이 출소직후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을 받은 남성출소자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br>▸인구 2만의 중소도시 거주하는 출소자들에게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단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 여성<br>출소자 | ▸주거지원시 LH공사 현관에 붙어있는 푯말이 범죄자 낙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 범죄 사실을 알 수도 있다는 불안을 갖고 있다.<br>▸거주지역이 변동되어도 주거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br>▸주거지원 입주 시 보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br>▸이혼한 여성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남성출소자들에게는 주거지원제도가 가장 절대적이고 강력하게 가족유지를 촉진하는 지원제도이므로 이를 확대하므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취업 / 창업 / 경제적 지원 제언

| | |
|---|---|
| 남성<br>출소자 | ▸출소 후 남성출소자에게 취업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족 복귀의 핵심 요소임이 심층면접에서도 드러났다.<br>▸출소 후 남성출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필요한 구인 및 취업 요건에 맞는 지부별 취업교육이 필요하다.<br>▸남성출소자 개개인의 성향, 능력, 경력,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맞는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취업과의 연결이 필요하다.<br>▸수감기간 동안 취득한 자격증이나 경력의 경우, 수감사실을 밝혀야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실제 출소 후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다.<br>▸남성출소자가 지닌 특성과 경력 등을 파악하여 공단에서 취업을 연계시켜줄 필요가 있다.<br>▸출소 후 가정 경제의 안정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나 기술교육 등 취업교육이 출소자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제공, 확대될 필요가 있다.<br>▸어린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기 어려움으로 아내의 취업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나 육아도우미와 같은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br>▸남성출소자와 아내는 어린 자녀의 분유비,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보조와 같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br>▸의료보험료가 밀려 의료혜택을 못 받는 남성출소자와 가족들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br>▸긴급구호자금 지급시 가족이 있는 출소자는 해당되지 않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br>▸자녀 학업의 기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 여성<br>출소자 |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br>▸현실적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금 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br>▸공과금 및 자녀양육비와 같은 생활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br>▸여성출소자들은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 3) 공단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 제언

| | |
|---|---|
| 남성 출소자 | ▸공단 홈페이지, 지원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안내를 수감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 여성 출소자 | ▸여성지원센터가 수도권에 1개소만 개설되어 있으므로, 지방에 있는 여성출소자들을 위해 증설될 필요가 있다.<br>▸여성출소자 자녀에 대한 진로 및 학업상담, 합동 결혼 지원등 공단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br>▸여성출소자에게 신용회복, 이혼등과 관련된 무료법률상담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4) 종교 활동

▸남성출소자를 기다렸던 아내에게 종교는 아내 자신과 가정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종교는 수감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여성출소자에게 종교활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수감 중 가족지원

| | |
|---|---|
| 남성 출소자 | ▸가장이자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남은 가족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의 불안정이었다. 따라서 수감 중 가족의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br>▸의료보험 지원을 출소 후가 아니라 수감 중에 가능하게 하여 남아있는 가족이 의료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br>▸수감 중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이 가능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단이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br>▸수감 중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남겨진 가족들의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br>▸남편의 수감기간동안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br>▸수감시 가족접견의 시간이 너무 짧고 손도 잡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해 남성 출소자의 아내들이 호소하였다. |
| 여성 출소자 | ▸수감 기간 중 여성출소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도록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br>▸수감기간 중 보호자가 없는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br>▸생계 책임으로 인해 남편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자녀의 생활(학교 준비물, 위생상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돌봐줄 수 있는 대상과의 연결이 필요하다.<br>▸장기수감자는 물론 단기수감자들에 대해서도 출소 후 취업이 용이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r>▸출소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보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 다. 수감사실 자녀 공개 여부에 대한 제언




### 수감사실 공개 방식에 대한

#### 남성출소자와 여성배우자의 경험

1) 자녀가 나이가 어릴 경우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으며, 자녀의 나이가 성인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2) 아내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3)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고 상처받고 반항하는 자녀도 있었으며, 의연한척 하지만 마음이 다친 자녀들도 많아서, 아내들은 자녀에게 심리 상담이 제공되기를 바랐다.
4) 자녀가 수감사실을 알더라도, 자녀가 수월하게 현실을 수용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자립적으로 대처한 경우도 있다.
5) 수감 전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자녀들은 수감기간동안 아버지의 부재를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며, 아버지가 출소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빨랐다. 반면 수감 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자녀들이나, 아버지와 지속적인 문제를 보였던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수감 중인 동안 반항이나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보였으며 출소 후에는 아버지와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 여성출소자의 경험

1)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으며,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2) 여성출소자들은 엄마의 수감사실로 인해 자녀가 받을 상처와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3)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의 수감기간이 대체로 짧은 편이라(평균 1년) 자녀가 어릴 경우 엄마의 수감사실을 어린 자녀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4) 일부 여성출소자의 자녀들은 엄마의 수감이 가족을 위해 고생하다가 일어난 문제로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 출소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다.
5) 여성출소자들의 경우에도 수감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수감 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던 경우에는 출소 후에도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

## 라.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 본 가정복원사업의 의의와 과제

### 1. 주거지원대상자와 숙식제공대상자 모두에게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남성출소자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 지원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여성출소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아무것도 없고 갈 데 없는 가족을 모이게 해준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숙식제공 대상자의 경우에도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임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가족와 같이 살 수 있는 주거문제가 안정된 가족복원을 위한 가장 핵심요소임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이 출소자의 가족복귀 및 유지를 위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구 2만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출소자 뿐 만 아니라 이혼한 여성출소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숙식제공 대상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숙식제공 대상자의 50%는 미혼, 50%는 이혼(별거, 사별 포함)상태로 나타났다. 숙식제공대상자들 또한 가족을 새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으며 자활에 있어 문제가 없는 숙식제공 대상 출소자들에게는 가족을 새로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에게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촉진할 것이다.

### 2.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와 배우자, 여성출소자 모두에게 자녀는 가장 큰 희망이다.

주거지원 남성출소자와 배우자, 여성출소자들은 힘든 수감생활을 자녀를 생각하며 버텨냈으며, 출소 후에도 자녀가 살아가는 힘이자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출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으며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구심점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자녀심리상담과 학습지도, 진로지도, 멘토링 등 자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가정 복원을 위해 중요하다.

### 3.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출소자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취업성공 패키지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중장비 교육을 받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중장비로 취업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아니어서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가야 하나 주거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이사가 불가능하고,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갈수가 없다고 인터뷰 하였다. 또한, 수감중 취득한 자격증이나 경력 등은 출소 후 취업시 수감사실을 알려야 인정받을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었다. 여성출소자의 경우에도 출소 후 교육을 받고 미용자격증을 획득하였지만, 취업시 미용업계는 20대의 젊은 여성만 취업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미용자격증을 쓸 수가 없었다. 경제적인 부분과 경력의 부족함으로 창업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취업은 가정복원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방안이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산업 특성, 연령, 수감 중 취업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수감 중 부모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은 출소 후 가족복원의 기반이 된다.

남성출소자와 여성출소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에서 수감전 부모 자녀관계가 좋았던 가족은 출소후에도 여전히 부모 자녀관계가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감전 부모 자녀관계가 좋지 않았던 남성출소자들은 범죄로 인한 수감으로 인해 출소 후에는 부모 자녀 관계가 파국으로 흘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았을 때 부모 자녀 관계는 가족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 및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는 수감기간동안 자녀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고(Hairston, 2002),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들과 관련이 있다(Edin et al,2004)는 해외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수감 전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과의 접견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감 중 접견과 수감자 대상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감 중 자녀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모수감 자녀에게 멘토링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출된 멘토들이 부모수감 자녀들의 정신적, 정서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자녀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부모 접견 전후로

자녀에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부모 자녀 관계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수감 중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은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어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며 이는 출소 후 부모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 후 뿐만 아니라 수감 중에 자녀들의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남성출소자와 여성출소자는 현재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연히 듣거나, 본인이 인터넷 서핑을 통해 어렵게 찾아서 주거지원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거지원 외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출소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현재 제공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출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수감 단계에서부터 출소 전, 출소 후 단계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되는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수감중 가족에게 지원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의료혜택이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충분히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출소자들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6. 수감 중 자녀에게 여성출소자의 수감으로 인해 생긴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인력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여성출소자들의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치지만, 엄마의 부재라는 사실 자체가 자녀의 학교 적응 및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여성출소자 경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다가 수감된 경우가 대부분 이였으므로, 자녀들은 매일 아침밥을 해주고, 책가방 챙겨주고,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이 갑자기 사라지게 됨으로서 마음속에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며 여러 가지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내게 되었다. 따라서 엄마가 범죄자가 되었고 수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도 다루어주어야 하지만 엄마의 수감 중에 엄마의 부재로 인한 학령기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여성이 수감시 남편(25%)보다 조부모(51%)에 의해 자녀가 양육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U.S.Department Of Justice, 2010), 수감된 엄마의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도 자신의 수감 중 자녀를 이모처럼 돌봐줄 수 있는 사람과 자매결연을 맺어 수감 중 자녀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수감 중 엄마의 부재를 채워줄 자녀지원의 중요성은 해외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부모의 자리가 수감으로 인해 부재중일지라도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가정에서의 생활관리와 학교적응 관리의 부재가 더 문제이며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Yablonsky & Haskell, 1989)고 하였다. 엄마의 수감중 자녀에 대해 아버지가 미쳐 신경쓰지 못하고 엄마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을 마련해준다면 더 나아가 범죄대물림 예방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 7. 엄마의 수감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녀들은 엄마부재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자녀들보다 더 큰 정서행동적 문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성출소자들은 자신들의 수감사실을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모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녀가 수감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다시 엄마에게 되물으며 확인할 때조차 끝까지 자신의 수감사실을 부인했다. 이처럼 여성출소자는 자신의 수감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가 모르기를 바라며 해외출장, 장기입원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여성출소자들 대부분은 자녀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본 심층면접 연구에서 수감사실을 밝힌 여성출소자 자녀의 반응과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여성출소자 자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녀가 정서 행동적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수감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자녀들은 성격이 어두워지고, 거칠게 반항하는 행동, 섭식장애, 학업성적 하락, 학교생활 부적응, 가출 등의 행동들이 나타났다. 반면, 수감사실을 자녀가 명확하게 아는 경우에 자녀들은 엄마의 수감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였으며, 동생들을 돌보고, 가정경제를 위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직접 생활전선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는 해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듣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은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힘들며(Ayers, Sandler, West, & Roosa, 1996; Compas, 1987), 부모의 수감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부모가 부재하였을 때 훨씬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Jonson, 1995).

본 연구에서도 엄마의 수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자녀의 경우,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거라는 왜곡된 상상을 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했다. 반면, 다른 해

외문헌에서는 수감 중 부모에 대해 발달상에 맞는 솔직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다고 하였다(Poehlmann,2005). Nolen-Hoeksema & Larson(1999)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부모수감에 대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상실에 대하여 슬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작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부모의 수감사실을 자녀가 아는 것이 부모 부재로 인해 달라진 환경에 훨씬 더 잘 적응하여 대처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모 수감사실 자녀 공개여부는 여전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출소자 심층면접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았고, 수감기간이 최대치(5년)과 최소치(4개월)을 제외한 평균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는 점과 수감사실을 밝혔을 때 자녀의 나이가 성인이 많았던 경우를 고려하여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 8. 여성출소자의 가정과 남성출소자의 가정에서 수감사실을 공개하는 방식과 수감으로 인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여성출소자의 경우 자녀들은 엄마의 부재로 인해 야기된 정서적인 문제가 많았지만 남성출소자의 경우에 수감중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 책임을 졌던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엄마가 일을 나가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출소자의 경우 본 연구 인터뷰 대상자 13가정중 8가정의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1사례만이 남성출소자 스스로 자녀에게 말했으며, 나머지 7사례 모두 공개 주체가 엄마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출소자의 경우 자녀 공개 사실 여부를 자신이 결정한 반면에, 남성출소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것도 엄마, 알리지 않는 것도 엄마의 몫이였다. 비공개 하는 이유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수감기간이 짧은 경우 알리지 않았는데, 아버지 수감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녀도 있었다.

남성출소자 자녀의 경우 아버지 수감사실을 알고 여성출소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방황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아버지를 불신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부재로 남은 한 부모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며,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소홀함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전영실, 신연희, 김영식, 2007) 출소자에 대한 분노를 품기 쉽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

에 참여한 남성출소자들이 주거지원을 받고 본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출소자들이였으며, 수감 전 부모 자녀관계나 부부관계가 대부분 좋았고 이러한 관계는 출소 후에도 지속되는 가정이 많았다.

## 2.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및 추후사업방향제시

### 가.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 실태조사 비교

| | | 주거지원 대상자 | 숙식제공 대상자 |
|---|---|---|---|
| 인구사회학적 변인 | 성별 | 남자(82.4%), 여자(17.6%) | 남자(98.4%), 여자(1.6%) |
| | 나이 | 50대(40.4%), 40대(34.8%) | 40대(31.0%), 50대(24.9%), 30대(19.7%) |
| | 학력 | 고졸(39.7%), 대졸(19.6%) | 고졸(35.2%), 중졸(14.7%), 대졸(9.1%) |
| | 가족 상태 | 배우자동거/자녀동거(62.0%),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15.4%),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11.8%),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10.7%) | 미혼(50.2%), 이혼(28.2%) |
| | 종교 유무 | 유(72.5%) / 무(27.5%) | - |
| | 취업 유형 | 비정규직(37.7%), 정규직(24.6%) | 일용직(44.6%), 무직(24.0%) |
| | 월 소득 규모 | 월 100-200만원(46.1%), 월 200-300만원(30.6%) | 50미만(31.3%), 50~100(20.8%), 100~150(28.7%), 150만원 미만 (80.8%) |
| 형사사법적 실태 | 범죄 유형 | 사기(37.2%), 폭력(9.9%) | 절도(30.5%), 폭력(18.2%) |
| | 전과 횟수 | 남성 : 초범 (55.0%), 2-3범 (32.3%) 여성 : 초범 (87.3% ) | 초범(28.1%), 2범(20.9%), 3범(19.5%) |
| | 수감 기간 | 1년미만(29.9%), 1년-2년(26.4%), 2년-5년(21.4%) | 1년미만(24.9%), 1년-2년(20.6%), 2년-5년(25.5%) |
| | 최초 수감 나이 | 30대(36.0%), 40대(32.6%) | 20대(32.3%), 30대(20.7%) |

나. 주거지원,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제언



## 주거지원 대상자 제언 1/2

01 종교가 출소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돕는다.

02 주거지원 대상자에게는 2년 뒤 주거지원 중단 후에도 생계책임을 질 수 있는 강력한 취업지원이 병행 되어야 한다.

03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원활하고, 자신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으며, 배우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의사소통을 한다.

04 주거지원 대상자들이 이야기한 가장 큰 심리적 어려움은 미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후회이므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05 주거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은 아동기학대외상, 귀인, 스트레스대처, 자아탄력성, 분노표현, 의사소통 유형, 배우자 지지, 가족기능성, 아버지 역할 수행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심리지원 프로그램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06 출소자 배우자의 주된 심리적 어려움인 자신감 저하, 불안, 우울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심리지원 프로그램 내용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 주거지원 대상자 제언 2/2

07 주거지원 대상자 배우자의 심리적 특성은 귀인, 분노표현, 배우자지지, 의사소통 유형, 가족기능성이므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내용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08 여성 출소자들은 대부분 50대이고, 사기 초범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09 주거지원 대상자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56%이었다.

10 배우자가 자녀와 같이 살 경우, 자아탄력성, 아버지 역할수행,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배우자지지 점수가 높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

11 자녀와 동거하는 모델들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모델들보다 스트레스 대처 척도의 하위척도인 정서완화적 대처 점수가 높다.

12 배우자와는 같이 살지 않으나 자녀와 같이 사는 모델의 경우 여성출소자의 비율이 높았다. 가족희망센터에서는 여성출소자의 가정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연계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숙식지원 대상자 제언 1/2

01 숙식지원 대상자는 연령별로 상이한 특성이 고려된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02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숙식지원 대상자는 최초수감 나이가 어리며, 수감기간이 길고, 수감횟수가 많다. 그리고 미혼이 많고 학력이 낮으며 무직이 많다.

03 어린 시절 양친부모가 계신 가정에서 자란 비율은 54.9%, 결손가정은 45.1% 이다.

04 범죄동기는 경제적 어려움(42.9%), 홧김에 충동적으로 저질렀다(17.6%)는 경우가 많았다.

05 숙식지원 대상자에게는 정서적 지지집단 (배우자 만남, 개인상담, 공동체 등)이 필요하다.
: 출소자들은 가족에게 거부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가족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렬하다.

06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출소자들은 최초수감나이가 어리고, 범죄횟수가 많고, 수감기간이 길다.

07 숙식지원 대상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비스였다. 따라서 숙식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08 사회적응 과정에서 숙식지원 대상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주거지원, 취업 지원 이다.

09 생활관에 대한 부정적 정서 경험 및 동료출소자와의 관계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숙식지원 대상자 제언 2/2

| | |
|---|---|
| 10 | 소득이 올라갈수록 자활의지가 높아졌다. |
| 11 | 숙식지원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구성 요소로는 외로움과 후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심리지원 프로그램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
| 12 | 숙식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은 아동기학대외상, 스트레스대처, 자아탄력성, 공감, 자활의욕, 사회적지지, 애착이므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내용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
| 13 | 원가족분리모델이 원가족양육모델보다 10대에 수감된 사람이 많다. 현가족연결모델은 초범이 많고 현가족단절모델은 3범이 가장 많다. |
| 14 | 현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출소자는 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높은 반면, 현과족과 연결되어 있는 출소자는 초범에서 그친다. |
| 15 |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 모델 연구를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 사회적지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가족과 모두 단절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아동기학대외상과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지지를 보인다. |
| 16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에 비해 더 높은 아동기 학대외상을 보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을 보였다. |
| 17 | 결손가정 출신이거나 어린시절 아동기학대외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가족이 유지되거나 복원되도록 지원해주었을 때 자아탄력성을 회복하고 사회적지지 체계를 회복하게 된다. |

## 다. 주거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1) 주거지원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심리척도에 따른 제언

| 배우자동거/자녀동거모델 |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모델 |
|---|---|
| ✔ 다른 모델들 보다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높음 | ✔ 다른 모델들 보다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낮음 |
|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모델** | **배우자비동거/자녀비동거모델** |
| ✔ 아동기학대외상, 자아탄력성, 배우자지지 점수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가장 낮음 | ✔ 배우자지지, 아버지역할수행, 의사소통유형(긍정적 의사소통) 점수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낮음 |

| | | |
|---|---|---|
| **배우자 동거 여부에 따른** | **심리척도에 나타난 특징** | ▫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족모델들에서는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모델들에 비해 배우자 지지와 아버지역할 수행 점수가 높고, 긍정적 의사소통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제 언** | ➤ 배우자와 함께 사는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를 받고, 긍정적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처럼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하나 갖게 되며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가족의 유지 및 회복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 | | |
|---|---|---|
| **자녀 동거 여부에 따른** | **심리척도에 나타난 특징** | ▫ 자녀와 동거하는 모델들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모델들에 비해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FACES-Ⅲ)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제 언** | ➤ 자녀와 함께 사는 주거지원 대상자에서는 가족 간의 응집력이 크고, 조화롭게 가정을 이끌어 갔다.<br><br>➤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주거지원 대상자에서는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이 떨어져 가족위기와 가족해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재범 예측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

| 재범예측 요인 | 제 언 |
| --- | --- |
| ▹ 최초수감나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r>▹ 최초수감나이가 높을수록 재범 확률이 낮다. 최초수감이 40~4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29세인 경우에 비해서 재범일 확률이 0.15배로 낮아지고, 최초수감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0.03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 ▸ 최초 수감 나이가 어릴수록 재범 확률이 높아지므로,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희망센터에서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주거지원 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에 따른 제언

- 배우자비동거/자녀동거 모델의 여성출소자는 가정의 생계책임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가족희망센터에서는 여성출소자의 가정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연계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주거지원 대상자의 각 모델별 가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 및 교육이었다. 또한 현재 자녀랑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소자의 가정복귀 및 결속를 위해 가족희망센터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이다. 이에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출소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거지원 대상자들은 자신의 출소경험(범죄사실)로 인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다루는 상담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배우자로부터 지지받고 고마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희망센터에서 제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녀와 현재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가 있는 출소자 가정인 경우에는 자녀와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고 결속이 강해지도록 부모 및 자녀에게 가족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같이 살지 않는 모델은 20대의 비율이 높아 미혼이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족희망센터는 이들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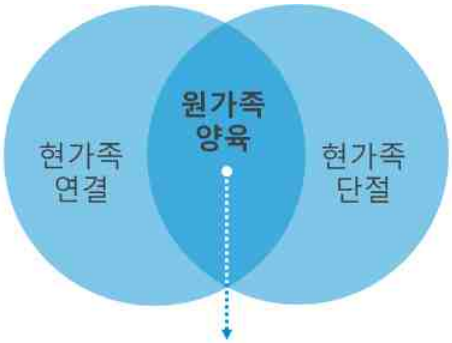
- 최초 수감 나이가 어릴수록 재범 확률이 높아지므로,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희망센터에서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주거지원 대상자에서는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이 떨어져 가족위기와 가족해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하나 갖게 되며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가족의 유지 및 회복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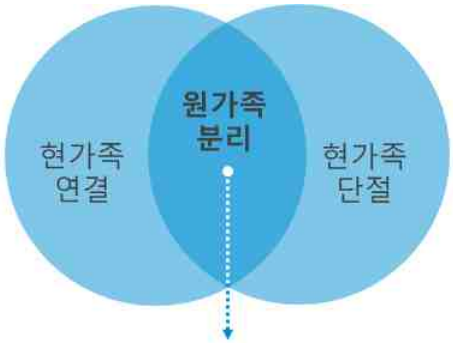
### 라. 숙식제공 대상자 실태조사 및 심리척도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

1)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심리척도에 따른 제언

가) 원가족양육, 원가족분리 모델에 따른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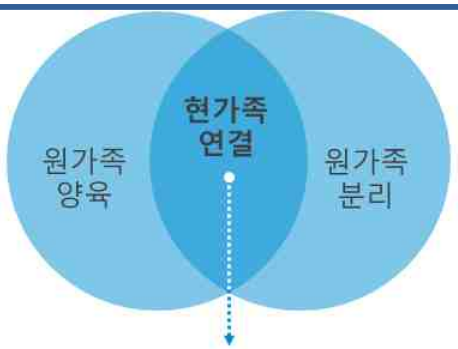

▸수감기간 1년 미만이 가장 많아,
원가족분리모델보다 수감기간이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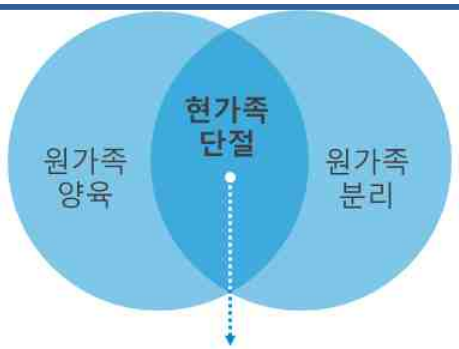

▸수감기간이 2-5년이 가장 많아,
수감기간이 원가족양육모델 보다 길다.

▸원가족분리모델이 원가족양육모델보다 10대에 수감된 사람이 많다.
(원가족양육모델보다 많음, 원가족분리모델에서 최초수감나이는
20대>10대>30대>40대>50대 순으로 나타나고, 원가족양육모델에서
최초수감나이는 20대>30대>40대>50대>10대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원가족분리모델의 출소자들이 10대에 더 많이 수감됨을 알 수 있다.

나) 현가족연결, 현가족단절 모델에 따른 제언




▸범죄횟수가 초범이 가장 많고
현가족단절모델보다 범죄횟수가 적다.




▸현가족연결모델은 초범이 많고
현가족단절모델은 3범이 가장 많다.

▸현가족과 단절되어 있을수록 범죄횟수가 많으며,
현가족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범죄횟수가 초범이 많았다.

2)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심리척도에 따른 제언

| 모델 | 심리척도에 나타난 특징 | 제 언 |
|---|---|---|
|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 모델** | ▹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공감, 자활의지, 스트레스 대처(적극적대처) 능력을 보인다. | ▸ 현가족과의 긍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가족희망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 | ▹ 가장 낮은 수준의 아동기 학대 외상을 보인다. | ▸ 원가족 부모와에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
|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 모델** | ▹ 낮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보인다.<br>또한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에 비해 아동기학대외상이 높았고, 부모애착이 낮다. | ▸ 아동기학대외상을 상담 장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으며, 부모애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신뢰형성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
| | ▹ 낮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수준을 보인다. | ▸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가족희망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종교, 지역사회 등)가 필요하다. |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 모델** |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을 보인다. | ▸ 현가족이 있는 집단들에게는 최대한 상호긍정적인 연락이나 접촉을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
| |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에 비해서 더 높은 아동기 학대외상을 보이며 낮은 부모애착을 보인다. | ▸ 아동기학대외상을 상담 장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으며, 부모애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신뢰형성과정의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 **원가족분리/현가족단절 모델** | ▹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원가족양육/현가족연결모델에 비해서 스트레스대처(적극적대처)가 낮게 나타났다.<br>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을 보인다. | ▸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 | ▹ 가장 높은 수준의 아동기 학대외상과 가장 낮은 수준의 부모애착을 보인다. | ▸ 아동기학대외상을 상담 장면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으며, 부모애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신뢰형성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

3) 재범 예측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

| 재범예측 요인 | 제 언 |
| --- | --- |
|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재범 확률은 0.8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br>▹ 최초수감나이가 30~3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서 재범 확률이 0.4배로 낮아지고, 최초수감이 40~4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 재범확률이 0.1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최초수감이 50~59세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 재범확률이 0.2배로 낮아지고, 최초수감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최초수감이 10~19세인 경우에 비해 재범확률이 0.01배로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재범 확률이 낮아지므로, 출소 중 또는 출소 후 교육 기회제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한다.<br><br>▸ 최초수감나이가 어릴수록 재범 확률이 높아지므로,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무부, 법무보호복지 공단, 가족희망센터에서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

4)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모델 유형별 실태 및 심리척도에 따른 제언

- 10대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원가족(출소자가 어린 시절에 함께 생활한 양친)과 단절된 사람들(예. 고아원, 결손가정등)에게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초범이면서 원가족과 분리된 출소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그 이유는 원가족 아래에서 양육되지 못한 출소자는, 최초수감나이가 빨라지고, 수감기간이 길어지며 원가족 아래에서 양육된 출소자는 최초수감나이가 늦어지고, 수감기간이 짧아진다.

- 현가족(현재 미혼인 출소자의 부모, 형제를 말하며 출소자가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과 단절되어 있는 출소자는 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높은 반면 현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출소자는 초범에서 그친다.

- 숙식제공 대상자의 가족 모델 연구를 통해 원가족과 현가족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적극적대처), 사회적지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원가족과 현가족 모두 단절되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아동기학대외상과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지지를 보였다.

- 흥미로운 사실은 원가족분리/현가족연결모델은 원가족양육/현가족단절모델에 비해 더 높은 아동기 학대외상을 보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을 보였다.

- 따라서 원가족과 분리되어 있더라도 현재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출소자들은 사회적지지척도, 자아탄력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에 따라 출소자들이 결손가정 출신이거나 어린 시절 아동기학대외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가족이 유지되거나 복원되도록 지원해주었을 때 자아탄력성을 회복하고 사회적지지 체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가족희망센터가 제공하는 가족복원 프로그램이 출소자의 재범예방과 사회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특히 중요한 사실은 주거 대상자만 아니라, 숙식대상자들에게도 가족복원이 사회적응 및 재범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 본 연구결과 숙식제공 대상자들은 가족모델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복원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시 모델별 접근이 필요하다.

## 3. 숙식제공대상자 MMPI-2 특성분석결과를 통한 제언 및 추후사업방향제시

### 가. 한국규준그룹과의 비교에 따른 제언

1. 숙식제공대상자는 알코올 남용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숙식제공대상자는 결혼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으므로,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정서적으로 우울로 부터 회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4. 무조건 타인에 대한 의심과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고를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6. 반사회적 성향은 높으나 적대감을 과잉 통제하는 숙식제공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습득 및 훈련이 필요하다.

### 나. 인구사회학적· 형사사법적 특성에 따른 MMPI 척도별 차이에 따른 제언

1. 40-49세 집단에 분노조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집중되어야 한다.
2. 중학교 졸업자는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보다 자아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와 자아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최소한 고등학교 학력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자아강도 향상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3. 최초 수감 나이가 어릴수록 반사회적 행동 성향이 높고 사회적 책임감이 낮으므로 어린나이에 최초수감되는 것을 예방해야한다.
4. 최초수감나이가 19세 이하의 집단은 반사회적 행동성향을 낮추고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20-29세 집단은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재범집단의 치료 또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조증적 상태, 공격성, 알콜중독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

### 다. 숙식제공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이 MMPI-2 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제언

1. 숙식 제공 대상자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 특성중 하나는 자아탄력성이다.
2. 반사회적 행동, 통제결여, 가정불화, 알콜중독, 사회적 책임감을 위해서 아동기 외상치료가 필요하다.
3. 피해의식, 알콜중독, 반사회성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애착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4. 부모애착은 반사회성을 유의하게 예측했고, 아동기 외상은 반사회적 행동, 통제결여, 사회적 책임감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아 범죄예방에 있어서 원가족 경험이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김두섭, 전영실(1996).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병수. (2012). 가족접견제도의 개별화: 가족만남의 집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0(단일호), 75-108.

김영제, 김판석(2011). 비행 하위문화이론에 나타난 빈곤과 범죄의 사회학적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7**(3), 171-184.

김용수, & 박현주. (2009). 가족상담: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장기수용자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1), 583-603.

김인숙. (1992). 여성 출소자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6**(단일호), 9-31.

남영옥. (2005). 연구논문: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음란물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청소년학연구, 12**(3), 363-388.

박선영(1991).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과 그에 따른 전문적 도움에 관한 연구 : 신경정신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가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rden of Family with the Mentally Ill and Professional Help to It : Cases of Families with Patients Using the Neuropsychiatric Hospital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영(2009). 여성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미국 여성 수형자의 사례. **한국범죄학, 3**(2), 41-66.

박선영, & 신연희.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총서, 2012**(3), 1-270.

박영숙(2007). 여성 수형자의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의 방향. **교정복지연구, 10,** 39-63.

법무연수원 (2013), 범죄백서,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 서울 : 범죄백서.

송원영. (2012). 경험논문: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17-227.

신연희 (2002). **기혼 여자출소자에 관한 연구 :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연희. (2002). 재소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정책의 방향.

신연희. (2008). 출소 후 재범 예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91-213.

신연희 (2011).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점에서. **교정담론, 5**(2), 111-146.

신연희. (2012). 수용자 위기가족의 문제와 지원 방안: 탄력성 이론의 접근. **한국범죄학, 6**(2), 123-156.

양화식. (2000). 개정행형법 (제 7 차 개정) 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동임. (2012). 수형자의 교정· 교화를 위한 접견교통권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24**, 67-89.

이윤호 (2002). **교정학개론**. 박영사

조병준, 이희정(2009). 여성수용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4), 221-241.

전영실, 신연희, 김영식(2007).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2007). 논문: 가족유대와 비행의 관계-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9**(1), 277-304.

전영실, 신연희(2009).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 **교정연구**, (45), 279-303.

최영신, 황정임(2006).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214.

최인섭, 최영신, & 박순진. (1999).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허경미. (2013). 주요국의 수형자가족 지원서비스 분석 및 도입모델. **경찰학논총, 8**(2), 329-354.

홍영화. (2004). **한국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옥경, (2010). **여성과 구금 : 교도소 관리자와 정책입안자를 위한 핸드북**.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derson & D. J. Ma, Q., Fode, C. Guillemot, F., (1999). Neurogenin1 and neurogenin2 control two distinct waves of neurogenesis in developing dorsal root ganglia. *Genes & development, 13*(13), 1717-1728.

Agnew, R. (1985).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64*(1), 151-167.

Akers, R. L. & Cochran, J. K. (1985). Adolescent marijuana use: A test of three theories of deviant behavior. *Deviant Behavior, 6*(4), 323-346.

Akers, R. L. & Sellers, C. S. (2004). Criminological theory.

Baron, J. S. Poff, N. L., Angermeier, P. L., Dahm, C. N., Gleick, P. H., Hairston Jr, N. G., ... & Steinman, A. D. (2002). Meeting ecological and societal needs for freshwater. *Ecological*

*Applications, 12*(5), 1247-1260.

Bates, R.(2004). *Women prisoners and recidivism*. from http://www.uic.edu/jaddams/college/.

Baunach, P. J.(1982). *You can't be a mother and be in prison... can you? Impacts of the mother-child separati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Women, Price B. and Sokoloff,* N.(ed.) New York: Clark Boardman Company.

Belknap, J. K., Giguere, S., Pettigrew, A., Cochran, A. M., Eps, A., & Pollitt, C. C. (2007). Lamellar pro-inflammatory cytokine expression patterns in laminitis at the developmental stage and at the onset of lameness: innate vs. adaptive immune response. *Equine veterinary journal, 39*(1), 42-47.

Berry, P., & Eigenberg, H.(2003). Role strain and incarverated mothers :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mothering. *Women & Criminal justice*, 15(1).

Beckerman, A.(1991). Women in prison: The conflict between confinement and paretal right. *Social Justice, 18,* 171-183.

Block, K. J., & Potthast, M. J.(1998). Girl scouts beyond bars: Facilitating parenting-child contact in correctional settings. *Child welfare, 77,* 561-578.

Bloom, B. (1995). Imprioned mothers. In K. Gabel & D. Johnston(Ed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pp. 21-31). New York: Lexington Books.

Bloom, B., Owen, B., and Covington, S.(2003). *Gender-responsive strategies: Research, Practice and guiding principles for women offenders*. Washington, DC: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2. New York: Basic Books

Bogerts, B., Meertz, E., & Schönfeldt-Bausch, R. (1985). Basal ganglia and limbic system pathology in schizophrenia: a morphometric study of brain volume and shrinkag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8), 784-791.

Carol, G.(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Casey-Acevedo, K., & Bakken, T.(2001). The effect of time on the disciplinary adjustment of women in pris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5*(4), 489-497.

Casey-Acevedo, K., Bakken, T., & Karle, A. (2004). Children visiting mothers in prison: the effects on mothers' behaviour and disciplinary adjustment.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7*(3), 418-430.

Cecil, K. M., Brubaker, C. J., Adler, C. M., Dietrich, K. N., Altaye, M., Egelhoff, J. C., ... & Lanphear, B. P. (2008). Decreased brain volume in adults with childhood lead exposure. *PLoS medicine, 5*(5), e112.

Clark, J.(1995). The impact of the prison environment on mother. *The prison Journal, 75,* 306-329.

Cohen, R., Wolff, G., & Nelson, B. (2004). *Energy down the drain: the hidden costs of California's water supply. In Energy down the drain: the hidden costs of California's water supply.* NRDC/Pacific Institute.

Covington, S.(2002). A women's journey home: Challenges for female offenders. *Prisoners Once Removed.*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Covington, Stephanie(2003). *"A Woman's Journey Home." Prisoners Once Removed.* Washington, D. 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Currie, E.(1988). Two visions of community crime prevention. *Communities and crime reduction,* 280-286.

Dallaire, D. H.(2007). Children with incarcerated mothers: Developmental outcomes, special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5-24.

Dallaire, D. H.(2007). Incarcerated mothers and fathers: A comparison of risks for children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56*(5), 440-453.

Dallaire, D. H., & Wilson, L. C. (2010). The relation of exposure to parental criminal activity, arrest, and sentencing to children's maladjust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4), 404-418.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58-81.

Dryfoos, J. G. (1990). *Adolescents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Dozier, M.(2005). Coping with early adversity: Challenges for infants in foster care. *Invited Address at the 2005 Biennial Meeting for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tlanta GA.*

Easterling, B. A.(2012). Parenting Behind Bars: A Qualitative Study of Incarcerated Mothers. From trace.tennessee.edu

Edin, K., Kefalas, M. J., & Reed, J. M. (2004). A peek inside the black box: What marriage means for poor unmarri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1007-1014.

Farrington, D. P.(2005). The importance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4), 489-497.

Fishman, S. H., & Cassin, C. J. (1981). Services for families of offenders: An overview.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Glaze, L. E., & Maruschak, L. M. (2008). *Parents in prison and their minor children.* Washington DC, USA: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Graber, J. A., Lewinsohn, P. M., Seeley, J. R., & Brooks-Gunn, J. (1997). Is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the timing of pubertal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12), 1768-1776.

Greene, S., Haney, C., & Hurtago, A.(2000). Cycles of pain: Risk factors in the lives of incarcerat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The Prison Journal, 80,* 3-19.

Greenfeld, L., & Snell, T.(1999). Women offender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Hagan, J., & Dinovitzer, R. (1999). Collateral consequences of imprisonment for children, communities, and prisoners. *Crime and Justice,* 121-162.

Hairston, C. F. (1991). Family ties during imprisonment: Important to whom and for what. *J. Soc. & Soc. Welfare, 18*, 87.

Hairston, C., Bates, R.,, Lawrence-Willis, S.(2003). *Children, Famillie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rom http://www.uic.edu/jaddams/college/.

Hanlon, T. E., Blatchley, R. J., Bennett-Sears, T., O'Grady, K. E., Rose, M., & Callaman, J. M.(2005). Vulnerability of children of incarcerated addict mothers: Implica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1), 67-84.

Harlow, Caroline Wolf(1999). Prior Abuse Reported by Inmates and Probationers.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awkins, D. F. (Ed.). (1995). Ethnicity, race, and crime: Perspectives across time and place. *SUNY Press.*

Hawkins, G. D., Cramer, C. J., & Truhlar, D. G. (1995). Pairwise solute descreening of solute charges from a dielectric medium. *Chemical Physics Letters, 246*(1), 122-129.

Hirschi, Travis(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lt, N., & Miller, D. (1972). Explorations in inmate-family relationships (No. 46). Sacramento, *CA: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Howser, J. F., & MacDonald, D. (1982). Maintaining family ties. C*orrections Today, 44*(4), 96-98.

Howell, S. N., & Robbins, M. B. (1995). Species limits of the Least Pygmy-Owl (Glaucidium minutissimum) complex. The Wilson Bulletin, 7-25.

Huesmann, L. R., Eron, L. D., Lefko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120

Johnston, D.(1995). Effect of parental incarceration. In K. Gabel & D. Johnston (Ed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p. 59-58). New York: Lexington Books.

Jose-Kampfner, C.(1990). Coming to terms with existential death: An analysis of women's adaptation to life in prison. *Social Justice 2*(17), 110-125.

Kampfiner, C. J.(1995).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New York, NY : Lexington.

Kazdin, A. E. (1995). Child, parent and family dysfunction as predictors of outcome in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antisocial childre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3), 271-281.

Kazura, K.(2001). Family programming for incarcerated parents: A needs

assessment among inmat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32,* 67-83.

Kierkus, C. A., & Baer, D.(2002). A social control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delinquent behavior.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25-458.

Laub, J. H., & Sampson, R. J. (1993). TURNING POINTS IN THE LIFE COURSE: WHY CHANGE MATTERS TO THE STUDY OF CRIME*. *Criminology, 31*(3), 301-325.

Lauritsen, J. L., Laub, J. H., & Sampson, R. J. (1992). Conventional and delinquent activities: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violent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7*(2), 91-108.

Leapheart, P.(1997). *A review of institutional programs 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females and their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Central Missouri State University).

Leonard, E.(2002). *Convicted survivors: The imprisonment of battered women who kill.* New York:Satate University of New York.

Lipsey, M. W., & Derzon, J. H. (1998).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 synthesis of longitudinal research.*

Mears, D. P., Wang, X., Hay, C., & Bales, W. D. (2008). Social ecology and recidivism: implications for prisoner reentry*. *Criminology, 46*(2), 301-340.

Messina, N., Burdon, W., & Prendergast, M.(2003). Assessing the needs of women in institutional therapeutic communiti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37*(2), 89-106.

Mills, A., & Codd, H. (2008). Prisoners' families and offender management: Mobilizing social capital. *Probation Journal, 55*(1), 9-24.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

Moffitt, T. E., & Caspi, A. (2001). Childhood predictors differentiate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pathways among males and femal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02), 355-375.

Mumola, C. J.(2000). *Special report: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Mulder, H. Swen, J. J., Nijenhuis, M., De Boer, A., Grandia, L., Maitland-Van Der Zee... & Guchelaar, H. J. (2011). Pharmacogenetics: from bench to byte—an update of guidelines. *Clinical Pharmacology & Therapeutics, 89*(5), 662-673.

Murray. J., & Farrington, D. P.(2005). Parental imprisonment: Effects on boy's antisocial behaviour and delinquency through the life-cours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12), 1269-1278

Murray, J., & Farrington, D. P. (2008). The effects of parental imprisonment on children. *Crime and Justice, 37*(1), 133-206.

Myers B. J.,, Smarsh, T. M., Amlund-Hagen, K., & Kennon, S.(1999). Children of incarcerated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8,* 11-25.

Nagin, D. S., & Tremblay, R. E. (2001). Parental and early childhood predictors of persistent physical aggression in boys from kindergarten to high schoo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8*(4), 389-394.

Niarhos, F. J., & Routh, D. K. (1992). The role of clinical assessment in the juvenile court: Predictors of juvenile dispositions and recidivism.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2), 151-159.

Niven, S., & Stewart, D. (2005). *Resettlement outcomes on release from prison in 2003*. Home Office Research Findings, 248.

Ohlin, L. E. (1954). *The stability and validity of parole experience tabl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Sociology.).

Osborn, S. G., & West, D. J. (1979). Conviction Records of Father and Sons Compared. Brit. J. *Criminology, 19*, 120.

Patterson, G. R., Capaldi, D., & Bank, L. (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An earlier draft of this chapter was presented at the Earlscourt Conference on Childhood Aggression, Toronto, Canada, Jun 198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atterson, G. R., Reid, J. B., & Eddy, J. M. (2002). A brief history of the Oregon model.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and model for intervention, 3-21.

Phillips, C., Friston, K. J., Glaser, D. E., Henson, R. N., Kiebel, S. & Ashburner, J. (2002). Classical and Bayesian inference in neuroimaging: applications. *Neuroimage, 16*(2), 484-512.

Poehlmann, J.(2005a). Children's family environments and intellectual outcomes during maternal incarce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 1275-1285.

Ray, M. C., & Downs, W. R. (1986). An empirical test of labeling theory using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3*(2), 169-194.

Rechie, B.(2001). Challenges incarcerated women face as they return to their communities: findings from life history interview. *Crime & Delinquency, 47*(3).

Sauer, K., & Austin, L. A. (1978). Bacteriochlorophyll-protein complexes from the light-harvesting antenna of photosynthetic bacteria. *Biochemistry, 17*(10), 2011-2019.

Seymour, C.(1998). Children with parent in prison: Child welfare policy, program, and practice issue. *Child Welfare, 77*(5), 469-93.

Sherman, L. W., Smith, D. A., Schmidt, J. D., & Rogan, D. P. (1992). Crime, punishment, and stake in conformity: Legal and informal control of domestic viol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0-690.

Stanton, A. M.(1980). W*hen mothers go to jai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Temin, C. E.(2001). Let us consider the children. *Corrections Today, 63*(1), 66-69.

Tittle, C. R.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Tuerk, E. H., & Loper, A. B.(2006). Contact between incarcerat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Assessing parenting stres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3*(1), 23-43.

Uggen, C., Behrens, A., & Manza, J. (2005). Criminal disenfranchisement. *Annu. Rev. Law Soc. Sci., 1*, 307-322.

Wildeman, C. (2009). Parental imprisonment, the prison boom, and the concentration of childhood disadvantage. *Demography, 46*(2), 265-280.

Wright, J. P., Dietrich, K. N., Ris, M. D., Hornung, R. W., Wessel, S. D., Lanphear, B. P., ... & Rae, M. N. (2008). Association of

prenatal and childhood blood lead concentrations with criminal arrests in early adulthood. *PLoS Medicine, 5*(5), e101.

Young, D. S., & Smith, C. J.(2000). When moms are incarcerated: The needs of children, mothers, and caregivers. *Families in Society, 81,* 130-141.

Zeanah, C., & Fox, N. A.(2004). Temperament and attachment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3,* 32-41.

Zeanah, C.(2005). *Disturbance of attachment: Lessons fro the extremes.* Paper Presented at Vanderbilt University Kennedy Center Conference on Attachment. Nashville, TN.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659&cid=40942&categoryId=31531

조동주, 「"가족들도 큰 고통…" 신상공개된 성추행자 高2 아들 자살」, 동아일보, 2013년 12월 3일, http://news.donga.com/3/all/20131203/59291716/1

최현진, 「교정시설 면회, 이제는 집에서도 가능」, 뉴스토마토, 2013년 4월 10일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7/cor_7020.jsp, 2014년 10월 검색.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7/cor_7030.jsp, 2014년 10월 검색.

법무연감(2014). 법무부.